

정책보고서 2023-00

발간등록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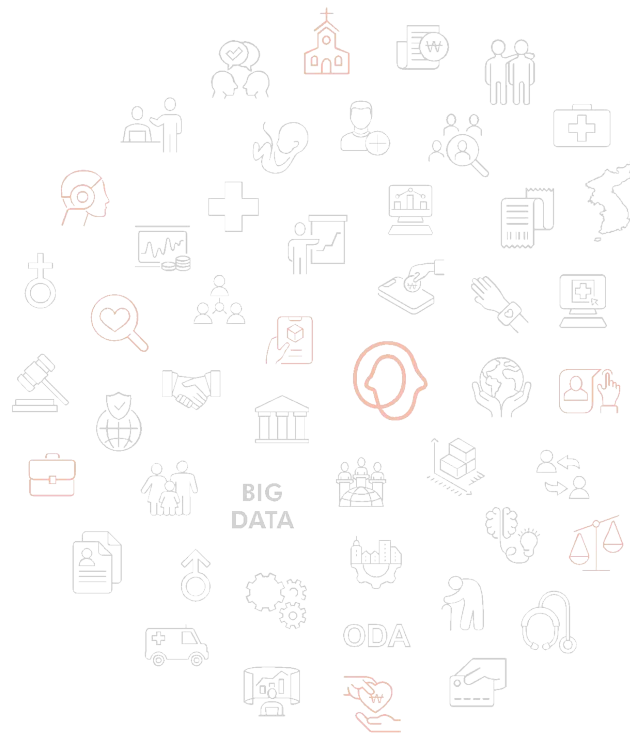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임완섭·김문길

김태완·김기태·황도경·오미애·김성아·이원진·이아영·임덕영·정세정·오미애

윤상용·박형준·김민희·이길제·이용하·신봉하·이주미·최준영·정주성·한수진·신재동



제출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22. 4. 12.)한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 조사 및 평가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최저생계비의 정의와 의의 및 관련 사례	15
제1절 빈곤, 최저소득기준과 최저소득보장의 개념	17
제2절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24
제3절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29
제4절 해외사례: 독일, 스페인	45
제1부 빈곤층 실태분석	
제3장 국민생활실태조사	109
제1절 국민생활실태조사 개요	111
제2절 기초분석	115
제4장 빈곤층 욕구별 실태분석	133
제1절 박탈 및 생활여건 욕구	135
제2절 자산 및 부채	147
제3절 주거욕구	160
제4절 의료욕구	186
제5절 교육욕구	203
제6절 에너지욕구	232

제2부 2023년 최저생계비 계측

제5장 2023년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본 방향	251
제1절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 계측 모형	253
제2절 마켓바스켓 결정원칙	256
제3절 표준가구 및 지역구분	259
제6장 202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	271
제1절 최저 식료품비	273
제2절 최저 주거비	282
제3절 최저 광열·수도비	293
제4절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310
제5절 최저 피복·신발비	316
제6절 최저 보건·의료비	321
제7절 최저 교육비	330
제8절 최저 교양·오락비	336
제9절 최저 교통·통신비	341
제10절 최저 기타소비지출	346
제11절 최저 비소비지출	351
제12절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356
제7장 대안적 방식을 통한 2023년 최저생계비	361
제1절 박탈지표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363
제2절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374
제3절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378

제8장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385
제1절 장애인 추가비용	387
제2절 노인 추가비용	430
제3절 한부모가구 추가비용	448

제3부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제9장 기초생활보장 평가 개요	467
제1절 기초생활보장 평가 선행연구	469
제2절 기초생활보장 평가 개요 및 분석틀	477
제10장 대상자 포괄성	479
제1절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481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실태 및 사각지대 감소효과 분석	486
제11장 급여적정성	497
제1절 최저생계비를 통한 급여적정성 평가	499
제2절 박탈지표를 통한 급여적정성 평가	515
제12장 급여 효과 및 효율성	525
제1절 급여 효과 및 효율성	527
제2절 급여 형평성	541
제3절 불평등 감소 효과	554
제4절 탈수급 이행 경로	559



제13장 의료급여 평가	593
제1절 의료급여제도 개요 및 보장성 평가	595
제2절 의료급여 재정 및 이용 현황	609
제3절 소결	614
제14장 1인 가구 심층분석	619
제1절 1인 가구의 빈곤 실태	621
제2절 1인 가구 심층조사 분석	626
제3절 1인 가구 급여 적정성 분석(다른 규모의 가구와 비교)	635
제15장 결론	639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641
제2절 향후 연구 및 개선 방향	648
참고문헌	653
부록	664
부록 1. 2023년 표준가구 마켓 바스켓	664
부록 2.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726
부록 3.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조사표	740
부록 4. 스페인 복지 제도의 전개과정	788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2-1-1〉 빈곤의 대안적 정의	18
〈표 2-2-1〉 빈곤의 정의와 최저생계비의 계측	24
〈표 2-3-1〉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	31
〈표 2-3-2〉 사회보장심의회위원회의 1973년 최저생계비	36
〈표 2-3-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결과(연구진안)	37
〈표 2-3-4〉 2020년 최저생계비 표준가구(연구진안)	38
〈표 2-3-5〉 2020년 지역별·비목별 최저생계비 계측결과: 표준가구(표준가구 1인)	39
〈표 2-3-6〉 최저생계비(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 연구진안)	39
〈표 2-3-7〉 최저생계비(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40
〈표 2-3-8〉 2022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실태생계비 계측결과	42
〈표 2-3-9〉 2018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가구모형	43
〈표 2-3-10〉 2018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계측결과	44
〈표 2-4-1〉 독일 사회부조제도의 구조	47
〈표 2-4-2〉 독일 사회부조 급여의 종류와 특징	52
〈표 2-4-3〉 생계급여(총욕구)의 구성	54
〈표 2-4-4〉 추가욕구 내지 비용(Mehrbedarfe)의 종류와 산정	55
〈표 2-4-5〉 2018년 소비 및 소득조사에 따른 단신가구의 기본생계지출	61
〈표 2-4-6〉 가구원 유형별 기본급여액의 추이	62
〈표 2-4-7〉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 비교	64
〈표 2-4-8〉 생계급여 지급액 산정사례(35세 홀부모 여성 가정가구 가정)	65
〈표 2-4-9〉 빈곤 측정 지표 및 정의	73
〈표 2-4-10〉 심각한 물질적 및 사회적 박탈 기준 항목 (13개 중 7개 이상)	76
〈표 2-4-11〉 균등화 척도 비교	77
〈표 2-4-12〉 빈곤 위험(AROP) 임계값 (예시)	78
〈표 2-4-13〉 IPREM, 2004-2023	79
〈표 2-4-14〉 카탈루냐 사회적 주택 지원 자격 소득 기준	81
〈표 2-4-15〉 스페인 기준 예산 연구 프로젝트 현황	82
〈표 2-4-16〉 스페인 빈곤 위험율 2008-2022	85
〈표 2-4-17〉 스페인 연령별 빈곤 위험율(AROPE) 2008-2022	86
〈표 2-4-18〉 스페인 교육수준별 빈곤 위험율(AROPE) 2008-2022	87
〈표 2-4-19〉 스페인 교육수준별 평균 순연소득(Renta anual neta media) 2008-2022	88

〈표 2-4-20〉 교육 훈련 부문 지표	89
〈표 2-4-21〉 스페인 성별 빈곤 위험율(AROPE) 2008-2022	89
〈표 2-4-22〉 자치주별 빈곤 위험율(AROP) 2008-2022	90
〈표 2-4-23〉 가구원수별 자산기준(2023년)	98
〈표 2-4-24〉 가구원 수 및 구성 별 IMV 급여 금액 비교(2023년)	100
〈표 2-4-25〉 빈곤 위험(AROP) 임계값(중위소득 60%)과 IMV 급여 비교	102
〈표 2-4-26〉 IMV 수급자 현황: 자치주, 유형, 성별, 2020년 6월 ~ 2023년 6월 누적	103
〈표 2-4-27〉 IMV 비수급 적격자(Non-take up) 발굴 및 동원 프로젝트	104
〈표 3-1-1〉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조사 내용	113
〈표 3-1-2〉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최종 조사 완료 수	114
〈표 3-2-1〉 분석 집단 구분	116
〈표 3-2-2〉 가구 일반적 특성	117
〈표 3-2-3〉 가구형태별 가구분포	118
〈표 3-2-4〉 노인 가구, 아동가구, 장애인 가구 유무별 가구분포	119
〈표 3-2-5〉 노인 가구, 아동가구, 장애인 가구의 거주지역 분포	120
〈표 3-2-6〉 만성질환가구원의 유무별 가구분포 및 의료비지출(월평균)의 금액	121
〈표 3-2-7〉 가구주 특성	122
〈표 3-2-8〉 가구주 건강상태	123
〈표 3-2-9〉 가구주 근로능력 정도 및 소득활동 유무	124
〈표 3-2-10〉 가구원별 경제활동 상태	124
〈표 3-2-11〉 월평균 가구 소득 규모 및 비중	125
〈표 3-2-12〉 소득원천별 규모 및 비중	127
〈표 3-2-13〉 가구규모에 따른 지역별 월평균 소득 수준	128
〈표 3-2-14〉 월평균 소득 구간의 가구빈도	128
〈표 3-2-15〉 소득계층별 이전소득 수준	129
〈표 3-2-16〉 사회보험 수급여부 및 수금액 규모	130
〈표 3-2-17〉 기타 정부보조금1) 수급여부 및 수금액 규모	131
〈표 3-2-18〉 평균지출 규모	132
〈표 4-1-1〉 영역별 박탈문항과 필요여부 응답비율	136
〈표 4-1-2〉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 비율(2021년 1년 동안)	138
〈표 4-1-3〉 영역별 최종박탈지표	139

〈표 4-1-4〉 박탈점수 분포	140
〈표 4-1-5〉 영역별 결핍 정도	141
〈표 4-1-6〉 결핍영역별 연관성	142
〈표 4-1-7〉 박탈영역간 상관계수(Pearson 상관계수)	143
〈표 4-1-8〉 박탈(결핍) 정도	143
〈표 4-1-9〉 생활욕구별 결핍점수 차이 비교	144
〈표 4-1-10〉 박탈중첩 영역수에 따른 (평균 경상소득/기준 중위소득) 비율	145
〈표 4-1-11〉 소득집단별 박탈중첩 비율	145
〈표 4-1-12〉 가구규모별 박탈중첩 영역 수에 따른 (경상소득/기준 중위소득) 비율	146
〈표 4-2-1〉 지역별(3급지) 평균자산 규모	147
〈표 4-2-2〉 평균 총자산 대비 자산항목별 비중	149
〈표 4-2-3〉 가구규모에 따른 지역별(3급지) 평균 총자산 규모	149
〈표 4-2-4〉 가구규모에 따른 지역별(3급지) 자산구성 분포	150
〈표 4-2-5〉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자산 현황	151
〈표 4-2-6〉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현황	152
〈표 4-2-7〉 부채유무	153
〈표 4-2-8〉 평균 부채액 (2021년 데이터)	154
〈표 4-2-9〉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가계부채 현황	154
〈표 4-2-10〉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규모 현황	155
〈표 4-2-11〉 부채형태별 구성 비중 분포	156
〈표 4-2-12〉 가구의 연간이자 부담 현황	157
〈표 4-2-13〉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이자부담 현황	158
〈표 4-2-14〉 가구주 연령대별 이자부담 현황	159
〈표 4-3-1〉 주택유형	161
〈표 4-3-2〉 주택유형(소득재구분)	161
〈표 4-3-3〉 점유형태	163
〈표 4-3-4〉 점유형태(소득재구분)	163
〈표 4-3-5〉 임대주택 유형	165
〈표 4-3-6〉 임대주택유형(소득재구분)	165
〈표 4-3-7〉 평균 방수 및 주택면적	166
〈표 4-3-8〉 평균 방수 및 주택면적(소득재구분)	166

〈표 4-3-9〉 꼭 필요한 주택 및 주거환경	167
〈표 4-3-10〉 꼭 필요한 주택 및 주거환경(소득재구분)	168
〈표 4-3-11〉 구비하고 있는 주택 및 주거환경	169
〈표 4-3-12〉 구비하고 있는 주택 및 주거환경(소득재구분)	170
〈표 4-3-13〉 평균 주택가격 및 임차료	171
〈표 4-3-14〉 평균 주택가격 및 임차료(소득재구분)	172
〈표 4-3-15〉 월평균 총생활비 대비 주거비 수준	173
〈표 4-3-16〉 점유형태별 주거비 구성	174
〈표 4-3-17〉 임대유형별 주거비 구성	175
〈표 4-3-18〉 주거관련 경제적 어려움 경험비율	176
〈표 4-3-19〉 주거관련 경제적 어려움 경험비율(소득재구분)	177
〈표 4-3-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인지 경로	178
〈표 4-3-21〉 비동거 가구 수급 여부	179
〈표 4-3-2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경험	179
〈표 4-3-23〉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1순위)	180
〈표 4-3-24〉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결과	181
〈표 4-3-25〉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후 해결 방법	182
〈표 4-3-26〉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경험	183
〈표 4-3-27〉 주거급여를 수급하게 된 가장 큰 이유(소득재구분)	184
〈표 4-3-28〉 주거급여 수준의 적절성	185
〈표 4-3-29〉 주거급여 수급기간	185
〈표 4-4-1〉 만성질환자 ¹⁾ 가 있는 가구 비율	187
〈표 4-4-2〉 가구유형별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	188
〈표 4-4-3〉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상태	188
〈표 4-4-4〉 건강검진 수검 현황	189
〈표 4-4-5〉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	189
〈표 4-4-6〉 월평균 보건의료비	191
〈표 4-4-7〉 본인부담 외래 및 약국(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192
〈표 4-4-8〉 본인부담 입원진료비(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192
〈표 4-4-9〉 의료비에 대한 가구 부담 수준	193
〈표 4-4-10〉 의료비 총당 방식	194

〈표 4-4-11〉 민간보험 가입가구 비율(가구원 중 최소 1명 이상)	195
〈표 4-4-12〉 민간보험 가입가구 월평균 보험료(가구원 중 최소 1명 이상)	195
〈표 4-4-13〉 의료 및 건강에 대한 욕구(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는 것)	197
〈표 4-4-14〉 의료 및 건강에 대한 욕구(건강을 위해 보약, 영양제 등을 먹는 것)	197
〈표 4-4-15〉 의료 및 건강에 대한 박탈정도(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 는 것)	198
〈표 4-4-16〉 질환에도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	199
〈표 4-4-17〉 2021년 수급자 집단 및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집단 중 소득 감소 가구	200
〈표 4-4-18〉 기준중위소득 30% 초과에서 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집단이 된 가구	200
〈표 4-4-19〉 치료를 포기한 주된 이유	201
〈표 4-4-20〉 부족했던 보건의료비 수준	201
〈표 4-4-21〉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제도 만족도	202
〈표 4-5-1〉 소득계층별 학생이 있는 가구의 비율	205
〈표 4-5-2〉 학생의 소득계층별 분포(개인 단위)	206
〈표 4-5-3〉 교육욕구와 박탈	209
〈표 4-5-4〉 학교급별 한 학기 최소교육비	214
〈표 4-5-5〉 학교급별 한 학기 최소교육비 및 적정교육비 차이	215
〈표 4-5-6〉 학교급별·항목별 교육비 기술통계	216
〈표 4-5-7〉 소득계층별 학교급별·항목별 교육비	217
〈표 4-5-8〉 학교급별 사교육 유형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전체)	219
〈표 4-5-9〉 학교급별·소득구간별 ‘학원수강’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	221
〈표 4-5-10〉 학교급별·소득구간별 ‘방문학습지’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	223
〈표 4-5-11〉 학교급별·소득구간별 ‘개인 및 그룹과외’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	225
〈표 4-5-12〉 학교급별·소득구간별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	227
〈표 4-5-13〉 학교급별·소득구간별 ‘예체능 및 기타’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	229
〈표 4-5-14〉 소득구간별 교육급여 수준에 대한 적절성 인식	231
〈표 4-6-1〉 2021 소득계층별 주로 사용하는 난방 에너지 비율	234
〈표 4-6-2〉 소득계층별·지역별 주된 난방 연료 사용비율	234
〈표 4-6-3〉 집단별, 지역별 연료비와 연료비 부담	236
〈표 4-6-4〉 집단별, 지역별 에너지 과부담 가구 비율 및 정부 지원 내용	237
〈표 4-6-5〉 소득계층별로 응답하는 바람직한 정부지원방식	241



〈표 4-6-6〉 지역별로 응답하는 바람직한 정부지원방식	241
〈표 4-6-7〉 지역별, 소득계층별 난방 관련 배제의 경험	243
〈표 4-6-8〉 지역별, 소득계층별 냉방 관련 배제의 경험	243
〈표 4-6-9〉 주택유형별 난방 관련 배제의 경험	245
〈표 4-6-10〉 점유형태별 난방경험	246
〈표 4-6-11〉 동/하절기 적정수준 대비 에너지 사용량	247
〈표 4-6-12〉 적정수준 에너지 지출액	249
〈표 5-3-1〉 가구원 수별 가구원 분포(2000~2015)	260
〈표 5-3-2〉 최저생계비 계획에서의 표준가구 규모 및 구성의 변화	262
〈표 5-3-3〉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남성가구주 및 여성배우자 최빈 연령	264
〈표 5-3-4〉 평균 초혼연령(인구동태통계연보)	265
〈표 5-3-5〉 2002~2003년 25~29세 모(母)의 동거기간별 출생	266
〈표 5-3-6〉 자녀 출산시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266
〈표 5-3-7〉 모(母)의 출산 당시 출산 순위별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	266
〈표 5-3-8〉 2013년 전문위원회의 표준가구 산정 결과	267
〈표 5-3-9〉 표준가구 구성안	267
〈표 5-3-10〉 급지별 가구분포 및 재산 수준 비교	269
〈표 5-3-11〉 계획년도별 지역별 4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비율 : 과거 지역구분	269
〈표 6-1-1〉 최저 식료품비 조정품목 요약(2020년 대비)	279
〈표 6-1-2〉 표준가구의 최저 식료품비(연구진안)	280
〈표 6-1-3〉 202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안) : 표준가구의 최저 식료품비 합계액	281
〈표 6-1-4〉 이전 최저 식료품비와 비교 : 4인 가구, 광역·창원·세종 및 중소도시 기준	281
〈표 6-2-1〉 4인 가구 가처분소득 하위40% 이하의 지역별·점유형태별 주택유형(4급지 기준)	283
〈표 6-2-2〉 지역 및 임차유형별 주택유형 실태(4인 가구 기준)	283
〈표 6-2-3〉 2023년 4인 가구 최저 주거비 주택유형	284
〈표 6-2-4〉 지역별 43㎡ 이상 53㎡ 이하의 전·월세 아파트 가격1)	285
〈표 6-2-5〉 최저 주거비 조정품목 요약(2020년 중소도시 대비 광역·창원·세종, 전세기준)	289
〈표 6-2-6〉 표준가구의 최저 주거비(전세, 연구진안)	290
〈표 6-2-7〉 표준가구의 최저 주거비(월세, 연구진안)	290
〈표 6-2-8〉 202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안) : 표준가구의 최저 주거비 합계액	291
〈표 6-2-9〉 이전 최저 주거비와 비교 : 4인 가구, 광역·창원·세종 및 중소도시 기준	292

〈표 6-3-1〉 전기요금 추이 (전국 평균 판매 단가 기준, 주택용)	301
〈표 6-3-2〉 2022년 지역별 전기요금 단가	301
〈표 6-3-3〉 지역별 가스요금 단가	302
〈표 6-3-4〉 21.1~23.1월 서울시 주택용 가스요금 현황	302
〈표 6-3-5〉 2023 지역별 상·하수도 요금 단가	303
〈표 6-3-6〉 2022년 4급지 기준 지역별 전기요금 단가	304
〈표 6-3-7〉 지역별 가스요금 단가	305
〈표 6-3-8〉 2023 지역별 상·하수도 요금 단가	306
〈표 6-3-9〉 표준가구의 3급지 기준 최저 광열·수도비(연구진안)	307
〈표 6-3-10〉 표준가구의 4급지 기준 최저 광열·수도비(연구진안)	308
〈표 6-3-11〉 202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안) : 표준가구의 최저 광열·수도비 합계액	309
〈표 6-3-12〉 이전 최저 광열·수도비와 비교 : 4인 가구, 광역·창원·세종 및 중소도시 기준	309
〈표 6-4-1〉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조정품목 요약(2020년 대비)	313
〈표 6-4-2〉 표준가구의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연구진안)	313
〈표 6-4-3〉 표준가구의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연구진안)	314
〈표 6-4-4〉 202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안) : 표준가구의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합계액	314
〈표 6-4-5〉 이전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와 비교 : 4인 가구, 광역·창원·세종 및 중소도시 기준	315
〈표 6-5-1〉 2020년 피복·신발비 신규품목 마켓 바스켓	318
〈표 6-5-2〉 최저 피복·신발비 조정품목 요약(2020년 대비)	319
〈표 6-5-3〉 표준가구의 최저 피복·신발비(연구진안)	319
〈표 6-5-4〉 202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안) : 표준가구의 최저 피복·신발비 합계액	320
〈표 6-5-5〉 이전 최저 피복·신발비와 비교 : 4인 가구, 광역·창원·세종 및 중소도시 기준	320
〈표 6-6-1〉 최저 보건·의료비 조정품목 요약(2020년 대비)	328
〈표 6-6-2〉 표준가구의 최저 보건·의료비(연구진안)	328
〈표 6-6-3〉 202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안) : 표준가구의 최저 보건·의료비 합계액	329
〈표 6-6-4〉 이전 보건·의료비와 비교 : 4인 가구, 광역·창원·세종 및 중소도시 기준	329
〈표 6-7-1〉 표준가구 기준 최저 교육비 품목조정 요약(2020년 대비)	333
〈표 6-7-2〉 표준가구의 최저 교육비(연구진안)	334
〈표 6-7-3〉 202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안) : 표준가구의 최저 교육비 합계액	335
〈표 6-7-4〉 이전 교육비와 비교 : 4인 가구, 광역·창원·세종 및 중소도시 기준	335
〈표 6-8-1〉 2021년 국내여행 경험 현황	337

〈표 6-8-2〉 공무원 여비규정 국내 여비 지급표	338
〈표 6-8-3〉 가족여행 마켓 바스켓	338
〈표 6-8-4〉 최저 교양·오락비 조정 품목 요약(2020년 대비)	339
〈표 6-8-5〉 표준가구의 최저 교양·오락비(연구진안)	339
〈표 6-8-6〉 202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안) : 표준가구의 최저 교양·오락비 합계액	340
〈표 6-8-7〉 이전 교양·오락비와 비교 : 4인 가구, 광역·창원·세종 및 중소도시 기준	340
〈표 6-9-1〉 2021년 스마트폰 보유 여부	343
〈표 6-9-2〉 최저 교통·통신비 조정품목 요약(2020년 대비)	344
〈표 6-9-3〉 표준가구의 최저 교통·통신비(연구진안)	344
〈표 6-9-4〉 202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안) : 표준가구의 최저 교통·통신비 합계액	345
〈표 6-9-5〉 이전 최저 교통·통신비와 비교 : 4인 가구, 광역·창원·세종 및 중소도시 기준	345
〈표 6-10-1〉 최저 기타소비지출 이미용서비스 관련 품목 가격결정	348
〈표 6-10-2〉 최저 기타소비지출 조정품목 요약(2020년 대비)	349
〈표 6-10-3〉 표준가구의 최저 기타소비지출(연구진안)	349
〈표 6-10-4〉 202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안) : 표준가구의 최저 기타소비지출 합계액	350
〈표 6-10-5〉 이전 기타소비지출과 비교 : 4인 가구, 광역·창원·세종 및 중소도시 기준	350
〈표 6-11-1〉 최저 비소비지출 조정품목 요약(2017년 대비)	354
〈표 6-11-2〉 표준가구의 최저 비소비지출(연구진안)	354
〈표 6-11-3〉 202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안) : 표준가구의 최저 비소비지출 합계액	355
〈표 6-11-4〉 이전 비소비지출과 비교 : 4인 가구, 광역·창원·세종 및 중소도시 기준	355
〈표 6-12-1〉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 연구진안과 비교안	357
〈표 6-12-2〉 2020년 대비 2023년 비교안의 최저생계비 비목별 증가율(중소도시 4인가구 기준)	358
〈표 6-12-3〉 2023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359
〈표 7-1-1〉 영역별 박탈문항과 필요여부 응답비율	364
〈표 7-1-2〉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박탈 경험 비율	365
〈표 7-1-3〉 가구유형별 박탈점수 분포	367
〈표 7-1-4〉 가구유형별·박탈영역별 소득구분 지점	371
〈표 7-1-5〉 가구유형별 소득구분 지점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371
〈표 7-1-6〉 소득구분 지점1)에 따른 박탈점수 비교(전체 영역)	373
〈표 7-2-1〉 자료원별 소득분위별 가구규모	375
〈표 7-2-2〉 Orshansky 모형에 의한 2020년 최저생계비	376

〈표 7-2-3〉 식료품비 비율 모형에 의한 2023년 최저생계비	378
〈표 7-3-1〉 주관적 최저생계비 모수추정치(모형1: 건강하고 문화적)	381
〈표 7-3-2〉 주관적 최저생계비 모수추정치(모형2: 그럭저럭)	382
〈표 7-3-3〉 주관적 최저생계비 모수추정치(모형3: 근근이)	382
〈표 7-3-4〉 가구규모별 주관적 최저생계비	383
〈표 8-1-1〉 65세 이상 등록장애인구 및 전체 인구대비 비중 추이	396
〈표 8-1-2〉 장애인 가구 및 장애인의 비율	397
〈표 8-1-3〉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가구원 수	397
〈표 8-1-4〉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유형별 연소득	398
〈표 8-1-5〉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재산	399
〈표 8-1-6〉 최저생계비 주요 항목별 장애가구와 비장애가구의 월 평균 지출 비교	400
〈표 8-1-7〉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주거 유형	401
〈표 8-1-8〉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주거 점유형태	402
〈표 8-1-9〉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방수, 주택면적, 주택가격, 월세액	402
〈표 8-1-10〉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주관적 최저생계비	404
〈표 8-1-11〉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의료비 부담	405
〈표 8-1-12〉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미충족 의료	406
〈표 8-1-13〉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저축	407
〈표 8-1-14〉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407
〈표 8-1-15〉 장애인의 장애범주별 분포	409
〈표 8-1-16〉 추가비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411
〈표 8-1-17〉 장애범주별 일상생활 도움 필요	412
〈표 8-1-18〉 장애범주별 필수비목	413
〈표 8-1-19〉 장애범주별 월평균 교통비	414
〈표 8-1-20〉 교통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교통비	415
〈표 8-1-21〉 장애범주별 평균 의료비	416
〈표 8-1-22〉 의료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의료비	417
〈표 8-1-23〉 장애범주별 평균 휴대폰비	418
〈표 8-1-24〉 통신 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 휴대폰비	419
〈표 8-1-25〉 장애범주별 교육비 평균	419
〈표 8-1-26〉 교육 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교육비	419



〈표 8-1-27〉 장애범주별 평균 보호·간병비	420
〈표 8-1-28〉 보호·간병 욕구 따른 장애범주 및 추가 보호·간병비	421
〈표 8-1-29〉 장애범주별 평균 보장구비	421
〈표 8-1-30〉 보장구 욕구에 따른 장애범주 및 평균 보장구비	422
〈표 8-1-31〉 재활기관이용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재활기관 이용료	422
〈표 8-1-32〉 재활기관이용 욕구에 따른 장애범주 및 평균 이용료	423
〈표 8-1-33〉 장애범주별 주거수리비 평균	424
〈표 8-1-34〉 주거수리 욕구별 평균 주거수리비	424
〈표 8-1-35〉 장애범주별 1인당 추가 비용	425
〈표 8-2-1〉 진료비 현황	432
〈표 8-2-2〉 성인균등화지수(AES) 모형별 주요 내용	433
〈표 8-2-3〉 모형별 연령별 성인균등화 지수 비교	434
〈표 8-2-4〉 2023년 표준가구 구성	435
〈표 8-2-5〉 성인균등화 지수 근거 노인최저생계비와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비교: 1인	436
〈표 8-2-6〉 노인 가구의 노인용 품목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과 보유율	439
〈표 8-2-7〉 노인 가구의 노인용 기타품목 필수품 인식률과 이용률	440
〈표 8-2-8〉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품목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과 이용률	441
〈표 8-2-9〉 노인 1인당 추가비용 구성(안)	441
〈표 8-2-10〉 2020년 노인 1인당 추가비용 :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노인대상	444
〈표 8-2-11〉 2023년 노인 1인당 추가비용: 전체 노인 대상	445
〈표 8-2-12〉 2023년 노인 가구의 추가 현금급여	446
〈표 8-3-1〉 한부모 표준가구 구성	450
〈표 8-3-2〉 한부모가구 추가비용 계측	450
〈표 8-3-3〉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452
〈표 8-3-4〉 한부모가구 지원 정책 주요 내용	453
〈표 8-3-5〉 2023년 한부모가족 주요 지원 급여	454
〈표 8-3-6〉 하위 40%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의 지출 차이 항목	458
〈표 8-3-7〉 한부모가구이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항목	459
〈표 8-3-8〉 한부모 표준가구 구성	460
〈표 8-3-9〉 식료품비 추가, 감소 비용 계측	462
〈표 8-3-10〉 피복신발비 추가 비용 계측	462

〈표 8-3-11〉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추가 비용 계측	463
〈표 8-3-12〉 교육비 추가 비용 계측	464
〈표 8-3-13〉 교통통신비 추가 비용 계측	464
〈표 8-3-14〉 한부모가구 최저생계비 추가 비용(3인 가구 기준, 연구진(안))	464
〈표 8-3-15〉 2013, 2017, 2020년 한부모가구 최저생계비 추가 비용(연구진(안))	466
〈표 10-1-1〉 비수급빈곤층 변화	484
〈표 10-2-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경로	486
〈표 10-2-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탈락 이유	487
〈표 10-2-3〉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탈락 이후 생계 해결 방법	488
〈표 10-1-2〉 기초보장급여 미신청 이유	489
〈표 10-2-4〉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게 된 가장 큰 이유	490
〈표 10-2-5〉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 적절성	490
〈표 10-2-6〉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탈피하게 된 가장 큰 이유	491
〈표 10-2-7〉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감소효과	492
〈표 10-2-8〉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빈곤갭 감소효과	494
〈표 10-2-9〉 귀 댁은 추가 국민지원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494
〈표 10-2-10〉 추가 국민지원금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 정도	495
〈표 11-1-1〉 급지별 가구분포 및 재산 수준 비교	501
〈표 11-1-2〉 전물량 방식에 의한 지역별 비목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502
〈표 11-1-3〉 표준가구 변동에 의한 전물량 방식 지역별 비목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503
〈표 11-1-4〉 삶의 질 개선에 의한 전물량 방식 지역별 비목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504
〈표 11-1-5〉 2020년 대비 최저생계비 비목별 증가율	504
〈표 11-1-6〉 2023년 물가상승률 적용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안)	505
〈표 11-1-7〉 2023년 4인 가구 기준 타법지원액	506
〈표 11-1-8〉 생계급여 적정성 판정	508
〈표 11-1-9〉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안) 비교 (4인가구)	509
〈표 11-1-10〉 2023년 최저보장수준 적정성 판정	510
〈표 11-2-1〉 2021년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선	516
〈표 12-1-1〉 빈곤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50%)	529
〈표 12-1-2〉 빈곤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40%)	530
〈표 12-1-3〉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50%)	531

〈표 12-1-4〉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40%)	532
〈표 12-1-5〉 생계급여의 빈곤 감소 효율성(빈곤선: 생계급여 선정기준선)	535
〈표 12-1-6〉 생계급여의 수직적 지출 효율성 분해(빈곤선: 생계급여 선정기준선)	536
〈표 12-1-7〉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빈곤 감소 효율성(빈곤선: 주거급여 선정기준선)	538
〈표 12-1-8〉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수직적 지출 효율성 분해(빈곤선: 주거급여 선정기준선)	538
〈표 12-1-9〉 총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빈곤 감소 효율성(빈곤선: 교육급여 선정기준선)	539
〈표 12-1-10〉 총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직적 지출 효율성 분해(빈곤선: 교육급여 선정기준선)	539
〈표 12-2-1〉 가구원수별 빈곤율과 수급률	543
〈표 12-2-2〉 가구유형별 빈곤율과 수급률	544
〈표 12-2-3〉 가구원수별 포괄성	545
〈표 12-2-4〉 가구유형별 포괄성	546
〈표 12-2-5〉 계측년도별 지역별 최저생계비(4인 가구)와 차이	547
〈표 12-2-6〉 계측년도별 지역별 주거비 수준(4인 가구)	548
〈표 12-2-7〉 3개 권역별 가구규모별 생활수준(총생활비)	549
〈표 12-2-8〉 4개 권역별 가구규모별 생활수준(총생활비)	550
〈표 12-2-9〉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와 추가비용	551
〈표 12-2-10〉 2021년 가구유형별·가구규모별 생활수준(총생활비)	553
〈표 12-2-11〉 2021년 가구유형별 생활수준(총생활비)	553
〈표 12-3-1〉 지니계수: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적용	554
〈표 12-3-2〉 지니계수: 경상소득 기준, 공적연금제외, 기초연금제외, 국기초제외	555
〈표 12-3-3〉 소득원천별 소득불평등 기여도: 영점 샤프리값 분해	557
〈표 12-3-4〉 소득원천별 소득불평등 기여도: 평균 샤프리값 분해	558
〈표 12-4-1〉 변수의 정의와 측정	562
〈표 12-4-2〉 궤적 집단 개수별 BIC값	565
〈표 12-4-3〉 탈수급 궤적별 인구사회적 속성: 수급지위 측정 1	568
〈표 12-4-4〉 탈수급 궤적별 인구사회적 속성: 수급지위 측정 2	569
〈표 12-4-5〉 탈수급 궤적별 고용지위 및 노동소득: 수급지위 측정 1	570
〈표 12-4-6〉 탈수급 궤적별 개인 고용지위 및 노동소득: 수급지위 측정 2	571
〈표 12-4-7〉 탈수급 궤적별 제도 경험: 수급지위 측정 1	572
〈표 12-4-8〉 탈수급 궤적별 제도 경험: 수급지위 측정 2	573
〈표 12-4-9〉 탈수급 궤적별 가구 속성: 수급지위 측정 1	574



〈표 12-4-10〉 탈수급 계적별 가구 속성: 수급지위 측정 2	575
〈표 12-4-11〉 탈수급 계적별 지출 요인: 수급지위 측정 1	576
〈표 12-4-12〉 탈수급 계적별 지출 요인: 수급지위 측정 2	576
〈표 12-4-13〉 계적 집단별 빈곤심도와 공적이전소득	579
〈표 12-4-14〉 계적 집단별 주거바의료비 비율, 만성질환, 가구 내 학생 수	583
〈표 12-4-15〉 계적 집단별 고용지위, 개인노동소득,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585
〈표 12-4-16〉 계적 집단별 가구 속성	588
〈표 13-1-1〉 의료급여 제도 변화 개요	596
〈표 13-1-2〉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599
〈표 13-1-3〉 의료급여 종별 수급권자 수 변화추이(2011-2021)	602
〈표 13-1-4〉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본인부담	604
〈표 13-1-5〉 월평균 보건의료비	605
〈표 13-1-6〉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제도 만족도	608
〈표 13-2-1〉 의료급여기금의 국고보조비율	610
〈표 13-2-2〉 연도별 총 진료비	611
〈표 13-2-3〉 연도별 진료실인원 1인당 진료비	612
〈표 13-2-4〉 연도별 진료실인원 1인당 입원일수	614
〈표 14-1-1〉 1인 가구 표본 사례 수	621
〈표 14-1-2〉 1인 가구 빈곤율(빈곤선: 기준중위소득 50%)	622
〈표 14-1-3〉 1인 가구 빈곤율(빈곤선: 기준중위소득 40%)	623
〈표 14-1-4〉 1인 가구 빈곤갭비율(빈곤선: 기준중위소득 50%)	624
〈표 14-1-5〉 1인 가구 빈곤갭비율(빈곤선: 기준중위소득 40%)	625
〈표 14-2-1〉 1인 가구 심층조사 표본 사례 수	626
〈표 14-2-2〉 일상생활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지 여부	627
〈표 14-2-3〉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627
〈표 14-2-4〉 일상생활을 하는 데 주로 도와주는 사람	628
〈표 14-2-5〉 이용하거나 도움을 받고 있는 돌봄의 정도	629
〈표 14-2-6〉 일상생활 돌봄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	629
〈표 14-2-7〉 혼자 생활하면서 곤란하거나 힘들었던 정도	630
〈표 14-2-8〉 혼자 생활하면서 곤란하거나 힘들었는지 여부	631
〈표 14-2-9〉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632

〈표 14-2-10〉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633
〈표 14-2-11〉 1인 가구에 가장 필요한 정책 분야	634
〈표 14-3-1〉 주요 가구균등화지수	635
〈표 14-3-2〉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안) 비교 (1인 가구)	637
〈표 14-3-3〉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안) 비교 (2인 가구)	638
〈표 15-1-1〉 2023년 최저생계비(연구진안, 비교안)와 2020년 연구진안 비교	645
〈부표 1-1-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664
〈부표 1-1-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계속)	666
〈부표 1-1-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계속)	668
〈부표 1-1-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계속)	670
〈부표 1-1-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계속)	672
〈부표 1-1-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계속)	674
〈부표 1-1-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계속)	676
〈부표 1-2-1〉 최저 주거비 마켓 바스켓(전세인 경우, 4급지 기준)	678
〈부표 1-2-2〉 최저 주거비 마켓 바스켓(전세인 경우, 3급지 기준)	680
〈부표 1-2-3〉 최저 주거비 마켓 바스켓(월세인 경우, 4급지 기준)	682
〈부표 1-2-4〉 최저 주거비 마켓 바스켓(월세인 경우, 3급지 기준)	684
〈부표 1-3-1〉 최저 광열·수도비 마켓 바스켓(4급지 기준)	686
〈부표 1-3-2〉 최저 광열·수도비 마켓 바스켓(3급지 기준)	688
〈부표 1-4-1〉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4급지 기준)	690
〈부표 1-4-1〉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4급지 기준)(계속)	692
〈부표 1-4-1〉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4급지 기준)(계속)	694
〈부표 1-4-2〉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3급지 기준)	696
〈부표 1-4-2〉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3급지 기준)(계속)	698
〈부표 1-4-2〉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3급지 기준)(계속)	700
〈부표 1-5-1〉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3,4급지 공통)	702
〈부표 1-5-1〉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3,4급지 공통)(계속)	704
〈부표 1-5-1〉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3,4급지 공통)(계속)	706
〈부표 1-5-1〉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3,4급지 공통)(계속)	708
〈부표 1-6-1〉 최저 보건의료비 마켓 바스켓	710



〈부표 1-7-1〉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	712
〈부표 1-7-1〉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계속)	714
〈부표 1-8-1〉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	716
〈부표 1-9-1〉 최저 교통·통신비 마켓 바스켓	718
〈부표 1-10-1〉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 바스켓(3,4급지 공통)	720
〈부표 1-11-1〉 최저 비소비지출 마켓 바스켓(4급지 기준)	722
〈부표 1-11-2〉 최저 비소비지출 마켓 바스켓(3급지 기준)	724
〈부표 2-1〉 17개 시도 및 가구원 수별 가구 수	727
〈부표 2-2〉 17개 시도별 인구, 가구 및 주택	727
〈부표 2-3〉 17개 시도 및 조사구 특성에 따른 조사구 수	728
〈부표 2-4〉 17개 시도 및 조사구 특성에 따른 가구 수	729
〈부표 2-5〉 17개 시도 및 지역특성(동부, 읍면부)에 따른 가구 수	730
〈부표 2-6〉 분류지표	731
〈부표 2-7〉 2차 분류지표(노인가구비율)의 다섯 수치 요약(음영 표시된 칸은 구분점임)	732
〈부표 2-8〉 지역구분별 주요항목 CV값	732
〈부표 2-9〉 지역구분별 [가구총소득]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733
〈부표 2-10〉 2018, 2021 CV값	733
〈부표 2-11〉 17개 시도별 예상 목표 상대표준오차 현황	734
〈부표 2-12〉 17개 시도 및 조사구 특성별 표본배분 결과 현황(표본)	735
〈부표 4-1-1〉 2019-2023년 사회적 배제와 빈곤 예방을 위한 국가 전략	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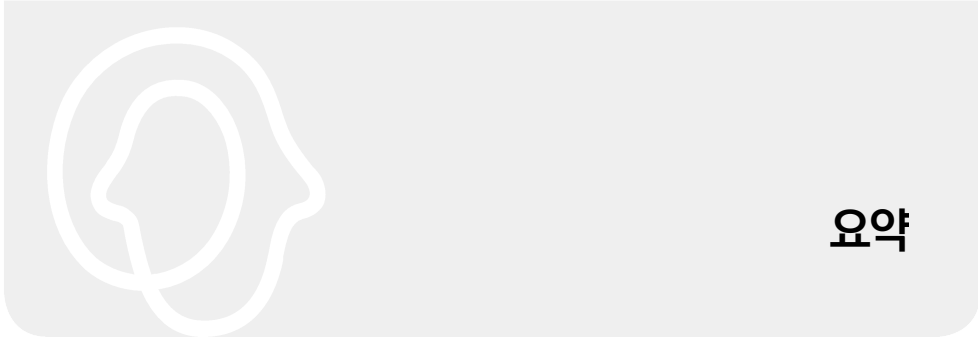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2-4-1] 스페인 및 주요 EU 국가 지니 계수 변화 (2011-2019)	85
[그림 2-4-2] 스페인 연령대별 실업률 및 GDP 변화 (2000-2022)	91
[그림 3-2-1] 분석 집단 구분	116
[그림 4-3-1] 주택유형(생계·의료 수급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 전체)	162
[그림 4-3-2] 점유형태(생계·의료 수급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 전체)	164
[그림 4-3-3] 평균 주택가격 및 임차료(생계·의료 수급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 전체)	172
[그림 4-5-1] 4가지 교육유형과 교육박탈 상황 및 유형	207
[그림 4-5-2] 교육급여 수급 이유	210
[그림 4-5-3] 교육급여 탈피 이유	211
[그림 4-5-4] 지속수급 희망 급여	212
[그림 4-5-5] 학교급별 사교육 유형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전체)	220
[그림 4-5-6] 학교급별·소득구간별 '학원수강'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	221
[그림 4-5-7] 학교급별·소득구간별 '방문학습지'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	223
[그림 4-5-8] 학교급별·소득구간별 '개인 및 그룹과외'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	225
[그림 4-5-9] 학교급별·소득구간별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	227
[그림 4-5-10] 학교급별·소득구간별 '예체능 및 기타'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	229
[그림 4-5-11] 전체 교육급여 수준에 대한 적절성 인식	230
[그림 4-5-12] 소득구간별 교육급여 수준에 대한 적절성 인식(%)	231
[그림 4-6-1] 경상소득 대비 에너지비 지출 비율이 10%를 넘는 가구의 비율	238
[그림 4-6-2] 경상소득 대비 에너지비 지출 비율이 20%를 넘는 가구의 비율	239
[그림 4-6-3] 지역별, 소득 수준별 적정수준 대비 에너지 사용량	248
[그림 5-1-1] 최저생계비 계측 흐름도	255
[그림 6-3-1] 연도별 가구 및 1인 평균 소비량 변화	294
[그림 6-3-2] 농어촌 4인 가구 난방·취사용 에너지원 비율	296
[그림 6-3-3] 연도별 4인 가구 기준 에너지 소비량 변화	298
[그림 7-1-1] 가구유형별 소득기준선에 따른 Lambda값 분포(전체 영역)	368
[그림 7-1-2] 가구유형별 박탈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372
[그림 7-3-1] 라이덴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추정	380
[그림 8-1-1] 등록장애인구 및 전체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중 추이(2004~2022)	394
[그림 8-1-2] 연령대별 등록장애인구 및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중	395
[그림 8-1-3]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비중	396

[그림 8-3-1] 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	449
[그림 8-3-2] 2021-2023 한부모가족 급여지원 소득 기준 및 주요 급여액의 변화	455
[그림 8-3-3] 2021년 한국과 주요 OECD 회원국의 가구 유형별 생계급여의 가구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중 위소득 대비 비율	457
[그림 8-3-4] 2013, 2017, 2020년 한부모가구 최저생계비 추가 비용(연구진(안))	466
[그림 10-1-1] 2021년 기준 소득계층별 규모추정(기준중위소득 기준)	482
[그림 10-1-2] 2018년 기준 소득계층별 규모추정(기준중위소득 기준)	483
[그림 11-2-1] 노인 단독가구의 영역별 박탈 기준선과 급여별 선정기준선 비교	517
[그림 11-2-2] 청년 단독가구의 영역별 박탈 기준선과 급여별 선정기준선 비교	518
[그림 11-2-3] 중장년 단독가구의 영역별 박탈 기준선과 급여별 선정기준선 비교	519
[그림 11-2-4] 2인가구(노인부부가구)의 영역별 박탈 기준선과 급여별 선정기준선 비교	520
[그림 11-2-5] 2인가구(성인부부가구)의 영역별 박탈 기준선과 급여별 선정기준선 비교	520
[그림 11-2-6] 2인 한부모가구(한부모+자녀1)의 영역별 박탈 기준선과 급여별 선정기준선 비교	521
[그림 11-2-7] 3인가구(부모+자녀1)의 영역별 박탈 기준선과 급여별 선정기준선 비교	522
[그림 11-2-8] 4인 표준가구의 영역별 박탈 기준선과 급여별 선정기준선 비교	523
[그림 12-1-1] Beckerman의 빈곤 감소 효율성 모델	533
[그림 12-4-1] 탈수급 궤적: 수급지위 측정 1	566
[그림 12-4-2] 탈수급 궤적: 수급지위 측정 2	567
[그림 12-4-3] 궤적 집단별 빈곤심도와 공적이전소득	578
[그림 12-4-4] 궤적 집단별 지출 요인	581
[그림 12-4-5] 궤적 집단별 근로 요인	584
[그림 12-4-6] 궤적 집단별 가구 요인	587
[그림 13-1-1]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 및 수급률 추이	600
[그림 13-1-2] 의료비에 대한 가구 부담 수준	606
[그림 13-1-3]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박탈: 이가 아플 때 치과에 가는 것	607
[그림 13-1-4] 수급가구(생계급여)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받고 싶은 급여	609
[그림 13-2-1] 의료급여의 진료유형별(입원/외래/약국) 비중(2021)	613
[그림 13-2-2] 진료행태별(입원, 외래, 약국) 진료비 추이(2005-2021)	613
[그림 15-1-1] 비수급빈곤층 변화	646
[그림 15-1-2] 생계급여 적정성 평가	647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이자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도입 당시 최저생계비가 급여 선정 및 지급 수준의 기준으로 적용되었으며, 급여는 통합급여 형태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2015년 7월부터는 개별급여 형태인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급여선정의 기준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변경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대적 방식으로 결정되는 현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최저생계비와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고 맞춤형 급여로 전환된 이후 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2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 및 실태파악을 통해 제도의 포괄성을 평가하고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제도개선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데 있다.

본 보고서는 실태조사 및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와 그 결과를 활용한 분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빈곤층 실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저생계비 계측 및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와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를 활용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주요 결과

먼저, 실태조사를 통한 빈곤층 실태분석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수급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20명으로 전체가구(2.29명)의 약 절반 수준이고, 1인 가구의 비중도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32.8%)에 비해 수급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86.0%)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비수급빈곤층 가구의 경우에서도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68.3%로 다른 규모의 가구에 비해 매우 높았다. 한편, 1인가구,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정 및 조손가구 등 다른 유형의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들이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였지만, 수급가구에서는 그 비중이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가구에 비하여 수급가구의 노인가구 비율이 11.6%포인트 더 높으며, 장애인가구 비율의 비율은 3.6배에 달한

정도로 높지만, 아동가구는 그 비율이 약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가구는 노인가구 비율이 55.7%로 전체가구(28.7%)에 비해 약 2배 높게 나타났고 가구주가 비경제활동 인구인 경우는 수급가구는 전체가구 대비 약 3.7배에 달하였고,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는 3.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주요 욕구별 실태를 살펴보면, 의료, 자녀교육 영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수급가구의 결핍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빈곤층이 수급집단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절대적 박탈 경험(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비율) 비율은 중위소득 30% 이하 빈곤층이 수급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의료 욕구와 관련해서는 최근 1년간 의료비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전체가구 28.1%,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비수급빈곤층 집단에서는 50%대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수급가구는 25.4%로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욕구와 관련해서는 수급가구의 경우 주거점유형태에서 보충부 월세의 비중(72.7%)이 가장 크고, 주택가격과 전세금과 같은 주거자산은 전체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욕구와 관련해서 수급가구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에 초·중·고생이 있는 비율은 각각 4.2%, 6.1%이며, 대학생이 있는 비율은 각각 1.3%,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원수강·과외 욕구와 참고서나 도서 구입의 경우 박탈이 수급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3년 최저생계비를 다양한 방법으로 계측하였다. 전물량 방식으로 계측한 최저생계비는 연구진안과 비교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연구진안은 현행 지역구분(4개 급지)에 따라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의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되, 그중 중위소득 및 급여적정성 비교의 기준으로 '광역·세종·창원'의 4인 표준가구를 적용하였다. 한편, 비교안은 과거 지역구분의 기준이었던 3개 급지를 적용한 계측 값을, 현행 4개 급지 계측 값인 연구진안의 비교 용도로 계측하였다. 현행 지역구분(4급지)을 적용한 2023년 최저생계비 연구진안은 서울 2,736,294원, 경기 2,593,239원, 광역/세종/창원 2,429,672원, 그 외 지역 2,280,843원으로 계측되었다. 한편, 급지를 2020년과 동일하게 3급지로 유지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대도시 2,529,148원, 중소도시 2,386,525원, 농어촌 2,209,798원으로 계측되었다. 한편, 202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률만 반영하여 계측한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총물가지수를 반영한 경우 2,347,963원, 항목별

로 물가지수를 반영한 경우 2,388,843원으로 나타나, 두 결과 값 모두 앞서 언급한 연구진안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급여적정성 평가의 기준으로 지역구분을 광역/세종/창원을 적용한 4인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429,672원으로 산출되었는데, 이는 시계열적 비교의 연속성 차원에서 과거 3급지 지역구분에서 급여적정성의 기준으로 적용된 중소도시의 최저생계비인 2,386,525원 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지역구분의 변경으로 인해 2023년 연구진안과 2020년 연구진안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어, 2023년 비교안과 2020년 연구진안을 비교한 결과 2023년의 경우 2020년보다 최저생계비가 약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제의 평가를 대상자 포괄성, 급여의 적정성, 급여효과 및 효율성 측면에서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자 포괄성 측면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집단과 비수급빈곤층(차상위포함)의 합으로, 2018년 272만명 대비 2021년 291만명으로 나타나, 그 규모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급빈곤층은 감소하였지만 수급자가 대폭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018년 140만명(93만가구)에서 2021년 166만명(118만가구)로 증가하였으며, 시설 수급자와 다른 급여 수급자까지 포함한 기초생활보장 총수급자는 2018년 174만명에서 2021년 236만명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비수급빈곤층 규모를 살펴보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는 2018년(73만명) 대비 7만명 감소한 66만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까지 범위를 확대한 경우 비수급빈곤층은 2018년(132만명) 대비 6만명 감소한 125만명으로 나타났다.

급여의 적정성은 계측된 2023년 최저생계비에서 타법지원액을 제외한 현금급여기준선과 2023년 현행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평가할 수 있다. 4인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현행 4급지의 지역구분 중 광역/세종/창원인 경우의 최저생계비와 과거 3급지 유지시 중소도시의 최저생계비에서 2023년 기준 타법지원액을 제외한 최저생계비를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0%인 1,620,289원과 비교하고 있다. 비교결과 연구진안(광역/세종/창원)은 현행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의 30%보다 127,462원 (7.9%↓) 적은 것으로, 비교안(중소도시)은 135,732원 (8.4%↓)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진안과 비교안 모두에서 현재 생계급여 기준선보다 낮은 것으로 볼 때 현행 급여수준을 적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빈곤율 및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가구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적용시)로 측정할 기

초생활보장 급여의 효과성은 각각 8.4%와 26.5%로 나타나, 2018년에 비해 각각 약 2.50%p, 2.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 감소효과를 가구규모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의 빈곤율 감소효과가 다른 규모의 가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인 가구의 경우 빈곤율 감소효과가 1인가구, 4인가구 대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향후 과제

제3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생계급여 기준선의 상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준비와 대응(근로 및 사업소득의 추가공제 확대,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 강화, 근로장려금과의 연계 제고 등 탈수급 및 노동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이 필요하며, 둘째, 비수급빈곤층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가구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선정기준의 다양화 또는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며, 넷째, 인구 및 가구 형태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급여적정성 평가를 위한 표준가구의 재설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탈수급 촉진을 위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다양화와 지원수준 제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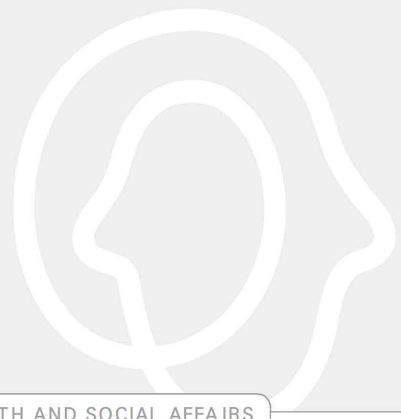
이러한 연구 방향과 함께,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다 효과적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조사수행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으며, 둘째, 빈곤층 및 비수급 빈곤층 규모 추정 등에 있어 제도적 측면과 실제 정책효과성 측면의 괴리를 좁힐 필요가 있다. 셋째, 코로나19의 영향을 본 연구 및 실태조사의 연속성 제고의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를 통한 비교분석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며, 넷째, 통계자료원 변경 및 연구의 연속성 차원에서 수행하지 못한 분석(필수품 선정 관련 소득탄력성 측정 등)의 경우 향후 연구에서 자료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대상자 포괄성, 급여 적정성, 1인 가구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의 목적이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등에 대한 보호”와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의 향상”이었다면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²⁾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에게도 급여가 제공되는 등 적용범위가 확대되었고,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제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생활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³⁾을 의미하며, 이러한 최저생계비를 계측 및 결정을 통해 최저생활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도입이후 통합급여의 형태로 지급되어 오다가 2015년 7월부터 개별급여 형태인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기까지 약 15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과 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개념에 근거하였다. 최저생계비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이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3항)에 의거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계측연구가 수행되어 왔었다(김문길 외, 2020, p.8).

처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의 주기가 5년

1) 생활보호법[시행 1962. 1. 1.] [법률 제913호, 1961. 12. 30., 제정], 제1조를 발체 및 참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00. 10. 1.] [법률 제6024호, 1999. 9. 7., 제정], 제1조 발체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00. 10. 1.] [법률 제6024호, 1999. 9. 7., 제정], 제2조 6 발체

이었지만, 2004년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3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주기가 단축되었다.⁴⁾ 이러한 계측조사와 계측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되기 전까지 총 5차례(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수행되었다. 최저생계비의 계측은 전물량 방식, 반물량 방식, 주관적 방식, 박탈지표 방식에 의해 모두 계측되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으로는 전물량 방식으로 계측된 최저생계비가 활용되었다.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란 생활에 필요한 전 소비물자(서비스 포함)를 모두 물량으로 표시하여 그 필요한 물자의 구입가격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한 값으로, 마켓 바스켓(market basket) 방식 최저생계비라고도 한다. 이러한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해서는 필수품목의 선정과 해당 품목에 대한 단가(가격), 내구연수, 사용량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산출한 최저생계비 계측안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친 후 공표되었다(김문길 외, 2020, p.9).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 및 급여 수준 책정을 위한 최저생계비 계측 연구와 별도로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 2005년부터 3년 또는 4년 주기로 총 4차례 연구(2005년, 2008년, 2011년, 2015년)가 수행되었다. 해당 연구는 복지욕구 실태조사의 형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층 및 차상위계층의 규모를 추정하고, 소득계층별·욕구별 생활실태와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욕구는 크게 생계, 근로, 의료, 주거, 아동양육, 교육, 가계금융, 에너지, 여가 및 문화 등으로 구분되어 검토되어졌다(김문길 외, 2020, pp.9-10.)

이렇게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와 차상위계층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 복지욕구 실태조사는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일부개정)을 통해 통째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⁵⁾ 맞춤형 급여 즉 개별급여로의 전환으로 인해 통합급여로 지급되던 급여들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분리되어 지급되었고 선정기준선이자 급여의 기준선으로 활용되었던 최저생계비 대신 상대적 방식인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 급여기준선으로 활용되었다. 제도 개편 이전에는 최저생계비에서 타법 지원액을 차감하여 현금급여기준선을 산출하였지만, 제도 개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04. 3. 5] [법률 제7181호, 2004. 3. 5, 일부개정] 제6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00. 10. 1.] [법률 제6024호] 제6조를 참조하여 작성

5) 이하 내용은 김문길 외(2020) 및 김태완 외(2017)의 제1장 중 '연구의 필요성' 내용을 인용·수정하였음

편 이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 각 급여의 기준선이 되었고 이중 생계급여의 경우 30%가 적용되었다.⁶⁾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정책적 빈곤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최저생계비가 더 이상 활용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법 개정 당시 상대적 빈곤선 도입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의 개념을 존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최저생계비가 가지고 있던 상징성과 함께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의 변동성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도 최저생계비의 계측은 유지되게 되었다. 개정 법 제20조의2는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제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할 것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6조2항은 해당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⁷⁾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계획을 수립하여 ----. ② ---- 4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 ③ --- 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2.30.)

〈부칙 6조2항〉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도 개편에 따라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으로 대체되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로 활용되게 되면서 관련 조사(국민생활실태조사)와 연구 역시 존치되었다. 다만, 복지욕구 실태조사와의 중복성이 지적되어 왔던 것을 고려하여 두 개의 국가통계를 하나의 국가통계로 변경하면서, 두 개의 연구가 하나의 연구로 통합

6)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으로 2015년(7월~12월)은 기준중위소득의 28%를, 2016년은 기준중위소득의 29%를, 2017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의 30%를 적용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20조의2, 부칙6조2항 발체

되었다(통계청 통계변경 승인, '16년 9월). 이후 2017년 첫 번째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는 두 조사의 통합 이후 세 번째로 수행되는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 두 가지 연구의 목적을 공유하는 김태완 외(2017)와 김문길 외(2020)의 연구와 동일한 배경을 가진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수행되는 연구로서, 기 수행되었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와 복지욕구 실태조사 연구의 주요한 연구목적에 공유하는 것과 더불어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에 따른 제도 평가 등의 연구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주요 변화(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변화 등)와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가 해당 제도 및 수급집단(또는 차상위계층)에 미친 영향과 향후 제도 발전을 고려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을 포괄하는 연구이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수행을 연구의 핵심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주요 목적을 세 부분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등을 포함한 전국민 대상의 실태조사를 통해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 등의 규모를 추정하고 이들의 욕구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제시한다. 빈곤층 등의 규모 추정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등 포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소득계층별 실태 파악을 통해서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판단의 근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기준 적정성 평가 방법의 일환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상대적 빈곤선인 현행 급여기준선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에 활용되는 최저생계비의 계측은 전물량 방식으로 수행하되, 보완적으로 반물량 방식, 주관적 방식 등을 활용하고자 하며, 이렇게 계측된 다양한 방식의 최저생계비의 범주와 현행 생계급여 기준선을 비교함으로써 현행 급여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계획 수립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기초자료 제공이다. 앞서 살펴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2에 따라 제3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계획들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급여적정성 평가외에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의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분석을 실시하고, 급격한 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다른 가구규모에 비해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가구 등 향후 기초생활보장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판단의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앞서 제시된 주요 세 가지 연구목적과 부합하도록 서론에 해당하는 제1장과 최저생계비의 정의 및 계측의 의의를 제시하는 제2장을 제외하고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즉, 각각의 연구내용은 연구목적과 부합되는 3개 부분(제1부 빈곤층 실태분석, 제2부 2023년 최저생계비 계측, 제3부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으로 구성되며, 제1장과 제2장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총 15개 장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제1장과 제2장은 ‘제1부 빈곤층 실태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등(제1장)을 제시하고, 최저생계비의 정의와 의의(제2장)에 대해 제시하였다. 특히 제2장에서는 빈곤과 최저소득기준 그리고 최저소득보장의 개념과 최저생계비 계측 방법, 우리나라에서 적용된 최저생계비 주요 계측 방법 및 결과, 그리고 제도 개선 차원의 정책함의가 큰 독일과 최근 전국단위의 최저소득보장 제도 도입과 이와 관련한 빈곤측정 등과 관련해 새로이 이슈가 부각되는 스페인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제1부(제3장, 제4장)는 국민생활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한 빈곤층 실태분석 결과를 다루는데, 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연구자료로 활용되는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의 개

요와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한 후,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경상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구분하여 제시된 9개 소득집단별 가구의 지역, 규모, 유형 등을 살펴보고, 가구주의 경제적·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분포, 가구의 유형별 소득과 지출의 분포를 살펴보았다(제3장). 그리고 9개 소득집단별로 주요 욕구별 실태분석 결과를 제시하는데, 여기에는 박탈 및 생활여건 욕구, 자산 및 부채, 주거욕구, 의료욕구, 교육욕구, 에너지 욕구가 포함된다(제4장).

제2부(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는 2023년 최저생계비 계측 방법과 주요 결과들로 구성된다. 먼저,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본 방향을 계측 모형, 결정원칙, 표준가구 및 지역구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마켓바스켓 결정 원칙과 관련해서는 필수품 선정 원칙, 내구연수 결정 방법, 지역구분을 위한 고려사항 등을 다룬다. 표준가구와 관련해서는 표준가구의 개념과 구성, 2023년 계측을 위한 표준가구 구성 과정을 소개하고, 그렇게 결정된 표준가구 및 지역구분 안을 제시하였다(제5장). 이렇게 결정된 표준가구와 지역구분에 따라 총 11개 비목별로 2023년 최저생계비 계측결과를 제시하였다. 최저생계비 구성 비목은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지출, 비소비지출로 설정하였고, 이들 비목별 세부 품목들의 단가, 수량, 내구연수 등을 반영한 가격을 제시하였다(제6장). 그리고 박탈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그리고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같은 대안적 방식의 최저생계비를 제시하였다(제7장). 그리고 가구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추가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한부모 가구의 추가비용을 계산한 결과와 그 함의를 제시하였다(제8장).

제3부(제9장, 제10장, 제11장, 제12장, 제13장, 제14장, 제15장)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평가 내용과 본 연구의 결론으로 구성된다.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기초생활보장 평가의 개요를 선행연구 검토와 평가의 분석틀 등을 통해 제시하였으며(제9장), 제10부터 제13장까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포괄성, 급여적정성, 급여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먼저, 대상자 포괄성 평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 추정과 수급자 및 소득계층별 실태와 인식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제10장). 그리고 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로 최저생계비 계측결과를 활용한 평가와 박탈 개념을 통한 평가를 수행하였다(제11장). 또한 소득 등 주요 지표를 이용한 급여

의 효과 및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불평등 감소 효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제12장). 한편,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 대한 평가는 해당 급여의 소관부처에서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의료급여의 경우도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실시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의료급여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제13장을 통해 별도로 수행하였다. 제14장에서 정책적 수요 및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빈곤 실태, 급여 적정성 등의 심층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5장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제시로 본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2. 연구 방법⁸⁾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적합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한 실태분석이며, 본 연구에서 주로 활용한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조시기준시점 2021년)이다.

국민생활실태조사는 수급자 등을 포함한 전국민 대상의 실태조사를 통해 소득수준별 생활실태, 저소득층의 복지욕구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조사로서 가구일반조사와 심층조사 그리고 가구 유형별 조사들로 구성된다.

먼저 기초조사에 해당되는 가구일반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현황에 해당되는 가구일반사항, 소득·재산·지출 등의 생활실태, 복지욕구과 관련된 항목들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며, 가구일반조사를 바탕으로 심층조사와 가구 유형별 조사가 수행된다.

심층조사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심층조사, 4인가구 심층조사, 1인가구 심층조사가 수행되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심층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복지인식, 수급이력, 선정 및 급여 만족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사각지대 관련 사항 파악하였다. 4인가구 심층조사는 4인 가구의 가계수지, 소비실태,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마켓바스켓 설정을 위한 필수품여부, 소비품목의 질, 사용량, 내구연수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을 조사한다. 1인가구 심층조사는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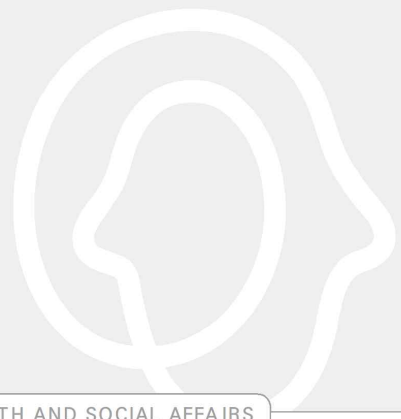
8) 여기서 제시된 연구 방법은 본 연구의 개괄적 차원의 연구 방법이며,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제2장 제2절, 제3장 제1절, 제5장, 제9장 등에 각각 상세히 제시되어 있음

행된 조사인데, 1인 가구 소비실태 등을 조사하여 1인 가구 생활 실태와 복지욕구 그리고 급여적정성 평가를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

가구 유형별 조사는 일종의 서비스 대상 조사로 표준가구를 대상으로 전물량 방식으로 산출된 최저생계비에 대해 가구유형의 변화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추가 또는 감소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한부모 가구 및 노인 또는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한편, 국민생활실태조사와는 별도로 가격 및 자산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국민생활실태조사와는 달리 실태조사 조사구의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에서의 필수품 가격 및 지역별 주거점유형태별 부동산 가격을 별도로 파악하는 조사를 실시하였다('23년 1월 실시). 그리고 국민생활실태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복지패널 등의 조사자료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계측과 급여의 효과성 등 분석은 김태완 외(2017) 및 김문길 외(2020) 등에서 제시한 기초생활보장 평가 관련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연구방법을 토대로 수행하였다.

그 밖에 연구 진행 과정에서 개최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생계자활소위원회와 본 위원회의 논의 과정, 그리고 소관부처 담당 공무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의 방향성과 범위 그리고 연구방법 등을 구체화시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2장

최저생계비의 정의와 의의 및 관련 사례

제1절 빈곤, 최저소득기준과 최저소득보장의 개념

제2절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제3절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제4절 해외사례: 독일, 스페인

제 2 장 최저생계비의 정의와 의의 및 관련 사례

제1절 빈곤, 최저소득기준과 최저소득보장의 개념⁹⁾

1. 빈곤의 개념

브로니슬라프 게레멕(Bronislaw Geremek)이 그의 저서 「빈곤의 역사」에서 언급한 “무엇이 빈곤을 야기하며 어떻게 하면 빈곤을 뿌리뽑을 것인가”라는 빈곤에 대한 두 질문은 사회과학에서 주된 관심의 대상이자 논쟁의 주제였다(게레멕, 2010, p.7). 근대 이후 빈곤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전면으로 부상한 것은 산업화와 유럽의 국가 성립(state-building) 과정에서 '빈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국가 정책적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빈곤의 역사는 근대 이전까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빈곤의 개념과 학술적 논의는 복지국가 성립과정의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근대적 의미에서 빈곤이란 무엇인가?

빈곤(貧困, poverty)의 직관적 개념은 비교적 간단하며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렵지 않다. 즉, 빈곤하다 혹은 가난하다고 지칭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두산백과』)¹⁰⁾ 혹은 '기본수요의 부족현상으로 생활필수품의 결핍과 그것이 가져오는 육체적, 정신적 불안감을 포함하는 생활 상태'(『사회복지학사전』)¹¹⁾를 일컫는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빈곤하다거나 가난하다는 용어를 사용할 때도 '물질적으로 결핍됨으로써 기회가 박탈된 상태' 혹은 '다른 사람이 일상적으로 누리는 생활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가정된다. 학술 저서에도 빈곤의 개념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정우(1997)는 광의의 빈곤을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의 기회, 수단 또는 자원의 결핍상태'로 정의내리고 있다. 또한 드레브노브스키(J. Drewnowski)는 “욕구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은 상태”로 정의하기도 하였다.¹²⁾

9) 본 절은 김문길 외(2020, pp.17~24), 김태완 외. (2017, pp.15~21), 김태완 외(2013, pp.21~27) 내용을 발췌 및 일부 수정·보완하였음.

1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6502&cid=40942&categoryId=31637> (2023.12.19. 인출)

1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70512&cid=42120&categoryId=42120> (2020.7.23. 인출)

〈표 2-1-1〉 빈곤의 대안적 정의

- Adam Smith(1776)
내가 이해하기에 필수품은 생활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재화 뿐만 아니라, 관습상 최하위층의 사람 일지라도 그것 없이는 신망있는 사람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재화이다. 예컨대, 린넨셔츠는 엄격히 말해서 생활필수품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신망있는 일용노동자라면 린넨셔츠없이 공공장소에 나타나기에 납부끄러울 것이며, 린넨셔츠가 없는 것은 수치스러운 빈곤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 Seebohm Rowntree(1899):
어떤 가족의 총소득이 단순히 물리적 효율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품을 획득하기에 충분치 않다면 빈곤한 것으로 간주된다.
- William Beveridge(1942):
소득 중단 시기 동안 노동연령의 사람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소득을 고려할 때, 지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약간의 여분이 허용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식품, 의류, 연료, 조명과 가구집기, 집세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Ronad Henderson(1975):
빈곤이 최소한의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수준의 준거로 정의되는 한에 있어, 이는 상대적 개념이다. 경제의 생산성과 공동체의 태도를 반영하는 가치판단이 요구된다. 호주 사회에서의 다양한 생활양식과 가치, 그리고 식품, 주거, 의류, 건강, 교육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때 최소생활수준을 결정하는 작업은 어렵다.
- Peter Townsend(1979):
인구에서 개인, 가족, 그리고 집단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고, 활동에 참여하며, 관습적인 혹은 최소한으로 널리 장려되거나 인정되는 생활조건과 설비를 갖추기 위한 자원이 결여될 때 빈곤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Joanna Mack and Stewart Lansley(1985):
빈곤은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필수품의 강제된 결핍이다.
- Amartya Sen(1992):
빈곤은 최소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특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기본적 능력의 결여(failure)이다. 이와 관련된 기능성(functioning)은 영양섭취를 하고, 적절하게 입고 주거하며, 예방가능한 질환을 피하는 것 등과 같은 기본적인 신체적인 것에서부터,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고, 수치스럽지 않게 공적인 자리에 나설 수 있는 등과 같은 더욱 복잡한 사회적 성취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 Zigmund Bauman(2010):
빈곤이라는 현상은 물질적 결핍과 신체적 고통으로 요약되지 않는다. 가난은 사회적이면서 심리학적 조건이기도 하다. 인간 실존의 적절성이 그 사회가 정의하는 납부되지 않은 생활수준에 따라 측정될 때, 그 수준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은 그 자체로 괴로움과 고통, 굴욕의 원인이다. 그것은 '정상의 삶'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것에서 배제되었음을 뜻한다. 그것은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자료: Saunders (2004); 김태완 외(2013, p.22), 〈2-1-1〉 재인용

자유주의 경제학의 태두라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부터, 요크시를 대상으로 과학적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곤율을 산출한 시봄 라운트리(Seebohm Rowntree, 1871~1954), 영국 뿐 아니라 근대 복지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시킨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Henry Beveridge, 1879~1963), 영국 복지국가의 이념적 기반에 기여하고 빈곤의 학술적 지평을 넓힌 피터 타운젠트(Peter

12) J. Drewnowski(1976); 이두호 외(1991), 빈곤론. p.42에서 재인용

Townsend, 1928~2009), 경제철학적 측면에서 빈곤의 개념을 새롭게 재해석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1993~)에 이르기까지 많은 저명한 학자들이 나룸의 빈곤의 개념을 규정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대략 정리하면 <표 2-1-1>과 같다.

<표 2-1-1>과 같이, 빈곤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으로 첫째, 자원이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절치 않은 상태이며, 둘째 빈곤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을 체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Saunders, 2004). 즉, 의식주와 같은 필수품에서의 결핍상태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필수품의 범위는 연구자에 따라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 사회의 생활수준과 관습, 가치, '남부럽지 않은 수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센은 물질적인 자원의 결핍을 넘어서 그러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의 결핍까지를 빈곤으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빈곤의 차원을 좀 더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빈곤과 관련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빈곤은 세 가지 잠재적 측정 범주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객관적으로 결정된 절대적 최소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것, 둘째, 상대적으로 그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것, 셋째,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또는 스스로가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잠재적 범주에 기초해서 빈곤의 개념은 주로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으로 구분되어 개념화되고 측정되어 왔다(이두호 외, 1991, p.44; 여유진, 2005, p.63).

먼저, 절대적 빈곤은 라운트리가 1899년 요크시 조사에서 '총수입이 육체적 효율성의 유지에만 필요한 최저수준을 획득하기에도 불충분한 가구'를 1차적 빈곤(primary poverty)이라고 규정 한데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절대적 빈곤은 최소한 유지되어야 할 '일정한 생활수준'을 상정하고, 이러한 생활수준이 유지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일정한 욕구'(needs)를 규정하며, 이러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소득수준'을 설정하여 소득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절대적 빈곤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로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 method)이나 반물량 방식(Engel method)에 의해 계측되는 절대적 빈곤 개념에서 '일정한 생활수준'과 '일정한 욕구'는 그것을 규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언제 어떤 사회에서 정의되느냐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의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¹³⁾.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수준 또는 사회적인 기본적 욕구(social basic needs)가 합의되기 어렵다는 타운젠트(Townsend, 1979)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체 국민의 복지 혹은 소득 수준과 관련해서 상대적인 저소득을 판정함으로써 상대적 빈곤을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대적 빈곤 개념에 기반한 빈곤선의 측정의 예는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의 40%, 50%, 60%, 소득분포의 하위 10%, 20% 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중위소득의 50%가 가장 널리 활용되며, 유럽연합(EU)에서는 중위소득 60%를 공식적인 빈곤선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대 빈곤선 개념은 선진국에서 빈곤을 계측에 널리 활용되며, 특히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은 '상대적'이라는 의미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향상이나 정책적 노력의 효과에 관계없이 빈곤이 규정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상대빈곤에 의해 계측된 측정치는 빈민의 규모를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빈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 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주관적 빈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빈곤 여부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사람들의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철학적으로 볼 때 빈곤은 개개인의 느낌과 욕구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볼 때 개인이 느끼는 빈곤감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개인의 상대적 욕구를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설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의 주관적 빈곤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빈곤선과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에서 볼 때 한 사회 내에서의 빈곤에 대한 개개인의 판단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표출된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빈곤의 개념에 기반하여 빈곤선을 계측하고자 한 예는 미국의 갤럽 방식과 네덜란드의 라이덴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의 세 가지 빈곤 개념에 더하여, 그 나라의 정치적·재정적·이념적 현실을 반영하여 이론빈곤선을 현실적으로 조정한 정책적 빈곤 개념이 도출될 수 있다. 선에 의하면 이러한 정책적 빈곤선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정부 각 부처 간의 권력관계 또는 사회의 여러 압력집단의 발언권 여하에 따라 빈곤선의 높낮이가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이다. 이는 이론적 기초보다 정치적 영향력 하에서 빈곤선이 설

13) 또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개념조차 완전히 '절대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뜻한다 하겠다. 즉, 정책적 빈곤선은 이론적으로 도출된 빈곤선 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빈곤대책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책의 실현가능성(feasibility)에 대한 고려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공을 초월한 가치중립적인 빈곤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빈곤은 그 자체로 상대적 개념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특히, 빈곤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에서 상대적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기본욕구조차도 상대적으로만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은 사회규범과 경제적 조건을 반영함으로써 특정한 장소와 특정 시점에서만 대답되어질 수 있는 질문이다. 둘째, 공동체 인식을 반영하는 어떠한 빈곤 개념도 또한 상대적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식들은 특정 사회규범과 태도를 체현한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에 언급되는 절대적 빈곤조차도 시간·공간 특수적이라는 의미에서는 상대적이라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빈곤선, 최저소득기준(MIS)과 최저소득보장(MIP)

빈곤선(poverty line)은 지금까지 논의된 빈곤 개념을 바탕으로 빈곤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준거가 되는 기준선이라 할 수 있다. 즉, 빈곤선이란 빈곤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빈곤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도출된 수치화된 빈곤의 기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이트월슨(1994)에 의하면, 빈곤선이란 ‘개인과 가구가 그들이 사는 사회에 참여하고 그 사회에서 박탈과 배제로 간주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저소득에 대한 과학적 측정치’로 정의될 수 있다. 빈곤선은 위에서 제시된 빈곤의 개념적 구분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접근방식에 따라 설정될 수 있다(Saunders, 2004; 김미곤 외, 2010 재인용). 재화의 장바구니 측면에서 욕구를 확인한 다음 그것을 사기 위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추정하는 예산기준(budget standard), 중위(혹은 평균) 소득의 특정 비율과 같이 명시적으로 상대적 방식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저소득기준(low income standard), 최소소득기준에 대한 공동체 인식에 기초한 주관적 기준(subjective standard), 그리고 (소득지원급여에서 반영되는 것과 같이) 저소득에 대한 공식적 혹은 승인된 기준에 기초한 공식적 기준(official standard)이 그것이다. 이는 각각 절대적, 상대적, 주관적, 그리고 정책적 빈곤 개념에 바탕을 둔 기준이다(김미곤 외, 2010).

이러한 빈곤선 중 정책적 빈곤선은 여타의 빈곤선과는 다소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절대적·상대적·주관적 빈곤선은 측정방식에 근거한 빈곤선의 분류라고 할 수 있지만, 정책적 빈곤선은 적용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분류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책적 빈곤선은 앞의 세 가지 빈곤선과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다기보다는 앞의 세 가지 빈곤선 측정방식 혹은 또 다른 측정방식으로 빈곤선을 측정한 결과를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특히, 후자를 바이트윌슨(Veit-Wilson, 1998)은 최저소득기준(Minimum Income Standard: 이하 MIS)이라는 특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때 최저소득기준은 '공식적인 행정적 도구 혹은 다른 구성체에 의해 체현된 (주어진 기간, 어떤 영역 혹은 모든 인구에 대해) 어떤 주어진 최저실질생활수준에 대한 정치적 적절성 기준'이라고 정의된다. 카사스(Casas, 2005)에 의하면, MIS는 다양한 복지급여들 혹은 최저임금이나 최저국가연금과 같은 사회적으로 정의된 최소소득보장제도들의 적절성 척도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도구로서, 과학적 빈곤계측을 통해 규정되었을지라도 빈곤의 과학적 측정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바이트윌슨(Veit-Wilson, 1998)은 좋은 MIS의 필수조건으로 대중적 수용성, 통계적·방법론적 방어가능성, 행정적 실현가능성의 세 가지를 꼽고 있다. 대중적 수용성은 최저소득기준 기저의 개념이 대중 정서에 부합하여 널리 인정되고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적/방법론적 방어가능성은 최저소득기준을 설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은 통합성, 논리적 일관성, 안정성(robustness), 신뢰성, 시간과 사회집단에 따른 비교가능성의 측면에서 정당성과 통계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적 실현가능성은 최저소득기준은 적절성 기준에서 효과적 통합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과 접근가능성을 극대화시키도록 구성되고 유지되고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저소득보장(Minimum Income Protection: 이하 MIP) 혹은 최저보증소득(Guaranteed Minimum Income)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여유진, 2005). 첫째, MIP는 공공부조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공적 급여를 합한 총액의 개념이다. 예컨대, 많은 나라에서 공공부조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급여를 함께 수급받으며, 인구특성에 따라 장애부가급여, 한부모부가급여 등의 부가급여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가족(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다.¹⁴⁾ 따라서, 최저소득보장액은 소득보조를 신청한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급여의 합산액이 된다. 둘째, 최저소득보장은 범주별 대상이 받을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예컨대, 근로가능한 취업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근로가능한 실업자의 경우 공공부조와 기타 부가급여가, 그리고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의 경우 최소연금 또는 기초연금이 최저소득보장이 될 수 있다.

빈곤선, MIS, MIP 등과 관련된 논의에서 각 개념들 간의 관계는, 한 극단으로 절대적 혹은 상대적 빈곤선≒최저소득기준(MIS)≒공공부조기준선≒최저소득보장(MIP)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극단으로 절대적 혹은 상대적 빈곤선≠최저소득기준(MIS)≠공공부조기준선≠최저소득보장(MIP)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 2015년 7월 이전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와 일본의 최저생활비를 들 수 있다. 기존에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전물량 방식에 기초한 규범적 빈곤선이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소득기준(MIS)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및 급여기준선 이면서 최저소득보장의 수준(MIP)을 나타내기도 했다. 일본 생활보호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최저생활비도 마찬가지로 수준균형방식에 기초한 상대적 빈곤선이면서, 생활보호세대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소득기준이며, 동시에 생활보호제도의 급여기준선(MIP)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체로 서구 국가들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들이 다양하게 흩어져 있고, 보편적 급여들이 저변에 깔려있는 경우가 많아 MIS와 MIP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도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가 실시되면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선이 분리되었으며, 소관 부처도 흩어지게 되면서 더 이상 MIS와 MIP가 일치하지 않는 체계로 변화되었다. 법률상 최저생계비라는 용어는 존치하나(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2), 더 이상 선정·급여 기준선은 아니고 다만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기준(MIS)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상대빈곤선 방식으로 대체되었으며, 각 급여별로 차등 적용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제외하고는 선정기준과 급여기준도 분리되고, 각 급여별 최저보장기준에 따라 급여액이 설정되게 되었다. 따라서 MIP는 소득이 전혀 없는 공공부조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급여의 합산액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이러한 기초보장제도의 변화는 한편으로 급여 특성별로 유연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급여가 흩어져 운영되면서 증장기적으로는 급여의

14) 가족(아동)수당이 생계급여를 위한 소득산정에서 공제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공제되지 않는 나라도 있다.

합산액이 최저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전물량 방식 이외에도 급여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MIS 계측 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 구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제2절 최저생계비 계측방법¹⁵⁾

최저생계비 계측은 빈곤 측정방식 중 하나이며, 빈곤정의와 연계시 절대적 빈곤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은 1899년 Rowntree가 요크시에서 처음 빈곤을 측정할 때 사용한 방식으로 육체적 생존이 가능한 수준을 측정하면서 명명되었다. 유사하게 미국의 오산스키는 식료품만을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을 계측하였으며, 지금까지 미국의 중요한 빈곤선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 빈곤의 정의는 상대적, 주관적 방식 등이 있으며, 각각의 정의에 맞추어 빈곤선이 계측되고 활용되고 있다(아래 표 참조).

〈표 2-2-1〉 빈곤의 정의와 최저생계비의 계측

빈곤의 정의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
절대적 빈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물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켓바스켓 방식: 1단계: 필수품 선정, 2단계: 필수품의 단가, 사용량 결정 *소득탄성치,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여 품목선정에 고려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물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산스키(Orshansky) 방식: 저소득층 최소 식료품 지출비에 '3'을 곱한 화폐액을 빈곤선으로 규정 - 엥겔(Engel) 방식: 최저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엥겔계수를 설정하여, 식료품 구입비용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 엥겔계수와 일치하는 지점을 빈곤선으로 정의
상대적 빈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탈지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운젠트(Townsend) 방식: 객관적 박탈지표와 주관적 박탈지표를 통한 측정 - 소득과 지출을 활용한 상대적 빈곤선 추정 방식: 소득 또는 지출의 특정 비율을 빈곤선으로 규정
주관적 빈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의 평가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 - 본인의 평가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

15) 본 절은 김태완 외(2013)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와 김문길 외(2020), 「2020년 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 및 평가연구」의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을 발췌 및 일부 수정·보완하였음.

1. 절대적 빈곤 개념에 근거한 최저생계비 계측

가.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

전물량 방식은 마케트바스켓 방식으로 불리며, 말 그대로 시장에 가서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필수품을 담고 이를 기초로 빈곤선을 계측하는 방식이다. 동 방식은 1899년 Rowntree가 영국 요크(York)시 비숙련 노동자 11,560세대를 대상으로 측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원칙에 따라 계측되어야 한다. 첫째, 필수품의 선정, 둘째, 선정된 필수품에 대한 단가와 사용량(내구성, 횟수) 결정이 필요하다. 필수품의 선정은 국가, 지역, 시기, 영양학적 기준 등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활용하여 마켓바스켓을 구성해야 하며, 사용량을 결정할 때는 적용할 수 있는 역시 과학적이고 객관적 기준을 활용하여 계절별, 연령별 적정수준의 가격과 사용량을 결정하게 된다.

필수품의 선정은 전문가가 제시한 최저개념(예: 최저주거기준, 영양권장량 등)을 충족하는 품목 중 저소득층의 소비실태를 반영하여 빈도수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필수품 선정의 과학적 적용을 위해 소득탄성치나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여 필수품 여부를 결정하는 보조지표로 활용하기도 한다. 소득탄성치를 적용하는 방식은 필수품은 소득의 변화에 관계없이 소비가 이루어지는 반면 사치품은 소득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로지스틱의 경우, 소득이 0일 때 특정 품목을 가지거나 소비할 확률 또는 일정소득 수준에서 가지거나 보유할 확률(또는 소비할 확률)을 구하는 것이다. 가격과 사용량은 통계청의 조사자료, 자체 생활실태 조사와 같은 활용 가능한 자료를 통해 필수품의 구입량과 가격을 참고로 하여 결정한다.

전물량 방식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활용 가능한 최대한의 객관적 기준과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사치품과 고가품을 배제하여 필수품만을 마켓바스켓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전문가의 자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물량 방식은 의료, 교육과 같은 현물급여(In-kind Transfer)를 고려한 보충급여와 장애인, 노인과 같은 특정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선정기준 및 수준(예, 추가비용 등)을 결정하는데는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나. 반물량 방식

반물량 방식은 미국의 오샨스키(Orshansky)방식과 엥겔(Engel)방식이 있다. 먼저, 오샨스키방식은 1960년대 빈곤과의 전쟁 속에서 정확한 빈곤측정을 위해 개발되었다. 전물량방식과의 차이는 전물량 방식이 많은 품목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곤선을 계측하는 반면에 오샨스키 방식은 식료품을 기반으로 빈곤선을 계측하는 방식이다. 즉 저소득층의 최소 식료품 지출비에 '3'을 곱한 화폐액을 빈곤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사하게 엥겔 방식은 소득이 높아지면 총소득에 대한 식료품 지출 비율이 감소한다는 원리로 최저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엥겔계수 E_{\min} 을 설정하여, 식료품 구입비용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 E_{\min} 과 일치하는 지점을 빈곤선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반물량방식은 여전히 미국의 빈곤선 설정 기준으로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단점은 누구를 저소득층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 저소득층 가구 최소 식료품 지출비에 곱하는 '3'이란 숫자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자의성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¹⁶⁾. 엥겔방식 또한 엥겔계수 도출을 위한 최저생활수준 설정에 있어 자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 상대적 빈곤 개념에 근거한 최저생계비 계측

절대적 빈곤과 다르게 상대적 빈곤은 한 국가 또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수준과의 비교를 통해 빈곤층을 판정하고 이를 통해 빈곤을 계측하는 방식이다. 절대적 빈곤측정인 전물량방식에 비해서는 빈곤의 측정이 간편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측정방식에 따라 절대적 방식과 마찬가지로 연구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빈곤이 상대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절대적 빈곤과 비교해 그 해소가 더 어려울 수 있으며, 또한 상대성에 기초한 빈곤선 수준 역시 적합성 측면에서 자의성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16) Orshansky 방식의 "3"이라는 배수에 대하여 1992년 National Academy Science(NAS)에서는 조사결과 "3" 아닌 거의 "7"로 변했으며 이 역시 시간에 변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김미곤 외, 2006).

가. 박탈지표방식

상대적 빈곤은 영국 학자인 Townsend에 의해 처음으로 계측되었다. Townsend는 빈곤이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을 통해서만 정의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 개념을 구체화하여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였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절대성 속에 이미 상대적 변화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상대적 방식의 유효성을 강조하였다. 상대적 박탈은 객관적 박탈감과 주관적 박탈감으로 구분되며, 객관적 박탈 지표 21개 항목과 주관적 박탈 지표 7개 항목을 선정하여 소득계층별 실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이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누리고 있는 품목들이 일정수준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계를 포착하고 이를 최저생계비로 규정한 것이다. 객관적 박탈지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주거, 연료, TV 등의 가전제품, 휴가 또는 여행 등의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이 포함되며, 주관적 박탈감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공간적으로는 지역의 소득수준과 시간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현재 생활수준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 혹은 빈곤감 등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박탈지표에 의한 최저생계비 추정 또한 지표의 선정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자의성이라는 한계는 존재한다.

나. 소득과 지출을 이용한 상대적 추정방식

상대적 빈곤 측정 방식인 박탈지표 방식에 비해 연구자나, 주요 국제기구 등이 쉽게 사용하는 상대적 빈곤측정 방식이 소득과 지출의 일정비율을 사용하는 방안이다. 소득과 지출을 이용한 추정방식은 소득 또는 지출의 특정 비율을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빈곤선에 따라 급여 기준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맞춤형 급여로 전환된 이후 활용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대빈곤선이 대표적인 예이다. OECD, Fuchs 등은 최저생계비, 빈곤선을 도출하기 위해 소득을 사용하고 있다. World Bank, 일본의 경우에는 지출을 사용하여 빈곤선을 계측하고 있다.

소득과 지출을 활용하여 상대적 방식으로 측정된 최저생계비(혹은 빈곤선) 계측과 관련된 쟁점을 보면, 첫째, 소득과 지출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둘 것인가의 문제로, 기준에 따라 특정 집단이 빈곤선 이하에 속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

참고로 유럽은 소득을 세계은행 등 미국의 경우는 지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하위기준 결정의 문제다. 즉, 소득으로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하기로 결정했는지라도 시장, 경상, 가처분 소득 중 어떠한 소득을 기반으로 측정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지출 역시 소비지출과 가계지출의 선택의 문제가 있다. 셋째, 주요하며 참여할 수 있는 쟁점으로 소득 또는 지출의 몇 %를 최저생계비(혹은 빈곤선)로 결정하는 것인가의 문제다. 이는 각 집단이나 학자별로도 의견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데, 한국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고 증가비율을 적용하여 빈곤선을 결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3. 주관적 빈곤 개념에 근거한 최저생계비 계측

주관적 빈곤 개념에 근거한 최저생계비 계측은 제3자의 평가나 본인의 평가에 의해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개념을 잘 표현하는 질문의 선정과 최저한의 생계비 또는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 빈곤 개념에 근거한 최저생계비의 계측을 위해서는 최저생계비의 조작적 정의와 이를 바탕으로 해석상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설문지를 구성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 제3자의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

제3자의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의 계측은 이를테면 ‘이 곳에서 사는 평균적인 4인 가족이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혹은 지출)은 얼마입니까?’ 또는 ‘이 곳에서 4인 가족이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은 얼마입니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동 방식은 1974년 레인워터(Rainwater)가 1946년부터 1969년까지의 껌업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안정적인 결과를 얻음으로써 일반화된 계측방식이다. 질문에 대한 응답이 그 해 가구당 평균소득의 46~58% 범위에 들어 있었으며, 평균치는 52%로, 대중이 생각하는 생계비의 수준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계측한 빈곤과 매우 유사함이 밝혀졌다.¹⁷⁾ 또한 분석결과 대중의 빈곤관은 ‘절대적인 의미에 가까운 상대적’인 것

으로 밝혀졌다(이준구, 2003).

나. 본인의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

본인의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 방식은 이를테면, '당신의 가구에서는 얼마의 소득(혹은 지출)이 있다면 근근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 때, 라이덴방식(Leyden)은 이 대답으로 나온 소득(혹은 지출)과 실제 그 사람의 소득(혹은 지출)이 일치하는 점을 회귀분석을 통해 찾고 델릭(Deleeck) 방식은 각자가 대답한 최저생계비와 자신의 실제 소득이 같은 가구를 골라 그들 가구소득의 평균을 구해 그것을 최저생계비로 간주한다(이정우, 1997).

제3절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1.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계측의 역사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오랜 기간 최저생계비를 계측해 온 국가로 볼 수 있다. 처음 최저생계비 계측은 1973년 보건사회부 산하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의해 수행되었다. 1973년 9월부터 1974년 4월까지 1,162가구에 대한 국민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반물량 방식(앵겔방식)에 의해 최저생계비를 도출하였다. 이후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1978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최저생계비 계측은 마켓바스켓을 활용한 전물량 방식으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1988년, 1994년,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2017년, 2020년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 중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계측한 최저생계비가 보건복지부의 법정 최저생계비로 지정되어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도입 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급여기준으로 활용되었다.

17) 레인워터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로써 근근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하다는 액수가 전문가들이 '최소한의 필요'에 대해 계산한 액수의 대략 94% 수준에서 안정성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이준구, 2003).

기타 일부 연구자에 의해 1980년대~1990년대에 최저생계비계측이 이뤄졌다. 서상목(1979)은 1973년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국민생활실태조사¹⁸⁾에 나타난 실제 음식물 소비 형태를 기반으로, 5인 가구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반물량 방식으로 계측하였다. 윤석범(1981)은 1980년(조사기준년도)에 도시와 농촌지역 1,6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설문을 발송하여 조사 응답이 일관적인 478가구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4인, 5인, 6인 가구로 구분한 뒤 효용함수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여(윤석범, 1995), 그 결과를 1969년부터 1992년까지의 최저생계비를 시계열적으로 제시하였다. 각 대상연도의 평균가구소득과 계층별 가구소득의 자연대수의 분산 함수를 적용하였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만을 적용하여 최저생계비를 시계열화 할 경우 제외되는 소득에 대한 최저생계비의 탄력성효과와 소득분포의 불균등효과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장현준(1986)은 1984년도의 조사를 통해 전국 도시가구 소비지출기준 하위 10%, 20%, 40%의 생계비를 분석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방법으로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5), 서상목(1981), 한국노총(1985)의 식품 바스켓을 이용하여 반물량 방식과 전물량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으며, 최저생계비를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구분하였다. 또한 다시 칼로리별(2,00Kcal, 2,500Kcal, 2,900Kcal)로 구분함으로써 칼로리 기준의 변화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또한 2000년 이후 최저생계비 또는 표준생계비를 계측하였으며, 이는 최저임금 심의 및 임금교섭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실시, 발표되었다. <표 2-3-1>은 연구기관, 관련단체 및 학자에 의해 수행되었던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계측을 정리한 것이다.

18) 1973년 국민생활실태조사는 전국에서 5,030가구를 대상으로 1차 조사한 후 이중에서 동년도 7월의 총소득이 24,000원 미만인 가구, 단순노무자와 불완전취업자, 경작지 5단보 미만인 농가, 생활보호대상 가구에 해당하는 1,162가구에 대하여 가계소득 및 지출, 가계구성, 주택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표 2-3-1〉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

발표연도	연구자 / 연구기관	기준연도 (계측지역)	계측방식
1974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973 (전국)	반물량 방식
1979	서상목	1973 (전국)	반물량 방식
1978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978 (대도시)	반물량 방식
1981	윤석범	1981 (전국)	라이덴 방식
1986	장현준	1984 (도시)	반물량 방식
1986	이중희	1985 (도시)	라이덴 방식
1987	배무기 외	1987 (도시)	전물량 방식
198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8 (지역별)	전물량 방식
1990	이정우 외	1989 (도시)	라이덴 방식
1991	박태규	1989 (서울)	라이덴 방식
1991	안병근	1991 (대구)	전물량 방식
1994	차홍봉 외	1993 (춘천)	전물량 방식
199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지역별)	전물량 방식
199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지역별)	전물량 방식
2003	한국노동연구원 ¹⁾	2003 (도시)	반물량 방식
2004, 2007 2010,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²⁾	2004 (지역별)	전물량 방식
2017,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²⁾	2017 (지역별)	전물량 방식
각연도	최저임금위원회 ³⁾	각연도 (전국)	전물량 방식
각연도	한국노총 ⁴⁾	각연도 (도시)	전물량 방식
각연도	민주노총 ⁴⁾	각연도 (도시)	전물량 방식

주: 1)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라고 표현하고 있다.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2004, 2007, 2010, 2013년은 정부 공식 최저생계비 계측이었으며, 2017, 2020년은 급여적정성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3) 최저임금위원회는 '15~29세 단신근로자 생계비',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라고 표현하고 있다.

4)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은 '표준생계비'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료: 김문길 외(2020),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구성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수행된 1988년의 최저생계비 계측은 전물량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국 5,000가구의 표본을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소득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는 950가구에 대해 2차 가계지출조사를 수행하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표준가구에 대한 마켓바스켓을 구성함으로써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1989년의 최저생계비는 198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1990년 최저생계비는 1989년 최저생계비에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1994년의 최저생계비 계측 역시 전물량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국 3,000가구에 대

해 1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소득 하위 30% 이하 600가구에 대한 2차 가계부조사가 수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구분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구분하여 각각의 표준가구에 대한 마켓바스켓을 구성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했는데, 1994년의 최저생계비 계측은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한 값을 바탕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하나의 전국 최저생계비를 산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동 추정치는 실제 1995년 당시 생활보호제도의 급여기준(2인 최저생계비의 50%를 1인 기준으로 활용)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1차 국민생활실태조사는 1994년 대비 5배 정도 증가한 15,4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차 가계부 조사는 소득 하위 40% 이하에 해당되는 1,500가구를 선정하여 이뤄졌으며, 이외에 활용 가능한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표준가구의 마켓바스켓을 구성함으로써 최저생계비가 도출되었다. 1999년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정책 환경 변화와 맞물려, 중앙생활보호위원회가 급여기준 선정에 최저생계비 계측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계측결과를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저생계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즉, 1999년에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첫 번째 최저생계비였다.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은 세 가지 변화가 있었다. 첫째, 조사대상 표본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둘째,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추가 실태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셋째, 지역구분에 있어 변화가 있었다. 조사대상 표본규모는 1999년의 15,400가구보다 약 2배 증가했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300개 표본 조사구에서 추출된 30,000가구를 목표로 조사를 실시하여 26,238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조사 완료 가구 중 소득 하위 40% 이하인 2,231가구를 대상으로 2차 가계부 조사와 심층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해 2,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심층조사가 처음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기초자료가 마련되었다. 지역구분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던 방식에서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4개 지역으로 확대 설정되었다. 대도시를 서울과 광역시로 나눈 것은 서울을 대도시로 분류할 경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2000년 서울의 최저생계비를 계측한 결과, 중소도시를 100으로 할 때, 서울의 주거비

가 다른 광역시보다 높은 약 132로 추정됨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에, 2004년에는 4개 지역별 표준가구에 대한 마켓바스켓을 구성하여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제시하였다. 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는 1999년과 같이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한 단일한 최저생계비를 확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발표하였다.

2004년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최저생계비 계측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2004년 다음의 최저생계비 계측은 2007년에 진행되었다. 1차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90% 조사구 자료에서 517개 조사구를 2단계 확률비례층화집락을 통해 30,000가구를 추출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상소득 기준 하위 40% 이하에 속하는 1,500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가구유형별조사 또한 실시하였다. 단, 지역의 경우에는 다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계측하였다. 또한, 2005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에 대해 전물량, 반물량, 상대적, 주관적 방식 모두를 활용해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사후적으로 타당한 방식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각 방식에 따른 계측이 이뤄졌으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전물량 방식의 계측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단, 다른 방식은 병행하여 계측하기로 합의되었다. 최저생계비는 연구진이 제시한 안보다 다소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었으며, 지역의 경우에는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한 단일 최저생계비가 확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였다.

2009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최저생계비에 대해 전물량 방식의 계측과 상대빈곤선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한다고 의결하였다. 이에, 2010년의 최저생계비 계측은 전물량 방식과 상대적 방식을 주된 방식으로 하고, 반물량 방식, 주관적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최선의 계측방법을 모색하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실제 201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에서는 2007년과 동일하게 전물량 방식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그 외의 방식에 의한 계측치는 참고로만 활용되었다. 전물량 방식의 계측은 다음의 조사를 통해 수행되었다. 우선,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90% 조사구 자료에서 550개 조사구를 2단계 확률비례층화집락 추출하여 22,000가구를 목표 표본으로 추출하고 1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소득 기준 40% 이하 가구 중에서

2,078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2차 생활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지역의 경우, 이전과 같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개로 구분했다. 가격조사의 경우, 집의 가격(자가, 전세, 월세)은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경우를 고려하였고, 가격 파악이 힘든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격조사를 실시하였다. 가구유형별 조사에서는 표본 추출된 1,500가구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었다. 한편, 도출된 표준가구 규모와 구성은 연구진의 원안대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고, 지역구분의 경우 중소도시 기준의 최저생계비를 단일안으로 확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측된 최저생계비를 최종적으로 발표하였다.

2013년의 최저생계비 계측은 세 가지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먼저, 지역구분과 지역별 주거비 산출을 위한 최저주거비 조사가 전국단위(1,800개 지역)로 실시되었다. 또한, 국민실태조사는 1차 기초조사 및 심층실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차 시장가격 조사 및 가구유형별 조사(장애인, 노인, 한부모)가 진행되었다. 1차 기초조사인 국민생활실태조사의 전체표본은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의 90% 조사구 자료에서 약 550개 조사구를 2단계 확률비례층화집락 추출한 22,000가구를 목표 표본으로 설정, 16,500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저소득층에 대한 심층조사는 통계청 경상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목표 표본 2,500가구 중 1,031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2차 시장가격 조사는 2010년과 동일한 내용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는 지역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가구유형별 조사는 이전과 동일한 1,5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2013년의 연구당시 표준가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세부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최빈가구가 4인 가구에서 2인 가구로 변경됨에 따라 표준가구 규모에 대한 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 사회를 대표하는 가구형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2인 가구가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표준가구 규모는 기존 4인 가구를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2013년의 최저생계비는 연구진안에 대해 2012~2013년에 걸친 전문위원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면서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및 급여기준보다는 기준중위소득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그 역할일 변경되었다.

2017년의 최저생계비 계측은 전물량 방식, 상대적 방식, 박탈 방식, 반물량 방식, 주

관적 방식으로 측정되었으며,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은 다섯 개의 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 국민생활실태조사, 4인 가구 심층조사, 가구유형별 대상조사(장애인, 노인 및 한부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조사, 통계청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 없거나, 가격 파악이 어려움 품목에 대한 시장가격조사가 그것이다. 실태조사의 표본추출은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의 90% 조사구 자료에서 약 1,200개 조사구를 층화 추출하여 18,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응답거절 등에 의해 6,192가구가 대체 표본 가구로 진행되었다. 지역별로는 기존 제도와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으며, 기준 중위소득과의 비교는 중소도시 4인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심층조사는 4인 가구의 생활수준과 생필품의 실제 사용량을 파악하기 위해 약 3,300가구를¹⁹⁾ 대상으로 각 항목별 「심층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계측된 2017년의 최저생계비는 전문위원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2020년 최저생계비 계측은 급여적정성 평가를 위해 두 번째로 진행된 조사이며, 기존 방식과 같이 전물량 방식, 상대적 방식, 박탈 방식, 반물량 방식, 주관적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 국민생활실태조사, 4인 가구 심층조사, 가구유형별 대상조사(장애인, 노인 및 한부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조사, 통계청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 없거나, 가격 파악이 어려움 품목에 대한 시장가격조사를 통해 측정되었다. 또한 2020년 조사는 제도 개선의 효과를 함께 파악하기 위해 1차 조사(2018년 기준)에 이어 2차 조사(2019년 기준)를 함께 진행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실태조사의 표본추출은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의 90% 조사구 자료에서 약 1,300개 조사구를 층화 추출하여 20,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18,007가구가 조사완료 되었다. 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으며, 기준 중위소득과의 비교는 중소도시 4인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심층조사는 4인 가구의 생활수준과 생필품의 실제 사용량을 파악하기 위해 약 2,600가구를 대상으로 각 항목별 「심

19) 2013년까지 기존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에서는 1차 국민생활실태조사, 2차 저소득 4인 가구 대상 심층실태조사의 단계로 진행되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욕구와 평가라는 주요한 실태조사 목적이 추가 되어 2차 심층실태조사는 1차 국민생활실태조사시 함께 포함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층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계측된 2020년의 최저생계비는 전문위원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1999년부터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온 최저생계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로부터 사회적 적절성과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심의·의결과정을 거쳐 결정됨에 따라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기준으로 발표함에 따라, 실제 살고 있는 지역, 가구규모, 주거 점유형태, 가구원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제한점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김미곤, 2012). 또한 2023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역구분이 기존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번 최저생계비 계측에는 변경된 지역구분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다.

3.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수준

1974년 사회보장심의회에 의해 계측된 우리나라 최초의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계측값이 제시되었으며, 1인 가구 4,348원, 2인 가구 8,696원, 3인 13,044원, 4인 가구 17,392원, 5인 21,739원이다.

〈표 2-3-2〉 사회보장심의회위원회의 1973년 최저생계비

(단위: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최저생계비	4,348	8,696	13,044	17,392	21,739

자료: 박찬용·김미숙(1998), 『한국의 빈곤현황과 정책과제』, UNDP·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계측한 최저생계비 수준을 살펴보면, 먼저 1988년의 경우 지역별로 측정되어 중소도시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09,581원이었으며, 1994년에는 가구균등화지수가 사용되어 중소도시 1인 가구는 206,141원, 4인 가구는 665,840원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계측한 최저생계비가 보건복지부에서 공식 발표하는 최저생계비가 된 1999년부터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에, 연구진안과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 간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게 되었다. 연구진에 의해 계측되는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차이가 있으나 공식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발표되며, 금액 또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음 표는 연구진안으로 제안된 균등화지수와 최저생계비 계측결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계측한 2020년 최저생계비는 표준가구 1인(47세 남성가구주, 44세 여성배우자, 16세 남아, 13세 여아) 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 2,134,492원이다. 표준가구 2인(42세 남성가구주, 39세 여성배우자, 12세 남아, 10세 여아) 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 1,980,521원이다.

〈표 2-3-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결과(연구진안)

(단위: 원)

연도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988	대도시	116,361	191,416	256,189	315,076	-	-	-
	중소도시	109,581	180,326	241,380	296,885	-	-	-
	농어촌	98,581	162,823	218,032	268,223	-	-	-
1994	균등화지수	0.309	0.534	0.819	1.000	1.148	1.265	-
	대도시	221,070	381,331	584,511	714,061	820,036	903,384	-
	중소도시	206,141	355,580	545,039	665,840	764,659	842,377	-
	농어촌	179,229	309,159	473,883	578,914	664,832	732,404	-
1999	균등화지수	0.349	0.578	0.795	1.000	1.137	1.283	-
	대도시	334,217	553,516	761,325	957,641	1,088,838	1,228,653	-
	중소도시	314,574	520,984	716,579	901,357	1,024,843	1,156,441	-
	농어촌	270,784	448,462	616,829	775,885	882,181	995,460	-
2004	균등화지수	0.376	0.613	0.816	1.000	1.170	1.331	-
	서울	545,621	889,564	1,184,014	1,450,318	1,697,478	1,930,379	-
	광역시	476,700	777,197	1,034,452	1,267,118	1,483,058	1,686,539	-
	중소도시	463,271	755,303	1,005,312	1,231,423	1,441,280	1,639,029	-
	농촌	395,543	644,882	858,340	1,051,395	1,230,572	1,399,411	-
2007	균등화지수	0.381	0.618	0.819	1.000	1.168	1.326	-
	대도시	514,290	832,795	1,104,060	1,348,569	1,574,940	1,787,825	-
	중소도시	476,390	771,423	1,022,697	1,249,187	1,458,876	1,656,072	-
	농어촌	410,307	664,414	880,883	1,075,905	1,256,506	1,426,349	-
2010	균등화지수	0.380	0.616	0.818	1.000	1.169	1.328	-
	대도시	571,439	928,300	1,232,968	1,508,033	1,762,981	2,002,969	-
	중소도시	537,315	872,866	1,159,340	1,417,980	1,657,704	1,883,361	-
	농어촌	490,125	796,206	1,057,521	1,293,445	1,512,115	1,717,954	-

연도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3	균등화지수	0.401	0.633	0.827	1.000	1.159	1.307	1.446
	대도시	703,851	1,111,810	1,452,715	1,756,247	2,034,718	2,294,730	2,540,323
	중소도시	658,134	1,039,594	1,358,356	1,642,173	1,902,556	2,145,680	2,375,321
	농어촌	607,447	959,530	1,253,742	1,515,701	1,756,031	1,980,430	2,192,386
2017	균등화지수	0.370	0.630	0.815	1	1.185	1.370	
	대도시	702,036	1,195,359	1,546,377	1,897,395	2,248,413	2,599,431	
	중소도시	670,153	1,141,070	1,476,147	1,811,223	2,146,299	2,481,376	
	농어촌	627,457	1,068,372	1,382,101	1,695,829	2,009,557	2,323,286	
2020 (표준 1인)	균등화지수	0.370	0.630	0.815	1	1.185	1.370	
	대도시	825,916	1,406,289	1,819,247	2,232,205	2,645,163	3,058,121	
	중소도시	789,762	1,344,730	1,739,611	2,134,492	2,529,373	2,924,254	
	농어촌	730,303	1,243,488	1,608,640	1,973,791	2,338,942	2,704,094	
2020 (표준 2인)	균등화지수	0.370	0.630	0.815	1	1.185	1.370	
	대도시	768,947	1,309,287	1,693,761	2,078,234	2,462,707	2,847,181	
	중소도시	732,793	1,247,728	1,614,125	1,980,521	2,346,917	2,713,314	
	농어촌	673,333	1,146,487	1,483,153	1,819,820	2,156,487	2,493,153	

자료: 안창수 외(1989),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박순일 외(199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3),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외(2020),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하여 4인 가구를 표준가구로 기존대로 유지하였다. 차이는 환경 변화와 기존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 당시 측정치와의 비교를 위해 표준가구를 2개로 구성하였다. 지역별 물가 차이와 특성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였으며, 주거 점유형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전세로 설정하였다. 비목별 금액과 비율은 아래와 같다.

〈표 2-3-4〉 2020년 최저생계비 표준가구(연구진안)

표준가구의 규모	표준가구의 구성	
4인 가구	표준가구 1인	부: 47세 모: 44세 1자(남): 16세 2자(여): 13세
	표준가구 2인 (2013년 기준)	부: 42세 모: 39세 1자(남): 12세 2자(여): 10세

자료: 김문길 외(2020,).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p.42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2-3-5〉 2020년 지역별·비목별 최저생계비 계측결과: 표준가구(표준가구 1인)

(단위: 원, %)

구분	대도시 ¹⁾		중소도시 ¹⁾		농어촌 ¹⁾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식료품비	771,345	34.6	771,345	36.1	771,345	39.1
주거비	433,349	19.4	340,582	16.0	177,543	9.0
수도광열비	105,512	4.7	102,349	4.8	106,323	5.4
가구집기비	53,928	2.4	53,463	2.5	52,793	2.7
피복·신발비	98,499	4.4	98,499	4.6	98,499	5.0
보건·의료비	91,239	4.1	91,239	4.3	91,239	4.6
교육비	105,694	4.7	105,694	5.0	105,694	5.4
교양·오락비	78,071	3.5	78,071	3.7	78,071	4.0
교통·통신비	193,352	8.7	192,032	9.0	190,932	9.7
기타소비지출	139,273	6.2	139,273	6.5	139,273	7.1
비소비지출	161,943	7.3	161,945	7.6	162,079	8.2
합계	2,232,205	100.0	2,134,492	100.0	1,973,791	100.0
중소도시=100		104.6		100.0		92.5

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주거접유형태는 전세를 기준으로 하였다.
 자료: 김문길 외(2020).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484 〈표 11-1-1〉

〈표 2-3-6〉 최저생계비(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 연구진안)

(단위: 원, %)

구분	1999		2004		2007		2010		2013		2017		2020 (표준가구1인)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식료품비	366,948	39.6	485,526	39.4	456,991	36.6	545,943	38.5	608,963	37.1	688,110	38.0	771,345	36.1
주거비	174,833	18.9	208,261	16.9	213,135	17.1	221,374	15.6	307,283	18.7	303,139	16.7	340,582	16.0
수도광열비	51,224	5.5	64,237	5.2	80,220	6.4	103,150	7.3	114,461	7.0	111,023	6.1	102,349	4.8
가구집기비	31,880	3.4	36,447	3.0	37,269	3.0	40,879	2.9	46,267	2.8	49,543	2.7	53,463	2.5
피복신발비	43,331	4.7	54,010	4.4	48,773	3.9	52,060	3.7	62,246	3.8	80,441	4.4	98,499	4.6
보건의료비	42,749	4.6	49,719	4.0	53,894	4.3	62,196	4.4	68,636	4.2	74,117	4.1	91,239	4.3
교육비	42,071	4.5	61,991	5.0	56,136	4.5	65,930	4.6	74,020	4.5	83,092	4.6	105,694	5.0
교양오락비	19,917	2.1	28,945	2.4	30,031	2.4	30,483	2.1	35,418	2.2	35,347	2.0	78,071	3.7
교통통신비	56,005	6.0	129,954	10.6	141,559	11.3	142,600	10.1	151,144	9.2	173,802	9.6	192,032	9.0

40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구분	1999		2004		2007		2010		2013		2017		2020 (표준가구1인)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기타소비지출	63,979	6.9	67,870	5.5	77,292	6.2	86,072	6.1	90,237	5.5	98,166	5.4	139,273	6.5
비소비지출	33,940	3.7	44,463	3.6	53,887	4.3	67,293	4.7	83,498	5.1	114,443	6.3	161,945	7.6
합계	926,877	100.0	1,231,423	100.0	1,249,187	100.0	1,417,980	100.0	1,642,173	100.0	1,811,223	100.0	2,134,492	100.0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3),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외(2020),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이 계측, 제시한 최저생계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단일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발표되어 왔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가 상대빈곤선에 따른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게 되었다. <표 2-3-7>은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의해 의결된 최저생계비를 정리한 것이다.

<표 2-3-7> 최저생계비(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단위: 원, %)

구분	1999		2004		2007		2010		2013		2017		2020 (표준가구1인)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식료품비	366,948	40.7	443,626	40.2	463,164	37.6	527,327	37.7	596,476	37.1	688,110	38.0	771,345	36.1
주거비	174,833	19.4	194,936	17.7	212,575	17.2	221,374	15.8	286,331	17.8	303,139	16.7	340,582	16.0
수도광열비	51,224	5.7	64,237	5.8	82,350	6.7	103,150	7.4	114,461	7.1	111,023	6.1	102,349	4.8
가구집기비	31,880	3.5	35,789	3.2	36,727	3.0	40,547	2.9	45,653	2.8	49,543	2.7	53,463	2.5
피복신발비	43,331	4.8	46,858	4.2	48,773	4.0	57,649	4.1	66,851	4.2	80,441	4.4	98,499	4.6
보건의료비	42,749	4.7	49,001	4.4	53,894	4.4	62,196	4.5	67,247	4.2	74,117	4.1	91,239	4.3
교육비	42,071	4.7	46,930	4.3	55,302	4.5	65,930	4.7	73,803	4.6	83,092	4.6	105,694	5.0
교양오락비	19,917	2.2	24,961	2.3	24,062	2.0	27,117	1.9	31,018	1.9	35,347	2.0	78,071	3.7

구분	1999		2004		2007		2010		2013		2017		2020 (표준가구1인)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교통통신비	56,005	6.2	102,564	9.3	129,275	10.5	142,600	10.2	151,144	9.4	173,802	9.6	192,032	9.0
기타소비지출	52,679	5.8	67,870	6.2	75,260	6.1	82,305	5.9	90,237	5.6	98,166	5.4	139,273	6.5
비소비지출	19,720	2.2	26,463	2.4	51,187	4.2	67,293	4.8	83,498	5.2	114,443	6.3	161,945	7.6
합계	901,357	100.0	1,103,235	100.0	1,232,569	100.0	1,397,488	100.0	1,606,719	100.0	1,811,223	100.0	2,134,492	100.0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3),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외(2020),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기타 기관의 생계비 계측

생계비는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노동연구원 등에 의해서도 계측되어왔다. 이를테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비혼 단신근로자의 실태생계비를 계측하고 있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임금교섭을 위해 표준생계비를 계측, 발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비혼 단신근로자의 실태생계비를 계측하는 이유는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 및 제23조에 의거, 1987년 3월 처음으로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계측하였으며, 1988~1993년까지는 3월과 10월 연 2회, 1994년부터는 10월 기준 연 1회 계측하고 있다. 2006년까지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가공·분석하여 15세 이상 비혼 단신근로자(자가, 무상주택, 사택 거주자는 제외)에 대한 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과 실태생계비(소비지출+비소비지출)를 분석하고 있다.

〈표 2-3-8〉 2022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실태생계비 계측결과

(단위: 원)

구분	전체	29세 이하	34세 이하
실태생계비(A+B)	2,205,432	2,024,106	2,215,920
소비지출(A)	1,774,127	1,686,853	1,806,855
식료품·비주류음료	159,385	113,960	128,178
주류·담배	42,223	29,134	34,043
의료·신발	93,815	105,032	109,266
주거·수도·광열	497,166	501,342	521,655
가정용품·가사서비스	54,784	44,343	55,461
보건	95,005	64,361	70,967
교통	171,219	121,204	146,990
통신	77,806	75,827	80,952
오락·문화	111,698	129,410	131,703
교육	23,567	42,867	37,220
음식·숙박	320,937	345,214	363,651
기타상품·서비스	126,519	114,159	126,768
비소비지출(B)	431,305	337,253	409,065
조세	123,706	82,395	109,052
사회보장	215,117	193,086	228,875
기타	92,482	61,772	71,138

주: 1) 전 연령층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 현황을 조사하였다.

2) 2009년 항목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기타소비지출」로 분류되었던 경조비, 교제비, 종교기부금, 귀금속구입이 「비소비지출」로 분류됨에 따라 기타에 포함하였다.

자료: 최저임금위원회(2022),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도 임금교섭을 위한 생계비를 계측하고 있다. 한국노총²⁰⁾의 생계비 측정방식은 전물량 방식의 이론생계비 모형으로서 1976년 처음 최저생계비를 만들었으며, 1981년과 1986년에 최저생계비 모형에 부분적 개편이 있었다. 1990년에는 사업장 임금요구율 지침을 만들기 위해 최저생계비 뿐 아니라 표준생계비를 계측하였으며, 1995년에는 도시근로자 생계비 모형으로 변경하였는데 모형 산출 대상의 협소한 설정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매년 세부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

20)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17), 『2017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에서 일부 발췌하였다.

로 실제 노동자가구의 표준적 생활을 표현하는 표준생계비에 근접하게 되어 2002년부터 현재까지 표준생계비 모형으로 정착하였다. 한국노총의 표준생계비는 5년마다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모형을 선정한다. 2023년 한국노총의 표준생계비는 2014년 개정된 ‘표준생계비 모형’에 의거하여, 2022년 9월 물가를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2014년도 모형은 비목 재구성으로 인해 2013년도에 실시한 ‘표준생계비 산출을 위한 조합원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10개 비목에서 12개 비목으로 증가되었으며, 12개의 비목을 가구규모별로 구성한 이론생계비로서 ‘노동자 가구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의미한다. 한국노총이 제시하는 기준가구는 다음과 같다.

〈표 2-3-9〉 2018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가구모형

구분	단신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1)	4인 가구(2)	4인 가구(3)
2014년 모형	성인1인 25-29세	성인 남녀 남 29세 여 26세	가구주 36세 배우자 33세 자녀 6세(유)	가구주 42세 배우자 39세 자녀 11세(초) 자녀 8세(초)	가구주 47세 배우자 44세 자녀 16세(고) 자녀 13세(중)	가구주 52세 배우자 49세 자녀 21세(대) 자녀 18세(고)

자료: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23), 『2023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한국노총에서 발표한 2023년 표준생계비 결과결과를 살펴보면, 4인 가구(1)은 5,185,430원으로 계측되었으며, 단신 가구는 2,189,860원으로 발표하였다. 비목별 표준생계비는 〈표 2-3-10〉와 같다.

44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표 2-3-10〉 2018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계측결과

(단위: 원)

2023	단신남성	단신여성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1)	4인 가구(2)	4인 가구(3)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	632,226	555,836	594,031	1,174,937	1,497,347	1,756,989	1,998,892	2,154,119
주류 및 담배비	212,992	145,492	179,24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의류 및 신발비	72,308	90,578	81,443	160,625	194,242	231,226	238,257	268,476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781,245	781,245	781,245	885,092	1,117,532	1,310,814	1,310,814	1,310,814
가정용품 가사서비스비	83,866	88,315	86,091	143,248	194,611	223,688	226,341	227,159
보건비	79,204	85,467	82,338	159,871	239,074	319,741	319,741	319,741
교통비	80,028	80,028	80,028	473,366	483,646	546,256	615,376	643,583
통신비	166,906	166,906	166,906	234,661	234,661	302,416	370,171	370,171
오락 및 문화비	128,439	128,868	126,154	141,834	153,879	134,529	135,254	139,825
교육비	70,697	70,697	70,697	70,967	234,982	724,101	875,305	1,053,163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81,273	128,005	104,639	223,230	254,407	276,614	314,462	316,163
11개 비목 소계	2,389,184	2,316,437	2,352,811	3,883,553	4,817,373	6,039,366	6,617,605	7,016,611
조세공과금	279,008	269,023	274,016	616,947	821,881	1,015,089	1,138,833	1,287,894
2023년 표준생계비	2,668,192	2,585,460	2,626,826	4,500,500	5,639,254	7,054,455	7,756,438	8,304,505

자료: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23), 『2023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제4절 해외사례: 독일, 스페인

1. 독일

가. 개요²¹⁾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 1883년 노동자와 가족들을 위한 건강보험이 최초 도입되었음은 물론 1884년 산재보험이 도입, 1889년 연금과 근로무능력자를 위한 사회부조제도가 도입되었다(김태완·정주성, 2023). 또한 독일 제국의 바이마르공화국(Weimarer Republik) 시대인 1924년 처음으로 전국단위의 빈민구제법(Reichsfeuersogephlchtsverordnung)이 제정·실시되었다(1996: Wikipedia, Sozialhilfe Deutschland). 그러나 동 법률은 생활곤궁에 처한 사람에게 국가적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1954년 6월 24일 독일 연방행정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은 연방기본법(연방 헌법) 제1조 제1항 인간 존엄 보호²²⁾, 동법 제2조 제1항과 제2항 자유로운 인격 발달과 신체적 안전 보장²³⁾, 제20조 사회국가 구성 원칙²⁴⁾에 근거하여 보호(Fürsorge)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욕구를 가진 자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현대적 사회부조제도를 구축하는 출발선이 구축된 순간이었다.

1962년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사회부조체계의 토대를 형성하는 연방사회부조법(Bundessozialhilfegesetz)이 발효되면서 현대적 의미의 공공부조 제도가 본격적으로

21) 김태완 외(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pp.44-45 부분을 Wikipedia, Grundsicherung 등을 활용하여 보완 및 업데이트하여 작성

22) 인간의 존엄은 침해할 수 없다. 인간 존엄의 중시와 보호는 모든 국가 공권력의 의무이다(Die Würde der Menschen ist unantastbar. Sie zu achten und zu schützen ist Verpflichtung aller staatlichen Gewalt).

23)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고 헌법질서와 풍속에 어긋나지 않는 한 누구나 개성을 자유롭게 발달시킬 권리를 갖는다... 누구나 신체의 안전과 생명 보장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Jeder hat das Recht auf die freie Entfaltung seiner Persönlichkeit, soweit er nicht die Rechte anderer verletzt und nicht gegen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oder das Sittengesetz verstößt. Jeder hat das Recht auf Leben und körperliche Unversehrtheit).

24)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사회연방국가이다(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ist ein demokratischer und sozialer Bundesstaat).

시작되었다. 원래 사회법전의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던 연방사회부조법은 1976년에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SGB) 체계(제12권)에 흡수하면서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일원화를 완성하게 된다. 2000년 전후로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축소지향적인 연금개혁이 반복되면서 그로 인해 심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저소득 노인계층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03년 연방사회부조법에서 완전근로무능력의 노인과 중증 장애인계층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기초보장제도(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 GAE)가 성립되었다. 부조제도가 잠시 분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GAE는 기본적으로 종전의 사회부조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대상구분 등 운영상의 혼란과 논란만 가중시킴에 따라 2005년 제도의 취지와 골격은 유지하면서 다시 연방사회부조법에 통합일원화 되었다(Wikipedia, Sozialhilfe Deutschland).

한편 독일은 통독 이후 그 후유증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장기실업자의 급증 등 실업난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프로그램으로서 아젠다 2010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핵심의 하나가 전후 느슨하고 관대하게 운영되어 왔던 실업급여제도의 개혁(Hartz 개혁)이었다. 종전 실업급여제도는 실업보험제도와 실업수당제도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동안 소득에 비례하는 높은 수준의 구직급여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도 수준은 다소 낮지만 여전히 비례급여인 실업수당을 큰 제약없이 계속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관대한 급여는 장기실업을 양산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2005년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을 절반으로 축소하고(Arbeitslosengeld: 실업급여 I) 아울러 실업수당을 실업자사회부조제도(Arbeitslosenhilfe: 실업급여 II)로 전환하게 되었다(Wikipedia, Arbeitslosenhilfe).

실업자부조제도는 신설된 사회법 제2권에 담고 있다. 이 제도는 실제 실업여부와 관계없이 15세 이상 연금지급연령인 65세(연금지급 상한연령 조정계획에 따라 67세로 조정중) 사이에 있는 사람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주당 3시간 이상 일할 능력이 있으면 근로능력자로 판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회법 12권과 동일한 급여수준, 엄격한 소득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는 등 기본골격은 동일하지만, 성실한 구직활동과 제공되는 일자리의 수용의무 등을 엄격히 부과하고 이를 게을리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지급액 삭감 등)를 가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방사회부조제도와 차이가 있었다. 원래 연방사회부조법에 적용받던 근로능력 있는 취약계층은 실업자부조제도로 편입되었다.

이로써 독일의 사회부조제도는 근로능력이 있으면 실업자사회부조제도(사회법 제2권)에, 근로능력이 없으면(그 피부양가족 포함) 사회법 제12권에 따른 사회부조제도에 적용받는 이원화된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BMAS, 2022). 나아가 사회법 제12권에 따른 사회부조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무능력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근로무능력의 지속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길고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만 GAE제도의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근로무능력의 지속기간이 6개월 이내로 짧거나 곧 회복이 예상되는 경우)는 전통적인 사회부조제도(HLU: Hilfe zum Lebensunterhalt)의 대상이 된다. 사회부조제도가 사실상 3가지 존재함에 따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의 우선순위는 필요하다. 즉, 사회부조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면 맨 먼저 실업자사회부조제도(사회법 제2권)의 적용여부를 판별하고 그리고 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회법 제12권의 GAE 그 다음 최종적으로 HLU의 적용을 받게 된다(Wikipedia, Grundsicherung).

〈표 2-4-1〉 독일 사회부조제도의 구조

	실업부조 (ALG II)	노인장애인 기초보장(GAE)	전통 사회부조 (HLU)
적용법	사회법 제2권	사회법 제12권	
적용대상	15세~65세의 근로능력자	장기 근로무능력자 (65세 이상 노인+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기타 모든 단기 근로무능력자
선정원칙	직권주의	신청주의	직권주의
소득재산 조사대상	본인 및 모든 가구구성원+부양의무자	본인 및 배우자+부양의무자(다만 , 연소득 10만유로 이상일 경우만 고려)	본인 및 모든 가구구성원+부양의무자
지급기간 단위	단기(6개월)	기본 1년	필요에 따라
수급에 따른 의무사항	고용센터알선 일자리 수용 및 구직활동 의무	-	-
재원	대개 중앙정부	좌동(2014~)	지자체
관리	고용센터	지자체	지자체

자료: 연구자 작성

〈표 2-4-1〉은 독일 사회부조제도들의 주요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다. 비록 사회법 제2권에 따른 ALG II가 실업자 등 근로능력자를 위한 기초보장제도로서 그 내용과 역할이 사회법 제12권에 따른 일반 부조제도와 사실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적용법률이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다 ALG II 급여는 여전히 실업자 등의 소득 및 임금대체

급여(Lohnersatzleistung) 즉, 근로연계급여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매김되고 있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공공부조로 분류되지 않는다(Wikipedia, Sozialhilfe: BMAS, 2022). 따라서 통상 독일에서 공공부조라 함은 사회법 제12권에 따른 복지급여를 의미한다. 그러나 세가지 제도의 본질은 동일하고 제도의 뿌리도 모두 전통적인 부조제도인 HLU에 두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만 다른 부조제도의 내용도 언급하기로 한다.

나. 제도운영의 기본원칙²⁵⁾

사회법전 제12권의 제1조(목적)에 천명되어 있듯이, 사회부조제도는 수급권자에게 인간존엄(Menschenwürde)에 상응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도운영의 제1원칙으로 하고 있다(BMAS, 2022: Wikipedia; Sozialhilfe). 인간존엄에 상응하는 삶의 보장이란 사회문화적 최저생활(Sicherung des sozialkulturellen Existenzminimums)의 보장을 말한다. 이는 다시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적 최저보장과 함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사회부조는 단순히 수급자에게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적 최저보장을 넘어 노동시장은 물론 정치적, 사회문화적 공동체생활에 편입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보장은 노동시장에의 복귀를 최우선으로 하는 ALG 급여, 교육급여 및 장애인 재활급여 등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급여는 현금지원과 더불어 개별적인 욕구에 대응가능한 서비스 즉 현물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김태완·정주성, 2023).

사회부조제도 운영의 두 번째 주요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Prinzip der Subsidiarität)이다. 보충성 원칙은 개인이나 가족이 가진 문제에 대해 가족 당사자나 친지·이웃·지역사회가 우선 개입해야 하며, 이러한 작은 삶의 단위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국가가 최종적으로 개입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부조는 욕구대상자의 노동력, 소득 및 자산 등의 투입, 나아가 가족 및 기타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사회보험 급여 등) 등으로도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없을 경우에

25) <https://de.wikipedia.org/>의 'Sozialhilfe Deutschland'. '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 'Regelbedarf'. 'Arbeitslosengeld II'.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제공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국가의 개입 수준은 ‘자조를 도와주는 도움(Hilfe zur Selbsthilfe)’에 머무르지 않는다. 즉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작은 삶의 단위가 해체될 가능성이 보이면, 작은 삶의 단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큰 삶의 단위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조급여제도에서 빈곤 예방적 특징을 가진 급여나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는 데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자 선정에 있어 직권주의를 우선한다거나 가족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체되는 위기에 처하기 전에(긴급구조급여 등) 혹은 장애인이 더욱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장애가 더 악화되기 전에(재활급여) 또는 노령기 빈곤에 빠지기 전에(자발적 노후준비 시 사회부조급여에 적극 반영 등)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²⁶⁾

세번째 운영원칙은 개별성 원칙(Prinzip der Individualiaet)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회부조급여는 일률적으로 급여액을 정해 지급하는 것을 지양하고 개인과 가족이 처한 상황이 크게 다른 만큼 가능한 한 이러한 개별적인 욕구와 수요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독일의 사회부조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처럼 일률적인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선을 두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기본급여(Regelbedafe)나 추가급여선(mehrbedarfe)은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주거급여 및 그 외의 급여에 대해서는 개인 및 지역 등의 고유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 개별적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후술 참조).

나아가 개별성의 원칙은 가족의 해체가 심화되고 가족내에서도 개인주의가 고도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다. 이에 사회부조에서 특히 부양의무자 범위가 점점 좁혀져 이제 직계혈족(부모 내지 자녀)만이 부양의무자로 취급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03년에 도입된 GAE 제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양의무자 요건 조차도 거의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로 그 요건(부모나 자녀가 연간 10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만 부양의무 인정)을 크게 완화해 버렸다. 2020년부터는 모든 제도에 이러한 부양의무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한 집에 같이 사는 주거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활을 공유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구로 취급된다. 특히 GAE 급여는 부부의 경우도 개

26) 김태완 외(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pp.45-46 부분을 보완하여 작성

별 급여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때 소득조사에서도 부부가 기본적인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서로의 소득을 조사하여 급여에 반영하지만, 각자가 충분한 기초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에만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 사회부조에서 특징적이고 주요한 운영원칙은 직권주의 및 지자체 책임주의이다. 직권주의는 구체적 수요가 당사자나 제3자에 의해 알려지거나 부조당국에 의해 발견되는 즉시 당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 빈민법 시대와 달리 현대 사회부조가 가진 중요한 특징은, 사회부조가 자선(Almosen)이 아니라 법적 권리라는 보편적 인식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김태완 외, 2017). 또 실업자부조제도(ALG II)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 편입 차원에서 직권주의가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GAE는 신청주의에 입각하고 있는데, 이는 동 제도의 수급요건이 일반부조제도(HLU)에 비해 수급요건이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GAE 급여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면 HLU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자체 책임주의는 수급자가 처한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제도관리 등에서 핵심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에 따른 재정책임도 져야 한다. 최근 독일 사회부조에서 이러한 전통적 인식은 크게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업자부조제도의 경우 취업알선 등 서비스의 전문성을 요하고 실업해소는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애초 제도 도입 초기부터 관리 및 재정책임을 전적으로 중앙정부(노동사무소)가 맡고 있다. GAE의 경우도 여전히 관리는 지자체가 하지만 인구고령화 시대에 노인빈곤 문제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서 중앙정부 부담으로 전환되고 있다.

다. 사회부조제도의 주요내용

1) 대상자 선정기준

사회법 제12권의 의미에서 사회부조 대상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장애나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어야 한다. 근로무능력은 통상적인 노동시장 상황에서 하루 3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주로 연금공단에서 판정한다. 이 판정결과는 부조당국(Sozialaemter)이 그대로 수용하여 활용한다(BMAS, 2022). 다만, ALG II 급여의 경우에는 고용센터(Jobcenter)에서 직접 판단

한다. 근로무능력자는 다시 근로무능력의 장기지속성 여부 등에 따라 GAE 급여 대상자(노인 및 중증장애인 등 장기 근로무능력자) 및 기타 사회부조 급여대상자(HLU, 근로무능력 상태가 곧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구분한다.

그리고 GAE 급여대상자가 되려면 최소 연령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 노인이어야 한다.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ALG II 급여의 경우 연령조건이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다. HLU 급여에서는 특정한 연령 규정이 없다. 또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부조 급여는 직권주의에 기초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GAE 급여만은 엄격하게 신청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원래 동 급여제도는 욕구공동체 및 가족의 부양의무 요건 등이 엄격한 HLU 급여에 대한 수치심 유발 등에 따른 저소득 노인의 수급기피 문제를 최소화하여 잠재적인 노인빈곤 문제(versteckte Altersarmut)를 극복하고자 수급요건을 크게 완화된 형태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이다(Wikipedia: Grundsicherung). 물론 동 급여를 신청하지 하지 않으면 일반사회부조(HLU) 급여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사회부조제도는 기본적으로 사회문화적 최저생활(sozialkulturelles Existenzminimum)을 보장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이때 사회문화적 최저생활 보장이란 필수적인 생존은 물론 최소한의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을 확보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정적 수단이 국가가 정하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최저생활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며 국가는 최저생계비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정적 수단(소득자산조사)간의 차액을 부조급여로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최저생활수준은 일률적이 아니라 개인별 욕구수준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이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급여액이나 급여형태에 따라 수급자가 유연하게 선정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BMAS, 2022).

마지막으로, 사회부조급여는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 독일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Wikipedia: Sozialhilfe). 다만 외국인 중 독일에 거주하는 EU 국가의 시민의 경우 2016년 12월 29일부터 종전에 독일 사회보장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하여 해당 수급권을 획득한 경우에 한해 이주 즉시 사회부조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 5년 이상 국내 거주해야 사회부조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EU 국가의 시민 일지라도 단순히 사회부조를 수급하기 위해 국내에 이주하는 경우에는 ALG 급여를 포함하여 모든 사회부조급여수급권은 거부될 수 있다. 해외 거주 독일 국민의 경우에는

긴급 상황(Notfall)을 제외하고는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2) 급여기준과 수준

가) 급여의 종류

사회부조법(사회법 제12권)에서 제공되는 급여종류는 크게 생계급여(현금급여), 의료·개호 및 재활급여(이상 현물급여) 그리고 기타 서비스급여로 구분된다(BMAS, 2022). 사회부조의 핵심급여인 생계급여는 다음 소절(나)에서 상술하기로 하고 우선 다른 부수적인 급여부터 간단하게 살펴보자. 먼저 현물급여의 경우 모든 생계급여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보충급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급자가 되기 이전에 관련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회보험이 급여를 제공하는 책임을 진다. 즉, 관련 사회보험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부조당국이 현물급여를 제공한다.

〈표 2-4-2〉 독일 사회부조 급여의 종류와 특징

	특징	주 대상자
생계급여	현금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개호·재활급여	생계급여의 보충성 현물급여	상동
서비스급여	생계급여 수급 예방 서비스급여	차상위계층 등 모든 국민

자료: 연구자 작성

예를 들어, 의료보험의 경우 수급자가 본인 원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일반 가입자와 동일하게 동일하게 병의원 및 약국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전액 부조당국(Sozialaemter)이 사후적으로 정산해 주는 식이다. 개호보장의 경우도 관련 비용(개호서비스 및 개호수당)을 전액 부조당국이 부담한다. 물론 공적 개호보험으로부터 혜택이 배제된 경우에 한한다. 장애인의 경우도 산재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에서 제공되는 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조당국의 부담으로 재활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사회 및 노동시장 편입을 지원하게 된다.

기타 서비스급여는 크게 특정 사회적 곤궁의 극복을 위한 부조(Hilfe zur

Ueberwindung besonderer sozialer Schwierigkeiten)와 기타 어려운 삶의 조건을 보완하기 위한 부조(Hilfe in anderen Lebenslage)로 구분된다(BMAS, 2022). 이 두 급여는 생계급여수급자에 국한되지 않으면 차상위계층 등 모든 국민이 그 대상이 된다는 공통적이다. 생계 이들 급여는 적극적인 상담, 보호, 주거 및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나 현금급여 등을 통해 생계급여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선제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주로 노숙자, 떠돌이, 출소자 등 사회불응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로서 상담, 보호 및 부조급여 등을 제공하며, 후자는 (가구주의 장기 부채 등으로) 정상가정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보호, 노인들의 어려운 상황 등을 상담해주는 노인보호, 맹인들에게 발생하는 추가적 생활비 보전을 위한 맹인보호, 장례비 보조, 기타 생활보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생계급여

독일 사회부조에서 생계급여의 대상자를 선정, 급여액을 결정하는 핵심조건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비용을 본인의 소득과 자산, 부양의무청구권 나아가 국가 등이 제공하는 기타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연금,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를 갖고서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다(SGB XII § 19). 이때 생계에 필수적인 비용이 사회문화적 최저생계비이며 총욕구(Gesamtbedarf)라고도 한다. 이는 모든 수급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주로 의식과 관련된) 기본생계비용(Eckregelbedarf), 주거(난방비 포함)와 관련된 비용(Unterkunft und Heizung) 그리고 개인적 특수상황에 따른 추가욕구충당비용(Mehrbedarfe; 홀부모, 장애 등에 따른 부가비용) 및 기타 필요비용(의료·개호보장, 노후보장, 아동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생계비용 이상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이(개별화)가 나는 것으로 이에 상응하여 수급자가 선정되고 급여액이 결정된다(BMAS, 2022).

〈표 2-4-3〉 생계급여(총욕구)의 구성

욕구	정의	내용
기본생계비용 (Eckregelbedarf)	의식관련 기본비용	가구원의 지위에 따라 6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급여차등화, 전국 일원적
주거난방비용 (Unterkunft u. Heizung)	주거(임대료) 및 난방비용	개인, 지역에 따라 주거지원 차등화
추가욕구충당비용 (Mehrbedarfe)	개인이 처한 특수상황에 따른 추가발생비용	홀부모, 임신부, 중증장애, 운수 등 상황에 따라 급여 차등
기타 필요비용	특정 형태의 사회적 참여 등에 필요비용	의료, 간호, 노후보장, 교육 등 사회참여 비용 보전

자료: BMAS(2022), 연구자 작성

최저생계비 중에서도 핵심은 기본생계비용(monatliche Eckregelbedarf)이며 1인 당 월단위로 표시된다. 이에 상응하는 급여를 표준기준급여(Eckregelsatz)라고도 한다. 표준기본급여는 가구 구성원의 지위와 연령에 따라 총 6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단신/한부모 성인 가구주, ② 부부가구의 각 배우자, ③ 피부양가구원(②의 관계 외 성인 가구원 등), ④ 14~18세 미만 청소년, ⑤ 6~14세 미만 아동, ⑥ 6세 미만 아동. 기본생계비용은 주로 의·식과 관련된 비용을 포괄하며, ①유형의 급여액을 100으로 볼 때 다른 유형의 급여수준은 그의 60~90%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기본생계비용은 육체적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포함하며, 국가가 국민공통적으로 보장해야 할 사회문화적 최저생계수준과 동일시한다(김태완 외, 2017). 이에 기본생계비용은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적용되며, 모든 부조제도(HLU는 물론 GAE 및 ALG II)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기본생계비용의 측정은 5년마다 실시되는 연방통계청의 소득·소비 표본조사(Einkommens- und Verbrauchsstichprobe: EVS)에 의해 이루어진다(Wikipedia: Regelsatz). 총 조사표본은 75천 가구이지만, 실제 기본생계비 측정에 반영되는 것은 소득하위 20% 저소득계층의 실제 생활비이다. 다만, 이때 저소득층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는 일부 조정 내지 제외된다. 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5년 기간의 기본생계비는 실질가치의 보전을 위해 원래 국민연금의 연금인상률에 연동하여 조정하였다. 하지만, 연방헌법재판소가 그러한 조정은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2011년부터는 기본생계비용은 물가상승률 및 수입금상승률을 고려한 혼합지수(Mischindex)를 적용하여 연동시키고 있다(Wikipedia: Sozialhilfe).

기본생계비용에 이은 두 번째 주요 기초욕구인 주거비용(Unterkunft und

Heizungskosten)은 월임대료 및 난방비용(자가주택의 경우 수선유지비 형태로만 지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비용은 각 지역별 및 가구구성별로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다만 각 지역별 평균임대료 및 난방비용, 적정 필요 거주면적 및 필요 주거시설 내지 난방시설 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부조당국)가 결정한다. 주거비 중 임대료 보전의 경우 이와 동시에 주택수당(Wohngeld)²⁷⁾을 받을 수 없으며, 둘 중 개인이 선택해야 한다. 주거급여(임대료 비용)의 경우 지역별로 정해 놓은 적정 임대료 총액범위 내에서 과하지만 않으면 주거 면적의 융통성있는 선택도 허용된다.

〈표 2-4-4〉 추가욕구 내지 비용(Mehrbedarfe)의 종류와 산정

구분	추가비용의 인정비율(해당 표준기본생계비 대비)
이동제한 에 따른 비용	17%
임산부의 추가비용	17%
특별 영양보충비용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다만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부조당국이 개인별 적정수준을 결정
온수비용(전기 등)	성인 기본생계비의 2.3%, 아동은 연령에 따라 0.8%~1.4%
홀부모 자녀양육비용	17세 이하 자녀 1명당 12% 등

자료: 연구자 요약 작성

나아가 기본생계비용이나 주거비용은 개인별 특수상황에 따른 추가비용(Meherbedarfe)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홀부모가 16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단, 임신기간이 13주 이상) 중인 경우 혹은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이에 필요한 추가 교통비용), 당뇨 등 만성적인 질환이 있어 특별한 영양보충이 필요한 경우, 나아가 중앙난방식 온수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즉 개별난방 및 시설이 불가피한 경우) 등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별 추가욕구는 해당하는 개인별 표준기본생계비의 일정비율로 인정된다(〈표 2-4-4〉 참조). 한 개인에게 여러 종류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총 추가비용(단, 온수비용은 합산대상에서 제외)은 각 개인별 표준 기본생계급여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27) 주택수당(Wohngeld)은 가구원수, 소득, 지역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임. 최근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수급 규모가 세배 이상 증가함(김태완·정주성, 2023).

이외에도 일회성 비용(목돈이 요구되는 가재도구, 의복, 장애관련 장비의 구입 등), 건강보험 및 개호보험 가입비용(수급자 선정전에 가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노후준비 및 연금가입 비용(공적연금 및 사적 연금에 자발적 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하는 경우에만 그 비용), 아동 청소년의 교육 및 학업참여비용(학업여행, 학업도구, 교통비, 학업촉진, 점심식사, 스포츠·놀이·문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따른 기타 보충급여도 있다. 기본생계비용, 주거 및 난방비용, 개별 추가비용 및 기타 보충급여를 모두 합산하면 총욕구가 산출되는데, 각 개인 혹은 가구에 귀속되는 욕구가 다르므로 각 욕구가 활용가능한 자원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차액을 실제 부조급여액(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text{실지급부조액} = \text{인정된 총욕구(총기초생계유지비용)} - \text{가용자원}$$

3) 소득 및 자산조사

수급자의 선정 및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해 욕구조사와 동시에 보충성 원칙에 의거하여 수급대상자 및 그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자산(재산포함)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독일 사회부조에서는 재산은 우리나라처럼 인정소득액 형태로 전환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없는 점이 특징이다. 절차상 재산은 일단 다 소진해야 대상자로의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부양의무자의 경우도 소득조사에 국한하고 있으며 이 조차도 일부의 경우(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 등)를 제외하고는 소득기준이 최근 크게 완화되어 사실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변화된 점이 또 특징이다. 즉, 개별화 및 단순화 원칙에 의거하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0만 유로를 초과하는 고소득층인 경우만 생계급여의 수급대상자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있다.

물론 개인의 모든 재산을 완전히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BMAS, 2022; DRV, 2022).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재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최소 보호자산(Schonvermogen)이라고 한다. 최소 보호자산은 약간의 현금자산(수급자 1인당 최대 5,000유로), 가족의 형성 및 유지 목적에 필수적인 공공재원의 유형자산(건설 중인 공공분양주택 등), 국가에 의해 촉진된 노후보장목적의 금융자산(리스터 연금 등 공사적 연금자산), 장애인·맹인·개호대상자의 주거에 필요한 토지 및

주택자산, 적정한 자가주택 및 자동차, 적정한 수준의 가재도구 및 비사치성 가보 및 유산에 의한 귀중품 등을 말한다.²⁸⁾ 만약 부조신청자가 이러한 최소 보호자산을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완전히 소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렇지만 일부 고액 자산을 갖고 있지만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자산이 처분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유예함은 물론 사회법전 12권 91조(SGB XII § 91)²⁹⁾에 근거하여 대출을 통해 사회부조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태완·정주성, 2023). 단, 부채는 보호대상 자산이 아닌데다 본인이 감당해야 몫으로 보기 때문에 자산조사에서 제외하지는 않는다.

수급자 본인의 소득은 사회보장급여, 근로소득 등 시장소득, 기타 일시적 소득 등을 포괄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 중 사회부조급여는 당연히 제외되며 연방원호 및 부양법에 의거한 급여도 제외된다(BMAS, 2022; DRV, 2022). 이외 공적연금, 질병수당(Krankengeld), 실업급여 I,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의 모든 사회보장급여는 소득조사대상에 100% 포함된다. 다만 이때 국민연금에서 33년 이상 장기 저소득가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저연금(Grundrente)을 수급하게 되는 경우 기본으로 100유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30%가 공제될 수 있다. 저소득층의 장기가입 유도를 위해서이다(DRV, 2022). 이와 유사한 공제규정은, 기업연금과 국고보조금을 받은 준공적 개인연금(리스터 및 튀립연금) 그리고 일정한 지급요건(공적연금의 지급연령부터 사망시까지 정기 지급 등)을 갖춘 자발적 개인연금 등에도 적용된다. 이처럼 연금의 수급 시는 물론 연금의 가입 시(육구 산정시 납부보험료도 반영하는 형태)에도 그 부담과 급여를 유리하게 취급해 주는 것은, 결국 이러한 성실한 노후준비의 촉진은 부조제도의 재정남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장치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장소득 중 근로소득은 근로장려 차원에서 순소득(각종 소득세, 출퇴근 교통

28) 최소 보호자산의 판단은 어떤 최저의 기준을 설정하기 보다는 지자체에서 파견한 건축 관련 전문가가 해당 자산에 대해 감정과 평가를 진행하고 주택 크기, 주택 가격,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적정재산 수준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김태완·정주성, 2023).

29) Sozialgesetzbuch (SGB) Zwölftes Buch (XII) - Sozialhilfe - (Artikel 1 des Gesetzes vom 27. Dezember 2003, BGBI. I S. 3022) § 91 Darlehen Soweit nach § 90 für den Bedarf der nachfragenden Person Vermögen einzusetzen ist, jedoch der sofortige Verbrauch oder die sofortige Verwertung des Vermögens nicht möglich ist oder für die, die es einzusetzen hat, eine Härte bedeuten würde, soll die Sozialhilfe als Darlehen geleistet werden. Die Leistungserbringung kann davon abhängig gemacht werden, dass der Anspruch auf Rückzahlung dinglich oder in anderer Weise gesichert wird.

비 등의 실비, 기타 노동조합 및 협회 조합원비 등 제외)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액은 최대 기본생계급여액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외에도 장애인이 장애인 작업장에서 얻는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생계비의 1/8 +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50%까지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타 공공기관의 명예직 수당 등도 최대 월 200유로까지 공제될 수 있다. 한편, 일회성 소득에는 유산, 증여, 로또수입 등이 있는데, 종전에는 수입 첫달에는 소득 그 이후부터는 자산으로 취급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일회성 수입을 6개월간으로 나누어 소득으로 취급한다. 이로써 보호자산으로 공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사회부조제도들 중 특히 GAE의 경우 소득조사가 더 관대한 편이다(Wikipedia: Grundsicherung). 예를 들어 동거배우자의 부양의무는 자신의 기본생계비를 충족시키는 수준 이상의 자원이 있을 경우만 소득조사에 반영한다. 또 자녀 혹은 부모의 부양의무도 부양의무자 1인당 연소득이 10만유로 이상일 경우에만 반영한다. 이 부분은 최근 다른 부조제도에도 도입되어 큰 차이가 없어졌다(Wikipedia: Grundsicherung). 소득조사에서는 GAE 수급자가 다른 부조제도에 비해 유리하지만, 자산조사에서는 유리하지도 않다. 특히 현금자산의 경우 GAE에서는 통상 18세 이상 수급자당 5,000유로 정액으로 보유금액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반면, ALG 부조제도의 수급자의 경우 기본 3,100유로 + 18세부터 1세당 150유로 가산한 금액(즉 65세 도달 시까지 총 10,300유로)까지의 현금보유가 허용된다.

4) 자원 및 관리체계³⁰⁾

사회부조와 관련한 정책과 감독은 연방 노동사회부가 맡고 있다. 특히 노동사회부는 전국적으로 일원적인 기본생계급여 등의 설정업무를 담당한다. 사회부조 급여의 실무는 전적으로 지자체의 소관인데(BMAS, 2022), 이는 지역 전달체계(örtliche Träger)와 광역 전달체계(überörtliche Träger)로 구분한다. 지역 전달체계에는 시(Kreisfreie Städte), 군(Landkreise)의 사회국(Sozialamt)이 있으며, 사회부조 대상

30) 김태완 외(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pp.48-49 부문. 김문길 외(2013). 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 발전과정과 최근 주요 이슈. pp.40-41 부문. 김미곤 외(2009).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p.121 부문을 BMAS 등을 활용하여 보완 및 업데이트하여 작성

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가지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전달체계의 상부 단위는 주(Land)이며, 주에서는 기획, 통제, 재정 등을 담당한다. 광역 전달체계의 주체는 주(Land)인데, 시군구 범위를 벗어난 급여 제공을 한다. 예를 들어, 시군구 간 시설 보호 비용, 대학 입학 비용, 장애인 사회 통합 비용, 외국 거주 독일인 원조 등의 업무를 맡는다.

사회부조업무의 실무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예외가 있다. GAE 급여관련 신청 안내 및 신청서 작성이나 근로능력 판정 등은 연금공단이 일부 대행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한편, GAE부조를 포함한 일반 사회부조급여와 달리, ALG II급여의 경우 전적으로 노동사회부 산하의 노동사무소(Jobcenter)가 중심되어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GAE 급여나 ALG II급여는 국가적 업무로 취급하여 그 비용도 전액 중앙정부가 조세로 부담한다. 이를 제외한 사회부조는 헌법에 의해 연방과 주가 나누어 부담하지만, 연방은 외국 거주 독일인 관련 비용만 부담한다. 주에서 부담하는 비용의 근원은 대부분 토지세와 영업세(Grund- und Gewerbesteuer)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서로 재원을 분담하는 시스템이 있으며, 특정 지역에 빈곤층이 많아 재원이 더 필요로 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을 함께 분담하기도 한다(김태완·정주성, 2023).

사회부조에서 제공하는 대인서비스 재정은 기본적으로 주정부와 각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대인서비스는 각 지역에 있는 반공공·비영리 민간조직(halboeffentliche, nicht-gewinnorientierte zivile Organisationen)으로서 사회복지단체가 제공한다. 카리타스(Caristas), 개신교 자선협회(Evangelisches Werk), 노동자복지회(Arbeiterwohlfahrt) 등 사회복지단체가 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을 통해 사회부조 대상자를 위한 대인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재정은 사회부조 등을 통해 공적으로 조달하고 서비스는 비영리 민간 기관이 국가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사회법 12권 5조).

라. 생계급여의 산정방식

1) 생계비 구성요소의 계측

독일 사회부조제도의 핵심급여인 생계급여(Hilfe zum Lebensunterhalt)는 표준 기본생계비용(Eckregelsatz), 추가비용(Mehrbedafe), 나아가 주거난방비용(Unterkunft u. Heizkosten) 등 주로 이 세 가지 비용요소(욕구=급여)를 근거로 산정하게 된다. 추가비용에 따른 급여의 지급율은 기본급여를 바탕으로 하므로 실측이 필요하지 않다. 이에 아래에서는 기타 두 급여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측하는지를 살펴본다.

가) 표준기본급여(Eckregelsatz)³¹⁾

기본급여 수준은, 생계를 함께 하는 가장, 파트너, 미성년 자녀로 이루어진 소위 '욕구 공동체(Bedarfsgemeinschaft)'가 필요로 하는 식비, 주거비, 의복비, 몸 가꾸기(Körperpflege) 비용, 집안 설비(Hausrat) 유지비, 난방비, 그리고 문화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Wikipedia: Regelbedarf). 이러한 비용은 소득·소비 표본조사(EVS)를 기반으로 결정한다. 소득·소비 표본조사(EVS)는 1964년 이래 독일 연방 통계청(das Statistische Bundesamt)과 주 통계청(die Statistischen Landesämtern)이 공동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최저생계비용 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독일 전체 가구의 0.2%에 해당하는 약 7만 5천 가구를 가계 유형, 주소 득자의 사회적 지위, 가계순소득(Haushaltsnettoeinkommen)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소득과 소비 지출 형태를 분석한다. 사회부조의 기본급여 수준은 이 조사 대상 가구 중 하위 20%의 소비 규모를 분석하여 결정하게 된다. 소득·소비 표본조사에서 사회부조 기본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지출영역은 11가지이며,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18년의 경우 월평균 지출액은 434.96유로 였다(Wikipedia: Regelbedarf). 그러나 각 지출영역별 실제비중, 연동율 등을 고려하면서 실제 기본급여액은 그와 비슷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실제 지출액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참고로, 수급자유형 1의 기본급여액은 2018년 416유로였으며, 2022년 449유로이다.

31) 김태완 외(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pp.60 부문. 김문길 외(2013). 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 발전과정과 최근 주요 이슈. pp.56-57 부문을 Wikipedia 등을 활용하여 보완 및 업데이트하여 작성

〈표 2-4-5〉 2018년 소비 및 소득조사에 따른 단신가구의 기본생계지출

	지출내역	유로
1	식품, 음료, 담배 등 기호식품(Nahrungsmittel, Getränke, Tabakwaren)	150.93
2	의복, 신발(세탁비, 수선 비용 포함)(Bekleidung, Schuhe(inkl. Reinigung, Waschen, Reparatur): 10%	36.09
3	주거(임대료 제외), 에너지 및 주거유지비(수리비)(Wohnen, Energie und Wohnungsinstandhaltung)	36.87
4	가구, 설비, 가전, 가구운영비용(Innenausstattung, Haushaltsherate, Haushaltsfeuhrung)	26.49
5	건강유지(Gesundheitspflege)	26.49
6	교통비(Verkehr)	16.60
7	우편, 통신비(Post und Telekommunikation)	38.89
8	여가, 오락, 문화(Freizeit, Unterhaltung, Kultur)	42.44
9	교육(Bildungswesen)	1.57
10	여행 및 숙박(Beherbergungs- und Gaststaettendienstleistungen)	11.36
11	기타 물품 및 서비스(Andere Waren und Dienstleistungen)	34.71
	계	434.96

자료: Wikipedia: Regelbedarf

가구원의 지위에 따라 5유형의 기본급여율이 설정된다. 가구유형 1의 기본급여를 100으로 했을 때, 가구유형 2의 기본급여는 가구유형 1의 기본급여의 90%, 자녀는 연령에 따라 63-80% 선에서 결정된다. 〈표 2-4-5〉는 2022년에 적용되는 5가지 유형의 기본유형의 표준 기본급여액(Eckregelbedarfe)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구원 지위별 기본액은 다시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개인별 사정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추가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활용된다. 소득·소비 표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5년 사이 매년 기본급여액은 2014년부터 소득하위 20% 가구의 생활비 상승을 반영한 물가상승률과 순임금 상승률을 고려한 혼합지수에 연동하여 인상 조정된다.

〈표 2-4-6〉 가구원 유형별 기본급여액의 추이

	유형 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2017.1~12	409	368	327	311	291	237
2018.1~12	416	374	332	316	296	240
2019.1~12	424	382	339	322	302	245
2020.1~12	432	389	345	328	308	250
2021.1~12	446	401	357	373	309	283
2022.1~12	449	404	360	376	311	285

주) 유형1: 단신/한부모 성인 가구주, 유형2: 부부가구의 배우자, 유형3: 성인가구원(25세 미만의 성인 자녀 등 2의 관계 외 가구원 등), 유형4: 14~18세 미만 청소년, 유형5: 6~14세 미만 아동, 유형 6: 6세 미만 아동
 자료: Wikipedia: Sozialhilfe Deutschland

나) 주거비용(Kosten der Unterkunft)³²⁾

주거비용은 전기세를 제외한 총월세비(Bruttokaltmiete)와 이에 상응하는 주택유지 비용(vergleichbare Aufwendungen für Haus- und Wohnungseigentum)으로 구성된다. 주거비용의 지급 수준은 사회법 12권 29절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회법 12권 29절 1항에서는 “주거비용은 실제 필요한 액수만큼 지불해야 한다. 주거비용이 개별적 욕구에 따라 기본적 필요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주거 당사자의 소득과 자산으로 초과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³³⁾라고 규정한다. 즉 최소한의 주거비용을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 국가가 부담해 주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최소 주거비용 이상을 개별적 욕구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거 당사자 개인이 먼저 책임을 지는 보충성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주거비용 수준 결정은 개인이나 가족이 처한 상황, 지역의 월세 수준 등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적절한 주거비용은 가족 구성원 수, 연령, 성, 건강 상태, 필요로 하

32) 김문길 외(2013). 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 발전과정과 최근 주요 이슈. pp.59-60 부문, 김미곤 외(2009). 최저생계비 계층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p.127-128 부문을 BMAS 등을 활용하여 보완 및 업데이트하여 작성

33) “SGB §29 Unterkunft und Heizung (1) Leistungen für die Unterkunft werden in Höhe der tatsächlichen Aufwendungen erbracht. Übersteigen die Aufwendungen für die Unterkunft den der Besonderheit des Einzelfalles angemessenen Umfang, sind sie insoweit als Bedarf der Personen, deren Einkommen und Vermögen nach § 19 Abs. 1 zu berücksichtigen sind, anzuerkennen.”

는 공간의 크기, 지역 평균월세 수준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통상 사회부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인당 적정 주거 면적은 45㎡이며, 적정 월세는 전국 평균으로 2022년 기준 ㎡ 당 8.08유로 정도이다(BMAS, 2022). 추가적 가구원이 있다고 하여 산술적으로 적정주거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무자녀 부부의 경우에 적정 주거 면적은 60㎡이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 산술적으로 주거 면적이 1인당 30㎡씩 증가하지는 않는다. 아동 1인당 적정 주거 면적은 12㎡이기 때문이다(BMAS, 2022). 아동 연령에 따른 적정 주거 면적 차이는 없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1인으로 구성된 가족이 80㎡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이 가족이 수령할 수 있는 월 주거비용은, 본인 부담 능력이 아예 없다고 가정할 때, 약 646.4유로가 된다. 주거비용 인상률은 월세 비용 상승률을 감안하여 매년 새롭게 결정된다.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본 유지비용이 제공된다. 이러한 주거비용과 기능이 동일한 주택수당(Wohngeld)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난방비용(Heizkosten)은 중요한 주거비용의 하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난방과 온수 사용 비용을 의미한다. 다만, 온수사용비용은 중앙난방식으로 제공될 경우에만 난방비용에 계상된다.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주지의 개별 온수비용은 추가비용(Mehrbedarfe)에 반영된다. 주거 및 난방비용은 모두 소득·소비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 그러나 기본급여 산정시 주거비용에서 난방비용을 이미 일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사에서 산출된 난방 및 온수비용에서 25%를 삭감한 금액을 난방비용으로 지급한다. 자녀의 경우 난방비용은 성인의 1/2 정도로 설정된다. 이때, 기본급여와는 달리, 자녀 연령에 따른 난방비용 차이는 없다.

2) 생계급여의 산정 예시

사회부조의 핵심급여는 위에서 언급한 기본급여와 주거난방비용 외에도 개인별 특수상황을 고려한 추가급여(Mehrbedarfe)로 구성되어 있다. 추가급여는 기본급여의 일정비율로서 표시되며, 장애 등 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다. 이외에도 아주 더 특별한 개인별 상황에 따른 추가비용(예: 교육급여 등 부가급여)가 있다. 이러한 급여들 중 가장 정규적인 급여인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고려하여 독일의 사회부조급여(최저생계비)의 표준급여수준을 대략 계산해 볼 수

있다.

〈표 2-4-7〉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 비교

기본급여						
급여 기준(%)	100	90	80	84	69	63
급여 수준(유로)	449	404	360	376	311	285
구성원 지위	홀부모, 성인독신	부부가구의 배우자	25세 미만 미혼 성인가구원	14~18세 미만	6~14세 미만	6세 미만
추가급여						
급여 기준(%)	일정비율	17	17	24	12	
급여 수준(유로)	일정액	76	76	108	64	
구성원의 개인 특성	특수질환에 따른 영양보충	이동장애 보유 장애인/노인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6세 미만 아동 가진 홀부모	6~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홀부모	

주: 여기서 추가급여의 급여금액은 구성원 지위유형 1인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원래 추가급여는 구성원 지위별 기준 급여액의 비율로 산정됨.
 자료: BMASF(2022)를 토대로 재구성.

〈표 2-4-7〉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본급여의 경우 피부양 아동의 연령에 따라 세분화된 급여수준을 보장하는 점이 돋보인다. 그리고 추가급여의 경우에도 아동을 부양하는 홀부모 가구에 대한 추가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노력도 읽을 수 있다. 물론 아동양육에 드는 비용을 기본급여에 이미 반영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추가적 비용을 인정하는 것은 홀부모 가구는 부부가구에 비해 아동양육부담을 부부간 분담하지 못하는데 이를 보상하기 위함이다(BMAS, 2022).

〈표 2-4-8〉은 14세 및 5세 자녀를 둔 홀부모 가구(35세 여성 가장)를 가정한 생계급여 산정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BMAS, 2022). 이 가구의 가구주는 중증장애로 인한 장애연금(월 420유로)을 받고 있으며, 이혼한 전 배우자(남편)로부터 자녀양육비(월 500유로), 그리고 두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한 자녀당 219유로, 총 438유로)를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한편, 이 가구는 각 가구원의 지위에 따라 표준기본생계비와 함께 홀부모에 따른 추가비용, 나아가 주거비용 및 2명 자녀의 학업에 따른 비용 등의 욕구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구의 총욕구는 2,336.64유로, 총 활용가능 자원(총소득)은 1,358.00 유로로 총욕구에서 총소득을 제외한 978.64유로를 월부조금으로 지급하게 받게 된다.

〈표 2-4-8〉 생계급여 지급액 산정사례(35세 홀부모 여성 가정가구 가정)

생계비(욕구)/월/유로			소득/월/유로	
기본욕구	유형1	449.00	완전장애연금	420.00
	유형5	311.00	아동수당	438.00
	유형6	285.00	자녀양육비	500.00
추가욕구(유형1)		161.64	계(b)	1358.00
주거욕구	임대료	595.00		
	난방비	157.00		
교육욕구	학습자재비	208.0		
	학습여형비등	170.0		
계(a)		2,336.64	지급액(a-b)	978.64

자료: BMAS(2022), Sozialhilfe.

마. 함의 및 시사점

넓은 의미에서 독일의 사회부조제도는 대상자의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크게 실업자 부조제도(사회법 제2권: ALG II)와 일반부조제도(사회법 제12권: GAE 급여와 HLU 급여)로 구분된다. 전자는 실업자 등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사회문화적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 부조를 제공하는 제도이고, 후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부조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후자는 다시 근로무능력의 장기성 여부를 고려하여 GAE 급여(노인장애인 등 장기 근로무능력자)와 HLU 급여(일시적 혹은 기간을 특정하기 곤란한 근로무능력자 등)로 구분된다.

이처럼 근로능력 여부 등을 기초로 사회부조제도를 범주화 내지 체계화하여 각 집단의 특성 그리고 개별성 원칙에 의거하여 맞춤형 기초보장을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재원부담차원에서 최근 실업자 및 노인장애인의 빈곤 구제는 국가적 사무로 취급하여 그 재원을 거의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집단 구분없이 통합적이고 일원적인 부조제도를 운영하고 지자체가 부조제도의 주요 재원 부담자로 위치시키는 우리나라의 제도와는 크게 대조되는 부분이다. 나아가 독일의 사회부조제도는 특히 극빈층의 노후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인센티브(연금보험료 납부금을 욕구에 반영하거나 연금수급 시에는 소득조사에서 공제 등)를 적극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향후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때

대안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독일제도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물론 독일의 범주형 사회부조제도는 노동시장으로 편입 대상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기초보장을 강화해야 할 대상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과 복지의 효율성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분명 의의가 있다. 실제 강력한 노동촉진장치 및 제제장치를 동반하는 ALG II 급여의 도입 이후 실업자가 감소하였고, GAE 급여 도입 이후 그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소득보장도 강화한 점은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Wikipedia: Arbeitslosengeld II). 그러나 근로능력 판정을 둘러싼 논란과 불만, 나아가 강력한 제제장치(노동사무소에 제공하는 일자리의 수용 및 노동사무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급여액 감액 등)에 대한 사회적 불만도 많은 실정이다. 특히 비정규직(Minijobs 등) 근로자의 급증 등 노동시장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이에 최근 독일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ALG II 급여제도를 폐지하고 시민수당제도(Bürgergeld)를 도입했다(Wikipedia: Bürgergeld). 실질적인 내용은 기존의 ALG II 급여와 거의 동일하지만 이 제도는 급여수준(월 50유로 정도 추가)을 종전보다 더 높여 수급자의 불만을 줄이는 한편, 제제장치도 크게 완화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대상자로 포괄된 후 최초 2년간은 자가주택 및 노후보장목적의 자산 등은 아예 자산조사에 제외하고 그 외 자산에 대해서도 높은 공제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최초 2년 이후에도 보다 관대한 자산조사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보장 하에서 보다 오랫동안 교육 및 직업교육을 받고 나아가 여유로운 직업탐색 등을 통해 질 높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시민수당제 하에서는 근로능력 판정도 완전히 연금공단으로 이관하고(일반부조제도와 근로능력판정의 일원화)하여 노동사무소의 업무부담 및 근로능력 판정에 대한 불협화음도 크게 줄일 예정이다.

이러한 시민수당제도는 독일판 기본소득의 수정모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관련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독일의 시민수당제도는 논의의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최근 독일의 올라프 솔츠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사회정책에 예산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빈곤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원칙으로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

(kindergeld)³⁴⁾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가 크다(김태완·정주성, 2023). 아울러 최근에 도입되고 한국판 실업부조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향후 개선 논의에서도 독일의 사회부조제도 및 시민수당제도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국민연금의 개혁논의, 국민연금과 역할의 중복 및 충돌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의 개편 논의 나아가 기초연금과 국민기초보장제도간 역할 분담 논의와 연계하여서도 특히 독일의 GAE 제도는 우리 기초연금의 개편방안의 하나로 혹은 노후보장 강화방안의 하나로도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2. 스페인

가. 개요

스페인에서 빈곤 문제는 프랑코 독재 정권(1939-75) 이후 1970년대 후반 민주주의로 이행하면서 차츰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1987년에는 유럽경제공동체(EEC)의 빈곤 퇴치 프로그램(EEC II Program of Fight Against Poverty)에 참여하여 빈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촉진하였다(Arriba and Moreno, 2005). 이러한 참여를 통해 다양한 제도적 수준에서 빈곤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복지 프로그램의 통합과 자치 공동체에 대한 권력의 분권화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지역에 특화된 접근 방식을 가능하게 하였는데, 1990년대 포용을 위한 지역별 최저소득보장 프로그램(Rentas Mínimas de Inserción, RMI)의 시행은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지역화된 수준에서 사회 통합을 촉진하려는 스페인의 노력을 보여주었다.

1990년대 후반 스페인의 개혁은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사회 보호 시스템의 통합에 중점을 두었는데, 1995년 의회에서 승인된 톨레도 협약 (Pacto

34) 해당 제도는 아직 빈곤선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그 경계에 있는 가족이 많아짐에 따라, 사회복지조가 포괄하고 있는 의식주의 문제를 넘어 문화생활 등 아동이 사회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태완·정주성, 2023).

de Toledo)은 기여식 사회 보험과 보편적인 비기여식 급여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강조하였다. 이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안전망을 보장하는 중요한 단계로 여겨진다. 전반적으로 스페인의 빈곤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해 왔으며 보다 정확한 측정 도구와 대상 정책의 개발은 빈곤을 해결하고 사회 복지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빈곤 측정 측면에서는 빈곤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지표와 도구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사회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빈곤율을 식별 및 정량화하고, 소득 분포를 분석하고,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기여하는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최근에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국가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조화된 기준을 도입하려는 노력에 부합하여 빈곤 관련 지표 등을 유럽연합 기준에 맞추어 사용하고 있다.

스페인인 비록 지역 수준의 한정적이고 소량일지언정 남유럽 국가들 가운데에서는 최초로 최저소득보장 제도를 확립하였으나 (Panaro et al., 2023), 이러한 분산되고 파편적인 제도는 지역별로 편차가 커서(Hernández et al., 2020; Natili, 2019), 이로 인한 불평등하고 불완전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최저소득보장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2020년에서야 최초의 국가 단위의 최저생계보장(Ingreso Mínimo Vital) 급여를 도입하였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노동시장 이중화로 인한 고용 불안정과 소득 불평등 및 빈곤이 심화되어 가는 중에 Covid-19 팬데믹의 막대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도입된 측면이 있어서, 행정 및 시행 관련 조정 문제 및 낮은 수급률 등의 문제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algesini 2022; Raitano et al., 2021),

본고에서는 먼저 스페인 복지 제도가 시대별로 전개되어온 과정을 정리하고 스페인의 빈곤 측정 및 빈곤 수준을 살펴한다. 파편화되고 분권화된 스페인 복지시스템에서 최초의 국가 단위의 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입이라는 전환점을 감안하여 IMV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 도입되었는지 전개 과정 및 구체적인 제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현황 및 평가 관련 내용을 제시한다. 최근 스페인의 빈곤관련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마무리 한다.

나. 스페인의 빈곤 측정 및 빈곤 수준

1) 빈곤 측정 전개 개요

Moreno(2009)는 스페인의 빈곤 연구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스페인의 빈곤에 대한 이해를 크게 발전시키는 동시에 대중에게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는 자극제가 되었으며 특히 학계의 참여는 빈곤 연구에 대한 중요한 동기 부여로 작용하였다.

Ruiz-Castillo(1987)의 연구는 스페인 빈곤에 대한 선구적인 작업으로 인정되는데, 1980-81년에 스페인 통계청인 INE(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에서 수행한 가계 예산 조사(Encuesta de Presupuestos Familiares, EPF)를 활용하여 스페인의 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지표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것이다. EPF는 약 1,000만 가구를 대상으로 24,000개의 측정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페인 인구의 생활 수준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횡단면 샘플을 사용하여 종단 차원에서 불평등과 빈곤의 전개를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중인 자치주에 의해 분류된 스페인 가정의 차별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공통 스프레드로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Ruiz-Castillo(1987)의 연구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하자면, 이 연구에서는 불평등 측정과 관련하여 어떤 척도를 추정해야 하는지도 논의하는데, 전통적인 객관적 척도, 정보 이론에 기원을 둔 Theil 지수, Atkinson이 제안한 규범적 지수 계열, 또는 Lorenz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서로 다른 측정의 잠재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인정하더라도 가능한 모든 분포의 완전한 순위를 제공하는 일련의 지표 사용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실증 분석을 통해 고려되는 모든 규범적 속성을 충족하는 매개변수화된 Atkinson 지수 계열과 전통적인 지수를 대조하고, 자치주별 지표 순위를 비교하며, 서로 다른 자치주 내에서 기존 불평등에서 관찰된 차이의 크기를 정량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인구별 하위 그룹 내의 불평등을 조사하고, 국가 차원에서 1인당 지출의 불평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스페인의 빈곤 수준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였는데, 빈곤층은 1인당 지출이 전체 국가 평균의 절반 미만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1980-81년 EPF에 의거 분포 평균의 절반을 빈곤선으로 정하면 1인당 연간 110,188 페세타 수준이고, 인원 규모로는 1,435,307 가구(6,269,232명)가

포함되어, 전체 인구의 14.41%는 빈곤층으로 간주되었다. 빈곤 또는 1인당 평균 지출의 기존 기준 및 빈곤선 이하 가구의 특성을 지리적,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속성의 광범위한 측면에서 자세히 조사하여 빈곤 문제에 가장 취약한 그룹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자치주별 불평등 수준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인구 그룹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i) 빈곤 문제는 본질적으로 농촌 현상이며, (ii) 이주 가구의 빈곤 비율은 전국 전체보다 훨씬 낮으며, (iii) 가구의 성별에 따른 빈곤 발생률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iv) 어린이와 노인들이 노동 가능 연령대 성인보다 많은 대가족 가구들은 특히 높은 빈곤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v) 빈곤선 아래의 가구들이 대가족을 매개로 한 높은 고용률로 보상하는 경향이 없다. 또한, (vi) 실업자 주도의 가구들은 특히 농업 부문에서 빈곤 비율이 높았고, (vii) 어떤 경우에도 농업에서 일하는 인구는 비활성 인구를 제외하고 다른 사회경제적 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 발생률을 나타냈다. (viii) 주요 생계자의 교육 수준과 빈곤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ix) 1964년 임대료 해방 이후 개인 주택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엄격한 임대료 제한이 있는 주택에 사는 사람들보다 높은 빈곤 비율을 가지고 있다. (x) 마지막으로 EPF의 증거를 토대로 보호주택 정책은 극도로 소득이 높은 층을 혜택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Ruiz-Castillo(1987)의 연구 이후, Fernández-Morales et al. (1988) 및 Bosh et al. (1989) 등 스페인의 빈곤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재분배 정책을 통해 빈곤의 다양한 징후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나, 빈곤의 근본 원인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빈곤 퇴치를 위한 경제 정책의 제안 및 분석 위주로 이루어졌다.

2) 빈곤 측정 관련 데이터

가) 가계 예산 조사(Encuesta de Presupuestos Familiares, EPF)

스페인에서 가계의 지출에 대한 조사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EPF를 들 수 있다. 1958년 국립통계원(INE)³⁵에서 첫 번째 조사가 수행된 이후 지금

까지 다양한 가족예산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1964-65년 또는 1990-91년 조사와 같은 일부 구조적 조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 2006년에는 방법론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용자, 연구자 및 공식 기관의 새로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EPF는 스페인 빈곤 연구의 주요 출처로서 세 번의 대규모 조사(EPF 73-74의 24,151가구, EPF 80-81의 23,971가구, EPF 90-91의 21,155가구)로 소득 및 지출 수준을 고려하여 빈곤을 연구할 수 있다. 1970년대부터 INE의 마이크로데이터 보급으로 스페인 빈곤에 대한 실증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다.

나) 연속 가족 예산 조사(Encuesta Continua de Presupuestos Familiares, ECPF)

EPF의 주요 제한 사항 중 하나는 EPF가 약 10년마다 게시되는 빈도가 낮다는 점이다. 1985년 1월 INE에 의해 시작된 ECPF는 가계 소득의 출처와 금액, 다양한 소비 비용에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분기별 및 연간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발전을 구성하였다. 샘플의 1/8을 분기별로 갱신하는 회전 패널로서 ECPF와 EPF의 목표와 기본 구조는 일치했지만, 첫 번째 표본 크기(약 3,200가구)의 작은 표본 크기로 인해 이 출처에서 도출된 추정치에 대한 신뢰가 낮고 자치주나 지방자치단체로 세분화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997년 3/4분기에 ECPF가 재설계되어 표본을 3,200가구에서 8,000가구로 늘렸고, 이는 특정 지역 세분화뿐만 아니라 더 높은 품질 추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조사는 2005년까지 시행되었으며 2006년에 새로운 EPF로 대체되었다.

다) 유럽 연합 가구 패널(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ECHP)³⁶⁾

유럽 연합 가구 패널(ECHP)은 고정 패널 형태의 연간 소득 및 생활 조건 조사로서 INE가 스페인에서 8년 동안 수행(1994~2001년) 한 유럽 수준의 공통 설문조사이다. 이 조사를 통해 개인과 가구, 소득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매우 풍부하고 상세한 정보가 수집되었다. ECHP는 유럽 연합 14개 국가에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조사되었는데, 바로 유럽 통계청(EUROSTAT)에서 제공한 방법론적 권장 사항을 따를뿐만 아

35) <https://www.ine.es> 참조

36) <https://ec.europa.eu/eurostat/web/microdata/european-community-household-panel>

나라 공통 설문지의 사용을 기반으로 하였다. 1994년 약 8,000가구의 샘플을 기반으로 2001년까지 총 8개 차수의 자료가 구축되었다. 가계 소득은 조사 이전 연도의 연간 소득을 사용하고 설문조사의 디자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 수준과 생활 조건의 변화를 분석하여 가구와 동일한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생활여건조사(Encuesta de condiciones de vida, ECV)

유럽 연합에서는 국가별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얻을 필요성이 대두되고 ECHP를 개선하려는 필요에 따라 소득 및 생활 조건에 관한 통계(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³⁷⁾라는 새로운 통계 데이터 구축을 추진하였다. 더 높은 수준의 조화를 이루고 빈곤과 생활 조건을 더 잘 측정하기 위함이었다,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프레임워크 규정과 위원회의 여러 규정이 개발되어 데이터의 최종 획득까지 프로세스의 모든 측면을 규제하고 있다 (샘플링 및 현장 작업에 대한 규정, 정의, 변수 및 품질 보고서). 이러한 규정을 통해 좋은 품질과 국가 간 높은 수준의 비교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스페인에서 EUSILC는 생활여건조사(ECV)라는 이름을 얻었고 2004년부터 매년 실시되었다.

3) 빈곤 측정 지표

빈곤의 측정은 여러 차원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표별 장단점에 대한 여러 쟁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Moreno(2009)는 빈곤에 대한 근사치를 지출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처분 소득을 고려하여 해야 하는지의 딜레마에 관해, 스페인은 가족 예산조사(Encuesta de Presupuestos Familiares)와 연속가족예산조사(Encuesta Continua de Presupuestos Familiares) 모두 소득에 비해 지출에 대한 자료의 신뢰도가 더 높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일단의 연구자는 지출 변수를 사용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더 큰 국제적 비교 가능성의 이점과 이론적 성격의 특정 측면에 따라 소득이 일반적으로 더 나은 지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참조 변수로 소득을 사용하는 것을 선

37) <https://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

호한다. 더욱이 유럽연합 가구패널과 생활여건조사(The Living Conditions Survey, LCS)의 경우 소득의 관점에서만 빈곤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기준변수로 사용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표 2-4-9〉는 INE (2006)에서 설명하는 빈곤 측정의 주요 지표를 요약한 것이다. 주관적 빈곤은 가계나 개인이 자신의 경제적 위치/상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견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객관적 빈곤은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지표들로 측정된다. 절대적 빈곤은 개인의 기본적인 필요(재화와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으로 정의되며 절대 빈곤선은 최소한의 복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가치를 반영하여 책정된다. 목표는 기본 요구 측면에서 최소한의 만족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필수 제품(재화 및 서비스) 바구니를 구입하는 비용을 측정하는 것이다.

〈표 2-4-9〉 빈곤 측정 지표 및 정의

지표		정의
주관적 빈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나 개인이 자신의 경제적 위치/상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견에 대한 정보를 사용
객관적 빈곤	정적연구	절대적 빈곤 (Absolute Pover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기본적인 필요(재화와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
		상대적 빈곤 (Relative Pover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이 등가 소득의 분포와 관련하여 설정된 특정 임계값 이하인 경우 빈곤선: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의 60% 미만을 사용 상대적 빈곤율 Relative Poverty Rate(RPR) 불평등과 연관
	고정빈곤 (Anchored pover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의 60%)을 설정하고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정보에 적용하는 방식 소비자 물가(CPI)의 변화만 고려됨
	동적연구	지속/장기 빈곤 (Persistent pover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연도와 이전 3년 중 최소 2년 동안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경우 빈곤선: 일반적으로 중간 빈곤(중위소득의 60%)선
다차원적 결핍 (박탈)	AROPE (빈곤 위험 또는 사회적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연합 2020년 전략에서 사용하는 주요 지표 At Risk Of Poverty or social Exclusion 사회적 배제와 밀접하게 연관,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박탈 또는 접근 부족과 관련

자료: INE(2006) 토대로 저자 정리

절대빈곤선의 특징 중 하나는 인구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 에 민감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사회에서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 이 증가가 인구 전체에 균등하게 분배되더라도 절대 빈곤선을 사용하여 계산된 빈곤층의 비율은 감소한다. 널리 사용되는 이러한 절대 빈곤선 중 하나는 1인당 하루 1달러를 빈

곤에 처한 것을 고려하지 않는 데 필요한 최소 자원의 가치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 선은 글로벌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난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절대 빈곤선은 주로 저소득 국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상대적 빈곤은 소득이 등가 소득의 분포와 관련하여 설정된 특정 임계값 이하인 경우를 빈곤으로 측정하고 빈곤선은 주로 중위소득의 60% 수준이 사용되고 있다. RPR(Relative Poverty Rate)을 채택하는 경우 빈곤선은 일반적으로 기준 인구의 소득 또는 지출 분포의 산술 평균 또는 중앙값의 백분율로 설정된다. 전통적으로 스페인에서는 산술 평균 값의 50%를 고려했지만, 최근에는 국제 수준의 우세한 추세에 따라 중위 60%에 있는 빈곤 기준선을 사용하는 것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의된 빈곤선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이 중위 값 아래에는 다른 낮은 빈곤선을 고려하는 한도 내에서 소득 또는 지출 수준에 따라 다양한 빈곤 정도를 구별할 수 있도록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Moreno, 2009).

고정빈곤은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빈곤선을 (주로 중위소득의 60%)을 설정하고 이를 당해 연도의 소득 정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물가(CPI)의 변화만 고려된다. 지속빈곤은 기준 연도와 이전 3년 중 최소 2년 동안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경우로 정의하며 빈곤선은 역시 일반적으로 중위 소득의 60% 수준이 활용된다. 지속빈곤은 또한 소득, 물질적 빈곤 또는 박탈로 측정되는 상대적 빈곤과 달리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는 데 바람직하거나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재정적 어려움을 의미하는데, Eurostat³⁸⁾은 기본으로 간주되는 다음 9개 항목 중 최소 3개 또는 4개 항목을 구입 또는 지불할 수 없는 지로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 및 심각한 물질적 결핍(severe material deprivation)을 측정한다. i) 모기지(mortgage), 임대료 또는 공과금 청구서, ii) 난방 iii)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iv) 규칙적으로 고기나 단백질섭취, v) 휴가, vi) TV, vii) 세탁기, viii) 자동차, ix) 전화. 이에 따라 지속빈곤은 물질적 박탈 또는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기준 연도와 이전 3년 중 최소 2년 동안 겪을 경우로 정의된다.

빈곤 위험 또는 사회적 배제 (At Risk Of Poverty or social Exclusion, AROP E)³⁹⁾은 유럽 연합이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EU 2030 목표(The European Pillar

38)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Glossary:Material_deprivation

39)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Glossary:At_risk_of_poverty

of Social Rights Action Plan⁴⁰⁾ - EU 2030 targets)를 모니터링하는 주요 지표이며 EU 2020 전략 빈곤 목표를 모니터링하는 헤드라인 지표로, 2010년 이후 유럽의 주요 빈곤 측정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EU 2030 목표는 고용, 기술 및 사회 보호 분야에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세 가지 EU 수준의 목표로서, 빈곤과 사회적 배제는 이 중 하나이다.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수는 2030년까지 최소 1,500만 명을 줄여야 하며, 그 중 최소 500만 명은 어린이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2021년에, AROPE 지표는 새로운 EU 2030 목표에 따라 수정되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AROPE은 다음의 기준들을 하나라도 충족하는 사람들의 합계로 정의된다. 빈곤 위험(at-risk-of-poverty, AROP)에 처해 있거나 심각한 물질적 및 사회적 박탈의 위험(severe material and social deprivation, SMSD)에 처해 있거나, 근로 강도가 매우 낮은 가정에서 생활(persons living in households with very low work intensity)해야 하는 것이다. 빈곤 위험의 임계값은 사회적 이전 후 전국 균등화 가처분 소득(the national median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after social transfers)의 60%로 설정된다.

심각한 물질적 및 사회적 박탈률(SMSD)은 적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하고 바람직한 항목의 부족을 보여주는 EU-SILC(소득과 생활 조건에 대한 EU 통계,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지표이다. 사회 보호 위원회(Social Protection Committee, SPC)의 하위그룹 지표(Indicators' Sub-Group, ISG)이 채택한 지표는 특정 상품, 서비스 또는 사회 활동을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을 식별하고자, 13개의 박탈 품목(개인 차원 6개, 가구 차원 7개) 중 최소 7개의 강제적인 부족을 경험하는 인구의 비율로 정의한다.

_or_social_exclusion_(AROPE)#:~:text=At%20risk%20of%20poverty%20or%20social%20exclusion%2C%20abbreviated%20as%20AROPE,a%20very%20low%20work%20intensity.
40) <https://op.europa.eu/webpub/empl/european-pillar-of-social-rights/en/>

〈표 2-4-10〉 심각한 물질적 및 사회적 박탈 기준 항목 (13개 중 7개 이상)

가구 단위	개인 단위
①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① 인터넷 연결
② 매년 집을 떠나 1주일의 휴가를 갈 수 있는 능력	② 낡은 옷을 새 옷으로 교체하기
③ 지불 체납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 (모기지 또는 임대 지불, 공과금, 고용 구매 할부 또는 기타 대출 지불)	③ 제대로 맞는 신발 두 켤레 소지(전천후 신발 한 켤레 포함)
④ 이틀에 한 번씩 고기, 닭고기, 생선 또는 채식주의자와 같은 식사를 할 수 있는 능력	④ 매주 자신에게 소량의 돈을 쓰는 것
⑤ 집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	⑤ 정기적인 여가 활동
⑥ 개인적인 용도로 자동차/밴을 이용	⑥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친구/가족과 함께 외식
⑦ 낡은 가구 교체하기	

자료: Eurostat Glossary: Severe material and social deprivation rate (SMSD)

가구당 저근로 강도 지표는 가구 내 성인들이 전년도 총 잠재 근로시간의 20% 이하로 근무한 가구에 거주하는 0-64세의 사람들로 정의한다. 이 때 성인은 18~64세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i) 18~24세 학생, (ii) 은퇴자, (iii) 생존자 연금을 제외한 연금 수급자, (iv) 가구의 주요 소득이 연금인 60-64세 사이의 비경제활동자들은 제외한다. 참고로 64세 까지의 성인 연령 기준은 EU 2030에서 수정된 사항으로, EU 2020은 59세 까지를 성인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전통적인 빈곤 지표인 RPR과 AROPE에 대한 비교는 주로 다음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RPR은 주로 소득 빈곤만을 측정하고 사회적 배제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반면에, AROPE은 빈곤의 세 가지 차원인 소득 빈곤, 심각한 물질적 결핍, 낮은 노동 강도를 모두 고려한다는 점에서 다차원적인 결핍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RPR은 빈곤율의 지역 및 인구통계적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데 이는 스페인과 같이 지역별 편차가 큰 국가에서는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임을 감안할 때, AROPE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빈곤에 대한 보다 상세한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RPR은 가계 소득이 중위 소득의 60% 미만인 인구의 비율만을 측정하기에, 이 기준치 미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빈곤의 깊이는 고려하지 않지만 AROPE은 심각한 물질적 결핍에 처한 인구 비율과 같은 빈곤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빈곤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AROPE은 RPR에 비해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RPR은 여전히 소득 빈곤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지표이지만 AROPE의 채택은 스페인 및 기타 EU 국가에서 빈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빈곤 문제 해결 및 사회적 통합 촉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알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4) 스페인 빈곤선

현재 스페인의 빈곤선은 EU-SILC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유럽 연합의 모든 국가에 대한 빈곤 지표를 계산하는 EUROSTAT의 권장 사항을 따라 ECV를 기반으로 한다. ECV는 유럽 연합 국가의 조화된 통계 작업 세트의 일부이기도 하며, 이전 ECHP와 유사한 특성 및 목적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 조사이므로 종단 데이터도 제공한다. 약 16,000가구의 샘플을 기반으로 하며 국가 및 자치주 수준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신뢰성으로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CV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빈곤선은 빈곤 위험 임계값(At Risk of Poverty, AROP threshold)으로 중위 소득의 60%⁴¹⁾이다. 소비 단위당 소득은 전년도 총가계 소득을 소비단위수로 나눈 후 OECD 수정 균등화 척도(OECD modified equivalence scale)를 적용하여 조정한다. 균등화 척도는 소비 단위의 측정 시 가구 규모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을 반영하기 위해 가구원수와 연령 구성이 다른 가구의 개인별 가용 소득을 비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여러 기준이 존재한다(〈표 2-4-11〉 참조). 이 중 OECD 수정 균등화 척도는 첫 번째 성인에게는 1, 두 번째 성인부터는 1인당 0.5, 아동(14세 미만)의 경우는 1인당 0.3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구의 총 소득을 소비 단위로 나누어서 소비 단위당 소득을 각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할당한다.

〈표 2-4-11〉 균등화 척도 비교

가구원수	OECD 균등화 척도 OECD equivalence scale	OECD 수정 균등화 척도 OECD modified equivalence scale	Square root scale
성인 1	1	1	1
성인 2	1.7	1.5	1.4
성인 2, 아동 1	2.2	1.8	1.7
성인 2, 아동 2	2.7	2.1	2.0
성인 2, 아동 3	3.2	2.4	2.2

자료: <https://www.oecd.org/els/soc/OECD-Note-EquivalenceScales.pdf>

가계 소득에는 귀속 임대료를 포함하는데, 귀속 임대료는 시장 가격보다 낮거나 무료로 임대한 주택을 소유 또는 점유하여 임대료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가구에 적용하

41) 중위소득의 40%는 극심한 빈곤(Extreme poverty)의 임계값으로, 주로 정책평가 연구 시에 활용된다.

며, 점유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주택에 대해 시장에서 지불할 임대료에서 실제로 지불한 임대료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마찬가지로 주 거주지 구입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총 가계 소득에서 공제한다. <표 2-4-12>는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INE에서 ECV를 바탕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예시로 제공하는 빈곤 위험 임계값의 2008년부터 2022년까지의 통계 자료이다.

<표 2-4-12> 빈곤 위험(AROP) 임계값 (예시)

(단위: €)

가구원수	1인 가구		4인 가구 (성인 2 + 아동 2)	
	빈곤 위험 기준선 Poverty risk threshold	빈곤 위험 기준선 (귀속임대료 포함) Poverty risk threshold (with imputed rent)	빈곤 위험 기준선 Poverty risk threshold	빈곤 위험 기준선 (귀속임대료 포함) Poverty risk threshold (with imputed rent)
2008	8,379	9,663	17,597	20,292
2009	8,877	10,109	18,641	21,230
2010	8,763	10,141	18,403	21,297
2011	8,358	9,715	17,551	20,402
2012	8,321	9,618	17,473	20,197
2013	8,114	9,374	17,040	19,684
2014	7,961	9,291	16,719	19,512
2015	8,011	9,335	16,823	19,604
2016	8,209	9,601	17,238	20,162
2017	8,522	10,081	17,896	21,170
2018	8,871	10,371	18,629	21,779
2019	9,009	10,579	18,919	22,216
2020	9,626	11,256	20,215	23,637
2021	9,535	11,202	20,024	23,525
2022	10,088	11,857	21,185	24,900

자료: INE Riesgo de pobreza (renta año anterior a la entrevista). (Data extracted on 01 Jun 2023).

AROP 기준 빈곤 위험 외에도, 유럽연합 차원의 EU 2020 전략의 주요 지표인 AROPE 기준 빈곤 위험율도 공식 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앞서 서술한 빈곤 관련 지표의 내용과 동일하다.

5) 스페인의 최저생계비

가) IPREM (Indicador Público de Renta de Efectos Múltiples)

스페인에서는 공식적인 최저생계비는 측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IPREM (Indicador Público de Renta de Efectos Múltiples, Public Income Index Multiplier, 공공 소득 지수 승수)은 스페인에서 사회 복지관련 급여, 실업급여 및 다양한 보조금 등의 자격 및 급여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로서, 개인과 가족의 소득 기준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IPREM은 2004년 스페인에서 기준에 최저임금 (Salario Mínimo Interprofesional, SMI)이 이러한 기준으로 사용되던 것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IPREM은 스페인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의 소득과 가족 수를 모두 고려하여 조정되어 발표되며, 공공 프로그램 및 혜택에 대한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소득 척도를 제시한다. 재정 및 공공 기능부 (Ministra de Hacienda y Función Pública)에서 평균 임금 수준, 물가 상승률 등 다양한 경제적으로 요인을 고려하여 매년 적절한 승수를 결정하여 매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하여 게시된다. 그러나 <표 2-4-13>에서 나타내듯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월 532 유로로 인상 없이 동결되었으며, 2017년에도 불과 5유로 가량 인상된 537유로로 2020년까지 고정되었고, 2021년 이후에 소폭 인상되기 시작하여, 2023년 기준은 매월 600유로로 전년보다 3.6% 상승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다⁴²⁾.

<표 2-4-13> IPREM, 2004-2023

(단위: €)

연도	IPREM	연도	IPREM
2023	600.00	2013	532.51
2022	579.02	2012	532.51
2021	564.90	2011	532.51
2020	537.84	2010	532.51
2019	537.84	2009	527.24
2018	537.84	2008	516.90
2017	537.84	2007	499.20
2016	532.51	2006	479.10
2015	532.51	2005	469.80
2014	532.51	2004	460.50

자료: <http://www.iprem.com.es/>

복지 급여의 급여수준도 IPREM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보통 80% 수준으로 책정

42) https://www.lamoncloa.gob.es/lang/en/gobierno/news/paginas/2022/20221006_state-budget.aspx

된다. 비기여식 실업급여 (Non-contributory unemployment allowance) 및 45세 이상의 장기 실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적극적 통합을 위한 소득 (Active integration income) 모두 IPREM의 80% 금액의 급여를 지급 받는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최대 133% 까지 지급 가능).

그러나 2020년 스페인 최초의 전국 단위 최저소득보장급여로 도입된 IMV (Ingreso Minimo Vital, 4장 참고)의 소득과 급여 기준은 IPREM 대신 비기여식 은퇴 및 장애 연금 (pensiones no contributivas de jubilación e invalidez)의 금액을 준용한다. 스페인의 기여식 및 비기여식 연금은 IPREM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상술했듯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인상한다는 톨레도 협약을 고려하여 매년 정부가 인상률과 최소/최대 연금액을 결정하여 발표하는데, 경제상황이나 긴축재정 여부에 따라 동결되거나 물가상승률보다 작은 수준으로 인상되기도 하였다. 2021년 12월에 연금 수급자의 연금 구매력을 보장하고 공적 연금 제도인 사회 보장 연금의 재정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타 조치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Ley 21/2021)을 시행하였고⁴³⁾ 이에 따라 2023년도의 기여식 및 비기여식 연금(퇴직, 영구 장애, 사망 및 생존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의 평균 CPI에 해당하는 8.5%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IMV 급여 수준은 IPREM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지는 않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다. IMV는 2020년 도입 후 2021년과 2022년에는 대략 3% 수준으로 인상되었고, 2022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이상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물가 상승에 대한 특별 조치에 대한 법령(Real Decreto-ley 6/2022, de 29 de marzo, por el que se adoptan medidas urgentes en el marco del Plan Nacional de respuesta a las consecuencias económicas y sociales de la guerra en Ucrania)에서 추가적으로 15%를 특별인상하였다.

자치주 단위에서 IPREM와 비슷한 개념으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소득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카탈루냐의 IRSC (Indicador de Renda de Suficiència de Catalunya, 소득 충분 지표) 를 들 수 있다. 2006년 관련 법 (Law 13/2006, of 27 July⁴⁴⁾)을 제정하여 소득 충분 지표를 카탈루냐 예산법안에 주기적으로 설정하도록 하였고, 자체 사회복지나 보조금 등의 지급 시 소득 기준으로 사용하고

43) <https://www.boe.es/buscar/act.php?id=BOE-A-2021-21652>

44) <https://portaljuridic.gencat.cat/eli/es-ct/l/2006/07/27/13>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월 614.65 유로, 연 8,605.15 유로 (연 14회 지급 기준) 로 책정되었는데⁴⁵⁾, IPREM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카탈루냐는 각종 복지급여나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IRSC를 적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치주 단위의 최저소득보장 급여인 Renta Garantizada de Ciudadanía (RGC, 시민소득보장) 의 소득 자격 기준은 신청 2개월 전 소득이 IRSC 이하여야 한다⁴⁶⁾. 또한 <표 2-4-14>와 같이 사회적 주택 (Social Housing) 지원 자격 기준 등 주거 관련 지원 대상 선정 시에도 두루 활용하고 있다.

<표 2-4-14> 카탈루냐 사회적 주택 지원 자격 소득 기준

구분	가중 가구 소득 기준 (weighted family income)
특별 제도	IRSC의 2.5배를 이하
일반 제도	입증된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IRSC의 5배 이하 나머지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IRSC의 5.5배 이하
합의된 가격	IRSC의 6.5배 이하

자료: Generalitat de Catalunya

나) 기준 예산 (Reference Budgets, RB)

유럽연합에서 주로 소득 기준의 상대적 빈곤선을 활용함에 따라 기준 예산 (Reference Budgets, RB) 방식의 최저생계비는 공식적으로 측정하지 않고 있으나, 절대적인 빈곤선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자 유럽 연합 차원의 조화된 측정 기준을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차츰 관심을 받고 있다. 일례로 EU Platform on Reference Budgets(<https://www.referencebudgets.eu>)은 학계가 주축이 되어 각국의 RB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플랫폼으로 국가별 또는 초국가 단위의 RB 프로젝트 진행 현황 등도 게시하고 있다. 스페인 관련 현황은 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Fact Sheet를 아래표로 요약 정리하여 소개한다.

45) Disposició adicional 17. Indicador de renda de suficiència 1. Per a l'exercici del 2023, l'indicador de renda de suficiència de Catalunya, establert per l'article 15.2 de la Llei 13/2006, del 27 de juliol, de prestacions socials de caràcter econòmic, es fixa en 614,65 euros mensuals i 8.605,15 euros anuals.

46) https://dretssocials.gencat.cat/web/.content/03ambits_tematicos/06pobresa_i_inclusio_social/RendaGarantidaCiudadania/nou/castella/destacats_laterals/rgc_triptyc_esp.pdf

〈표 2-4-15〉 스페인 기준 예산 연구 프로젝트 현황

구분	2009	2014	2015	2019	2020
과제명 (출판물)	Presupuest os familiares (Family Reference Budgets (ES)/ Standards Budgets(UE))	Reference budgets for social participation (ImpROvE project)	Pilot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a common methodology on Reference Budgets in Europe	The cost of a healthy diet for families with 0-6 children in Barcelona (Spain), using the methodology of Reference Budgets	Spanish Sustainable Food Basket
활용	사용 중	국가 간 연구에 사용	국가 간 연구에 사용	출판 준비 중	논문 투고
대상 지역	Madrid	Barcelona	Madrid	Barcelona	Barcelona
사용 데이터	가구 예산 데이터, 전문가 지식, 포커스 그룹 의사결정	전문가 지식, 기타 조사 데이터, 포커스 그룹 의사결정, (초)국가 또는 지역별 가이드라인	전문가 지식, 기타 조사 데이터, 포커스 그룹 의사결정, (초)국가 또는 지역별 가이드라인	전문가 지식, 포커스 그룹 의사결정, 국가 및 지역별 가이드라인	전문가 지식, 국가 및 지역별 가이드라인
참여 기관	Asociación de Usuarios de Bancos, Cajas y Seguros (ADIC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Grup de Recerca en Pedagogia, Societat i Innovació amb el suport de les TIC (PSITIC) Facultat de Psicologia, Ciències de l'Educació i de l'Esport Blanquerna Universitat Ramon Llull (FPCEEB-URL) 		<ul style="list-style-type: none"> Global Research on Wellbeing (GRoW) School of Health Science Blanquerna Ramon Llull University (FCSB- URL) PSITIC (FPCEEB-URL) 	
비고	스페인 최초 RB	벨기에 CSB가 운영하는 6개 기관 참여 6개 유럽 도시 대상	벨기에 CSB, Applica 운영 54 기관 참여 2013.12월 EU RB Network project 시작	2018.12월 포커스 그룹 2019.2월 가격산정(pricing)	식품 바구니의 적용 및 지속 가능성 기준 및 가격에 대한 3단계 준수 설계

자료: <https://www.referencebudgets.eu>, COUNTRY FACT SHEET ON RBs: SPAIN

또한 유럽 위원회 공동 연구 센터 (Joint Research Centre of the European Commission, JRC)에서도 RB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는데, 절대 빈곤 측정 및 모니터링(Measuring and monitoring absolute poverty, ABSPO)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ABSPO 프로젝트는 2018년 12월에 출범한 DG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Inclusion과 JRC의 공동 이니셔티브로서 주요 목표는 빈곤 측정을 위한 기존 EU 프레임워크를 검토하고, 잠재적으로 EU 차원에서 공동으로 사용을 위하여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새로운 절대 빈곤 척도의 개발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2021년 최종 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Menyhért et al., 2021), EU 전역에서 조화로운 방식으로 새

로운 절대 빈곤 임계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기준 예산 및 설문조사 기반 통계 방법을 기반으로 한 세 가지 다른 모델링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동일한 목표 생활 수준과 최소 요구 사항을 나타내고, 동일한 모델링 도구와 데이터 소스를 특징으로 하며 세분화된 방식으로 비교 가능한 빈곤 추정치를 산출하는데, 주요 차이점은 기준 예산과 가계 조사 데이터를 서로 다른 비율로 혼합하고 대체 수단을 사용하여 가계의 최소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 ABSPO 시행은 모든 EU 회원국(데이터 부족으로 오스트리아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시범 국가인 벨기에, 핀란드, 헝가리 및 이탈리아의 여러 빈곤선을 생성하였다.

이 최종 보고서에서는 분석결과 ABSPO를 통한 빈곤 추정은 기존 상대적 빈곤 지표에 기반한 유럽의 빈곤 상황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8년 기준으로, EU 전체에서 전체적인 절대적 빈곤 발생률은 빈곤 위험(AROP) 비율과 비슷하였으나 (2018년 기준 15.2% 대 16.8%), 다차원 박탈을 추정하는 AROPE (21.6%)보다는 상당히 낮았다. ABSPO와 AROPE 비율 간의 차이는 국가 수준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중앙 및 동유럽 국가 대다수에서 절대적 빈곤은 AROPE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평균 23.9% 대 22.2%) 대부분의 EU15 회원국에서는 절대적 빈곤이 AROPE 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평균 9.1% 대 20.2%). ABSPO 빈곤은 물질적 및 사회적 박탈 지표의 국가 간 분포와 유사하지만, 더욱 불균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정된 빈곤 동향도 상이하였다. 전형적인 EU 국가에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절대적 빈곤 변동이 AROPE 비율의 변동보다 상당히 높았는데, 특히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유럽의 ABSPO 빈곤인 사람 수가 1300만명 증가했으며, 이후 회복 기간인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1800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PO 추정은 국가 내 지리적 또는 사회-인구적 차이를 고려할 때 AROPE 지표와 더 유사하며, 주관적 빈곤 및 금전적 결핍 지표와도 일치하였다.

또한 EU 수준에서 ABSPO(절대적 빈곤 측정)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재정 비용, 데이터 요구 사항 및 자원 필요성을 모델링 전략의 선택에 따라 검토하였다. 조사 기반 및 식품 기반 모델링 접근 방식의 구현은 추가적인 투자가 거의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반면에, 예산 기반 접근 방식의 구현은 새로운 방대한 데이터 수집과 조율을 필요로 하고, 제시된 모델링 접근 방식들의 호환성과 모듈러성을 고려하면, 하이브리드 또는 수정된 변형형의 구현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전반

적으로 새로운 데이터 수집, 방법론 개선 및 데이터 조율의 발전은 모든 제안된 ABSPO 모델링 전략에 동시에 혜택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국가 간 비교성과 관련 지표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선된 측정을 위해 유럽 가계 예산 조사(European Household Budget Survey)와 EU-SILC와 같은 유럽 가계 조사의 지속적인 조율과 통합,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더 세부적이고 포괄적인 마이크로데이터의 접근성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및 유럽 통계 당국의 조사 데이터 수집 대상 확장 - 가계의 최소 생활 필요와 지출, 그리고 접근하기 곤란한 인구 그룹에 대한 부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산하는데 추가적인 투자를 한다면 ABSPO 빈곤 측정의 정확성과 견고성을 더욱 개선하고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설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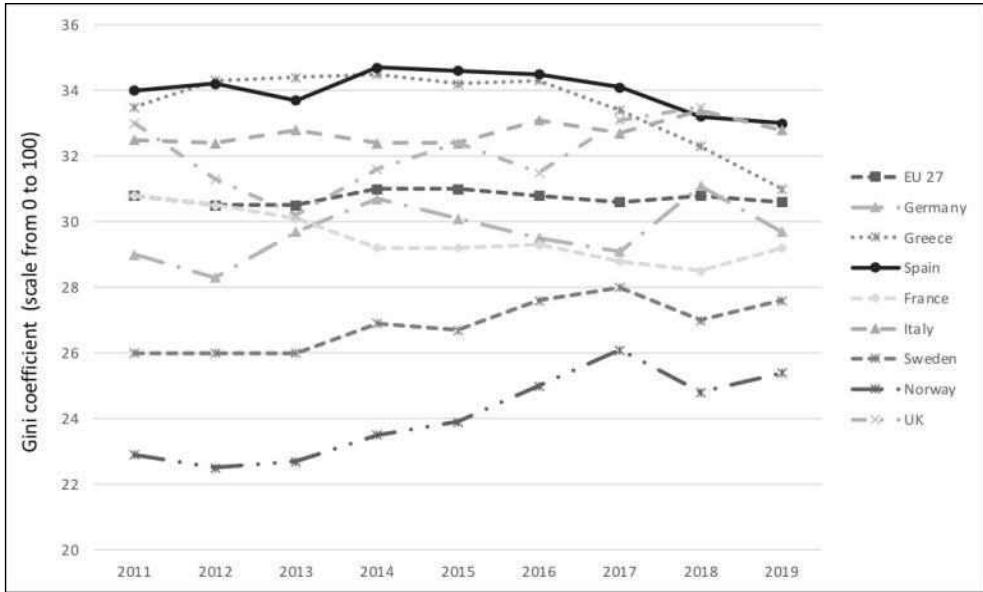
6) 스페인 빈곤 수준 및 특징

가) 전체 빈곤인구 및 빈곤율

[그림 2-4-1]은 균등화 가치분 소득 수준에 따라 정렬된 인구의 누적 비율과 그들이 받는 균등화 총 가치분 소득의 누적 비율의 관계로 정의된 지니 계수의 변화 수준과 추이를 유럽 주요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스페인과 그리스 이탈리아와 같은 남유럽 국가의 불평등 수준이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 뿐만 아니라 EU 27개국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스페인은 2013년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1-2019년 비교 국가들 대비 전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불평등을 기록하여 불평등이 상당히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다.

〈표 2-4-16〉은 EU 2020 기준에 따른 빈곤 지표들로서 INE에서 제공하는 스페인 전국 단위의 2008년부터 2022년까지의 빈곤 위험율이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회복된 2014년 이후에도 AROPE 기준 전체 인구의 사분의 일 이상이 빈곤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는데, 스페인 인구가 47백만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무려 천백만명이 넘는 규모이다. AROP 기준으로는 20%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는 인구도 7-8% 수준으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저강도 근로 가구는 2014년 최고치인 17% 수준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10% 내외 수준으로 노동 시장 불안정이 빈곤 위험으로 이어짐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2-4-1] 스페인 및 주요 EU 국가 지니 계수 변화 (2011-2019)



주: Gini coefficient of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 EU-SILC survey [TESSI190]
 자료: Eurostat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indicator (Data extracted on 01 Jun 2023).

<표 2-4-16> 스페인 빈곤 위험율 2008-2022

(단위: %)

구분	빈곤 위험율(AROPE)	빈곤 위험율(AROP)	심각한 물질적 박탈	저근로 강도 가구
2008	23.8	19.8	3.6	6.6
2009	24.7	20.4	4.5	7.6
2010	26.1	20.7	4.9	10.8
2011	26.7	20.6	4.5	13.4
2012	27.2	20.8	5.8	14.3
2013	27.3	20.4	6.2	15.7
2014	29.2	22.2	7.1	17.1
2015	28.6	22.1	6.4	15.4
2016	27.9	22.3	5.8	14.9
2017	26.6	21.6	5.1	12.8
2018	26.1	21.5	5.4	10.7
2019	25.3	20.7	4.7	10.8
2020	26.4	21.0	7.0	9.9
2021	27.6	21.7	7.3	11.7
2022	26.3	20.4	8.1	8.7

주: Indicators based on Europe 2020 strategy
 자료: INE, Tasa de riesgo de pobreza o exclusión social (estrategia Europa 2020) (Data extracted on 01 Jun 2023).

스페인 빈곤 현황의 또 다른 특징은 청년층의 빈곤율이 훨씬 심각하다는 점이다. <표 2-4-17> 에서 나타나듯이 대체적으로 연령이 어릴수록 빈곤율이 높으며, 10-20대의 경우 30%가 넘는 인구가 빈곤층임에 비하여 65세 이상은 2012년 이후 2020년을 제외하고는 빈곤 인구가 20% 미만 수준이고, 이러한 격차는 경제 위기 이후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⁴⁷⁾과 노동시장 이중화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Bentolila et al., 2021; García Pérez and Osuna 2014) 및 노년층의 상대적으로 안정된 연금 혜택이 이와 같은 현상에 기여하였으며, 이로 인한 불평등 심화는 이후 IMV 도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2-4-17> 스페인 연령별 빈곤 위험율(AROPE) 2008-2022

(단위: %)

구분	16세 미만	16-29세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2008	29.6	22.8	21.3	21.8	26.2
2009	31.9	23.6	22.9	22.7	24.9
2010	32.6	27.8	24.9	24.2	22.9
2011	31.6	30.4	26.0	25.8	21.2
2012	31.4	33.5	28.0	27.2	16.5
2013	31.9	33.0	28.0	28.9	14.5
2014	35.4	36.4	30.4	31.0	12.9
2015	33.4	38.2	28.5	31.0	13.7
2016	31.7	37.6	27.1	30.5	14.4
2017	31.0	34.8	25.0	28.0	16.4
2018	28.8	33.8	24.4	27.6	17.6
2019	30.1	31.7	24.7	26.2	15.7
2020	31.2	30.3	25.6	26.4	20.5
2021	32.5	33.5	27.3	27.6	19.8
2022	31.9	30.2	25.7	25.3	21.3

주: Indicators based on Europe 2020 strategy

자료: INE, Tasa de riesgo de pobreza o exclusión social (estrategia Europa 2020) (Data extracted on 01 Jun 2023).

교육수준별 빈곤 위험율(AROPE)을 살펴보면,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그룹의 빈곤 위험이 다른 그룹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2010년대 중반에 중등 교육 그

47) 15-19세 및 20-24세의 청년층은 2013년도 기준 각각 74% 및 51%가 넘는 실업률을 기록하였으며, 타 연령대와 달리 2019년 까지도 경제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각각 45% 및 29%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2-4-1) 참조.

룹의 40% 가까이 빈곤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도 대학교 이상 교육 그룹은 최대 15% 수준의 빈곤 위험율을 기록하여 절반 이하 수준임을 비교할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고등 이하 교육 그룹이 여전히 30%를 넘는 수준의 빈곤 위험율을 기록하였지만 대학 이상 교육 그룹은 13% 수준의 낮은 빈곤 위험율을 보였고, 이는 스페인에서 교육 수익률(return to education)이 상당하다는 점과, 교육 수준 차이에 따른 소득 격차가 빈곤 위험율의 차이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교육 수준별 평균 소득의 비율을 <표 2-4-19>와 같이 계산해 보면, 전기간 동안 대학 이상 교육 그룹의 소득이 고등 교육 이하 그룹보다 최소 1.3에서 최대 1.8배 까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18> 스페인 교육수준별 빈곤 위험율(AROPE) 2008-2022

(단위: %)

구분	Total	초등 교육 Primary education or lower	중등 교육 First stage secondary education	고등 교육 Second stage secondary education	대학 교육 Higher education	자료 없음 No data recorded
2008	22.7	32.8	25.4	18.9	9.8	30.4
2009	23.7	34.0	26.5	20.0	10.6	21.1
2010	25.2	34.7	30.1	22.1	11.2	17.4
2011	25.9	34.5	30.6	22.1	13.8	52.5
2012	26.5	33.1	33.7	24.7	13.6	75.7
2013	26.6	32.5	35.1	25.4	13.3	0.0
2014	28.1	31.6	38.7	27.5	15.3	47.4
2015	27.8	32.0	39.0	27.6	13.8	0.0
2016	27.2	31.5	37.9	26.2	14.5	29.0
2017	25.7	32.0	34.5	25.1	13.5	..
2018	25.6	33.7	33.8	25.5	12.6	..
2019	24.4	31.6	31.7	23.7	13.7	30.2
2020	25.5	36.0	32.5	26.0	13.7	0.0
2021	26.7	37.2	34.4	27.1	15.1	37.8
2022	25.2	35.6	31.6	26.3	14.6	22.5

주: Indicators based on Europe 2020 strategy.

자료: INE, Riesgo de pobreza o exclusión social (estrategia Europa 2020) por nivel de formación alcanzado (personas de 16 y más años). (Data extracted on 01 Jun 2023).

〈표 2-4-19〉 스페인 교육수준별 평균 순연소득(Renta anual neta media) 2008-2022

(단위: EUR, Q)

구분	순연소득						교육수준별 소득 비율		
	전체	초등 교육 (A)	중등 교육 (B)	고등 교육 (C)	대학 교육 (D)	자료 없음	(D) / (A)	(D) / (B)	(D) / (C)
2008	11,251	8,950	9,504	11,592	15,728	10,138	1.8	1.7	1.4
2009	11,855	9,401	10,074	11,848	16,805	12,844	1.8	1.7	1.4
2010	11,835	9,380	9,947	11,835	16,728	16,615	1.8	1.7	1.4
2011	11,362	9,097	9,440	11,458	15,913	8,550	1.7	1.7	1.4
2012	11,297	9,252	9,312	11,128	15,661	8,627	1.7	1.7	1.4
2013	11,068	9,179	9,042	10,847	15,123	9,491	1.6	1.7	1.4
2014	10,904	9,193	8,662	10,697	14,720	11,841	1.6	1.7	1.4
2015	10,919	9,095	8,636	10,577	14,923	13,797	1.6	1.7	1.4
2016	11,223	9,230	8,880	10,976	15,301	8,179	1.7	1.7	1.4
2017	11,606	9,465	9,183	11,252	15,755	..	1.7	1.7	1.4
2018	11,892	9,466	9,534	11,344	16,103	..	1.7	1.7	1.4
2019	12,214	9,904	9,904	11,666	16,165	12,238	1.6	1.6	1.4
2020	12,932	10,402	10,557	12,244	16,630	12,536	1.6	1.6	1.4
2021	12,865	10,223	10,218	12,323	16,558	11,353	1.6	1.6	1.3
2022	13,648	10,868	10,961	12,906	17,461	12,370	1.6	1.6	1.4

주: Indicators based on Europe 2020 strategy.

자료: INE, Renta por persona y unidad de consumo por nivel de formación alcanzado (personas de 16 y más años). (Data extracted on 01 Jun 2023).

European Commission(2022)의 Education and training monitor 2022 스페인편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스페인의 25-34세 사이의 3차 교육(대학) 완료율은 48.7%로 EU 평균 41.2%보다 높으나, 18-24세 사이의 교육 및 훈련 중도 탈락율은 13.3%로 EU 평균 9.7%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적별로 구분해 보면 두 지표 모두 스페인 국적보다 외국국적인 경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높은 중도 탈락은 결국 학력 격차에 따른 소득 수준 차이와 저학력 집단의 높은 빈곤 위험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격차는 장기적으로 더욱 확대됨에 따라 빈곤의 고착화로 귀결됨을 인식하여, 스페인 정부는 아동 청소년의 빈곤문제와 교육 훈련을 통한 사회 편입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빈곤 예방 및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5장 참고)의 주요 전략목표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2-4-20〉 교육 훈련 부문 지표

구분	스페인		EU		EU 2030 목표
	2011	2021	2011	2021	
EU 차원 목표					
교육, 훈련 중도 탈락 (18-24세)	26.3%	13.3%	13.2%	9.7%	< 9 %
3차 교육(대학) 완료 (25-34세)	40.3%	48.7%	33.0%	41.2%	≥ 45 %
기타 지표					
교육, 훈련 중도 탈락 (18-24세)	스페인 국적	23.1%	11.3%	11.9%	8.5%
	EU 출생	39.2%	28.5%	25.3%	21.4%
	Non EU 출생	41.6%	22.0%	31.4%	21.6%
고등 교육 완료 (20-24세)		62.0%	78.8%	79.6%	84.6%
3차 교육(대학) 완료(25-34세)	스페인 국적	45.3%	54.0%	34.3%	42.1%
	EU 출생	28.8%	38.5%	28.8%	40.7%
	Non EU 출생	21.6%	30.1%	23.4%	34.7%
교육 투자 공공 지출	GDP 대비	4.4%	4.6%	4.9%	5.0%
	정부 일반 지출 대비	9.6%	8.8%	10.0%	9.4%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2), Figure 1 Key indicators

다음으로 성별 빈곤 위험율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표 2-4-21〉에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여성의 빈곤 위험율(AROPE)이 남성보다 최대 2-3% 가량 높지만, 연령이나 교육 수준별 격차에 비하면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2-4-21〉 스페인 성별 빈곤 위험율(AROPE) 2008-2022

(단위: %)

구분	빈곤 위험율 (AROPE)		빈곤 위험율 (AROP)		심각한 물질적 박탈		저근로 강도 가구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08	22.4	25.1	18.4	21.2	3.7	3.5	6.1	7.0
2009	23.8	25.6	19.4	21.3	4.6	4.4	7.2	8.0
2010	25.5	26.7	20.1	21.3	4.7	5.1	10.6	11.0
2011	26.1	27.4	19.9	21.4	4.5	4.6	12.9	13.8
2012	27.3	27.2	20.7	20.9	6.2	5.5	13.8	14.8
2013	27.9	26.7	20.9	19.9	6.3	6.1	15.9	15.4
2014	29.4	28.9	22.4	22.1	7.0	7.1	17.0	17.2
2015	29.0	28.3	22.5	21.8	6.6	6.3	15.8	15.1
2016	28.0	27.9	22.6	22.1	5.3	6.2	14.9	14.8
2017	26.0	27.1	21.0	22.2	4.9	5.3	12.4	13.2
2018	25.1	27.0	20.9	22.2	5.3	5.5	10.1	11.2
2019	24.6	26.0	20.2	21.1	4.6	4.8	10.0	11.7
2020	25.6	27.2	20.2	21.7	6.9	7.0	9.7	10.1
2021	27.0	28.3	21.1	22.2	7.2	7.4	11.3	12.1
2022	25.4	27.1	19.8	21.1	7.8	8.3	8.1	9.3

주: Indicators based on Europe 2020 strategy

자료: INE, Tasa de riesgo de pobreza o exclusión social (estrategia Europa 2020) (Data extracted on 01 Jun 2023).

나) 지역별 빈곤율

지역간 빈곤 위험의 편차를 살펴보기 위해 INE의 자치주별 빈곤 위험률(AROP) 자료를 <표 2-4-22>과 같이 정리해보면, 전국단위의 빈곤 위험률은 경기회복이 시작된 2014년-2016년 동안 오히려 증가하였고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21년에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다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치주별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부 및 내륙 지역 (Extremadura, Andalucía, Murcia, Ceuta, Castilla - La Mancha) 및 도서 지역 (Canarias) 의 자치주에서는 빈곤 위험률이 30%에 육박하는데 반하여 Navarra, País Vasco 자치주는 10% 내외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22> 자치주별 빈곤 위험률(AROP) 2008-2022

(단위: %)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전국	19.8	20.7	20.8	22.2	22.3	21.5	21.0	20.4
Andalucía	27.3	28.3	28.3	33.3	35.4	32.0	28.5	29.1
Aragón	14.9	14.2	14.5	16.9	15.7	14.2	16.0	15.0
Asturias, Principado de	13.2	11.5	13.0	16.7	13.4	14.0	22.2	20.1
Balears, Illes	18.1	22.7	19.9	17.9	15.5	15.4	14.1	16.9
Canarias	30.7	29.7	33.6	27.6	35.0	32.1	29.9	29.4
Cantabria	14.3	20.1	17.7	20.6	15.3	19.9	18.0	14.8
Castilla y León	17.5	19.5	15.9	20.4	17.7	16.1	15.1	17.8
Castilla - La Mancha	26.4	28.3	30.0	28.4	31.7	29.9	25.1	26.1
Cataluña	12.3	14.7	15.8	15.8	13.2	13.6	16.7	14.5
Comunitat Valenciana	23.6	22.7	25.0	26.2	24.4	26.0	24.6	22.3
Extremadura	35.3	35.7	29.4	33.1	30.4	37.6	31.4	30.0
Galicia	20.9	18.1	18.3	15.4	19.0	18.8	22.1	18.0
Madrid, Comunidad de	14.9	14.4	14.2	14.7	18.2	16.1	15.4	14.8
Murcia, Región de	24.5	29.8	25.2	37.2	28.9	28.6	25.0	26.3
Navarra, Comunidad Foral de	5.9	10.7	7.0	11.9	9.0	8.9	9.9	10.9
País Vasco	9.1	11.7	13.3	10.2	9.0	8.6	10.0	12.2
Rioja, La	16.2	21.2	16.8	16.2	11.9	16.6	15.0	16.6
Ceuta	40.1	31.3	32.2	44.3	36.0	38.3	35.3	34.8
Melilla	17.7	25.8	8.6	19.2	21.8	21.4	36.3	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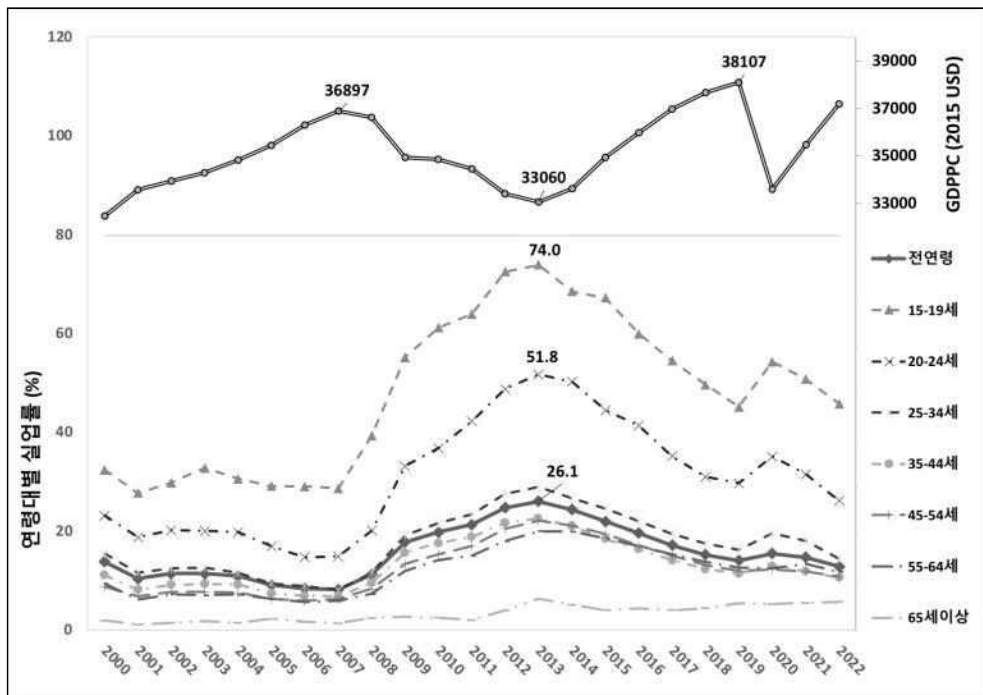
주: 빈곤 위험률은 At-risk-of-poverty rate (AROP) 기준으로 빈곤 임계값은 중위소득의 60%.

자료: INE. Tasa de riesgo de pobreza por comunidades autónomas (Data extracted on 01 Jun 2023).

다. 스페인 최저생계소득: Ingreso Mínimo Vital(IMV)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및 부동산 거품 붕괴로 시작된 스페인의 극심한 경기 침체는 2013년 실업률이 25%를 넘어서는 등 1940년대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로 손꼽히고 있다(Rahman, Galván, and Martínez, 2017; Royo, 2013). [그림 2-4-2]에서 보듯이 2014년부터 점차 경기가 회복세에 있으나 강도 높은 노동유연화 조치와 긴축 재정으로 실업률은 쉽사리 감소하지 않았으며 특히 젊은층의 고용에 큰 타격을 주었다. 15-19세 및 20-24세의 청년층은 2013년도 기준 각각 74% 및 51%가 넘는 실업률을 기록하였으며, 타 연령대와 달리 2019년 까지도 경제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각각 45% 및 29%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4-2] 스페인 연령대별 실업률 및 GDP 변화 (2000-2022)



주: GDP per head, constant prices, constant PPPs, OECD base year, based on expenditure approach; provisional values for 2020-2022 data.

자료: OECD.Stat, LFS by sex and age - indicators table and National Accounts - Annual National Accounts table (Data extracted on 01 Jun 2023).

잇따른 노동개혁으로 비정규직 및 단시간 근로가 급증하여 고용의 질이 악화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고착화되고(Ferreiro and Gómez, 2023), 긴축 재정 하에 복지 재원은 축소되어 불평등과 빈곤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자치주별 개별적인 프로그램(Rentas mínimas de inserción, RMI)을 보완하는 전국단위의 최저소득 보장 제도 도입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점진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추진되는 와중에 2020년 초 Covid-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받으면서 실업 증가 및 경기 침체에 더욱 취약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최저소득보장 제도 도입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2020년 6월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의 생계지원을 위한 전국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Ingreso M´ 1 nimo Vital (IMV, 최저생계소득)이 도입되었다. IMV는 기본적인 생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보장의 보호 조치의 일부로서, 경제적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며, 수혜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사회적 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최저소득보장 도입을 위한 논의 및 전개 과정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부동산 거품 붕괴로 스페인 경제는 큰 타격을 받고 높은 실업률과 경기 침체를 겪게 되어, 경제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 노동조합 (Confederación Sindical de Comisiones Obreras - CCOO, Unión General de Trabajadores, UGT), 고용주 단체 (Confederación Española de Organizaciones Empresariales - CEOE 스페인 기업 단체 연합, Confederación Española de la Pequeña y Mediana Empresa - CEPYME, 스페인 중소기업 단체 연합)가 참여하는 노사정 교섭의 추진되었으며, 2014년 7월 29일에 "경제 성장과 고용을 강화하기 위한 삼자 협상을 위한 제안 (Acuerdo de 29 de julio de 2014, de Propuestas para la Negociación Tripartita para fortalecer el crecimiento económico y el empleo⁴⁸)" 이 서명되었다. 이 제안서의 5항에 사회적 보호 관련 협력 분야가 포함되었는데 사회복지 및 실업수당의 완전한 지원범위

48) https://www.lamoncloa.gob.es/serviciosdeprensa/notasprensa/Documents/Documento%20Acuerdo%2029%20de%20julio_DEFINITIVO.pdf

제시를 위한 전체적인 지도(Mapa completo de prestaciones sociales)를 작성하는 것과,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최저소득 혹은 기본소득(Rentas mínimas o básicas de Inserción)의 현재 모델을 평가하고 보호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하며 고용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하였다. 고용 소득이 없는 74만 가구를 기본적인 지원대상으로 하되, 최대 6개월 이내에 협상 테이블을 구성하여 사각지대 식별에 중점을 두어 중앙정부와 자치 정부의 사회보장 분야를 조정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을 명시하고, 이러한 사회 보호 관련 조치들은 고용 관련 다른 조치들과 동등한 중요성을 가짐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기로 선택함에 따라 2015년 4월 21일에 CCOO (Comisiones Obreras) 및 UGT (Unión General de Trabajadores) 노동조합은 70만 이상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시민 입법 제안(Initiativa Legislativa Popular, ILP)을 등록하여 최저소득보장 제도 도입을⁴⁹⁾ 요구하였다. 이는 스페인의 최저소득보장 제도 도입의 주요한 첫걸음으로 여겨지며, 이 제안에서 최저소득보장의 목표는 근로가능 연령대에 속하고 일할 의사가 있지만 취업기회와 충분한 수입이 없어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고, 따라서 보조금이나 고용 관련 급여를 모두 소진하거나 해당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최후의 급여로 설정하였다. 대신 수급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한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급여 수준은 IPREM의 80%와 수준으로 설계하였다. 노동조합에서 이와 같이 최저소득보장의 입법을 지원하게 된 배경은 경제 위기 후 2010년에서 2015년 까지도 실업률의 큰 폭의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업자의 보호가 부족한 상황에서 200만명 실업자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고용의 질 역시 심각하게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다⁵⁰⁾.

2017년 2월, 스페인 하원은 사회보장 보호분야에서의 최저소득보장 설정을 위해 이 제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주로 보호받지 못한 장기실업자와 빈곤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월 431유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이 법안 제안은 최저소득 및 기

49) PROPOSICIÓN DE LEY DE INICIATIVA LEGISLATIVA POPULAR PARA ESTABLECER UNAPRESTACIÓN DE INGRESOS MÍNIMOS EN EL ÁMBITO DE PROTECCIÓN DE LA SEGURIDADSOCIAL (<https://www.ccoo.es/b878b78da8a9fb2d586f18548b5395f2000001.pdf>)

50) http://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3100:0::NO::P13100_COMMENT_ID:3241952

본소득과 같은 다른 제안들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였으며, 전반적인 사회보호 지원범위를 재검토할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야기하였다. 새로운 급여를 도입하는 것과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 또는 빈곤과 불평등과의 싸움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더욱 중점을 두는 것 등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 졌으며, 정당에 따라 최저소득보장제도가 불평등과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과 기술 진보로 인한 미래에 대비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여기거나, 혹은 불필요하고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조치로 여겨서 기존 보호 수단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Santa Cruz, 2019).

2018년 3월에는 내각 회의(el Consejo de Ministros)에서 재정 책임 독립 기관 (Autoridad Independiente de Responsabilidad Fiscal, AIReF)에게 최저소득보장 제도에 대한 분석을 맡기기로 승인하여, 이는 "스페인의 최저 소득 프로그램 (Los programas de rentas mínimas en España)"이라는 연구로 구체화되었다. AIReF가 수행한 연구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달리 스페인은 빈곤에 대응할 일반적인 사회보장급여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최저소득보장 체계는 파편화 되어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함을 강조하고, 전반적으로 지급액이 낮고 보호 범위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최저소득보장 프로그램이 특히 자격 조건 중 하나가 실업자인 경우 노동 시장 진입에 대한 동기부여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직면한 가장 복잡한 문제 중 하나는 모든 국가들에서 빈곤선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2019년 3월에는 내각 회의 의결로 2019-2023년 사회적 배제와 빈곤 예방을 위한 국가 전략(Estrategia Nacional de Prevención y Lucha contra la Pobreza y la Exclusión Social 2019-2023)이 승인되었는데, 이 전략은 유럽 사회와 특히 스페인에서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주요 과제로 식별하고 있다(5장 참조).

2014년 이후 경기 회복추세에도 불구하고 실업률과 빈곤이 감소하지 않고 불평등이 확대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2019년 치러진 두 차례의 총선 (4월 28일, 11월 10일) 결과 빈곤과 불평등 완화를 위시한 사회적 시장경제 기조를 내세운 사회당(Partido Socialista Obrero Español, PSOE)과 포데모스당(Unidas Podemos)의 진보연합 정부가 출범하였고, 전국단위의 최저생계보장 프로그램의 도입 역시 정책 목표로 포함되었다. 양당이 합의한 진보정부 구상안 (Programa para un Gobierno

progresista⁵¹⁾)의 2.4.2 항 (Desarrollaremos el Ingreso Mínimo Vital como prestación de Seguridad Social)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으로 IMV를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고⁵²⁾, 2020년 1월 페드로 산체스 (Pedro Sanchez) 총리의 취임 연설⁵³⁾에서도 전국단위의 IMV 도입을 통해 취약계층의 빈곤 완화와 노동 시장 참여 촉진을 추진할 것을 확인하였다⁵⁴⁾.

이와 같이 호의적인 정책 환경이 조성된 후 얼마지 않아 IMV 도입이 급물살을 탄 것은 스페인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사회경제적 위기가 가중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신속한 보호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국가 중 하나로 2020년 3월 15일에 급격한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엄격한 봉쇄 조치(national lockdown)를 시행⁵⁵⁾하였고, 경제적 제한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감소하여, 저소득 가구, 비정규직 종사자 및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처한 개인들을 포함한 많은 취약 가구가 심각한 재정적 불안정과 기본적인 생활 필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졌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21만 여명이 확진되었고, 11.9%에 달하는 2만6천여명이 사망하였다 (Euro Surveill. 2020).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스페인 정부는 팬데믹으로 촉발된 심각한 사회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IMV를 신속히 도입하였다. IMV 시행을 위한 법안(Real Decreto-ley 20/2020, de 29 de mayo, por el que se establece el ingreso mínimo vital. vital⁵⁶⁾) 은 2020년 5월 29일에 공포된 후 2020년 6월 10일 하원에서 최종 승인되어, 6월 15일자로 시행되었다. 도입 당시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취약계층 최소 85만 가구 (230만명)에 즉시 지원을 목표로 하였고, 그 중 100만 명의 극빈층(연간 3,000 유로 미만의 소득)과, 55만 명의 심각한 빈곤층(연간 3,000 유로에서 4,300 유로 사이의 소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51) <https://www.psoe.es/media-content/2019/12/30122019-Coalici%C3%B3n-progresista.pdf>

52) “Comenzaremos en un primer momento por el aumento decidido de la prestación por hijo/a a cargo para familias vulnerables, y posteriormente mediante un mecanismo general de garantía de renta para familias sin ingresos o con ingresos bajos.”

53) <https://www.lamoncloa.gob.es/presidente/intervenciones/Paginas/2020/prsp04012020.aspx>

54) “Vamos a aumentar la prestación por hijo a cargo para las familias vulnerables y, más adelante, aplicaremos una garantía de renta para familias sin ingresos o con ingresos muy bajos. La meta, en consecuencia, Señorías, es acabar implantando en nuestro país un ingreso mínimo vital que rescate de la pobreza a los sectores más vulnerables.”

55) Real Decreto 463/2020, de 14 de marzo

56) <https://www.boe.es/eli/es/rdl/2020/05/29/20/con>

또한 IMV는 최저 소득층의 빈곤을 완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통합과 포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자치주와의 협력과 협조를 통해 사회통합 전략을 수립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이 수급자를 고용하도록 유인을 제공하여, 정해진 조건 하에서 급여 수령과 병용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였다⁵⁷⁾. 실제로 IMV는 기존의 자치주별 최저소득보장 프로그램 (RMI, Rentas Mínimas de Inserción) 과 병행 가능한데 근로소득 및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받아도 소득기준 충족 시 지원 대상이 되며, 특히, 고용 촉진을 위해 근로 시작으로 인한 추가 소득 발생 시 일부만 소득 계산에 포함하도록 설계되었다.

2) 자격기준 및 급여지급 방식과 그 수준⁵⁸⁾

가) 자격기준

□ 나이 및 거주요건

23세 이상의 단독 거주자를 기본 자격으로 하며,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 연속하여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스페인에 거주하여야 하고, 1인 가구의 경우 1년 이상 (23-29세 사이인 경우 2년 이상),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1년 이상 독립된 가구로서 거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타가구와 공동거주 하더라도 미혼이거나 (별거나 이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동거(domestic partnership) 중인 상대가 없거나, 공동거주 유닛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23 -29세 사이인 경우, 스페인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이며, 지원 전 최소 2년간 단독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성범죄 피해나 별거나 이혼 절차를 시작하여 거주지를 떠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30세 이상인 경우 지원 전 최소 단독 거주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성관련 범죄나 인신매매 혹은 성착취 피해자인 경우 나이든 여성도 지원 대상이다.

18세에서 22세 사이의 타 자치주의 미성년자 보호 거주 시설에서 거주한 경우에도 지원 자격을 인정하는데, 성년이 되기 3년 전 미성년 보호를 위한 공공단체에서 후견

57) 2020.5.29. 내각 회의 공포 내용 참고

(<https://www.lamocloa.gob.es/consejodeministros/resumenes/Paginas/2020/290520-cministros.aspx>)

58) 스페인 정부 공식 사회보장 포털 Seguridad Social (<https://www.seg-social.es>) 의 관련기준을 정리

을 받았거나, 이러한 공동거주 시설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고아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노숙자는 지원 자격이 되며, 사회적, 의료관련, 혹은 공공보건 거주시설 영구 거주자는 제외하는데 이 경우에도 성관련 범죄나 인신매매 혹은 성착취 피해 여성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결혼, 동거(2년 이상), 또는 친족(2등급 이내⁵⁹⁾, 배우자,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또는 조손)으로 구성된 공동거주의 가구주 역시 위의 기준 나이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독거주 기준이나 공동거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성관련 범죄 피해 여성으로 미성년 자녀를 동반하여 퇴거하였거나(입양이나 영구적인 가족 위탁 양육을 목적으로 위탁 양육을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별거, 혼인 무효 또는 이혼 절차의 시작(공식적으로 구성된 미혼 부부의 해산 포함), 입양 또는 영구적인 가족 위탁 양육을 목적으로(위탁 양육에 자녀 또는 미성년자를 동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퇴거하였거나, 동거를 중단한 경우 등이며, 신청자는 해당되는 경우 자녀의 양육권과 후견인을 할당하는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 소득기준

경제적 취약 상황에 있어야 하며, 경제적 취약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개별 지원자 또는 동거 단위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모든 구성원의 자원을 계산하여, 전년도의 평균 월 소득 및 계산 가능한 연간 소득이 동거 단위의 양식 및 구성원 수에 따라 IMV에서 보장하는 월 금액보다 최소 10유로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모두의 근로, 자본, 연금(기여식, 비기여식) 소득을 합산하고, 총액에서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분 차감하여 월평균 소득을 계산한다. IMV 급여는 1인 가구의 경우는 비기여식 연금 급여의 100%로 책정되며, 공동 거주 가구의 경우, 가구원 1인 당 30% 씩 인상하되, 한도는 220%이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위의 30% 인상분에 추가로 22%를 인정한 금액이다.

기존 자치주별 RMI 및 장학금, 주거급여, 긴급지원 등 일시적, 특수 목적 공공부조 종류 및, 기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비과세소득 중 일부 조

59) "...the second degree by consanguinity or affinity, adoption, and other persons living with them for the purpose of adoption or permanent foster care"

향을 비합산한다. IMV의 인식은 그 원인이나 수혜자의 신원이 있는 경우 장애가 없거나 장애가 33% 미만인 부양 자녀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경제적 수당의 인식과 양립할 수 없다. 또한 IMV 급여액이 부양자녀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재정지원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IMV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만, 이는 최저 생활 소득 수혜자를 담당하는 아동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수당 권리가 소멸된다.

□ 자산기준

1인가구는 거주 중인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및 금융 순자산(부채 차감)의 합이 연간 IMV 보장금액의 3배 (2023년에는 20,353.62유로) 이하여야 한다. 2인 이상 가구일 경우는 거주 중인 주택을 제외한 자산이 가구원 수별로 <표 2-4-23> 금액 이하여야 한다. 또한, <표 2-4-23>에 표시된 것보다 더 큰 가치로 주 거주지가 없이 비기업 자산(non-corporate assets)을 소유한 경우에도 순자산의 평가금액에 관계없이 자격을 제한한다. 또한 자산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자 또는 가구원이 회사의 법정관리인일 경우는 자격을 탈락한다.

<표 2-4-23> 가구원수별 자산기준(2023년)

동거 단위 coexistence unit	자산기준		비기업자산 기준	
	Incremental Scale	한도(EUR)	Incremental Scale	한도(EUR)
성인 1	1	20,353.62	1	40,707.24
성인 1, 미성년자 1	1.4	28,495.07	1.4	56,990.14
성인 1, 미성년자 2	1.8	36,636.52	1.8	73,273.03
성인 1, 미성년자 3	2.2	44,777.96	2.2	89,555.93
성인 1, 미성년자 4인 이상	2.6	52,919.41	2.6	105,838.82
성인 2	1.4	28,495.07	1.4	56,990.14
성인 2, 미성년자 1	1.8	36,636.52	1.8	73,273.03
성인 2, 미성년자 2	2.2	44,777.96	2.2	89,555.93
성인 2, 미성년자 3인 이상	2.6	52,919.41	2.6	105,838.82
성인 3	1.8	36,636.52	1.8	73,273.03
성인 3, 미성년자 1	2.2	44,777.96	2.2	89,555.93
성인 3, 미성년자 2인 이상	2.6	52,919.41	2.6	105,838.82
성인 4	2.2	44,777.96	2.2	89,555.93
성인 4, 미성년자 1	2.6	52,919.41	2.6	105,838.82
기타	2.6	52,919.41	2.6	105,838.82

자료: SeguridadSocial (<https://www.seg-social.es>)

□ 구직등록

IMV의 도입 목적이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를 줄이고 사회 편입을 촉진하는데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복지 의존도를 낮추고 근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비근로자는 반드시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2023년부터 노동 시장에 진입하거나 고용 시간을 늘리는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 인센티브가 발효되었다⁶⁰⁾. 이는 수급자가 이미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센티브가 없었을 때보다 더 높은 가처분 소득을 보장하여 근로 동기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수급자가 별도로 요청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산정한다. IMV 심사 시 활성화되며, 일자리를 찾거나 일자리 여건이 개선되어 근로 소득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활성화된다. 구체적으로, IMV 수급자는 자신의 가구 유형별 기준 보장 소득의 최대 60% 한도까지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 증가분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증가가 보장 소득의 60%에서 100% 사이일 때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이 경우 금액은 다음의 3가지 항목에 따라 결정된다. 첫째, 미성년자의 유무(자녀가 있는 가구에 더 높은 인센티브), 둘째, 가구 구성(한부모 가정 및 장애인에 대해 더 높은 인센티브), 셋째, 노동 시장과의 이전 관계(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됨)가 고려되는 변수들이다. 소득 보장 한도의 100%를 초과하는 급여 인상의 경우에도 인센티브는 더 약화된 형태로 지급된다.

나) 급여수준

상술하였듯이, IMV의 급여 기준은 다른 복지급여나 보조금과 달리 IPREM 대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책정되는 비기여식 연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IMV 보장 소득과 수급자의 소득 간의 차액을 지급하며, 2023년 월 보장 소득액은 1인 가구의 경우는 연간 비기여식 연금 금액의 100%를 12로 나눈 값인 565.37유로이다. 수혜자의 장애 정도가 65% 이상인 경우 이 금액의 122%를 적용한다. 2인 이상 가구는 1인 가구 기준금액을 가구원 1인당 30% 증액하되 최대 한도는 220%까지로 한다.

60) Real Decreto por el que se regula la compatibilidad del ingreso mínimo vital con los ingresos procedentes de rentas del trabajo (IMV와 근로소득의 양립성을 규제하는 칙령). <https://revista.seg-social.es/-/20220927-incentivo-empleo> 참조

〈표 2-4-24〉 가구원 수 및 구성 별 IMV 급여 금액 비교(2023년)

(단위: €)

동거 단위 coexistence unit	비 한부모 가구		한부모 가구		한부모 가구 (중증 장애)	
	연간 급여	월간 급여	연간 급여	월간 급여	연간 급여	월간 급여
성인 1	6,784.44	565.37				
성인 1, 미성년자 1	8,819.88	734.99	10,312.44	859.37		
성인 1, 미성년자 2	10,855.20	904.60	12,347.76	1,028.90		
성인 1, 미성년자 3	12,890.52	1,074.21	14,383.20	1,198.60		
성인 1, 미성년자 4 이상	14,925.96	1,243.83	16,418.52	1,368.21		
성인 2	8,819.88	734.99				
성인 2, 미성년자 1	10,855.20	904.60			12,347.76	1,028.98
성인 2, 미성년자 2	12,890.52	1,074.21			14,383.20	1,198.60
성인 2, 미성년자 3 이상	14,925.96	1,243.83			16,418.52	1,368.21
성인 3	10,855.20	904.60				
성인 3, 미성년자 1	12,890.52	1,074.21				
성인 3, 미성년자 2 이상	14,925.96	1,243.83				
성인 4	12,890.52	1,074.21				
성인 4, 미성년자 1	14,925.96	1,243.83				
기타	14,925.96	1,243.83				

주: 한부모 가구(중증 장애)는 부모, 조부모, 후견인 또는 수양부모 중 한 명이 중증 장애인 경우를 말함
 자료: SeguridadSocial (<https://www.seg-social.es>)

가구원 구성별 2023년 금액은 〈표 2-4-24〉와 같다. 또한 65퍼센트 이상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동거 단위에 포함되는 경우 22%를 추가로 지급하고, 미성년자에 대해 월 별 자녀 양육비도 추가로 지급한다. 해당 회계 연도의 1월 1일에 도달한 연령에 따라 동거 단위의 각 미성년자(신청일 기준)에 대해 3세 미만 어린이는 115유로, 3세 이상 6세 미만은 80.50유로, 6세 이상 18세 미만은 57.50유로를 지급한다.

다) 급여 신청 및 지급기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처리기한은 제출일로부터 6개월까지다. 이 기간이 명시적인 해결 없이 경과되면 신청서가 거부된 것으로 이해될 것이지만, 국립 사회 보장 연구소는 제출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더라도 제출된 신청서를 명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출된 신청서가 승인되면 2020년 6월 1일부터 소급하여 경제적 효과를 유지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기관은 신청서를 허용하기 전에 제출된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혼자 살거나 동거 단위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혜자가 경제적 취약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을 거친다. 불가능 여

부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발행되며, 불가능 여부에 한해 사전 행정 불복이 가능하다. 관리 당국은 새로운 검증을 수행하여 경제적 취약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신청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혜택을 받을 권리는 신청서 제출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이 권리는 자격을 충족하고 법에 규정된 요건과 의무가 충족되는 동안 계속 유효하다. 권리 정지 수급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지되는데 수혜자, 보유자 또는 동거 단위의 구성원이 혜택을 이용함으로써 맡은 의무를 일시적으로 위반한 경우, 예방 조치로, 수혜자, 보유자 또는 동거 단위의 구성원이 수립된 요구 사항 또는 관리 기관이 결정한 혜택에 접근함으로써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한 증거가 있는 경우,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관리 기관에 사전 통지하지 않고 적절한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혜택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또한 예방 조치로 IMV 소셜 중재자 등록부에 입력된 사회 서비스 또는 사회 활동 제 3자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의 유지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규정된 기간 내에 통신을 받지 못한 경우, 명시적으로 예견된 경우, 근로 소득 또는 자영업 경제 활동 소득과 최소 필수 소득의 양립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타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 개인 소득세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세금 규정에 명시된 조건 및 기한에 따라 납세자 지위를 가진 사람이 다음 기간 동안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급여는 정지된다. IMV 수급 권리 정지는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의 첫 번째 날 또는 관할 관리 기관이 사유를 알게 된 달의 급여 지급 정지를 수반하며, 정지가 1년 동안 유지되면 급여를 받을 권리가 종료된다. 다만, 정지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3) 빈곤선과 복지급여 비교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2010)에서는 최저소득보장 급여의 충분성 평가 기준(the adequacy benchmark for MI schemes)은 최소한 AROP 임계값인 중위 소득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감안하여 IMV급여가 최저생계소득으로 충분한지 빈곤 위험(AROP) 임계값과 비교한 결과는 표 <2-4-25>와 같이 성인 단독 가구의 경우는 60% 내외 수준으로, 성인 2명과 미성년자 2명의 4인 가구의 경우

는 52-5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귀속임대료를 포함하지 않은 빈곤선 대비 급여 수준으로, 귀속임대료 포함 시에는 각각 50%, 45% 수준으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불충분한 급여 수준을 보여준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단독 가구에 비해 IMV 소득보장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존의 지역별 최저소득보장(RMI) 프로그램 역시도 가구 규모에 대한 민감성 부족과 함께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취약성이 매우 높은 수준의 아동 빈곤을 설명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EC 2015). IMV 도입 이전의 자산심사 소득보장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빈곤의 위험을 충당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지만(Ayala et al., 2021; Noguera, 2019), IMV 역시 낮은 급여수준으로 설계되어 많은 개선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스페인의 RMI는 주로 중위소득 40% 이하의 극심한 빈곤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지적하는데 (Hernández et al., 2020), IMV 역시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책정된 급여 수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최빈곤층의 감소에 보다 중점을 두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표 2-4-25〉 빈곤 위험(AROP) 임계값(중위소득 60%)과 IMV 급여 비교

(단위: €, %)

구분	성인 1					성인 2 미성년자 2				
	IMV	AROP	비율	AROP (rent)	비율	IMV	AROP	비율	AROP (rent)	비율
2020	5,538	9,626	58	11,256	49	10,522.20	20,215	52	23,637	45
2021	5,727.4	9,535	60	11,202	51	10,882.06	20,024	54	23,525	46
2022	5,899.6	10,088	58	11,857	50	11,209.24	21,185	53	24,900	45

주: 연간 기준 금액, 빈곤 위험 임계값(AROP)은 중위소득의 60%, AROP(rent)는 귀속임대료 포함.
 자료: SeguridadSocial, IN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지급 현황 및 평가

2020년부터 3년간의 누적 수급자 수는 총 187만명 수준으로, 성인 106만명과 미성년자 81만명, 성별로는 여성 101만명과 남성 85만명이 수급을 받았다. 자치주별로는 최대 안달루시아에서 60만명, 뒤를 이어 발렌시아, 카탈루냐 및 마드리드에서 각각 21만명, 18만명, 17만명이 수급을 받아서, 이 4개의 자치주의 수급자가 총 62% 가량을 차지하였다. 또한 수급자의 62%가 20개월 이상 IMV를 받았으며, 수급자의 54%가 헤

택을 받기 전 3년 동안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많은 수급자가 심각한 빈곤 상황에 처해있음을 보여준다(AIReF, 2023).

〈표 2-4-26〉 IMV 수급자 현황: 자치주, 유형, 성별, 2020년 6월 ~ 2023년 6월 누적

(단위: 명)

자치주	수급자 수	수급자 유형		수급자 성별	
		성인	미성년자	여성	남성
계	1,868,172	1,059,902	808,270	1,010,939	856,913
ANDALUCÍA	596,431	342,546	253,885	320,722	275,629
ARAGÓN	49,225	26,798	22,427	26,365	22,851
ASTURIAS	40,027	25,084	14,943	22,777	17,248
BALEARS	22,294	12,270	10,024	11,898	10,392
CANARIAS	74,555	48,128	26,427	42,733	31,806
CANTABRIA	17,408	10,144	7,264	9,666	7,741
CASTILLA - LA MANCHA	80,946	43,949	36,997	43,501	37,440
CASTILLA Y LEÓN	83,164	47,147	36,017	44,962	38,191
CATALUÑA	179,081	94,442	84,639	94,951	84,097
COMUNITAT VALENCIANA	205,725	115,848	89,877	111,549	94,148
EXTREMADURA	64,799	37,197	27,602	35,341	29,452
GALICIA	83,546	49,602	33,944	46,456	37,081
MADRID	174,376	95,700	78,676	95,131	79,199
MURCIA	84,949	45,180	39,769	44,870	40,060
NAVARRA	18,809	10,565	8,244	10,322	8,483
PAÍS VASCO	55,791	35,870	19,921	30,270	25,487
RIOJA (LA)	13,691	7,488	6,203	7,277	6,413
CEUTA	10,958	5,827	5,131	5,672	5,277
MELILLA	12,397	6,117	6,280	6,476	5,918

자료: SeguridadSocial. (<https://www.seg-social.es>)

연도별로는 2021년과 2022년 기준 각각 28만 가구 수준이나 이는 2021년 기준 잠재 수급가구의 40% 수준(2022년 기준 35%)으로, 추정 예산의 57% 수준의 16억 유로만 실제 지급 되었으며(2022년 기준 47% 수준인 19억 유로 실제 지급) 되어(AIReF, 2022; AIReF, 2023) 적격자의 비수급(non take-up) 문제가 정책 당국의 주요한 관심을 받게 된다. 적격자의 비수급은 잠재적 수혜자가 가장 많은 자치 지역(안달루시아, 카탈로니아, 발렌시아 및 마드리드), 성인 단독 가구 및 잠재적 이득이 최저소득보장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AIReF, 2023). 이를 해결하고자 스페인 정부는 비수급 적격자 발굴 및 동원 프로젝트 (DETECCIÓN Y

MOVILIZACIÓN DE LAS PERSONAS ELEGIBLES PARA EL INGRESO MÍNIMO VITAL EN SITUACIÓN DE NON TAKE-UP, NTU)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적격자 비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장애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2년 11월부터 전국 단위로 학계와 시민사회(European Anti-Poverty Network, EAPN Spain)가 협력하여 진행 중이며, 포용, 사회보장 및 이민부(Ministerio de Inclusión, Seguridad Social y Migraciones)에서 유럽연합 재정을 사용하여 진행 중인 포용과 빈곤 관련 4개의 과제 중 하나이다. 표 <2-4-27>은 EAPN Spain의 카탈루냐 지역 NGO 네트워크 총괄인 카탈루냐 제3사회 부문 단체(Taula d'entitats del tercer sector social de Catalunya)의 과제 담당자들을 인터뷰⁶¹⁾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표 2-4-27> IMV 비수급 적격자(Non-take up) 발굴 및 동원 프로젝트

구분	주요내용
목적	비수급 적격자(NTU) 발굴 및 동원을 위하여 구체적인 비수급 요인 파악
잠재 장애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V와 관련된 특정 요인: IMV의 성격과 고용 및 기타 RMI와의 호환성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 ▪ 사회경제적, 사회문제적 요인: 저학력, 정보격차, 사회적 배제 등 ▪ 대면 접촉, 서비스 창구 또는 사회단체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부족 또는 불충분
장애요소별 조치 및 outrea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V에 대한 무지나 잘못된 정보를 해소하기 위해 안내 및 상담을 진행 ▪ 사회 경제적, 사회 문화적 장벽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친밀감, 공감 및 후속 조치를 통해 개인화된 코칭 제공 ▪ 접촉 부족 또는 이전의 부정적인 경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분산된 지역에서 온라인 신청서 제출을 위한 개인화된 대면 지원
주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census tract)별로 잠정 수급대상자(중위소득 40% 이하)가 많은 지역을 선정 ▪ 19개 자치주에 총 200개씩 처치 및 통제 지역(node) 선정 (노드별 평균 NTU 30명) ▪ 처치 지역에 IMV 캠페인 및 담당자가 상주(일주일에 하루)하여 동행(outreach) 등 신청을 도와줌으로서 개입 ▪ 개입 전,후 서베이 진행
진행 단계	<p>① 2022.11-12월: 노드 발굴 node detection</p> <p>② 2023.1-3월: 접근</p> <p>③ 2023.4-6월: 개입 intervention (action)</p> <p>* 결과는 2024년 상반기 1차 보고서 발행 예정</p>

비수급 적격자 문제 외에도 IMV의 집행 및 관리 측면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높은 거부율이다. 2021년 기준 신청서의 64%가 기각 되었는데(2022년 기준 69%), 42%는 소득 기준 미충족 때문이고, 22%는 거주(동거 단위) 관련 자격

61) 2023.7.13. 대면 인터뷰 진행

기준에 미달이 원인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또는 중앙정부 관련 부처내의 정보 교환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소득, 부, 세금 및 복지 혜택에 대한 데이터의 상호 연결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소득 및 수당에 대한 보편적 신고, 특히 자치주에서 RMI 지급액을 균일하고 일관되게 업로드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정보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해 RMI 수급자를 IMV로 즉시 이전할 수 있으며, 다른 사회적 혜택을 관리하거나 보다 표적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원자의 소득에 대해 매월 제공되는 정보를 더 많이 활용하여 지급 급여 결정 시 금액의 조정 및 수정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적격 소득 기준의 정의를 단순화할 가능성도 있다(AIReF, 2022; AIReF, 2023).

이 외에도 신청서 처리 속도가 느리고 신청 서류 및 절차의 복잡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Covid-19 팬데믹으로 관리 인프라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도입된 까닭에 실제 관리 기관의 대응 능력에 대한 사전 평가 없이 디지털화가 강제로 급히 진행되었고, 중앙-지방정부간 조정과 협력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처리 기관은 행정부가 소유한 신청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어서 신청자들이 개별적으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해서 신청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기관에서는 각 신청서 파일에 대한 개별 분석을 하느라 처리 기간이 평균 2달 가량(AIReF, 2022) 소요되었다. 또한 IMV를 기본 혜택으로 상정함에 따라 이를 먼저 신청하거나 IMV의 거부를 문서화한 후 RMI를 신청할 수 있게 된 점도 절차상의 어려움과 지연을 가중하였다. 이러한 관리 및 처리 지연은 추가적인 문제도 야기할 수 있는데, IMV를 소급 적용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 기간 동안 수령한 RMI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특히 심각한 빈곤층에 불안을 야기했고, IMV의 신청을 꺼리는 원인이 되었다 (Malgesini, 2022).

라. 시사점 및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페인은 북유럽 국가대비 미약한 복지국가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파편화되고 복잡한 사회보장 체계는 경제위기 이후 심화되고 고착된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기에는 여러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진보연합 정부 집권 이후 최초로 전국 단위 최저소득보장을 도입하고 아동 및 청소년

년 빈곤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최근에는 많은 개선을 이루었다. 스페인 사례에서 눈여겨 볼 점은 지방분권화가 지리적인 불평등 및 효율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 차원의 사회적 보호가 미약할 때 이를 대신하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여 빈곤 완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시민사회의 활발한 참여와 협력의 긍정적인 측면도 참고할 만하다. 스페인의 빈곤 관련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가 유럽 빈곤 퇴치 네트워크(EAPN)의 스페인 지부의 각 자치주별 네트워크로 연결됨에 따라, 유럽 차원의 공동 이니셔티브 추진과 스페인 전국 및 자치주 단위에서의 협력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시민사회 부문의 동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스페인 정부, 학계와 시민사회와 적극 협력하여 IMV 적격자 비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진행하는 것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은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보여진다.

또한 고용 시장 이중화와 청년 실업이 심각한 점은 한국과 스페인의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페인은 2022년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개혁을 단행(Real Decreto-ley 32/2021, de 28 de diciembre, de medidas urgentes para la reforma laboral, la garantía de la estabilidad en el empleo y la transformación del mercado de trabajo)하여 정규직 계약(permanent contract)이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22년 첫 7개월 동안 세 배로 증가하였다.

이 법안은 임시 계약의 다양성을 단순화하고 기간 제한 및 임시 계약 지속 연장에 대한 처벌을 설정하였고, 그 결과, 임시 고용은 7월까지 39% 감소했다. 이러한 고용 패턴 변화의 주요 수혜자는 25세 미만과 55세 이상이었다. 이들에 대한 무기한 고용 계약의 수는 2019년에 비해 4배 증가했고 기간이 정해진 고용 계약의 수는 8배 이상 감소했다(Garcia, 2022). 단기적으로는 고용 안정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개혁이 실행된지 아직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에 중장기적인 생산성과 고용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기에는 이르다. 만약 이 노동개혁이 고용 시장 이중화를 완화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면관계상 본문에서는 생략하였지만 카탈루냐 자치주에서는 대규모의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Renda Bàsica Universal)를 추진⁶²⁾ 중이다. 총 5천명(개

62) 2023.1분기 시행 예정이었으나 예산 심의 의회에서 부결되어 보류 중이며, 프로젝트 관련 내용은 2023.7.11. 카탈루냐 주정부 파일럿 프로젝트 팀(Oficina del Pla Pilot per Implementar la Ren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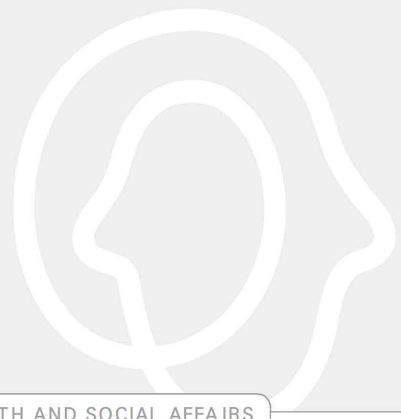
인 2500명과 인구 1300명 정도의 지방자치단체 2곳)에 월 800 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규모로서, 기존의 기본소득 실험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부족한 정보들을 (기존의 수급대상이 아닌 청소년 여성 등 소외집단)에의 정책 효과를 추정하고, 정신건강이나 웰빙 등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무시되던 새로운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평가 추가) 파악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이와 같은 대규모 기본소득 실험이 추진된 이유 중의 하나는 최저소득보장 급여 금액이 너무 낮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들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이다. 특히 기본소득 금액(800 유로)의 충분성에 관해서는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존의 최저소득보장 급여 수준으로는 인간적인 품위를 가지고 생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기본소득의 추진 방향 관련해서는 유럽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장기적으로 최저소득보장 급여와 통합을 추진하는 쪽과, 현실적으로 최저소득보장 금액을 어느 정도 올려나가면서 기본소득을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병행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방향이든 기본소득이 사회취약계층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기존의 복지혜택을 대체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인 기본소득네트워크(BIEN)의 결정이며 카탈루냐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다. 실제로 이 실험이 실행될 수 있을지는 정치적 상황에 달려있지만, 기본소득 논의가 유럽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요인들 중에는 결국 최저소득보장의 충분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저소득보장 개선 관련 논의에 있어서, 결국 어느 정도 수준의 빈곤을 퇴치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지,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생계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겠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3장

국민생활실태조사

제1절 국민생활실태조사 개요

제2절 기초분석

제 3 장 국민생활실태조사

제1절 국민생활실태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의거 3년마다 수급자 실태조사 및 급여기준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의 규모와 이들 집단에 대한 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평가를 위해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 및 분석하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였으며, 최저생계비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였다. 또한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규모를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본 실태조사는 시기별로는 2022년 수행된 국민생활실태조사와 2023년 1월 수행된 가격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조사내용으로는 가구일반조사와 부가조사 그리고 가격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가구일반조사와 부가조사는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민생활실태조사는 전국 표본 조사구 내 일반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 수행했던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등 기 수행되었던 조사들과의 연속성을 고려한 문항들과 새로운 정책 및 연구 수요를 반영한 가구 일반조사(가구일반사항, 생활비, 소득, 부채, 자산, 생활여건, 건강 및 의료 실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일반 사항 등)와 부가조사(심층조사, 서비스대상 조사)로 구성된다. 가격조사는 통계청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 없거나, 가격이 잘 나타나지 않는 품목에 대한 가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품목의 시장가격을 파악하는 조사이다. 가구일반조사와 부가조사가 동시에 수행된 것에 비해 가격조사는 품목의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수행되었다.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는 기 수행된 국민생활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일반 및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실태, 복지욕구 실태, 전물량·상대적·주관적 최저생계비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에 초점을 두고 조사표를 구성했다. 가구일반조사에서는 가구 일반사항, 소득 및 지출, 자산 및 부채, 주거 및 박탈 등 생활여건, 건강 및 의료, 에너지 등에 대한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였다, 부가조사는 심층조사와 서비스 대상 조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심층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인가구, 1인가구에 대해 수행되었으며, 부가조사는 정책 대상별 추가비용 산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가구, 노인가고,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심층조사에서는 제도 인지경로, 관련 인식, 신청 및 수급 현황, 수급이력, 수급 및 탈피 사유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주요 실태와 현황과 함께 월평균 생활비 등 저소득층의 주요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일반조사와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심층조사는 모든 조사대상 가구가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4인가구 심층조사와 1인가구 심층조사는 적정성 평가 등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4인 가구만을 조사대상으로 한 4인 가구 심층조사에서는 4인 가구의 생활비 비목별 지출 금액과 내구연수, 사용량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했다. 본 조사에서 기존 조사와 차별적으로 1인 가구 비중 증가와 빈곤층에 다수 분포하고 있는 1인가구의 특성 및 급여 적정성 파악을 위해 1인가구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가구일반조사의 기준 시점은 2021년 12월 31일(소득 등 유량은 2021.1.1.~2021.12.31.)이며, 심층 및 서비스대상 조사의 경우 문항별 특성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2021년 1년간, 현재시점 등에 대해 설문하였다.

가구유형별 조사에서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 따른 추가 또는 감소 비용을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가구는 조사대상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함께 거주할 경우 조사를 진행하였고, 편모 또는 편부와 자녀가 가구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한부모 가구로 조사하였다. 또한 가구원 중에 장애인이 함께 거주할 경우 장애인가구 조사를 수행하였다. 장애인가구와 한부모가구의 경우 해당되는 대상 가구에 대해 모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표본수가 많은 노인가구의 경우는 대표성을 고려하여 노인이 있는 가구의 약 삼분의 일을 목표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표 3-1-1〉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조사 내용

구분	조사내용	
가구 일반 조사	I. 가구일반사항	가구원수, 가구원 일반사항, 가구 일반사항
	II. 월평균생활비	비목별 생활비, 주관적 최저생계비
	III. 소득	총사상 지위별 가구원 근로소득, 원천별 가구 소득(근로소득 제외)
	IV. 부채·이자	부채액, 부채 형태 및 이자 지출액 조사
	V. 자산	소유 및 점유 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 농축산물, 가상자산, 기타재산 등
	VI. 주거	집의 유형, 방의 개수 및 주택면적, 주거 점유형태, 주택가격
	VII. 생활여건	박탈지표, 빈곤경험, 1인가구 및 4인가구 생계비에 대한 주관적 인식
	VIII. 건강 및 의료	외래·입원 비용, 월평균 건강보험료, 의료비에 대한 가계 부담 인식 등
	IX. 에너지	보온 및 난방을 위해 사용한 에너지 유형 및 사용 비용 등
부가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심층조사*	월평균 생활비,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일반, 기간별 수급여부 등
	장애인가구조사	일상생활 수행 정도, 소득 및 장애인 관련 서비스
	노인가구조사	노인 가구원의 지출(품목 필요 및 보유 여부, 사용기간, 평균비용)
	한부모가구조사	한부모 가구의 지출(품목 필요 및 보유 여부, 사용기간, 평균비용)
	4인가구 심층조사	식품비, 주거비, 피복 및 신발비, 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1인가구 심층조사	1인가구 생활실태(일상생활을 위한 돌봄 필요 및 정도, 애로사항 등)
가격조사	피복 및 신발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등	

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심층조사의 경우 실태조사의 모든 조사대상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부문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경험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부문이 모두 수록되어 있어 가구일반조사와 부가조사의 성격을 모두 가짐

2.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⁶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급여기준의 적절성, 사각지대 규모 추정 등을 포함한 맞춤형 급여 제도에 대한 평가와 수급자 및 수급가구의 욕구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표성과 체계성을 담보한 표본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는 2020년 인구센서스 조사구를 표본추출 모집단으로

63) 표본추출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에 별도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하여 17개 시도별로 층화(1차 층화), 조사구 특성별(보통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로 층화(2차 층화) 등 다단계 층화군집표집으로 총 18,000가구 추출하여 1,500개 조사구(조사구당 12가구⁶⁴)를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지도원 및 조사원 24개팀, 101명이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개별면접조사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22년 9월 13일에서 2022년 12월 19일까지 약 4개월간이며, 최종 18,000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18,000가구 중 2,568가구(214개 조사구)는 대체 표본으로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표본 대체율은 14.27%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가구 단위조사를 기본으로 가구유형별 심층 조사의 경우에는 가구원조사도 병행하였다.

〈표 3-1-2〉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최종 조사 완료 수

(단위: 부)

목표부수	완료부수	심층조사			서비스대상조사		
		기초생활보장	4인 가구	1인 가구	장애인	노인	한부모
18,000	18,000	1,495	2,801	2,558	1,985	2,199	213

64) 조사구 내 가구추출은 선정된 표본조사구의 가구명부추출목록에서 조사구별 가구일련번호를 활용하여 랜덤으로 최초가구를 설정하고 추출간격을 계산하여 계통추출법으로 12가구를 표본가구로 선정하였다.

제2절 기초분석

1. 분석집단 구분

가. 분석 집단 구분 방법

본 절에서는 앞서 설명한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후 제4장에서는 심화적인 분야별 욕구분석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먼저 기초분석 결과 제시에 앞서 일반실태 및 욕구분석에 활용된 분석의 집단구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분석집단은 총 9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경상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과 비교하여 구분하였다. 본 집단 구분에서 ‘(1) 수급’ 집단은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로 정의하였으며, 특례 수급 등 일부수급의 경우는 수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다.⁶⁵⁾ 또한, 생계 및 의료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가구들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따라 급여별 기준선⁶⁶⁾인 생계급여 기준 30%, 의료급여 기준 40%, 교육급여 기준인 50%로 각각 구분하였고, (법정)차상위계층⁶⁷⁾과 더불어 잠재적으로 정책의 수혜 가능성이 있는 집단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 60%, 75%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살펴보았다. 그 이상 집단에서는 경상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즉, 중위소득이 되는 기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들 집단은 상호배타적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구분된 소득집단은 아래와 같으며, 9개의 분석집단을 기준으로 일반실태 및 욕구별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욕구별 실태분석에서는 욕구 특성에 따라 집단의 구분을 달리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

65) 제10장 대상자 포괄성 평가 부분의 비수급 빈곤층 규모 추정에는 수급가구에 특례 수급 등은 포함하고 있다.

66) 주거급여의 경우 급여기준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45%선으로 본 연구의 일반실태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으며, 제4장 욕구별 실태 중 ‘제3절 주거욕구’ 실태에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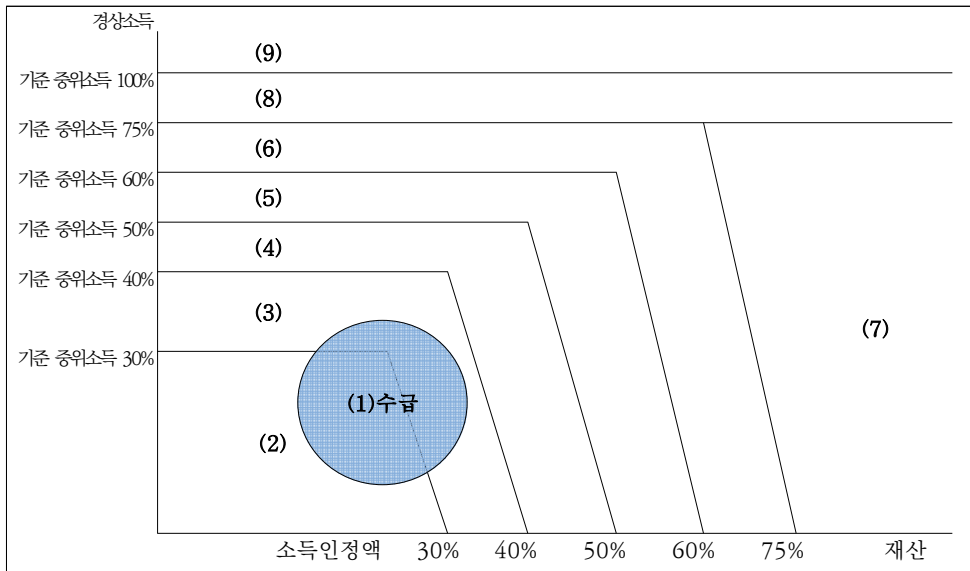
6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로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표 3-2-1〉 분석 집단 구분

소득계층 분류		
	생계+의료 수급 여부 ¹⁾	분류 기준
그룹 (1)	수급	생계+의료 수급 가구
그룹 (2)	비수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그룹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초과, 40% 이하
그룹 (4)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초과, 50% 이하
그룹 (5)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60% 이하
그룹 (6)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 75% 이하
그룹 (7)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초과이면서, 경상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그룹 (8)		경상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초과, 100% 이하
그룹 (9)		경상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주 1) 특례 수급 등 일부수급은 비수급으로 간주

[그림 3-2-1] 분석 집단 구분



2. 가구 일반적 특성

수급가구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54.4%, 중소도시 41.7%, 농어촌 3.9%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기준 중위소득 30~40% 이하 가구에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율이 12.4%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수급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20명,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1.47명, 기준 중위소득 30~40% 이하 1.37명 등 저소득층에 분포할수록 평균 가구원수가 적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가구규모별 비율은 전체가구의 경우 1인 가구 32.8%, 2인 가구 28.3%, 3~4인 가구에서 20% 내외 수준이었으며, 반면, 수급가구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비수급 빈곤층에 해당하는 집단의 경우 1인 가구의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급가구의 경우 1인가구의 비중이 86.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기점으로 경상소득이 높은 집단에서는 경상소득이 낮은 집단에 비해 1인·2인 가구의 비율은 적고, 3인·4인 가구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표 3-2-2〉 가구 일반적 특성

(단위: %)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8
대도시	54.4	60.4	42.5	45.8	46.4	48.3	42.2	43.5	42.7	43.8	
중소도시	41.7	32.8	45.1	43.8	47.5	46.6	47.9	49.7	52.1	50.1	
농어촌	3.9	6.8	12.4	10.4	6.1	5.1	9.9	6.8	5.2	6.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	25.3	23.7	15.6	21.9	16.0	22.0	17.6	15.9	19.2	18.9	
경기	21.4	13.0	17.1	18.4	17.8	22.8	21.3	22.9	26.6	24.6	
광역시/세종/창원	30.7	40.0	29.4	25.9	32.1	27.2	28.3	30.0	26.5	27.7	
그 외 지역	22.7	23.3	37.9	33.8	34.2	27.9	32.9	31.2	27.7	28.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가구원 수(명)	1.20	1.47	1.37	1.53	1.56	1.68	1.96	2.47	2.50	2.29	
가구 규모	1인	86.0	65.3	71.0	64.0	66.3	60.2	35.1	24.0	25.9	32.8
	2인	10.5	25.1	23.5	25.1	20.5	21.7	44.6	32.8	26.1	28.3
	3인	1.9	8.0	4.2	6.6	7.4	10.3	11.7	21.5	23.8	19.6
	4인	1.2	0.9	1.0	2.6	3.7	5.8	6.4	16.3	20.8	16.1
	5인	0.3	0.8	0.0	1.6	1.3	2.0	2.1	4.8	3.1	2.9
	6인 이상	0.2	0.0	0.4	0.1	0.8	0.0	0.2	0.6	0.3	0.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가구형태별 가구분포를 보면, 수급가구를 비롯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의 경우 단독가구가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타가구로 수급가구의 경우 10.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가구에서는 기타 가구 비율이 30% 내외를 점유하고 있었다. 또한, 수급가구를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가구에서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3-2-3〉 가구형태별 가구분포

(단위: %)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단독가구	86.0	65.3	71.0	64.0	66.3	60.2	35.1	24.0	25.9	32.8
모자가구 ¹⁾	3.1	2.2	3.3	3.8	3.4	3.0	0.5	1.1	0.4	0.8
부자가구 ²⁾	0.6	0.0	0.0	0.0	0.0	1.2	0.0	0.5	0.1	0.2
소년소녀 가장가구 ³⁾	0.2	0.2	0.2	0.2	0.0	0.2	0.4	0.2	0.0	0.1
기타가구 ⁴⁾	10.1	32.3	25.5	32.1	30.3	35.4	64.0	74.2	73.6	66.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1) 어머니와 만 18세미만 자녀.
- 2) 아버지와 만 18세미만 자녀.
- 3) 조손가구 포함.
- 4) 위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전체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가구원이 있는 비율은 28.7%이고, 수급가구의 경우 40.3%로 나타났으며, 비수급 집단의 가구에서도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노인 가구의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가구원이 있는 비율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며, 특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40% 이하 가구의 경우 약 75% 정도가 노인이 있는 가구로 나타났다. 반면 수급가구의 아동가구원이 있는 비율은 4.6%로 소득계층이 높은 집단에 비해 대체로 낮은 비율을 보인다.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수급가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35.0%)을 보였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비수급 집단에서는 약 10~25% 정도의 비율을 보인다.

〈표 3-2-4〉 노인 가구, 아동가구, 장애인 가구 유무별 가구분포

(단위: %)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8
노인	무	59.7	44.3	25.1	40.7	49.8	59.0	36.6	65.2	83.9	71.3
	유 ¹⁾	40.3	55.7	74.9	59.3	50.2	41.0	63.4	34.8	16.1	28.7
아동	무	95.4	95.3	96.2	91.1	89.6	88.4	90.8	73.4	74.7	78.9
	유 ²⁾	4.6	4.8	3.8	8.9	10.5	11.6	9.2	26.7	25.3	21.1
장애인	무	65.1	77.4	83.4	83.8	86.8	88.5	85.0	89.6	94.1	90.2
	유 ³⁾	35.0	22.6	16.6	16.2	13.2	11.5	15.0	10.4	5.9	9.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2) 만 18세 미만 아동 있는 가구

3) 장애인(보훈처등록 포함) 있는 가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전체 가구는 대부분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결과에서 94% 정도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분포하고 있는 결과와 비교시 노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전체의 9.2%가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점에서 노인 가구의 농어촌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인 비수급 집단에서 노인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도 대부분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율은 대부분의 소득집단에서 5% 정도만 존재하였다. 특징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경우 아동이 있는 가구가 농어촌에 분포하는 비율이 9.8%로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노인이 있는 가구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율이 전체가구 6.2%였던 것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8.1%)을 보인다. 장애인이 있는 가구 중 수급가구는 4.5%가 농어촌에 거주하며, 이는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낮은 비율이다. 특징적으로 장애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의 농어촌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5〉 노인 가구, 아동가구, 장애인 가구의 거주지역 분포

(단위: %)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8
노인 ¹⁾	대도시	56.1	53.1	42.4	39.5	41.8	47.8	45.7	43.2	48.9	46.9
	중소도시	38.9	36.7	44.1	46.8	47.4	43.8	43.2	47.0	43.7	43.8
	농어촌	5.0	10.2	13.5	13.7	10.8	8.4	11.2	9.7	7.4	9.2
아동 ²⁾	대도시	42.1	44.8	14.6	48.7	34.4	37.8	37.1	37.4	39.5	39.0
	중소도시	53.7	45.5	80.5	51.3	63.0	60.1	53.5	57.5	56.1	56.2
	농어촌	4.3	9.8	4.9	0.0	2.6	2.1	9.5	5.0	4.5	4.8
장애인 ³⁾	대도시	50.9	50.8	45.1	52.7	33.4	42.5	41.1	37.1	44.4	44.1
	중소도시	44.6	38.2	45.1	39.8	60.7	48.4	47.3	53.3	48.5	47.9
	농어촌	4.5	11.1	9.7	7.6	5.9	9.2	11.7	9.6	7.1	8.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만 65세 이상 노인 있는 가구

2) 만 18세 미만 아동 있는 가구

3) 장애인(보훈처등록 포함) 있는 가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만성질환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수급가구의 경우 90% 이상에서 만성질환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비수급 집단에서도 가구에 만성질환가구원이 있는 비율은 70%를 상회하였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집단7) 가구에서 만성질환가구원이 있는 비율은 80%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수급가구의 경우 9.64만원으로 전체가구의 18.32만원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수급가구 외 만성질환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난 집단 2~7에서도 월평균 보건의료비 8~17만원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구의 총지출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은 6.0%였으며, 수급가구의 경우 5.8%로 나타났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75%인 비수급 집단의 경우 총지출 대비 보건의료비 비중은 수급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급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비수급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 확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표 3-2-6〉 만성질환가구원의 유무별 가구분포 및 의료비지출(월평균)의 금액

(단위: %, 만원)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8
만성질환	무	9.4	23.4	20.7	22.6	26.1	34.7	20.0	38.6	54.7	43.8
	유 ¹⁾	90.6	76.6	79.3	77.4	73.9	65.3	80.0	61.4	45.3	56.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월 평균 보건의료비 ²⁾		9.64	12.77	8.73	9.93	10.88	13.09	17.67	18.71	19.99	18.32
총지출 ³⁾ 대비 보건의료비 비중(%)		5.8	8.8	8.6	8.7	8.4	8.4	10.0	7.0	4.6	6.0

주: 1) 만성질환자(3개월 이상 투병이나 투약)가 있음.

2) 입원비, 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수술비(임플란트, 성형수술 등), 약값, 치료용 보약, 장애인보장구, 건강보조식품, 보건의료용품비(안경·콘택트렌즈), 치료 외 건강보조용 보약, 간병비, 산후조리비, 건강검진비,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등

3) 총지출=총생활비+월세지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3. 가구주 특성

전체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54.7세로 상대적으로 수급가구 및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비수급 빈곤층의 가구주 평균연령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앞선 분석에서 저소득층에 노인 가구가 많이 분포하였던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특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40%인 비수급 집단 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70.8세로 수급가구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이 집단에서 노인가구의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난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 수급가구의 경우 50~64세 가구주 비율이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가구주의 학력수준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서 무학 또는 초등학교 졸업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 3-2-7〉 가구주 특성

(단위: %)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8
남 성	50.2	44.0	36.5	40.5	43.4	48.9	65.6	74.7	84.3	75.7	
여 성	49.8	56.0	63.5	59.5	56.6	51.1	34.4	25.3	15.7	24.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연령(세)	62.6	64.0	70.8	66.4	61.9	58.5	66.4	56.4	50.1	54.7	
연령	10-19	0.0	0.0	0.0	0.0	0.0	0.0	0.0	0.0	0.0	
	20-29	1.1	4.6	2.7	2.6	7.1	7.6	0.3	3.6	7.3	
	30-39	2.7	6.5	3.4	2.9	5.6	7.7	3.0	10.8	17.6	
	40-49	7.9	12.3	4.3	8.3	10.7	10.5	7.7	18.0	21.3	
	50-59	25.8	12.0	8.4	15.4	16.1	25.0	13.4	18.9	26.9	
	60-64	23.7	14.2	8.3	14.7	12.9	12.1	17.1	19.8	14.3	
	65-84	35.9	39.1	57.5	49.0	43.1	34.5	54.4	27.8	12.4	
85세 이상	3.0	11.4	15.3	7.0	4.5	2.6	4.1	1.1	0.3	1.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학력 수준	무학	9.8	11.9	22.5	15.8	11.8	6.2	5.9	1.9	0.3	2.7
	초등학교	29.1	28.4	36.4	31.0	25.1	21.8	23.9	11.9	3.8	10.5
	중학교	18.6	16.1	12.2	14.6	13.3	13.9	18.9	13.3	6.5	10.1
	고등학교	30.6	27.4	21.8	29.3	29.4	40.1	33.2	37.6	32.2	32.9
	전문대학	3.1	2.6	0.7	2.8	5.9	4.4	3.1	6.5	8.2	6.7
	대학교	8.2	13.1	5.6	6.0	14.0	12.4	13.3	26.6	42.8	32.7
대학원	0.6	0.6	0.9	0.5	0.6	1.1	1.7	2.3	6.3	4.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가구주의 건강상태를 장애와 만성질환 여부로 살펴보면, 수급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32.7%로 특히 높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 또한 수급가구에서 90% 정도로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수급가구에 비해 비수급 빈곤층 가구의 가구주의 경우 장애여부는 낮은 비율로 나타났고, 가구주의 만성질환 여부도 수급 가구의 가구주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이었으나 전체가구의 가구주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주의 장애 여부 또는 만성질환 여부는 근로능력 및 소득활동과 연결이 될 수 있으며, 결국 저소득 집단에 머무르게 되는 것과 관련 있다. 대체로 저소득층 중 노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표 3-2-8〉 가구주 건강상태

(단위: %)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8
장애여부	비장애인	67.3	86.3	85.0	87.0	89.7	92.0	90.6	93.9	96.6	93.4
	장애인	32.7	13.7	15.0	13.0	10.3	8.0	9.4	6.1	3.4	6.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만성질환 ¹⁾	없음	10.3	26.7	23.7	27.6	31.3	40.2	28.8	49.3	65.1	53.0
	있음	89.7	73.4	76.3	72.4	68.7	59.8	71.2	50.7	34.9	47.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만성질환자(3개월 이상 투병이나 투약)가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가구주의 근로능력 정도⁶⁸⁾를 살펴보면 수급가구의 경우 근로가능 가구주 비율이 28.0%로 나타나는 반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비수급 가구의 가구주 중 48.3%는 근로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능력 정도와 관련된 가구주의 소득활동 비율은 비수급 집단에서 수급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근로가능 비율에 비해 소득활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40% 이하 가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들은 근로 능력은 있으나 불규칙적인 소득활동을 하거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 집단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의 장애 여부와 만성질환 여부는 모두 근로능력 정도 및 소득활동과 연관이 높은 변수들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급가구 가구주의 87.4%가 비경제활동 상태이며, 상용·임시·일용직의 임금근로자는 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소득이 낮은 비수급 집단에서도 가구주의 비경제활동인구 혹은 실업 상태인 비율이 높았으며, 배우자의 경우에도 수급가구와 소득이 낮은 비수급 집단에서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배우자 또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8) 근로능력정도는 본인의 장애, 부상, 질병을 고려하여 조사응답자가 응답한 결과로, 응답자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도 본인의 실제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응답한 결과임.

〈표 3-2-9〉 가구주 근로능력 정도 및 소득활동 유무

(단위: %)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8
근로 능력 정도	근로가능	28.0	48.3	54.1	60.5	72.5	80.0	74.6	90.0	97.4	87.6
	단순근로가능	35.2	21.7	26.1	25.1	16.3	11.9	14.9	6.4	1.6	7.0
	단순근로미약자	33.0	28.5	17.0	12.8	9.6	6.7	9.4	2.9	0.8	4.8
	근로능력없음	3.8	1.5	2.8	1.5	1.6	1.3	1.1	0.7	0.2	0.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득 활동	없음	88.0	83.1	70.1	55.3	46.5	33.9	57.2	26.9	9.5	25.2
	있음	12.0	16.9	29.9	44.7	53.5	66.1	42.8	73.1	90.5	74.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는 소득활동 있음으로 분류,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소득활동 없음으로 분류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3-2-10〉 가구원별 경제활동 상태

(단위: %)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8
가 구 주	상용직	0.1	1.4	0.9	2.8	3.2	5.2	4.0	25.8	53.3	36.9
	임시직	2.3	2.2	2.5	10.7	12.9	21.9	8.3	18.0	13.7	12.9
	일용직	6.4	5.7	12.7	9.2	19.0	23.5	8.0	10.3	5.0	7.0
	공공·자활근로	2.3	3.4	12.3	16.5	10.0	10.0	6.7	2.4	0.3	2.3
	고용주	0.0	0.0	0.0	0.0	0.0	0.0	0.5	0.6	2.6	1.8
	자영업자	0.9	4.3	1.5	5.5	8.3	5.5	15.3	16.0	15.6	14.0
	무급가족종사자	0.0	0.0	0.0	0.0	0.0	0.0	0.3	0.5	0.2	0.3
	실업자	0.6	10.2	2.0	4.6	1.4	2.7	1.8	1.8	0.6	1.2
	비경제활동인구	87.4	72.9	68.1	50.8	45.1	31.3	55.2	24.7	8.6	23.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배 우 자	상용직	1.3	0.0	0.0	0.0	2.4	0.8	1.6	4.7	23.0	17.1
	임시직	2.5	0.0	3.4	7.9	14.4	10.8	7.2	10.9	14.8	13.1
	일용직	5.3	4.7	6.5	4.3	8.8	9.8	5.4	4.7	3.0	3.7
	공공·자활근로	4.3	5.1	18.3	7.8	5.8	4.0	3.2	1.1	0.2	0.9
	고용주	0.0	0.0	0.0	0.0	0.0	0.0	0.0	0.2	0.8	0.6
	자영업자	1.4	2.5	2.2	2.0	1.8	3.9	2.2	3.6	5.1	4.4
	무급가족종사자	1.4	3.6	2.0	4.6	8.5	4.1	11.0	6.4	5.5	6.2
	실업자	1.8	2.7	0.0	0.0	0.0	1.5	0.5	0.1	0.5	0.4
	비경제활동인구	82.0	81.4	67.6	73.5	58.3	65.1	69.0	68.3	47.2	53.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4. 가구소득 및 지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비수급 가구에 비해 수급가구의 총소득이 높게 나타나지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정부보조금을 제외(소득2)하고 비교하면, 수급가구의 소득이 크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비수급 가구의 경우 총소득과 경상소득 측면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정부보조금을 제외하고 비교하더라도 수급가구의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체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454.7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급가구의 총소득은 월평균 118.1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약 1/4수준에 불과하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비수급 집단의 총소득은 수급 가구의 총소득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총소득 대비 각각의 소득 비중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기타정부보조금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표 3-2-11〉 월평균 가구 소득 규모 및 비중

(단위: 만원/월, %)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8
평균금액	총소득 ¹⁾	118.1	94.4	95.1	126.8	144.4	177.7	164.3	311.4	613.5	454.7
	경상소득 ²⁾	117.0	88.7	93.9	124.3	143.0	176.0	157.2	302.8	604.6	447.0
	소득1 ³⁾	63.6	77.8	89.7	119.7	140.2	173.0	156.6	302.3	604.5	443.7
	소득2 ⁴⁾	23.1	26.5	54.1	84.8	111.0	144.9	125.3	272.0	583.6	418.2
총소득 대비 비중	경상소득	99.1	93.9	98.7	98.0	99.0	99.0	95.6	97.2	98.5	98.3
	소득1	53.9	82.3	94.3	94.4	97.1	97.4	95.3	97.1	98.5	97.6
	소득2	19.6	28.0	56.9	66.9	76.9	81.5	76.2	87.4	95.1	92.0
	총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총소득=(상용근로소득+임시일용소득+고용주 및 자영자 순소득+농림축산업 순소득+어업경영주순소득+기타 근로소득+재산소득+사회보험금+민간보험금+기타정부보조금+부모나 자녀로부터 보조금+민간보조금+기타 소득+기초보장급여)/12

2) 경상소득=(총소득-기타소득(비경상적 소득))/12

3) 소득1=(경상소득-기초보장급여)/12

4) 소득2=(경상소득-기초보장급여-기타 정부보조금)/12

경상소득 및 총소득의 계산 시 사업소득을 음의 값을 0으로 처리하지 않는 순소득 방식으로 산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처럼 수급가구와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역전 현상은 이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문제로 맞춤형 급여의 경우도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측면도 일부 존재한다. 소득역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급빈곤층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프로그램들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급여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는 주거용 재산 등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소득원천별 규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급가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기타 정부보조금으로 월평균 약 94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급가구의 경우 가구의 총 소득 중 기초보장급여가 가장 큰 소득 원천이며, 기타정부보조금도 2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수급 가구의 경우에는 총소득 대비 소득원별 비율이 기초보장급여 > 기타정부보조금 > 근로 및 사업소득 > 부모·자녀의 보조금 > 민간보조금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수급가구에 비해 기타정부보조금이 높은 수준이나 비수급으로 인한 기초보장급여가 낮은 점⁶⁹⁾에서 소득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부모·자녀로부터 받는 보조금 즉, 사적이전소득의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수급가구에서 두루 나타나는 특징이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집단의 경우 총 소득 중 20%에 가까운 비율을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기타정부보조금의 비중이 가구의 총 소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 집단에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기타정부보조금 내 기초연금의 비중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가구 총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소득의 소득계층별 수준을 살펴보면, 가구의 경상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상인 계층에서 상용직 또는 임시·일용직 근로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반면 수급가구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총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69)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비수급 빈곤층에서 기초보장급여 금액이 존재하는 이유는 기초보장수급 여부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된 점에서 이들의 경우 1년 기간 동안 수급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12월 31일 기준 비수급인 가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 3-2-12〉 소득원천별 규모 및 비중

(단위: 만원/년, %)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근로 및 사업소득	138.4	114.7	261.7	555.2	837.1	1,258.8	789.6	2,641.3	6,371.4	4,418.9
상용근로 임시·일용근로	130.5	97.2	248.7	501.4	740.9	1,150.0	594.7	2,188.1	5,245.8	3,638.5
고용주·자영업 농림축산어업	6.2	14.2	11.3	51.6	93.9	98.0	187.6	445.0	1,117.3	772.8
기타 근로소득	1.7	3.3	1.7	2.2	2.3	10.8	7.7	8.3	8.3	7.6
재산소득	0.1	0.6	1.3	3.9	4.1	13.5	97.0	84.2	188.5	139.3
사회보험	28.2	53.1	116.6	120.8	142.5	115.0	306.4	307.5	299.9	273.5
민간보험	0.5	0.5	1.8	0.4	1.9	2.1	12.6	12.2	12.4	10.9
기타정부보조금	485.7	615.2	427.2	418.3	350.4	337.5	375.6	363.5	251.5	306.4
부모·자녀의 보조금	59.7	113.8	219.4	277.3	284.9	261.8	269.9	178.6	94.1	137.2
민간보조금	50.8	35.1	48.6	60.4	61.4	87.4	27.8	40.7	36.5	38.8
기타소득	13.3	69.3	15.3	30.2	16.5	20.4	86.2	103.4	107.3	93.2
기초보장	641.0	130.9	49.7	55.5	33.9	35.5	7.1	5.8	0.8	38.8
총소득	1,417.8	1,133.3	1,141.7	1,521.9	1,732.8	2,132.0	1,972.1	3,737.2	7,362.5	5,456.8
근로 및 사업소득	9.8	10.1	22.9	36.5	48.3	59.0	40.0	70.7	86.5	81.0
상용근로 임시·일용근로	9.2	8.6	21.8	32.9	42.8	53.9	30.2	58.5	71.3	66.7
고용주·자영업 농림축산어업	0.4	1.3	1.0	3.4	5.4	4.6	9.5	11.9	15.2	14.2
기타 근로소득	0.1	0.3	0.1	0.1	0.1	0.5	0.4	0.2	0.1	0.1
재산소득	0.0	0.1	0.1	0.3	0.2	0.6	4.9	2.3	2.6	2.6
사회보험	2.0	4.7	10.2	7.9	8.2	5.4	15.5	8.2	4.1	5.0
민간보험	0.0	0.0	0.2	0.0	0.1	0.1	0.6	0.3	0.2	0.2
기타정부보조금	34.3	54.3	37.4	27.5	20.2	15.8	19.0	9.7	3.4	5.6
부모·자녀의 보조금	4.2	10.0	19.2	18.2	16.4	12.3	13.7	4.8	1.3	2.5
민간보조금	3.6	3.1	4.3	4.0	3.5	4.1	1.4	1.1	0.5	0.7
기타소득	0.9	6.1	1.3	2.0	1.0	1.0	4.4	2.8	1.5	1.7
기초보장	45.2	11.5	4.4	3.6	2.0	1.7	0.4	0.2	0.0	0.7
총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가구규모에 따른 지역별 월평균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먼저 전체 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447.0만원이며, 대도시는 450.5만원, 중소도시는 454.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며, 농어촌은 364.9만원으로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원수별로는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소득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표 3-2-13〉 가구규모에 따른 지역별 월평균 소득 수준

(단위: 만원/월)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국
전체	450.5	454.0	364.9	447.0
1인	211.4	223.8	180.6	215.2
2인	404.1	401.7	371.1	400.3
3인	628.0	591.6	545.3	605.2
4인	766.9	731.5	637.4	742.7
5인	850.3	715.2	654.2	768.2
6인 이상	842.7	909.8	504.8	866.8

주: 소득은 경상소득(총소득-기타소득) 기준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월평균 소득 구간별 가구빈도를 살펴보면, 수급가구의 경우 50~100만원 구간에 분포하는 비율이 57.3%로 나타난 반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비수급 집단의 경우 50만원 미만의 비중이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제외하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50~150만원 구간에 분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 3-2-14〉 월평균 소득 구간의 가구빈도

(단위: %)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50만원 미만	1.6	27.2	0.7	0.7	0.4	1.3	4.5	0.0	0.0	1.0
50~100만원	57.3	42.1	69.4	54.0	26.8	7.5	19.7	0.0	0.0	8.2
100~150만원	25.9	14.8	21.7	21.8	42.3	53.7	29.3	5.6	0.0	8.3
150~200만원	6.7	9.6	4.3	11.3	13.2	6.1	19.2	18.4	1.9	7.1
200~300만원	5.5	3.7	3.2	9.4	12.3	20.5	21.9	29.1	12.5	15.5
300~500만원	2.6	2.7	0.6	2.9	4.6	10.9	5.5	43.6	28.6	24.6
500만원 이상	0.5	0.0	0.2	0.0	0.3	0.0	0.0	3.3	56.9	35.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소득은 경상소득(총소득-기타소득) 기준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앞서 살펴보았듯이 저소득층은 정부 및 민간의 지원금이 가구 소득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전소득의 수준을 공적이전과 사적이전

소득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가구 당 평균 사적이전소득 186.8만원, 공적이전소득 618.6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이 3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전 연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이었으며, 본 조사시 시기 특성상 코로나지원금의 영향으로 공적이전소득의 수준이 특히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급가구의 경우 가구당 사적이전은 111.1만원인 것에 비해 공적이전은 1,155.0만원으로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1인당 소득으로 치환하여도 각각 98.7만원, 1,012.4만원으로 그 차이가 현격히 나타나고 있다.

〈표 3-2-15〉 소득계층별 이전소득 수준

(단위: 만원/년)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사적 이전	가구	평균	111.1	149.4	269.8	338.1	348.3	351.3	310.4	231.4	143.0	186.8
		표준편차	207.3	148.2	226.3	288.9	334.1	475.8	326.1	422.2	418.5	395.1
	1인당	평균	98.7	121.4	219.5	267.9	296.6	267.3	209.9	144.5	75.4	115.8
		표준편차	183.4	129.5	158.6	223.3	280.4	370.2	235.7	299.8	263.2	267.5
공적 이전	가구	평균	1,155.0	799.2	593.5	594.6	526.9	488.0	689.0	676.8	552.3	618.6
		표준편차	770.4	752.8	359.1	451.3	406.1	472.1	482.4	695.2	976.3	839.9
	1인당	평균	1,012.4	526.2	452.8	411.3	373.0	299.0	385.7	321.9	244.6	322.9
		표준편차	650.8	442.9	213.7	247.8	266.1	276.9	248.5	368.2	498.3	476.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사회보험 수급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전 계층으로 볼 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수급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25.5%인 반면, 수급가구의 경우 공적연금을 수급한 비율은 9.8%로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이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비수급 집단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비율을 보인다.

사회보험(공적연금 및 고용, 산재보험 등)을 수급하는 경우, 평균 수급액은 전체 가구에서 가구당 연간 273.5만원(수급하는 가구 대상 1,014.9만원), 1인당 141.3만원

(수급하는 가구 대상 524.4만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체로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사회보험 수급액도 높게 나타난다. 수급가구의 경우 가구당 28.2만원(수급하는 가구 대상 287.5만원), 1인당 25.2만원(수급하는 가구 대상 257.3만원)으로 나타나는데,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비수급 집단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6〉 사회보험 수급여부 및 수급액 규모

(단위: %, 만원/년)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8	9
수급 여부	공적 연금 ¹⁾	수급	9.8	17.1	37.4	28.9	33.0	24.3	50.3	33.1	19.7	25.5
		비수급	90.2	82.9	62.6	71.2	67.0	75.7	49.7	66.9	80.3	74.6
	고용 및 산재 보험 ²⁾	수급	0.0	0.5	0.2	3.6	2.1	2.6	1.9	2.1	2.2	2.0
		비수급	100.0	99.5	99.8	96.4	97.9	97.4	98.1	97.9	97.8	98.0
수급액 규모 ³⁾	가구	평균	287.5	302.7	311.6	385.2	409.3	427.2	594.3	889.4	1,405.9	1,014.9
		표준편차	122.4	123.5	146.3	232.5	263.9	331.4	433.7	755.7	1414.4	1063.9
	1인당	평균	257.3	219.4	258.0	293.0	327.6	295.1	331.4	479.9	686.8	524.4
		표준편차	118.0	122.8	119.5	151.9	188.8	221.1	209.7	391.7	753.2	550.4
수급액 규모 ⁴⁾	가구	평균	28.2	53.1	116.6	120.8	142.5	115.0	306.4	307.5	299.9	273.5
		표준편차	90.2	117.3	156.9	213.9	248.8	272.7	421.0	630.9	921.4	750.3
	1인당	평균	25.2	38.5	96.5	91.9	114.1	79.4	170.9	165.9	146.5	141.3
		표준편차	82.0	91.4	129.4	153.1	188.9	185.0	216.3	332.9	473.5	388.0

- 주: 1) 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원연금, 보훈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등
- 2)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급여 등
- 3) 수급액 규모의 경우 수급하는 가구의 평균임.
- 4) 전체 가구의 평균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제외한 기타정부보조금을 받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0.7%로 절반이 기타정부보조금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급가구는 거의 대부분 (99.9%)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의 다른 정부 지원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비수급 집단에서도 70%

이상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등의 확대와 더불어 시기 특성상 코로나지원금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3-2-17〉 기타 정부보조금1) 수급여부 및 수급액 규모

(단위: %, 만원/년)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8	9
수급 여부	수급	99.9	78.2	85.1	79.6	73.3	65.3	70.4	59.4	37.6	50.7	
	비수급	0.1	21.8	14.9	20.4	26.7	34.8	29.6	40.7	62.4	49.3	
수급액 규모 ²⁾	가구	평균	436.2	706.2	439.8	441.0	402.0	417.9	427.1	439.2	395.7	420.3
		표준편차	701.7	598.9	188.8	265.8	261.2	277.2	237.6	358.4	447.1	418.5
	1인당	평균	378.1	483.7	337.2	300.7	282.5	250.4	246.5	187.3	142.8	211.4
		표준편차	626.6	407.4	108.6	128.7	138.0	145.4	131.3	178.5	220.9	280.0
수급액 규모 ³⁾	가구	평균	435.7	552.0	374.1	351.1	294.8	272.7	300.6	260.6	148.8	212.9
		표준편차	701.5	621.0	224.5	297.6	288.9	311.3	272.3	356.5	347.9	379.8
	1인당	평균	377.7	378.1	286.8	239.4	207.2	163.4	173.5	111.1	53.7	107.1
		표준편차	626.4	422.9	145.4	163.2	169.9	173.0	153.2	169.0	157.8	236.5

주: 1) 기타정부보조금은 장애인 수당·연금, 기초연금, 한부모 가족수당, 양육수당, 세제지원, 기타현금급여, 사회적
현물 이전급여가 포함됨.

2) 수급액 규모의 경우 수급하는 가구의 평균임.

3) 전체 가구의 평균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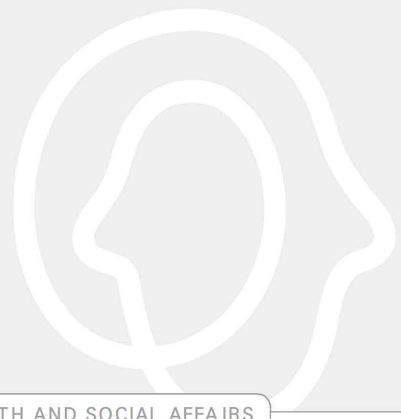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소득집단별로 지출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전체가구의 총생활비는 월평균 349.9만원인데 비해 수급가구의 경우 98.4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30%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비수급 집단의 경우 총생활비 수준이 110만원 내외를 보이는데, 이들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40% 집단의 경우 총생활비는 92.4만원으로 수급가구보다 지출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월세를 포함한 총지출 또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표 3-2-18〉 평균지출 규모

(단위: 만원/월)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총생활비	98.4	106.1	92.4	115.5	124.8	151.2	183.9	273.6	450.0	349.9
보건의료비	9.6	12.8	8.7	9.9	10.9	13.1	17.7	18.7	20.0	18.3
세금	0.2	0.2	0.3	0.5	0.5	0.8	3.9	6.8	36.2	23.6
사회보장부담금	0.2	1.5	1.1	2.7	3.3	5.2	6.5	16.7	41.8	28.9
월세(사글세 포함)	14.5	16.6	9.1	12.3	13.6	16.6	2.7	7.1	8.0	8.0
총지출 ¹⁾	112.8	122.6	101.5	127.9	138.4	167.9	186.6	280.6	458.0	357.9

주: 1) 총지출=총생활비+월세지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제4장

빈곤층 욕구별 실태분석

제1절 박탈 및 생활여건 욕구

제2절 자산 및 부채

제3절 주거욕구

제4절 의료욕구

제5절 교육욕구

제6절 에너지욕구

제4장 빈곤층 욕구별 실태분석

제1절 박탈 및 생활여건 욕구

1. 박탈영역별 지표 선정

본 절의 분석에서는 생활여건 항목에 대해 응답한 필요여부와 보유여부를 활용하여 비자발적 박탈, 즉,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를 박탈을 경험하고 있다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보유(행동)여부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자발적인 결핍으로 이는 필요성에 대한 문제이지 박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탈항목의 선정기준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75% 이상인 항목이면서 박탈의 정의상 항목에 대한 비자발적 결핍이 25% 이하인 항목으로 조작적으로 정의(김미곤, 여유진 외, 2005)하였다. 그 결과 절대적 박탈 7문항을 포함하여 총 51개 문항 중 26문항이 선정되었다.

주요영역별로 필요 및 박탈항목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생활용품의 경우 스마트폰(91.7%), 에어컨(88.7%)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식생활 영역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기나 생선, 신선한 과일 등을 사먹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각각 82.3%, 78.8%, 기호식품에 대한 소비에 대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75.1%로 나타났다. 의생활 영역의 경우 매우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오버류를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94.5%,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정장, 정장에 어울리는 구두 한 켤레에 대해서도 75% 이상이 필수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주택 및 주거환경 영역에서는 모든 항목에 대해 필수적이라고 높은 비율로 필수적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특히 자연재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98.2%), 집의 구조물이 견고하고 심각한 균열이 없을 것(97.7%) 등 안전한 주택시설 뿐만 아니라 춥지 않도록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는 것(97.2%)에 대해 주거환경의 필수요건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의료 및 건강 영역에서도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94.6%)이 관련 항목 중에서도 필요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것에 대해서도 90% 가까이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저축(미래대비)영역에서는 주거영역 다음으로 모든 항목에서 높은 필요요구를 보이고 있는데, 재정적인 지출에 대비하는 것, 긴급한 지출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노후(미래대비)를 위한 저축, 사적보험 가입 등 모두 80% 이상의 사람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영역으로 특히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4-1-1〉 영역별 박탈문항과 필요여부 응답비율

(단위: %)

영역	항목	필수적이라고 응답한 비율	필수적이라고 응답한 경우		비자발적 박탈 비율	최종 박탈 지표 여부
			보유	미 보유		
생활용품	김치냉장고	63.5	96.4	3.7	1.3	제외
	정수기(생수구입포함)	61.8	97.3	2.7	1.1	제외
	에어컨	88.7	98.4	1.6	1.2	포함
	공기청정기	39.0	92.9	7.1	1.7	제외
	노트북	45.9	95.5	4.5	1.0	제외
	태블릿PC	31.1	93.7	6.3	0.9	제외
	자동차	65.1	93.9	6.1	3.0	제외
	스마트폰	91.7	99.7	0.4	0.2	포함
	스마트폰을 제외한 휴대폰	7.2	95.5	4.5	0.1	제외
식생활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 것	82.3	94.2	5.9	4.8	포함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먹는 것	78.8	94.2	5.8	4.6	포함
	가끔 기호식품(차,커피,과자류,음료 등)을 사먹는 것	75.1	98.6	1.4	1.0	포함
의생활	매우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오버류(코트, 파카, 털이나 가죽옷 등)를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94.5	99.3	0.7	0.7	포함
	예식장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76.8	96.9	3.1	2.4	포함
	정장에 어울리는 구두 한 켤레는 가지고 있는 것	75.7	97.2	2.8	2.2	포함
	일 년에 한 벌 정도 외출용이나 정장 등의 옷을 구입하는 것	41.4	89.3	10.7	4.4	제외
주택 및 주거환경	가족수나 구성원의 연령에 맞게 적절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	87.7	97.5	2.5	2.2	포함
	전용 입식부엌과 전용 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추는 것	96.5	98.9	1.1	1.0	포함
	집의 구조물이 견고하고 심각한 균열이 없을 것	97.7	95.4	4.6	4.5	포함
	방음, 환기, 채광이 적절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	95.2	90.1	9.9	9.4	포함

영역	항목	필수적이 라고 응답한 비율	필수적이라고 응답한 경우		비자 발적 박탈 비율	최종 박탈 지표 여부
			보유	미 보유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습기가 차지 않거나 이로 인해 벽이나 바닥에 손상이 없는 것	96.4	91.4	8.6	8.3	포함
	출치 않도록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는 것	97.2	95.9	4.1	4.0	포함
	자연재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	98.2	96.8	3.2	3.2	포함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는 것	93.0	97.5	2.5	2.3	포함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는 것	87.8	97.2	2.8	2.5	포함
의료 및 건강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것	88.9	72.1	27.9	24.8	포함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는 것	83.8	56.0	44.0	36.8	제외
	건강을 위해 보약이나 영양제 또는 보조식품 등을 먹는 것	57.0	90.2	9.8	5.6	제외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것	94.6	96.9	3.1	2.9	포함
가족 활동 및 문화 생활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2~3일 정도의 여행(피서)을 다녀오는 것	34.3	70.5	29.5	10.1	제외
	1개월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외식하는 것	49.0	93.1	6.9	3.4	제외
	가족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것(외식 등)	60.4	94.8	5.2	3.2	제외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가족 또는 자녀와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영화, 공연)을 할 수 있는 것	27.6	67.0	33.0	9.1	제외
사회 적 지 지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	69.1	91.7	8.3	5.7	제외
	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	55.1	87.2	12.8	7.1	제외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	48.5	79.5	20.5	10.0	제외
저축 (미래 대비)	재정적인 지출을 대비하는 것(저축등)	83.3	82.3	17.7	14.8	포함
	긴급한 재정적 지출(약 300만원 정도)을 감당하는 것	85.7	89.7	10.3	8.8	포함
	노후를 위해 (국민,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는 것	85.6	87.6	12.4	10.6	포함
	사회보험 외의 사적보험(의료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것	81.0	92.3	7.7	6.3	포함
자녀 교육	자녀에게 고등교육(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을 시키는 것	75.6	97.9	2.1	0.4	포함
	자녀가 원하는 경우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시키는 것	71.6	87.4	12.6	2.1	제외
	자녀에게 필요한 기본참고서나 도서를 사주는 것	83.9	97.2	2.8	0.6	포함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양육(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을 책임지는 것	91.4	98.9	1.1	0.2	포함

주: 비자발적 결핍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갖고(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 비율을 통해 절대적 박탈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가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문항에서 1% 전후 경험 비율을 보이는데,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그 비율이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예상할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소득상위 계층보다 빈곤층의 절대적 박탈 경험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빈곤층에서 절대적 박탈에 대한 경험 비율

이 수급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항목에 따라 수급가구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공과금 미납 경험, 덩거나 추운 계절에 냉·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 의료 및 주거 관련 박탈 등에서 다른 욕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생계 및 의료 수급가구의 경우 기초보장제도 수급 자격과 동시에 에너지바우처 등 타 지원의 대상이 되는 반면,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 대상이 되지 않은 점에서 타제도에서도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 4-1-2〉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 비율(2021년 1년 동안)

(단위: %)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7.4	7.3	1.6	3.3	3.8	1.2	0.9	0.5	0.1	0.8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5.4	13.0	3.2	4.1	6.7	6.6	1.1	1.4	0.5	1.4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1.0	0.1	1.3	0.0	2.5	1.0	0.1	0.2	0.1	0.2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9.8	15.6	4.2	4.3	4.7	3.9	1.4	0.3	0.2	1.3
더운 여름에 냉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11.6	15.5	4.4	5.0	4.4	4.9	1.7	0.4	0.2	1.5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13.8	16.3	11.0	12.2	10.1	11.6	3.8	3.1	0.7	3.0
집세(월세·일세)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¹⁾	2.4	9.9	1.8	2.1	5.7	4.6	0.5	1.0	0.4	1.2

주: 1) 자가 또는 무상인 경우를 제외한 전, 월세가구에 대한 응답 비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결핍된 상태로 박탈항목으로 선정함에 있어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며, 앞서 언급한 박탈항목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최종 박탈지표는 다음과 같다. 또한 최종박탈 항목 중 비자발적 박탈(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가정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을 최종 결핍된 것으로 설정하였다. 즉 기초생계에 해당하는 생활용품 항목 중 2문항, 식생활 3문항,

의생활 3문항, 주택 및 주거환경 관련 9문항, 의료 및 건강 관련 2문항, 미래대비를 위한 저축관련 4문항, 자녀교육 관련 3문항과 함께, 절대적 박탈 7문항을 포함하여 총 50개 문항 중 33문항이 선정되었다.

〈표 4-1-3〉 영역별 최종박탈지표

영역	항목
생활용품	에어컨
	스마트폰
식생활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 것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먹는 것
	가끔 기호식품(차, 커피, 과자류, 음료 등)을 사먹는 것
의생활	매우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오버류(코트, 파카, 털이나 가죽옷 등)를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예식장 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주택 및 주거환경	정장에 어울리는 구두 한 켤레는 가지고 있는 것
	가족수나 구성원의 연령에 맞게 적절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
	전용 입식부엌과 전용 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추는 것
	집의 구조물이 견고하고 심각한 균열이 없을 것
	방음, 환기, 채광이 적절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습기가 차지 않거나 이로 인해 벽이나 바닥에 손상이 없는 것
	출지 않도록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는 것
	자연재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
의료 및 건강	우택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는 것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는 것
저축 (미래 대비)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이상) 앓고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것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것
	재정적인 지출을 대비하는 것(저축등)
자녀 교육	긴급한 재정적 지출(약 300만원 정도)을 감당하는 것
	노후를 위해 (국민,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는 것
	사회보험 외의 사적보험(의료보험, 중신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것
자녀 교육	자녀에게 고등교육(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을 시키는 것
	자녀에게 필요한 기본참고서나 도서를 사주는 것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양육(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을 책임지는 것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 영역별 결핍수준과 상호 관련성

가. 영역별 박탈수준

다음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생활여건 항목 중 선정된 박탈항목을 활용하여 박탈 수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박탈항목의 선정 과정에서 합의적 방식과 비자발적 박탈실태 등으로 문항 선정 작업과정을 거쳤으므로, 선정된 박탈항목을 하나의 지표로 구성

하기 위해 문항들을 단순 합산하여 박탈점수를 산출하였다. 즉, 선정된 문항은 그 자체로 상대적 또는 절대적 박탈을 대표하는 문항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가구에서 평균적으로 박탈된 항목이 1.3개인데 비해, 수급가구의 경우 3.8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3.9개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계층까지 3개 내외의 분포를 보인다. 반면 예상할 수 있듯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박탈을 경험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수급가구의 경우 6개 이상 항목에서 박탈을 경험하는 가구의 비율이 26.4%로 나타났으며,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빈곤층 또한 비슷한 수준인 24.1% 정도로 나타났다. 하지만 11개 이상의 박탈을 경험하는 비율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빈곤층에서 더욱 많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소득은 동일하게 낮은 수준이나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생활여건이 더욱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표 4-1-4〉 박탈점수 분포

(단위: 점, %)

박탈점수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가구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8	9	
평균박탈점수	3.8	3.9	2.9	3.1	3.0	2.8	1.4	1.3	0.9	1.3
0-5	73.6	75.9	81.6	80.5	81.7	84.7	95.1	94.7	98.5	95.0
6~10	21.6	14.9	16.7	16.4	13.5	12.5	4.4	4.8	1.3	4.3
11~15	4.5	7.2	1.7	2.8	4.5	2.9	0.5	0.5	0.2	0.7
16~20	0.3	2.0	0.0	0.4	0.3	0.0	0.0	0.0	0.0	0.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영역별 박탈(결핍) 여부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의료, 자녀교육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수급가구의 결핍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비수급 빈곤층에서 수급가구와 비슷한 수준의 박탈 비율을 보인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계층 모두에서 30% 이상이 주거박탈을 경험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주거급여 기준선이 점차적으로 인상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긴급한) 재정지출을 위한 저축 또는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에 대한 박탈인 저축영역에서는 고소득층의 경우 11% 정도가 박탈을 경험하는 반면 수급가구의 경우 59.1%,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비수급 빈곤층 모든 계층에서 절반 이상은 저축영역 즉, 미래에 대한 대비에서 박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 박탈 또한 수급가구의 30% 가까이가 경험하고 있었으며,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수급가구보다 더 높은 비율이 절대적 박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정책영역의 대상 선정시 소득과 재산 등 수량적 접근과 더불어 주관적 경험, 즉 생활영역 전반에 걸친 결핍 대상에 대해 포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1-5〉 영역별 결핍 정도

(단위: %)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가구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생활용품	7.8	6.2	4.3	3.4	4.3	2.0	1.4	1.4	0.6	1.4
식생활	23.5	24.6	18.0	19.5	16.0	17.7	10.6	7.2	3.1	6.8
의생활	13.6	8.7	7.4	7.5	10.0	8.4	4.5	3.8	1.5	3.3
주거	38.7	33.0	30.4	33.9	33.4	31.2	18.5	19.6	13.5	17.7
의료	7.5	12.0	13.4	14.5	18.5	20.4	11.8	20.6	31.5	25.2
저축(미래대비)	59.1	57.3	52.6	55.8	58.8	51.7	36.9	29.4	11.5	22.9
자녀교육	1.4	2.3	0.0	1.6	1.1	0.5	0.7	1.7	0.7	0.9
절대적 박탈	28.2	32.6	16.7	18.5	20.1	16.9	5.9	4.5	1.3	5.1

주: 영역별 결핍의 판단은 영역 내 한 문항이라도 결핍을 경험한 가구를 결핍으로 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나. 영역별 상호관련성

인간의 생활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점에서 하나의 영역에서 박탈을 겪고 있을 경우 다른 영역에서도 박탈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영역별 상호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생활용품 영역에서 박탈을 경험하는 경우 식생활 영역에서 박탈을 경험할 확률은 31.5%, 의생활 영역 14.6%, 주거영역 50.4%, 저축영역 61.5%,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비율이 33.8%이다. 식생활 영역에 박탈을 겪고 있을

경우 주거, 의료, 미래대비 영역 등에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경제적 어려움 또한 19.4%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생활 영역 박탈 경험 또한 식생활 영역 박탈을 경험할 경우와 비슷하게 각 영역에서 박탈을 경험하고 있었다. 반면, 의료 영역에서 박탈을 경험하는 경우 주거 및 저축(미래대비)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의 박탈을 경험할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자녀교육 영역의 박탈 경험 집단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타 영역에서도 박탈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집단의 경우 식생활 영역의 박탈을 25.8%, 주거 영역의 박탈을 경험할 비율은 47.1%로 높게 나타났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앞선 분석결과에서도 주거영역과 미래대비 영역에 대한 필요욕구가 높게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영역에서 박탈을 겪고 있는 경우 주거영역 및 미래대비 영역의 박탈을 경험할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식생활, 주거생활 등 생활에 필수적인 박탈을 경험하는 경우 여러 영역에서 박탈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주거, 미래대비에 대한 박탈 경험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6〉 결핍영역별 연관성

(단위: %)

A \ B	생활용품	식생활	의생활	주거	의료	저축(미래대비)	자녀교육	경제적 어려움
생활용품	-	31.5	14.6	50.4	23.3	61.5	1.3	33.8
식생활	6.5	-	19.1	43.5	23.0	57.8	1.0	19.4
의생활	6.2	39.4	-	46.5	21.8	57.4	1.3	23.2
주거	4.0	16.7	8.7	-	24.7	41.9	1.3	13.7
의료	1.3	6.2	2.9	17.4	-	20.8	1.1	4.2
저축(미래대비)	3.8	17.2	8.3	32.4	22.9	-	1.4	14.7
자녀교육	2.1	8.1	4.9	26.4	32.7	36.1	-	10.7
경제적 어려움	9.2	25.8	15.0	47.1	20.8	65.4	1.8	-

주: A영역에서 박탈을 경험하고 있을 때 B영역에서 박탈을 경험하는 비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박탈영역 간 연관성을 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필요한 두 영역인 식생활과 의생활 영역 간의 상관계수가 0.2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 및 주거환경, 미래대비(저축) 영역의 경우 모든 영역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생활에 대한 박탈을 경험할 경우 나머지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자녀교육 영역 박탈 경험의 경우 대부분의 영역과의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미래대비 영역과의 상관계수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래대비 영역에 대한 박탈 경험은 다른 영역의 박탈 경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표 4-1-7〉 박탈영역간 상관계수(Pearson 상관계수)

구분	생활용품	식생활	의생활	주거	의료	저축 (미래대비)	자녀교육
생활용품	-						
식생활	0.129***	-					
의생활	0.082***	0.255***	-				
주거	0.130***	0.202***	0.171***	-			
의료	-0.005	-0.014	-0.018*	-0.005	-		
저축 (미래대비)	0.140***	0.279***	0.201***	0.253***	-0.031***	-	
자녀교육	0.007	0.006	0.002	0.008	0.018*	0.029***	-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에서는 박탈을 3개 이상의 영역에서 경험한 집단(전체가구의 6.8%)과 2개 이하 또는 전혀 경험하지 않은 집단(전체가구의 93.2%)으로 구분하여 소득계층별 박탈정도를 살펴보았다. 수급가구의 27.5%,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빈곤층의 26.8%가 3개 이상의 영역에서 박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40~75% 미만 계층에서도 20% 정도가 3개 이상의 영역에서 박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50~60%, 60~75% 이하 계층의 20% 이상이 3개 이상의 영역에서 박탈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때, 기준 중위소득의 60% 혹은 75%선 또한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을 선정하는 또다른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표 4-1-8〉 박탈(결핍) 정도

(단위: %)

박탈점수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가구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결핍	27.5	26.8	19.8	19.5	24.7	21.0	8.1	7.8	2.7	6.8
비결핍	72.5	73.2	80.2	80.5	75.3	79.0	91.9	92.2	97.3	93.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에서는 현재 차상위계층의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 비수급 빈곤층과 수급가구의 박탈점수를 비교해 보았다. 먼저 비교의 용이성을 위해 박탈항목에서 필요와 보유의 응답으로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4점, 있으면 좋다고 응답하였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3점, 있으면 좋다고 응답하고 가지고 있거나 불필요하여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2점,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가지고 있거나 불필요하여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1점으로 박탈지표를 점수화하여 이들의 합산된 점수로 박탈점수를 산출하여 집단간 평균을 비교해보았다.

전체적으로 수급계층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비수급 빈곤층(빈곤정책 표적집단)보다 결핍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결핍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의료 및 건강 영역을 제외하고는 수급계층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비수급 빈곤층(빈곤정책 표적집단)보다 박탈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생활용품, 의생활, 의료 및 건강, 저축(미래대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두 집단간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식생활, 주택 및 주거환경, 자녀교육 영역은 중위소득 50% 이하 비수급 빈곤층과 수급가구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4-1-9〉 생활육구별 결핍점수 차이 비교

구분	수급 (생계·의료)	기준 중위소득 30~50%이하 비수급	t	p-value
생활용품	1.42	1.35	2.44	0.0147
식생활	2.15	2.09	1.80	0.0713
의생활	2.03	1.84	6.74	<.0001
주택 및 주거환경	1.50	1.43	3.13	0.0018
의료 및 건강	1.20	1.36	-6.72	<.0001
저축(미래대비)	3.06	2.70	13.73	<.0001
자녀교육	1.71	1.40	2.97	0.0033
전체	1.89	1.80	6.97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앞의 영역별 연관성에서도 보았듯이 특정 영역에서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는 다른 영역에서도 박탈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박탈의 중첩이라 칭하기로 한다. 5개 영역 이상에서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는 0.7%, 4개 영역 1.7%, 3개 영역 4.5%, 2

개 영역 12.7%로 조사대상 전체가구의 약 20% 정도가 두 개 이상의 영역에서 박탈을 중복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경상소득 비율이 박탈중첩도와 맺는 관련성이다. 5개 영역에서 박탈을 겪는 집단의 경상소득 평균은 기준 중위소득의 67.8%로, 현재 차상위 계층의 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긴급복지지원 대상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정도임을 감안하였을 때, 빈곤정책표집대상 혹은 차상위계층의 기준선이 현재의 기준보다 더욱 높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4-1-10〉 박탈중첩 영역수에 따른 (평균 경상소득/기준 중위소득) 비율

(단위: %)

박탈중첩 영역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가구비율	46.3	34.2	12.7	4.5	1.7	0.7
평균 경상소득/기준 중위소득	145.9	137.6	107.9	88.9	67.9	67.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소득집단별로 각 영역의 박탈중첩 비율을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계층에서는 1개의 영역 이상 결핍한 비율이 75% 정도에 이르며, 소득이 낮을수록 결핍 중첩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분석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는 절반 이상이 어느 영역에서도 박탈을 경험하지 않는 반면, 수급가구의 경우 10가구 중 8가구는 어떠한 생활영역에서든 박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1〉 소득집단별 박탈중첩 비율

(단위: %)

박탈중첩 영역수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0개	19.5	22.9	24.7	25.1	25.9	26.1	43.3	45.1	52.0
1개	25.1	27.7	34.2	29.0	28.9	30.7	34.4	32.6	35.8
2개	28.0	22.6	21.2	26.4	20.4	22.3	14.1	14.5	9.5
3개	15.2	10.0	14.4	9.9	12.7	13.7	5.4	5.6	2.1
4개	9.2	11.7	4.3	6.1	7.1	5.1	2.1	1.5	0.4
5개 이상	3.1	5.1	1.1	3.5	4.9	2.2	0.6	0.7	0.2

주: 영역별 결핍의 판단은 영역 내 한 문항이라도 결핍을 경험한 가구를 결핍으로 보았으며, 영역은 총 8개로 생활용품, 식생활, 의생활, 주거, 의료, 저축, 자녀교육, 절대적 박탈로 구성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가구규모에 따라 박탈중첩 영역수 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박탈중첩 영역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대비 경상소득 비율을 가구규모별로 살펴보았다.

〈표 4-1-12〉 가구규모별 박탈중첩 영역 수에 따른 (경상소득/기준 중위소득) 비율

(단위: %)

박탈중첩 영역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0개	132.0	137.7	158.8	161.3
1개	126.0	131.7	154.6	150.9
2개	103.7	101.1	121.4	124.4
3개	90.7	85.4	70.3	96.6
4개	68.2	62.5	71.0	77.8
5개 이상	64.7	61.6	90.4	76.5
전체	117.7	129.6	151.9	152.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1인 가구의 경우 5개 이상의 영역에서 박탈을 경험하는 집단의 기준 중위소득 대비 경상소득의 비율은 64.7%로 나타났으며, 2인 가구의 경우 61.6%, 3인 가구의 경우 90.4%, 4인 가구의 경우 76.5% 수준이었다. 정책지원 대상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균등화된 중위소득에서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되는데, 하나의 기준 중위소득이지만 가구규모별 실정에 맞게 책정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2절 자산 및 부채

1. 가구 자산

전체적으로 수급가구의 총자산 수준은 1,677만원으로 2018년 조사시점의 1,559만원 대비 118만원 증가에 그치고 있다. 조사가구 전체 평균자산은 44,593만원으로 2018년(33,619억원)에 비해 약 1억1천만원 증가한 것과 비교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평균자산 규모는 35백만원 이하로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가구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급자는 물론 비수급빈곤층 대부분이 금융자산 보다는 거주자산 즉 부동산의 비중이 모두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지역별 소득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기준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자산규모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비금융자산 중 거주자산의 차이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1〉 지역별(3급지) 평균자산 규모

(단위: 만원)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8
전국	총자산 ¹⁾	1,677	2,411	2,142	2,725	2,896	3,445	36,387	32,159	57,846	44,593
	금융자산	243	730	624	656	677	811	4,322	3,637	8,248	6,147
	비금융자산	1,434	1,681	1,518	2,070	2,219	2,634	32,065	28,522	49,597	38,446
	-거주자산	1,336	1,627	1,463	1,924	2,086	2,511	24,011	21,165	33,037	26,296
	-거주외자산	98	55	55	146	133	123	8,054	7,357	16,561	12,150
	순자산 ²⁾	830	1,826	1,621	1,869	2,293	2,579	33,835	28,375	50,485	39,158
대도시	총자산 ³⁾	1,682	2,735	2,510	3,164	3,286	3,845	43,889	35,515	71,202	52,962
	금융자산	244	751	682	669	545	861	4,608	3,724	9,337	6,710
	비금융자산	1,438	1,984	1,827	2,495	2,741	2,984	39,281	31,791	61,865	46,252
	-거주자산	1,399	1,903	1,751	2,326	2,675	2,902	32,960	25,780	42,377	33,027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거주외자산	38	81	77	169	66	82	6,321	6,011	19,488	13,224
순자산 ²⁾	901	1,871	2,077	2,024	2,696	2,799	40,793	31,947	63,110	47,151
총자산 ¹⁾	1,646	1,878	2,019	2,370	2,538	3,075	32,140	30,313	48,719	39,145
금융자산	235	697	588	609	799	760	4,271	3,625	7,349	5,731
비금융자산	1,411	1,181	1,430	1,760	1,738	2,314	27,868	26,688	41,370	33,414
-거주자산	1,246	1,173	1,391	1,615	1,579	2,190	19,501	18,983	27,506	22,545
-거주외자산	165	7	39	145	159	124	8,368	7,704	13,864	10,870
순자산 ²⁾	682	1,686	1,286	1,670	1,895	2,334	29,781	26,066	41,730	33,760
총자산 ¹⁾	1,936	2,106	1,330	2,291	2,726	3,046	24,999	24,187	39,504	29,387
금융자산	305	694	552	794	732	810	3,351	3,164	8,310	5,534
비금융자산	1,631	1,412	777	1,497	1,994	2,236	21,647	21,023	31,194	23,853
-거주자산	1,410	1,362	743	1,449	1,560	1,743	7,741	7,599	11,702	8,931
-거주외자산	221	50	35	47	434	492	13,907	13,424	19,492	14,922
순자산 ²⁾	1,415	2,092	1,278	2,026	2,333	2,736	23,826	22,408	34,434	26,219

주: 1) 총자산 = 금융자산+비금융자산
= 거주주택+거주주택의 소유부동산+거주주택의 점유부동산+금융자산+농기계+농축산물+자동차+기타자산

2) 순자산 = 총자산-총부채액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직접적으로 총자산 대비 자산항목별 비율을 봐도 수급가구는 79.7%가 거주자산이었으며, 이는 대부분의 가구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징적으로 비수급빈곤층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다른 그룹에 비해서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 20%대 중반대를 보여주고 있다. 거주자산이 자산의 중요한 비중인 점은 2018년 조사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의 경우 총자산 대비 수급가구는 49.5%로 부채비중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전가구의 총자산대비 순자산 비중이 87.8%인 것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2-2〉 평균 총자산 대비 자산항목별 비중

(단위: %)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총자산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금융자산	14.5	30.3	29.1	24.1	23.4	23.5	11.9	11.3	14.3	13.8
비금융자산	85.5	69.7	70.9	75.9	76.6	76.5	88.1	88.7	85.7	86.2
-거주자산	79.7	67.5	68.3	70.6	72.0	72.9	66.0	65.8	57.1	59.0
-거주외자산	5.9	2.3	2.5	5.4	4.6	3.6	22.1	22.9	28.6	27.2
순자산 ²⁾	49.5	75.7	75.7	68.6	79.2	74.9	93.0	88.2	87.3	87.8

주: 1) 총자산 = 금융자산+비금융자산

= 거주주택+거주주택의 소유부동산+거주주택의 점유부동산+금융자산+농기계+농축산물+자동차+기타자산

2) 순자산 = 총자산-총부채액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가구규모와 지역별로 평균 총자산을 살펴보면,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비해 대도시의 총자산 규모가 큰 차이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또한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총자산의 규모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적으로 대도시는 52,962만원, 중소도시는 39,145만원(대도시 대비 73.9%), 농어촌은 29,387만원(대도시 대비 55.5%)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2018년 대도시 대비 중소도시 76.8%, 농어촌 54.2%에 비해 중소도시는 격차 확대, 농어촌은 격차가 미세하게 줄어든 경향을 보여주었다.

가구원수별 차이에서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 이상 간에 총자산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인가구 대도시 평균총자산은 18,845만원인데 2인 부터는 대도시는 6억 이상으로 증가하여 1인 가구와 2인 가구 이상간 차이가 많이 있으며, 지역별로도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4-2-3〉 가구규모에 따른 지역별(3급지) 평균 총자산 규모

(단위: 만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국	
가구전체	52,962	39,145	29,387	44,593	
가구규모	1인	18,845	15,981	13,613	17,153
	2인	65,530	43,406	38,459	52,331
	3인	72,555	52,873	38,901	60,723
	4인	77,232	54,459	35,527	63,364
	5인	82,949	53,289	41,685	64,999
	6인 이상	73,704	53,680	18,680	59,492

주: 대도시(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동), 중소도시(시 또는 도의 동), 농어촌(각 시도의 읍면)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가구규모별, 지역별로 자산 구성을 보면, 대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구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자산도 함께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서와 거주자산이 대부분 자산을 구성하고 있어, 자산 구성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높지 않았다.

〈표 4-2-4〉 가구규모에 따른 지역별(3급지) 자산구성 분포

(단위: 만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국
1인	총자산 ¹⁾	18,845	15,981	13,613	17,153
	금융자산	2,892	3,063	2,860	2,970
	비금융자산	15,954	12,918	10,753	14,183
	-거주자산	11,064	8,259	4,473	9,309
	-거주외자산	4,890	4,660	6,280	4,875
	순자산 ²⁾	16,478	13,540	12,702	14,848
2인	총자산 ¹⁾	65,530	43,406	38,459	52,331
	금융자산	8,429	6,471	7,113	7,345
	비금융자산	57,101	36,935	31,346	44,985
	-거주자산	38,076	22,975	10,924	28,386
	-거주외자산	19,025	13,960	20,422	16,599
	순자산 ²⁾	59,858	38,339	35,377	47,165
3인	총자산 ¹⁾	72,555	52,873	38,901	60,723
	금융자산	9,546	7,436	7,417	8,348
	비금융자산	63,009	45,437	31,485	52,375
	-거주자산	47,001	31,658	10,880	37,306
	-거주외자산	16,009	13,778	20,605	15,069
	순자산 ²⁾	64,641	45,553	32,202	53,175
4인	총자산 ¹⁾	77,232	54,459	35,527	63,364
	금융자산	8,278	7,246	6,388	7,650
	비금융자산	68,954	47,212	29,138	55,714
	-거주자산	51,659	34,659	13,194	41,005
	-거주외자산	17,295	12,554	15,945	14,710
	순자산 ²⁾	67,585	46,627	30,471	54,874
5인	총자산 ¹⁾	82,949	53,289	41,685	64,999
	금융자산	8,977	5,607	6,243	7,029
	비금융자산	73,972	47,682	35,442	57,970
	-거주자산	55,824	31,989	14,797	41,031
	-거주외자산	18,148	15,693	20,645	16,939
	순자산 ²⁾	69,600	42,728	34,353	53,437
6인 이상	총자산 ¹⁾	73,704	53,680	18,680	59,492
	금융자산	8,684	7,704	1,575	7,789
	비금융자산	65,020	45,976	17,105	51,702
	-거주자산	45,920	33,816	3,745	36,927
	-거주외자산	19,100	12,161	13,360	14,775
	순자산 ²⁾	59,549	43,139	14,258	47,893

주: 1), 2) 〈표 4-2-2〉의 수치를 동일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자산 현황을 보면 상용직이 다른 주된 경제활동 상태에 비해 자산비중이 높았다. 특히 수급가구의 상용직과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 상용직의 자산 규모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수급 빈곤층 가구의 자산이 오히려 수급가구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의 자산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와 그 이상 가구 간 직업별로 평균자산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직업적으로는 상용직, 임시·일용직에 비해서는 고용주·자영업주 등이 포함된 가구의 자산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순자산 기준으로 임시·일용직은 음의 자산을 보여주고 있어 부채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5〉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자산 현황

(단위: 만원)

총자산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상용직	5,307	500	6,400	924	2,652	3,327	23,202	29,017	54,267	51,117
임시·일용	1,325	999	1,657	1,953	2,277	2,270	22,826	19,654	32,643	25,234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	3,534	2,586	2,209	2,995	3,035	4,379	35,519	39,542	80,931	61,974
실업자, 비경제활동	1,639	2,560	2,180	2,985	3,284	4,613	41,543	43,161	82,949	37,626
순자산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상용직	-	-	-	-	-	2,328	18,474	24,008	46,407	43,614
임시·일용	-734	-154	1,392	729	1,435	1,076	20,113	17,354	28,201	21,792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	1,314	398	2,076	2,572	2,590	3,957	33,149	35,580	71,925	55,359
실업자, 비경제활동	960	2,192	1,546	2,090	2,814	4,005	39,118	39,118	75,857	34,524

주: 각 셀별 사례수 10 미만은 제시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가구주 연령대별 총자산 수준을 보면, 수급가구의 경우는 연령대별로 평균 총자산 규모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수급가구를 제외한 가구의 특징은 가구주의 연령이 증

가할수록 평균자산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수급가구는 50대와 74세 이하 수급가구가 낮은 자산 규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전가구에서는 34세 이하 가구주가 가장 낮은 자산 수준을 보여주고, 연령이 높은 65세 이상 74세 이하 가구주의 평균 총자산 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급가구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간의 비교를 보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총자산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6〉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현황

(단위: 만원)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 100%	100%-	
		1	2	3	4	5		6	7	
총자산										
18세 이상 34세 이하	1,909	2,096	-	-	1,756	2,613	13,703	13,830	16,391	15,182
35세 이상 44세 이하	2,537	1,202	-	2,832	2,253	3,239	29,336	24,959	51,604	44,812
45세 이상 54세 이하	1,905	1,932	1,154	1,666	2,735	2,379	24,545	27,739	58,154	47,089
55세 이상 64세 이하	1,304	2,455	1,682	2,182	1,782	2,794	33,427	30,659	63,643	48,453
65세 이상	1,797	2,705	2,345	3,091	3,754	4,755	40,536	44,002	95,601	49,252
65세 이상 74세 이하	1,510	3,213	3,101	3,184	3,095	4,255	41,390	41,200	89,556	54,972
75세 이상	2,114	2,465	2,029	3,048	4,156	5,251	39,693	49,956	119,774	40,648
순자산										
18세 이상 34세 이하	723	1,467	-	-	1,492	1,449	10,521	10,682	11,653	10,872
35세 이상 44세 이하	1,645	-700	-	1,861	1,478	2,346	23,335	19,329	42,101	36,375
45세 이상 54세 이하	-148	524	-2,363	752	1,581	1,481	19,885	23,843	49,861	40,190
55세 이상 64세 이하	148	1,561	-54	610	1,033	1,329	30,768	27,393	57,554	43,689
65세 이상	1,599	2,603	2,242	2,512	3,376	4,432	38,714	41,037	87,821	45,760
65세 이상 74세 이하	1,314	3,056	2,904	2,531	2,523	3,860	39,549	38,409	81,756	50,736
75세 이상	1,915	2,389	1,964	2,503	3,896	5,001	37,890	46,624	112,076	38,276

주: 1) 가구주 연령 기준

2) 각 셀별 사례수 10 미만은 제시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 가구 부채

지금까지 자산을 기준으로 분석했다면, 이하에서는 가구부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위기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통해 보면 부채가 있다고 한 수급가구는 24.8%로 2018년 조사 30.3%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하여 수급가구의 재무구조는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였다. 역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약 20~30% 내외이었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부채 있는 가구가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조사인 2018년 조사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전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47.5% 약 절반의 가구가 부채를 지니고 있었다.

〈표 4-2-7〉 부채유무

(단위: %)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 100%	100%-	
		1	2	3	4	5		6	7	
부채없음	75.2	70.0	85.1	77.8	75.7	66.8	67.1	53.0	44.8	52.5
부채있음	24.8	30.0	14.9	22.2	24.3	33.2	32.9	47.0	55.2	47.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수급가구의 평균 부채규모는 847만원이었으며, 가구원 1인당 762만원이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수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다소 낮은 부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평균 부채는 역시 2018년 조사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모습이였다. 하지만 부채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수급가구의 경우 3,419만원, 1인 기준으로 3,077만원으로 수급가구의 자산과 소득수준 대비 부채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018년 부채가 있는 가구만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부채액 3,186만원보다 높아진 것으로 부채 있는 수급가구의 재무구조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표 4-2-8〉 평균 부채액 (2021년 데이터)

(단위: 만원)

전가구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전체	847	586	521	856	603	866	2,552	3,784	7,361	5,435
가구원 1인당	762	443	286	532	399	581	1,355	1,708	3,135	2,394
부채가 있는 가구만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전체	3,419	1,953	3,499	3,853	2,481	2,609	7,761	8,051	13,338	11,447
가구원 1인당	3,077	1,478	1,921	2,394	1,640	1,749	4,121	3,635	5,681	5,04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가구의 주된 경제활동 상태를 기준으로 부채 상황을 분석해 보면, 수급가구는 상용직일 경우 부채 규모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56만원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다음은 실업자·비경제활동의 평균 부채는 679만원으로 다음이었다. 전체적으로는 상용직의 가계부채가 75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고용주·자영업주 등이 66백만원 수준이었다. 지난 조사와 비교시 소폭이지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의 분석에서 총자산 대비 순자산 비중이 49.5%로 부채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주로 임시·일용, 고용주·자영업주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2-9〉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가계부채 현황

(단위: 만원)

전가구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상용직	56	1,500	2,000	864	1,066	999	4,728	5,009	7,860	7,502
임시·일용	2,059	1,153	264	1,225	843	1,195	2,713	2,299	4,443	3,443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	2,220	2,188	133	423	444	422	2,370	3,962	9,005	6,616
실업자, 비경제활동	679	368	634	896	470	608	2,426	4,043	7,093	3,10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 규모를 보면 총자산에서 나타나는 것과 다르게 전가구 기준으로 35세 이상 44세 이하가 8,437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는 사회생활 진입과정(주거, 결혼 등)에서 발생한 부채로 보여진다. 수급가구의 경우에는 45세 이상 54세 이하(2,052만원)가 다음으로는 55세 이상 64세 이하(1,156만원), 34세 이하(1,186만원) 순이었다. 기준중위소득 수준별로 분석해도 45세 이상 54세 이하가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에는 30대에서 60대 초반까지가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할 때 동시에 부채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2-10〉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규모 현황

(단위: 만원)

전가구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18세 이상 34세 이하	1,186	629	959	385	264	1,164	3,182	3,148	4,738	4,310
35세 이상 44세 이하	892	1,902	404	971	775	893	6,001	5,630	9,503	8,437
45세 이상 54세 이하	2,052	1,408	3,517	915	1,155	899	4,660	3,896	8,293	6,899
55세 이상 64세 이하	1,156	893	1,736	1,573	749	1,466	2,659	3,266	6,089	4,764
65세 이상	198	102	103	579	378	323	1,822	2,965	7,780	3,492
65세 이상 74세 이하	197	157	197	653	572	395	1,841	2,791	7,801	4,236
75세 이상	199	76	64	544	260	250	1,803	3,333	7,699	2,372

주: 1) 가구주 연령 기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부채형태별로 보면 수급가구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이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도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반면 소득인정액 30~40% 이하의 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23.2%로 가장 낮았고 오히려 기타 부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계층의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급가구중에서는 일반사채를 가지고 있는 비율 역시 11.0%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 일반사채 비중인 0.9%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8년의 7.9%에 비해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급가구

의 부채 관리를 위한 방안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준중위소득 75%를 전후로 해도 기준중위소득 75% 이상은 일반사채 비중이 1%내외이었지만 비수급빈곤층의 일반사채 비중은 작게는 2.0%, 높게는 12.4%까지 증가하여 이들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부채 관리 프로그램 역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4-2-11〉 부채형태별 구성 비중 분포

(단위: %)

구분	수급 (생계· 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30%	30-40%	40-50%	50-60%	60-75%		75- 100%	100%-	
		1	2	3	4	5		6	7	
금융기관대출 (회사대출, 마이뉴스통장)	71.3	69.8	23.2	72.7	79.6	57.5	58.1	78.5	71.2	71.0
일반사채	11.0	12.4	6.3	2.0	4.8	10.7	2.1	1.0	0.7	0.9
카드빚	3.1	5.9	9.1	5.9	5.6	8.6	1.7	1.5	1.0	1.2
전세(임대)	0.0	0.5	2.1	3.7	0.4	2.7	37.1	17.5	26.5	25.8
보증금(받은 돈)	0.0	0.0	0.0	0.0	0.0	0.0	0.0	0.1	0.0	0.0
외상,미리탄켓돈	0.0	0.0	0.0	0.0	0.0	0.0	0.0	0.1	0.0	0.0
기타부채	14.7	11.3	59.3	15.6	9.6	20.6	1.0	1.5	0.6	1.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집단별 총 부채액 중 각 해당 부채의 비율로 산출하였음. 2017년의 경우 각 가구의 부채비율의 평균으로 산출함에 따라 시계열 비교시 유의해야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3. 가구의 연간이자 부담

국민생활실태조사 대상 가구의 연간 이자 부담을 보면, 수급가구는 연간 12.8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이자부담에 비해서는 높지는 않았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는 모두 10~40만원대 수준의 이자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소득대비 혹은 지출대비 비율도 대부분 1% 내외로 전체 가구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부채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다소 상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부채있는 가구의 연간이자 부담과 소득 및 지출대비 이자부담 역시 높아지고 있다. 수급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의 연간이자 부담은 51.1만원으로 전체의 12.8만원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었다. 2018년에 비해 연간 이자 부담은 증가(2018년 45.2만원)

하였지만, 소득과 지출대비 비중에서는 2018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비수급빈곤층의 이자부담도 부채가 있는 가구의 경우 크게 증가하고 있어, 역시 이들 가구에 대한 부채 및 재무관리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12〉 가구의 연간이자 부담 현황

(단위: 만원,%)

전가구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연간이자	12.8	39.4	8.0	20.3	18.4	27.5	53.8	98.2	177.7	131.2
소득대비 비율	0.9	3.7	0.7	1.4	1.1	1.3	2.9	2.7	2.4	2.4
지출대비 비율	0.9	2.7	0.7	1.3	1.1	1.4	2.4	2.9	3.2	3.1
부채가 있는 가구만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연간이자	51.1	131.4	53.8	91.3	73.5	82.9	163.4	208.8	321.7	276.0
소득대비 비율	3.1	13.8	3.5	4.6	3.5	3.5	7.6	5.3	4.2	4.4
지출대비 비율	3.1	7.3	2.7	4.1	3.5	3.5	6.0	5.6	5.5	5.5

주: 소득은 연간 경상소득을 의미하며, 지출은 연간 가계지출(혹은 총생활비)대비 비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로 이자부담을 보면, 임시·일용직의 경우 약 31.9만원, 고용주·자영업주 등은 22.8만원 수준의 부담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과 지출대비는 약 1% 내외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징적으로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중 고용주·자영업자 등은 연간 이자 부담이 270여만원에 이르고 있어, 비수급빈곤층의 이자 부담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급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2018년과는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전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는 연간 이자부담이 소폭이지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13〉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이자부담 현황

(단위: 만원,%)

전가구 중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상용직	연간이자	-	-	-	-	-	77.5	119.2	146.4	189.3	183.4
	소득대비 비율	-	-	-	-	-	2.0	3.3	3.1	2.4	2.4
	지출대비 비율	-	-	-	-	-	2.0	3.1	3.3	3.1	3.1
임시·일용	연간이자	31.9	27.1	7.6	20.8	24.4	25.8	83.4	66.1	119.1	93.2
	소득대비 비율	1.7	2.2	0.6	1.2	1.2	1.2	3.7	2.1	2.2	2.2
	지출대비 비율	1.8	1.8	0.6	1.1	1.2	1.3	3.4	2.3	2.9	2.7
고용주·자영자, 무급가족종사	연간이자	22.8	269.7	2.3	27.0	7.7	31.0	57.0	121.0	225.8	170.0
	소득대비 비율	1.2	23.1	0.2	1.9	0.5	1.7	2.9	3.3	2.9	2.9
	지출대비 비율	1.3	15.0	0.2	1.8	0.6	1.8	2.5	3.5	4.0	3.8
실업자, 비경제활동	연간이자	10.5	18.9	8.4	17.2	16.4	20.6	39.5	68.7	133.5	56.0
	소득대비 비율	0.8	1.8	0.8	1.3	1.1	1.1	2.4	2.2	2.2	2.1
	지출대비 비율	0.8	1.3	0.7	1.3	1.1	1.1	1.9	2.4	2.9	2.2

주: 각 셀별 사례 수 10 미만은 제시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가구주 연령대별 이자부담을 보면, 수급가구 기준으로 54세 이하에서의 연간 이자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일수록 이자부담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징적으로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5세 이상 44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연간 이자 부담이 약 286만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가구와 비교해도 역시 연령이 낮을수록 연간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14〉 가구주 연령대별 이자부담 현황

(단위: 만원, %)

전가구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8
18세 이상 34세 이하	연간이자	18.8	51.5	-	-	5.0	26.1	179.0	81.2	123.8	114.2
	소득대비비율	1.0	7.0	-	-	0.3	1.5	8.7	2.3	2.5	2.5
	지출대비비율	1.0	3.2	-	-	0.3	1.6	5.3	2.5	3.3	3.2
35세 이상 44세 이하	연간이자	25.0	286.6	-	32.5	40.3	56.8	106.2	170.1	249.4	224.4
	소득대비비율	1.1	33.6	-	1.4	1.5	2.2	3.8	3.7	3.2	3.2
	지출대비비율	1.2	16.5	-	1.3	1.6	1.9	3.1	3.9	4.1	4.0
45세 이상 54세 이하	연간이자	28.5	38.3	29.6	31.6	48.5	32.7	126.4	125.9	210.8	178.7
	소득대비비율	1.6	4.7	1.8	1.3	2.1	1.2	5.3	2.9	2.5	2.6
	지출대비비율	1.6	2.3	1.6	1.3	2.1	1.2	4.1	3.1	3.1	3.1
55세 이상 64세 이하	연간이자	11.5	40.8	16.1	25.4	19.7	34.5	78.8	79.7	153.0	119.1
	소득대비비율	0.8	4.8	1.4	1.8	1.2	1.6	4.1	2.4	2.0	2.1
	지출대비비율	0.8	2.4	1.1	1.7	1.1	1.7	3.0	2.5	2.8	2.7
65세 이상	연간이자	5.1	3.7	2.6	15.3	7.0	12.2	26.5	63.5	124.4	58.4
	소득대비비율	0.4	0.3	0.2	1.2	0.5	0.7	1.6	2.0	2.0	1.8
	지출대비비율	0.5	0.3	0.2	1.2	0.5	0.7	1.4	2.4	2.8	2.2
65세 이상 74세 이하	연간이자	6.0	8.4	6.5	44.1	11.0	18.7	36.9	64.4	134.1	78.4
	소득대비비율	0.5	0.6	0.6	3.2	0.7	0.9	2.0	2.0	2.1	2.0
	지출대비비율	0.5	0.6	0.5	2.9	0.8	1.1	1.8	2.3	2.9	2.5
75세 이상	연간이자	4.1	1.5	0.9	1.9	4.5	5.8	16.3	61.7	85.6	28.2
	소득대비비율	0.4	0.1	0.1	0.2	0.3	0.3	1.0	2.0	1.5	1.2
	지출대비비율	0.4	0.1	0.1	0.2	0.4	0.4	1.0	2.5	2.1	1.5

주: 1) 가구주 연령 기준

2) 각 셀별 사례수 10 미만은 제시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제3절 주거욕구

본 절에서는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저소득계층이 거주하는 주거 여건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에 대한 신청 및 수급 현황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가구들의 주거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첫째, 주택 및 주거환경 수준과 관련하여 주택유형, 점유형태, 임대주택 유형, 방 수 및 주택 면적을 분석하고, 꼭 필요한 주택 및 주거환경과 구비 여부를 분석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욕구도 분석하였다. 둘째, 주거비 부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주택가격 및 임차료, 월평균 주거비 수준, 주거관련 경제적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의 수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첫째, 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인지 경로, 신청경험, 신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분석하였다. 둘째, 급여 신청 결과 및 수급가구로 선정되지 못한 이후 해결방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수급 경험, 수급 이유, 급여 수준의 적절성, 수급 기간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임대료 연체나 퇴거 경험이 비수급가구에 비해 낮아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의 습기나 방음, 환기, 채광 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급여의 수급 이유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줄어서’라고 응답한 가구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급여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안전망 역할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 주택 및 주거환경 수준

가. 주택유형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단독주택 거주가구 비율은 47.7%, 아파트 거주가구 비율은 31.5%이며, 전체가구와 비교하여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16.7%p 높고, 아파트 거주비율은 18.8%p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아파트 거주비율보다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현상은 생계·의료 비수급가구 중 소득인정액 75% 이하 가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데, 특히 소득인정액 30%-60% 이하 가구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5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소득인정액 75% 초과 경상소득 75% 이하 가구와 경상소득 75% 초과 가구는 전체 단독주택 거주비율보다 아파트 거주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주택유형

(단위: %)

구분	수급가구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 75% 초과 경상소득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 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단독주택	47.7	49.8	54.6	53.7	52.5	46.6	37.4	33.8	25.2	31.0
아파트	31.5	26.7	25.1	26.2	27.5	30.2	43.1	46.4	57.1	50.3
연립 및 다세대	18.3	20.8	18.9	17.5	15.8	17.8	18.5	17.5	14.0	15.5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0.5	-	-	0.8	0.1	0.2	0.2	0.7	0.5	0.5
오피스텔, 고시원	1.9	2.8	1.5	1.8	4.0	4.1	0.7	1.6	3.1	2.5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0.2	-	-	-	-	0.7	0.1	-	0.0	0.0
기타	-	-	-	-	-	0.3	0.0	-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4-3-2〉 주택유형(소득재구분)

(단위: %)

구분	수급가구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기준 중위소득				전체
			45%이하	45-75%	75-100%	100%초과	
단독주택	47.7	46.9	54.2	50.6	50.9	27.5	31.0
아파트	31.5	31.7	24.1	28.6	23.4	54.6	50.3
연립 및 다세대	18.3	18.7	20.2	16.1	21.4	14.9	15.5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0.5	0.4	0.3	0.3	0.7	0.5	0.5
오피스텔, 고시원	1.9	2.1	1.3	3.8	3.7	2.5	2.5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0.2	0.1	-	0.4	-	0.0	0.0
기타	-	-	-	0.2	-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생계·의료 수급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서로 중복될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생계·의료 수급가구와 유사하게 단독주택 거주비율 46.9%, 아파트 거주비율 31.7%를 나타냈으나 전체 가구에 비해서는 아파트 거주비율이 낮았다.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제외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와 45%~100% 이하인 가구의 단독주택 거주비율은 50.9%~54.2% 수준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나 생계·의료 수급가구 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그림 4-3-1] 주택유형(생계·의료 수급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 전체)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나. 점유형태

전체 가구의 점유형태는 자가 55.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증부월세가 24.2%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생계·의료 수급가구는 보증부월세가 72.7%로 전체 가구보다 높고, 자가 비율은 7.3%로 전체 가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계·의료 수급가구와 유사하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는 보증부 월세 비율이 가장 높고, 소득인정액 75% 초과 경상소득 75% 이하 가구와 경상소득 75% 초과인 가구는 전체가구와 유사하게 자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4-3-3〉 점유형태

(단위: %)

구분	수급가구 (생계·의료)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 75% 초과 경상소득 75% 이하	경상소득		전체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자가	7.3	10.4	12.9	17.9	16.9	17.4	77.9	59.1	59.3	55.6
전세	5.3	6.9	8.2	9.5	7.0	9.2	8.1	11.7	15.5	13.0
보증부월세	72.7	57.6	37.0	42.9	49.5	54.4	9.2	22.5	20.5	24.2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	8.4	2.9	4.2	2.8	4.0	2.8	0.5	1.1	0.7	1.3
기타 (무상포함)	6.3	22.2	37.8	26.9	22.6	16.2	4.4	5.6	3.9	5.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보증부월세 비율은 73.6%로 가장 높고, 자가 비율과 월세 비율이 각각 8.1%와 7.2%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생계·의료 수급가구와 점유형태별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가나 전세 비율은 전체가구보다 낮고, 보증부월세나 월세 등은 전체가구보다 높은 특징을 보인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마찬가지로 주거급여 비수급가구 중 소득인정액 100% 이하 가구도 보증부월세 비율이 33.6%~5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거급여 수급가구나 생계·의료 수급가구에 비해서는 낮고, 전체 가구에 비해서는 높았다. 반면, 주거급여 비수급가구 중 소득인정액 100% 이하 가구의 자가나 전세 비율은 주거급여 수급가구나 생계·의료 수급가구보다 높고, 전체 가구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표 4-3-4〉 점유형태(소득재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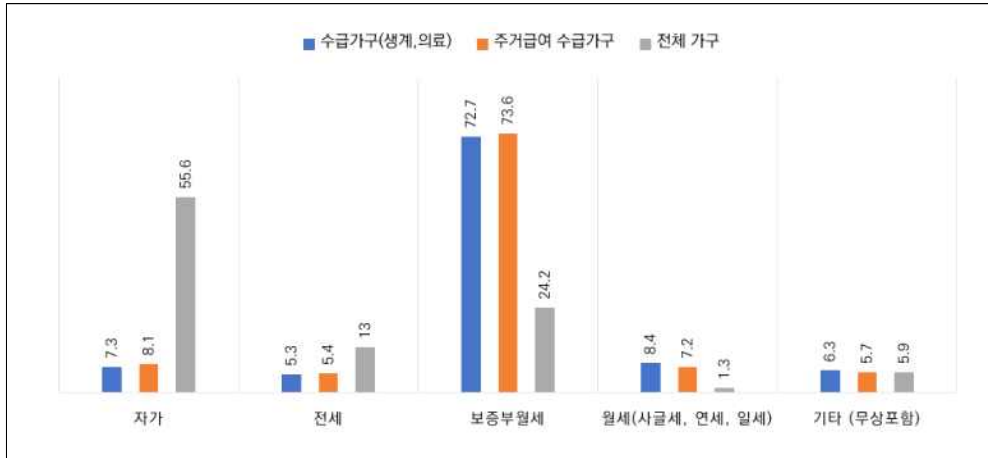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수급가구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기준 중위소득				전체
			45%이하	45-75%	75-100%	100%초과	
자가	7.3	8.1	17.0	18.8	18.6	63.6	55.6
전세	5.3	5.4	9.2	9.3	10.2	14.0	13.0
보증부월세	72.7	73.6	33.6	46.4	56.0	17.8	24.2
월세(사글세, 연세, 일세)	8.4	7.2	2.7	3.5	2.5	0.6	1.3
기타 (무상포함)	6.3	5.7	37.5	22.0	12.7	4.0	5.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생계·의료 수급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서로 중복될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3-2] 점유형태(생계·의료 수급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 전체)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 임대주택 유형

생계·의료 수급가구의 공공임대 거주비율은 51.4%로 전체가구와 비교해 32.4%p 높고, 민간임대 거주비율은 48.6%로 전체 가구에 비해 31.9%p 낮게 나타났다. 생계·의료 수급가구는 공공임대 거주비율이 민간임대 거주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수급가구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는 민간임대 거주비율이 공공임대 거주비율보다 높았다. 다만, 비수급가구 중 소득인정액 75% 이하 가구와 소득인정액 75% 초과 경상소득 75% 이하 가구의 경우 공공임대 거주비율이 20.0%~29.7%로 20%를 상회하여, 경상소득 75% 초과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임대 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3-5〉 임대주택 유형

(단위: %)

구분	수급가구 (생계·의료)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 75% 초과 경상소득 75% 이하	경상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민간임대	48.6	74.0	70.0	71.4	73.5	75.0	79.8	80.0	88.4	80.5
공공임대	51.4	26.0	29.7	28.6	26.5	24.6	20.0	19.5	10.9	19.0
기타	-	-	0.3	-	-	0.3	0.2	0.5	0.7	0.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등이 포함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공공임대 거주비율은 48.9%로 생계·의료 수급가구에 비해 2.5%p 낮은 수준이나 전체 가구에 비해서는 29.9%p 높았고, 민간임대 거주비율은 전체 가구에 비해 29.4%p 낮게 나타났다.

〈표 4-3-6〉 임대주택유형(소득재구분)

(단위: %)

구분	수급가구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기준 중위소득				전체
			45%이하	45-75%	75-100%	100%초과	
민간임대	48.6	51.1	76.2	79.3	80.2	87.2	80.5
공공임대	51.4	48.9	23.6	20.5	19.8	12.2	19.0
기타	-	-	0.2	0.2	-	0.7	0.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생계·의료 수급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서로 중복될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라. 방 수 및 주택면적

생계·의료 수급가구의 평균 방수는 1.81개로 전체가구 및 수급가구를 제외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적고, 평균 주택면적은 43.49㎡로 가장 좁았다. 수급가구를 제외한 계층 중 소득인정액 75% 초과 경상소득 75% 이하 가구와 경상소득 75% 초과 가구의 경우 전체가구에 비해 평균 방수는 많고, 평균 면적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7〉 평균 방수 및 주택면적

(단위: 개, ㎡)

구분	수급가구 (생계·의료)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 75% 초과 경상소득 75% 이하	경상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평균 방 수 (개)	1.81	1.97	2.13	2.14	2.06	2.07	2.69	2.64	2.68	2.59
평균 주택면적 (㎡)	43.49	53.75	57.66	56.84	54.97	55.61	80.77	78.70	85.46	79.5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평균 방수는 1.90개로 전체가구(2.59개)에 비해 적고, 생계·의료 수급가구보다는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주택면적도 생계·의료 수급가구에 비해 3.02㎡ 정도 컸으며, 전체가구의 58.47%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가와 임차 모두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평균 주택면적이 생계·의료 수급가구보다 넓었으며, 그 차이는 자가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4-3-8〉 평균 방수 및 주택면적(소득재구분)

(단위: 개, ㎡)

구분	수급가구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기준 중위소득				전체	
			45%이하	45-75%	75-100%	100%초과		
평균 방 수 (개)	1.81	1.90	2.13	2.07	2.08	2.70	2.59	
평균 주택면적 (㎡)	43.49	46.51	58.13	55.89	54.39	84.83	79.54	
	자가	60.67	66.86	62.51	68.62	68.76	95.6	94.44
	임차	41.67	44.18	45.46	44.81	46.20	64.27	58.55

주: 생계·의료 수급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서로 중복될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마. 주택 및 주거 환경 욕구

1)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필요

전체 가구에서는 꼭 필요한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해 '자연재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택'과 '구조물이 견고하고 심각한 균열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계·의료 수급가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자연재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택'(92.9%)과 '구조물이 견고하고 심각한 균열이 없을 것'(89.9%)을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생계·의료 수급가구는 전체가구에 비해 주택 및 주거환경의 각 요건에 대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4-3-9〉 꼭 필요한 주택 및 주거환경

(단위: %)

구분	수급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 75% 초과 경상소득 75% 이하	경상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적정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	72.3	71.3	73.9	76.0	82.3	81.6	82.7	87.3	91.3	87.7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87.2	86.5	90.9	93.0	97.2	93.4	94.9	96.7	97.9	96.4
구조물이 견고하고 심각한 균열이 없을 것	89.9	88.5	92.6	95.0	97.6	96.3	96.7	98.2	98.8	97.7
방음, 환기, 채광이 적절한 주택에 거주	85.6	89.0	88.9	90.5	90.9	93.1	94.2	95.2	96.8	95.2
습기가 차지 않거나 벽이나 바닥 손상 없는 것	88.0	89.6	91.5	93.5	93.5	93.1	95.6	96.6	97.6	96.4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	88.9	87.9	91.3	94.9	94.2	95.3	96.6	97.0	98.5	97.2
자연재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거주	92.9	93.4	94.2	97.2	97.9	97.1	97.5	98.1	99.0	98.2
지상에 거주	85.2	85.4	84.4	90.6	90.4	90.1	91.2	92.3	94.7	93.0
도보 10분 거리 버스정거장, 전철역	84.6	82.3	85.1	88.0	89.2	87.8	86.5	88.2	88.3	87.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생계·의료 수급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주택 및 주거환경의 요건에 대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자연재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택’(93.9%)과 ‘구조물이 견고하고 심각한 균열이 없을 것’(90.8) 외에도,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90.3%), ‘습기나 이로 인한 손상이 없는 곳’(89.3%),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추는 것’(88.2%)에 대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서 안전과 함께 난방, 습도 등 거주자의 건강을 위한 실내 환경, 부엌과 욕실 등의 필수 시설에 대한 필요를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10〉 꼭 필요한 주택 및 주거환경(소득재구분)

(단위: %)

구분	수급가구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기준 중위소득				전체
			45%이하	45-75%	75-100%	100%초과	
적정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	72.3	73.7	73.2	82.0	84.8	89.6	87.7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추는 것	87.2	88.2	90.1	95.2	95.2	97.4	96.4
구조물이 견고하고 심각한 균열이 없을 것	89.9	90.8	92.4	96.5	97.1	98.5	97.7
방음, 환기, 채광이 적절한 주택	85.6	86.8	89.8	91.7	93.2	96.3	95.2
습기나 이로 인한 손상이 없는 것	88.0	89.3	91.4	93.3	93.7	97.3	96.4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	88.9	90.3	90.4	94.7	95.5	98.1	97.2
자연재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택	92.9	93.9	94.4	97.5	97.3	98.7	98.2
지상에 거주	85.2	86.3	86.2	90.6	89.3	94.0	93.0
걸어서 10분 거리에 버스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는 것	84.6	85.6	83.9	88.6	90.6	88.0	87.8

주: 생계·의료 수급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서로 중복될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 주택 및 주거환경 구비 여부

전체 가구의 경우 현재 구비하고 있는 주택 및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방음, 환기, 채광이 적절한 주택’(88.1%)과 ‘습기나 이로 인한 손상이 없는 주택’(89.8%) 이라고 응

답한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생계·의료 수급가구의 경우 ‘습기나 이로 인한 손상이 없는 주택’에 대한 필요성이 88.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해, 이를 충족하고 있는 경우는 76.2%로 낮았다.

또한, 생계·의료 수급가구 및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인 경우 ‘습기나 이로 인한 손상이 없는 주택’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비율이 70% 대로 매우 낮아 이들 계층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표 4-3-11〉 구비하고 있는 주택 및 주거환경

(단위: %)

구분	수급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 75% 초과 경상소득 75% 이하	경상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적정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	94.7	95.5	94.7	94.5	93.2	89.4	97.5	94.2	97.3	96.4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화장실, 목욕 시설 갖추는 것	93.9	91.3	96.3	98.3	96.4	97.0	98.5	98.7	99.1	98.5
구조물이 견고하고 심각한 균열이 없을 것	86.3	85.2	85.3	85.5	93.3	90.0	93.2	94.8	96.8	94.9
방음, 환기, 채광이 적절한 주택	70.7	77.7	80.8	76.8	73.2	80.0	89.0	88.1	90.6	88.1
습기나 이로 인한 손상이 없는 것	71.4	74.4	77.5	75.4	81.3	80.8	88.3	89.3	93.2	89.8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	82.6	79.1	89.3	87.2	87.5	89.8	93.6	96.0	97.6	95.3
자연재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택	86.6	86.4	87.9	89.6	90.1	89.6	95.5	96.7	98.1	96.3
지상에 거주	89.7	91.3	93.3	92.3	90.8	88.4	97.8	96.5	97.9	96.8
걸어서 10분 거리에 버스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는 것	94.4	91.7	88.5	92.7	94.0	94.8	94.4	95.6	97.2	96.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생계·의료 수급가구에 비해 주택 및 주거환경의 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습기나 이로 인한 손상이 없는 것’과 ‘방음, 환기, 채광이 적절한 주택’에 대한 필요성이 각각 89.3%, 86.8%로 높게 나타난 데 비해 이를 갖추고 있는 비율은 각각 71.9%, 72.3%로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분석되었다.

〈표 4-3-12〉 구비하고 있는 주택 및 주거환경(소득재구분)

(단위: %)

구분	수급가구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기준 중위소득				전체
			45%이하	45-75%	75-100%	100%초과	
적정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	94.7	93.6	96.5	91.6	94.3	97.0	96.4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추는 것	93.9	94.2	96.5	96.7	97.3	99.0	98.5
구조물이 견고하고 심각한 균열이 없을 것	86.3	86.6	85.7	90.7	90.6	96.2	94.9
방음, 환기, 채광이 적절한 주택	70.7	72.3	81.5	76.7	76.8	90.5	88.1
습기나 이로 인한 손상이 없는 것	71.4	71.9	79.3	80.0	80.9	92.4	89.8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	82.6	83.7	86.0	88.8	92.9	96.9	95.3
자연재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택	86.6	87.5	87.6	89.8	94.4	97.7	96.3
지상에 거주	89.7	89.9	93.6	90.1	88.2	98.0	96.8
걸어서 10분 거리에 버스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는 것	94.4	94.3	90.9	93.9	96.5	96.6	96.2

주: 생계, 의료 수급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서로 중복될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 주거비 부담 수준

가. 주택가격 및 임차료

생계·의료 수급가구의 평균 주택가격은 8,411 만원으로 이는 전체 자가가구의 평균 주택 가격인 4억 1,495만원 대비 20.3%이며, 약 1/5 수준이다. 또한, 생계·의료 수급가구의 평균 전세금은 3,460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 전세금 2억 602만원에 비해 16.8%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생계·의료 수급가구를 제외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자가가구의 주택가격은 수급가구보다 더 낮으며, 점유형태가 전세인 가구의 평균 전세금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로 제외하고는 생계·의료 수급가구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점유형태가 보증금 있는 월세인 경우 생계·의료 수급가구의 보증금(742만원) 및 월세(17.8만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점유형태가 보증금 없는 월세인 생계·의료 수급가구의 월세는 18.7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 월세 25.4만원의 73.6%이며, 기준중위소득 30~40% 이하인 가구(월세 18.2만원)를 제외하고는 월세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표 4-3-13〉 평균 주택가격 및 임차료

(단위: 만원)

구분	수급 (생계·의료)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 75% 초과 경상소득 75% 이하	경상소득		전체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8	9		
주택가격	8,410.5	5,055.6	4,770.9	6,035.9	6,272.1	7,102.5	28,887.0	31,498.0	48,565.7	41,494.8	
전세금	3,460.3	3,252.1	4,490.1	4,402.3	4,989.9	6,030.1	14,773	17,049.1	23,375	20,601.7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742.3	1,524.6	1,301.6	994.5	1,372.8	1,324.6	3,449.5	2,405.5	2,890.4	2,281.4
	월세	17.8	27.5	22.7	27.6	25.1	29.1	28.5	30.0	37.6	31.6
보증금 없는 월세	18.7	24.9	18.2	22.4	27.6	24.1	18.8	27.0	33.8	25.4	

주: 2021.12.31.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월세는 2021.1.1.~2021.12.31. 동안 월평균 금액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 2,774만원으로 생계·의료 수급가구(약 8,411만원)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전세금(5,334만원)과 보증금 있는 월세의 보증금(936만원) 및 월세(19.9만원), 보증금 없는 월세(18.9만원)는 모두 생계·의료 수급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21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로 생계(30% 이하), 의료(40% 이하)급여에 비해 높기 때문에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과 임차료 수준이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3-14〉 평균 주택가격 및 임차료(소득재구분)

(단위: 만원)

구분	수급가구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기준 중위소득				전체	
			45%이하	45-75%	75-100%	100%초과		
주택가격	8,410.5	12,774.3	5,312.1	6,620.3	8,167.1	42,905.4	41,494.8	
전세금	3,460.3	5,334.2	3,890.3	5,470.8	6,426.0	22,234.9	20,601.7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742.3	936.4	1,316.8	1,254.8	1,383.1	3,009.7	2,281.4
	월세	17.8	19.9	27.8	27.6	29.9	36.4	31.6
보증금 없는 월세	18.7	18.9	17.2	27.4	25.9	31.8	25.4	

주1: 생계·의료 수급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서로 중복될 수 있음

2: 2021.12.31.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월세는 2021.1.1.~2021.12.31. 동안 월평균 금액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3-3〕 평균 주택가격 및 임차료(생계·의료 수급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 전체)

(단위: 만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나. 월평균 주거비 수준

1) 생활비 대비 주거비 수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월평균 주거비는 19.2만원으로 생계·의료 수급가구의 월평균 주거비 17.3만원에 비해 1.9만원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총생활비 대비 주거비의 비중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14.3%, 생계·의료 수급가구는 15.3%로 소득인정액 수준이 낮을수록 총 생활비 대비 주거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표 4-3-15〉 월평균 총생활비 대비 주거비 수준

(단위: 만 원, %)

구분	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전체
			43%이하	43-75%	75-100%	100%초과	
월평균 총 생활비(A)	112.8	134.2	104.5	146.1	184.0	399.5	357.9
월평균 주거비(B)	17.3	19.2	12.6	17.5	20.7	15.5	15.9
(B/A) (%)	15.3	14.3	12.1	12.0	11.3	3.9	4.4

주: 생계·의료 수급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서로 중복될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 점유형태별 주거비 수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점유형태별 월평균 주거비는 자가가구 8.2만원, 임차가구 21.4만원으로 임차가구의 월평균 주거비가 13.6만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거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월세가 임차가구에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임차가구의 월평균 주거비에서 월세는 19.8만원으로 비중이 92.5% 수준이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월평균 주거비 중 관리비⁷⁰⁾는 전체가구 2.4만원, 자가가구 2.8만원, 임차가구 2.5만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점유형태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월평균 주거비 중 수선유지비는 전체가구 0.4만원, 자가가구 0.3만원, 임차가구 2.2만원으로 임차가구의 수선유지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70)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관리비는 개별 가구에서 사용한 항목이 아닌 공용관리비, 경비용역비, 청소비, 소독비 등 공동관리를 위해 청구된 비용을 의미함

〈표 4-3-16〉 점유형태별 주거비 구성

(단위: 만 원)

구분	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전체
			43%이하	43-75%	75-100%	100%초과	
월평균 총 생활비(A)	112.8	134.2	104.5	146.1	184.0	399.5	357.9
자가	119.1	160.5	99.2	130.8	157.7	423.2	411.6
임차	113.8	133.7	124.2	158.5	192.8	360.4	298.1
기타(무상포함)	92.2	103.9	83.2	126.0	174.8	341.5	242.6
월평균 주거비(B)	17.3	19.2	12.6	17.5	20.7	15.5	15.9
자가	6.2	8.2	1.7	5.4	3.8	10.3	10.1
임차	19.4	21.4	24.7	25.9	28.0	26.9	26.0
기타(무상포함)	1.4	1.8	2.8	5.4	6.0	6.4	5.4
- 월세	17.8	19.8	27.0	27.6	29.7	36.2	31.2
- 관리비	2.2	2.4	2.2	2.8	2.5	6.9	6.2
자가	1.8	2.8	0.9	2.5	2.7	7.7	7.5
임차	2.4	2.5	2.5	2.3	2.3	5.6	4.7
기타(무상포함)	1.1	1.3	2.4	4.4	3.6	4.9	4.1
- 수선유지비	0.3	0.4	0.2	0.5	0.3	0.8	0.7
자가	0.3	0.4	0.2	0.5	0.3	0.8	0.7
임차	1.8	2.2	0.5	1.5	0.6	1.2	1.2
기타(무상포함)	0.1	0.2	0.4	0.5	0.7	0.6	0.5

주1: 생계·의료 수급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서로 중복될 수 있음
 2: 평균 월세액은 보증부 월세 및 월세(사급세, 연세, 일세)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3: 월평균주거비 중 이사비, 복비 등이 관리비와 수선유지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월평균 주거비 금액과 월세, 관리비, 수선유지비의 합계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주택가격 및 임차료의 월세액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액이지만, 월평균주거비의 월세는 2021년 동안 월세액의 평균값이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3) 임대유형별 주거비 수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임대유형별 월평균 주거비는 민간임대 거주가구 26.2만원, 공공임대 가구 16.5만원으로 민간임대 거주가구의 월평균 주거비가 9.7만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민간임대 거주가구의 월세는 24.6만원, 공공임대 거주가구의 월세는 12.2만원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월세는 민간임대주택의 절반 수준이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가 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민간임대 거주가구의 관리비는 1.3만원, 공공임대 거주가구는 3.7만원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공공임대 거주가구의 경우 영구임대주택과 같

은 아파트 형태인 건설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공용관리비가 많이 부과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수선유지비는 민간임대 거주가구 0.1만원, 공공임대 거주가구 0.3만원으로 공공임대 거주가구의 수선유지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4-3-17〉 임대유형별 주거비 구성

(단위: 만 원)

구분	수급가구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전체
			43%이하	43-75%	75-100%	100%초과	
월평균 총 생활비(A)	113.8	133.7	124.2	158.5	192.8	360.4	298.1
민간임대	111.0	134.7	122.9	156.3	189.2	365.7	315.0
공공임대	116.4	132.6	128.3	163.7	207.5	316.2	221.6
기타	-	-	112.0	475.0	-	471.4	467.9
월평균 주거비(B)	19.4	21.4	24.7	25.9	28.0	26.9	26.0
민간임대	24.1	26.2	26.4	27.5	29.8	27.6	27.5
공공임대	14.9	16.5	19.3	19.8	20.6	22.4	19.7
기타	-	-	20.0	18.0	-	13.1	13.3
- 월세	16.7	18.5	21.6	23.2	25.3	20.6	20.7
민간임대	22.9	24.6	24.2	25.6	27.8	21.4	22.4
공공임대	10.9	12.2	13.1	14.0	15.3	15.8	14.1
기타	-	-	20.0	10.0	-	1.0	1.4
- 관리비	2.4	2.5	2.5	2.3	2.3	5.6	4.7
민간임대	1.0	1.3	1.6	1.5	1.6	5.5	4.5
공공임대	3.6	3.7	5.3	5.4	5.1	6.3	5.1
기타	-	-	0.0	8.0	-	8.3	8.2
- 수선유지비	0.2	0.2	0.1	0.1	0.2	0.2	0.2
민간임대	0.1	0.1	0.1	0.1	0.2	0.2	0.2
공공임대	0.2	0.3	0.0	0.1	0.0	0.1	0.2
기타	-	-	0.0	0.0	-	0.0	0.0

주1: 생계·의료 수급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서로 중복될 수 있음

2: 기타 임대유형은 표본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 주거관련 경제적 어려움

2021년 1년 동안 주거와 관련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을 보면,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이 전체가구의 경우 1.3% 인데 반

해, 생계·의료 수급가구의 경우 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더운 여름에 냉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은 전체가구 1.5%, 생계·의료 수급가구 11.6%로 격차가 더욱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집세(월세·일세)가 밀렸거나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가구의 경우 1.2% 인데 반해, 생계·의료 수급가구는 2.4%였으며, 생계·의료 수급가구를 제외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경우 9.9%로 생계·의료 수급가구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 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비수급 빈곤층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료 부담과 퇴거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18〉 주거관련 경제적 어려움 경험비율

(단위: %)

구분	수급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 75% 초과 경상소득 75% 이하	경상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9.8	15.6	4.2	4.3	4.7	3.9	1.4	0.3	0.2	1.3
더운 여름에 냉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11.6	15.5	4.4	5	4.4	4.9	1.7	0.4	0.2	1.5
집세(월세·일세)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자가 또는 무상 제외)	2.4	9.9	1.8	2.1	5.8	4.6	0.4	1.0	0.4	1.2

주: 집세가 밀렸거나 그 이유로 이사를 한 경험은 응답자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유의를 요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이 8.7%로 생계·의료 수급가구의 9.8%에 비해 낮았으며, ‘더운 여름에 냉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도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10.4%로 생계·의료 수급가구 11.6%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집세(월세·일세)가 밀렸거나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은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2.8%로 생계·의료 수급가구의 2.4%에 비해 높았다. 한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비수급가구의 경우 ‘집세(월세·일세)가 밀렸거나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

는'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4.9%로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빈곤계층 중 주거급여 비수급가구인 경우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비해 임대료의 미납이나 퇴거를 경험한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표 4-3-19〉 주거관련 경제적 어려움 경험비율(소득재구분)

(단위: %)

구분	수급가구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기준 중위소득				전체
			45%이하	45-75%	75-100%	100%초과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9.8	8.7	7.3	4.4	1.5	0.3	1.3
더운 여름에 냉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11.6	10.4	7.3	4.8	1.5	0.4	1.5
집세(월세·일세)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자가 또는 무상 제외)	2.4	2.8	4.9	4.9	2.2	0.3	1.2

주: 생계·의료 수급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서로 중복될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3.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주거급여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인지 경로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인지한 경로는 ‘공공부문의 전화, 방문, 상담, 안내문 등’이 47.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족, 친구, 이웃, 지인 등을 통해서’(42.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생계·의료 수급가구도 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의 전화, 방문, 상담, 안내문 등’이 48.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족, 친구, 이웃, 지인 등을 통해서’가 42.7%로 높게 나타났다.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제외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지경로에 대해 ‘가족, 친구, 이웃, 지인 등을 통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인지 경로

(단위: %)

구분	수급가구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전체
			45%이하	45-75%	75-100%	100%초과	
공공부문의 전화, 방문, 상담, 안내문 등	48.5	47.6	13.6	11.1	8.9	7.6	10.7
민간부문의 전화, 방문, 상담, 안내문 등	1.9	1.7	0.9	1.1	0.2	0.9	0.9
가족, 친구, 이웃, 지인 등을 통해서	42.7	42.3	55.4	52.8	52.8	37.5	39.3
TV 또는 신문	2.4	3.4	18.1	20.7	22.8	35.4	31.9
인터넷	1.1	1.9	3.1	5.5	8.6	11.5	10.3
현수막, 전단지, 리플릿, 포스터 등	0.5	0.6	0.8	1.5	0.3	1.3	1.2
통·반장	2.2	2.0	2.0	0.7	0.5	0.7	0.8
기타	0.7	0.5	-	-	0.2	0.5	0.5
모름	-	-	5.9	6.7	5.6	4.5	4.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생계·의료 수급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서로 중복될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 비동거 가구 수급여부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비동거 가구가 수급하는 가구의 비중은 1.9%이며, 생계·의료 수급가구의 14.2%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수급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의 경우 비동거 가구가 수급하는 가구의 비중은 15.5%로 높게 분석되었다.

〈표 4-3-21〉 비동거 가구 수급 여부

(단위: %)

구분	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기준 중위소득				전체
			45%이하	45-75%	75-100%	100%초과	
있음	14.2	1.9	15.5	2.8	4.6	3.2	1.4
없음	85.8	98.1	84.5	97.2	95.4	96.8	9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신청경험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경험을 기준으로 함

2: 생계·의료 수급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서로 중복될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3) 신청경험

2021년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 11.8%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생계·의료 수급가구의 9.0%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도 12.2%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2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경험

(단위: %)

구분	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기준 중위소득				전체
			45%이하	45-75%	75-100%	100%초과	
있음	9.0	11.8	12.2	9.0	3.0	0.5	2.0
없음	91.0	88.2	87.8	91.0	97.0	99.5	98.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신청경험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경험을 기준으로 함

2: 생계·의료 수급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서로 중복될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4) 신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이미 기초보장 급여를 받고 있어서(99.8%)’를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생계·의료 수급가구(99.3%)에 비해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제외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의 경우는 ‘선정기준이 엄격해서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아서’가 51.6%로 가장 높았고, ‘필요 없어서(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14.9%, ‘신청절차 및 선정과정이 복잡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12.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4-3-23〉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1순위)

(단위: %)

구분	수급가구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기준 중위소득				전체
			45%이하	45-75%	75-100%	100%초과	
제도를 몰라서	-	-	6.5	3.9	3.5	1.8	1.9
이미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어서	99.3	99.8	1.0	1.2	0.8	0.1	6.5
필요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서)	0.2	0.1	14.9	21.4	22.1	76.0	66.3
경제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선정기준이 엄격해서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아서	0.4	0.1	51.6	55.2	53.3	17.3	19.3
경제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스스로 해결하려고	0.1	-	7.4	6.5	12.5	3.1	3.4
신청절차 및 선정과정 복잡	-	-	12.2	5.2	4.5	0.9	1.3
지원받을 금액이 적어서	-	-	1.0	0.4	0.6	0.1	0.2
우리 가족에게 적합한 그병가 없어서	-	-	-	0.5	0.1	0.4	0.4
타인이 내 생활을 아는게 싫어서	-	-	1.4	0.6	1.2	0.1	0.1
신청기관이 멀어서	-	-	0.5	0.1	-	-	0.0
소득, 재산이 노출되는 것이 싫어서	-	-	-	-	0.1	0.1	0.0
다른 복지급여를 못 받거나 적게 받을까봐	-	-	-	0.5	-	0.0	0.0
비동거 부모, 자녀 등이 피해를 겪을까봐	-	-	3.7	4.5	1.3	0.2	0.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생계·의료 수급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서로 중복될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결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결과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모두 받고 있는 비율은 42.7%로 이는 생계·의료 수급가구의 60.0%보다 낮았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일부만 받고 있는 경우는 57.3%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급여 비수급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모두 받고 있는 비율은 21.6%로 분석되었다.

〈표 4-3-24〉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결과

(단위: %)

구분	수급가구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기준 중위소득				전체
			45%이하	45-75%	75-100%	100%초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모두 받음	60.0	42.7	21.6	18.2	4.1	8.2	25.9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일부만 받음	40.0	57.3	22.0	25.9	20.8	8.4	34.1
아무것도 받지 못함	-	-	56.5	55.9	75.2	83.4	4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생계, 의료, 주거급여는 받지만, 대상자가 없어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모두 받음에 포함

주2: '소득인정액 75-100%' 구간의 표본수는 30개 미만으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주3: 생계·의료 수급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서로 중복될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 주거급여 수급가구로 선정되지 못한 이후 해결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제외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이하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후 해결방법에 대해 '부양의무자(비동거 부모,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29.7%, '본인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15.3%, '공공기관 프로그램(공공근로사업, 차상위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9.8%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는 주위의 도움, 절약하는 생활 외에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부족한 생활비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25〉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후 해결 방법

(단위: %)

구분	수급가구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기준 중위소득				전체
			45%이하	45-75%	75-100%	100%초과	
긴급복지지원의 도움	-	-	3.8	-	-	-	0.7
부양의무자(비동거 부모,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	-	-	33.1	26.9	23.7	21.1	24.6
빛을 내어서 생활 민간단체의 도움	100.0	-	2.1	6.2	-	7.6	5.4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	-	-	-	-	-	-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	68.4	29.7	47.8	25.4	43.1	40.8
공공기관 프로그램(공공근로 사업, 차상위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	-	1.2	6.7	-	14.6	8.5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	-	9.8	8.4	18.4	0.9	5.9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	-	15.3	3.9	32.5	7.3	9.9
기존에 받던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	31.6	-	-	-	-	0.7
기타	-	-	5.2	-	-	5.4	3.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수급자 선정되지 못한 이후 해결방법에 대한 응답은 2021년 1월~2022년 6월까지 신청한 결과를 기준으로 함

2: 생계의료 수급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 구분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3: 생계의료 수급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75~100% 이하 구간의 표본수는 30개 미만으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4: 생계·의료 수급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서로 중복될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경험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제외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의 5.8%는 2021년~2022년 6월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75% 이하 가구에서도 4.7%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소득인정액의 변동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도 수급여부도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26〉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경험

(단위: %)

구분	수급가구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기준 중위소득				전체
			45%이하	45-75%	75-100%	100%초과	
있음	99.6	100.0	5.8	4.7	1.4	0.2	7.3
없음	0.4	0.0	94.2	95.3	98.6	99.8	92.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경험은 2021년 1월~2023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함

주2: 생계의료 및 주거급여 수급가구 구분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주3: 생계·의료 수급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서로 중복될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수급 이유

2021년 동안 주거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의 수급 이유는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가 5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줄어서’ 14.5%,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 나가서’ 9.7%,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8.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줄어서’ 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14.5%로 생계·의료 수급가구(8.4%)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거급여의 경우 근로능력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므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도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구가 일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4-3-27〉 주거급여를 수급하게 된 가장 큰 이유(소득재구분)

(단위: %)

구분	수급가구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기준 중위소득				전체
			45%이하	45-75%	75-100%	100%초과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8.4	14.5	14.1	45.2	43.1	20.5	15.3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58.2	51.8	52.8	22.8	56.9	65.4	51.4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형편이 나빠져서	7.0	7.4	5.5	13.3	-	-	7.4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9.0	9.7	10	7.2	-	5.2	9.6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7.9	6.9	4.7	1.6	-	-	6.6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0.1	0.2	.	.	-	-	0.2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8.3	8.3	13	6.5	-	8.9	8.3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0.2	0.3	-	-	-	-	0.3
교육급여 대상 학령기 가구원 발생	-	-	-	-	-	-	-
기타	0.9	0.9	-	3.4	-	-	0.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2021년 1월~2023년 6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한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함
 주2: 생계·의료 및 주거급여 수급가구 구분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가구를 제외한 소득구간에 포함된 가구는 표본수가 30개 미만으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주3: 생계·의료 수급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서로 중복될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3) 주거급여 수준의 적절성

2021년 동안 주거급여를 수급한 경험이 있는 가구 중 임차급여의 급여수준에 대해 매우 적절 또는 적절하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은 44.5%,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4.6%이며, 매우 부족 또는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1.0%로 매우 적절 또는 적절하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수선유지급여의 급여수준에 대해 매우 적절 또는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6%로 임차급여 수급가구가

급여 수준에 대해 적절하다고 느끼는 비율보다 낮게 분석되었다.

〈표 4-3-28〉 주거급여 수준의 적절성

(단위: %)

구분	매우 적절하다	적절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합계
임차급여	6.1	38.4	24.6	24.9	6.1	100.0
수선유지급여	4.5	26.1	42.6	22.8	4.0	100.0

주 : 2021년 1월~2023년 6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한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4) 주거급여 수급 기간

2021년~2022년 6월 동안 주거급여를 수급한 경험이 있는 가구 중 주거급여의 평균 수급기간은 16.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기간이 '13~18개월'로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90.1%로 가장 많았고, '7~12개월' 4.9%, '4~6개월' 3.2%, '3개월 이내' 1.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대부분 장기간 주거급여 수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29〉 주거급여 수급기간

(단위: 개월)

구분	3개월 이내	4~6개월	7~12개월	13~18개월	합계	평균 수급기간
주거급여 수급가구	1.8	3.2	4.9	90.1	100.0	16.8

주 : 2021년 1월~2023년 6월까지 주거급여 수급한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제4절 의료욕구

본 절에서는 2021년도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저소득계층의 의료이용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향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가구들의 건강수준 정도, 의료이용 현황, 소득계층별 의료비 부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구 소득계층별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 가구당 만성질환자 수, 가구당 월평균 보건의료비 수준, 소득수준별 의료비 부담 수준 및 의료비 총당 방식 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가구 소득계층별 미충족 의료 욕구의 발생 정도를 비교해 보기 위하여 의료 및 건강에 대한 욕구 및 박탈정도 등 의료 필요성은 있으나 치료를 포기한 가구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의료이용에 있어서 소득계층별 불형평성이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불형평성은 저소득층에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건강수준

소득수준별 건강수준에서는 가구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자 이환 가구 비율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비교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의료이용 및 건강관리 수준은 가구의 소득격차에 따라 불형평성을 보이고 있는 바, 본 절에서는 가구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자 이환정도와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건강상태 등에 대한 소득계층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가구 구성원의 건강수준과 가구의 의료비 지출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만성질환 이환 가구 분포를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 전체가구 중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은 약 57.9% 수준이나 이러한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은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구 소득이 증가할수록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수급 대상 가구 중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로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은 91.0%로 가장 높았고, 소득인정액 75% 초과 경상소득 75%이하 가구의 80.8%로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상소득 75% 이상에서는 만성질환자 이환자 가구 비율이 낮아졌으며 경상소득 100%이상 가구의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은 47.3%로 가장 낮았

다. 이는 소득계층별 가구구성원의 연령과 건강 관리 수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저소득 가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건강상태 및 기능저하로 인한 근로무능력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일반계층의 연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높아 만성질환 이환 가구원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position)에 따라 건강수준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가구원 수 대비 가구의 만성질환자 수 비율도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구원수 대비 평균 만성질환자 수는 0.42명으로 나타났으나 가구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구당 만성질환자수는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최하위의 수급가구의 가구원 수 대비 만성질환자 수 0.88명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소득 최상위 계층인 중위소득 100% 이상 가구는 약 0.3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4-1〉 만성질환자(1)가 있는 가구 비율

(단위: %)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7% 초과 경상소득 7% 이하	경상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가구비율	91.0	77.2	79.8	78.0	74.4	65.8	80.8	63.1	47.3	57.9
가구원수 대비 만성질환자수 비율	0.88	0.71	0.75	0.70	0.68	0.58	0.68	0.46	0.30	0.42

주: 1) 기간에 제한 없이 투병 또는 투약하고 있는 경우 만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은 가구 유형별로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을 살펴보았다. 조손가구 및 소년소녀 가장 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았으나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손가구의 특성 상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은 고령층의 영향으로 보인다.

〈표 4-4-2〉 가구유형별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

(단위: %)

구분	단독가구	모자가구	부자가구	조손가구 및 소년소녀 가장	기타	전체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	55.7	26.4	30.6	98.2	59.4	57.9
가구유형별 비중	32.8	0.8	0.2	0.1	66.0	100.0

주1) 모자(부자)가구는 모(부)와 만18세미만 자녀, 단 취학(휴학)시 만22세미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건강상태는 전통적으로 기대수명이나 유병률과 같은 객관적 지표로 측정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의학적 진단 여부와 별개로 개인이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도 개인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수준을 측정하여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본인이 고혈압으로 투약을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면서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더라도 건강을 걱정하고 염려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낮게 평가할 수 있다. 가구주의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1에 가까우며 매우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 5점으로 측정하였다. 전체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에 가까운 2.5점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높고 근로능력이 미약한 수급가구주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3.7점으로 가장 낮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표 4-4-3〉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75% 초과 경상소득 75% 이하	경상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8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상태	3.7	3.4	3.4	3.2	3.0	2.8	2.9	2.5	2.2	2.5

주: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척도(① 아주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⑤ 건강이 아주 안 좋다)의 지표를 점수화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건강검진 수검여부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유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47.0%로 건강보험 대상자 74.2%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유병률과 입원율이 높아 평소 의료이용이 더 많으며 이러한 의료이용 과정에서 주요 건강문제들이 파악되거나 건강검진 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수검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신지영 외, 2020). 본 조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평소 병원 진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어서(3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22.1%)’, ‘향후 받을 예정임(2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4〉 건강검진 수검 현황

(단위: %)

구분	의료급여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률	47.0	74.2

주1) 2021 건강검진통계연보는 건강보험 대상자를 기준(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외)으로 작성한 자료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21년 건강검진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표 4-4-5〉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순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주된 사유	비율
1순위	평소 병원 진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어서	33.0
2순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22.1
3순위	향후(2022년 7월~2022년 12월) 받을 예정임	20.5
4순위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까봐	13.7
5순위	검진기관까지 이동이 어려워서	5.3
6순위	생계 등으로 시간이 없어서	1.8
7순위	검진 시설 이용이 불편해서	1.6
8순위	기타	1.4
9순위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 때문에 입원 기간이 길어서	0.30
10순위	검진 시 건강보험대상자와의 차별적인 대우	0.27

주: 1) 2021 건강검진통계연보는 건강보험 대상자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임(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 의료비 부담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에서는 소득계층별 가구의 월평균 보건의료비, 본인부담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입원진료비, 주관적 의료비 부담 수준과 가구의 의료비 부담 방식에 대해 소득 계층별 부담 수준을 검토하였다.

먼저 생활비 지출 중 월평균 보건의료비 지출 수준을 살펴보았다. 2019년 11월 처음으로 발생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는 보건의료비에 코로나 용품비를 추가하였다. 코로나 용품비에는 마스크, 코로나19 진단키트, 손소독제 구입비 등을 별도 조사하여 보건의료비에 포함시켰다.

2021년 가구당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2018년에 비해 1.5만원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마스크, 코로나19진단키트, 손소독제 등 코로나 용품비 발생으로 인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코로나 용품비를 제외하면 2018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코로나 용품비를 제외한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보건의료비 지출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급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이 적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월평균 보건 의료비 지출도 약 6.5만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코로나 용품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감염병에 대한 대응에서도 소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월평균 보건의료비 지출은 가구 만성질환자 유무 및 입원 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율과 역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저소득 가구의 만성질환 이환 가구원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의료비 지출은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더 많은 지출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에 있어서도 소득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강도나 고급의료서비스 등 의료의 질적 측면에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4-4-6〉 월평균 보건의료비

(단위: 만원)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75% 초과	경상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경상소득 75% 이하	75-100%	100%+	
							1	2	3	
보건의료비(2018년)	4.7	9.3	9.0	9.7	12.4	14.0	16.8	14.5	18.6	16.5
보건의료비(2021년)	7.0	11.2	8.7	9.9	10.9	13.1	17.7	18.7	20.0	18.2
코로나 용품비 ¹⁾	0.5	0.6	0.5	0.8	0.8	1.0	1.0	1.5	1.8	1.5
보건의료비(코로나 용품비 제외)	6.5	10.6	8.2	9.1	10.1	12.1	16.7	17.2	18.2	16.6

주1) 코로나 용품비는 마스크, 코로나19 진단키트, 손소독제 등을 포함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지난 1년간 외래 및 약국에서 지불한 총 본인부담금을 가구 소득수준별로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총진료비(요양급여비용)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법정급여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조사에서의 본인부담은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이다.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였는데 이는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 법정급여비의 비중으로 나머지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은 35.5%임을 의미한다.

비급여를 포함한 외래 및 약국에서의 본인부담 진료비는 월평균 보건의료비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전체 가구의 연간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은 112.5만원 수준이었으며 가구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진료비 지출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급 가구의 월평균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비용은 36.3만원으로 비수급 가구의 진료비 본인부담 수준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외래 및 약국 진료비 경감을 위해 매월 6천원(연간 72,000원)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의 가구 소득 수준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금 수준은 약 2배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4-7〉 본인부담 외래 및 약국(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단위: 만원)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75% 초과 경상소득 75% 이하	경상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본인부담 진료비	36.3	62.3	71.9	74.5	81.9	86.2	125.4	111.8	120.8	112.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입원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율은 가구 소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입원은 외래보다 개인의 선택 영역이 훨씬 좁아 입원 이용량이나 강도를 환자입장에서 늘리거나 줄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전체 입원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연간 입원 진료비는 32.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별 일정한 경향은 없었다. 본 조사 결과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입원 본인부담금은 약 16.1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영향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입원 진료 시 법정 급여범위에서는 본인부담금이 면제(2종은 급여비용의 10%) 되고 있으나 의료급여에서 급여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인해 일부 본인부담 의료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8〉 본인부담 입원진료비(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단위: 만원, %)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75% 초과 경상소득 75% 이하	경상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본인부담 진료비(입원)	16.1	42.7	9.1	17.0	17.5	26.0	39.3	49.0	30.3	32.6
입원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비율	11.0	10.2	5.2	9.8	6.7	7.6	11.8	11.6	10.7	10.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지난 1년간 전반적인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 수준을 살펴보았다. 의료비에 대한 가구 부담 수준은 수급가구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서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수준을 ‘부담되었다’와 ‘부담되지 않았다’로 grouping하여 보면 전체 가구의 28.1%는 의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경상소득 100%이상 가구가 19.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료 급여 수급 가구는 공공부조로서의 본인부담면제(또는 일부부담)로 인하여 의료비가 부담수준이 25.4%로 낮았고,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료비 부담은 중위소득 30%이하 비수급 가구와 중위소득 30~50% 구간에 속하는 비수급빈곤 가구에서 52.1~53.6%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비수급빈곤층에 상대적 박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차상위 계층 지원에 있어서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은 보육,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및 차상위 자활급여 등 여타 차상위계층 지원기준과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어 차상위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4-4-9〉 의료비에 대한 가구 부담 수준

(단위: %)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75% 초과 경상소득 75% 이하	경상소득		전체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8	
전혀 부담되지 않았다(a)	33.3	13.6	10.0	10.3	10.2	11.8	7.5	11.2	21.0	17.8
거의 부담되지 않았다(b)	27.7	15.0	16.1	15.3	17.3	20.3	17.6	25.4	34.7	29.6
부담안됨(a+b)	61.1	28.7	26.1	25.6	27.5	32.1	25.1	36.6	55.7	47.5
보통이다	13.6	18.9	21.8	20.8	24.2	21.8	26.0	27.1	24.8	24.5
다소 부담되었다(c)	14.5	29.7	35.4	31.4	27.0	26.9	30.0	24.3	14.7	19.1
많이 부담되었다(d)	10.9	22.8	16.8	22.3	21.3	19.2	19.0	12.0	4.8	9.0
부담됨(c+d)	25.4	52.5	52.1	53.6	48.3	46.1	49.0	36.3	19.5	28.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3. 의료비 충당을 위한 의료자원

가구 의료비를 충당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생활비로 의료비를 충당한다는 응답이 월등히 많았고, ‘저축이용’, ‘민간보험’이라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약 87.1%는 생활비 중 일부를 의료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응답은 저소득계층에서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생활비 이외의 저소득계층 의료비 총당은 주로 ‘저축이용’이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특히 중위소득 30%이하 비수급 빈곤층에서 저축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9.4%로 다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의 경제력만으로는 의료비를 총당하기 어려워 외부의 자원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한편 수급가구를 제외한 중위소득 60%이하 가구는 ‘부모 또는 자식의 도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4-10〉 의료비 총당 방식

(단위: %)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75% 초과 경상소득 75% 이하	경상소득		전체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8	
생활비로	79.2	74.9	84.5	82.4	84.4	84.7	80.1	87.2	89.8	87.1
저축이용	2.8	9.4	1.5	4.3	3.4	3.0	9.1	4.9	3.5	4.4
전세비를 줄여서 자산처분으로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부모 또는 자식의 도움	1.7	6.0	6.8	7.1	7.6	6.3	5.8	3.2	0.6	2.1
민간보험으로	0.6	2.0	1.1	2.6	0.6	2.2	2.6	2.8	3.2	2.9
친지나 친구에게 도움받음	0.9	1.3	0.5	1.4	0.7	0.2	0.2	0.1	0.1	0.2
금융기관대출	0.2	3.0	0.0	0.0	0.5	1.0	0.6	0.1	0.1	0.2
사채 등 빚으로	0.5	0.6	0.0	0.3	0.5	0.0	0.1	0.0	0.0	0.1
기타	0.7	0.5	0.9	0.0	0.5	0.0	0.2	0.1	0.2	0.2
무응답	13.4	2.5	4.4	1.9	1.7	2.8	1.3	1.5	2.6	2.8

주: 수급가구(집단 1)의 기타의견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이 가장 많았고 산재, 자보 등의 보상 순이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의료이용에 있어 제도권내의 건강보험, 의료급여를 제외하면 민간의료보험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의료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득계층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보장 성격의 민간보험 가입 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전체 가구의 81.6%가 민간보험에 가입한 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증가하였는데 중위소득 30~40%에 속하는 비수급빈곤 가구의 26.7%만이 민간보험 가입 가구원이 있는 반면 중위소득 100% 이상 가구는 93.4% 이상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

와도 일치하여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민간보험가입률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지출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4-4-11〉 민간보험 가입가구 비율(가구원 중 최소 1명 이상)

(단위: %)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75% 초과 경상소득 75% 이하	경상소득		전체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민간보험에 가입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율	30.5	34.4	26.7	39.6	54.1	59.0	62.5	85.4	93.4	81.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저소득계층의 의료형평성과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보장수준이 낮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비 충당을 위한 자원의 불형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보험 가입률에서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납부하는 민간보험료의 차이에서도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의료보장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가구 소득수준별로 월평균 민간보험료를 비교해 본 결과, 민간보험에 가입한 가구원이 있는 수급 가구의 월평균 민간보험료는 월11.5만원 정도를 지출한 반면 중위소득 100%이상 가구는 월평균 38.1만원으로 민간보험 상품의 보장성 측면에서도 가구 소득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4-4-12〉 민간보험 가입가구 월평균 보험료(가구원 중 최소 1명 이상)

(단위: 만원)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75% 초과 경상소득 75% 이하	경상소득		전체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월평균 민간보험 보험료	11.5	15.2	11.8	17.1	15.0	16.1	22.5	28.3	38.1	33.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4. 미충족 의료 욕구

소득계층별 의료 및 건강에 대한 욕구와 박탈정도를 비교해 보고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의료 및 건강 관련 박탈상태는 의료이용의 필요성은 있으나 의료비 부담 등 다른 이유로 인해 실제 의료이용을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의료 및 건강에 대한 욕구 문항은 의료서비스의 필요성 인식에 대한 질문이며 박탈상태는 필요성은 있으나 실제 의료이용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미충족 의료 욕구라 할 수 있다.

의료 및 건강과 관련된 항목 중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는 것’, ‘건강을 위해 보약이나 영양제 또는 보조식품을 먹는 것’,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이라는 항목에 대한 욕구와 박탈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먼저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는 것’이란 항목에서 전체 83.8%의 가구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이러한 응답을 치과 진료에 대한 욕구 대비 박탈정도는 차이를 보였으며 소득계층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치과진료에 있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박탈을 경험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치과 진료가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미충족 욕구 정도는 비수급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중위소득 30%이하 비수급 가구가 6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위소득 30~40% 가구 63.1%, 중위소득 40~50%가구 62.6%순이었다. 한편 치과 치료를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수급가구에서도 60.8%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치과의 보장수준이 타 진료과에 비해 낮아 본인부담비용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⁷¹⁾ 21년 현재 치과 병원과 의원의 보장률은 각각 25.6%, 36.0%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64.5%⁷¹⁾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치과 진료의 경우, 제도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장 수준이 타 진료과에 비해 낮기 때문에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계층에서 더 높은 박탈을 경험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1) 건강보험 보장률은 건강보험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본인부담액 상한제 사후환급금, 임신출산 지원금 등 현금지급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임.

〈표 4-4-13〉 의료 및 건강에 대한 욕구(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는 것)

(단위: %)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75% 초과 경상소득 75% 이하	경상소득		전체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꼭 필요하다	80.1	79.3	75.8	76.9	82.2	79.5	83.2	81.3	85.4	83.8
하고 있다	39.3	35.3	36.9	37.4	43.0	41.7	52.3	57.9	59.6	56.0
못하고 있다	60.8	64.7	63.1	62.6	57.0	58.3	47.7	42.1	40.4	44.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주: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의 비율은 '꼭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건강을 위해 보약, 영양제 등 보충적 성격의 건강 관리의 욕구와 박탈정도를 살펴본 결과, 치과 진료와 유사하게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미충족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충적 건강식품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은 약 57.0%였으며, 이들 중 실제 영양제, 보약 등을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90.2%였으나, 가구 소득계층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다. '건강을 위해 보약, 영양제 등을 먹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하고 있지 못한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가구 비율은 수급가구가 43.8%가장 높았고 가구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박탈 경험 가구 비율은 크게 감소하여 중위소득 100% 이상 가구의 박탈 경험율은 5.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보충적 건강식품은 필수의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도권 내에서 급여되지 않기 때문에 보충적 성격의 건강보조식품 사용에서는 가구 소득 차이에서 발생하는 미충족 욕구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표 4-4-14〉 의료 및 건강에 대한 욕구(건강을 위해 보약, 영양제 등을 먹는 것)

(단위: %)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75% 초과 경상소득 75% 이하	경상소득		전체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꼭 필요하다	40.7	37.9	39.5	42.4	44.6	45.7	51.4	56.0	61.6	57.0
하고 있다	56.3	68.6	72.9	65.8	72.1	82.5	86.8	90.0	94.1	90.2
못하고 있다	43.8	31.5	27.1	34.2	27.9	17.6	13.2	10.0	5.9	9.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이라는 항목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94.6%였으며 이들 중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비율도 96.9%로 매우 높았다. 이는 처방의약품은 제도권(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보장되고 있으며, 기본적 의료이용에 있어 정기적 진료나 치료 방문보다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지출되는 의약품의 구매는 소득계층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15〉 의료 및 건강에 대한 박탈정도(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것)

(단위: %)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75% 초과 경상소득 75% 이하	경상소득		전체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8	
꼭 필요하다	94.3	96.0	91.1	92.9	96.6	89.2	96.3	94.5	94.5	94.6
하고 있다	97.7	98.5	97.5	95.5	96.9	95.5	97.8	97.8	96.5	96.9
못하고 있다	2.3	1.5	2.5	4.5	3.1	4.5	2.2	2.2	3.5	3.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의료 및 건강 관련 욕구와 박탈정도를 살펴본 결과, 기본적인 의료이용에도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빈곤층 가구는 의료이용과 치과 진료에 있어 상당한 박탈정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들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미충족 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였거나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미충족 의료욕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 중 약 6.9%의 가구에서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이러한 미충족 의료욕구 정도가 높았다. 비수급 빈곤층을 포함하고 있는 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가구의 28.3%가 미충족 의료 욕구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급가구의 27.8%도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은 중위소득 75%이하 가

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중위 소득 75%이상에 속하는 가구의 미충족 의료욕구는 급격히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중위소득 3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미충족 의료 욕구 정도가 수급집단 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두 집단의 박탈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전 연도들에서 파악된 결과들보다도 그 상승폭이 매우 큰 것인데 이에 대한 원인은 아래와 같다.

〈표 4-4-16〉 질환에도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

(단위: %)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75% 초과 경상소득 75% 이하	경상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8	9	
치료포기 경험 있음	27.8	28.3	22.6	20.3	20.3	20.6	9.2	6.6	2.9	6.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위 표에 제시된 2021년 치료포기 경험 비율(6.9%)은 2018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5년과 2018년 그리고 2021년 조사 결과의 추이를 볼 때 해당 응답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지만, 수급자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는 2018년에 비해 9~10%p 크게 늘어났다.⁷²⁾ 이는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즉,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실업 및 휴직, 폐업 등으로 인해 가구소득 감소에서 발생한 결과일 수 있다. 박은자(2021)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감소한 가구에서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파악한 결과, 2021년 수급자 집단에서 2020년보다 경상소득이 감소한 가구의 비율은 약 46%에 달했으며, 기준중위소득 30%이하 집단의 경우 해당 비율이 약 8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30% 초과 집단에서 수급자 집단 또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집단으로 바뀐 경우가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

72)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2015년, 2018년)

(단위: %)

연도	수급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75% 초과 경상소득 75% 이하	경상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8	9	
2015년	14.0	17.3	14.4	10.3	11.0	10.0	5.4	2.9	1.6	3.9
2018년	17.4	19.2	18.5	17.0	14.6	15.7	6.8	5.9	2.8	5.8

타나, 코로나19 기간 저소득층의 소득하락이 수급층과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 집단의 미충족 의료요구를 큰 폭으로 확대시킨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미충족 의료요구는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한 부문도 포함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질환자들의 방문을 통한 대면진료 제약의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표 4-4-17〉 2021년 수급자 집단 및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집단 중 소득 감소 가구

(단위: %)

구분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이하		
	미만	이상	전체	미만	이상	전체
전년도 대비 소득수준	46.3	53.8	100.0	80.8	19.2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표 4-4-18〉 기준중위소득 30% 초과에서 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집단이 된 가구

(단위: %)

	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이하**
2019	2.9	57.8
2020	5.0	83.7
2021	7.1	69.0

주 * 수급자 집단 중 전년도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 30% 초과인 가구 비율

** 기준중위소득30% 이하 집단 중 전년도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 30% 초과인 가구 비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전체적으로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치료를 포기한 주된 이유는 ‘진료비 부담 때문에’가 74.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과 시간에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8.8%로 높았다. 하지만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치료를 포기한 주된 이유로 ‘진료비 부담’이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장 높았으나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치료 포기 경험 비율이 높았다. 중위소득 100%이상 가구의 43.4%만이 진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에서는 진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했다는 응답 비율이 90% 상회하였다. 시간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한 경험은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더 많았다. 기타 응답으로는 중위소득 30%이하 가구에서 ‘거동이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많았고, 중위소득 75%이상에서는 ‘코로나 때문’이라는 응답이 다소 많았다.

〈표 4-4-19〉 치료를 포기한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75% 초과 경상소득 75% 이하	경상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진료비 부담	87.1	90.5	84.0	94.3	93.0	87.1	80.9	77.3	43.4	74.3
일과시간에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0.3	0.0	0.0	0.0	1.3	2.3	3.3	9.9	26.4	8.8
중환자병이 아닐까라 생각해서	3.8	2.6	0.9	2.8	0.7	5.8	5.2	4.1	15.7	6.9
의료기관과 거리가 멀어서	1.3	2.0	5.4	0.8	0.0	2.0	2.6	0.0	2.1	1.7
유아, 노인 등을 돌보줄 사람이 없어서	0.2	0.0	0.0	0.5	0.0	0.0	0.2	3.7	3.9	1.6
치료 효과가 없어서	3.4	2.9	7.7	1.6	2.9	1.7	4.3	2.2	5.9	4.0
기타	4.0	2.0	2.0	0.0	2.1	1.2	3.5	2.9	2.6	2.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지난 1년간 부족했던 보건의료비를 조사한 결과, 조사 가구 중 5.3%는 보건의료비가 부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 부족을 경험한 가구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보건의료비 부족 경험 가구는 중위소득 30%이하 비수급 가구가 26.0%로 약 5가구 중 1가구는 보건의료비의 부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위소득 30% 이하 수급가구도 가구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낮은 수준의 건강보장률, 비급여 진료비 등으로 인해 의료이용 시 법정 본인부담이 거의 없는 수급 가구의 약 24.6%도 보건의료비 부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의료비 부족을 경험했던 가구들의 보건의료비 부족액은 평균 468만원 수준이었으며 수급가구에서도 약 437만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4-20〉 부족했던 보건의료비 수준

(단위: %, 만원)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75% 초과 경상소득 75% 이하	경상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보건의료비 부족 경험 가구 비율	24.6	26.0	20.1	19.3	18.9	18.9	7.6	5.2	1.3	5.3
부족했던 보건의료비	437	388	428	424	432	356	497	499	585	46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5.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만족도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보다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만족도 수준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건강보험(의료급여)제도의 만족도를 ‘매우 만족’과 ‘만족’으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grouping하였다. 먼저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가구의 약 70.9%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 중 약 7.9%는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하여 건강보험 제도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불만족 사유로는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36.7%), ‘보험료 부과액의 형평성’(29.0), ‘보장성 범위가 넓지 않아서’(25.9%)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건강보험 대상자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수급 가구의 약 89.1%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였고 보통이라는 응답도 약 7.8%로 수급자의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의료급여 제도에 불만족으로 응답한 가구(3.1%)의 불만족 사유로는 ‘입원진료 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부담’,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건강보험대상자와의 차별적 대우’ 순으로 많았다.

〈표 4-4-21〉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제도 만족도

(단위: %)

구분	의료급여 수급	건강보험								(건강보험) 전체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75% 초과 경상소득 75% 이하	경상소득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8	9		
매우 만족(a)	36.1	24.4	9.8	11.9	9.3	13.0	11.5	11.1	10.9	11.2
만족(b)	53.0	49.9	60.8	60.1	63.8	59.3	63.4	61.2	58.8	59.7
매우 만족 또는 만족(a+b)	89.1	74.2	70.6	72.1	73.1	72.3	74.9	72.3	69.7	70.9
보통이다	7.8	17.8	25.8	24.2	21.1	22.9	18.6	20.6	21.4	21.1
불만족(c)	2.9	6.3	3.3	2.8	4.9	4.8	6.2	6.5	8.2	7.4
매우 불만족(d)	0.2	0.9	-	0.8	-	-	0.3	0.5	0.7	0.6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c+d)	3.1	7.2	3.3	3.5	4.9	4.8	6.5	6.9	8.9	7.9

주: 수급대상자인 1분위는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만족도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제5절 교육육구

모든 국민의 헌법 제31조 제1항에 제시된 교육받을 권리를 지닌다.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는 의무교육을 보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31조 제2항).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은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자유권 등 다른 기본권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면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불평등 완화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4. 2. 24. 93헌마192, 판례집 6-1, 177). 첫째, 교육은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시켜줌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주고, 둘째, 문화적이고 지적인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문화 창조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를 촉진시키고, 셋째,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윤리적 생활철학을 어렸을 때부터 습성화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이바지하고, 넷째,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통해서 직업생활과 경제생활 영역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국가, 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의의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기능은 국민들의 사회경제적지위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통해 출발기회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0.4.27. 98헌가16, 98헌마429 병합).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학령기 학생을 둔 경제적 취약계층(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기본적 급여 중 하나이다. 그러나 타급여에 비해 교육급여 대상 및 규모가 적어 주된 관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교육급여 수급가구의 학령기 학생 역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다양한 교육육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 가구별 사회경제적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취약계층의 교육적 불리함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김경애 외, 2020)도 제시되고 있어 교육격차 완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필수적 항목으로 인식되면서 가구별 사교육비 지출액이 상급학교 진학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늘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중에서 학생이 있는 가구의 소득구간별 분포,

교육욕구와 교육박탈, 학교급별·소득구간별 최소교육비 및 적정교육비 규모, 사교육비 지출규모 및 항목별 필요성 인식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교육급여 지원 항목 및 범위, 단가 등을 조정하고 취약계층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학생이 있는 가구의 분포

가. 가구별·소득구간별 학생이 있는 가구 분포

교육급여 자격요건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 독립된 급여체계를 갖춘 이후 2023년 현재까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생계급여가 중위소득 20%, 주거급여가 30%인데 비해 교육급여 자격 요건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수급가구 중에서도 지원 대상이 적고 규모도 크지 않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급여 자격요건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있는 가구의 분포를 먼저 파악하고 가구별 교육욕구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소득구간을 7개로 구분하였는데, 1구간은 생계,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이며, 2구간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교육급여 수급가구, 3구간은 중위소득 60% 이하, 4구간은 75% 이하, 5구간은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6구간은 경상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최상위구간인 7구간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인 소득1, 2구간의 초·중·고·대학생 분포를 타소득기준과 비교하여 활용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초·중등학생이 있는 가구 비율은 약 15.1%이며, 대학생이 있는 가구는 전체 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구분해보면 수급가구 중 초·중등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의 비율은 4.2%로 전체 평균보다 크게 낮으며, 교육급여 선정기준선인 소득 2구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는 6.1%로 전체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초·중등학생이 있는 가구 중 소득 4구간은 9.5%로 전체 평균의 63%, 소득 6구간은 18.6%, 소득 7구간은 17.6%로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학령기 학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가구(소득 1구간) 중 대학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1.3%로 전체 평균인 7.2%의 약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교육급여 수급가구인 소득 2구간에서는 그 비율이 1.8% 정도로 나타났다. 소득 3구간은 2.9%로 큰 증가는 없었으나 소득 6구간 및 최고 소득구간인 소득 7구간에서는 약 9.4% 정도로 나타나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시대에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구비율이 소득수준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출산과 관련하여 교육비 지출 규모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5-1〉 소득계층별 학생이 있는 가구의 비율

(단위: %)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50%	~60%	~75%		~100%	100%-	
		1	2	3		4	5	
초·중·고생	4.2	6.1	8.7	9.5	8.1	18.6	17.6	15.1
대학생	1.3	1.8	2.9	4.7	2.6	6.3	9.4	7.2

주: 1) 초·중·고생 및 대학생(전문대, 대학, 대학원생 포함)으로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 가구 분석
2) 가구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나. 학생개인별·소득계층별 분포

여기서는 가구가 아닌 학생 개인을 기준으로 소득계층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분석기준은 〈표 4-5-1〉에 제시된 7개 소득구간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초·중등학생 중 수급가구에 속한 학생 비율은 1.5%, 소득2구간은 1.6%, 소득 3구간 0.9%, 소득 4구간 1.4%로 나타났다. 소득 6구간 및 소득7구간의 초·중등학생 비율이 각각 17.7%, 70.1%로 높은 것과 비교하면 빈곤가구의 학령기 학생 수는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학생개인별로 소득계층을 구분해보아도 가구소득과 초·중등학생 수 간에 정적 상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대학생 중 수급가구에 속한 학생비율은 0.9%로 매우 적었으며 소득 4구간까지의 비율도 1%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 7구간인 최고 소득구간에서는 대학생 비율이 81.2%로 초·중·등학생 비율 대비 약 16%p 높게 나타났다. 초·중·등학생 대비 대학생의 경우 소득 5구간(소득인정액이 중위 75% 초과 경상소득이 중위 75% 이하)에서야 5.8%로 높아지고 있었으며 경상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도 전체 가구의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2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여전히 가구의 교육비 부담능력이 자녀 수 및 대학진학까지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20년 대비 수급가구의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계속 교육급여 지급기준으로 유지할 경우 교육급여 총규모는 더 낮아질 수 있으며,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한 더 이상 교육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의 경우도 수급가구에 속한 학생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은 교육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빈곤 가구에 속한 학생이므로 대학생활을 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물가상승 등이 이루어지면서 학비 및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등록금은 국가장학금 등으로 지불할 수 있으나 그 외 생활비 및 대학생활에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수급가구에 속한 대학생에 대한 지원 규모와 빈곤 수준을 분석하는 과정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

〈표 4-5-2〉 학생의 소득계층별 분포(개인 단위)

(단위: %)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50%	~60%	~75%		~100%	100%-	
	1	2	3	4	5	6	7	
초·중·고생	1.5	1.6	0.9	1.3	6.9	17.7	70.1	100
대학생	0.9	0.9	0.5	1.3	4.2	11.0	81.2	100

주: 1) 초·중·고생 및 대학생(전문대, 대학, 대학원생 포함)으로 재학하고 있는 학생 개인 단위
 2) 가구가중치에 해당 가구에 있는 교육수준별 가구원수(재학중인 학생수)를 곱한 학생가중치를 생성 후 적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 교육욕구와 교육박탈

교육에 대한 욕구는 심리적, 개인적 차원을 포함하여 사회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교육은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생활의 기초가 되므로 지위상승이나 경제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교육받은 인구가 많아질수록 국가 사회의 경쟁력 및 민주주의를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교육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교육박탈을 경험한다는 것은 교육기회의 접근 자체가 어렵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2018 국민생활실태조사에 이어 2022년에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고등교육, 학원·과외 수강, 참고서·도서구입, 고교졸업까지의 자녀양육’의 총 4가지로 교육욕구를 구분하고,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어려운 정도, 즉 상대적인 결핍 정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7단계의 소득구간별로 교육욕구와 교육박탈을 4가지 상황(1~4)으로 구분하여 상황통합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4-5-1]에 제시한 4가지 상황 중에서 교육욕구 대비 교육박탈이 높은 상황, 즉 ‘2유형: 꼭 필요-못함’이며 그 다음으로는 ‘3유형: 하면 좋음-못함’으로 나타난 결과가 가장 주의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다. 즉 교육욕구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나 하면 좋다는 인식(1 또는 2유형)이 중요하지만, 교육욕구가 있으나 이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 많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교육격차가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5-1] 4가지 교육욕구와 교육박탈 상황 및 유형

		< 교육욕구 >			
		(꼭필요)			
(못함)	2유형	1유형	(하고 있음)	< 교육박탈 >	
	3유형	4유형			
		(하면 좋음)			

소득구간별로 교육욕구 및 교육박탈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표 4-5-3〉 참조), 수급가구 여부에 따라 각 유형별·항목별 응답 비율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급가구에서는 [꼭필요-못함] 또는 [하면 좋음-못함]에 대한 답변이 높게 나

타난 반면, 소득구간이 높을수록 교육욕구를 충족([꼭필요-하고있음], [하면좋은-하고있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욕구 대비 박탈 인식에 대한 경향 역시 소득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항목별로 보면, 고등교육 욕구의 경우, 수급가구(1,2구간)에서 [꼭 필요-하고있음] 비율은 85~89%인데 비해, 소득7구간에서는 이 응답이 98.5%로 13%p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학원·과외 수강에 대해서도 수급가구는 [꼭 필요-하면 좋음 또는 못함] 비율(80.1%)이 높은 반면, 소득6-7구간에서는 [꼭필요-하고있음](90.6%)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구간이 높을수록 [꼭필요-못함] 또는 [하면좋은-못함]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학원·과외 수강에 대해 [꼭필요-하지못함] 비율은 수급가구가 42.6%인데 비해 소득7구간은 이에 대한 인식이 9.4%로 나타나 약 35%p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서나 도서구입의 경우에는 [꼭필요-하고있음] 비율은 소득1-2구간 대비 소득7구간이 높게 나타났고, [꼭필요-하지못함] 비율도 수급가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꼭필요-못함] 비율은 수급가구(1-2구간) 21%인데 비해 소득6-7구간에서는 7% 정도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고교졸업까지의 양육책임에 대해서는 [꼭필요-하고있음] 비율이 소득 전 구간에서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꼭필요-못함] 비율이 소득1-2구간에서는 19%, 소득 6-7구간에서는 1.4%, [하면좋은-못함] 비율은 수급가구 45.9%, 소득7구간은 7.2%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 교육욕구와 박탈의 관계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4가지 교육욕구 중 수급가구에서 [꼭 필요-하고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고교 졸업까지 양육 책임이었고, 학원수강·과외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교육욕구 항목에 따라 편차가 커서 박탈감도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2018년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수급가구의 고등교육 단계 학생들의 박탈감 또한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소득구간별로 볼 때, 수급가구에 해당하는 1-2구간과, 차상위계층인 3구간에서 항목별 응답비율이 차이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특히, 고등교육 및 학원·과외와 수강 등은 가구의 사교육비 부담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

다. 고등교육의 경우 [하면 좋음-못함] 비율이 소득2구간까지는 30.8%였으나, 3구간에서는 13.%%로 낮아진다거나, 학원·과의 수강 역시 [하면 좋음-못함] 비율이 1-2구간은 41.6%, 3구간에서는 69.1%로 급격히 증가했다가 4구간 부터는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4개 항목에 대해서면 조사, 분석했으나, 다른 교육 욕구에 대해서도 소득구간별 분석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4-5-3〉 교육욕구와 박탈

(단위: %)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50%	~60%	~75%		~100%	100%-		
		1	2	3		4	5		6
고등교육	꼭 필요 - 하고 있음	85.3	89.5	92.8	99.2	96.0	97.1	98.5	97.9
	꼭 필요 - 못함	14.7	10.5	7.3	0.8	4.0	2.9	1.5	2.1
	하면 좋음 - 하고 있음	56.9	69.2	86.2	88.6	95.3	89.2	96.5	92.9
	하면 좋음 - 못함	43.1	30.8	13.8	11.4	4.7	10.8	3.5	7.1
학원·과의 수강	꼭 필요 - 하고 있음	57.4	65.7	70.7	79.0	71.8	81.7	90.6	87.5
	꼭 필요 - 못함	42.6	34.3	29.3	21.0	28.3	18.3	9.4	12.5
	하면 좋음 - 하고 있음	19.9	58.4	30.9	41.7	44.7	55.1	60.7	55.9
	하면 좋음 - 못함	80.1	41.6	69.1	58.3	55.3	44.9	39.3	44.2
참고서나 도서 구입	꼭 필요 - 하고 있음	86.4	92.2	94.5	100.0	96.7	94.9	98.1	97.3
	꼭 필요 - 못함	13.6	7.8	5.5	0.0	3.3	5.1	1.9	2.7
	하면 좋음 - 하고 있음	52.9	79.7	100.0	100.0	72.7	75.3	85.9	81.7
	하면 좋음 - 못함	47.1	20.3	0.0	0.0	27.3	24.7	14.1	18.3
고교졸업 까지 양육 책임	꼭 필요 - 하고 있음	90.8	89.9	96.5	100.0	100.0	99.3	99.3	99.1
	꼭 필요 - 못함	9.2	10.1	3.5	0.0	0.0	0.7	0.7	0.9
	하면 좋음 - 하고 있음	54.1	100.0	100.0	100.0	72.7	100.0	92.7	90.8
	하면 좋음 - 못함	45.9	0.0	0.0	0.0	27.3	0.0	7.3	9.2

주: 1) 해당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

2) 음영 부분은 케이스 수가 10 미만인 셀로써 해석에 주의를 요함

3) 가구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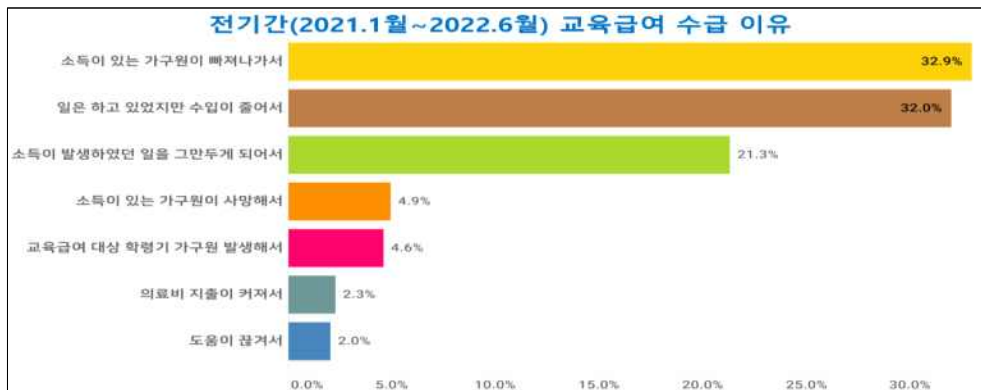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보면, 2018년도 분석결과와 2021년 분석결과의 경향성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소득계층과 학원 수강·과의 욕구간 관계가 해소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간 보편적 복지 지원의 확대로 학비 무상교육이 고교단계까지 도입되었고,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규모도 확대되었다. 저출산 등으로 학생수가 감소하였고 교육비 지원도 늘어났으나 고교

졸업까지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더 높은 단계의 교육기관 입학 및 더 많은 교육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학원이나 과외와 같은 사교육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인식, 다른 비용 지출을 줄이더라도 사교육비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지위 즉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구간별로 필요한 교육비용 산정, 현재 지원되는 비용의 범위와 항목 개선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교육급여

2021년, 교육급여 수급가구가 수급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 [그림 4-5-2]와 같다.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32.9%),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이 줄어서(32.0%)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21.3%)의 순으로 나타나 교육급여 신청사유의 대부분이 소득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사망(4.9%), 교육급여 학령기 가구원 발생(4.6%),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2.3%), 도움이 끊겨서(2.0%) 등도 직접적인 소득감소는 아니지만 기존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등장하여 교육급여 수급가구가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림 4-5-2] 교육급여 수급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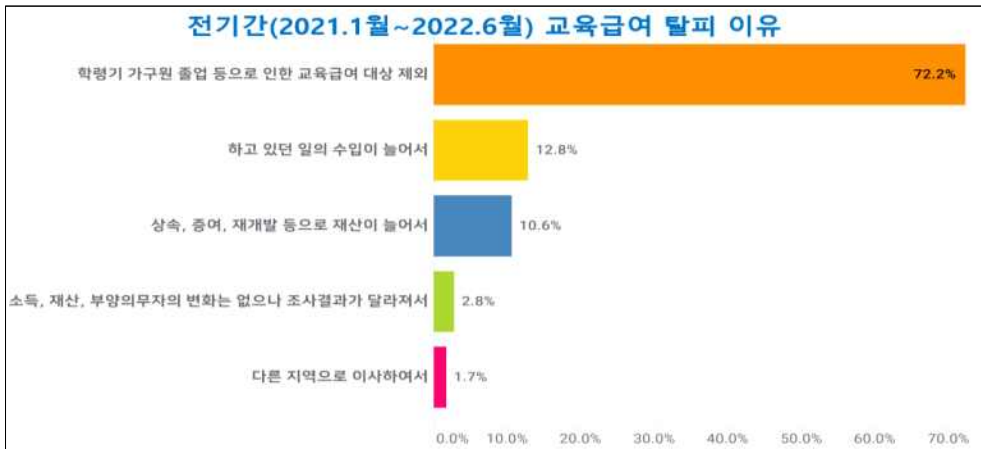


주: 가구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교육급여 수급을 탈피한 가장 큰 이유는 72.2%가 학령기 가구원 졸업 등으로 인한 교육급여 대상 제외로 나타나 재산이 늘거나 수입이 늘어나는 소득 증가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빈곤을 탈출한 결과는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그림 4-5-2] 참조).

향후 저출산 등으로 학령기 아동이 적고, 그나마 교육급여를 수급한 가구의 학령기 아동이 졸업한 경우가 많아지면 교육급여 수급률을 높이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의료비 등이 상승할 경우에는 수급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교육급여 지원 소득기준을 높임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두텁게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나아가 학령기 아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급여를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해 더 악화된 상황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수급 대상 가구에 대한 선별과정, 급여 신청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4-5-3] 교육급여 탈피 이유



주: 가구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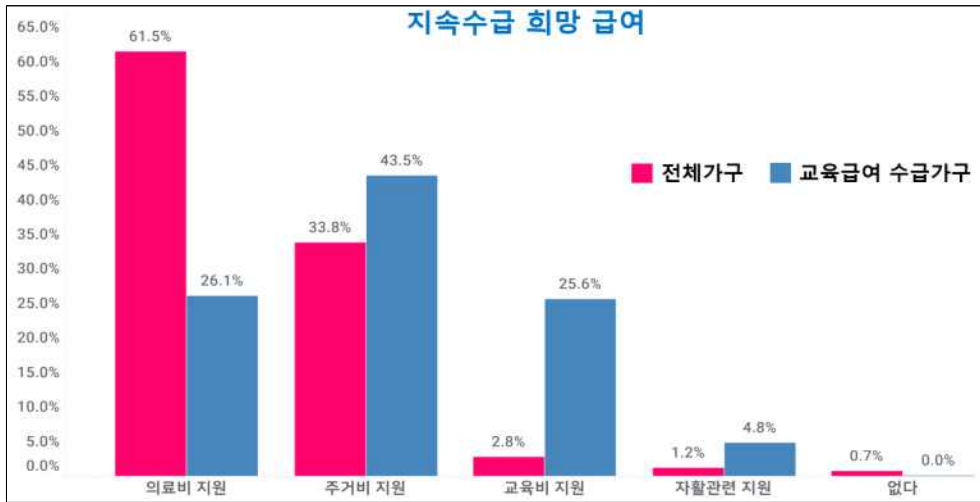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전체 가구 및 교육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향후 지속 수급을 희망하는 급여에 대한 분석결과([그림 4-5-4]), 의료비 수급은 전체 가구의 61.5%가 희망했으나, 교육급여 수급가구는 26.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차이가 컸다. 그러나 주거비 지원은 전체 가구의 33.8%가 희망했으나 교육급여 수급가구는 43.5%가 희망했고, 교육비 지원 역

시 전체 가구는 2.8%가 희망했지만 교육급여 수급가구는 25.6%로 희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수급가구는 1인가구 및 노인가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의료비 지원이 높으나, 교육급여 수급가구는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타급여와의 관계에서 교육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지원 범위 및 규모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쟁점도 제기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가구이지만 현재 지원되는 교육급여 수준으로는 증가하는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학령기 아동의 주거권 보장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반증한다.

[그림 4-5-4] 지속수급 희망 급여



주: 가구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교육급여 수급가구에 대해 학교급별 한 학기 최소교육비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적으로는 초등학생 211만원, 중학생 271만원, 고등학생 304만원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한 학기 최소교육비가 약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구간별로 최소교육비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한 학기 최소교육비는 소득1구간이 152.4만원이고 2구간 144.6만원, 소득 3구간 120.8만원, 소득4구간 98.2만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득5구간에서 160.1만원, 소득6구간

163.6만원, 소득7구간은 228.6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수급가구의 한 학기 초등학교 최소교육비는 전체 가구 평균 대비 60만원 정도 낮으며, 소득7구간 대비 80만원 이상 차이가 나타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급에서는 초등학교급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1구간부터 3구간까지는 최소교육비가 증가하다가 4구간 이후 감소하였다. 그러나 소득6구간부터 7구간까지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소득1-2구간까지의 수급가구는 한 학기 최소교육비가 127.1만원이었고, 소득2구간은 137.5만원, 소득3구간에서 248.2만원으로 약1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그러나 소득4구간 및 소득5구간에서는 다시 감소하다가 6구간은 191.5만원, 7구간은 296.6만원으로 1구간 대비 170만원 이상 크게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소득1-2구간까지의 수급가구는 한 학기 최소교육비가 157.8만원이었고, 소득2구간은 197.3만원, 소득3구간에서 313.2만원으로 약150만원 이상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4구간에서는 155.6만원으로 감소하였고, 소득5구간에서 120.5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수급가구보다 최소교육비가 더 낮게 나타났다. 소득6구간은 247.7만원, 7구간은 338.1만원으로 1구간 대비 한 학기 최소교육비는 150만원 이상 크게 나타났다.

학교급별 한 학기 최소교육비 분석결과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서 교육비 지원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 및 고등학교 단계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되었으나, 이 외에 학교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즉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았던 교복, 체육복, 창의적체험활동, 자유학기제, 현장체험비, 수학여행비 등 필수활동 비용이 추가되며,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 관련 학원비도 급증하여 가구별 부담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표 4-5-4〉 학교급별 한 학기 최소교육비

(단위: 만원)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50%	~60%	~75%		~100%	100%~	
		1	2	3		4	5	
초등학교	152.4	144.6	120.8	98.2	160.1	163.6	228.6	211.0
중학교	127.1	137.5	248.2	187.4	147.2	191.5	296.6	270.8
고등학교	157.8	197.3	313.2	155.6	120.5	247.7	338.1	304.0

주: 1) 해당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
 2) 2명 이상일 경우 평균금액으로 응답하였으며, 사교육비 포함한 금액임
 3) 가구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학교급별 한 학기 최소교육비 외에 적정교육비를 조사, 분석하였다. 즉 학교급별로 적정한 교육비 지출규모에 대한 인식을 별도로 조사하여 적정교육비와 최소교육비의 차이를 제시하고 향후 지원이 필요한 규모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표 4-5-5〉), 최소교육비와 적정교육비 간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소한으로 지출하는 교육비 대비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교육비 수준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구간별로도 차이가 컸으며, 특히 학교급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초등학교(-81.1만원)와 중학교(-108.3만원) 대비 고등학교(-131.3만원)의 최소교육비와 적정교육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소득2구간(~50%)의 최소교육비와 적정교육비 차이가 가장 적었고, 소득1구간 또는 소득7구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급별로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 3구간(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차이(-169.8만원)가 소득7구간 차이(-144.5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소득구간별로 -31.3만원~85.9만원 차이가 나타났으며, 중학교는 -21.3만원~142.3만원으로 초등학교보다 소득구간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34.2만원~169.8만원으로 중학교보다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5〉 학교급별 한 학기 최소교육비 및 적정교육비 차이

(단위: 만원)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50%	~60%	~75%		~100%	100%-		
		1	2	3		4	5		6
최소 교육 비	초등학교	152.4	144.6	120.8	98.2	160.1	163.6	228.6	211.0
	중학교	127.1	137.5	248.2	187.4	147.2	191.5	296.6	270.8
	고등학교	157.8	197.3	313.2	155.6	120.5	247.7	338.1	304.0
적정 교육 비	초등학교	238.3	175.9	186.4	139.1	230.3	243.8	311.6	292.1
	중학교	269.4	161.2	274.6	208.7	226.4	276.2	412.8	379.0
	고등학교	281.5	231.5	483.0	206.6	191.9	352.5	482.5	435.2
(최소 - 적정) 교육 비	초등학교	-85.9	-31.3	-65.6	-40.9	-70.2	-80.2	-83.0	-81.1
	중학교	-142.3	-23.6	-26.4	-21.3	-79.1	-84.7	-116.3	-108.3
	고등학교	-123.7	-34.2	-169.8	-51.0	-71.4	-104.8	-144.5	-131.3

- 주: 1) 해당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
 2) 2명 이상일 경우 평균금액으로 응답하였으며, 사교육비 포함한 금액임
 3) 가구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별·종류별로 교육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분석하였다(〈표 4-5-6〉 참고). 교육비 항목은 학비, 참고서, 문제집, 학용품을 포함한 총14가지로 조사, 분석하였다. 총14가지 항목은 학교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비라는 점에서 교육급여 수급가구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학교급별 인원수(관찰수), 가중치, 평균, 편차, 최소, 최대값을 산출하였다.

조사항목별로 보면⁷³⁾, 학교급별로 가장 교육비를 적게 지출하는 항목은 급식비(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없음. 고등학교는 21천원)였고, 가장 지출을 많이 하는 교육비는 사교육(개인 및 그룹과의) 월평균 비용으로, 초등학교 364.9천원, 중학교 545.9천원, 고등학교 951.8천원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단계 사교육 월평균 비용 규모가 가장 큰 것

73) 학비의 경우 고등학교 단계까지 무상교육이 적용되어 국립학교 및 일반 공립고는 학비가 없으나, 사립학교, 자사고 등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응답가구가 포함되어 최대값이 높게 산출되었다.

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과 관련한 교육비 지출(방문학습지, 유로인터넷, 예체능 등 기타)은 모두 다른 항목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참고서 및 문제집, 학용품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의 지출은 매우 적었으나 수학여행비, 교복비, 교통비, 기숙사비 등 지출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비 급격히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4-5-6〉 학교급별·항목별 교육비 기술통계

(단위: 천원)

구분	관찰수	가중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학비*	초등학교	933	1,084,477	22.5	357.220	0	7,500
	중학교	492	571,109	38.0	602.085	0	10,000
	고등학교	439	512,797	213.2	1,460.581	0	15,000
참고서 가격	초등학교	933	1,084,477	11.4	22.903	0	150
	중학교	492	571,109	30.0	36.735	0	200
	고등학교	439	512,797	44.2	65.072	0	700
문제집 가격	초등학교	933	1,084,477	35.5	41.476	0	450
	중학교	492	571,109	59.2	52.134	0	400
	고등학교	439	512,797	74.7	74.421	0	500
학용품비	초등학교	933	1,084,477	24.5	29.170	0	500
	중학교	492	571,109	26.6	18.943	0	120
	고등학교	439	512,797	28.0	24.168	0	150
월평균 본인부담 급식비	초등학교	933	1,084,477	0.0	2.450	0	150
	중학교	492	571,109	0.8	9.816	0	160
	고등학교	439	512,797	21.0	45.148	0	412
수학여행 1회 비용	초등학교	777	885,786	184.5	104.395	0	600
	중학교	402	461,573	235.1	130.924	0	680
	고등학교	381	436,638	401.8	163.353	0	1,410
수련회, 현장체험학습 1회 비용	초등학교	894	1,040,275	32.1	48.178	0	750
	중학교	464	536,171	44.8	43.024	0	270
	고등학교	398	467,163	57.4	65.740	0	597
교복비	초등학교	933	1,084,477	22.0	49.281	0	900
	중학교	492	571,109	321.7	144.147	0	780
	고등학교	439	512,797	348.6	150.229	0	850
교통비	초등학교	933	1,084,477	15.0	90.563	0	1,400
	중학교	492	571,109	83.6	171.869	0	850
	고등학교	439	512,797	225.8	260.160	0	2,131
기숙사비	초등학교	933	1,084,477	0.5	29.403	0	1,800
	중학교	492	571,109	0.0	0.000	0	0
	고등학교	439	512,797	89.9	520.179	0	10,686
사교육(방문학습지) 월 평균 비용	초등학교	197	239,754	159.3	169.115	20	1,740
	중학교	18	24,310	117.0	45.427	35	200
	고등학교	3	2,500	88.5	61.848	30	160
사교육(개인및그룹과외) 월 평균 비용	초등학교	80	93,731	364.9	306.501	40	1,500
	중학교	34	39,470	545.9	458.527	100	2,500
	고등학교	34	39,298	951.8	665.096	250	3,000

구분		관찰수	가중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교육(유료인터넷 등) 월 평균 비용	초등학교	75	100,543	116.7	73.071	8	400
	중학교	46	55,367	104.8	100.667	0	600
	고등학교	102	117,654	91.2	125.458	0	720
사교육(예체능 및 기타) 월 평균 비용	초등학교	532	622,427	235.3	170.739	10	1,500
	중학교	67	81,325	291.9	374.907	0	3,500
	고등학교	48	54,454	378.2	402.213	9	2,000

주 * 초, 중, 고등학교 모두 의무교육이므로 일반적으로 학비는 0임(사립학교, 자사고 재학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학비 본인부담)

** 가구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교육비 항목별로 소득구간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5-7〉 참고). 분석결과, 소득구간별 교육비 지출항목의 차이가 학교급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지출비용이 없는 교육비 항목은 급식비, 개인 및 그룹과외, 유료인터넷 비용 등이었는데, 소득2구간의 중학교 교육비 지출이 453.9천원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단계 수학여행비용은 소득1구간 424천원, 소득7구간 433.3천원으로 40만원 이상의 높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과 관련한 교육비 지출에 있어 소득4구간까지 지는 지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4-5-7〉 소득계층별 학교급별·항목별 교육비

(단위: 천원)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50%	~60%	~75%		~100%	100%~	
		1	2	3		4	5	
학비*	초등학교	46.9	0.0	0.0	0.0	0.0	29.7	22.5
	중학교	0.0	0.0	0.0	0.0	0.0	48.5	38.0
	고등학교	0.0	0.0	0.0	0.0	9.7	30.9	276.4
참고서 가격	초등학교	4.4	2.1	0.0	6.7	9.4	10.4	11.4
	중학교	11.1	9.9	28.5	11.6	18.9	27.0	31.9
	고등학교	43.1	0.0	46.6	12.7	40.6	32.7	47.9
문제집 가격	초등학교	12.5	41.3	29.2	11.9	24.5	27.7	38.5
	중학교	17.0	73.8	62.1	44.1	36.5	60.6	60.9
	고등학교	29.8	77.2	43.0	33.6	43.7	66.4	81.0
학용품비	초등학교	11.0	11.4	15.7	12.0	20.5	22.1	25.8
	중학교	23.2	24.7	20.1	15.6	21.6	23.5	27.7
	고등학교	28.0	15.1	7.2	33.2	30.7	22.7	28.8
월평균 본인부담 급식비	초등학교	5.9	0.0	0.0	0.0	0.0	0.0	0.0
	중학교	0.0	0.0	0.0	0.0	0.0	1.1	0.9
	고등학교	14.1	0.0	0.0	2.1	16.5	17.6	23.0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50%	~60%	~75%	~100%		100%~		
		1	2	3	4		5	6	
수학여행 1회 비용	초등학교	107.7	199.6	270.1	147.8	178.5	155.1	191.6	184.5
	중학교	165.6	231.4	150.0	335.5	229.2	235.4	235.7	235.1
	고등학교	424.0	266.9	326.4	410.6	433.3	380.5	403.9	401.8
수련회 현장체험학습 1회 비용	초등학교	24.3	38.6	20.9	32.6	28.8	30.4	32.8	32.1
	중학교	56.1	34.3	30.2	98.1	30.3	40.4	46.2	44.8
	고등학교	35.7	18.7	179.2	87.3	44.7	43.5	59.4	57.4
교복비	초등학교	12.5	43.7	5.7	6.8	24.5	21.7	22.0	22.0
	중학교	293.7	453.9	326.7	163.4	317.2	316.9	323.2	321.7
	고등학교	348.3	413.7	215.1	285.6	336.1	315.8	358.6	348.6
교통비	초등학교	0.0	0.0	0.0	5.1	21.0	11.9	15.7	15.0
	중학교	45.2	0.0	58.5	169.4	29.3	80.4	88.7	83.6
	고등학교	329.3	181.5	101.9	244.2	222.7	204.3	229.0	225.8
기숙사비	초등학교	70.4	0.0	0.0	0.0	0.0	0.0	0.0	0.5
	중학교	0.0	0.0	0.0	0.0	0.0	0.0	0.0	0.0
	고등학교	0.0	0.0	0.0	0.0	19.1	145.0	90.9	89.9
방문학습지 월 평균 비용	초등학교	0.0	0.0	80.0	140.0	139.2	180.0	157.5	159.3
	중학교	0.0	0.0	99.0	0.0	200.0	0.0	113.4	117.0
	고등학교	160.0	0.0	0.0	0.0	0.0	0.0	58.9	88.5
개인및그룹과의 월 평균 비용	초등학교	130.0	0.0	0.0	0.0	273.2	189.6	403.0	364.9
	중학교	0.0	0.0	0.0	0.0	250.0	300.0	565.2	545.9
	고등학교	0.0	0.0	0.0	0.0	0.0	0.0	951.8	951.8
유료인터넷 등 월 평균 비용	초등학교	0.0	0.0	0.0	0.0	122.4	107.2	117.3	116.7
	중학교	0.0	0.0	0.0	0.0	100.0	78.7	109.9	104.8
	고등학교	90.0	0.0	0.0	25.0	30.8	54.8	103.4	91.2
예체능 및 기타 월 평균 비용	초등학교	146.1	144.8	152.9	0.0	195.9	182.7	249.9	235.3
	중학교	0.0	0.0	0.0	0.0	182.9	214.8	306.8	291.9
	고등학교	0.0	0.0	0.0	125.0	403.8	215.8	405.2	378.2

주 * 초, 중, 고등학교 모두 의무교육이므로 일반적으로 학비는 0임(사립학교, 자사고 재학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학비 본인 부담)

** 가구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사교육비를 제외한 항목은 학교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비용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학교급별, 소득구간별로 교육비 지출 차이가 크다는 것은 교육급여 지원항목 및 범위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교복비, 수학여행비, 교통비 등 지출이 크다는 것은 수급가구의 교육비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사교육비는 소득구간별 지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교육은 학습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출하는 필수부가적 항목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교육급여 수급가구의 사교육에 대한 지출 분석이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사교육 유형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현황

가. 전체

교육급여 수급가구에서 응답한 사교육 유형별·학교급별 전체 인식 현황은 아래와 같다(〈표 4-5-8〉, [그림 4-5-5] 참고). 학원수강, 방문학습지, 개인 및 그룹과외,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 예체능 및 기타의 5가지 사교육 유형별로 꼭 필요하다, 다니(하)면 좋다, 필요없다의 3단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교육 항목별로 보면, 꼭 필요하다는 응답은 학원수강(초등 53.7%, 중학교 63.1%, 고등학교 5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인 및 그룹과외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꼭 필요하다 보다는 다니(하)면 좋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방문학습지가 꼭 필요하다는 응답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예체능 및 기타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은 초등학교 단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학교급과 차이를 보였다. 사교육이 필요없다는 인식은 가장 비용이 저렴한 방문학습지가 가장 높았고, 예체능 및 기타, 유료인터넷 통신강좌 등으로 나타났다.

〈표 4-5-8〉 학교급별 사교육 유형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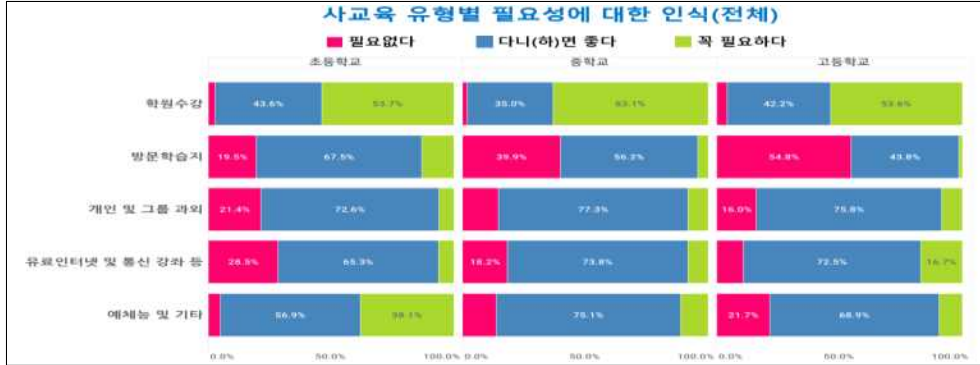
구분		꼭 필요하다	다니(하)면 좋다	필요없다
학원수강	초등학교	53.7	43.6	2.8
	중학교	63.1	35.0	1.9
	고등학교	53.6	42.2	4.3
방문학습지	초등학교	13.0	67.5	19.5
	중학교	4.0	56.2	39.9
	고등학교	1.3	43.8	54.8
개인 및 그룹 과외	초등학교	6.0	72.6	21.4
	중학교	8.1	77.3	14.6
	고등학교	8.2	75.8	16.0
유료인터넷 및 통신 강좌 등	초등학교	6.2	65.3	28.5
	중학교	8.0	73.8	18.2
	고등학교	16.7	72.5	10.8
예체능 및 기타	초등학교	38.1	56.9	5.0
	중학교	11.0	75.1	13.9
	고등학교	9.3	68.9	21.7

주: 1) 초등학교(n=933), 중학교(n=493), 고등학교(n=439)

2) 가구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5-5] 학교급별 사교육 유형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전체)



주: 가구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나. 학원수강

소득구간별·학교급별로 ‘학원수강’ 사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표 4-5-9〉, [그림 4-5-6] 참고). 사교육 중 ‘학원수강’은 대부분의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성격의 지출항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앞서 전체적인 사교육 유형별 분석에서도 ‘학원수강’에 대한 필요 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체 53.7%, 중학교는 63.1%, 고등학교는 53.6%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학원수강의 필요성은 중학교 단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중학교 소득1~4구간까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0% 이상으로 나타나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다니(하)면 좋다는 인식 평균이 소득2~3구간에서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소득7구간에서 오히려 38.7%로 낮아졌다. 필요없다는 응답은 소득6~7구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모든 소득구간에서 높았으나, 다니(하)면 좋다는데 응답한 비율도 소득5구가에서 69.3%로 가장 높았다. 필요없다는 응답은 소득2~5구간까지 0%로 나타나 다른 학교급과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는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소득1구간(수급가구)에서 41.6%였는데, 소득2-3구간에서 0%로 나타났다가 소득4구간에서는 다시 60%로 증가하였고, 소득5구간에서는 32.8%로 감소하였다. 소득6-7구간에서는 각각 44.7%, 57.4%로 증가하였다. 다니(하)면 좋다는 응답은 소득2구간에서 100%로 나타나 꼭 필요하다는 응답의

0%와는 전혀 다른 응답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득3구간에서는 71.7%, 소득7구간에서는 38.6%로 소득구간별 응답 경향이 일관되지는 않았다. 다른 학교급에 비해 필요없다는 응답은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4-5-9〉 학교급별·소득구간별 ‘학원수강’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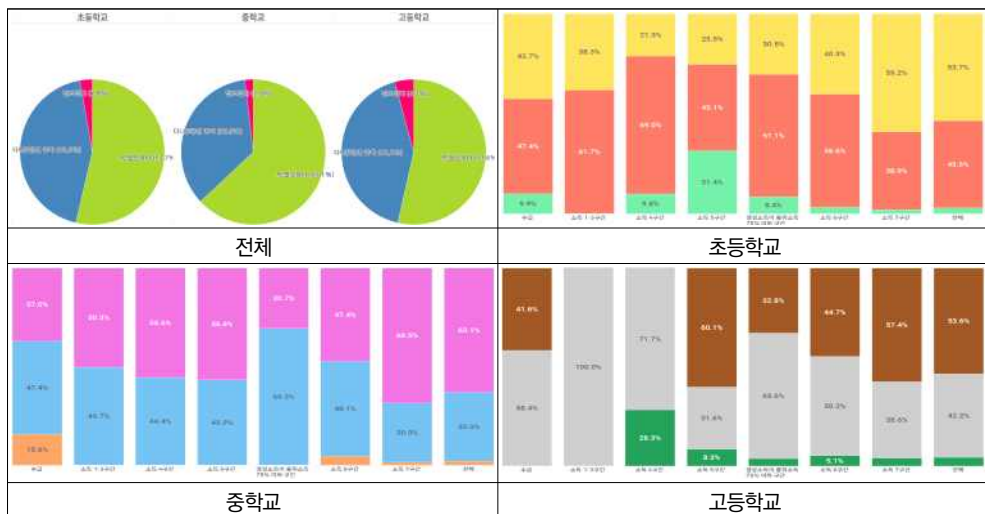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50%	~60%	~75%	~100%		100%~		
		1	2	3	4		5	6	
초등학교	꼭 필요하다	42.7	38.3	21.3	25.5	30.5	40.3	59.2	53.7
	다니(하)면 좋다	47.4	61.7	69.0	43.1	61.1	56.6	38.9	43.6
	필요없다	9.9	0.0	9.8	31.4	8.4	3.1	1.9	2.8
중학교	꼭 필요하다	37.0	50.3	55.6	56.8	30.7	47.4	68.5	63.1
	다니(하)면 좋다	47.4	49.7	44.4	43.3	69.3	48.1	30.0	35.0
	필요없다	15.6	0.0	0.0	0.0	0.0	4.5	1.5	1.9
고등학교	꼭 필요하다	41.6	0.0	0.0	60.1	32.8	44.7	57.4	53.6
	다니(하)면 좋다	58.4	100.0	71.7	31.6	63.6	50.2	38.6	42.2
	필요없다	0.0	0.0	28.3	8.3	3.6	5.1	3.9	4.3

주: 1) 음영 부분은 케이스 수가 10 미만인 셀로써 해석에 주의를 요함
2) 가구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5-6〕 학교급별·소득구간별 ‘학원수강’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



주: 가구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 방문학습지

소득구간별·학교급별로 '방문학습지' 사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표 4-5-10〉, [그림 4-5-7] 참고). 방문학습지는 다른 사교육에 비해 교육비가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수요가 높지는 않은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전체적인 사교육 유형별 분석에서도 '학원수강'에 대한 필요 지출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체 13.0%,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1.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다니(하)면 좋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67.5%, 중학교 56.2%, 고등학교 43.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필요없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19.5%, 중학교 39.9%, 고등학교 54.8%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방문학습지의 필요성은 낮게 나타났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초등학교 단계에서 소득4구간의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13.2%로 높았으나, 다니(하)면 좋다는 응답은 2구간에서 89.8%로 나타났고 필요없다는 인식은 소득4구간에서 57.8%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소득3~5구간은 0%, 소득6구간은 1.2%로 낮아진데 비해, 다니(하)면 좋다는 응답은 소득3구간에서 82.5%까지 높아져 다른 학교급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학교 단계에서 방문학습지가 필요없다는 응답은 소득7구간에서도 41.9%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방문학습지의 필요성이 더 낮아졌는데, 다니(하)면 좋다는 응답과 필요없다는 인식이 정반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2구간에서 다니(하)면 좋다는 응답은 100%였으나 필요없다는 응답은 0%였고 소득3구간에서는 다니(하)면 좋다는 응답이 0%였으나 필요없다는 응답은 100%로 나타나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소득5~7구간까지 응답에서는 필요없다는 응답비율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5-10〉 학교급별소득구간별 '방문학습지'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

(단위: %)

구분	수급 (생계· 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50%	~60%	~75%	~100%		100%~		
		1	2	3	4		5	6	
초등학교	꼭 필요하다	13.8	10.2	11.3	14.2	8.6	13.4	13.2	13.0
	다니(하)면 좋다	72.4	89.8	69.0	28.0	77.4	73.3	65.5	67.5
	필요없다	13.9	0.0	19.7	57.8	14.1	13.3	21.3	19.5
중학교	꼭 필요하다	13.4	23.1	0.0	0.0	0.0	1.2	4.5	4.0
	다니(하)면 좋다	71.1	76.9	82.5	43.3	72.4	61.7	53.6	56.2
	필요없다	15.6	0.0	17.5	56.8	27.6	37.1	41.9	39.9
고등학교	꼭 필요하다	14.5	0.0	0.0	0.0	6.6	1.3	0.8	1.3
	다니(하)면 좋다	77.8	100.0	0.0	42.5	46.7	42.3	43.5	43.8
	필요없다	7.7	0.0	100.0	57.5	46.7	56.4	55.7	54.8

주: 1) 음영 부분은 케이스 수가 10 미만인 셀로써 해석에 주의를 요함
 2) 가구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5-7] 학교급별·소득구간별 '방문학습지'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



주: 가구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라. 개인 및 그룹 과외

소득구간별·학교급별로 ‘개인 및 그룹과외’ 사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표 4-5-11〉, [그림 4-5-8] 참고). 개인 및 그룹과외는 다른 사교육 유형에 비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수급가구의 경우 꼭 필요하지만 박탈감이 큰 항목 중 하나이다. 앞서 전체적인 사교육 유형별 분석에서도 ‘개인 및 그룹과외’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은 다른 사교육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다니(하)면 좋다는 70% 이상으로 수급가구의 현실을 반영한 응답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체 6.0%, 중학교는 8.1%, 고등학교는 8.2%로 다른 응답비율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다니(하)면 좋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72.6%, 중학교 77.3%, 고등학교 75.8%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필요없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21.4%, 중학교 14.6%, 고등학교 16.0%로 나타났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초등학교 단계에서 소득5구간에서 다니(하)면 좋다는 응답이 83.4%로 가장 높았으나 꼭 필요하다는 응답은 소득3~4구간에서 0%로 나타났고 소득5구간은 2.0%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소득4~5구간은 0%, 소득6구간은 6.8%로 낮아진데 비해, 다니(하)면 좋다는 응답은 소득4구간 100%, 다른 소득구간에서도 53~87%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개인 및 그룹과외가 꼭 필요하다는 응답은 낮았으나, 다니(하)면 좋다는 응답은 소득2구간에서 39.5%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60~78%의 응답률을 나타나 필요성은 있으나 실제 참여하지는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개인 및 그룹과외가 필요없다는 인식은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았는데, 특히 소득2구간에서 60.5%로 가장 높게 응답하여 꼭 필요하다 0%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5-11〉 학교급별소득구간별 '개인 및 그룹과외'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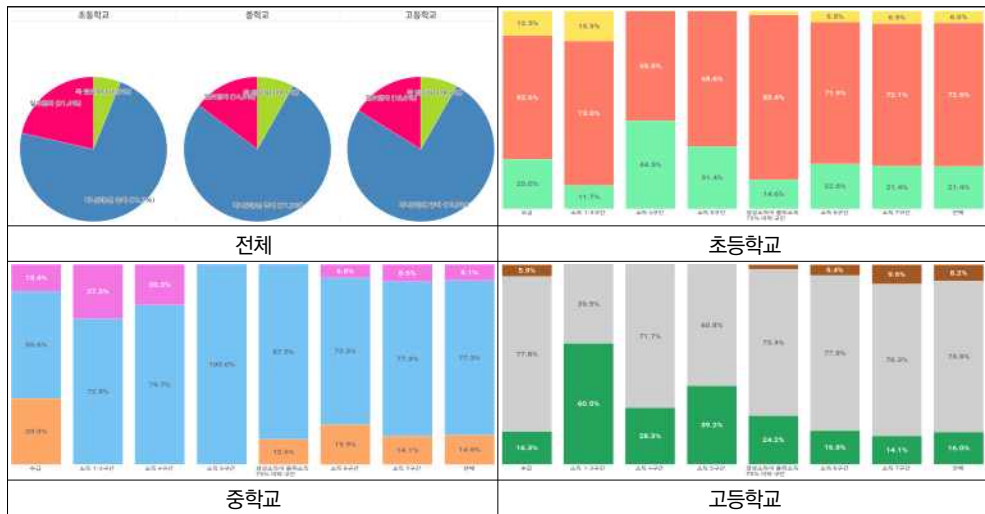
구분	수급 (생계· 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50%	~60%	~75%	~100%		100%~		
		1	2	3	4	5	6	7	
초등학교	꼭 필요하다	12.5	15.3	0.0	0.0	2.0	5.5	6.5	6.0
	다니(하)면 좋다	62.6	73.0	55.5	68.6	83.4	71.9	72.1	72.6
	필요없다	25.0	11.7	44.5	31.4	14.6	22.6	21.4	21.4
중학교	꼭 필요하다	13.4	27.2	20.3	0.0	0.0	6.8	8.6	8.1
	다니(하)면 좋다	53.6	72.8	79.7	100.0	87.5	73.3	77.3	77.3
	필요없다	33.0	0.0	0.0	0.0	12.6	19.9	14.1	14.6
고등학교	꼭 필요하다	5.9	0.0	0.0	0.0	2.3	5.4	9.6	8.2
	다니(하)면 좋다	77.8	39.5	71.7	60.8	73.4	77.8	76.3	75.8
	필요없다	16.3	60.5	28.3	39.2	24.2	16.8	14.1	16.0

주: 1) 음영 부분은 케이스 수가 10 미만인 셀로써 해석에 주의를 요함

2) 가구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5-8] 학교급별소득구간별 '개인 및 그룹과외'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



주: 가구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마.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

소득구간별·학교급별로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 사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표 4-5-12〉, [그림 4-5-9] 참고). 최근 인터넷 강의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고 다양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제시한 전체적인 경향 분석에서는 다른 사교육 유형에 비해 꼭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체 6.2%, 중학교는 8.0%, 고등학교는 16.7%로 고등학교 단계에서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다니(하)면 좋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65.3%, 중학교 73.8%, 고등학교 72.5%로 높게 나타났다. 필요없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28.5%, 중학교 18.2%, 고등학교 10.8%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가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항목임을 보여준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초등학교 단계에서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지 않은 가운데 소득3~4구간은 0%로 나타났으나, 필요없다는 인식은 소득3구간 62.5%, 소득4구간 45.7%로 상반되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다니(하)면 좋다는 응답도 소득2구간에서 74.5%, 소득5구간에서 73.7%로 높게 나타났고 다른 소득구간에서도 대체적으로 응답율이 높았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다니(하)면 좋다는 인식이 소득1~2구간, 소득6~7구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며, 필요없다는 인식은 소득2구간에서 0%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학교 단계에서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가 필요없다는 인식은 소득3~4구간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의 필요성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았으나, 꼭 필요하다는 응답에서 소득2~3구간이 0%로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다니(하)면 좋다는 응답은 소득1구간(수급가구)에서 9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일 소득구간에서 필요없다는 인식은 0%로 나타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필요없다는 응답은 소득2구간에서 60.5%로 높았으나 다른 소득구간에서는 응답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4-5-12〉 학교급별소득구간별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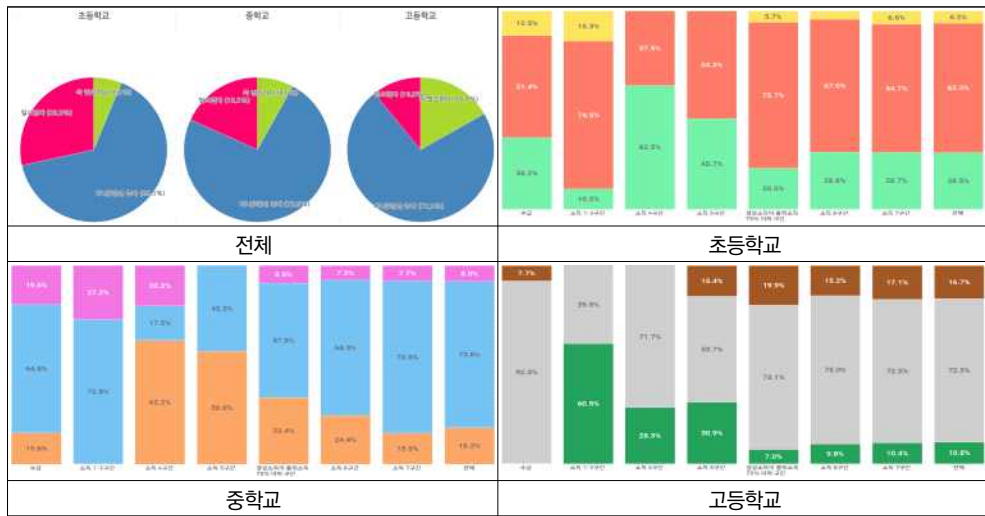
구분	수급 (생계· 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50%	~60%	~75%	~100%		100%~		
		1	2	3	4		5	6	
초등학교	꼭 필요하다	12.5	15.3	0.0	0.0	5.7	4.2	6.6	6.2
	다니(하)면 좋다	51.4	74.5	37.5	54.3	73.7	67.0	64.7	65.3
	필요없다	36.2	10.2	62.5	45.7	20.6	28.8	28.7	28.5
중학교	꼭 필요하다	19.6	27.2	20.3	0.0	8.8	7.3	7.7	8.0
	다니(하)면 좋다	64.8	72.8	17.5	43.3	57.8	68.3	76.8	73.8
	필요없다	15.6	0.0	62.2	56.8	33.4	24.4	15.5	18.2
고등학교	꼭 필요하다	7.7	0.0	0.0	15.4	19.9	15.2	17.1	16.7
	다니(하)면 좋다	92.3	39.5	71.7	53.7	73.1	75.0	72.5	72.5
	필요없다	0.0	60.5	28.3	30.9	7.0	9.8	10.4	10.8

주: 1) 음영 부분은 케이스 수가 10 미만인 셀로써 해석에 주의를 요함

2) 가구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5-9] 학교급별소득구간별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



주: 가구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바. 예체능 및 기타

소득구간별·학교급별로 ‘예체능 및 기타 등’ 사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표 4-5-13〉, [그림 4-5-10] 참고). 예체능 및 기타 사교육은 학교교육 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수적인 항목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다만, 초등학교 단계에서 인성 및 적성 등을 탐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거나, 고등학교 단계에서 입시를 위한 실기비용 등이 늘어나면서 교육비 지출이 높아지기도 한다. 앞서 제시한 전체적인 경향 분석에서는 학교급별로 다른 응답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체 38.1%, 중학교는 11.0%, 고등학교는 9.3%로 초등학교 단계에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다니(하)면 좋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56.9%, 중학교 75.1%, 고등학교 68.9%로 높게 나타났다. 필요없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5.0%, 중학교 13.9%, 고등학교 21.7%로 나타나 학교급별 인식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초등학교 단계에서 다니(하)면 좋다는 인식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필요없다는 인식은 소득4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5% 이하로 나타나 예체능 및 기타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높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단계에서도 다니(하)면 좋다는 인식이 소득4구간에서는 43.3%로 다른 소득구간에서 70% 이상의 응답비율을 나타내었고, 특히 소득3구간에서는 100%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필요없다는 인식은 소득2~3구간에서 0%, 소득4구간에서는 56.8%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예체능 및 기타 사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소득1~4구간까지 0%로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다니(하)면 좋다는 응답은 소득 1구간에서 100%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소득구간별 응답에서도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다. 필요없다는 응답은 소득1구간에서 0%였으나 소득2구간은 60.5%, 소득5구간은 5.6%로 소득구간별 응답비율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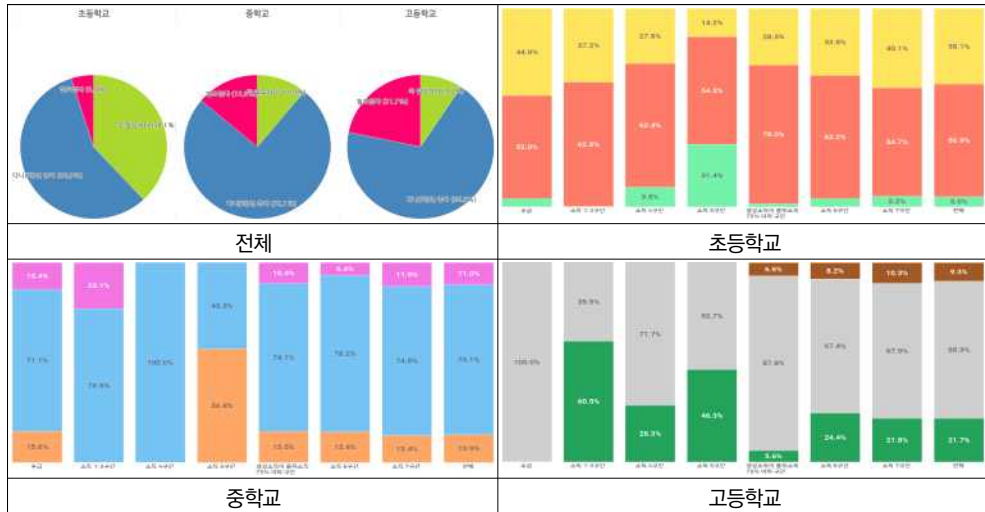
〈표 4-5-13〉 학교급별소득구간별 '예체능 및 기타'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

(단위: %)

구분	수급 (생계· 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50%	~60%	~75%	~100%		100%~		
		1	2	3	4		5	6	
초등학교	꼭 필요하다	44.0	37.2	27.8	14.2	28.5	33.8	40.1	38.1
	다니(하)면 좋다	52.0	62.8	62.4	54.3	70.0	62.2	54.7	56.9
	필요없다	4.0	0.0	9.8	31.4	1.5	4.0	5.2	5.0
중학교	꼭 필요하다	13.4	23.1	0.0	0.0	10.4	6.4	11.9	11.0
	다니(하)면 좋다	71.1	76.9	100.0	43.3	74.1	78.2	74.8	75.1
	필요없다	15.6	0.0	0.0	56.8	15.5	15.4	13.4	13.9
고등학교	꼭 필요하다	0.0	0.0	0.0	0.0	6.6	8.2	10.3	9.3
	다니(하)면 좋다	100.0	39.5	71.7	53.7	87.8	67.4	67.9	68.9
	필요없다	0.0	60.5	28.3	46.3	5.6	24.4	21.8	21.7

주: 1) 음영 부분은 케이스 수가 10 미만인 셀로써 해석에 주의를 요함
 2) 가구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5-10] 학교급별·소득구간별 '예체능 및 기타'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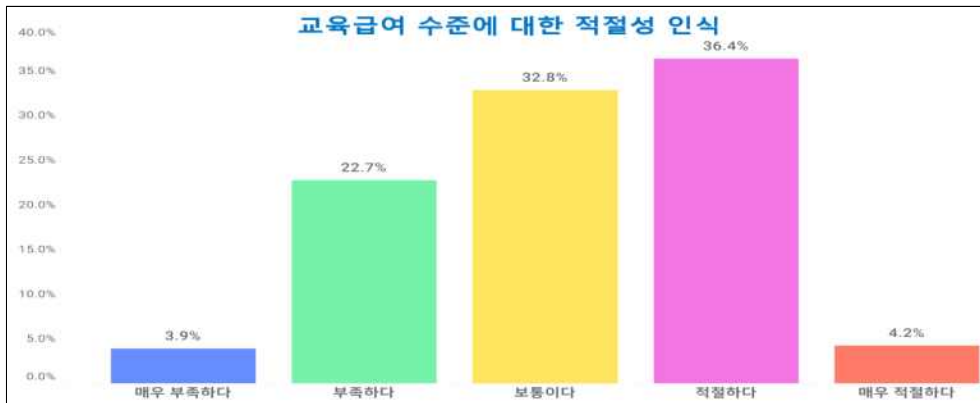


주: 가구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5. 교육급여 수준에 대한 인식

교육급여 수급가구에 대해 현재 지원받고 있는 교육급여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다([그림 4-5-11] 참조). 전체적인 응답경향을 보면, 교육급여 수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6.4%로 가장 높았고, 매우 적절하다 4.2%, 보통이다 32.8%, 부족하다 22.7%, 매우 부족하다 3.9%로 나타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은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교육급여 지원은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되면서 최저교육비 수준 대비 지원규모가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응답도 25%이상이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33%를 나타내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 규모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고등학교 단계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교육비 항목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급별로 교육욕구가 달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저교육비 수준 및 단가 등도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4-5-11] 전체 교육급여 수준에 대한 적절성 인식



주: 가구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앞서 제시한 교육급여 수준에 대한 적절성 인식 분석결과를 소득구간별로 분석하였다(표 4-5-14), [그림 4-5-12] 참고). 소득구간별로 보면,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득6구간에서 20.2%로 가장 높았다. 소득1구간, 3~4구간은 매우적절하다에 응답한 비율이 0%로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인식은 소득3구간에서 68.2%로 가장 높았

는데 소득6구간은 10.2%로 낮게 응답했으나 대부분 구간에서 현재 교육급여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득 7구간에서 38.0%로 높게 나타났고 다른 소득구간에서도 부족하다는 응답비율이 20%로 나타났다. 소득5~6구간은 각각 14.9%, 10.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은 소득3~6구간까지 0%로 나타나 적절성이 높다고 분석할 수 있으나, 소득1~2구간은 각각 2.4%, 9.4%로 응답하였고, 소득7구간에서도 13.1%로 나타났다.

〈표 4-5-14〉 소득구간별 교육급여 수준에 대한 적절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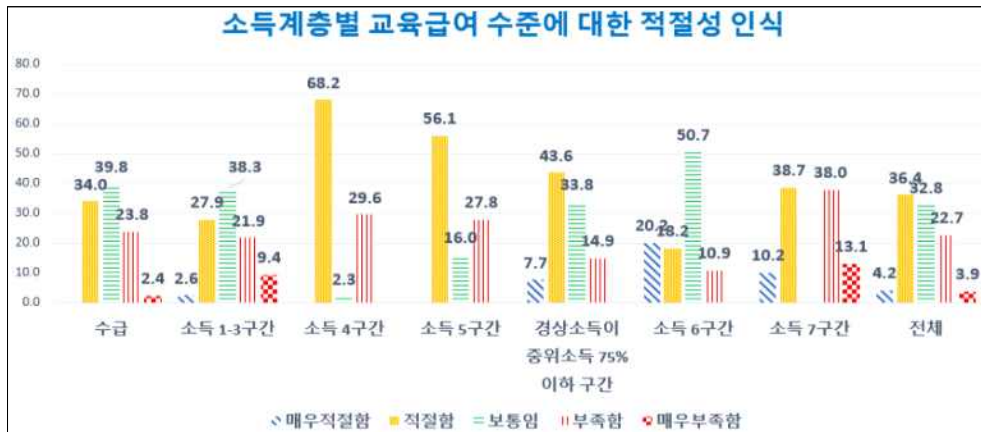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50%	~60%	~75%		~100%	100%-	
		1	2	3		4	5	
매우적절함	0.0	2.6	0.0	0.0	7.7	20.2	10.2	4.2
적절함	34.0	27.9	68.2	56.1	43.6	18.2	38.7	36.4
보통임	39.8	38.3	2.3	16.0	33.8	50.7	0.0	32.8
부족함	23.8	21.9	29.6	27.8	14.9	10.9	38.0	22.7
매우부족함	2.4	9.4	0.0	0.0	0.0	0.0	13.1	3.9

주: 가구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5-12] 소득구간별 교육급여 수준에 대한 적절성 인식(%)



주: 가구가중치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제6절 에너지욕구

에너지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재다. 인간은 추위에 맞서 체온을 유지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한다. 에너지가 없는 공간에서 인간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이번 절에서는 저소득층의 난방을 목적으로 한 에너지 사용 현황 및 수요를 파악하고 욕구를 점검한다.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철 홍염의 지속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혹서의 강도도 커졌다. 생존을 위한 냉방에 대한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여름철 냉방 욕구에 대해서도 일부 살펴본다.

이번 절에서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앞선 동절기(11월~3월) 기간 보온 및 난방을 위한 에너지 소비의 내용과 수준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분석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 계층별·지역별로 에너지원의 사용 내용을 살펴보고, 월별 난방용 전기요금 및 에너지 사용 요금, 경상소득 대비 총에너지 사용 요금 비율을 보았다. 또 소득 계층별·지역별 에너지 과부담 가구의 비율을 분석한 뒤, 에너지 비용 지원 수혜 가구의 비율 및 에너지 감면 및 보조액 액수를 점검했다. 소득 계층별·지역별로 정부의 에너지 수요 지원 방식에 대한 선호를 묻은 다음에, 추운 날씨에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는지 등을 묻는 방식으로 냉·난방 관련 배제의 경험을 설문했다. 이와 같은 배제의 경험이 주택 유형별, 주택 점유 형태별로도 상이한지를 점검했다. 동·하절기에 적정 수준 대비한, 설문 응답자의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설문한 결과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앞의 설문 결과에 근거해서 소득 계층별·지역별 적정 수준 에너지 수요를 추정했다.

참고로 소득 계층은 9개 집단으로 나누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부터 소득이 높은 집단까지 세분했다. 처음 여덟 개 집단은 가구의 균등화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을 하회한 집단을 세분한 것이고, 마지막 아홉 번째 집단은 균등화 가구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하는 집단이다. 지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지 기준이 변경된 점을 고려해서 서울/경기/광역시·세종·창원/그외 지역으로 나누어서 제시했다.

먼저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설문했다(〈표 4-6-1〉참고). 대체로 소득이 높아지면서 지역난방의 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석유의 활용 변도는 떨어졌다. 다만,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는 전반적으로 비수급 저소득층에 비해서는 석유 활용 비율(9.64%)

로 낮고, 도시가스 활용 비율(68.47%) 및 지역난방 활용 비율(13.07%)도 높았다. 석유의 활용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30~40%인 가구(집단 3)였다. 비율이 23.4%였다. 도시가스의 활용 비율(59.18%)도 이 집단에서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차상위 집단이 지고 있는 에너지 비용 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특히 석유가 다른 에너지원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간에 따른 추이를 보면,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은 조금씩 석유를 대체하고 있다. 이를테면, 지난 2015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조사에서 석유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전체 가구 평균 비율은 13.2%였지만, 2018년 조사에서는 7.06%로 떨어졌다. 이번 2021년 조사에서는 8.21%으로 소폭 상승했다. 연탄 사용 집단은 1% 이내로 감소했다. 에너지 총비용은 수급 집단에서 월 9.92만원으로 나타났고, 이 수치는 다른 빈곤 집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만, 전기요금 사용액은 월 3.23만원으로 다른 집단보다 낮았다.

다음으로, 석유와 도시가스/지역난방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비율을 급지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표 4-6-2〉 참고). 서울/경기/광역시·세종·창원/그외 지역에서 차이점이 도드라졌다. ‘그 외’ 지역에서 기초보장 수급 가구가 석유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24.8%였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를 하회하면서(집단 2,3,4)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40% 이상이 석유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했다. 서울 지역의 빈곤 집단에서 석유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0%에 가까운 점도 눈에 띈다. 반대로, 도시가스 혹은 지역난방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서울에서 모든 집단에서 90%를 넘었다. 그 외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30%대까지(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집단, 즉 집단 2)까지 떨어졌다.

〈표 4-6-1〉 2021 소득계층별 주로 사용하는 난방 에너지 비율

(단위: %, 천원)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		75- 100%	100%-	
		1	2	3	4	5		6	7	
석유	9.64	18.04	23.4	17.52	11.32	10.59	15.71	10.13	5.24	8.21
도시가스	68.47	62.38	59.18	67.85	77.15	77.14	68.01	71.74	72.12	71.22
프로판	1.94	1.49	0.61	1.05	1.81	1.19	1.18	1.88	2	1.82
전기	5.8	5.89	6.89	5.63	4.6	4.35	5.19	2.94	2.57	3.32
지역난방	13.07	10.75	8.13	6.74	4.4	6.01	8.22	12.19	17.55	14.61
연탄	0.98	0.87	0.99	0.64	0.46	0.63	0.78	0.36	0.22	0.38
기타	0.1	0.58	0.8	0.56	0.26	0.08	0.92	0.77	0.29	0.4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월 평균 에너지 비용(천원)										
에너지 총비용	99.2	103.1	117.1	120.9	115.3	117.6	145.4	150.9	155.3	147.6
전기요금	32.3	32.7	32.5	35.0	36.0	36.0	43.9	44.0	46.0	43.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4-6-2〉 소득계층별·지역별 주된 난방 연료 사용비율

(단위: %)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		75- 100%	100%-	
		1	2	3	4	5		6	7	
석유를 주로 사용하는 가구 비율										
서울	0.5	0.0	0.0	0.0	0.0	0.0	0.0	1.1	0.8	0.6
경기	3.7	17.8	14.2	9.7	4.0	8.5	3.6	3.6	1.8	2.8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10.1	11.8	13.8	8.5	4.3	9.4	8.0	3.9	3.2	4.8
그외	24.8	47.2	44.6	40.1	27.0	21.8	38.6	25.5	13.6	21.1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비율										
서울	95.7	92.4	97.8	99.4	97.4	100.0	98.7	97.2	98.2	97.9
경기	82.8	82.2	79.0	84.6	93.4	91.5	91.5	94.6	96.2	94.4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85.4	79.0	79.3	80.6	90.1	81.9	86.2	92.4	93.1	90.8
그외	59.4	38.5	40.2	48.5	60.0	64.3	45.8	61.1	74.2	65.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주된 난방 연료 사용 경향을 기준으로 보면, 계층별 차이보다 지역별 격차가 선명하게 부각됐다. 농·어촌 지역 가운데 일부에서는 도시가스 혹은 지역난방 인프라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이 한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다수의 빈곤 인구가 상대적으로 비싼 석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 계층별·지역별 에너지 사용에 따른 부담 수준을 전기요금과 총 에너지 비용 및 경상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비율로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4-6-3〉 참고). 먼저 전기 사용액은 소득이 낮을수록, 대도시에 근접할수록 낮아졌다. 특히 기초보장 수급 집단에서 한정해서 보면, 서울 지역 수급 가구의 월 평균 전기요금이 2.76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그 외 지역에서 3.5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도시가스 혹은 지역난방 사용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 전열기 활동 빈도가 높은 것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요금을 포함한 에너지 사용 총비용도 전기요금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 비용도 낮게 나타났다. 서울 지역 수급자의 월 평균 에너지 사용 비용이 평균 8.45만원인 반면, 그 외 지역에서 기준중위소득 이상 소득을 가진 가구(집단 9)에서 에너지 사용 비용은 16만원을 넘었다. 수급 가구 중에서도 경기 지역에서는 에너지 사용 비용이 11.26만원으로 서울(8.45만원)보다 지출액이 33% 정도 높았다.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기초보장 수급 인구 사이에도 나타나는 편차가 관찰됐다.

경상소득 대비 에너지 사용 비용을 보면, 기초보장 수급 집단에서 비율이 9.9%였다. 전체 평균인 6.0%보다 크게 높았다. 다만, 다른 비수급 빈곤층과 비교했을 때는, 기초보장 수급 집단의 비율은 크게 낮았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를 하회하는 가구(집단 2)의 경우, 에너지 사용 비용이 경상소득의 41.0%였다. 이들은 기초보장 급여를 받지 못한 결과 경상소득이 기초보장 수급자보다도 낮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경상소득 대비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참고로, 에너지 사용 비용은 수급 집단에서 한달에 9.92만원, 소득 30% 미만 집단에서 10.31만원으로 대동소이하다. 즉, 경상소득의 액수가 비율의 차이를 결정했다는 의미다.

〈표 4-6-3〉 집단별, 지역별 연료비와 연료비 부담

(단위: 천원, %)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 100%	100%-	
		1	2	3	4	5		6	7	
전기요금(천원)										
서울	27.6	27.8	28.2	31.4	36.1	32.5	40.2	40.1	45.8	42.1
경기	37.2	31.6	32.8	35.3	39.0	34.9	43.3	42.6	44.4	43.2
광역시·시·군	30.3	32.2	31.6	35.7	33.3	37.4	42.9	43.7	45.9	43.4
그외	35.4	38.9	34.7	36.7	37.1	38.2	47.0	47.3	47.9	46.3
전체	32.3	32.7	32.5	35.0	36.0	36.0	43.9	44.0	46.0	43.9
에너지 비용(천원)										
서울	84.5	91.7	86.2	108.5	100.7	108.5	135.3	140.2	152.1	140.1
경기	112.6	111.4	131.4	116.9	111.6	125.2	145.4	152.8	160.2	153.2
광역시·시·군	93.2	96.4	96.8	108.9	101.3	106.5	129.3	139.0	147.7	137.2
그외	111.1	121.8	139.0	140.4	137.2	129.3	164.6	166.5	160.3	157.7
전체	99.2	103.1	117.1	120.9	115.3	117.6	145.4	150.9	155.3	147.6
경상소득 대비 에너지비용(%)										
서울	8.4	41.8	9.8	8.7	8.4	6.4	12.3	5.3	2.7	5.4
경기	10.5	60.9	14.1	10.7	7.7	7.8	15.6	5.4	3.0	5.7
광역시·시·군	9.9	43.7	11.0	9.6	7.8	7.4	13.0	5.0	2.9	6.0
그외	11.0	24.5	18.2	14.7	13.2	16.7	14.3	6.0	3.3	6.7
전체	9.9	41.0	14.1	11.3	9.7	9.9	13.8	5.5	3.0	6.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비용 부담 수준도 살펴보았다(〈표 4-6-4〉 참고). 이를 위해 에너지 과부담 개념을 활용했다. 에너지 사용 비용이 가구 경상소득의 10%를 넘는 경우를 에너지 과부담의 기준으로 삼았다(정윤경, 박광수, 2013). 더불어, 해당 비율이 20%를 넘는 에너지 과부담 가구의 비율도 살펴보았다. 먼저 경상소득 대비 10%를 기준으로 기초보장 수급 가구만 한정해서 보면, 지역별 편차가 컸다. 서울에서 비율이 24.0%인 반면, 인접한 경기에서는 비율이 두배를 넘는 52.2%였다.

〈표 4-6-4〉 집단별, 지역별 에너지 과부담 가구 비율 및 정부 지원 내용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경상소득 대비 에너지비용이 10% 이상인 가구 비율(%)										
서울	24.0	60.3	36.3	32.9	30.5	10.7	44.6	4.7	0.4	10.1
경기	52.2	60.5	65.8	37.4	14.2	19.7	46.4	6.8	0.7	10.5
광역시/시/읍/면/원	33.0	65.4	46.2	31.1	22.3	18.6	35.3	3.7	0.3	10.0
그외	41.4	61.2	73.3	58.5	47.0	29.3	49.9	12.3	1.6	15.8
전체	36.8	62.6	58.3	41.9	30.6	20.1	44.1	7.2	0.8	11.8
경상소득 대비 에너지비용이 20% 이상인 가구 비율(%)										
서울	1.0	23.2	0.0	0.0	0.0	0.0	8.3	0.0	0.0	1.3
경기	8.3	30.9	26.0	6.5	2.6	4.3	12.7	0.2	0.0	2.4
광역시/시/읍/면/원	7.0	31.1	7.0	6.9	1.3	3.4	8.3	0.2	0.1	2.3
그외	11.3	29.5	35.1	20.4	15.1	7.5	14.6	0.6	0.1	4.3
전체	6.7	28.8	19.8	9.9	6.0	4.0	11.3	0.3	0.0	2.7
에너지비용 지원 수혜가구 비율(%)										
서울	98.5	33.0	29.5	35.3	3.7	21.4	7.0	7.9	5.1	13.6
경기	96.0	45.3	14.9	23.1	28.0	17.8	6.5	10.7	6.3	11.8
광역시/시/읍/면/원	96.5	36.3	29.6	24.1	19.9	17.0	9.9	10.2	5.8	13.6
그외	96.0	27.9	11.5	13.4	13.9	13.9	7.7	11.9	5.9	11.3
전체	96.8	34.7	20.2	22.8	16.7	17.3	7.9	10.5	5.8	12.5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액 (만원, 연간 기준)										
서울	38.3	27.7	24.9	27.4	21.0	23.6	38.5	24.1	26.2	32.7
경기	40.8	20.4	29.5	25.1	18.4	23.4	28.1	20.6	22.0	29.0
광역시/시/읍/면/원	36.8	25.5	23.2	23.4	21.5	27.9	27.6	31.7	23.5	30.2
그외	34.6	31.7	20.3	26.0	24.6	25.0	26.4	21.3	27.4	28.6
전체	37.5	26.3	23.8	25.6	21.4	25.0	29.0	24.5	24.6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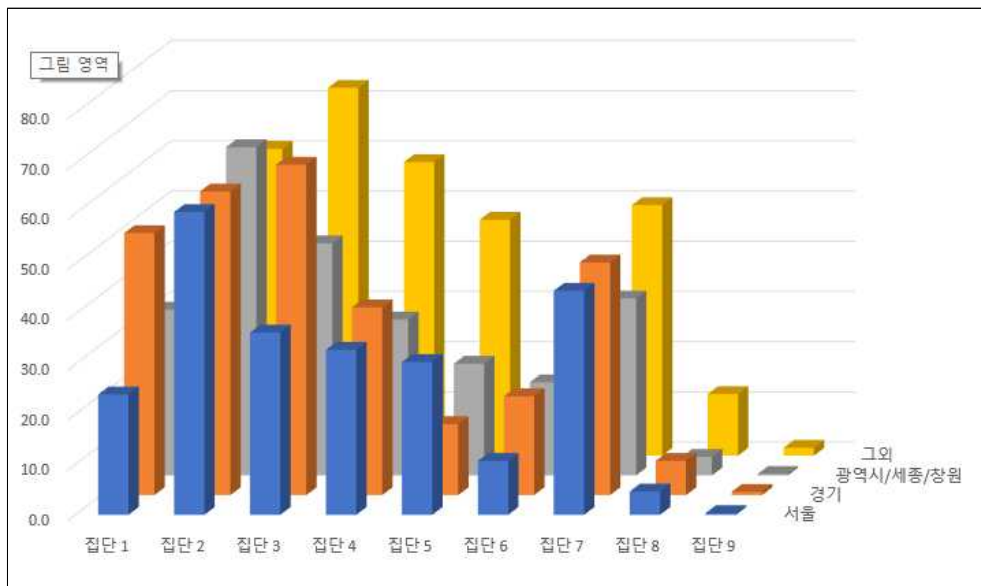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주목을 끄는 부분은 비수급빈곤층인, 소득인정액이 30% 이하인 가구(집단 2)이다. 에너지 과부담 가구 비율이 60%를 넘어섰다. 비수급 빈곤층의 에너지 과부담 가구 비율은 기초보장 수급 가구보다 전반적으로 높았다.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집단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를 초과하면서 경상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밑도는 가구(집단 7)다. 이 집단에서 에너지 과부담 가구의 비율이 40%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경상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이 20% 이상을 넘는 가구의 비율도 기초보장 수급 가구에서는 6.7% 나타났다. 급지별로 보면, 그 외 지역에서 에너지 과부담 가구 비율이 11.3%로 수급 가구 가운데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여기에서도 비수급 빈곤층의 에너지 과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그림 4-6-1] 경상소득 대비 에너지비 지출 비율이 10%를 넘는 가구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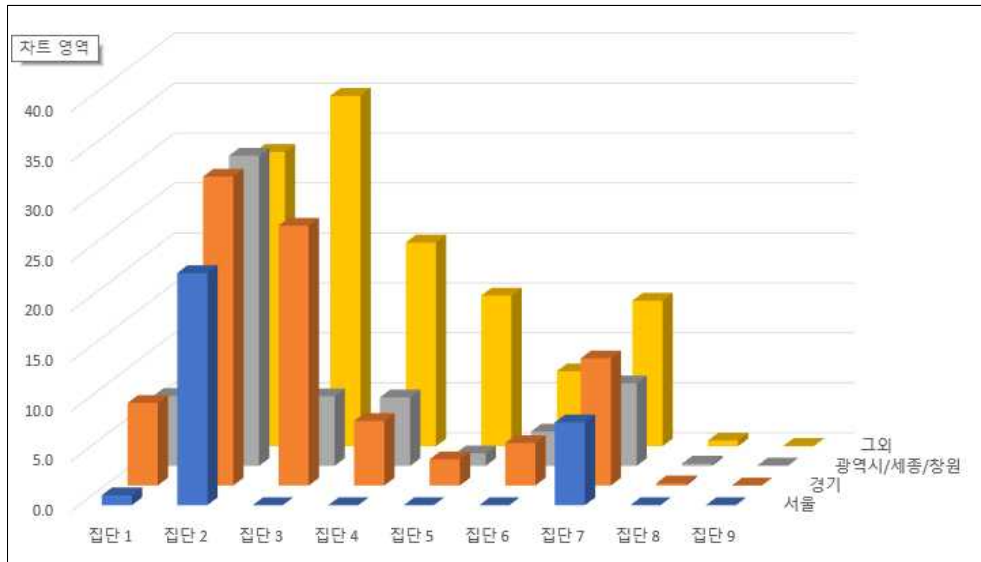
(단위:%)



주: 집단 1은 기초보장 수급집단이며, 집단 9로 갈수록 소득인정액 혹은 경상소득이 높은 집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6-2] 경상소득 대비 에너지비 지출 비율이 20%를 넘는 가구의 비율

(단위:%)



주: 집단 1은 수급집단이며, 집단 9로 갈수록 소득인정액 혹은 경상소득이 높은 집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에너지 비용 지원은 기초보장 수급가구 대부분에게 전달됐다(〈표 4-6-4〉 참고). 현재 대표적인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비용 지원 제도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한국에너지공단, 2023)를 가리킨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된다. 소득 기준으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된다. 세대원 특성은 65세 이상 노인(2023년 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23년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을 아우른다.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수급받은 경우 등은 에너지 바우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급액은 1인 가구 기준으로 동절기에 11.85만원, 하절기 기준으로 3.13만원이 지급된다(한국에너지공단, 2023). 해당 액수는 월 평균이 아니라 2023년 총 지원 금액이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을 차감받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의 요금 차감을 받거나 국민행복카드

를 사용하는 식으로 적용된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 외에도 한국전력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요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한국전력에서는 복지할인제도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월 최대 2만원을 할인해주고 있다 (한국전력, 2023).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는 96.8%가 에너지 비용 지원을 받는다. 앞서 밝혔 듯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에서 소득 기준과 더불어 대상자 기준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100%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비수급 빈곤층에서는 에너지 비용 지원 수혜 비율이 20~30%대로 떨어졌다. 지역별로 나누어서 보면, 비수급 빈곤층에서 차이가 눈에 띈다. 이를테면 집단 2(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는 경기에서 에너지 비용 지원 수혜 가구 비율이 45.3%인데 비해서, 그 외 지역에서는 27.9%로 떨어졌다.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액을 에너지 지원 급여 수급 가구에 한정해서 분석했다.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 가구에서는 연 평균 37.5만원을 지원받는다고 응답했다. 집단 2의 경우, 에너지 관련 급여의 수급 가구의 경우 수급액은 연간 26.3만원이었다.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경상소득 대비 에너지 부담 비율도 높고, 그에 따라 에너지 과부담 가구의 비율도 높게 나타난 한편, 그에 부응하는 에너지 비용 지원을 받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급액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견줘 낮았다.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기초보장 수급 가구를 지역별로 나누어서 보면, 경기 지역에서 40만원을 넘게 지원 받는 데 반해서, 그 외 지역에서는 34.6만원을 지원받았다. 농어촌 지역에서 에너지 과부담 가구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에너지 사용 부담 수준을 고려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정책은 다양할 수 있다.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는 ① 사용료 감면 혹은 면제, ② 쿠폰이나 바우처 지급, ③ 절약형 난방기기 교체 지원, ④ 단열재 보강 등 주거 환경 지원, ⑤ 기타 등으로 선택지를 제시했다(〈표 4-6-5〉 참고). 열명 가운데 일곱명(69.31%)은 ① 사용료 면제 혹은 감면을 선택했고, 다음으로 ② 쿠폰이나 바우처 지급(15.22%)을 선호했다. 기초보장 수급자에 한정해서 보면, 79.11%가 ① 사용료 면제 혹은 감면을 선호했다. 흥미롭게도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② 쿠폰 혹은 바우처 지원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선호하는 정책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보면(〈표 4-6-6〉 참고), 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① 사용료 면제 혹은 감면 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은 반면, 그 외 지역에서는 ② 쿠폰 혹은 바우처 지원 방식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③ 난방기기 교체에 대한 선호도 역시 경기지역에서 5.6%가 나온 반면, 그 외 지역에서는 선호도가 10%를 넘었다.

〈표 4-6-5〉 소득계층별로 응답하는 바람직한 정부지원방식

(단위: %)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요금감면	79.11	70.6	64.34	65.91	65.75	67.07	67.19	67.59	69.66	69.31
쿠폰/바우처 방식	9.65	14.4	14.58	14.86	15.41	15.6	12.92	16.22	15.95	15.22
난방기기 교체	7.34	8.03	10.36	10.07	11.21	12	10.12	8.79	7.72	8.37
주거환경 개선	3.8	6.97	10.72	9.16	7.63	5.2	9.7	7.2	6.54	6.97
기타	0.11	0	0	0	0	0.13	0.06	0.2	0.13	0.12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4-6-6〉 지역별로 응답하는 바람직한 정부지원방식

(단위: %)

구분	요금감면	쿠폰/바우처 방식	난방기기 교체	주거환경 개선	기타	전체
서울	72.6	13.5	7.5	6.2	0.2	100.0
경기	79.2	9.6	5.6	5.5	0.0	100.0
광역시/광역시도	66.6	16.3	8.8	8.3	0.0	100.0
그외	61.4	20.1	10.9	7.4	0.2	100.0
전체	69.3	15.2	8.4	7.0	0.1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혹한기에 난방은 단수히 선호하는 조건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기후 변화로 섭씨 40도에 근접하는 혹서기에는 냉방도 필요하다. 빈곤층은 이와 같은 조건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

과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먼저, ‘난방하지 못한 경험’의 전체 평균은 1.3%였다(〈표 4-6-7〉 참고). 그렇지만, 기초보장 수급자의 평균은 9.8%로 올라갔다. 비수급 빈곤층인 집단 2에서도 비율은 15.6%로 가장 높았다. 기초보장 수급자를 지역으로 나누어서 보면, 광역시/세종/창원 지역에서 비율이 11.6%, 서울에서 11.4%로 높았다. 반면 경기 지역에서는 5.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도 분석했다. 전체 평균 비율은 4.7%로 나타났다. 기초보장 수급자와 집단 2에서는 비율이 각각 17.4%와 20.9%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정책 선호와 별도로 ③ 절약형 난방기기 교체 지원, ④ 단열재 보강 등 주거 환경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나누어서 보면, 경기지역 거주 기초보장 수급자 가운데 비율이 23.7%로 가장 높았다. 이 지역 기초보장 수급자들이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로 해석된다. 경기 지역이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 즉 도시와 농촌이 혼재한 특성이 이와 같은 결과와 연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는 난방 관련 배제 경험과 더불어 냉방 관련 배제의 경험도 물었다(〈표 4-6-8〉 참고). ‘냉방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 1.5%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난방 관련 배제 경험 비율(1.3%)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기초보장 수급자 가운데 비율은 11.6%였고, 집단 2(기준중위소득 대비 소득 인정액 30% 이하)에서 비율이 15.5%였다. 정부에서도 2023년 혹한기를 대비해서 저소득층 1.51만 가구 등에 냉방기기를 지원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한국에너지재단, 2023). 앞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수요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냉방 수요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표 4-6-7〉 지역별, 소득계층별 난방 관련 배제의 경험

(단위: %)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서울	11.4	15.2	0.0	0.0	11.4	5.5	2.1	0.0	0.1	1.5
경기	5.6	10.6	0.0	4.5	0.0	0.0	1.2	0.5	0.3	0.7
광역시/시/군/구 원	11.6	22.0	5.7	6.3	8.2	6.6	1.6	0.1	0.2	1.8
그외	9.4	7.7	6.6	5.5	0.7	3.0	1.1	0.3	0.1	1.0
전체	9.8	15.6	4.2	4.3	4.7	3.9	1.4	0.3	0.2	1.3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16.3	25.9	14.1	21.4	17.1	21.9	8.7	6.0	3.7	6.8
경기	23.7	15.5	13.6	20.0	23.0	6.9	8.3	3.2	3.7	5.7
광역시/시/군/구 원	14.9	23.6	9.3	7.1	12.2	7.5	4.6	4.2	1.1	3.7
그외	16.0	14.5	9.1	7.8	5.2	6.2	5.4	3.3	1.7	3.5
전체	17.4	20.9	10.7	12.8	12.5	10.2	6.4	4.0	2.4	4.7

주1: 설문 문항은 '지난 1년 동안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 비율

주2: '우리 가정에서는 출지 않도록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 비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4-6-8〉 지역별, 소득계층별 냉방 관련 배제의 경험

(단위: %)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냉방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서울	8.9	10.0	0.0	0.0	5.7	6.8	2.5	0.0	0.2	1.4
경기	7.7	10.6	0.0	4.5	4.0	0.0	1.7	0.9	0.4	1.1
광역시/시/군/구 원	17.3	23.9	7.6	9.6	8.0	11.0	2.3	0.3	0.1	2.4
그외	10.5	9.6	5.7	5.0	0.7	1.4	0.8	0.4	0.1	0.9
전체	11.6	15.5	4.4	5.0	4.4	4.9	1.7	0.4	0.2	1.5

주: 설문 문항은 '지난 1년 동안 더운 여름에 냉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 비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주택 유형별로 냉·난방 관련 배제의 경험 여부도 분석했다(〈표 4-6-9〉 참고). 다세대·연립 주택이나 아파트보다 단독 주택에서 난방 관련 배제의 경험 비율이 높았다. 기초보장 수급자에 한정해서 보면, 단독주택 거주자 중에서 비율이 12.7%였다. 아파트 거주자 가운데서 비율은 6.5%였다.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비율은 단독주택 거주 기초보장 수급자 가운데서 24.7%로 높았다. 네명 가운데 한명 꼴이었다. 단독 주택 거주자의 경우, 난방 설비 및 에너지원 구입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점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집단 2로 초점을 이동하면 다소 적용되기 어렵다. 집단 2에서는 단독주택 거주자보다 다세대·연립 거주자들에게서 난방 관련 배제의 경험이 더 높았다. 특히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33.5%로 높았다. 이들은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지 못한’ 비율도 29.8%로 높았다. 빈곤 집단의 주거 형태에 따라서 난방 관련 배제의 경험이 매우 동적으로 작동함을 알 수 있다.

냉방 관련 배제의 경험은 주거 유형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냉방’을 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다소 상이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네이버 사전⁷⁴⁾에서는 냉방을 ‘실내의 온도를 낮춰 차게 하는 일’로 정의했다. 일반적으로 실내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에어컨 가동을 연상할 수 있겠지만, 응답자 가운데 상당수는 선풍기 가동 등 다른 방법을 연상했을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황인창, 박은철, 백종락(2020)은 서울시 저소득가구의 에어컨 보급률은 가구당 0.18대라고 분석했다. 80% 이상 가구에서 에어컨을 구비하지 않고 있지만, 서울의 기초보장 수급자 가운데 냉방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8.9%였다. 즉, 상당수의 저소득층 응답자들이 ‘냉방을 하지 못한 경험’에 대한 해석을 에어컨 작동과 달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74) https://dict.naver.com/search.nhn?dicQuery=%EB%83%89%EB%B0%A9&query=%EB%83%89%EB%B0%A9&target=dic&query_utf=&isOnlyViewEE=

〈표 4-6-9〉 주택유형별 난방 관련 배제의 경험

(단위: %)

구분	수급 (생계· 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 100%	100%-	
		1	2	3	4	5		6	7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단독 ⁷⁵⁾	12.7	8.4	6.4	3.9	7.8	4.0	1.2	0.8	0.4	2.2
아파트	6.5	16.6	1.8	3.2	1.4	2.4	1.2	0.0	0.0	0.7
다세대·연립	8.4	33.5	1.1	5.7	1.0	5.7	2.6	0.0	0.1	1.0
전체	9.8	15.6	4.2	4.3	4.7	3.9	1.4	0.3	0.2	1.3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										
단독	24.7	24.3	12.8	14.4	18.1	13.4	9.6	7.1	4.4	8.6
아파트	4.9	7.4	7.1	3.2	2.3	5.0	1.6	1.4	0.7	1.2
다세대·연립	19.6	29.8	10.5	20.0	15.0	11.8	10.9	4.9	5.4	8.0
전체	17.4	20.9	10.7	12.8	12.5	10.2	6.4	4.0	2.4	4.7
냉방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단독	11.5	11.3	6.1	4.1	7.2	5.9	1.4	0.6	0.4	2.2
아파트	12.5	13.5	4.3	4.5	2.3	4.0	1.4	0.2	0.1	0.8
다세대·연립	11.2	30.3	0.0	6.9	0.0	5.1	3.3	0.6	0.3	2.1
전체	11.6	15.5	4.4	5.0	4.4	4.9	1.7	0.4	0.2	1.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주거 공간의 점유 형태에 따른 냉난방 배제 경험도 물었다(〈표 4-6-10〉 참고). 기초보장 수급 가구에 한정해서 보면 문항에 따라 다소 상이한 비율로 나타났다. 냉난방 못한 경험에서는 임차 가구에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난방이 갖춰지지 못한 주거 요건에서는 점유 형태별 차이가 도드라지지 않았다. 현재의 재산의 소득 환산 제도를 고려하면, 자가를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기초보장 수급자가 된다는 점은 자가 주택의 재산 가치가 낮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이 해당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즉, 자가 가구가 임차 가구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가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75) 거주 주택 유형으로는 1) 단독주택(다가구, 영업겸용단독), 2) 아파트, 3) 연립 및 다세대 주택 외에도 4)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5) 오피스텔 혹은 고시원, 6)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7) 기타가 있으나, 4~7번으로 응답한 비율이 3.08%밖에 없었음(가중치 적용한 기준). 이를 다시 9개의 소득집단별로 나누면 한 집단에 들어갈 있는 사례 수가 너무 적으므로, 표에서 따로 표시하지는 않음. 다만, 표에서 전체 비율은 일괄까지 거주 주택 유형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표 4-6-10〉 점유형태별 난방경험

(단위: %)

구분	수급 (생계· 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 100%	100%-	
		1	2	3	4	5		6	7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자가	6.8	13.7	4.5	5.6	2.9	1.7	1.2	0.0	0.1	0.4
임차 ⁷⁶⁾	10.0	15.8	4.1	4.0	5.0	4.3	2.2	0.6	0.3	2.3
전체	9.8	15.6	4.2	4.3	4.7	3.9	1.4	0.3	0.2	1.3
난방이 적절히 갖춰지지 못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자가	17.8	21.8	18.9	9.8	9.7	11.1	6.1	3.1	1.7	3.0
임차	17.4	20.9	9.5	13.5	13.1	10.0	7.2	5.3	3.6	6.8
전체	17.4	20.9	10.7	12.8	12.5	10.2	6.4	4.0	2.4	4.7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자가	7.5	14.4	4.5	4.9	2.9	7.4	1.5	0.2	0.0	0.5
임차	11.9	15.6	4.4	5.0	4.7	4.4	2.7	0.7	0.4	2.7
전체	11.6	15.5	4.4	5.0	4.4	4.9	1.7	0.4	0.2	1.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지금까지 저소득층 가운데 상당수가 냉난방 관련 배제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빈곤집단은 낮은 소득 수준 및 열악한 주거 여건으로 인해서 에너지 과부담의 비율도 높았다. 농어촌 거주 빈곤층은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으로부터 배제된 결과, 상대적으로 비싼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높았다. 그 결과, 빈곤층 가운데 일부는 ‘적정한’ 수준의 냉난방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귀 가구가 실제로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은, 겨울철 적정온도(18~24℃)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용량 수준에 비해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를 물었다. 또 적절한 난방 사용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귀 가구가 실제로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은, 여름철 적정온도(18~28℃)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용량 수준에 비해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더불어 물었다.

기초보장 수급자의 경우 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적정 수준 대비 78.5%라고 답했다(〈표 4-6-11〉 참고). 이는 비수급 빈곤층(집단 2, 3, 4)에 비해서는 소폭 높았지만, 전

76) 여기서 임차 가구란 점유 형태 가운데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사글세, 연세, 일세), 기타(무상 포함)를 포함하는 개념임.

체 평균인 87.7%를 크게 하회했다. 하절기 적정 수준 사용량 대비 에너지 사용량 비율도 분석했다. 기초보장 수급자의 평균이 74.0%이었다. 이 수치 역시 비수급 빈곤층(집단 2, 3)보다는 높았고, 전체 평균(85.5%)보다는 크게 낮았다. 종합해서 보면, 빈곤층이 적정 수준 대비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은 전체 평균 대비 10% 포인트 가량 낮았다. 지역별 편차가 일부 있었으나 도드라지지 않았다.

〈표 4-6-11〉 동/하절기 적정수준 대비 에너지 사용량

(단위: %)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		75- 100%	100%-	
	1	2	3	4	5	6	7	8	9	
동절기 적정 수준 대비 에너지 사용량(%)										
서울	76.8	76.8	77.2	76.6	75.5	83.4	82.2	87.2	91.2	87.7
경기	80.4	71.6	76.7	75.8	74.9	80.7	81.0	86.6	88.4	86.4
광역시/시읍/청원	79.8	70.9	77.2	75.5	80.4	79.1	82.6	88.9	92.7	88.8
그외	77.0	73.6	76.5	77.8	82.4	81.0	83.0	86.3	91.0	87.6
전체	78.5	73.0	76.8	76.6	79.3	80.9	82.3	87.3	90.8	87.7
하절기 적정 수준 대비 에너지 사용량(%)										
서울	71.1	72.1	69.8	74.8	75.1	79.2	75.7	83.3	89.0	84.5
경기	74.5	67.8	72.9	78.0	74.5	80.8	76.6	83.3	87.3	84.5
광역시/시읍/청원	74.8	68.9	71.4	72.2	76.9	76.2	79.3	86.2	91.3	86.6
그외	75.5	72.2	73.2	77.6	78.3	79.8	81.4	86.7	89.2	86.2
전체	74.0	70.3	72.1	75.7	76.7	78.9	78.8	85.2	89.2	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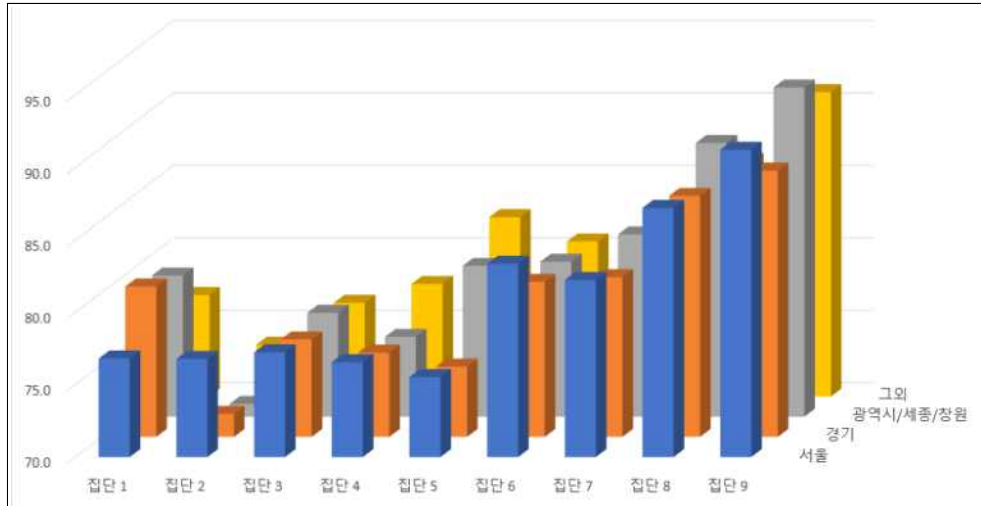
주: 1) 설문에서는 “귀 가구가 실제로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은, 겨울철 적정온도(18~24℃)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용량 수준에 비해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를 물었음.

2) 설문에서는 “귀 가구가 실제로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은, 여름철 적정온도(18~28℃)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용량 수준에 비해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를 물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6-3] 지역별, 소득 수준별 적정수준 대비 에너지 사용량

(단위:%)



주: 집단 1은 수급집단이며, 집단 9로 갈수록 소득인정액 혹은 경상소득이 높은 집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동절기를 기준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의 월 평균 에너지 비용을 추정했다. 추정을 위해, 동계 기간 난방을 위한 월 평균 에너지 사용 비용과 더불어 주관적으로 답한 적정 에너지 사용 비율을 활용했다. 예시하자면, 본인의 월 평균 난방 관련 에너지 사용액이 4만원이었고, 본인이 적정 에너지 사용량 대비 80%만 에너지를 소비했다고 답했다면, 적정 에너지 비용은 5만원 (=4만원 X (100/80))으로 추정하는 식이다. 이런 추정 과정을 거친 월 평균 '적정 에너지 소비액'을 보면, 수급 가구 한달 평균 적정 지출액은 13.31만원이었다(〈표 4-6-12〉 참고).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가장 적은 11.37만원이었고, 경기에서 14.89만원으로 가장 액수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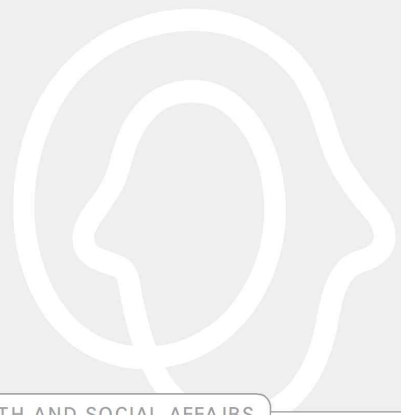
〈표 4-6-12〉 적정수준 에너지 지출액

(단위: 천원)

구분	수급 (생계·의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초과 경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서울	113.7	138.1	113.0	143.8	136.9	132.8	170.2	164.9	170.3	162.9
경기	148.9	167.9	190.1	170.0	157.3	185.4	187.9	183.5	187.2	184.4
광역시·시·읍·면	120.7	158.9	135.0	147.0	131.8	144.0	158.6	159.8	161.8	157.2
그외	156.3	173.3	191.6	194.6	173.7	168.9	207.4	198.1	180.1	185.7
전체	133.1	158.5	162.5	166.6	151.5	158.0	182.9	178.0	175.2	173.2

주: 주관적으로 답한 적정 수준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제로 쓴다고 가정할 때의 월 평균 에너지 총 비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물론, 설문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답한 ‘적정’의 수준이 얼마나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크다. 또한, 에너지 지출이 측면에서 수급 빈곤층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난 비수급 빈곤층, 특히 집단 2의 경우에 적정 에너지 지출액이 월 평균 15.85만원으로 나타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급 빈곤층보다 월 평균 2.5만원 정도 높다. 지금까지 산출한 빈곤층의 에너지 수요가 실제로는 빈곤층의 소득 대비 높은 에너지 사용료 부담, 저비용 고효율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 등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빈곤층의 에너지 수요는 실제 사용량 및 주관적인 추정에 근거한 수치보다 더욱 높을 수 있다.



제5장

2023년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본 방향

제1절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 계측 모형

제2절 마켓바스켓 결정원칙

제3절 표준가구 및 지역구분

제5장

2023년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본방향

제1절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 계측 모형

1. 전물량 방식을 통한 최저생계비 계측

2000년 10월 시작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었다. 개편 이전 통합급여 형태로 지급되었던 급여들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급되게 되었으며, 각 급여의 선정 기준도 최저생계비가 아닌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책정되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의 주요 이유 및 목적 중 하나는 빈곤층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에 있는데, 이러한 목적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상대빈곤선인 중위소득의 변동성을 보완하면서 지속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급여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과거의 정책 기준선으로 활용된 동시에 상대적으로 기준중위소득보다 변동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저생계비를 통한 평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급여 적정성 평가의 주요 내용은 맞춤형 급여로의 제도 개편 이전 급여의 선정 및 수준의 결정 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제도개편 이후 각 급여별 기준선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적정한지, 국민의 생활수준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김태완 외, 2017). 급여가 적정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인 및 가구의 실제 지출수준을 분석 측정하고 동 수준이 기준중위소득과 어느 정도 보호 혹은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급여 적정성 평가는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인 전물량 방식 혹은 계측년도 이후 변화를 반영한 물가수준 고려 적용방식, 상대적 방식 등이 있다. 이외에 사람들의 인식을 기초로 측정할 수 있는 주관적 방식 등도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2 4항에서는 급여적정성 평가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을 반영해 측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기존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인 전물량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

적이며, 평가 적용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소비되는 360여 가지 품목에 대한 수량과 가격을 측정하여 표준가구의 지출 수준이 계측된다는 점에서 실제 국민 생활과 변화를 반영하는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전물량 방식의 계측결과와 기준중위소득과 비교는 실태와 정책을 조화있게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동 방식만이 급여적정성 평가의 주요한 수단은 아니며, 전물량 방식 이외에 우리 연구에서는 기타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급여적정성 평가의 과학적 기준과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은 4인 가구를 표준가구로 하여 계측되어 왔다. 전물량 방식의 계측은 실태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규범적 최저생계비라는 점에서 한국의 대표 가구 형태인 표준가구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은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측정해 왔다. 우리 연구 역시 4인 표준가구를 과학적 근거로 우선 설정하고 이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정하고 동 가구를 기준으로 지역별 최저생계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를 계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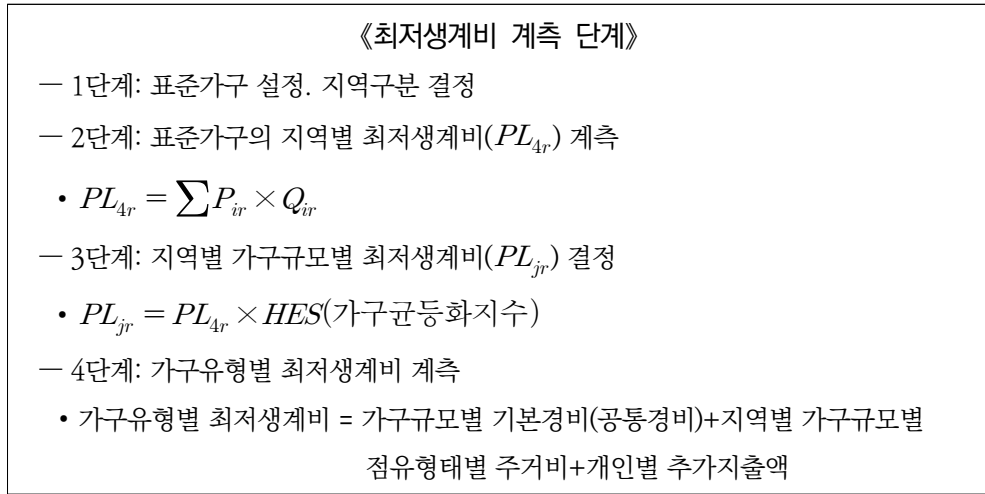
이외에 4인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계측함으로써 개별가구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연구에서는 노인, 장애인 및 한부모가구의 경우 가구 특성으로 발생 혹은 감소하는 추가비용들을 반영하기 위해 전물량 방식을 통해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함께 제안하고 있다.

2.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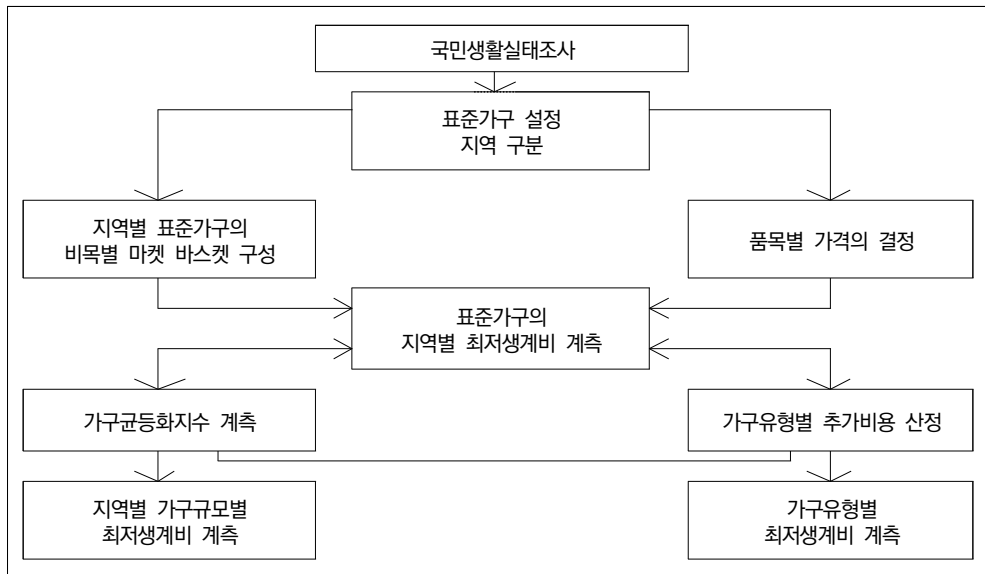
전물량 방식을 통한 최저생계비는 1900년대 초 영국의 라운트리가 요크지역의 빈곤측정을 위한 방식으로 측정한 것에 기초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육체적·문화적·사회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출항목을 설정하고 사용량(혹은 내구연수), 가격에 기초하여 최저생계비를 측정하게 된다. 최저생계비 계측에는 전물량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동 방식에서는 연구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객관적인 자료(=통계치)와 실태를 토대로 과학적, 합리적인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게 된다.

우리 연구에서는 연구 시작단계부터 최저생계비 수치가 최종 산출될 때까지 기존 전물량 방식 계측과 동일하게 단계별로 생계비를 계측하였다. 먼저 국민의 생활실태와

주요 항목에 대한 필수품 여부 및 사용량 등을 파악하고, 주관적 최저생계비, 상대적 최저생계비 등을 산출하기 위해 전국의 17개 시도에 속한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8,000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표준가구는 4인 가구로 설정하였으며 이들의 비목별 지출 수준과 실제 사용량을 파악하기 위해 4인 가구 약 2,800가구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전국적 대표성을 가진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림 5-1-1] 최저생계비 계측 흐름도



한편, 추가적으로 선정된 각 품목의 객관적 가격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체 조사대상 지역 중 시군구 207개 조사구를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진행하여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로부터 확인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량과 가격을 파악하여 최저생계비 계측에 활용하였다. 이외에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가구유형별 특성 반영 등 최저생계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장애인, 노인 및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조사」를 함께 수행하고 이를 기초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이와 같은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은 계측에 필요한 개별 품목부터 최종 결정까지 선행연구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구의 연속성 제고와 함께 전물량 방식의 단점으로 꼽히는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제2절 마켓바스켓 결정원칙

전물량 방식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비목별(식료품비, 주거비 등)로 해당 비목의 필수품을 선정하고, 필수품에 대한 사용량, 내구연수 및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필수품 선정에서 주의할 점은 연구자의 자의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의성 배제를 위해 우리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선정된 필수품을 가능한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연구들에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항목들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쳤으며 우리 연구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취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들과 저소득층의 실태자료에 근거하여 최저생계비를 추정하기 위해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표본 18,000가구를 조사하여, 주관적 및 상대적 최저생계비 등을 추정하고, 각 비목에서 필요한 기초통계(소비, 주거 실태 등)를 산출하였다. 4인 가구를 대상으로 필수품에 대한 사용량, 내구연수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조사에서는 식료품비 산정을 위한 외식 빈도, 광열수도비 사용실태, 내구재 소비실태, 의료 지출실태 등을 파악하여 마켓 바스켓에 활용하였다. 또한 각 항목에 대한 가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지역 전체에 대해 가격조사를 진행하였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공공기관 등의 가격 정보 등을 이용하였다.

둘째, 일반적으로 필수품은 ‘최저의 품위기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합의된 품

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저의 품위기준이란 '기본적 욕구가 충분히 충족된 상태'(Hagenaars, 1986, p.1) 혹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필수품은 사회의 복지(welfare)수준과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아담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필수품은 생명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품일 뿐 아니라 국가의 관습상 그것이 없으면 신망 있는(creditable) 사람으로서의 품격(decent)을 유지할 수 없는 상품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대표적으로 린넨 셔츠와 가죽 신발이 품위 유지 차원에서 필수적임을 지적하기도 했다(Towsend, 1979, pp.32-33.). 필수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최저개념(예. 영양권장량, 최저주거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품목 중에서 저소득층의 소비실태를 분석하여 빈도수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실태자료를 최저생계비 추정에 그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저소득층을 어떻게 설정하여 최저생활의 대상으로 고려하느냐는 것과 둘째, 적절한 소득계층이 선정되어도 그들의 소비행태가 최저생활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201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에서는 보완적으로 소득탄성치, Logistic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필수품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소득탄성치는 필수품의 경우 소득의 변화에 관계없이 소비가 이루어지는 반면, 사치품은 소득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리를 적용하여 소득탄성치가 낮은 품목을 필수품으로 선정하였다. 즉, 2016년 가계동향조사의 모든 품목에 대하여 소득탄력성을 구하고, 탄력성이 0.5 이하인 품목을 기본적인 필수품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 결과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필수품 품목 선정 기준의 연속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필수품의 특성상 짧은 기간동안 해당 품목의 소득탄성치의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text{※ 품목별 소득탄력성: } \epsilon_i = \frac{dQ/Q}{dI/I} = \alpha_i$$

$$\text{※ 회귀모형: } \ln E_{ij} = C_i + \alpha_i \ln I_j$$

(단, dQ/Q : 수요량(지출액)변화율, dI/I : 소득변화율, $\ln E_{ij}$: j가구의 i품목 지출액의 자연로그 값, C_i : 상수항, α_i : 추정계수(품목별 소득탄력성), $\ln I_j$: j가구 소득의 자연로그 값)

다음으로 보유여부(또는 구입여부)와 소득을 변수로 사용한 Logistic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주어진 여건에서의 보유할 확률(또는 소비할 확률)을 추정하여, 소득이 0일 때 어떤 상품의 보유할 확률(또는 소비할 확률) 또는 일정소득 수준에서의 보유할 확률(또

는 소비할 확률)을 산출하여 확률이 높은 품목을 필수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기존 연구인 1999년도 최저생계비 최초 계측 당시 사회적 합의 기준에 의해, 내구재의 경우 보유현황의 비율을 67%(=2/3) 이상, 50% 이상 ~ 67% 미만, 50%(=1/2) 미만으로 구분한 후, 규범적으로 67% 이상은 필수품으로 선정된 바가 있으며, 당시 선정된 필수품과 기존 선행연구에서 포함된 필수품을 우리 연구에서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셋째, 사용량의 결정은 사용량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 양을 사용량으로 결정(예. 균등할 주민세)하였다. 사용량이 규범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 양을 사용량으로 결정(예. 영양권장량을 충족하는 식품구성, 최저거주면적 등)하였다. 이외에 것은 기존 연구와 같이 월사용량(U_i)은 가구당 품목별 월평균 지출액을 그 품목의 단가로 나누는 방법과 해당 품목에 대한 전체 사용량을 표본가구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ast U_i = \frac{\sum_{j=1}^n E_{ij}/n}{P_i} \text{ 또는 } \frac{\sum_{j=1}^n X_{ij}}{n}$$

(단, U_i : i품목 사용량, E_{ij} : j가구의 i품목 지출액, P_i : i품목 가격, X_{ij} : j가구의 i품목 사용량, n : 표본가구수)

넷째, 내구연수의 결정은 i)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기간보다는 길게 결정(교환가치는 없어도 사용가치는 있기 때문)하였으며, ii) 표본수를 구입가구수로 나누어 내구연수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예. 구두). iii) 실태조사의 품목별 평균가격을 월 지출금액으로 나누어 내구연수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예. 냉장고, TV 등)하였으며, iv) 실태조사에서 저소득 가구의 소비수준의 대푯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다섯째, 202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가격결정의 기준시점은 2023년 1월(단, 계절변동이 심한 품목은 성수기 기준)로 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품질은 증품 또는 중저품으로 하였으며, 통계자료가 있는 경우 통계청 물가지수 변화를 반영하여 품목별 소비자 가격을 적용하였다.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 우리 연구를 위해 전해오던 실태조사에서 저소득 가구의 구입가격의 대푯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을 이용하거나, 가격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여섯째, 지역구분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지역구분에 따라 서울, 경기, 광역·세종·

창원, 그 외 지역의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되, 그 중 중위소득 및 급여적정성 비교의 기준으로 '광역시·세종·창원'의 4인 표준가구를 적용하였다. 맞춤형 급여 도입 당시, 주거급여가 분리되어 별도의 지역기준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2020년 연구까지는 기존 최저생계비 계측 당시 활용된 지역구분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왔었다. 즉, 지역구분은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으로 구분하였으며, 급여적정성 평가에서는 중소도시 계측 값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2023년 1월부터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이 변경되고 공제액 기준이 상향되면서, 본 연구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지역구분을 적용했던 이전 연구의 계측결과와의 시계열적 연속성과 현행 4개 급지 계측 값의 비교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과거 지역구분의 기준이었던 3개 급지를 적용한 계측 값도 산출하였다. 또한 과거 적정성 평가의 기준이었던 '중소도시'의 경우 현 적정성 평가의 기준인 '광역시·세종·창원'에 대한 비교안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각 항목에서도 선행연구의 계측결과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차등화된 마켓 바스켓(예, 주거비)을 구성하였다. 단, 소비실태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더라도 규범적으로 동일한 소비를 요하는 품목(예, 식료품의 영양학적 요구량 기준, 보건의료비)은 지역별 차이를 두지 않았다.

제3절 표준가구 및 지역구분

1. 표준가구의 개념과 구성

최저생계비를 계측 시 표준가구를 설정하는 이유는 최저생계비를 전물량 방식으로 계측할 경우 가상의 마켓바스켓을 활용하여 한 달간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의 형태를 사전적(事前的)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구규모와 형태에 따라 전물량 방식에 포함되는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등 비목별 품목 선정과 사용량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계측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어느 가구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것인지에 대한 과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최저생계비 측정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의 적정성 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어느 특정 계층이나 대상이 아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

반가구 중에서 그 사회의 전형적인 가구의 형태를 찾아 전물량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표준가구가 필요하다. 즉,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해 일반적인 가구 중에서 그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또는 그 사회의 전형적인 가구의 형태를 찾아 전물량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때 전형적인 가구, 준거가 되는 가구를 표준가구라고 한다. 또한 최저생계비가 전물량 방식으로 계측될 경우, 약 360여개 품목에 대한 가격과 수량 등을 기초로 산출되며, 개별 가구별로 이를 모두 가정하고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것은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추정에 있어 오차 등 편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최저생계비 계측에서는 표준가구의 개념을 적용하게 된다. 표준가구의 규모 또는 구성을 규정함에 있어 우선 고려할 사항은 선정된 가구가 어느 정도 대표성을 지니는가이다. 가구규모와 가구원 구성 등의 측면에서 최저생계비 계측 당시 그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가구형태가 표준가구 또는 준거가구(reference family)가 된다.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표준가구 또는 준거가구는 그 사회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는 가구형태, 즉 최빈가구로 설정하였다. 즉 최저생계비가 계측된 1999년부터 표준가구의 규모는 4인으로, 가구원은 남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 2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5-3-1〉 가구원 수별 가구원 분포(2000~2015)

(단위: 천 가구, 천 명, %)

구 분	2000년 ^T		2005년 ^T		2010년 ^T		2010년 ^R		2015년 ^R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일반가구	14,312	44,653	15,887	45,755	17,339	46,642	17,656	47,318	19,111	48,351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가구원수	3.12		2.88		2.69		2.69		2.53	
1인	2,224	2,224	3,171	3,171	4,142	4,142	4,218	4,218	5,203	5,203
	(15.5)	(5.0)	(20.0)	(6.9)	(23.9)	(8.9)	(23.9)	(8.9)	(27.2)	(10.8)
2인	2,731	5,462	3,521	7,042	4,205	8,410	4,336	8,672	4,994	9,988
	(19.1)	(12.2)	(22.2)	(15.4)	(24.3)	(18.0)	(24.6)	(18.3)	(26.1)	(20.7)
3인	2,987	8,961	3,325	9,975	3,696	11,088	3,798	11,394	4,101	12,303
	(20.9)	(20.1)	(20.9)	(21.8)	(21.3)	(23.8)	(21.5)	(24.1)	(21.5)	(25.4)
4인	4,447	17,788	4,289	17,156	3,898	15,592	3,887	15,548	3,589	14,356
	(31.1)	(39.8)	(27.0)	(37.5)	(22.5)	(33.4)	(22.0)	(32.9)	(18.8)	(29.7)

주: 1) T(Traditional)는 전통적 현장조사방식의 집계결과를, R(Register-based)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를 의미하며, 2010년^R 자료는 2015년^R과의 비교를 위해 제공된 것임.

2) 가구원 수는 가구 수와 1~4인의 가구원수의 곱으로, 전체 가구원수는 전체 가구 수와 연도별 평균 가구원 수의 곱으로 계산함.

자료: 김태완, 김문길 외(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p.218)

하지만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가구원수 중 최빈가구가 기존 4인 가구에서 2인가구의 변경되었으며, 2015년 조사에서는 다시 1인 가구가 최빈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익히 알려져 있던 가구구성에서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에도 영향을 주어 1인 가구와 2인 가구에 대한 관심과 이들 중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여덟 차례(1989년, 1994년,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2017년)에 걸쳐 생활보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및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고, 공식적으로 계측된 최저생계비를 활용한 것은 다섯 차례(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가 있었다. 2017년에는 맞춤형 급여 변경 이후 도입된 기준중위소득의 선정 및 급여적정성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로 최저생계비가 활용되었다. 여기서 표준가구는 주로 실태조사 결과의 최빈치를 바탕으로 선정되다가 2013년 이후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다음 표와 같이, 1989년 최저생계비 계측 이래로 표준가구의 규모는 4인 가구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평균 가구원수는 1989년 4.36명에서 2010년 2.84명으로 급격히 감소해 왔으며, 이후에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최빈가구로 나타나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대표적으로 2013년과 2017년 당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등에서는 비록 최빈가구가 1인 가구로 변경되었지만 다음을 고려해서 4인 표준가구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다. 첫째, 국민의 생활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1인가구의 경우 가구구성이 청년과 노인이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다른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지출을 하고 있어, 이를 표준가구로 설정시 우리나라의 표준적 지출수준을 정확히 분석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둘째, 가구원수 기준에서 1인 가구가 최빈가구로 변경되었지만, 가구를 구성하여 생활하는 가구원수를 고려한 인구구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4인 가구가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표준가구 설정에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였는데, 2021년의 경우 2인가구에 해당하는 인구는 약 121.5만명, 3인 가구에 해당하는 인구는 125.1만명, 4인 가구에 해당하는 인구는 126.2만명인 것으로 나타나, 2021년까지는 인구구성에서 있어 4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⁷⁷⁾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도 기준중위소득 급여적정성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최저생계비 전물량 방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표준가구를 4인 가구로 설정하여 분석하였

다.

〈표 5-3-2〉 최저생계비 계층에서의 표준가구 규모 및 구성의 변화

연도	표준가구	가구원구성				산출방법	비고	
		부	모	1자	2자		4인 가구 비중	평균 가구원수
1989	4인	37세	33세	8세(여)	5세(남)	실태조사결과 평균가구원수	-	4.36인
1994	4인	37세	33세	8세	5세	-	-	
1999	4인	36세	33세	7세(남)	5세(여)	실태조사결과 최빈가구원수	35.4%	3.45인
2004	4인	39세	36세	10세(남)	8세(여)	실태조사결과 최빈가구원수	29.1%	3.02인
2007	4인	40세	37세	11세(남)	9세(여)	실태조사결과 최빈가구원수	27.3%	2.94인
2010	4인	40세	37세	11세(남)	9세(여)	실태조사결과 최빈가구원수	26.6%	2.84인
2013	4인	42세	39세	12세(남)	10세(여)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적용	26.6%	2.81인
2017	4인	44세	41세	14세(남)	11세(여)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적용	18.8%*	2.49인**
2020	4인	47세	44세	16세(남)	13세(여)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적용	17.7%*	2.43인*

* 2017년과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수록 결과임

**통계청, 『가구원수별 추계가구』 (kostat.go.kr).

자료: 안창수 외(1989), 최저생계비 계층조사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박순일 외(1994), 최저생계비 계층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층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4),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층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김미곤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층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여유진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층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3),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층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외(2020), 2020년 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7) 통계청 보도자료(2022.7.28.)의 결과를 활용하여 계산

2. 2023년 표준가구 설정 과정 및 결과

가. 2023년 표준가구 설정 과정

기 수행된 연구에서는 표준가구 선정을 위해 통계청의 대표적인 표본조사(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또는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4인 가구 남성가구주 최빈 연령을 확인하고, 4인 가구 최빈 연령 남성가구주의 여성배우자 연령을 확인한 후에 해당 여성배우자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른 초혼연령 및 출산연령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인구동태조사에 따른 첫째아 및 둘째아 연령 및 성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빈 연령 남성가구주 선정에 활용된 자료가 다르게 적용되었는데, 2020년 연구부터는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를 활용하여 4인 가구 남성가구주 최빈 연령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자료의 대표성을 감안하여 표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4인 남성가구주와 여성 배우자의 연령을 확인하였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와 인구동향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표준가구를 선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4인 가구 남성가구주 최빈 연령을 확인하고,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의 4인 가구 최빈 연령 남성가구주의 여성배우자 최빈 연령을 확인한다. 2017년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의 4인 가구 최빈 연령 남성가구주와 최빈 연령 여성배우자의 첫째아 및 둘째아 최빈 연령 및 성별을 확인하였으나,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할 경우 표준가구에 해당하는 자녀의 최빈 연령의 관측 수가 적어 남성가구주와 여성배우자의 결혼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을 대표하기 어렵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기 수행된 2020년 연구에서는 먼저 남성가구주의 최빈 연령과 여성배우자 최빈 연령을 확인한 뒤 첫째아와 둘째아의 연령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평균 초혼연령과 모(母)의 동거기간별 출생, 모(母)의 평균연령 등의 자료를 활용해 산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 과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표준가구를 설정하였다.

202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표준가구 구성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준가구 구성을 위해 먼저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를 활용하여 표준가구의 남성가구주와 그 배우자의 연령을 결정하였는데, 가장 최근에 공표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의 4인 가구 남성가구주 최빈 연령을 확인하고,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의 4인 가구 최빈 연령 남성가구주의 여성배우자 최빈 연령을 확인하였다. 이런 방식 외에도 4인 가구 최빈 연령 남성가구주와 최빈 연령 여성배우자의 첫째아 및 둘째아 최빈 연령 및 성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도 표준가구를 구성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표준가구에 해당하는 자녀의 최빈 연령의 관측 수가 적어 남성가구주와 여성배우자의 결혼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을 대표하기 어렵다. 기 수행된 2020년 연구에서는 남성가구주의 최빈 연령과 여성배우자 최빈 연령을 확인한 뒤, 첫째아와 둘째아의 연령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평균 초혼연령과 모(母)의 동거기간별 출생, 모(母)의 평균연령 등의 자료를 활용해 첫째아와 둘째아의 연령을 확인하고 첫째아와 둘째아의 성별은 앞서 언급한 규범적 차원(사회적 합의 반영)의 적용을 반영하여 표준가구를 구성하였다. 이번 표준가구 선정 방식도 2020년 연구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 4인 가구 남성가구주의 최빈연령은 47세이며, 4인 가구 최빈연령 남성가구주의 여성배우자 최빈연령은 46세로 나타났다.

〈표 5-3-3〉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남성가구주 및 여성배우자 최빈 연령

기준연도	4인 가구 남성가구주 최빈연령(세)	4인 가구 최빈 연령 남성가구주의 여성배우자 최빈연령(세)
2021	47	46

자료: 통계청(2022),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등록센서스」 전수자료 원자료

표준가구의 부부에 해당하는 4인 가구의 남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의 최빈 연령을 확인한 후, 인구동태통계연보를 통해 표준가구의 결혼시기를 살펴보면, 47세의 남성 가구주와 46세의 여성배우자가 대체로 2003년에 결혼하여 가구를 구성하였다. 인구동태통계연보의 평균 초혼연령에 따르면 2003년에는 남성 30.1세, 여성 27.3세로 나타나는데, 이는 2021년 기준 47세 남성가구주 및 46세 여성배우자의 연령과 가장 유사한 나이대이다(남성 가구주 나이를 중심으로 매칭).

〈표 5-3-4〉 평균 초혼연령(인구동태통계연보)

연도	구분	혼인건수(천건)	혼인율(천명당)	남자(세)	여자(세)	터울(세)
1993		402.6	9.0	28.1	25.1	3.0
1994		393.1	8.7	28.3	25.2	3.1
1995		398.5	8.7	28.4	25.4	3.0
1996		434.9	9.4	28.4	25.5	2.9
1997		388.6	8.4	28.6	25.7	2.9
1998		375.6	8.0	28.9	26.1	2.8
1999		362.7	7.7	29.1	26.3	2.8
2000		334.0	7.0	29.3	26.5	2.8
2001		318.4	6.7	29.6	26.8	2.8
2002		304.9	6.3	29.8 (28세)	27.0 (27세)	2.8
2003		302.5	6.3	30.1 (≒1974년생, 29세)	27.3 (≒1975년생, 28세)	2.87
2004		308.6	6.4	30.5 (30세)	27.5 (29세)	3.0
2005		314.3	6.5	30.9	27.7	3.2
2006		330.6	6.8	31.0	27.8	3.2
2007		343.6	7.0	31.1	28.1	3.0
2008		327.7	6.6	31.4	28.3	3.1

자료: 통계청(kostat.go.kr), 「인구동향조사」 재구성

표준가구의 자녀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여성의 동거기간별 출생자료를 확인하였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25~29세인 경우 동거기간이 24개월 미만에 출산하는 비율은 2002년은 48.2%, 2003년은 48.8%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표준가구의 2021년 기준 47세의 남성 가구주와 46세의 여성 배우자는 2003년에 혼인하여 대체로 1년 이내에 첫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즉, 1974년생 남성과 1975년생 여성의 초혼 연도를 2003년으로 가정하면 여성이 첫째아를 출산하는 연도는 2004년도로 설정할 수 있다. 한편, 자녀 출산시 모의 평균 출산연령을 살펴보면, 2004년 28.8세로 나타남. 배우자 연령이 2021년 기준 46세이므로 2004년 연령은 29세이다. 즉 2004년을 첫째아 출산연령으로 하는 것이 2021년 기준 46세 배우자 연령과 가장 유사하다. 따라서 자녀 출산시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을 고려하면, 첫째아를 출산하는 연도는 2004년, 둘째아를 출산하는 연도는 2006년이다. 2021년 기준으로 첫째아는 17세(고2), 둘째아는 15세(중3)로 가정할 수 있다.

〈표 5-3-5〉 2002~2003년 25~29세 모(母)의 등거기간별 출생

자녀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상	미상
2002	20.7%	27.5%	18.9%	14.6%	9.0%	4.6%	2.2%	1.0%	0.4%	0.2%	0.2%	0.7%
2003	20.4%	28.4%	18.0%	14.9%	8.9%	4.5%	2.1%	0.9%	0.4%	0.2%	0.2%	1.0%

자료: 통계청(kostat.go.kr), 「인구동향조사」 재구성

〈표 5-3-6〉 자녀 출산시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연도	자녀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모의 평균 연령	첫째	26.2	26.4	26.5	26.7	26.9	27.1	27.4	27.7	28.0	28.3	28.6	(29) 28.8	29.1	29.3	29.4	29.6
	둘째	28.5	28.9	28.7	28.9	29.0	29.2	29.4	29.7	29.9	30.2	30.4	30.8	31.0	(31) 31.3	31.5	31.7

자료: 통계청(kostat.go.kr), 「인구동향조사」 재구성

나. 2023년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표준가구(안)

2023년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표준가구(안)은 선행연구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추가로 반영하였다.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 전문위원회에서는 표준가구를 산정하면서, 첫째아 및 둘째아 모두 최빈 성별이 남성인 것을 확인하였으나, 가구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최저생계비 계측에 있어 지출 품목에 자녀의 성별 특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둘째아의 성별은 여아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도 첫째아와 둘째아 모두 최빈 성별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표준가구의 규범적 성격과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연속성 제고를 위해 표준가구 구성에 첫째아는 남아로, 둘째아는 여아로 적용하였다.

〈표 5-3-7〉 모(母)의 출산 당시 출산 순위별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

(단위: 명)

모의 연령	출산순위별	2004	2006
46세	첫째아	105.1	105.8
	둘째아	106.2	106.1

자료: 통계청(kostat.go.kr), 「인구동향조사」

〈표 5-3-8〉 2013년 전문위원회의 표준가구 산정 결과

<p>○ 전문위원회 위원들의 다수의견인 첫째아(만 12세) 아동의 학령을 초등학교 6학년을 기초로 하여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전물량 방식의 표준가구를 최종 아래와 같이 제안함</p> <p>- 표준가구를 부: 42세, 모: 39세, 1자(남): 12세, 2자(여): 10세로, 자녀의 학령은 첫째아 초등학교 6학년, 둘째아 초등학교 4학년 재학으로 제안</p>
--

자료: 2013년 제1차 전문위원회 안건 논의결과 보고자료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한 2023년 표준가구의 구성안은 아래와 같다. 표준가구는 가구주는 47세 남성이며, 배우자는 46세 여성이며, 첫째아는 17세 남아, 둘째아는 15세 여아로 구성된 4인 가구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 표준가구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표 5-3-9〉 표준가구 구성안

구분	표준가구의 구성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기준	부:47세 모:46세 1자(남):17세 2자(여):15세

이번 연구에서는 채택된 2개의 표준가구 구성(안)을 활용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자 한다.

3. 지역구분

국민들의 식생활비, 주거비 등 전물량 방식을 통해 계측되는 비용 등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특히 마켓 바스켓의 필수품마다 규격, 사용량, 내구연수, 가격을 측정하여 해당 품목의 지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가 있거나 특정지역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최저생계비 계측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과 기타 지역(중소도시, 농어촌) 간의 주택 가격 편차는 점차 더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최저주거비 계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역별 차이가 최저생계비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나타나는 지역별 차이를 모두 최저생계비에 반영할 수는 없다. 이는 지역별 주거비 또는 다양한 필수품에서 시장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시군구 또는 읍면동마다 매우 다양한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세한 지역별 차이

까지도 모두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나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 측면에서 불가능하다.

전물량 방식을 활용한 기존의 최저생계비 계측 과정에서는 지역별 주택가격의 차이를 근거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지역을 구분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서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를 포함하고, 농어촌은 도의 '군' 지역을 말하며, 특별시와 광역시의 군지역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대도시로 분류된다(보건복지부, 2020). 하지만, 2023년부터 지역구분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되었다. 이전의 지역구분의 대도시에 해당되는 지역이 서울과 광역·세종·창원으로 나뉘지는 등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지역구분도 ¹⁾대도시, ²⁾중소도시, ³⁾농어촌의 3종*에서 ¹⁾서울, ²⁾경기, ³⁾광역·세종·창원, ⁴⁾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한다.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농어촌) 도의 "군"

현 행				변 경('23년~)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 원	4,200만 원	3,500만 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9,900만 원	8,000만 원	7,700만 원	5,300만 원
의료급여	5,400만 원	3,400만 원	2,900만 원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12.30.),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런 변화를 최저생계비 계측에 적절히 반영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지역구분에 따라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의 최저생계비를 계측 하되(연구진안), 그 중 중위소득 및 급여적정성 비교의 기준으로 '광역·세종·창원'의 4인 표준가구를 적용하였다. 중위소득 및 급여적정성 비교의 기준으로 '광역·세종·창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광역·세종·창원'은 다양한 지역을 포괄하면서, 가구 비중도 27.7%로 '그 외 지역'(28.8%)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대표성을 가지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 등 재산수준이 이전의 중위소득 및 급여적정성 비교의 기준인 '중소도시'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구분을 통해 중위소득 및 급여적정성 비교를 위한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그리고 과거 지역구분의 기준이었던

3개 급지의 적용 계측 값은 동일한 지역구분을 적용했던 이전 계측결과와의 연속성 차원에서, 현행 4개 급지 계측 값의(연구진안)의 비교 용도로 활용하고 '중소도시'의 경우 '광역시·세종·창원'에 대한 비교안으로 활용하였다.

〈표 5-3-10〉 급지별 가구분포 및 재산 수준 비교

(단위: %, 만원)

구분	3급지			4급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그외
가구분포	43.8	50.1	6.2	18.9	24.6	27.7	28.8
총재산(금융 및 비금융재산)	52,962	39,145	29,387	76,620	46,582	35,666	30,443
(거주)주택가격	33,027	22,545	8,931	48,319	30,175	21,662	12,984
전세보증금(전체)	23,453	18,467	5,336	29,870	21,340	14,052	11,459
전세보증금(수급+기준중위50% 이하)	4,100	3,564	1,699	4,683	3,822	3,581	2,79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5-3-11〉 계측년도별 지역별 4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비율 : 과거 지역구분

(단위: 원,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988	금액	315,076		296,885	268,223
	배율	106		100	90
1994	금액	714,061		665,840	578,914
	배율	107		100	87
1999	금액	957,641		901,357	775,885
	배율	106		100	86
2004 ¹⁾²⁾	금액	1,450,318	1,267,118	1,231,413	1,051,395
	배율	118	103	100	85
2007 ¹⁾	금액	1,348,569		1,249,187	1,075,905
	배율	108		100	86
2010 ¹⁾	금액	1,508,033		1,417,980	1,293,445
	배율	106		100	91
2013 ¹⁾	금액	1,756,247		1,642,173	1,515,701
	배율	107		100	92
2017 ¹⁾³⁾	금액	1,897,395		1,811,223	1,695,829
	배율	105		100	94
2020 ¹⁾	금액	2,232,205		2,134,492	1,973,791
	배율	105		100	92

주: 1) 2004년부터는 연구진안을 기준으로 함.

2) 2004년의 경우 대도시를 서울시와 기타 광역시로 구분하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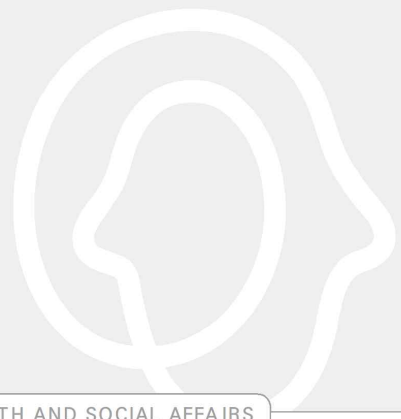
3) 2017년은 표준가구 변동(가구주, 배우자, 중등생 자녀1, 초등생 자녀 1)을 가정한 것임.

자료: 김태완 외(2010, p.161).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3, p.294).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김문길 외(2020, p.340, p.528).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제6장

202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

- 제1절 최저 식료품비
- 제2절 최저 주거비
- 제3절 최저 광열·수도비
- 제4절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 제5절 최저 피복·신발비
- 제6절 최저 보건·의료비
- 제7절 최저 교육비
- 제8절 최저 교양·오락비
- 제9절 최저 교통·통신비
- 제10절 최저 기타소비지출
- 제11절 최저 비소비지출
- 제12절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제 6 장

202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

제1절 최저 식료품비

1. 최저 식료품비 개념 및 계측방법

가. 최저 식료품비의 개념

식료품(Food)은 인간이 활동하고, 성장을 촉진하며,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섭취하는 음식을 의미한다. 최저생계비에서 식료품은 가장 중요하고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목이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식료품비는 인간의 생존, 성장과 활동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열량과 영양소 등 구매하고 먹는데 드는 비용으로 식품 섭취는 인간의 욕구 중 기본적인데, 사람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 품목 중 하나이다. 식료품비는 소비지출 비목 중에 비탄력적이다(김태완 외, 2017).

우리 연구에서의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 식료품비는 2015년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한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 2015)'에 따라 많이 소비되고 있는 식료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였으며 그 식단을 유지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최저 식료품비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실태조사와 같은 실태를 반영한 생계비이기보다 규범적 측면에서 영양학 조건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소비실태를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정하고 있는 식단의 구성은 오랜 기간 최저 식료품비 계측에 활용한 품목과 최근의 소비실태를 반영하여 함께 구성하였다.

나. 기존 연구에서의 최저 식료품비 계측 방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1988~2020년까지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해 식료품비를 산출해 왔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출을 위한 표준생계비 계측으로

식료품비를 전물량 방식으로 계측하고 있다. 계측에 활용된 모형과 계측 방식은 모두 유사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식료품비는 기존 최저 식료품비 계측 방식과 차이가 없다. 최저 식료품비는 가정식 비용, 가장 외식비, 자녀 학생 급식비로 구성되고, 식료품비에서 중요한 가정식 비용은 실태를 고려하여 「가계동향조사」의 가구 중 소득 하위 40% 이하 4인 가구의 품목 세분류별 지출 실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기존 식료품비 측정과의 차이점은 표준가구 연령 상승으로 연령별 열량의 변화가 있다는 점이다.

2023년 최저 식료품비 가격은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품목의 물가변동지수,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농수산물 가격정보(KAMIS), 인터넷 자료의 시장가격 등을 통해 중(하)품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설정하였다. 또한 외식비는 소비자물가변동지수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다. 본 연구에서의 최저 식료품비 계측방법

2023년도 최저 식료품비는 기존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의 최저 식료품비 계측 방식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규범적 측면에서 표준가구 가구구성원의 연령, 성별을 기준으로 영양섭취기준을 설정하였고, 현실 측면에서 기존 마켓바스켓을 토대로 한국인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들을 기준으로 수정된 마켓 바스켓을 설정하였다. 2020년과 차이점은 표준가구 연령 상승으로 연령별 열량의 변화가 있다는 점이다. 기타 영양섭취기준은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 2020)과 식품안전정보포털의 최신 식품영양성분 DB(농촌진흥청 식품성분표 DB, 식약처 영양성분DB)를 활용하여 반영하였다.

최저 식료품비는 이전과 동일하게 가족 전체 혹은 일부가 가정에서 식사하는 비용인 가정식 비용과 외부에서 식사하는 외식비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저 식료품비 = 가정식 비용 + 외식비용
- 가정식 비용 = 외식이 없을 경우의 가정식 비용 - 가구주의 외식에 따른 가정식 절감비용
- 가족단위 외식에 따른 가정식 절감비용 - 학생의 급식에 따른 가정식 절감비용 - 친지방문, 가족여행 및 수련회에 따른 절감비용
- 외식 비용 = 가장의 중식비 + 가족단위 외식비용 + 학생의 급식비용

최저식료품비 비용 산정을 위한 품목은 곡류 및 식빵, 육류, 낙농품, 어개류, 채소, 과실류, 조미식품, 빵 및 과자류, 차 음료, 기타식료품의 10개 중분류⁷⁸⁾의 세부 품목이다. 외식비는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 중식비, 가족단위 외식비용과 자녀가 학생이므로 학교 급식비용으로 구성된다. 학생 급식비용은 표준가구 고등학생 남아 1명, 중학생 여아 자녀 1명의 학교 급식비(자녀 2명)로 산출하였다. 가족단위 외식비는 2010년부터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표준가구가 최소한으로 외부에서 식사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가정식 비용에 외식으로 인한 가정식 비용을 제외하였으며, 제외된 항목은 가장 중식 절감분, 학생급식 절감분(2명), 가족 단위 친지 방문 절감분(4인 기준 연간 2회: 연간 총 8끼), 국내 가족여행 절감분(1년 1회 3끼: 연간 총 12끼) 자녀(2명) 수련회 절감분(1인당 연간 1회: 1인당 연간 7끼), 가족여행 중 외식으로 인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2. 최저 식료품비 계측 결과

가. 가정식 비용

2023년 최저 식료품비 가정식 비용은 기존의 최저 식료품비 산출 방법과 동일하게 3단계로 거쳐 가정식 비용이 산출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1일 가정식 비용을 산출하는 것으로 '1일 가정식 비용 = 1일 식료품 구입량 ×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 1끼당 가정식 비용을 산출한다. '1끼당 가정식 비용 = 1일 가정식 비용 ÷ 3'으로 계산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월 가정식 비용을 산출하며, 산출방식은 다음

78)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2009년 항목개편 전 식품비 분류방식에 준하였다.

과 같다. 즉, '월 가정식 비용 = 1끼당 가정식 비용 × 월평균 끼니 수(365÷12×3) - 외식으로 인한 가정식 비용 감소분'으로 계산된다.

1) 품목 선정

식료품 마켓 바스켓(Market Basket)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2023년 기준 한국 국민들이 많이 식용하는 식품 중에서 필수 식료품을 선정하되, 영양학적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인간이 소비하는 식료품의 품목의 종류는 다양하고 많으며, 대체가 가능하다. 즉 각 품목은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일반적인 식품을 선정하지만 비슷하거나 유사한 가격과 다른 식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⁷⁹⁾ 위와 같은 것을 고려하여 필수 식료품을 선정하였다.

2023년 최저 식료품 품목 선정은 2017년, 2020년 연구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2017년의 경우 「가계동향조사(2016)」를 이용하여 소득 하위 40% 이하 4인 가구의 품목 세분류별 지출액을 산정하여 각 품목이 중분류의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였다. 그 결과 식료품 중분류 범주 내에서 지출 비율이 0.5% 미만인 식료품 품목은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을 선정하였다. 이와 동일하게 2023년 역시 「가계동향조사(2022)」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품목 검토 및 이를 확인하였다. 2023년 최저 식료품비 품목도 2020년 품목과 거의 동일하다.

2) 사용량(구입량) 결정

최저 식료품비 산출을 위한 품목이 결정되면 다음으로 각 품목의 구입량을 결정하게 된다. 식품 섭취는 규범적인 측면에서 '영양학적 필요'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각 품목의 구입량을 세 단계에 걸쳐서 결정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제시된 성별·연령별 열량과 33개의 영양권장량을 충족하도록 조정하였다.⁸⁰⁾ 2023년 표준가구의 연령은 가장 47세,

79) 각 품목은 비슷한 가격과 다른 식품으로 대체 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여야 한다(예, 품목에 포함된 식품: 도토리묵 ↔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식품: 메밀묵).

80) 영양권장량에 반영된 영양소는 탄수화물, 당류, 지질, 단백질, 아미노산, 식이섬유, 비타민A, 비타민D, 비타민E, 비타민K, 비타민C,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B₆, 엽산, 비타민 B₁₂, 판토텐산, 비오

배우자 46세, 남아 17세(고등학생), 여아 15세(중학생)이므로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른 하루 필요 열량은 각각 2,500kcal, 1,900kcal, 2,700kcal, 2,000kcal로 총 9,100kcal이다.

96개 품목의 구입량이 하루 필요열량의 100% 내외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정하여 구입량을 결정하였다. 단, 최저 식료품비라는 점을 감안하여 비슷한 영양소를 가진 식품군 내에서 가능한 저렴한 품목을 좀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로, 식료품별 폐기율을 고려하였다. 폐기율이란 구입한 식품 중에서 섭취하지 않고 버리거나 낭비되는 부분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주로 식료품이 세척·가공·조리 과정에서 껍질·뼈·수분 등이 손실되므로, 구입량보다는 섭취량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즉, $[\text{구입량} \times (1 - \text{폐기율})]$ 으로 산출하며 영양 권장량을 충족시키도록 하였다.⁸¹⁾

마지막으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섯 가지 기초식품군별 영양학적 권장량과 「가계동향조사(2022)」의 소비실태를 절충하여 최종적인 구입량을 결정하였다. 구입량의 경우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식료품비는 규범적 측면 즉, 영양권장량 충족의 측면이 강하고 하나의 품목은 비슷한 가격과 영양소를 가진 다른 품목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 간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3) 가격결정

식료품 품목과 구입량이 결정되면 마지막으로 각 품목의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 연구에서는 $[\text{구입량} \times \text{g당 가격}]$ 의 산식으로 식품별 소비가격을 결정하였다. 가격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하였으며, 어패류, 채소, 과실류 등 계절에 따른 가격등락이 심한 일부 품목(예. 배추, 고구마, 사과, 딸기 등)은 성수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가격결정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중 식료품비에 해당되는 항목의 물가변동률,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수산물 가격정보(KAMIS)」, 인터넷 자료의 시장

틴, 칼슘, 인,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불소, 망간, 요오드, 셀레늄, 몰리브덴, 크롬이다. 이는 2013년 기준이었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제 8차 개정」의 22개 영양소에서 11개의 영양소가 추가되었으며,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제시된 평균필요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상한섭취량 중 최저 식료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영양소를 평균필요량과 권장섭취량 사이로 조정하였다.

81) 품목별 폐기율은 「식품영양소 함량자료집」(한국영양학회, 2009)을 사용하였다.

가격과 시장조사 등을 이용하였다.

나. 외식비

외식비는 가구단위의 외식과 가구원의 규칙적인 외식비(가장의 중식 및 학생의 급식)로 나누어진다. 가구단위 외식은 가구원의 생일을 감안하여 연간 총 4회(월 4/12=0.33)로 설정하였다. 단가는 2020년 외식비인 49,128원에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의 외식비 인상을 13.6%를 반영하여 55,809원으로 하였다.

가구원의 규칙적 외식 중 가장 중식의 경우 2013년, 2017년, 2020년과 동일하게 가장 직업을 임금근로자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도농 간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가정의 근무일은 주 5일로 가정하여 중식비를 산출하였다. 가정의 중식 회수는 월 21.73(=365/12 × 5/7)회로 설정하였으며 가정의 중식비 비용은 2017년 외식비인 4,913원에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의 외식비 인상을 13.6%를 반영하여 끼니당 5,581원을 적용하였다.

학생의 급식비는 급식 횟수는 수업일수를 감안하여 월 16.08회(=193⁸²⁾/12)로 설정하였다.⁸³⁾ 학생의 급식비는 학교알리미 학생 1인당 급식비(2022. 5.)를 적용하였다.⁸⁴⁾

다. 표준가구의 최저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산출한 2023년 최저생계비 중 최저 식료품비(연구진안)는 2020년과 같이 도농간 구분 없이 산출되었으며, 2023년 계측된 식료품비는 표준가구(47세 남성가구주, 46세 여성배우자, 17세 고등학생(남아), 15세 중학생(여아)의 경우 894,118원으로 계측되었다.

2023년 표준가구(47세 남성가구주, 46세 여성배우자, 17세 고등학생(남아), 15세 중학생(여아)의 최저 식료품비의 경우 2020년 최저 식료품비 대비 122,773원(15.9%)

82) 2012년 주5일제 전면시행으로 수업일수 209일에서 193일로 조정

83) 2012년 주 5일제 전면시행으로 수업일수는 209일에서 193일로 조정하였다.

84) 학교알리미 학교급별 학생 급식비 자료는 매년 5월 고시

증가한 금액이다.

〈표 6-1-1〉 최저 식료품비 조정품목 요약(2020년 대비)

계측 결과	계측조사 결과		근거
	조정내역	증감액(월)	
894,118원	총 열량 조정 : 100kcal 증가 9,000kcal(521,754원) → 9,100kcal(607,946원)	86,192원	표준가구 연령 변화· 열량과 구입량 조정 및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장중식비 단가 상향 조정 회당 4,913원 → 5,581원	14,522원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외식비 단가 상향조정 회당 49,128원 → 55,809원	2,227원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첫째아 급식비 (1안) 고등학생(3,948원)→ 고등학생(4,650원)	11,291원	표준가구 연령 변화· 학교알리미(2022.5.) 단가 반영
	둘째아 급식비 (1안) 중학생(3,916원)→ 중학생(4,447원)	8,541원	

가정식 비용은 소비실태와 영양학적 기준을 반영하여 계산된 가정식 구입비에 가장의 중식비 절감분, 자녀 2명의 급식비 절감분, 가족 단위 외식으로 인한 절감분, 자녀 2명 수련회 절감분, 친지방문 절감분, 가족여행 중 외식절감분을 차감하여 산출되었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가정식 비용은 607,946원이며, 외식비는 286,172원으로 최저 식료품비는 894,118원이다.

〈표 6-1-2〉 표준가구의 최저 식료품비(연구진안)

구분	2020년 (표준가구 1인)			2023년		
	단가(원)	회수	금액(원) ¹⁾	단가(원)	회수	금액(원) ¹⁾
가정식 비용			521,754			607,946
가정식 비용	6,911	91.25	630,602	8,061	91.25	735,549
가장 중식으로 인한 절감비용	1,843	21.73	-40,038	2,215	21.73	-48,113
가족단위 외식으로 인한 절감비용	6,911	0.33	-2,304	8,061	0.33	-2,687
첫째아 급식으로 인한 절감비용	2,073	16.08	-33,344	2,392	16.08	-38,466
둘째아 급식으로 인한 절감비용	1,536	16.08	-24,699	1,772	16.08	-28,493
첫째아 수련회로 인한 절감비용	2,073	0.58	-1,209	2,392	0.58	-1,395
둘째아 수련회로 인한 절감비용	1,536	0.58	-896	1,772	0.58	-1,033
친지방문으로 인한 절감비용	6,911	0.67	-4,630	8,061	0.67	-5,401
가족여행 중 외식 절감분	6,911	0.25	-1,728	8,061	0.25	-2,015
외식비			249,591			286,172
가장 중식비	4,913	21.73	106,736	5,581	21.73	121,258
첫째아 급식비	3,296	16.08	63,497	4,650	16.08	74,788
둘째아 급식비	3,296	16.08	62,982	4,447	16.08	71,523
가족단위 외식비	49,128	0.33	16,376	55,809	0.33	18,603
월 식료품비			771,345			894,118

주 1) 소수점 이하 처리로 단가×회수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3. 기존 최저 식료품비와의 비교

마켓 바스켓 방식에 의한 식료품비는 1988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계측을 통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표준생계비에서 계측되어 왔다. 최저 식료품비가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1999년 40.7%, 2004년 40.2%, 2007년 37.6%로 감소해왔다. 반면 2010년의 경우 37.7%로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2013년의 경우 37.1%로 최저 식료품비는 비중은 다시 감소했다. 2017년에는 38.0%로 소폭 상승하였다가, 2020년 36.1% 감소하였다가, 2023년 다시 37.5%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1-3〉 202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안) : 표준가구의 최저 식료품비 합계액

(단위: 원/월, %)

급지	서울	경기	광역시·창원·세종	그 외 지역
연구진안	894,118	894,118	894,118	894,118
급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교안	894,118		894,118	894,118

〈표 6-1-4〉 이전 최저 식료품비와 비교 : 4인 가구, 광역·창원·세종 및 중소도시 기준

(단위: 원/월, %)

구분		연구진안		중생보위 의결	
		최저 식료품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최저 식료품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광역시·창원·세종	광역시·창원·세종	광역시·창원·세종	광역시·창원·세종
2023 최저생계비 (안)	연구진안	894,118	36.8		
	비교안	중소도시 894,118	중소도시 37.5		
2020 최저생계비*		771,345	36.1		
2017 최저생계비		688,110	38.0		
2013 최저생계비		608,963	37.1	596,476	37.1
2010 최저생계비		545,943	38.5	527,327	37.7
2007 최저생계비		456,991	36.6	463,164	37.6
2004 최저생계비		485,526	39.4	443,626	40.2
1999 최저생계비		366,948	39.6	366,948	40.7

주: 1)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 이고, 2017년은 연구진안에 의한 최저생계비임.

2)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 2017년 및 2020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전세 기준

*주: 2020년은 표준가구 1안을 제시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3),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외(2020),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절 최저 주거비

1. 최저 주거비의 개념 및 계측방법

가. 필수품 선정방법

주거비는 거주 지역, 점유형태(자가, 전세, 월세, 기타), 주택유형(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다가구, 기타), 가구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역 구분은 이전 유지되었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세 가지 지역 유형에서, 서울, 경기, 광역 및 창원·세종, 그 외 지역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계측하고자 하였다.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보건복지부, 2022.12.30.)⁸⁵⁾.

점유형태는 전가 임대료 산정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자가를 제외하고, 전세와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가구의 최저 주거비를 산정하고자 한다.

저소득층의 대표적인 전·월세 주택유형을 선정하기 위해 우선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의 4인 가구 가처분소득 하위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를 분석하였다.⁸⁶⁾ 4인 가구 소득 하위 40% 이하 가구는 점유형태로는 자가(63.6%), 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64.5%)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의 경우는 서울, 경기, 광역 및 창원·세종, 그 외 지역 모두 아파트 거주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4인 가구 하위 40%의 점유형태에서 자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최저생계비 산출의 의미와 용도를 감안하여 전세와 월세를 기준으로 최저 주거비를 산출하고자 한다.

85) 변경되는 내용은 지역구분의 3종(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종(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으로의 변경, 재산기준 완화 등이었다.

86) 4인 가구만을 추출한 후 이들 가구를 5분위로 구분하여 그 중 1, 2 분위의 점유형태별 주택유형을 산출하였다.

〈표 6-2-1〉 4인 가구 가처분소득 하위40% 이하의 지역별·점유형태별 주택유형(4급지 기준)

(단위: %)

지역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기타 (무상포함)	총합
서울	단독주택(다가구)	6.4	27.5	45.7	50.0	24.3
	아파트	52.8	45.0	28.4	0.0	41.6
	연립 및 다세대주택	40.8	27.5	26.0	50.0	34.1
	기타	0.0	0.0	0.0	0.0	0.0
	총합	43.8	24.5	26.4	5.4	100.0
경기	단독주택(다가구)	1.1	8.1	35.5	33.3	11.0
	아파트	74.8	71.6	44.6	33.3	66.4
	연립 및 다세대주택	22.9	20.4	19.9	33.3	21.9
	기타	1.1	0.0	0.0	0.0	0.6
	총합	56.1	19.0	23.1	1.9	100.0
광역시·세종·창원	단독주택(다가구)	11.0	27.7	41.8	55.7	19.2
	아파트	75.8	60.2	40.1	40.3	67.3
	연립 및 다세대주택	12.0	12.1	13.5	0.0	11.8
	기타	1.2	0.0	4.6	4.0	1.7
	총합	70.4	10.2	15.7	3.7	100.0
그 외	단독주택(다가구)	20.0	16.7	37.5	45.1	23.8
	아파트	71.2	78.0	54.4	49.3	68.0
	연립 및 다세대주택	8.6	5.4	8.1	5.6	8.0
	기타	0.3	0.0	0.0	0.0	0.2
	총합	68.9	10.0	14.1	7.0	100.0
전국	단독주택(다가구)	11.3	18.4	39.3	47.3	19.0
	아파트	72.3	65.2	43.1	38.5	64.5
	연립 및 다세대주택	15.5	16.5	16.3	13.0	15.7
	기타	0.8	0.0	1.3	1.1	0.8
	총합	63.3	14.0	18.3	4.4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지역별·임차 유형별 주택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2020년 최저생계비 계층 결과 지역 및 임차유형별 주택유형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2〉 지역 및 임차유형별 주택유형 실태(4인 가구 기준)

구분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그 외 지역
2023년	전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보증부)월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2020년	전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보증부)월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자료: 2020년은 김문길 외(2017); 2023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최저 주거비는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 전·월세 아파트에 대한 주거비를 산출하고자 한다.

〈표 6-2-3〉 2023년 4인 가구 최저 주거비 주택유형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전·월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최저 주거비 구성은 임대료(전세의 전가임대료와 월세 임대료)와 보유비용으로 구성된다. 보유비용에는 관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비, 도배비가 포함된다. 월세의 경우 도배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여 최저 주거비에서 도배비를 제외하였다.

나.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 방법

최저 주거비 산정을 위해 이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도배비는 내구 연수를 결정해야 한다. 즉 이사와 그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도배의 욕구가 얼마에 한번 발생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도배는 이사 횟수에 의해 결정되며, 이사 횟수는 2020년과 동일하게 지역별 차이 없이 6년에 1회로 설정하였다⁸⁷⁾.

다. 가격 결정 방법

우선 최저 주거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는 「주거기본법」상 최저주거기준⁸⁸⁾에 부합하는 주택의 지역별 전·월세 증위값을 적용하였다. 전월세 증위값을 산출

87) 기존 연도의 최저계측비용의 일관성을 위해 이전 조사와 변화없이 본 연구에서도 6년에 1회로 결정하였다. 다만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서 현재 주택 평균 거주기간은 전체 7.5년이며 임차가구는 3.0년으로 조사되었으며, 2020년 8월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본계약기간이 2년에서 청구권 행사시 2년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이사 횟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88) 최저주거기준은 최소 주거면적, 설비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집계의 한계 상 최소 주거면적만을 다룬다. 또한 최소주거 면적 기준은 총 주거면적 뿐 아니라 가구 구성에 따라 실(방) 구성 조건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역시 계측의 편의를 위해 총 주거면적만을 다룬다.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⁸⁹⁾ 또한 보증부 월세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전월세 환산율을 보증금에 적용하여 월세를 합한 중위가격을 구하였다⁹⁰⁾.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선정한 표준가구의 주택유형인 아파트의 지역별 전·월세 중위가격을 살펴보면, 전세 아파트의 경우 서울 26,000만원, 경기 20,000만원, 광역·세종·창원 13,000만원, 그 외 지역 7,200만원으로 계측되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환산한 가격으로 서울 81만 417원, 경기 50만 8천 29원, 광역·세종·창원 44만 1천 667원, 그 외 지역 37만 2천 917원으로 계측되었다⁹¹⁾.

〈표 6-2-4〉 지역별 43㎡ 이상 53㎡ 이하의 전·월세 아파트 가격1)

(단위: 만원)

연도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2023년 ²⁾	전세	26,000	20,000	13,000	7,200
	월세	81.0417	50.8029	44.1667	37.2917
2020년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세	15,000	11,000	4,000	
	월세	40	34	23	

주: 1) 주거기본법상 4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인 43㎡이상 53㎡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의 중위 가격임.

2) 2020년의 경우 월세 및 전세값 모두 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이며, 2023년은 보다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판단으로 원단위 모두를 기재하였음

자료: 2020년 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20. 3. 4. 인출) 분석 결과, 2023년 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23. 3.15 인출) 분석 결과임

89)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원자료에서 2023년 1월에 거래된 전용면적(연면적)이 4인 가구 최저주거면적인 43㎡ 이상이고 53㎡ 이하 (최저주거면적~최저주거면적+10㎡)인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이 기간 거래 주택 수는 월세와 보증부 월세 21,942채, 전세 24,115채이며, 이 중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한 거래 주택 수는 월세와 보증부 월세 4,480건, 전세 4,755건, 합계 9,235건이다 (<http://rtdown.molit.go.kr/>에서 2023. 3. 15. 인출).

90) 보증부 월세의 경우 전월세 환산율 (연 5.5%)을 보증금에 적용하여 월세를 합한 중위값을 구하였다 (3.50% (2023년 1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는 연이자율)).

91)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3.5퍼센트를 말한다.

전세의 경우 최저 주거비 계측을 위해 전세 가격을 월 임대료로 환산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2020년 계측과 동일하게 전세의 월임대료 환산은 전세 자금 전액을 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월(전가)임대료는 대출에 대한 월이자(2023년 1월 기준)를 반영하여 계산하였으며, 원금 상환액은 임대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환산 시 전세자금의 80%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⁹²⁾, 20%는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가중평균한 이율을 적용하여 월임대료를 산출하였다. 전세자금의 대출상품을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기준이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⁹³⁾

먼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은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1억을 초과하는 2천만 원 이하 소득가구에 해당하는 연 이자율 2.0%를 적용하였다. 여기에 자녀가 두 명인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0.5%p)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연 이자율 1.5%를 적용하였다. 그 외 지역은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연 이자율 1.9%를 적용하고 이에 우대금리(0.5%p)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연 이자율 1.4%를 적용하였다.

또한 대출 시 인지세가 발생하는데, 인지세는 대출금 기준으로 1억원 초과인 서울과 경기, 광역·세종·창원은 15만원, 그 외 지역은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7만원이다. 인지세는 해당가구와 은행이 각 50%씩 부담해야 하며, 이사 주기를 6년으로 상정하여 6년마다 한번씩 지불하는 것으로 상정하여 임대료 환산에 포함하였

9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근로자/서민/저소득 전세자금 지원을 통합한 상품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고 상정하여 계측하였다.

〈부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연소득(부부합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초과	연 2.0%	연 2.1%	연 2.2%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2.2%	연 2.3%	연 2.4%

주: 2자녀의 경우 0.5%p의 우대금리 적용
 자료: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홈페이지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2023년 3월 16일 인출)

93) 주택도시기금의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로 4인 최저생계비를 버는 4인 가구의 대출 한도는 자녀가 2인 있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다. 2020년 계측 시에는 70%를 적용하였다(자료: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2023년 3월 16일 인출).

다⁹⁴). 이에 추가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에 필요한데, 이에 따른 보증보험료도 월 임대료 환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기준으로 보증보험료를 산출하였다⁹⁵). 나머지 20%의 전세자금은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일반신용대출의 연이자율은 7.21% (2023.1 기준)를 적용하였다.⁹⁶

다음으로, 최저 주거비 산출을 위한 표준가구의 주택유형으로 아파트가 선정됨에 따라 최저 주거비에는 공동주택 관리비가 포함된다. 관리비는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중 공용 부분(공용 난방, 공용 급탕, 공용 가스, 공용 전기, 공용 수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건물보험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되었다. 나머지 개별사용료는 최저생계비의 광열·수도비 비목에서 산정되기 때문에 주거비의 관리비에서는 제외되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지불하고는 있으나 퇴거 시 돌려받게 되므로 제외하였다. 또한 발생하는 잡수익은 그만큼 관리비가 저렴해지므로 주거비에서 제외하였다. 관리비 단가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의 2023년 1월 기준 제곱미터(m²)당 관리비의 전국 평균치를 적용하였다⁹⁷).

그 외 주거비 항목으로 이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도배비가 있다.

이사비는 이삿짐 운송료를 의미한다. 이삿짐 운송료는 5톤 탑차, 포장이사, 광역·세종·창원 시내, 평일 이사, 아파트 저층을 가정하였으며, 인터넷 이사 견적비교 사이트의 증거가 가격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이사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요율표에 근거하여 산정하였다. 즉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은 1억 이상~3억 미만으로 1천분의 3을 적용하고, 그 외 지역은 5천만 원 이상~1억 원 이하로 1천분의 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월세

9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95) 보증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의 총 일수 / 365) (자료: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2023년 3월 16일 인출). 여기에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율은 연 0.128%, 전세자금특약 보증료율은 연 0.031%를 적용하였다.

96)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에서 2023.3.16. 인출)

97)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apiinfo/goApiInfoBySido.do>에서 2023.3.16.인출)

의 경우, 서울, 경기도는 월차임 100배의 0.3%, 광역·세종·창원과 그 외 지역은 월차임의 70배의 0.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배비는 전세 가구에만 해당되며 2020년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견적 사이트의 평당 도배비 중 중저가를 적용하였다.

2. 표준가구의 최저 주거비 마켓 바스켓

아래 표는 광역·세종·창원 전세 기준 2023년 최저 주거비를 항목별로 2020년 중소도시 최저 주거비 산정방식과 비교한 결과이다. 지역 구분이 3종에서 4종으로 변화하였는데, 2020년 기준의 중소도시와 비교적 생활수준이 유사하다고 판단된 '광역·창원·세종'을 비교 기준으로 하였다.

전세의 월세 환산을 위한 이자율은 2020년 2.55%에서 2023년 2.64%로 0.09%p 높아졌다. 또한 전세 가격은 1억 1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증가하여 월 환산 임대료는 52,559원 상승하였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한도의 증가 및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낮아질 요인은 있었으나 일반 대출 금리가 높아 월 환산 임대료가 증가하였다. 전세금 인상과 보증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으로 보증보험료는 2020년에 비해 1,611원 인상되었다. m^2 당 관리비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익을 집계 시 제외하여 7,052원 인하되었다. 그 밖에도 이사비 (3,195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834원)도 소폭 상승하였다. 그 결과, 2023년 최저 주거비는 2020년 최저 주거비에 비해 54,142원 더 높은 394,724원으로 계측되었다.

〈표 6-2-5〉 최저 주거비 조정품목 요약(2020년 중소도시 대비 광역·창원·세종, 전세기준)

계측 결과	계측조사 결과		근거
	조정내역	증감액	
'20년 340,582원 → '23년 394,724원 (▲ 54,142원)	전세 가격: 11,000만원 → 13,000만원 월 환산 임대료 / 이자율 : 3.03% → 2.55%	▲ 52,559원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보증보험료: (버팀목대출금) 대출금의 0.05%+전세자금의 0.128% → 대출금의 0.031% + 전세자금의 0.128%	▲ 1,611 원	주택도시기금
	인지세 : 35,000원 (6년 1회, 12개월) → 75,000원 (6년 1회, 12개월)	▲ 342 원	주택도시기금
	관리비 : m ² 당 1,587원 → 1,423원	△ 7,052원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사비 : (6년 1회) 770,000원 → 1,000,000원	▲ 3,195원	인터넷 시장조사
	부동산중개수수료 : 전세자금의 0.3% → 0.3%	▲ 834원	공인중개사법
	도배비 : m ² 당 7,764원 → 10,417원	▲ 2,653원	인터넷 시장조사

주: 2020년은 중소도시 기준이며 2023년은 광역·창원·세종 기준임

4인 표준가구의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지역별 최저 주거비는 다음 표와 같다. 전세의 경우 최저 주거비는 (전가)임대료, 관리비, 이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도배비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세의 임대료(조달비용, 보증보험료, 인지세)는 서울 606,582원, 경기 466,842원, 광역·창원·세종 303,812원, 그 외 지역 163,588원으로 임대료가 전체 최저 주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1%(서울), 83%(경기) 77%(광역·창원·세종), 65%(그외 지역)이다. 전세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서울 10,833원, 경기 8,333원, 광역·창원·세종 5,417원, 그 외 지역 4,000원이다. 아파트 관리비, 이사비, 그리고 도배비는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하게 설정되었으며, 각각 61,189원, 13,889원, 10,417원으로 산정되었다.

주거 관련 비용을 모두 합산한 전세의 최저 주거비는 서울 702,910원, 경기 560,670원, 광역·창원·세종 394,724원, 그 외 지역 253,083원으로 산출되었다. 광역·창원·세종에 비해 서울은 178.08%, 경기는 153.85%, 그 외 지역은 53.71% 수준이다.

〈표 6-2-6〉 표준가구의 최저 주거비(전세, 연구진안)

(단위: 원/월)

구분	서울	경기	광역시·창원·세종	그 외 지역
조달비용	572,433원	440,333원	286,217원	153,720원
보증보험료	33,107원	25,467원	16,553원	9,168원
인지세	1,042원	1,042원	1,042원	700원
아파트 관리비	61,189원	61,189원	61,189원	61,189원
이사비	13,889원	13,889원	13,889원	13,889원
부동산중개수수료	10,833원	8,333원	5,417원	4,000원
도배비	10,417원	10,417원	10,417원	10,417원
합계	702,910원	560,670원	394,724원	253,083원

월세에 거주하는 4인 표준가구의 최저 주거비는 임대료, 아파트 관리비, 이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구성되었다. 월 임대료는 서울 810,417원, 경기 508,029원, 광역·세종·창원 441,667원, 그 외 지역 372,917원으로 산정되었다. 임대료에 연동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서울 4,502원, 경기 2,470원, 광역·창원·세종 2,147원, 그 외 지역 1,813원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와 이사비는 지역에 상관없이 각각 61,189원, 13,889원으로 산정되었다.

이를 모두 합산한 월세가구의 최저 주거비는 서울 889,997원, 경기 585,577원, 광역·창원·세종 518,892원, 그 외 지역 449,808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전세가구의 최저 주거비보다 높은 수준으로, 광역·창원·세종 기준 월세 최저 주거비는 전세 최저 주거비에 비해 약 12만 4천 원 정도 더 높았다.

〈표 6-2-7〉 표준가구의 최저 주거비(월세, 연구진안)

(단위: 원/월)

구분	서울	경기	광역시·창원·세종	그 외 지역
임대료	810,417원	508,029원	441,667원	372,917원
아파트 관리비	61,189원	61,189원	61,189원	61,189원
이사비	13,889원	13,889원	13,889원	13,889원
부동산중개수수료	4,502원	2,470원	2,147원	1,813원
합계	889,997원	585,577원	518,892원	449,808원

3. 기존 최저 주거비와의 비교

2023년 최저 주거비 산정 방식은 2020년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 즉, 전세의 월 임대료 환산 방식과 자금 대출처, 그리고 관리비와 이사비 등의 산정 방식 및 근거 자료는 2020년과 동일하다.

2023년 최저 주거비는 광역·창원·세종 기준 394,724원으로 2020년 중소도시 기준 340,582원에 비해 15.90 % 상승하였다. 각 연도의 지역기준이 상이하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준가구 비교안으로 2020년 지역기준을 동일하게 하여 비교해보면, 2023년 중소도시 최저주거비는 359,994원으로 산정되어 2020년에 비해 5.7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8〉 202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안) : 표준가구의 최저 주거비 합계액

(단위: 원/월, %)

급지	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그 외 지역
연구진안	702,910	560,670	394,724	253,083
급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교안	501,404	359,994	179,225	

〈표 6-2-9〉 이전 최저 주거비와 비교 : 4인 가구, 광역·창원·세종 및 중소도시 기준

(단위: 원/월, %)

구분		연구진안		중생보위 의결	
		최저 주거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최저 주거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광역·창원·세종	광역·창원·세종	광역·창원·세종	광역·창원·세종
2023 최저생계비 (안)	연구진안	394,724	16.2		
	비교안				
		중소도시	중소도시		
		359,994	15.1		
	2020 최저생계비*	340,582	16.0		
	2017 최저생계비	303,139	16.7		
	2013 최저생계비	307,283	18.7	286,331	17.8
	2010 최저생계비	221,374	15.6	221,374	15.8
	2007 최저생계비	213,135	17.1	212,575	17.2
	2004 최저생계비	208,261	16.9	194,936	17.7
	1999 최저생계비	174,833	18.9	174,833	19.4

주: 1)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적인 최저생계비 이고, 2017년은 연구진안에 의한 최저생계비임.

2)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 2017년 및 2020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전세 기준

*주: 2020년은 표준가구 1안을 제시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3),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외(2020),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절 최저 광열·수도비

1. 최저 광열·수도비의 개념 및 계측방법

가. 최저 광열·수도비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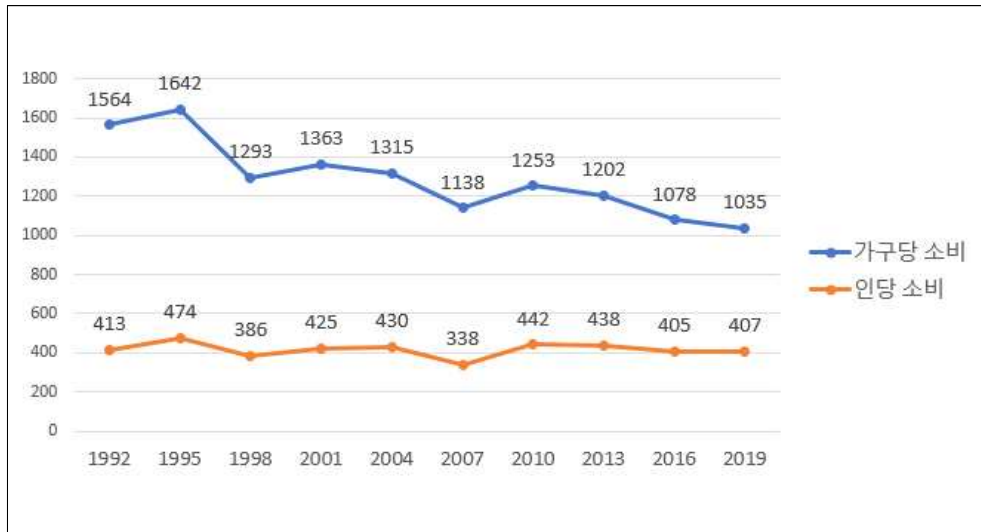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에너지와 물은 반드시 필요하다. 최저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온기와 위생이 요구된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도 화기와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 물은 위생 및 배변, 요리를 위해서 욕실, 화장실, 부엌에서 필요하다. 생필품인 세탁기를 돌리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번 절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와 물의 사용량 수준과 적정 수준의 가격도 가능하다. 이에 근거해서 최저 광열·수도비 수준을 계측한다.

가구당 에너지 사용량은 지난 1995년에 정점을 찍고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다(〔그림 6-3-1〕 참고). 몇 가지 원인을 짚어보면, 가구당 가구원수의 감소가 큰 원인이다. 특히, 2015년 이후에는 1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잡았다(최도영 외, 2022). 가구원 수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가구 당 에너지 소모량을 감소시킨다. 2019년 가구당 에너지소비비는 에너지절약·효율제고 및 2인 이하 가구수의 증가로 2016년 대비 연평균 1.4% 감소했다(최도영 외, 2022, p. 99). 2022년 「에너지총조사보고서」에서는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의 추세선에 따르면 감소하는 추세인 것이 확연히 드러”(최도영 외, 2022; p. 190)란다며 1~2인 가구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인당 에너지 소비량 변화를 보면, 1992년 이후 추이는 완만하게 유지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6-3-1〕 참고). 2022년 「에너지총조사보고서」에서는 “가정부문의 효율지표로 활용되는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의 경우 연도별 편차는 있으나 감소하는 추세인 것을 단정하기 어려움”(최도영 외, 2022: p. 190)이라고 풀이했다.

즉, 지난 30년 사이 가구당 에너지 사용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완만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3-1] 연도별 가구 및 1인 평균 소비량 변화

(단위: toe)



자료: 최도영 외 (2022) 에너지총조사보고서 p. 190 표 IV-77표 참고해서 그림 작성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이렇게 꾸준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복합적인 원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서로를 상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에너지총조사보고서는 2016~2019년 사이 가정 및 상업·공공 분야 에너지 수요가 감소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에너지 절약, 효율 제고, 기후 여건 변화⁹⁸⁾로 인한 에너지 수요 감소 등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pp. 137-141). 반면, 1인 가구의 증가는 에너지 수요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서 1인 가구 증가가 미칠 영향을 간단히 생각해 보면, 4인이 한 주거공간에 머무는 경우와 1인 가구 네 곳에서 각각 주거공간을 사용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4인 가구에서 한 개의 온열기가 필요하다면, 1인 가구 네 곳에서는 네 개의 온열기가 필요할 것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에너지 소비를 늘릴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동시에 생활 수준의 향상 역시 에너지 수요 증가의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림 6-3-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완만한 추세선이 그려지는 것으로 보인다.

98) 최도영 외(2022)는 가정용 에너지 소비의 감소는 2016~2019년 사이 기후변화에 따른 요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난방도일은 2.5% 감소('16년 2,589.7도일 → '19년 2,525.5도일)하여 동절기 난방용 에너지 소비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냉방도일 역시 25.1% 감소('16년 238.1도일 → '19년 178.4도일)함에 따라 하절기 냉방용 에너지소비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p.100)

나. 이번 연구에서의 최저 광열·수도비 계측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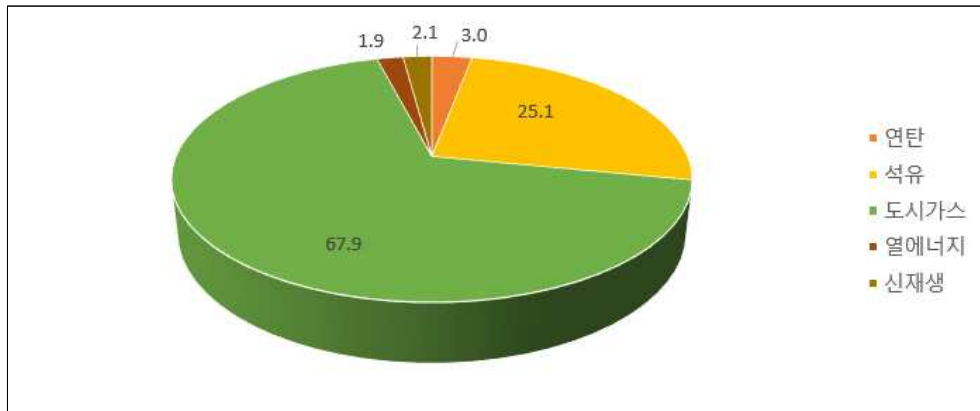
2023년의 최저 광열·수도비의 계측은 세 단계의 절차를 밟는다. 먼저, 최저생계비 가운데 광열·수도비를 위한 품목을 선정하다. 그 다음 품목별 적정한 사용량을 산출하고, 해당 품목의 단가를 사용한 최저 광열·수도비를 산출한다. 2023년 최저 광열수도비 계측에서 바뀐 점이 한가지있다. 2023년부터 재산기준을 완화하면서 지역구분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급지 기준을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지역으로 변경했다. 광열·수도비를 구성하는 품목 가운데 전기와 수도는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에서 공통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전국 공통의 필수품으로 간주된다. 다만, 난방·취사용 연료의 경우에는 과거 최저생계비 계측 과정에서 지역별로 가장 사용비율이 높은 품목이 선정됐다. 지난 2007년 이후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난방 및 취사를 위한 연료가 도시가스(LNG)로 통일됐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취사를 위한 연료로는 가스(LPG)를, 난방원료로는 석유를 필수품으로 선정됐다.

실제로 2018년 기초생활실태조사에서도 농어촌에서는 난방연료로 석유를 주로 사용하는 비율이 44.6%로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비율(36.4%)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8년 기초생활실태조사에서는 취사용 에너지원을 묻지는 않았다.

2020년 광열·수도비의 최저생계비 계측에서는 농어촌에서 난방 및 취사를 위한 주된 에너지원으로 석유를 선정했다. 다만, 석유의 경우 단가가 매우 불안정한 점을 고려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도시가스의 가격으로 추계를 대신했다. 참고로, 「에너지총조사 보고서」가 제시하는 농어촌의 주된 에너지원은 기초생활실태조사의 결과와 조금 다른데, 이 점도 고려했다. 2022년 「에너지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4인 가구의 에너지원의 67% 이상을 도시가스가 차지했다 ([그림 6-3-2] 참고). 이 수치는 전기 에너지는 제외한 비율이다. 따라서, 2020년 광열·수도비 계측에서 농어촌의 난방 및 취사용 주된 에너지원으로 석유를 선정하지만, 최저생계비 계측에서는 도시가스의 가격을 반영했음을 밝혀둔다.

[그림 6-3-2] 농어촌 4인 가구 난방·취사용 에너지원 비율

(단위: %)



주: 각 에너지원의 단위를 Mcal기준으로 환산한 뒤 사용 비율을 반영한 것.
 자료: 「에너지총조사보고서」 2020년 자료 활용해서 작성.

난방·취사용 원료로 쓰이는 도시가스의 사용량은 「에너지총조사보고서」의 4인 가구 기준 공식 자료를 활용해서 2023년 추산치를 썼다. 전기의 사용량 역시 「에너지총조사보고서」의 4인 가구 기준 공식 자료를 활용한 2023년 추산치를 사용했다. 상·하수도 사용량은 환경부가 공개하는 「상수도통계」의 1인 1일 가정용수 사용량에 근거해서 4인 가구의 한달치 사용량을 산출했다.

이렇게 산출한 사용량에 도시가스, 전기, 상·하수도별 단가를 적용해서 최저생계비 수준을 결정했다. 먼저, 전기세의 단가는 전국 동일 요금체계이지만, 주택용 전력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저압과 가격이 싼 고압으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평균 판매단가가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22년 12월 부산 해운대구의 평균판매단가는 131.9원/kWh지만, 영도구는 120.8원/kWh이다. 따라서,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및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외 지역)별로 지역별 전기사용 호수를 고려한 가중 평균을 구한 판매단가를 반영했다.

도시가스 요금의 3급지 기준으로 분석할 때는 7개 대도시의 도시가스 요금의 인구 가중 평균값을 반영했고, 중소도시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가장 높은 경기도의 도시가스 요금을, 농어촌은 군지역 인구가 가장 많은 전라남도 가운데 목포, 순천, 여수, 나주의 거주 인구 가중 평균값을 반영했다. 4급지를 기준으로 볼 때는 서울과 경기도의 도시가스 요금을 사용하고, 광역·세종·창원 및 그 외 지역은 각각 8개 도시와 그 외 지역의

지역 인구 가중 평균을 사용했다. 이 부분은 이하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상·하수도 요금은 전국 시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마다 저마다 다른 요금 체계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수도의 구경별 정액요금이나, 사용량에 따른 할증 요금, 물 이용 부담금 등이 달랐다. 상·하수도 요금에 한정해서는 환경부의 「상수도통계」에 제시된 지역별 가정용 수도의 평균 단가(원/㎥)를 3급지 혹은 4급지 기준으로 나눈 뒤, 각 집단별로 각 지자체의 급수인구를 고려한 가중 평균을 구했다. 그리고 이에 가장 근접한 지자체를 선정해서 해당 지역의 조례를 통해서 지역별 최저 상·하수도 요금을 계측했다. 3급지의 경우에는 인천, 경기 군포시, 충남 홍천이 선정됐고, 4급지에서는 서울, 경기, 세종, 경북 문경시가 선정됐다.

2. 최저 광열·수도비 계측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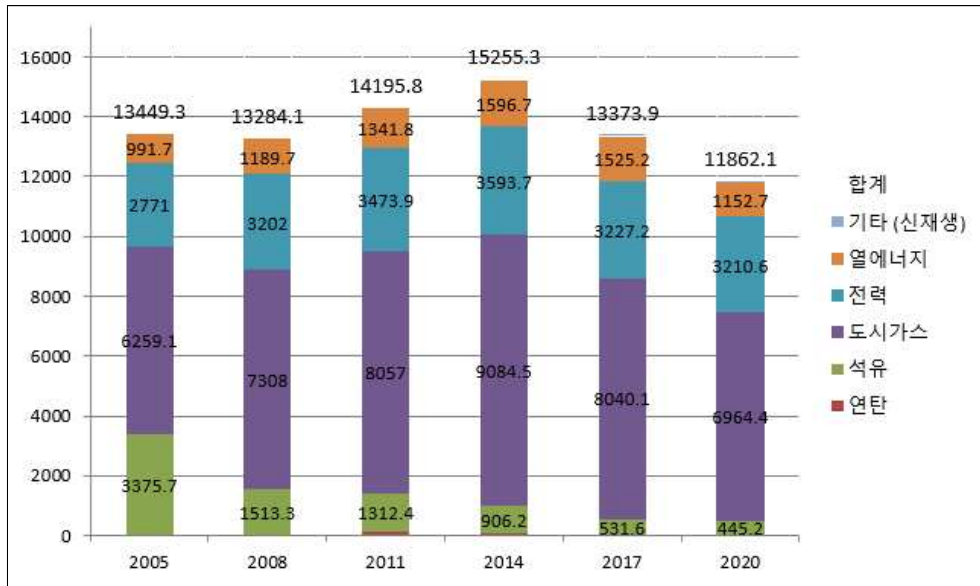
가. 마켓 바스켓 구성

1) 필수품 및 사용량 결정

광열·수도비는 통계청 분류에 준하여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난방·취사비로 구성된다. 전기요금의 경우, 과거에는 가장 최근의 사용량에 과거 사용량 증가율을 반영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를테면, 2017년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사용량의 계측에서는 2013년 사용량에 1993~2014년까지의 사용량 증가율을 반영했다. 2020년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사용량의 계측부터는 이와 같은 방식의 접근이 불가능했다. 지난 2014~2017년 사이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0년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사용량도 2017~2020년 사이에 다시 감소했다. 4인 가구 기준 전국 평균([그림 6-3-3] 참고). 전력 사용량은 3227.2Mcal에서 3210.6Mcal로 감소했고, 도시가스 사용량은 8040.2Mcal에서 6964.4Mcal로 감소했다. 2014년 이후 계속되는 감소 추이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번 연속되는 에너지 소비율 감소치를 적용해서 2023년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23년 수도·광열비의 계측에서는 2020년에 제시된 값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유는 두 가지다.

[그림 6-3-3] 연도별 4인 가구 기준 에너지 소비량 변화

(단위: Mcal)



자료: 「에너지총조사보고서」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자료 활용해서 작성.

첫째, 4인 가구당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량이 두차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대비 2023년의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량의 감소율을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그림 6-3-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당 에너지 소비 감소량은 꾸준히 줄고 있으나, 1인당 에너지 소비 감소량은 유지되고 있다. 4인 가구의 에너지 소비량이 두 번 연속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에너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앞으로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그 변수들은 기후 변화, 에너지 효율 변화, 에너지 절감, 에너지원 가격 변화 등이다.

둘째, 2017년 「에너지총조사보고서」를 보면,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 감소의 원인은 주거 여건 개선 효과,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 등이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중·상층뿐 아니라 빈곤층에서도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중산층 이상에서 꾸준히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안, 하류층에서는 그러한 요인이 적게 작용했을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2018년 기초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경상소득 중위소득 기준 100% 이상 가구에서 경상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율은 지난 2015년 조사에서보다 0.2% 포인트 증가했지만, 수급가구의 경우에는 3.4%포인트 증가했다. 빈곤층의

에너지 지출의 상대적인 부담은 오히려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4인 가구의 2023년 전력 및 도시가스 사용량은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에서 제시한 2020년 기준을 따른다.

또, 전기 사용량의 사용량은 도농 지역을 가리지 않고 규범적으로 같다고 간주했다⁹⁹⁾. 이에 따라 2020년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311.1KWh로 추정했다. 2020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에서 2020년 4인 가족 전국 평균 에너지 소비액 3733.2KWh를 12로 나눠서 월평균으로 환산한 값이다.

취사 및 난방 연료인 도시가스 사용량은 전기 사용량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너지 총조사보고서」의 2020년 도시가스 사용량을 고정해서 사용했다. 앞서 전기 사용량과 같이, 농촌과 도시의 도시가스 사용량은 규범적으로 같다고 보았다¹⁰⁰⁾. 4인 가구 당 도시가스의 월 평균 사용량은 580.4Mcal로 나타났다. 2020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에서 2020년 4인 가족 기준 도시가스 사용량 6964.4 Mcal을 12로 나눠서 월평균으로 환산한 값이다. 이를 MJ 단위로 바꾸면 2428.3MJ이다.

상·하수도 사용량은 2018년 「상수도통계」의 1인의 가정용수 사용량 199.9ℓ를 구한 뒤, 2011~2021년 1인 가정용수 사용량의 연간 평균 증가율 (1.23%)를 반영해서

99) 전기 사용량을 지역으로 나누어서 보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가 더 있다. 먼저, 「2020년 에너지총조사보고서」에서는 4인 표준가구의 전기 소비량을 전국, 시, 군 단위로 나누어서 평균값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4인 가구의 3급지 혹은 4급지 기준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기 어렵다. 불가피하게 전국 평균값을 3~4급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수밖에 없다. 둘째, 「에너지총조사보고서」를 보면, 2014년 보고서까지는 4인 가구 기준 시 지역의 전기 사용량이 더 많았지만, 2017년 보고서 이후로는 구 지역에서 전기 사용량이 더 많아졌다. 2020년 보고서에서도 군 지역 4인 가구 연간 전기 사용량이 4132.9KWh로 도시 지역의 3686.1KWh보다 컸다. 참고로, 전체 에너지 수요도 2017년 이후로는 군 지역이 도시 지역을 앞질렀다. 2020년 보고서를 보면 4인 가구 기준 에너지 소비량은 11862.1Mcal ([그림 6-3-3] 참고)이다. 이를 시와 군 지역으로 나누면, 시 지역 4인 가구 에너지 소비량 (11,808Mcal)이 군 지역 4인 가구 에너지 소비량(12308.0 Mcal)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2014년 이후 나타난 새로운 경향이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사용량이 이와같이 가변적인 점을 고려해서, 2023년 최저생계비 예측에서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평균값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100) 「에너지총조사보고서」를 보면, 4인 가구 기준 시 지역 도시가스 사용량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지만, 군 지역에서는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전기 사용량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도시가스 사용량은 2020년 기준 도시 688.5㎥, 농어촌 62.9㎥로 근접했다. 이러한 추세는 농어촌의 주된 취사 및 난방 연료로 도시가스를 설정하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군 단위의 가정용수 사용량을 각각 급수인구 가중 평균을 구하면 한달 4인 가족 기준은 각각 22.61㎥, 22.90㎥, 21.26㎥로 일정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대도시 안에서도, 중소도시들 안에서도, 농어촌 지역들 안에서도, 편차가 매우 커서 이와 같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을 나누어서 가중평균값을 쓰는 점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의 경우 서울의 가정용수 사용량 (23.59㎥)와 부산(19.44㎥)의 편차가 크고, 중소도시 역시 경기도 여주 (25.59㎥)와 경기도 안성시 (19.65㎥) 사이의 편차가 크다. 군 단위에서 역시 강원도 화천(27.35㎥)와 전라남도 장성(15.45㎥)의 격차가 컸다. 따라서, 지역별 소비량을 구분하는 대신, 전국의 동일 평균(22.68㎥)을 사용했다. 여기에 계층지수를 적용한 평균이 16.96㎥였다.

2020년 1인당 가정용수 사용량 (204.8ℓ)을 구했다. 여기에 4인 가구 단위의 월 사용량으로 바꾼 뒤(24581.7ℓ), 계층지수를 적용했다.

계층지수는 2023년 1분기 가계동향 자료를 활용해서 1인 이상 전국 전체 가구의 소득 5분위 코드 기준 하위 40% 가구의 가계지출에서 ‘상하수도폐기물처리비’ 액수를 전체 가구의 해당 비목 지출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했다. 이에 따라 계층지수가 0.669가 산출됐다. 계층지수는 2020년에 0.748에 견줘 하락했다. 2023년 계층에서는 2020년 계층지수를 그대로 적용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¹⁰¹⁾. 첫째,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사용액에 따라서 요금이 할증하므로, 요금 차이를 사용량 차이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둘째, 계층지수를 일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최저생계비 계층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계층지수를 적용한 2023년 기준 4인 가구의 상·하수도 사용량은 18.39m³였다. 즉, 2023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상수도 사용량은 $24581.7 * 0.748 = 18387.11$, 즉 18.39m³로 산출됐다.

2) 가격 결정 방법

가) 3급지 기준

전기요금은 전국 동일 체계를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평균판매단가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22년 12월 부산 해운대구의 평균판매단가는 131.9원/kWh지만, 영도구는 120.8원/kWh이다. 지역마다 평균판매단가가 다른 이유는 지역별로 누진구간을 넘어서는 가구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주택용 전력 가운데 저압과 고압을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이 다른 것도 원인이다. 흔히 단독주택에 제공되는 저압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편이고, 대체로 아파트에 제공되는 고압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참고로, 전기요금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크게 상승했다. 지난 2020년 이후

101) 이번 보고서에서는 상하수도 사용량에 대해서 계층지수를 적용했다. 이전 보고서에서 상하수도 사용량에 대해서 계층지수를 사용한 사례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량에 대해서는 계층지수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상하수도 사용량에 한정해서 계층지수를 사용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적 혹은 규범적인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층지수의 통일적 적용 혹은 미적용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추이는 다음 <표 6-3-1>과 같다. 2020년 상반기에 비해 2022년 하반기에 전기요금 단가가 17%나 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3년 1월에는 전국 평균 단가가 145.3원/kWh로 치솟았다.

<표 6-3-1> 전기요금 추이 (전국 평균 판매 단가 기준, 주택용)

(단위: 원/kWh)

연도	2020 상반기	2020 하반기	2021 상반기	2021 하반기	2022 상반기	2022 하반기
단가	108.7	107.1	116.6	111.1	114.8	127.2

자료: 한국전력 전력데이터 개방 포털시스템 (<https://bigdata.kepco.co.kr/cmsmain.do?scode=S01&pcode=00166&pstate=L&redirect=Y#>에서 2023.4.1. 인출.)

주택용 전기요금의 평균에서 차이가 나타나며, 2023년 기준 추정액은 지난 2020년 추정액보다 상당히 올랐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전의 전력데이터 개방 포털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지역별 주택용 전기 평균판매단가 자료를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3급지와 4급지로 나누어서 급지별 요금값을 추산했다. 먼저 3급지 기준에서는 전국 7개 특별시 및 광역시, 그리고 78개 시 지역, 그리고 77개 군 지역의 2022년 하반기 월평균 평균 판매단가에 전력 사용 호수를 반영한 가중치를 고려한 평균값을 구했다. 예를 들어, 7개 대도시의 사용 호수 가중평균 전기단가는 127.0원/kWh다. 지난 2019년 112.6원/kWh보다 약 12.8% 인상된 수준이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전기요금은 지난 2019년 110.1원보다 22.6%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3-2> 2022년 지역별 전기요금 단가

(단위: 원/kWh)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기 사용 호수 가중평균 단가	127.0	126.6	135.0
2019년 대비 상승률 (2019년 단가)	12.8% (112.6)	15.4% (109.7)	22.6% (110.1)

주: 전기요금은 계절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2022년 하반기 6개월의 평균값을 썼다.

자료: 한국전력 전력데이터 개방포털 시스템 (<https://bigdata.kepco.co.kr/cmsmain.do?scode=S01&pcode=00166&redirect=Y#>에서 2023.3. 14. 인출.)

〈표 6-3-3〉 지역별 가스요금 단가

(단위: 원/MJ)

구분	대도시 (대도시 가중평균)	중소도시 (경기도)	농어촌 (여수, 목포, 순천, 나주)
기본요금	915.5 (907.4)	965 (850.0)	770.0 (770.0)
취사	20.0 (16.36)	20.0 (16.26)	21.1 (17.38)
난방	20.2 (16.26)	19.9 (16.22)	21.1 (17.38)

주: 괄호 안은 2020년에 산출한 평균값.

자료: 도시가스협회 (<http://www.citygas.or.kr/info/charge.jsp>) 홈페이지와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에서 2023.3.28. 인출

〈도시가스 요금 계산법〉

도시가스 요금(월) = 기본요금 + 사용열량×단가 + 부가세(기본요금과 사용요금 합산액의 10%)

※ 취사 및 난방 용도의 단가는 흔히 차이가 있음,
516MJ 이하는 취사용 단가를, 초과분은 난방용 단가를 적용.

자료: 도시가스협회 (<http://www.citygas.or.kr/info/charge.jsp>) 및 삼천리 (<https://www.samchully.co.kr/customer/gas/info/fee/system.do>)에서 2023.4.1. 인출한 내용 참고하여 제시

다음으로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을 계측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7개 대도시의 도시가스 요금의 인구 가중 평균값을 반영했고, 중소도시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가장 높은 경기도의 도시가스 요금을, 농어촌은 군지역 인구가 가장 많은 전라남도 가운데 목포, 순천, 여수, 나주의 거주 인구 가중 평균값을 반영했다.

참고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21년 초 대비 22년 9월에 10배 이상 급등하는 등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23.1.25.). 정부에서는 22년 4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서 가스요금을 인상했으며, 2023년 1월까지 인상률은 38.5%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23.1.25.).

〈표 6-3-4〉 21.1~23.1월 서울시 주택용 가스요금 현황

(단위: 원/MJ)

연도 구분	'21년	'22년										'23년 1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요금	14.22				14.65 (+0.43)	15.88 (+1.23)			16.99 (+1.11)				19.69 (+2.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3.1.24.) 보도설명자료

상·하수도 요금은 지자체마다 요금체계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조례에 따라서 상수도 및 하수도의 사용량에 따른 수도요금과 물 이용부담금 및 구경별 기본요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21년 「상수도통계」 가운데 ‘업종별 부과량 분석’에서 제시된 지방자치단체별 가정용 상수도 평균단가 자료를 활용했다. 대도시의 경우,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급수인구 가중평균 상수도 평균단가 506.9원/m³(2020년에는 508.2원/m³)를 구한 뒤, 그 값과 가장 가까운 인천시 494.25원/m³(2020년에는 503.1원/m³)를 골랐다. 중소도시로는 75개 중소도시의 상수도 평균단가를 급수인구 가중평균해서 구한 값 566.2원/m³(2020년에는 570.8원/m³)에 가장 가까운 경기도 군포시(553.1원/m³)¹⁰²⁾(2020년에는 계룡시 577.6원/m³)를 선택했다. 같은 방식으로 전국 77개 군 지역의 급수인구 가중평균 값(676.6원/m³) 가운데서는 강원도 홍천군(675.6원/m³)이 선택됐다¹⁰³⁾.

〈표 6-3-5〉 2023 지역별 상·하수도 요금 단가

구분	대도시 ¹⁰⁴⁾ (인천)	중소도시 (경기 군포시)	농어촌 (강원 홍천군)
가정용 상수도	470원/m ³	540원(1-20m ³)	790원(1-20m ³)
		740원(21-30m ³)	1275원(21-40m ³)
		1140원(31m ³ 이상)	2955원(41m ³ 이상)
가정용 하수도	380원(1-10m ³) 610원(11-20m ³) 940원(21m ³ 이상)	394원(1-11m ³)	180원(1-10m ³)
		500원(12-22m ³)	200원(11-20m ³)
		606원(23m ³ 이상)	220원(21-30m ³) 250원(31m ³ 이상)
구경별 기본요금(20mm)	2,400원	1,500원	810원
물이용부담금 ¹⁰⁵⁾	170원(m ³ 당)	170원(m ³ 당)	170원(m ³ 당)

자료: 인천광역시 요금산정 기준표 (<https://minwon.waterworksh.incheon.kr/chrge/CCS03001.do>), 군포시 수도요금계산방법 (<https://www.gunpo.go.kr/sudo/contents.do?key=5405>), 홍천군 상수도업종별 요금표 <https://www.hongcheon.go.kr/water/contents.do?key=1140>에서 2023.3.14.과 3.28. 인출하여 재구성.

103) 경상북도 청도군 (676.5원/m³)이 평균값에 가장 가까우나, 청도군 요금은 2023년 기준으로 하수도의 경우 10m³까지 정액 550원으로 책정돼 있어서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해서 홍천군으로 대체했다.
 104) 인천시는 2021년 1월부터 상수도요금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전환해서 사용량에 관계없이 1m³당 470원의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 요금을 부과 (인천시, 2020.12.15.).
 105) 물 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에는 한강 수계인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었으나, 2002년 7월부터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로까지 확대되었다.

〈상·하수도 요금 산출〉

$$\text{상·하수도 요금} = \text{상수도 요금} + \text{하수도 요금} + \text{물이용 부담금} + \text{구경별 기본요금}$$

※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은 모두 사용량에 비례해서 증가. 일정한 누진 구간도 적용됨.

자료: 인천광역시 요금산정 기준표 (<https://minwon.waterworksh.incheon.kr/chrge/CCS03001.do>) 등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요금 산정 기준표 2023.3.26. 인출, 참고하여 재구성.

나) 4급지 기준

4급지 기준에 따라 서울/경기/광역시·세종·창원/그 외 지역(126개 시군)으로 나누었다. 서울은 130.0원/kWh였다. 경기의 28개 시와 3개 군 2022년 하반기 월 평균 평균 판매단가에 전력 사용 호수를 반영한 가중치를 고려해서 산출한 평균값은 129.0원/kWh였다. 같은 방식으로 광역·세종·창원 지역의 가중평균값은 124.4원/kWh이었고, 그 외 지역 가중 평균은 127.9원/kWh이었다.

〈표 6-3-6〉 2022년 4급지 기준 지역별 전기요금 단가

(단위: 원/kWh)				
구분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그 외 지역
전기 사용 호수 가중평균 단가	130.0	129.0	124.4	127.9

주: 전기요금은 계절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2022년 하반기 6개월의 평균값을 썼다.

자료: 한국전력 전력데이터 개방포털 시스템 (<https://bigdata.kepco.co.kr/cmsmain.do?scode=S01&pcode=000166&redirect=Y>)에서 2023.3.14. 인출.

다음으로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을 예측했다. 4급지 기준에 따라 서울/경기/광역시·세종·창원/그 외 지역(126개 시군)으로 나누었다. 전국의 도시가스협회(2023)에서 제공 시·도별 도시가스 요금 통계를 활용했다. 광역·세종·창원 지역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나오는 인구를 가중한 평균값을 구했다. 그 외 지역의 경우 한국도시가스협회(2023)에서 제시하는 21개 지역의 21개 도시가스회사의 가격 기준을 따랐다. 이를테면, 경남에 서는 지에스이라는 회사가 진주, 사천, 거창, 함양, 하동 지역에 동일한 가격으로 도시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보급률은 해당 지역 안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 따라서, 4급지 기준 ‘그 외 지역’ 도시가스 요금 단가는 이들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공

급하는 21개 회사의 본사가 있는 지역의 인구를 가중한 평균을 산출했다. 즉, 지에스 이 가격은 진주의 인구만을 가중했다. 이렇게 산출된 급지별 도시가스 요금 단가는 다음 표와 같다.

〈표 6-3-7〉 지역별 가스요금 단가

(단위: 원/MJ)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기본요금	1000.0	965.0	828.9	764.8
취사	19.7	20.0	20.3	21.2
난방	19.7	19.9	20.6	21.1

자료: 도시가스협회 (<http://www.citygas.or.kr/info/charge.jsp>) 홈페이지와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에서 2023.3.28. 인출

주: 기본요금은 지역에 따라 중앙난방과 개별난방 가격이 다름. 여기에서는 개별난방 기준으로 설정함.

4급지 기준으로 상수도 요금을 볼 때도, 지난 2021년 「상수도통계」 가운데 ‘업종별 부과량 분석’에서 제시된 지방자치단체별 가정용 상수도 평균단가 자료를 활용했다. 서울지역의 상수도 평균단가는 404.01원/㎥이고, 경기지역은 28개 시와 3개 군의 상수도 평균단가를 급수인구 가중평균해서 구한 값 498.5원/㎥을 산출했다. 31개 지역 가운데 가중평균에 가장 근사한 곳으로 김포시(474.0원/㎥)를 기준으로 삼았다. 광역·세종·창원의 급수인구 가중 평균 단가는 588.3원/㎥이었고, 여덟 지역 가운데 평균단가가 가중평균에 가장 가까운 세종(547.66원/㎥)을 선택했다. 그 외 지역 즉 120개 시구의 급수인구 가중 평균 단가는 656.8원/㎥이었다. 문경시의 상수도 단가가 가장 전체 평균에 근사했다. 전반적으로 대도시 지역으로 갈수록 상수도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상수도 요금은 많은 지역자치단체에서 지난 2~3년 사이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이요금제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테면, 서울시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누진제를 폐지하고 ㎥당 요금을 390원으로 통일하고, 2023년까지 해마다 톤(㎥)당 73원씩 인상했다. 따라서, 2023년 현재 서울시의 톤당 상수도 요금은 580원이다(서울시, 2021).

〈표 6-3-8〉 2023 지역별 상·하수도 요금 단가

구분	서울	경기 김포시	세종	경상북도 문경시
가정용 상수도	580원/㎥	570원 (1-20㎥)	625원/㎥	560원 (1-10㎥)
		790원 (21-30㎥)		650원 (11-20㎥)
		1090원(31㎥ 이상)		900원 (21-30㎥) 1,130원 (31-40㎥) 1,510원 (41-50㎥) 1,780원 (51- ㎥)
가정용 하수도	400원 (1-30㎥)	585원 (0-20㎥)	725원/㎥	181원 (1-10㎥)
	930원 (30-50㎥)	806원 (21-30㎥)		272원 (11-20㎥)
	1,420원 (50㎥ 초과)	1,157원 (31㎥이상)		363원 (21-30㎥) 453원 (31-40㎥) 544원 (41-50㎥) 635원 (51- ㎥)
구경별 기본요금(20mm)	3,000원	3,490원	1830원	2,870원
물이용부담금	170원(㎥당)	170원(㎥당)	170원(㎥당)	170원(㎥당)

자료: 서울시 상수도 요금 인상 안내 (https://arisu.seoul.go.kr/c2/sub4_1.jsp?brdType=R&bbIdx=19083), 서울시 물재생계획(<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20948>), 김포시 업종,구경별 요금표 (<https://www.gimpo.go.kr/water/contents.do?key=2309>), 세종시 상하수도 요금 산정기준 (<https://waterpay.sejong.go.kr/waterpay/ncoe/fee/feeCalcStand.do>), 문경시 상하수도요금 산정기준(<https://www.gbm.g.go.kr/waterpay/ncoe/fee/feeCalcStand.do>)에서 2023.3.27. 인출하여 재구성.

나. 표준가구의 최저 광열·수도비 마켓 바스켓

2023년 4인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 광열수도를 계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광열·수도비는 전기요금, 취사 및 난방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으로 나뉘었다. 지난 2017년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전기요금과 취사 및 난방요금, 상수도 요금에서 지역별 사용량 차이가 없다고 본 점이다. 전기요금과 취사 및 난방요금의 경우에는 보통 도시 지역의 소비량이 농어촌 지역보다 많았지만, 2014년 이후에는 농어촌 지역의 사용량이 더 많아

졌거나 도시의 소비량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에는 인구 가중 평균 값으로 보았을 때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의 사용량 차이가 있었지만, 대도시들 안에서도, 중소도시 안에서도, 농어촌 지역들 안에서도 사용량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서 세 집단의 평균을 나누어서 비교하는 것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3급지를 기준으로 보면, 전기요금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의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이 311.1kWh로 동일하다고 보고, 지역별 단가인 127.0원, 126.6원, 135.0원을 적용해서, 월별 전기요금을 3만 9510원과 3만 9385원, 4만 1999원으로 계측했다. 난방 및 취사비 역시 지역별 도시가스 월평균 사용량은 2428.3MJ로 동일하다고 보고 지역별로 서로 다른 가격, 대도시 18.4~18.6원/MJ, 중소도시 19.99~20.00원/MJ, 농어촌 21.38원/MJ를 반영해서 대도시는 5만 4543원, 중소도시는 5만 4427원, 농어촌은 5만 7208원으로 계측했다. 이 계측값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기본요금을 반영한 값이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요금 역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해서 전국적으로 사용량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지역별 가격 차이를 고려했다. 상·하수도 요금은 대도시 2만 3088원, 중소도시 2만 2586원, 농어촌 지역 2만 1942원으로 계측했다.

〈표 6-3-9〉 표준가구의 3급지 기준 최저 광열·수도비(연구진안)

(단위: 원/월)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기요금	39,510	39,385	41,999
난방·취사비	54,543	54,427	57,208
수도요금	23,088	22,586	21,942
합계	117,141	116,398	121,149

이에 따라 전기요금, 취사 및 난방비, 상·하수도 요금을 모두 합한 2023년 최저 광열 수도비는 대도시 11만 7141원, 중소도시 11만 6398원, 농어촌 12만 1149원으로 계측됐다. 사용량이 꾸준히 감소하지만,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수도 광열비 상승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4급지에서도 전기와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이 3급지 기준과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같다고 가정했다. 다만, 네 가지 지역 유형별 가격은 제각각인 점을 고려했다. 먼저 서울은 월 전기요금이 4만 443원, 경기지역은 4만 132원, 광역·세종·창원은 3만 8701

원, 그 외 지역은 3만 9790원이었다. 월 난방 및 취사비는 4개 급지에서 각각 5만 3721원(서울), 5만 4274원(경기), 5만 5767원(광역시·세종·창원), 5만 7259원(그 외 지역)이었다. 도시 지역에서 점차 농어촌으로 이동할수록 난방 및 취사비 부담은 늘어나는 추세였다. 수도요금은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순으로 각각 2만 8595원, 2만 7857원, 2만 9783원 및 2만 1142원이었다.

〈표 6-3-10〉 표준가구의 4급지 기준 최저 광열·수도비(연구진안)

(단위: 원/월)

구분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그 외 지역
전기요금	40,443	40,132	38,701	39,790
난방·취사비	53,721	54,274	55,767	57,259
수도요금	28,595	27,857	29,783	21,142
합계	122,759	122,263	124,251	118,191

3. 기존 최저 광열·수도비와의 비교

2020년 최저 광열·수도비를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다. 첫째, 상수도를 제외하고 전기와 도시가스 사용량을 지난 2017년의 실측치를 그대로 썼다는 점이다. 앞선 2014~2017년 기간 동안 「에너지총조사보고서」 기준으로 전기와 도시가스 사용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최저 광열·수도비가 지난 2017년에 견줘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최저 광열·수도비 계측에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전기와 도시가스, 상수도 사용량을 동일하게 설정했다는 점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가운데 대도시의 에너지의 수요가 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도 경상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은 대도시에서 6.8%, 중소도시에서 6.9%, 농어촌에서 10.7%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에서 에너지 수요가 적어서 에너지 지출이 적는 것이라기보다는, 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부담이 높아서 에너지 사용이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2020년 중소도시 기준 최저 광열·수도비는 137,314원으로 2020년 102,349원보다 34.1% 상승했다. 지난 2014~2017년 사이 최저 광열·수도비가 7.8% 감소한 것에

비교하면 큰 폭의 상승이다.

〈표 6-3-11〉 202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안) : 표준가구의 최저 광열·수도비 합계액

(단위: 원/월, %)

급지	서울	경기	광역시·창원·세종	그 외 지역
연구진안	122,759	122,263	124,251	118,191
급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교안	117,141	116,398	121,149	

〈표 6-3-12〉 이전 최저 광열·수도비와 비교 : 4인 가구, 광역·창원·세종 및 중소도시 기준

(단위: 원/월, %)

구분		연구진안		중생보위 의결	
		최저 광열·수도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최저 광열·수도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광역시·창원·세종	광역시·창원·세종	광역시·창원·세종	광역시·창원·세종
2023 최저생계비 (안)	연구진안	124,251	5.1		
	비교안	중소도시 116,398	중소도시 4.9		
2020 최저생계비*		102,349	4.8		
2017 최저생계비		111,023	6.1		
2013 최저생계비		114,461	7.0	114,461	7.1
2010 최저생계비		103,150	7.3	103,150	7.4
2007 최저생계비		80,220	6.4	82,350	6.7
2004 최저생계비		64,237	5.2	64,237	5.8
1999 최저생계비		51,224	5.5	51,224	5.7

주: 1)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이고, 2017년은 연구진안에 의한 최저생계비임.

2)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 2017년 및 2020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전세 기준

*주: 2020년은 표준가구 1안을 제시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3),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외(2020),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4절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1.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개념 및 계측방법

가. 개념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인간다운 가정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가구구입 및 수리비용과 가사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구입 비용이다. 이는 가구원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물리적 욕구를 해결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며, 원활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들이다. 따라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비교적 큰 규모의 집기부터 일상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나 미처 인식하기 어려운 작은 용품들까지 포함한다(김태완 외, 2013, p.219). 본 연구에서는 이전 최저생계비 계측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를 가구 내에서 가구원들이 기본적인 의·식·주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가구 내에 유입된 자원을 가공하고 가사를 돌보는데 필요한 제반 물적 도구들의 구입 및 유지비용으로 정의하였다.

나. 본 연구에서의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계측방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매 5년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매 3년마다 최저생계비를 계측해왔다.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에는 필수품 선정 원칙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소득탄력성, 「2018년 국민생활 실태조사」(4인 가구 심층조사)의 보유율을 이용하였다.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하여 표본 대표성을 확보하였으나, 소득탄력성의 기준, 보유확률의 기준에 대한 자의성이 여전히 한계로 남았다.

여기에서는 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2020년까지 지속되어 온 방식을 활용하여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를 계측하였다. 우선, 필수품 선정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품목별 탄력성을 이용하여 탄력성이 0.5이하인 것으로 하였다. 또한,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및 각종 통계자료(예, 「2018년도 가구에너지상설표본조사」(에너지경제연구원)의 주요 가전기기 규격별 보급현황)에 객관적으로 제시된 품목

별 보유율 및 필수품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하여 품목을 추가하였다. 여기서 보유율은 가구특성에 따라 67%(=2/3) 이상, 50% 이상~67% 미만, 50%(=1/2) 미만으로 구분한 후, 67% 이상인 경우 필수품이라고 판단하였다.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은 기본적으로 2020년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품목별 사용량 및 내구연수를 기준으로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및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했다. 가격 결정은 「국민생활실태조사」(가격조사) 및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대푯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 시장가격조사를 이용했다. 통계값을 이용할 수 없는 품목은 최저생계비가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품질을 기준으로 중·하품에 대하여 통계청의 2023년 1월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추정된 값과 시장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가격을 결정하였다.

2.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계측결과

가. 마켓 바스켓 구성

1) 필수품 및 사용량(내구연수) 결정

본 연구에서는 가구집기·가사용품비를 2020년과 동일하게 ‘일반가구, 가정용기구, 식기·주방용품, 가사잡화·소모품, 침구 및 직물, 가사서비스’의 6개 중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하위영역을 구성하였다. 2023년 가구집기·가사용품의 마켓 바스켓 구성항목에서는 옷걸이, 물티슈를 필수품목에 추가하였다.

「국민생활실태조사」(기초조사) 및 각종 통계자료(예, 「2018년도 가구에너지상설표본조사」(에너지경제연구원)의 주요 가전기기 규격별 보급현황)에 객관적으로 제시된 품목별 보유율 및 필수품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수품목을 선정하였다. 이때 내구재의 경우에는 보유현황의 비율을 67%(=2/3) 이상, 50% 이상~67% 미만, 50%(=1/2) 미만으로 구분한 후, 규범적으로 67% 이상은 필수품으로 판단하였다. 그 외에 실태조사의 보유현황, 지출빈도, 금액,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과 품목의 성격을 참고로 필수품을 선정하였다.

2023년 사용량 및 내구연수는 기본적으로 2020년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품

목별 사용량 및 내구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및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조정하였다. 먼저 사용량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가구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량을 1개로 하였다(예. 냉장고, 세탁기 등). 둘째, 방마다 필요한 것은 본 연구의 주거모형상의 방의 수인 3개로 하였다(예. 전구 등). 셋째, 가구원 수마다 필요한 것은 표준가구원수인 4개로 하였다(예. 이불, 베개 등). 넷째, 성인 수만큼 필요한 것은 성인의 수인 2개로 하였다(예. 도장). 다섯째, 표준가구의 학생 수만큼 필요한 것은 학생의 수인 2개로 하였다(예. 책상). 여섯째, 손님이 올 때 필요한 그릇 종류는 가구원수의 2~3배로 하였다(예. 주발). 일곱째, 기타 품목은 실태조사의 대푯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내구연수는 사용가치를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물건도 유형의 변화, 소비심리(전시효과: Demonstration Effect) 등에 의하여 구입하므로 사용가치는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대푯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을 이용하여 개별품목의 내구연수를 결정하였다.

2) 가격 결정 방법

가구집기·가사용품의 가격은 최저생계비임을 감안하여 중하품을 기준으로 통계청의 물가지수 변화를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단, 통계청의 물가지수 변화를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조사 및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대푯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나. 표준가구의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바스켓

2023년 마켓바스켓에서는 옷걸이, 물티슈를 필수품목에 추가하였다. 옷걸이는 옷이 구겨지지 않고 청결하게 그 형태를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필수품목에 추가하였다. 사용량은 가구원의 의복 수량을 고려하여 남성가구주 10개(신사복 2개, 오버코트 1개, 점퍼 2개, 와이셔츠 3개, 셔츠 2개), 여성배우자 11개(숙녀복 2개, 오버코트 1개, 점퍼 2개, 셔츠 3개, 블라우스 3개), 첫째아 6개(점퍼 2개, 교복 2개, 셔츠 2개), 둘째아 9개(점퍼 2개, 교복 2개, 셔츠 2개, 블라우스 3개)로 산정하였다. 옷걸이 가격은

시장가격을 반영하였다. 물티슈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필수품목에 추가하였다. 월평균 소비수량은 가구원수에 따라 4개로 가정하고, 가격은 시장가격을 반영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에 의해 연구진이 제시하는 2023년 최저생계비 중 최저 가구 집기·가사용품비의 연구진안은 다음과 같다. 대도시의 경우 59,912원, 중소도시는 59,427원, 농어촌은 58,727원, 서울은 60,337원, 경기도는 59,575원, 광역/세종/창원은 59,996원, 그 외 지역은 58,872원이다.

〈표 6-4-1〉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조정품목 요약(2020년 대비)

(단위: 원/월)

조정품목	조정내역	2023년 증감액	근거
		표준가구	
옷걸이	신규품목 추가	△110	의복의 청결, 보존을 고려한 신규품목 추가
물티슈	신규품목 추가	△333	세정, 위생에 대한 관심, 최근 사용량을 고려한 신규품목 추가
합계		△443	

〈표 6-4-2〉 표준가구의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연구진안)

(단위: 원/월)

구분	3급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가구	12,567	12,567	12,567
가정용가구	12,254	12,254	12,254
식기주방용품	11,028	11,028	11,028
가사잡화 소모품	1,482	1,482	1,482
가사 소모품	11,665	11,665	11,665
침구 및 직물제품	7,077	7,077	7,077
가사서비스	3,839	3,354	2,654
합계	59,912	59,427	58,727

〈표 6-4-3〉 표준가구의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연구진안)

(단위: 원/월)

구분	4급지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그 외 지역
일반가구	12,567	12,567	12,567	12,567
가정용가구	12,254	12,254	12,254	12,254
식기주방용품	11,028	11,028	11,028	11,028
가사잡화 소모품	1,482	1,482	1,482	1,482
가사 소모품	11,665	11,665	11,665	11,665
침구 및 직물제품	7,077	7,077	7,077	7,077
가사서비스	4,264	3,502	3,923	2,799
합계	60,337	59,575	59,996	58,872

3. 기존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와의 비교

2023년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광역·세종·창원 기준 59,996원으로 2020년 중소도시에 비해 6,533원(12.2%) 증가한 값이다. 표준가구 비교안으로 2020년 지역 기준을 동일하게 하여 비교해보면, 2023년 중소도시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59,427원으로 2020년 대비 5,964원(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가 전체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고, 표준가구 1안을 기준으로 하면 더욱 감소하였으며, 표준가구 2안을 기준으로 하면 2017년과 동일한 비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4-4〉 202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안) : 표준가구의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합계액

(단위: 원/월, %)

급지	서울	경기	광역시·창원·세종	그 외 지역
연구진안	60,337	59,575	59,996	58,872
급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교안	59,912	59,427	58,727	

〈표 6-4-5〉 이전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와 비교 : 4인 가구, 광역·창원·세종 및 중소도시 기준

(단위: 원/월, %)

구분		연구진안		중생보위 의결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광역·창원·세종	광역·창원·세종	광역·창원·세종	광역·창원·세종
2023 최저생계비 (안)	연구진안	59,996	2.5		
	비교안	중소도시	중소도시		
		59,427	2.5		
2020	최저생계비*	53,463	2.5		
2017	최저생계비	49,543	2.7		
2013	최저생계비	45,653	2.8	45,653	2.8
2010	최저생계비	40,547	2.9	40,547	2.9
2007	최저생계비	36,727	3.0	36,728	3.0
2004	최저생계비	35,789	3.2	35,789	3.2
1999	최저생계비	31,880	3.5	31,880	3.5

주: 1)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 이고, 2017년은 연구진안에 의한 최저생계비임.

2)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 2017년 및 2020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전세 기준

*주: 2020년은 표준가구 1안을 제시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3),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외(2020),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5절 최저 피복·신발비

1. 최저 피복·신발비의 개념 및 계측방법

가. 개념

피복·신발 품목들은 체온유지나 치부를 가리고자 하는 원초적인 욕구와 더불어 경제적인 요인으로 노동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며, 멋, 치장 등과 같이 심리, 사회·문화적인 요인과의 관련성이 있다. 이 중 최저 피복·신발비의 개념에 근접한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치와 관련된다. 이와 더불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회적 가치에 따라 최소한의 문화적 욕구를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최저생계비 계측 연구를 따라 최저 피복·신발비를 신체보호, 적정 체온유지, 보건위생 측면의 청결유지 등의 기본적인 필요와 노동재생산에 필요한 수준 및 최소한의 체면유지를 위한 비용을 고려한 수준으로 정의하고자 한다(김태완 외, 2013, p.230).

나. 본 연구에서의 최저 피복·신발비 계측방법

2023년 최저 피복·신발비의 계측방식은 기본적으로 2020년과 2017년의 방식을 유지하였다. 필수품 선정의 경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품목별 탄력성을 이용하여 탄력성이 0.5 이하인 것으로 하였다. 또한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규범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선정하였다. 가령 동내복, 팬티와 같이 신체보호, 적정 체온유지, 보건위생 측면의 청결유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품목은 포함하였다. 그리고 표준가구 구성 변화에 따라 고등학생 자녀(1명)의 교복과 중학생 자녀(1명)의 교복을 추가하였다.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은 2017년 최저 피복·신발비의 품목별 사용량 및 내구연수를 기본으로 하여 「국민생활실태조사」(4인 가구 심층조사) 자료 및 각종 통계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용량 및 내구연수를 조정하였다. 또한 규범적인 측면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연구진 및 전문가의 판단과 문헌을 참고하여 변경하였다.

가격은 「국민생활실태조사」(가격조사) 및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대푯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국민생활실태조사」(가격조사) 및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대푯값을 이용할 수 없는 품목은 중·하품을 기준으로 통계청의 2020년 1월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추정된 값과 시장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하였다.

2. 최저 피복·신발비 계측결과

가. 마켓 바스켓 구성

1) 필수품 및 사용량(내구연수) 결정

본 연구에서는 피복·신발비에 대해 2020년 '외의, 스웨터 셔츠, 내의, 기타피복, 신발, 피복 및 신발서비스, 직물·실'의 7개 중분류 기준을 유지하여 하위영역을 구성하였다. 연구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계측과정의 과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첫째, 신체보호, 적정 체온유지, 보건위생 측면의 청결유지 등의 기본적인 필수품이라고 판단되는 품목(예. 팬티, 동내복 등), 둘째, 표준가구 중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에 필요한 품목(예. 실내화), 셋째, 노동재생산에 필요한 품목은 필수품으로 선정하였다. 반면, 사회문화적인 품목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품목별 탄력성을 이용하여 탄력성이 0.5 이하이거나, 「국민생활실태조사」(4인 가구 심층조사)의 보유현황의 비율을 67%(=2/3) 이상, 50% 이상~67% 미만, 50%(=1/2) 미만으로 구분한 후, 규범적으로 67% 이상을 필수품으로 선정하였다. 그 외에 실태조사의 보유현황, 지출빈도, 금액,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과 품목의 성격을 참고로 필수품을 선정하였다.

피복 및 신발의 하위품목별 사용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우선 가구원별 1점(또는 벌)을 기본으로 하고, 속내의의 경우 세탁을 고려하여 2점(벌)을 기본으로 하였다. 세탁료 및 의복수선료는 실태조사의 대푯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내구연수는 사용가치를 고려하여 2020년 내구연수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표준가구 구성원 중 학생의 경우 신체발육(예. 내의류 등)과 수업연한(예, 교복)을 고려하였다.

2) 가격 결정 방법

피복·신발비의 가격은 최저생계비라는 점을 감안하여 중하품을 기준으로 통계청의 2023년 1월 기준 물가지수 변화를 반영하여 가격을 결정하였다. 통계청의 물가지수 변화를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조사 및 「국민생활실태조사」(가격조사)의 대푯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교복비의 경우 학교알리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국 교복 가격(2022년 9월)을 가중 평균하여 활용했다.

나. 표준가구의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바스켓

위에서 제시한 과정을 통해 산정된 2023년 최저생계비 중 최저 피복·신발비의 연구 진안은 다음과 같다. 표준가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동복 및 하복 교복을 추가하고, 둘째 자녀의 속치마, 스타킹을 추가하였다. 2014년 교육부와 교복 업체가 협약 체결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의해 교복비 단가는 교육부에 의해 일괄 구매하도록 권고되고 있으며, 이번 최저 피복·신발비 계측을 위해 고등학생 교복값과 중학생 교복값을 2022년 9월 공시된 학교알리미 자료를 활용해 전국 중·고등학교의 수를 적용,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생 동복 가격은 191,324원, 하복은 85,228원, 중학생 동복은 188,395원, 하복이 82,994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속치마, 스타킹은 성인 여성 마켓 바스켓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또한,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와 동·춘추 신사복 수량을 참고하여 신사복상하 드라이크리닝 수량을 4벌에서 2벌로 조정하였다.

〈표 6-5-1〉 2020년 피복·신발비 신규품목 마켓 바스켓

구분	규격	지역	단가 (원)	내구연수	수량	마켓바스켓 (원/월)	단가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둘째 자녀(여, 15세)								
속치마		전국	12,298	3년	2점	683	성인 여성 마켓바스켓	성인 여성 마켓바스켓
스타킹		전국	1,822	3월	1점	607	성인 여성 마켓바스켓	성인 여성 마켓바스켓
합계						1,290		

〈표 6-5-2〉 최저 피복·신발비 조정품목 요약(2020년 대비)

(단위: 원/월)

조정품목	조정내역	2020년	2023년	2023년 증감액	근거
			표준가구	표준가구	
남성 가구주	신사복상하 드라이크리닝 수량 조정 (4→2벌)	2,192	1,288	△904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 고려하여 수량 조정
합계				△904	

이렇게 산출된 최저 피복·신발비는 지역별 피복 및 신발에 있어 생활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피복·신발비는 각각 106,564원이다.

〈표 6-5-3〉 표준가구의 최저 피복·신발비(연구진안)

(단위: 원/원)

구분	표준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외의	57,636	57,636	57,636
스웨터·셔츠	14,765	14,765	14,765
내의	14,869	14,869	14,869
기타 피복	7,118	7,118	7,118
신발	6,529	6,529	6,529
피복 및 신발서비스	5,611	5,611	5,611
직물·실	36	36	36
합계	106,564	106,564	106,564

3. 기존 최저 피복·신발비와의 비교

2023년 최저 피복·신발비의 구성품목을 2020년의 결과와 비교하면 2개의 신규품목인 둘째 자녀의 속치마, 스타킹이 추가되었고, 신사복상하 드라이크리닝 수량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산정된 중소도시 기준 2023년 표준가구의 최저 피복·신발비 16,564원은 2020년 대비 8,065원(8.2%) 증가한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에 대한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 이래로 중소도시 기준 최저 피복·신발비가 전체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이번 2023년 신규품목으로 인하여

2020년보다 비중이 다소 증가하여, 4.6%를 차지했다.

〈표 6-5-4〉 202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안) : 표준가구의 최저 피복·신발비 합계액

(단위: 원/월, %)

급지	서울	경기	광역시·창원·세종	그 외 지역
연구진안	106,564	106,564	106,564	106,564
급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교안	106,564	106,564	106,564	

〈표 6-5-5〉 이전 최저 피복·신발비와 비교 : 4인 가구, 광역·창원·세종 및 중소도시 기준

(단위: 원/월, %)

구분		연구진안		중생보위 의결	
		최저 피복·신발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최저 피복·신발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광역시·창원·세종	광역시·창원·세종	광역시·창원·세종	광역시·창원·세종
2023 최저생계비 (안)	연구진안	106,564	4.4		
	비교안	중소도시 106,564	중소도시 4.5		
	2020 최저생계비*	98,499	4.6		
	2017 최저생계비	80,441	4.4		
	2013 최저생계비	66,851	4.2	66,851	4.2
	2010 최저생계비	57,649	4.1	57,649	4.1
	2007 최저생계비	48,773	4.0	48,773	4.0
	2004 최저생계비	46,858	4.2	46,858	4.2
	1999 최저생계비	43,331	4.8	43,331	4.8

주: 1)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이고, 2017년은 연구진안에 의한 최저생계비임.

2)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 2017년 및 2020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전세 기준

*주: 2020년은 표준가구 1안을 제시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3),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외(2020),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6절 최저 보건·의료비

1. 최저 보건·의료비의 개념 및 계측방법

가. 개념

보건·의료비는 사람의 질병 예방, 치료 및 신체의 교정 등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다. UN이 권고하는 COICOP(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에 기초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분류에 의하면, 보건·의료비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외래·치과·입원·기타 의료서비스, 처방 유무에 상관 없이 약사 및 의사로부터 구입한 모든 약품(의약품) 및 이외의 의료용 소모품, 신체의 교정 및 유지에 필요한 용품 및 기구 등이 포함된다(김태완 외, 2013). 또한 국민노후 보장패널조사에서는 수술 및 입원비, 외래진료비, 약값, 보건의료용품(기구)의 구입비로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것을 제외한 본인 부담분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표준가구의 ‘최저’ 보건·의료비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로 첫째, 최저 혹은 적정 보건·의료비 계량화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비가 보건수준에 대한 사회적 기본욕구(basic need) 중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로 한정된다면, 보건·의료비는 이를 충족하기 위한 지출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여유진 외, 2007: 325). 그러나 규범적 욕구 중 일부는 인지되지 않으며, 인지되더라도 실제로 표출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한다(박순일 외, 1994).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인지되지만 표출되지 않는 미충족 욕구가 상당히 존재하며, 더불어 인지되지 않은 욕구도 존재할 수 있다. 둘째, 타 재화(서비스)와 차별되는 보건의료 재화(서비스)의 상대적 특성 때문에 최저 보건·의료비 산출은 더욱 어렵다(여유진 외, 2007: 325). 우선 개개인의 선천적·후천적 건강상태가 상이하여 ‘기본적’ 보건의료 욕구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또한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수준, 질병에 따른 고통인지정도도 개인에 따라 상대적이다. 그리고 보건의료재화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또한 매우 크다. 동일한 건강상태라도 의료적 진단 및 처방에 따라 최저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연구의 최저 보건·의료비 계측방법은 크게 ‘2차 자료 분석방식’과 ‘실태조사 분석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2차 자료 분석방식은 「건강보험통계연보」와 「의료

급여통계연보」 등의 2차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적인 의료 서비스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1988년과 1999년의 연구가 이 방법을 활용하였다. ‘2차 자료 분석방식’은 모수치를 활용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우선 2차 통계자료 활용 방식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행태를 반영할 수 없고, 개인단위 의료이용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4인 표준가구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수진율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의료급여 수진율을 이용할 경우에도 고령, 근로무능력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인해 과대추정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율이 약 64.5%¹⁰⁶⁾인 상황에서 통계연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료비 정보는 제도권 내의 법정급여만을 산정하고 있어 비급여를 포함한 실제 가구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반영하기 어렵다.

이러한 2차 자료 분석방식의 한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실태자료 분석방식’이다. 1차 자료인 실태조사 원자료(「국민생활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의료수요함수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유의미한 변수들을 추출하여 그 특성에 가장 적합한 가구유형의 의료서비스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1994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 2017, 2020년의 연구가 이 방법을 채택하였다. 실태자료는 최저 보건·의료비를 산출함에 있어 소득기준(소득하위 40%이하)과 표준 가구원수(4인 가구)를 적용하여 의료서비스 비용, 의약품비, 미충족 의료요구, 보건의료용품비 등의 실제 지출된 평균 보건의료서비스 비용 도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태자료 분석방식’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행태를 비교적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04년 이래 최저생계비 계측에서 활용되어 오고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앞서 ‘2차 자료 분석방식’에 비해 모수 추정치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이 방식이 가지는 가장 큰 한계이다. 또한, 상하위 절사의 범위와 포함되는 가구원의 특성, 사회·환경적 여건에 따라 보건·의료비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나. 본 연구에서의 최저 보건·의료비 계측방법

2023년 최저 보건·의료비는 2004년, 2007년, 2010년, 2013, 2017 및 2020년과

106) 2021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동일한 '실태자료 분석 방식'으로 계측하고자 한다. 최저 보건·의료비 계측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행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방식의 장점이기 때문이다.

주지한 바와 같이, 마켓 바스켓방식의 최저생계비는 규범적 측면과 함께, 삶의 질 변화, 즉 실태 측면을 동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예컨대 무엇이 필수품인가를 고려할 때는 건강의 유지와 회복에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규범과 함께, 삶의 질 변화에 따라 소유하거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품목이라는 실태가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보건·의료비의 경우 각자의 신체적·정신적 차이에 따라 보건의료 욕구가 상이하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표준화된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표준가구의 평균적인 건강상태를 가정하여, 이러한 평균적인 건강상태를 가진 표준가구의 가구원이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비를 산출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유에 필요한 의료적 처치와 의약품, 신체적 취약성을 보완해 줄 보건의료용품(예. 안경)과 성, 연령 및 환경변화를 고려한 필수용품(예. 위생대, 미세먼지 마스크),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인지되었지만 직접적으로 표출되지 않은 미충족욕구에 대한 대응이 포함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최저 보건·의료비 = 보건의료서비스비 + 의약품비 + 보건의료용품비 + 미충족욕구
 - 보건의료서비스비 = 입원진료비 + 외래진료비 + 처방전 약값
 - 의약품비 = 비처방전 약값
 - 보건의료용품비 = 안경 + 위생대 + 미세먼지 마스크
 - 미충족욕구 = 저소득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욕구 해결을 위한 잠재적 비용(주관적 부족의료비)

보건·의료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유의미한 인구학적·가구특성적 변수를 찾아서 이를 표준가구의 최저 보건·의료비 산정에서 감안해 줄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 미충족욕구에 대해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이용한 의료수요함수는 2017년과 기준을 준용하였으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의료수요함수 산출을 위한 회귀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ln(E) = \text{CONSTANT} + a \text{ CHRONIC} + b \text{ CHILD} + c \text{ OLD} + d \text{ REGION1} + e \text{ REGION2} + f \ln(Y)$$

E = 월평균 보건의료서비스비
 CHRONIC = 만성병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있음=1, 없음=0)
 CHILD = 4세 이하 아동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있음=1, 없음=0)
 OLD = 65세 이상 노인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있음=1, 없음=0)
 REGION1 = 대도시지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대도시=1, 기타=0)
 REGION2 = 농어촌지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농어촌=1, 기타=0)
 Y = 가구경상소득

의료수요함수의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면서 규범적으로도 표준가구에 포함될 필요가 없는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시킨 후 저소득 4인 가구의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 미충족욕구 비용을 산출하였다. 이 중 보건의료서비스비용(입원진료비 + 외래진료비 + 처방전 약값)과 미충족 의료욕구 비용은 2021년 조사된 금액에 각 연도별 수가인상률을 반영하여 2023년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일반의약품 등 비처방의약품의 경우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용품비는 2017, 2020년 최저생계비 산정에서 사용된 필수품 선정, 사용량 및 내구연수, 가격 결정의 원칙을 준용하여 반영하였다. 한편, 기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를 기준으로 적용하였던 마스크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¹⁰⁷⁾가 발령되었으나, 2023년 3월 20일부터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었다. 국민실태조사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고려할 때,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기존과 같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와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에 따라 연간 1인당 의료기관 방문일수는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사용량과 내구연수는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가격은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결과와 「소비자물가지수」(2023. 1.)를 기준으로 설정하되, 중저가를 원칙으로 결정하였다.

107)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10월 23일에 발령되었음.

2. 최저 보건·의료비 계측결과

가. 마켓 바스켓 구성

1) 필수품 및 사용량(내구연수) 결정

다른 비목과는 달리 최저 보건·의료비의 경우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 미충족 욕구는 별도의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지 않고 저소득 4인 가구의 평균적인 의료비 지출 비용을 계측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즉, 의료수요함수분석 결과 ‘평균적인 건강상태의 4인 표준가구’와 유의미한 의료수요 차이를 발생시키는 인구특성을 지닌 가구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저소득 4인 가구의 평균적인 보건·의료비 지출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계측되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유에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 항목으로 보건의료서비스(외래 및 입원 진료비, 처방의약품),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교통비, 그리고 인지되었으나 표출되지 않은 욕구를 감안하여 미충족욕구의 일부(50%)를 반영하였다.

보건의료용품비의 경우 별도의 마켓 바스켓이 구성된다. 「가계동향조사」와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분석 결과, 보건의료용품비에서 안경의 소득탄력성은 비교적 낮고 보유¹⁰⁸⁾ 평균 가구원수는 약 1.2명으로 필수품으로 선정되었다. 위생대는 평균적인 폐경연령 이전의 여성이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율이나 소득탄력성과 무관하게 규범적인 측면에서 필수품의 요건에 해당한다. 위생대의 경우, 가구원의 연령 변화를 반영한 표준가구¹⁰⁹⁾ 둘째 자녀(여)의 초경연령을 반영한 사용량을 적용하였다.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 미충족욕구는 월평균 비용이므로 사용량은 1단위, 내구연수는 1개월로 고정된다. 보건의료용품비는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사용량 및 내구연수를 조정하였다. 안경의 경우, 안경만 끼는 사람의 평균적인 안경 교체주기는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 26개월로 적용하였으며 이는 2020년 안경 교체 주기와 동일하다. 사용량은 가구당 안

108) 소득 하위 40% 이하 4인 가구에서 안경을 착용한 평균 가구원 수이다.

109) 표준가구 47세 남성가구주, 46세 여성 배우자, 17세 남아(고등학생), 15세 여아(중학생)로 구성

경 착용하는 가구원인 1.2명을 반영하여 2020년과 동일하게 가구원 중 1명만 안경을 착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위생대의 경우 내구연수와 사용량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되 초경연령이 지난 둘째자녀의 위생대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안경의 경우 사용량은 1개, 내구연수는 26개월로, 위생대의 경우 표준가구의 46세 여성배우자와 15세 여아¹¹⁰⁾의 사용량은 각각 25개(나이트용 5개 포함), 내구연수는 1개월로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보건의료용품비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반영하였다. 오염원 제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인차원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며 개인차원의 가장 1차적인 대응방법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고 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 방문 일수를 반영하였다.

연간 미세먼지 마스크는 사용량은 최근 2년 평균 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일수 64일¹¹¹⁾, 연평균 1인당 입내원일수 19일¹¹²⁾을 반영하였고, 내구연수는 1인당 평균 마스크 사용량¹¹³⁾은 2.3일로 산정하였다.

2) 가격 결정 방법

보건·의료비에서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와 미충족욕구는 소득 하위 40%이하 4인 가구의 평균적인 지출을 가격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2010년과 2013년의 의료수요함수 결과를 근거로 4인 표준가구의 최저 보건·의료비를 추정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보건·의료비 지출이 더 높게 나타난 4세 이하 아동을 가진 가구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표준가구의 구성과는 거리가 있고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단, 표준가구 내에도 만성질환자가 확률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분석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4세 이하의 아동과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가구를 제외

110) 2010년 기준 초경연령 11.98세 「한국 여학생 평균 초경 연령 추이」, 2014년 기준 초경연령 11.7세 「통계로 본 서울남녀의 결혼과 출산」

111) 환경통계연감, 2020년, 2021년, 환경부 (출처: 환경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rary.me.go.kr/#/>)

112)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113)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마스크 사용처리법 설문조사' 결과

한 나머지 소득 하위 40% 이하의 4인 가구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와 미충족육구 비용을 산출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¹¹⁴⁾

평균적인 보건의료서비스비는 67,633원, 비처방 의약품비는 5,375원으로 산출되었다. 입원, 외래, 처방약값을 포함하는 보건의료서비스비는 2020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율은 동 기간 전체 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율과 유사¹¹⁵⁾하였다.

미충족육구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평균 부족의료비의 50%만 반영하여 2,483원만 최저 보건·의료비 마켓 바스켓에 포함시켰다. 최종적으로 2023년까지의 수가인상률과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최종 보건의료서비스비는 70,413원, 비처방 의약품비는 5,396원, 평균 부족의료비(미충족 의료육구)는 2,585원으로 조정하였다.

보건의료용품비는 가구원의 연령변화를 반영한 표준가구원의 연령을 반영하여 산출하였고, 2020년 신규 추가된 미세먼지 마스크는 유지하였다.

보건의료용품비는 타 비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였다. 안경의 경우,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의 분석 결과의 평균값 160,129원과 중위값 100,000원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내구연수는 실태조사 결과 평균 기간인 26개월로 결정하였다.¹¹⁶⁾ 위생대는 표준가구의 연령변화를 반영하여 초경연령이 지난 둘째 자녀(여)의 위생대를 추가하였다. 월평균 소비수량은 표준가구 모(母)와 자녀(여) 각각 월 평균 25개(주간용 20개, 야간용 5개)로 2020년 보다 두 배 증가하였다. 위생대의 가격은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주간용 5,545원, 나이트용 1,386원으로 산정하였다. 신규 추가된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의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 코로나-19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필수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이용일수(연평균 1인당 병·의원 입원, 외래 방문일수)를 반영하였다. 한편, 2020년 마스크 가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등 마스크 품귀 대란으로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어려워 관행적인 가격(개당 1,000원)을 적용하였으나, 마스크 공급 안

114) 과대추정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비 지출액의 상하위 1%의 극단치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의약품비(비처방전 약값)는 극단치인 상위 5%는 제외하였다. 극단치 제거의 방법은 이와 같은 절사 방법과 원저화 방법이 있고, 최근 후자의 방법이 선호되지만 기존 최저생계비 계측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2010년과 2013년 방식을 유지하였다.

115) 2018년 대비 2021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율은 20.4%였으며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 보건의료서비스비 증가율은 19.5%였음.

116)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분석 결과, 안경의 가격은 평균 87,956원, 중위 90,000원으로 나타났으며, 교체 주기는 평균 16개월로 산출되었다.

정화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해제 등 가격이 안정화됨에 따라 개당 240원¹¹⁷⁾으로 산정하였다.

〈표 6-6-1〉 최저 보건·의료비 조정품목 요약(2020년 대비)

(단위: 원)

조정내역	표준가구 1인	비고
위생대 추가	△6,949원	표준가구 가구원 연령 변화 반영
미세먼지 마스크(KF94) 추가	▽2,459원	마스크 가격 안정화에 따른 단가 및 사용량 조정 반영

나. 표준가구의 최저 보건·의료비 마켓바스켓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비처방전 약값), 미충족욕구, 보건의료용품비를 합한 2023년 최저 보건·의료비의 마켓 바스켓은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된다. 최저 보건·의료비는 78,394원, 그리고 보건의료용품비는 18,510원으로 계측되었다. 이들을 모두 합한 2023년 최저 보건·의료비는 96,904원이었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지역 간 보건·의료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6-6-2〉 표준가구의 최저 보건·의료비(연구진안)

(단위: 원/월)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비	78,394	78,394	78,394
보건의료용품	18,510	18,510	18,510
합계	96,904	96,904	96,904

3. 기존 최저 보건·의료비와의 비교

최종 계측된 중소도시 기준 2023년 최저 보건·의료비는 96,904원으로, 2020년과 비교하면 6.2% 증가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에 대한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 이래로 중소도시 기준 최저 보건·의료비가 전체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7) 2023년 2월 기준 조달청 비축마스크 방출 가격 적용
(<https://www.pps.go.kr/bichuk/bbs/view.do?jsessionid=Wml2tU-KR6PBLhX490knfagX1l8Gfp7WjP5iJX-SzouEgMbyEWV5!153035988?key=00836&bbsSn=2302010019> 발체)

등락을 보이다가 2023년에는 4.1%를 차지했다.

〈표 6-6-3〉 202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안) : 표준가구의 최저 보건·의료비 합계액

(단위: 원/월, %)

급지	서울	경기	광역시·창원·세종	그 외 지역
연구진안	96,904	96,904	96,904	96,904
급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교안	96,904	96,904	96,904	

〈표 6-6-4〉 이전 보건·의료비와 비교 : 4인 가구, 광역·창원·세종 및 중소도시 기준

(단위: 원/월, %)

구분	연구진안		중생보위 의결		
	최저 보건·의료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최저 보건·의료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광역시·창원·세종	광역시·창원·세종	광역시·창원·세종	광역시·창원·세종	
2023 최저생계비 (안)	연구진안	96,904	4.0		
	비교안	중소도시 96,904	중소도시 4.1		
2020 최저생계비*	84,327	4.3	-	-	
2017 최저생계비	74,117	4.1	-	-	
2013 최저생계비	68,636	4.2	67,247	4.2	
2010 최저생계비	62,196	4.4	62,196	4.5	
2007 최저생계비	53,894	4.3	53,893	4.4	
2004 최저생계비	49,719	4.0	49,001	4.4	
1999 최저생계비	42,749	4.6	42,749	4.7	

주: 1)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이고, 2017년은 연구진안에 의한 최저생계비임.

2)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 2017년 및 2020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전세 기준

*주: 2020년은 표준가구 1안을 제시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3),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외(2020),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7절 최저 교육비

1. 최저 교육비의 개념 및 계측방법

가. 최저 교육비의 개념

최저 교육비의 개념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교육의 개념에 대한 정의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개인적 관점에서 교육은 인간의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자기정체성 확립의 동기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공동체 의식을 부여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며, 경제적 관점에서는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양질의 노동력을 양성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의 교육의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최저 교육수준은 '교육수혜자의 욕구와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교육수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최저 교육수준의 정의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들의 개념 정의를 따라서 최저 교육비를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하였다(김태완 외, 2017, p. 274). 최저교육비의 개념은 2015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선정과 급여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으로 바뀐 이후에도 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한 최저생계비 계측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한편,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되면서 최저교육비와 교육급여에 대한 교육계의 시각이 반영되면서 새로운 개념이 제안되었다. 교육급여 운용의 이론적인 근거로 기능하기 위해서 교육급여의 범위와 대상, 그리고 보장범위를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학생이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소요 교육비(이선호 외, 2018. p.99)로 정의되었다. 기존의 최저교육비 개념이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하나의 비목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었다고 한다면, 이선호 외(2018)에서 제시한 개념은 교육수요자가 학교 현장에서 지출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을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수익자 부담 경비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이 같은 개념적 차이에 따라 최저교육비를 구성하는 항목들에 차이

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 급여적정성 평가를 위한 최저생계비 계측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념을 바탕으로 최저교육비 항목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정의 된 최저 교육비는 공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통계청의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78.3%(전년 대비 2.8%p 증가)¹¹⁸⁾에 달하고(통계청, 2022),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도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학원수강 기준)이 초등학생 66.3%, 중학생 76.4%, 고등학생 63.5%로 나타나 사교육은 이론의 여지 없는 필수재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따르면 자녀가 원하지만 사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에서 12.6%인데 비해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41.0%, 30~50% 가구 34.3%로 각각 나타나 교육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사교육 박탈의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 가구의 사교육비 지원의 욕구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실태를 반영하여 최저 교육수준의 유형을 공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최소한의 사교육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지출을 최저 교육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와 계층 상향이동의 기회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나. 본 연구에서의 최저 교육비 계측방법

본 연구에서 최저교육비를 계측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2017년, 2020년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을 준용하였다. 표준가구 구성에 따라 고등학생 자녀 1인과 중학생 자녀 1인을 대상으로 한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의 사교육 유형을 반영하기 위하여 EBS 교재를 최소한의 기간으로 포함하였고, 예체능 및 교과 관련 학원수강·과외교습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평생학습 개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급여 수급 대상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교육비를 계측하기 위하여 민주노총이나 한

118) 2019년에는 74.8%로 2018년 대비 다시 1.9%p 증가했다(통계청, 2020.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보도자료).

국노총이 표준생계비에서 반영하고 있는 성인교육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저 교육비의 세부영역은 선행연구들과 같이 ‘교재비 - 보충교육비 - 문방구비’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필수품을 선정하여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다.

2. 최저 교육비 계측결과

가. 마켓 바스켓 구성

최저 교육비의 범주는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교재비’, ‘보충교육비’, ‘문방구비’로 구성하였으며, 영역별 필수품을 선정하여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다. 2023년 최저생계비의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은 표본가구에 포함되는 자녀의 학교급과 학년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첫째 자녀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고, 둘째 자녀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다.

2023년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은 역시 고등학생 1명과 중학생 1명으로 구성된 표본가구를 기준으로 한 2020년 마켓 바스켓과 마찬가지로 품목이 48개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범주별로는 교재비 22개(고등학생 12개, 중학생 10개), 보충교육비 4개(고등학생 2개, 중학생 2개), 문방구비 22개(고등학생, 중학생 각 22개)로 이 역시 2020년 최저 교육비 마켓바스켓과 동일하다. 학교급별 품목 수는 고등학생은 35개(교재비 12개, 보충교육비 2개, 문방구비 21개), 중학생은 33개(교재비 10개, 보충교육비 2개, 문방구비 21개)로 구성하였다. 문방구비의 경우는 공책만 고등학생과 중학생을 구분하고 나머지 21개 품목은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범주별 품목들을 살펴보면, 먼저 교재비의 경우는 모두 학교급별로 주요 교과목별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포함시켰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역사, 사회, 과학의 6과목에 대해 참고서와 문제집을, 중학생의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5과목에 대해 참고서와 문제집을 각각 포함시켰다. 학교급별 과목은 대입수학능력시험 과목과 교육과정의 필수교과목을 감안하여 구성하였다. 보충교육비에서는 전술한 것과 같이 80%에 육박하는 사교육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공교육 이외의 교육비 지출 실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학원수강료를 포함시키기에는 공교육 우선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어 EBS 온라인 강의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를 포함하였다. EBS 교재비는 고등학생은 교재비와 같은 6과목에 대하여 1권을, 중학생은 교재비에 포함된 교과목에 역사를 포함한 1종을 추가한 6과목에 대하여 1권을 각각 고려하였다. 보충교육비에는 수익자부담경비로 분류되는 수학여행과 수련회를 포함시켰다. 고등학생은 일반적으로 2학년 때 가는 수학여행비를, 중학생은 매 학년 가는 수련회비를 각각 포함시켰다. 문방구비의 경우 기존의 최저 교육비 마켓바스켓에 포함되어 있던 품목들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전술한 것과 같이 고등학생용과 중학생용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책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1) 필수품 및 사용량(내구연수) 결정

2023년 최저 교육비를 구성하는 마켓 바스켓 필수품 항목 중 2020년 계측 당시 최저 교육비를 구성하였던 품목의 경우는 내구연수와 수량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먼저, 교재비의 경우 고등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은 참고서와 문제집을 각 2권씩을, 역사는 각 1권씩을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중학생의 경우는 국어는 참고서와 문제집을 1년 동안 2권씩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영어와 수학은 참고서 1권, 문제집 2권을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사회와 과학은 1년에 참고서와 문제집을 각 1권씩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보충교육비 중 인터넷 강의에 필요한 교재비는 고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선정된 과목별로 1년에 1권씩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수학여행과 수련회는 1년에 1회씩으로 설정하였다. 문방구비는 전체적으로는 학교급별 차이를 두지 않았지만, 공책만 한 학기에 고등학생 20권, 중학생 15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차이를 두었다. 그리고 2020년의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했던 자를 하나씩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수량이 1개 증가했다.

〈표 6-7-1〉 표준가구 기준 최저 교육비 품목조정 요약(2020년 대비)

계측조사 결과		근거
조정내역	증감액	
자 수량 상향조정	▽113원	1인당 한 개씩 사용 (2020년 1개 → 2023년 2개)

2) 가격 결정 방법

사용량 및 내구연수에 이어 마켓 바스켓 품목별 가격은 범주에 따라 시장가격조사 결과¹¹⁹⁾와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별 지수를 적용하여 설정하였다. 교재비의 경우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시장가격조사를 통해 가격을 설정하였다. 각 과목별 대표적인 출판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온라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보충교육비의 EBS 교재비도 역시 EBS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판매가격을 적용하였다. 수학여행과 수련회의 경우는 광역·세종·창원지역 급지를 기준으로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공시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설정하였다. 수학여행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수련회는 경상남도 교육청의 창원시 소재 중학교의 가격 중 최저가격을 적용하였다. 한편, 문방구비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들의 가격은 2020년 가격에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설정하였다.

한편, 최저 교육비를 구성하는 품목별 가격의 경우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마켓 바스켓 품목에 대해서도 지역별 가격 차이를 두지 않았다.

나. 표준가구의 최저 교육비 마켓바스켓

이상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2023년 최저생계비 중 최저 교육비는 지역 구분 없이 125,501원으로 계측되었다. 참고서와 문제집으로 구성되는 교재비는 50,666원, 보충교육비는 59,399원, 그리고 문방구비는 15,436원으로 각각 계측되었다.

〈표 6-7-2〉 표준가구의 최저 교육비(연구진안)

(단위: 원/월)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교재비	50,666원	50,666원	50,666원	50,666원
보충교육비	59,399원	59,399원	59,399원	59,399원
문방구비	15,436원	15,436원	15,436원	15,436원
합계	125,501원	125,501원	125,501원	125,501원

119) 여기서 사용된 시장가격조사는 '2020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부가적으로 실시한 시장가격조사가 아니라 주로 온라인 구매를 전제로 한 온라인 가격조사 결과임.

3. 기존 최저 교육비와의 비교

2023년 표준가구 기준으로 계측된 최저 교육비는 2020년 최저 교육비 105,694원에 비해 19,807원이 증가(18.7%)하였다. 그리고 2023년 최저 교육비가 전체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5.3%로 나타났다. 2020년 최저 교육비의 비중 5.0%와 비교해보면, 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6-7-3〉 202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안) : 표준가구의 최저 교육비 합계액

(단위: 원/월, %)

급지	서울	경기	광역시·창원·세종	그 외 지역
연구진안	125,501	125,501	125,501	125,501
급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교안	125,501		125,501	125,501

〈표 6-7-4〉 이전 교육비와 비교 : 4인 가구, 광역·창원·세종 및 중소도시 기준

(단위: 원/월, %)

구분	연구진안				중생보위 의결			
	최저 교육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최저 교육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광역시·창원·세종		광역시·창원·세종		광역시·창원·세종		광역시·창원·세종	
2023 최저생계비 (안)	연구진안	125,501	5.2					
	비교안	125,501	5.3					
2020 최저생계비	-	105,694	-	5.0	-	-	-	
2017 최저생계비	-	83,092	-	4.6	-	-	-	
2013 최저생계비	-	73,803	-	4.6	-	74,020	4.5	
2010 최저생계비	-	65,930	-	4.7	-	65,930	4.7	
2007 최저생계비	-	55,302	-	4.5	-	55,302	4.5	
2004 최저생계비	-	46,930	-	4.3	-	46,930	4.3	
1999 최저생계비	-	42,071	-	4.7	-	42,071	4.7	

주: 1)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이고, 2017년은 연구진안에 의한 최저생계비임.

2)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 2017년 및 2020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전세 기준

*주: 2020년은 표준가구 1인을 제시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3),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7), 「201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외(2020), 「202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8절 최저 교양·오락비

1. 최저 교양·오락비의 개념 및 계측방법

가. 최저 교양·오락비의 개념

‘최저 교양·오락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급여의 기준 등)에 의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급여의 질적인 조건에 대응하는 비목이다. ‘문화적인 생활’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 통합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김문길 외, 2020, p.319). 이러한 최저 교양·오락비의 수준은 국민들이 향유하는 평균적 수준에서의 필수적인 소비행태는 물론 여가·문화 생활에 대한 욕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본 연구에서의 최저 교양·오락비 계측방법

본 연구에서 계측한 최저 교양·오락비는 여가·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를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김문길 외, 2020, p.319). 최저 교양·오락비를 계측할 때 ‘최저 수준’과 ‘문화적인 생활’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품목을 결정하는 것은 첨예한 쟁점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계속되었던 최저 교양·오락비 선정방식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김문길 외(2020)의 접근과 같이 최저 교양·오락비의 하위 영역을 ‘서적 및 인쇄물’, ‘교양·오락용품기구’, ‘교양·오락서비스’로 구성한다.

2. 최저 교양·오락비 계측 결과

가. 마켓 바스켓 구성

1) 필수품 및 사용량(내구연수) 결정

본 연구에서 2023년 최저 교양·오락비의 필수품, 사용량 및 내구연수의 선정은

2020년 연구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최저 교양·오락비의 필수품, 사용량 및 내구연수는 2020년 계측 당시 최저 교양·오락비를 구성했던 품목, 사용량 및 내구연수를 기준으로, 「국민생활실태조사」(심층조사) 및 각종 통계자료에 객관적으로 제시된 교양·오락용품 및 문화상품에 대한 소비행태 및 보유실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2020년 당시 가구 보유실태에 근거하여 '교양·오락용품기구'의 하위항목으로 추가된 스피커, 노트북의 품목, 사용량 및 내구연수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한 '교양·오락서비스'의 하위항목으로 2020년 추가된 가족여행의 품목, 사용량 및 내구연수는 2021년 국민여행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그대로 유지하였다.

〈표 6-8-1〉 2021년 국내여행 경험 현황

(단위: %, 회, 천원/인)

구분		2021							
		국내여행 경험률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				1인 평균 국내여행 지출액	
		국내전체	국내관광	국내전체	국내관광	숙박	당일	국내전체	국내관광
전체	소계	93.9	89	5.37	4.35	1.64	2.71	567	505
가구원수	1인	91.5	84.2	4.76	3.73	1.45	2.28	555	476
	2인	92.5	85.8	4.42	3.53	1.18	2.36	460	402
	3인 이상	95.1	91.4	5.93	4.86	1.89	2.97	617	557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83.2	69.3	1.87	1.35	0.42	0.92	143	112
	100~200만원 미만	87.6	78.1	2.72	2.03	0.58	1.44	202	165
	200~300만원 미만	92.5	87.6	4.79	3.78	1.19	2.59	447	378
	300~400만원 미만	94.2	89.4	5.58	4.44	1.52	2.92	542	478
	400~500만원 미만	95.7	92.2	5.74	4.61	1.72	2.89	566	501
	500~600만원 미만	96	93.5	6.05	4.99	1.99	3	663	595
	600만 원 이상	95.9	90.9	6.62	5.6	2.44	3.16	867	799

주: 국내여행 경험률은 12월 조사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국내여행을 경험한 비율임.
 자료: (국내여행 경험률)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9196&conn_path=I3에서 2023.2.27. 인출);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9225&conn_path=I3에서 2023.2.27. 인출);
 (1인 평균 국내여행 지출액)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9314&conn_path=I3에서 2023.2.27. 인출)

2) 가격 결정 방법

최저 교양·오락비의 품목별 가격은 2020년 기준 필수품에 대해 통계청 소비자물가

지수의 변화를 적용하였다. 소비물가지수 품목이 존재하지 않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조사 및 관련 규정 등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2023년 최저 교양·오락비의 총 20개 품목 중에서 17개 품목의 가격을 조정하였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결과 가격이 증가한 품목은 도서(성인·청소년), 컴퓨터 소모품(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저장장치, 프린터토너, 스피커, 영화관람(성인, 청소년), 가족여행, 사진촬영 및 현상 등 11개 품목이었다. 시장가격조사를 반영한 결과 영화관람(성인·청소년) 품목의 가격이 증가하였다. 일비, 식비, 숙박비 등으로 구성된 가족여행의 단가는 2023년 3월 2일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의 개정으로 일비 및 식비가 기존 2만원에서 2만 5천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가격이 증가하였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결과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TV, 컴퓨터, 노트북의 3개 품목이었다.

〈표 6-8-2〉 공무원 여비규정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주: 2023년 3월 2일 개정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97%AC%EB%B9%84%EA%B7%9C%EC%A0%95>에서 2023.3.15. 인출)

〈표 6-8-3〉 가족여행 마켓 바스켓

구분	단가(원)	숙박비 일비 식비			내구연수 (연)	수량 (회)	마켓바스켓 (원/월)
		숙박비	일비	식비			
숙박(1박2일)	500,000	100,000원 × 1일	25,000원 × 4인×2일	25,000원 × 4인×2일	1	1	41,667

나. 표준가구의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바스켓

최저 교양·오락비의 마켓 바스켓 구성 항목은 2020년 20개 품목에서 2023년 20개로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가격 결정 방법은 ‘서적 및 인쇄물’, ‘교양오락용품기구’는 소

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였고, ‘교양오락서비스’는 시장조사 결과, 법정가격,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적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에 의해 연구진이 제시하는 2023년 최저생계비의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8-4〉 최저 교양·오락비 조정 품목 요약(2020년 대비)

계측 결과	계측조사 결과		근거
	조정내역	증감액	
86,966원	영화관람 단가 - 성인, 청소년 각 2회	↑ 2,667원	시장 가격조사
	가족여행 단가	↑ 6,667원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표 6-8-5〉 표준가구의 최저 교양·오락비(연구진안)

(단위: 원/월)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서적 및 인쇄물	6,162	6,162	6,162
교양오락용품기구	17,188	17,188	17,188
교양오락서비스	63,616	63,616	63,616
최저 교양·오락비	86,966	86,966	86,966

3. 기존 최저 교양·오락비와의 비교

2023년 표준가구 기준으로 계측된 최저 교양·오락비는 86,966원으로, 2020년과 비교하면 11.4% 증가한 결과이다. 2020년 표준가구 기준으로 계측된 최저 교양·오락비는 78,071원이었다. 2023년 최저 교양·오락비 86,966원의 전체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 기준 3.6%로, 이는 2020년 최저생계비의 교양·오락비 구성 비율 3.7%에 비해 0.1% 감소한 것이다.

〈표 6-8-6〉 202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안) : 표준가구의 최저 교양·오락비 합계액

(단위: 원/월, %)

급지	서울	경기	광역시·창원·세종	그 외 지역
연구진안	86,966	86,966	86,966	86,966
급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교안	86,966	86,966	86,966	

〈표 6-8-7〉 이전 교양·오락비와 비교 : 4인 가구, 광역·창원·세종 및 중소도시 기준

(단위: 원/월, %)

구분		연구진안		중생보위 의결	
		최저 교양·오락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최저 교양·오락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광역시·창원·세종	광역시·창원·세종	광역시·창원·세종	광역시·창원·세종
2023 최저생계비 (안)	연구진안	86,966	3.6		
	비교안	중소도시 86,966	중소도시 3.6		
2020 최저생계비*		78,071	3.7		
2017 최저생계비		35,347	2.0		
2013 최저생계비		35,418	2.2	31,018	1.9
2010 최저생계비		30,483	2.1	27,117	1.9
2007 최저생계비		30,031	2.4	24,062	2.0
2004 최저생계비		28,945	2.4	24,961	2.3
1999 최저생계비		19,917	2.1	19,917	2.2

주: 1)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 이고, 2017년은 연구진안에 의한 최저생계비임.

2)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 2017년 및 2020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전세 기준

*주: 2020년은 표준가구 1안을 제시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3),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외(2020),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9절 최저 교통·통신비

1. 최저 교통·통신비의 개념 및 계측방법

가. 최저 교통·통신비의 개념

교통·통신비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및 사회적 교류를 영위하기 위한 지출항목으로써 가구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지속성을 견지하기 위해 최저 교통·통신비를 ‘일상적인 경제활동, 사회적 교류를 위한 교통·통신수단 이용에 대한 최소 비용’으로 정의한다(김문길 외, 2020, p.325).

나. 본 연구에서의 최저 교통·통신비 계측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 최저생계비 계측과 동일한 방식으로 최저 교통·통신비를 계측하였다. 먼저 4인 표준가구의 경제·사회활동 상태와 교통·통신 이용에 대해 가정한다. 다음으로 이들의 교통·통신수단의 품목과 사용량, 내구연수를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통·통신수단의 단가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인 표준가구의 경제·사회활동 상태와 교통·통신 이용에 대해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있다. 가구주는 가구의 경제생활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 5일 출·퇴근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배우자는 가사노동을 하는 전업주부이고, 학령기 자녀(2명)는 도보로 통학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단, 가장 외 가구원인 배우자 및 자녀는 버스를 이용하여 외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통신 이용과 관련된 가정에 있어서 2020년 연구와 달라진 점은 가정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전 가구원이 휴대전화(스마트폰)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가정용 일반전화를 주된 통신수단으로 활용하며, 배우자를 제외한 가구주와 학령기 자녀(2명)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2022년 가정용 전화 보유 현황 및 2021년 스마트폰 보유실태를 반영하여 배우자를 포함한 전 가구원이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 최저 교통·통신비 계측 결과

가. 마켓 바스켓 구성

1) 필수품 및 사용량(내구연수) 결정

최저 교통·통신비의 하위 영역은 기존 분류 방식과 동일하게 통계청의 지출목적별 부문 구분 방식을 따라 ‘교통비’ 및 ‘통신비’로 구분하며, 영역에 따라 필수품을 선정하여 마켓바스켓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계측 당시 최저 교통·통신비를 구성하였던 품목을 기준으로 필수품을 선정하였다. 2023년 최저 교통·통신비 계측에서 변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용 전화 보유실태를 고려하여 ‘집전화요금’의 7가지 품목(기본료, 시내통화료, 시외통화료, 이동통신통화료, 부가세, 전화기 이전비, 전화기 구입비)을 삭제하였다. 2022년 방송매체 이용 행태조사의 가구 매체 보유현황에 따르면, 가정용 전화 보유율¹²⁰⁾은 22.2%로 전년(26.1%)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당 보유 대수는 0.23대로 보고되었다. 또한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의 4인 가구 심층조사에 따르면 유선전화를 보유한 가구는 10%,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90%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유 실태를 고려하여 ‘집전화요금’ 품목을 제외하고 ‘휴대전화요금’ 품목에서 사용량을 증가시켰다.

둘째, 최저 교통·통신비에서 ‘집전화요금’ 품목을 삭제하였으므로, ‘휴대전화요금’의 4가지 품목(휴대폰 사용요금, 휴대폰 부가세, 휴대폰 구입비, 이동통신 가입비)에서 배우자의 사용량을 추가하였다. 2020년 최저 교통·통신비 계측 당시에는 휴대폰 사용자를 가구주와 자녀 2명을 포함하여 가구 내 3명으로 가정하였다. 하지만 2021년 스마트폰 보유 여부 현황을 살펴보면, 전 국민의 92.8%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여성의 경우 91.1%, 40대의 경우 99.2%, 전업주부의 경우 86.9%, 배우자의 경우 95.7%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유 실태를 고려하여 ‘휴대전화요금’의 사용량은 배우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기존 3회(성인 1회, 자녀 2회)에서 4회(성인 2회,

120) 가정용 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총 가구수로 나눈 비율임

자녀 2회)로 증가시켰다.

셋째, 변경된 인터넷 이전비 정책을 수용하였다. 이전까지는 무료로 적용되었던 KT의 인터넷 이전비(출동비)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항목의 사용량을 6년에 1회로 변경하였다.

〈표 6-9-1〉 2021년 스마트폰 보유 여부

(단위: %, 회, 천원/인)

전체	성별		연령	직업	가구주와의 관계
	남	여	40대	전업주부	배우자
92.8	94.5%	91.1%	99.2%	86.9%	95.7%

자료: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5&tblId=D_T_405001_1182&conn_path=13)에서. 2023.03.15. 인출

2) 가격 결정 방법

최저 교통·통신비의 가격은 휴대폰 부가세, 이동통신 가입비, 인터넷 이전비 등과 같이 외부적으로 주어진 경우는 그대로 반영하였다. 대중교통 단가는 충북 시지역 버스요금을 반영하되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할인가를 적용하였다. 택시비, 친지 방문 및 국내 여행을 위한 시외교통비, 휴대폰 구입비에 대해서는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가격을 설정하였다.

휴대전화요금은 2020년 최저생계비 계측 당시 사용했던 요금제 규격을 수용하여 휴대전화는 LTE 스마트폰을, 휴대전화 사용요금은 알뜰폰(100MB, 60분 통화, 50건 메시지, 24개월 약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휴대전화의 인터넷 사용은 우선적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나. 표준가구의 최저 교통·통신비 마켓 바스켓

2023년 최저 교통·통신비 마켓 바스켓 구성 항목은 2020년 22개 품목에서 2023년 15개로 감소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보유현황 및 사용실태에 따라 '집전화요금'의 7개 품목을 제외하고 '휴대전화요금'의 4가지 품목에서 배우자의 사용량을 추가한 것이다. 휴대폰 사용요금은 2020년과 동일하게 시장지배 사업자의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이전까지는 무료로 적용되었던 KT의 인터넷 이전비(출동비)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항목의 사용량을 6년에 1회로 반영했다.

〈표 6-9-2〉 최저 교통·통신비 조정품목 요약(2020년 대비)

계측 결과	계측조사 결과		근거
	조정내역	증감액	
196,450원	집전화요금 제외 -기본료 -시내통화료 -시외통화료 -이동통신통화료 -부가세 -전화기 이전비 -전화기 구입비	↓ 10,812원	가정용 전화 보유율, 가구당 가정용 전화 보유대수, 시내전화 가입 현황
	휴대전화요금 사용량 추가(배우자) -휴대폰 사용요금(성인) 1회 -휴대폰 부가세(성인) 1회 -휴대폰 구입비 1회 -이동통신 가입비 1회	↑ 12,468원	스마트폰 보유 여부 현황
	인터넷 이전비	↑ 382원	변경된 이전비(출동비) 적용

이상과 같은 방법에 의해 연구진이 산출한 2023년 최저 교통·통신비의 마켓 바스켓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교통비는 표준가구 122,293원, 통신비는 74,157원이다.

〈표 6-9-3〉 표준가구의 최저 교통·통신비(연구진안)

(단위: 원/월)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교통비	122,293	122,293	122,293
통신비	74,157	74,157	74,157
최저 교통·통신비	196,450	196,450	196,450

3. 기존 최저 교통·통신비와의 비교

2023년 표준가구 기준으로 계측된 최저 교통·통신비는 196,450원으로, 2020년과 비교하면 2.3% 증가한 결과이다. 2020년 중소도시 표준가구 기준으로 계측된 최저 교

통·통신비는 192,032원이었다. 2023년 중소도시 기준 최저 교통·통신비 196,450원의 전체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8.2%로, 이는 2020년 최저생계비의 교통·통신비 구성 비율 9.0%에 비해 0.8% 감소한 것이다.

〈표 6-9-4〉 202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안) : 표준가구의 최저 교통·통신비 합계액

(단위: 원/월, %)

급지	서울	경기	광역시·창원·세종	그 외 지역
연구진안	196,450	196,450	196,450	196,450
급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교안	196,450		196,450	196,450

〈표 6-9-5〉 이전 최저 교통·통신비와 비교 : 4인 가구, 광역·창원·세종 및 중소도시 기준

(단위: 원/월, %)

구분	연구진안	연구진안		중생보위 의결	
		최저 교통·통신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최저 교통·통신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광역시·창원·세종	광역시·창원·세종	광역시·창원·세종	광역시·창원·세종
2023 최저생계비 (안)	연구진안	196,450	8.1		
	비교안	중소도시 196,450	중소도시 8.2		
	2020 최저생계비*	192,032	9.0		
	2017 최저생계비	173,802	9.6		
	2013 최저생계비	151,144	9.2	151,144	9.4
	2010 최저생계비	142,600	10.1	142,600	10.2
	2007 최저생계비	141,559	11.3	129,275	10.5
	2004 최저생계비	129,954	10.6	102,564	9.3
	1999 최저생계비	56,005	6.0	56,005	6.2

주: 1)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이고, 2017년은 연구진안에 의한 최저생계비임.

2)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 2017년 및 2020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전세 기준

*주: 2020년은 표준가구 1안을 제시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3),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외(2020),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0절 최저 기타소비지출

1. 최저 기타소비지출의 개념 및 계측방법

가. 최저 기타소비지출의 개념

최저 기타소비지출은 마켓 바스켓을 구성했던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보건 의료비, 교육비 등의 주요한 비목 이외에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태완 외, 2017, p.287; 김문길 외, 2020, p.330). 따라서 최저 기타소비지출의 마켓바스켓은 이전 비목에서 포괄하지 못하였으나 최소한의 위생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품목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품목을 포함한다.

나. 최저 기타소비지출 계측방법

최저 기타소비지출의 사용량 및 내구연수는 2020년까지 지속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계측기준을 준수하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가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가격은 중(하)품을 기준으로 통계청 물가자료 및 시장가격조사의 대푯값을 활용해서 결정하여, 총 27개 품목으로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였다.

기타소비지출의 하위 영역은 2020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통계청의 중분류 기준에 따라 이미용품, 이미용서비스, 장신구, 잡비로 구분되며, 각 영역별로 필수품을 선정하였다. 먼저 품목 결정은 필수품 선정원칙에 따라 결정하되, 표준가구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이발비용이나 미용비용에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2. 최저 기타소비지출 계측결과

가. 마켓 바스켓 구성

1) 필수품 선정방법

필수품은 2020년 전물량 방식 기타소비지출의 구성을 기준으로 2020년 표준가구 2안에서 고려하였던 초등학생이 제외되어 아동 관련 품목을 제외하고 총 27개 품목으로 구성하였다.

2)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방법

2020년 이후 삶의 질 개선을 고려하여 필수품의 내구연수를 현실화¹²¹⁾ 한 바 있다. 2023년의 경우 2020년 조정된 내구연수를 준용하였으며, 이미용품 내 고려하지 않았던 린스를 고려하여 샴푸의 내구연수와 사용량을 조정하였다. 기존 샴푸 1종에 대해 2월 1통에서 샴푸와 린스 2종을 고려하여 3월 2통으로 내구연수를 현실화하였다.

3) 가격 결정방법

품목별 가격은 중(하)품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별 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동일 품목이 부재한 경우 총지수를 활용하였다. 일부 품목의 경우는 「국민생활실태조사(가격조사)」결과 참조하였다.

먼저 이미용서비스 내 남성 이발비와 여성 미용비의 경우 「국민생활실태조사」의 시장가격조사 결과의 대푯값(평균값, 중간값, 최빈값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남성 이발비의 경우 시장가격조사 결과 평균값 12,773원, 중간값 12,000원, 최빈값 12,000원으로, 여성 미용비의 경우 평균값 13,845원, 중간값 13,000원, 최빈값 15,000원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남성 이발비의 경우 실제 남성 전용 미용실의 시장가

121) 이미용품 중에서는 머리빗의 내구연수를 5년에서 2년으로, 장신구는 우산을 3년에서 2년으로, 성인용 손목시계를 10년에서 5년으로, 지갑을 4년에서 3년으로 조정(김문길 외, 2020, p.331)

격을 감안(추가 인터넷 시장조사, 평균 10,000원 정도)하여 본 최저생계비가 중하품으로 설정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남자 성인(고등학생 포함) 이발비를 기존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여성 성인(중학생) 미용비를 기존 12,877원에서 13,000원으로 조정하였다.

〈표 6-10-1〉 최저 기타소비지출 이미용서비스 관련 품목 가격결정

(단위: 원/회)

	평균값	중간값	최빈값	인터넷시장가격조사
이발비	12,773	12,000	12,000	10,000
미용비	13,845	13,000	15,000	13,000

주: 2023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가격조사)

또한 우산(3년 → 2년), 손목시계(10년 → 5년), 지갑(4년 → 3년)의 경우 2020년 계측시 내구연수를 조정한 점에서 2023년 계측시에는 소비자물가를 반영하여 단가만을 조정하였다. 손톱깎이, 머리빗, 교제비, 친목단체비, 자녀용돈, 친지방문비 등의 경우 해당품목의 개별 소비자물가지수가 공표되지 않는 점에서 소비자물가 총지수를 활용하여 단가를 조정하였음을 밝힌다.

나. 표준가구의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연구진에서 제시한 2023년 최저생계비의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 바스켓은 다음과 같다. 2020년 연구의 품목 수를 동일하게 적용하되 소비자물가지수, 시장가격조사 등을 반영하여 내구연수, 사용량, 가격에 변동이 발생하였다.

〈표 6-10-2〉 최저 기타소비지출 조정품목 요약(2020년 대비)

조정품목	조정내역	2020년	2023년	증감액	근거
이미용품	- 샴푸 내구연수 및 사용량 조정(2월,1통→3월,2통)	2,386원	4,001원	△1,615원	- 가계동향조사 품목 및 생활실태 반영
	- 그 외 품목 가격 조정	23,471원	26,425원	△2,954원	- 그 외 품목 CPI 활용 가격 조정
이미용서비스	- 해당 품목 가격 조정 • 남성 이발비 4회 8,000원 → 10,000원	10,667원	13,333원	△2,666원	- 남성 이발비, 여성 미용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가격 조정 - 그 외 품목 CPI 활용 가격 조정
	• 여성 미용비 3회 12,877원 → 13,000원	6,438원	6,500원	△62원	
	- 그 외 품목 가격 조정	19,715원	22,492원	△2,777원	
장신구	- 해당 품목 가격 조정	6,502원	6,931원	△429원	- 해당 품목 CPI 활용 가격 조정
잡비	- 해당 품목 가격 조정	70,094원	75,604원	△5,510원	- 해당 품목 CPI 활용 가격 조정
기타소비지출 전체		139,273원	155,286원	△16,013원	- 2020년 대비 11.5% ↑

주: 총 지수 2020년 1월(100.09) 대비 2023년 1월(110.10) 10.0% ↑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비목 2020년 1월(99.40) 대비 2023년 1월(113.18) 13.9% ↑

이상과 같은 방법에 의해 연구진이 산출한 2023년 최저 기타소비지출의 마켓 바스켓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미용품비는 30,426원, 이미용서비스비는 42,325원, 장신구비는 6,931원, 잡비는 75,604원으로 총 155,286원이며, 표준가구별 기타소비지출의 지역별 차이는 없다.

〈표 6-10-3〉 표준가구의 최저 기타소비지출(연구진안)

(단위: 원/월)

구분	연구진안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미용품비	30,426원	30,426원	30,426원
이미용서비스비	42,325원	42,325원	42,325원
장신구비	6,931원	6,931원	6,931원
잡비	75,604원	75,604원	75,604원
최저 기타소비지출	155,286원	155,286원	155,286원

3. 기존 최저 기타소비지출과의 비교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계측된 2023년 최저 기타소비지출은 지역구분과 관계없이 표준가구 155,286원으로 2020년에 비해 각각 11.5% 증가한 것이다.

〈표 6-10-4〉 202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안) : 표준가구의 최저 기타소비지출 합계액

(단위: 원/월, %)

급지	서울	경기	광역시·창원·세종	그 외 지역
연구진안	155,286	155,286	155,286	155,286
급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교안	155,286	155,286	155,286	

〈표 6-10-5〉 이전 기타소비지출과 비교 : 4인 가구, 광역·창원·세종 및 중소도시 기준

(단위: 원/월, %)

구분		연구진안		중생보위 의결	
		최저 기타소비지출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최저 기타소비지출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광역시·창원·세종	광역시·창원·세종	광역시·창원·세종	광역시·창원·세종
2023 최저생계비 (안)	연구진안	155,286	6.4		
	비교안	중소도시 155,286	중소도시 6.5		
	2020 최저생계비*	139,273	6.5		
	2017 최저생계비	98,166	5.4		
	2013 최저생계비	90,237	5.5	90,237	5.6
	2010 최저생계비	86,072	6.1	82,305	5.9
	2007 최저생계비	77,292	6.2	75,260	6.1
	2004 최저생계비	67,870	5.5	67,870	6.2
	1999 최저생계비	63,979	6.9	52,679	5.8

주: 1)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 이고, 2017년은 연구진안에 의한 최저생계비임.

2)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 2017년 및 2020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전세 기준

*주: 2020년은 표준가구 1안을 제시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3),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외(2020),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1절 최저 비소비지출

1. 최저 비소비지출의 개념 및 계측방법

가. 개념

비소비지출이란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의미하며, 가계의 유지와 경제·사회·문화 활동 등의 소비에 필요한 지출(소비지출) 이외의 지출이다(김태완 외, 2017, p.291). 즉, 최저 비소비지출이란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등 가계지출 중 직접적인 소비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써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이다.

나. 본 연구에서의 최저 비소비지출 계측방법

이전 최저 비소비지출 계측 원칙을 따라 조세와 사회보장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세는 근로소득세(소득분 지방소득세 포함), 균등할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를 포함하고, 사회보장분담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다. 사용량, 내구연수, 가격은 각 항목들에 해당하는 법률 및 조례에서 규정된 부과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2020년까지 지속되어 온 방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조세의 종류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파악하여 비소비지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구성하였으며, 이는 기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계측기준과 준수하였다. 표준가구의 가구주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가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에 포함되는 항목 중 근로소득세는 소득을 최저임금수준으로 설정하였다. 균등분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므로 지역별 세액 차이가 존재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로 행정구역을 다수 무작위로 추출하여 2023년 기준 각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광역/세종/창원)의 주민세 평균으로 결정하였다. 사회보장분담금에 포함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최저임금

을 받는 임금근로자라는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가정에 따랐다. 주택유형을 최저 주거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아파트 전세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지역별 차등을 두지 않았다. 소득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각 항목의 적용 요율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었으며, 위와 같이 추정된 각 품목의 부담액을 합산하여 최저 비소비지출을 계측하였다.

2. 최저 비소비지출 계측결과

가. 마켓 바스켓 구성

1) 필수품 및 사용량(내구연수) 결정

최저 비소비지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품의 항목들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표준가구가 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사회보장분담금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법률에 따라 필수품을 선정하였다. 최저 비소비지출의 사용량과 내구연수는 각 항목별 법률과 조례에서 규정된 부과 및 납부기준에 의해 사용량과 내구연수를 결정하였다. 먼저 조세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세(소득분지방소득세 포함)는 월 1회 납부하는 것으로 하였다. 균등분주민세는 연간 1회, 재산세는 연간 2회 납부하되 재산세는 표준가구가 주택을 비소유하는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사회보장분담금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부담금은 각각 월 1회 납부한다.

2) 가격 결정방법

본 연구에서 표준가구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최저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로 설정하였다. 2020년까지 최저 비소비지출 계측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또한 표준가구의 대표 주거형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광역/세종/창원 모두 전세로 하였다.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의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은 2023년 최저임금인 2,010,580원으로 하였다. 납부기준이 되는 월 소득액을 최저임금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기존 최저 비소비지출 계측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세와 사회보장분담금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조세 중 근로소득세(근로소득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10%의 소득분 지방소득세 포함)의 경우 4인 가구(부부 및 6세 이하 자녀 2명) 표준가구의 근로소득은 최저임금 기준 약 월 180만은 면세점 이하가 되므로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균등분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민세표에 의거하여 대도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 3개 지역으로 구분한 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있는 균등분주민세의 평균값(대도시 10,831원, 중소도시 11,015원, 농어촌 10,910원, 광역/세종/창원 10,962원)으로 산출하였다. 재산세(건물과 토지를 합산)는 전국 모두 주택 비소유로 인하여 납부하지 않는다.

사회보장분담금은 가구의 근로소득은 최저임금(월 최저임금 2,010,580원)을 기준으로 각 항목의 적용 요율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월 소득액의 4.5%를 납부하는 것으로 적용하였으며,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월 소득에 3.545%를 적용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12.8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계산하였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에 의거 월 소득액의 0.9%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산재보험은 고용주 부담이므로 제외한다.

나. 표준가구의 최저 비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조세와 사회보장분담금의 경우 각 항목들에 해당하는 법률 및 조례에서 규정된 부과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사용량 및 내구연수 등이 2017년과 동일하다. 또한 각 가구의 경제활동상태가 임금근로자인 것과 대표주거유형을 전세로 가정하였으므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금액이 동일하게 산출되었다. 다만 균등분주민세의 경우 지역별 차이로 인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의 금액이 상이하게 산출되었다.

〈표 6-11-1〉 최저 비소비지출 조정품목 요약(2017년 대비)

계측 결과	계측조사 결과		근거
	조정내역	증감액	
(중소도시 기준) 188,917원	균등분주민세 가격조정 783원 → 918원	△135원	주민세표에 의거하여 계산한 결과
	국민연금 가격상향, 전국동일 80,789원 → 90,476원	△9,687원	기준 임금상승으로 인한 납부금 상승
	건강보험 가격상향, 전국동일 66,011원 → 79,428원	△13,417원	기준 임금상승과 요율상승으로 납부금 상승
	고용보험 가격상향, 전국동일 14,362원 → 18,095원	△3,733원	기준 임금상승과 요율상승으로 납부금 상승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정된 2023년 최저 비소비지출(연구진안)은 대도시 188,902원, 중소도시 188,917원, 농어촌 188,908원, 광역/세종/창원 188,912원이다.

〈표 6-11-2〉 표준가구의 최저 비소비지출(연구진안)

(단위: 원/월)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광역/세종/창원
조세	903	918	909	913
사회보장분담금	187,999	187,999	187,999	187,999
합계	188,902	188,917	188,908	188,912

3. 기존 최저 비소비지출과의 비교

2023년 최저 비소비지출 중소도시 기준 188,917원으로 2020년 최저 비소비지출 대비 16.7% 증가하였다. 2017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데에는 각 항목의 산출기준이 된 월소득 금액인 최저임금의 상승의 영향이 크다. 중소도시 기준으로 전체 최저생계비 대비 최저 비소비지출의 비율은 7.6%로 나타났으며,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 이후 중소도시 기준 최저 비소비지출이 전체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6-11-3〉 202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안) : 표준가구의 최저 비소비지출 합계액

(단위: 원/월, %)

급지	서울	경기	광역시·창원·세종	그 외 지역
연구진안	188,499원	188,942원	188,912원	188,908원
급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교안	188,902원		188,917원	188,908원

〈표 6-11-4〉 이전 비소비지출과 비교 : 4인 가구, 광역·창원·세종 및 중소도시 기준

(단위: 원/월, %)

구분		연구진안		중생보위 의결	
		최저 비소비지출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최저 비소비지출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광역시·창원·세종	광역시·창원·세종	광역시·창원·세종	광역시·창원·세종
2023 최저생계비 (안)	연구진안	188,912원	7.8		
	비교안	중소도시	중소도시		
			188,917원	7.9	
	2020 최저생계비*	161,945	7.6		
	2017 최저생계비	114,443	6.3		
	2013 최저생계비	83,498	5.1	83,498	5.2
	2010 최저생계비	67,293	4.7	67,293	5.9
	2007 최저생계비	53,887	4.3	51,187	6.1
	2004 최저생계비	44,463	3.6	26,463	6.2
	1999 최저생계비	33,940	3.7	19,720	5.8

주: 1) 1999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 이고, 2017년은 연구진안에 의한 최저생계비임.

2)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중소도시(전세) 기준. 2017년 및 2020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전세 기준

*주: 2020년은 표준가구 1안을 제시

자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05),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외(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3),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외(2020),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2절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여기에서는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 장의 제1절에서 제11절까지 계측한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확인한다. 마켓 바스켓 결정원칙 등 최저생계비 계측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여 산출한 11개 비목별 최저 비용을 합산하는 전물량 방식에 의한 2023년 지역구분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다.

4인 표준가구에 대해 4급지를 적용한 최저생계비 연구진안은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이 각각 2,736,294원, 2,593,239원, 2,429,672원, 2,280,843원으로 계측되었다. 광역·세종·창원의 최저생계비 대비 서울의 최저생계비는 약 113%, 경기는 약 107%, 그 외 지역은 약 94%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세종·창원 기준으로 식료품비가 894,118원(36.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거비(16.2%), 교통통신비(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인 표준가구에 대해 과거의 3급지 기준을 적용한 비교안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최저생계비는 각각 2,529,148원, 2,386,525원, 2,209,798원으로 계측되었다. 대도시의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의 106.0%이고, 농어촌은 92.6%로 나타났다. 연구진안과 마찬가지로 식료품비의 비중이 전체의 37.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주거비(15.1%), 교통통신비(8.2%), 비소비지출(7.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역·세종·창원의 최저생계비 대비 3급지 기준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비교해 보면 대도시는 광역·세종·창원의 약 104%, 중소도시는 98.2%, 농어촌은 약 9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2-1〉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 연구진안과 비교안

(단위: 원/월, %)

연구진안(4급지) : 전물량 방식에 의한 2023년 지역별 비목별 4인가구 최저생계비

구분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그외지역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식료품비	894,118	32.7	894,118	34.5	894,118	36.8	894,118	39.2
주거비	702,910	25.7	560,670	21.6	394,724	16.2	253,083	11.1
광열수도	122,759	4.5	122,263	4.7	124,251	5.1	118,191	5.2
가구집기	60,337	2.2	59,575	2.3	59,996	2.5	58,872	2.6
피복신발	106,564	3.9	106,564	4.1	106,564	4.4	106,564	4.7
보건의료	96,904	3.5	96,904	3.7	96,904	4.0	96,904	4.2
교육	125,501	4.6	125,501	4.8	125,501	5.2	125,501	5.5
교양오락	86,966	3.2	86,966	3.4	86,966	3.6	86,966	3.8
교통통신	196,450	7.2	196,450	7.6	196,450	8.1	196,450	8.6
기타소비	155,286	5.7	155,286	6.0	155,286	6.4	155,286	6.8
비소비	188,499	6.9	188,942	7.3	188,912	7.8	188,908	8.3
합계	2,736,294	100.0	2,593,239	100.0	2,429,672	100.0	2,280,843	100.0
광역시/세종/창원=100	112.6		106.7		100.0%		93.9%	

비교안(3급지) : 전물량 방식에 의한 2023년 지역별 비목별 4인가구 최저생계비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식료품비	894,118	35.4	894,118	37.5	894,118	40.5
주거비	501,404	19.8	359,994	15.1	179,225	8.1
광열수도	117,141	4.6	116,398	4.9	121,149	5.5
가구집기	59,912	2.4	59,427	2.5	58,727	2.7
피복신발	106,564	4.2	106,564	4.5	106,564	4.8
보건의료	96,904	3.8	96,904	4.1	96,904	4.4
교육	125,501	5.0	125,501	5.3	125,501	5.7
교양오락	86,966	3.4	86,966	3.6	86,966	3.9
교통통신	196,450	7.8	196,450	8.2	196,450	8.9
기타소비	155,286	6.1	155,286	6.5	155,286	7.0
비소비	188,902	7.5	188,917	7.9	188,908	8.5
합계	2,529,148	100.0	2,386,525	100.0	2,209,798	100.0
중소도시=100	106.0		100.0		92.6	
광역시/세종/창원=100	104.1		98.2		91.0	

〈표 6-12-2〉 2020년 대비 2023년 비교안의 최저생계비 비목별 증가율(중소도시 4인가구 기준)

(단위: 원/월, %)

구분	2020년 연구진안		2023년 비교안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2020년 대비 증가율
식료품비	771,345	36.1	894,118	37.5	15.9
주거비	340,582	16.0	359,994	15.1	5.7
수도광열비	102,349	4.8	116,398	4.9	13.7
가구집기비	53,463	2.5	59,427	2.5	11.2
피복신발비	98,499	4.6	106,564	4.5	8.2
보건의료비	91,239	4.3	96,904	4.1	6.2
교육비	105,694	5.0	125,501	5.3	18.7
교양오락비	78,071	3.7	86,966	3.6	11.4
교통통신비	192,032	9.0	196,450	8.2	2.3
기타소비지출	139,273	6.5	155,286	6.5	11.5
비소비지출	161,945	7.6	188,917	7.9	16.7
합계	2,134,492	100.0	2,386,525	100.0	11.8

2022년까지 적용되었던 3급지 기준이 2023년부터 4급지 기준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 수행된 연구에서 적용된 3급지를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와 현행 4급지 기준의 최저생계비와는 직접적 비교는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적 비교의 연속성 제고를 위해 4급지 기준의 최저생계비 계측과 함께 비교 차원의 3급지 기준의 최저생계비도 계측하였다. 이러한 비교 차원에서 2020년 연구진안(표준가구 1인) 최저생계비와 2023년 최저생계비 비교안을 각 비목과 전체 최저생계비 수준 차원에서 비교해 보았다. 2023년의 경우 2020년보다 최저생계비가 약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표준가구의 경우 자녀들의 연령대가 2020년 표준가구 자녀들의 연령보다 1~2세 증가했기 때문에¹²²⁾ 교육비의 증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 또한 물가인상을 반영하며 식료품비 역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23년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면서 옷걸이, 물티슈, 인터넷 이전비 등 신규 품목을 포함하고 일부 품목의 내구연수와 사용량을 현실화하는 등 지난 3년간 반영한 삶의 질 개선분이 고려된 것이 반영되었다.

122) 표준가구의 구성 비교

구분	표준가구의 구성
2023년 표준가구	부:47세 모:46세 1자(남):17세 2자(여):15세
2020년 표준가구	부:47세 모:44세 1자(남):16세 2자(여):13세

다음은 1인부터 6인까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가구규모를 감안한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하였다. 2009년 이후 OECD의 가구균등화지수를 공식적으로 활용되어 왔지만(김태완 외, 2017, pp.318-320), 그간 제기되어 온 1~2인 가구 과소추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가구균등화지수를 변경하기로 결정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7.31.).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구균등화지수를 계측하지 않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연구진안의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계측 결과, 연구진안의 광역/세종/창원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934,758원이고 비교안의 중소도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918,159원이다.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차이를 보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가장 크고, 3인 가구 이후부터는 그 차이가 축소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1~2인 가구 과소추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구균등화 지수가 조정되는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의 경우 3인 가구 이상부터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의 차이가 동일하였지만, 2023년의 경우 2021년부터 적용된 가구균등화 지수의 조정이 반영되어 3인 가구 이상부터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차이가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12-3〉 2023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 적용 가구균등화지수		0.385	0.640	0.821	1.000	1.172	1.338
연구진안	서울 (차이)	1,052,724	1,750,994	2,246,814	2,736,294	3,207,321	3,661,917
			698,270	495,820	489,480	471,027	454,596
	경기 (차이)	997,687	1,659,451	2,129,349	2,593,239	3,039,640	3,470,470
			661,764	469,898	463,890	446,401	430,830
광역/세종/창원	(차이)	934,758	1,554,782	1,995,042	2,429,672	2,847,917	3,251,572
			620,024	440,259	434,630	418,245	403,655
	기타지역 (차이)	877,500	1,459,544	1,872,836	2,280,843	2,673,468	3,052,398
		582,045	413,291	408,007	392,625	378,929	
비교안	대도시 (차이)	973,029	1,618,438	2,076,723	2,529,148	2,964,516	3,384,698
			645,409	458,285	452,425	435,368	420,182
	중소도시 (차이)	918,159	1,527,172	1,959,613	2,386,525	2,797,342	3,193,829
			609,013	432,441	426,912	410,817	396,487
농어촌 (차이)		850,167	1,414,082	1,814,500	2,209,798	2,590,193	2,957,320
			563,915	400,418	395,298	380,395	367,126

(단위: 원, %)



제7장

대안적 방식을 통한 2023년 최저생계비

제1절 박탈지표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제2절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제3절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제 7 장

대안적 방식을 통한 2023년 최저생계비

제1절 박탈지표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1. 박탈지표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 방법

빈곤층 욕구별 실태에서는 박탈지표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박탈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마켓바스켓을 활용한 최저생계비 외에 대안적 방식을 통한 최저생계비 수준을 추정하고자 하며, 그 중 하나로 박탈지표를 활용한 최저생계비 수준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박탈지표를 활용하여 최저생계비를 도출하는 방식에 대한 학문적 혹은 실증적인 합의는 현재까지 공식화되고 있지 않다. 이는 적절한 박탈항목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 선정된 박탈항목을 어떻게 하나의 지표로 구성하고 점수화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박탈점수와 소득수준을 활용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빈곤 여부를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다(Nolan and Whelan, 1996)¹²³⁾.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박탈지표를 활용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은 화폐적 가치(소득 등)보다 가구의 복지(well-being) 혹은 가구의 상태를 좀 더 다차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주요 생활 영역별로 박탈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과 급여 기준선이 마켓바스켓 방식을 활용한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되면서,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의 유용성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에서 최초로 시도된 박탈지표방식¹²⁴⁾을 활용하여 가구특성별·생활영역별 최저생계비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박탈 영역으로는 생활용품, 식생활, 의생활, 주거, 의료,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사회

123) 자세한 것은 여유진·김미곤 외(2007) 7장 2절(박탈지표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을 참조하라.

124) 1999년 이전에도 드물지만 박탈항목에 관한 국내 연구는 있었으나 판별분석의 Wilk's Lambda값을 활용하여 최저생계비 계측을 시도한 연구는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 연구가 최초이다.

적지지, 미래대비, 자녀교육 등 9개의 영역과 절대적 박탈 즉,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모든 생활여건 문항을 박탈지표로 선정하고, 단순 합산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박탈에 대한 개념은 ‘보편적이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즉, 비자발적 결핍으로 보았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박탈 경험을 나타내는 7개 항목(결식, 공과금 미납, 단전·단수, 난방 못함, 병원 못감, 집세 연체로 인한 이사, 공교육비 연체)의 경우 그 자체로 비자발적 결핍으로 간주하였다. 전체 가구의 항목별 비자발적 결핍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7-1-1〉 영역별 박탈문항과 필요여부 응답비율

(단위: %)

영역	항목	필수적이 라고 응답한 비율	필수적이라고 응답한 경우		비 자발적 박탈 비율
			보유	미보유	
생활 용품	김치냉장고	63.5	96.4	3.7	1.3
	정수기(생수구입포함)	61.8	97.3	2.7	1.1
	에어컨	88.7	98.4	1.6	1.2
	공기청정기	39.0	92.9	7.1	1.7
	노트북	45.9	95.5	4.5	1.0
	태블릿PC	31.1	93.7	6.3	0.9
	자동차	65.1	93.9	6.1	3.0
	스마트폰	91.7	99.7	0.4	0.2
	스마트폰을 제외한 휴대폰	7.2	95.5	4.5	0.1
식생활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 것	82.3	94.2	5.9	4.8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먹는 것	78.8	94.2	5.8	4.6
	가끔 기호식품(차,커피,과자류,음료 등)을 사먹는 것	75.1	98.6	1.4	1.0
의생활	매우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오버튜(코트, 파카, 털이나 가죽옷 등)를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94.5	99.3	0.7	0.7
	예식장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76.8	96.9	3.1	2.4
	정장에 어울리는 구두 한 켤레는 가지고 있는 것	75.7	97.2	2.8	2.2
	일 년에 한 벌 정도 외출용이나 정장 등의 옷을 구입하는 것	41.4	89.3	10.7	4.4
주택 및 주거 환경	가족수나 구성원의 연령에 맞게 적절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	87.7	97.5	2.5	2.2
	전용 입식부엌과 전용 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추는 것	96.5	98.9	1.1	1.0
	집의 구조물이 견고하고 심각한 균열이 없을것	97.7	95.4	4.6	4.5
	방음, 환기, 채광이 적절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	95.2	90.1	9.9	9.4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습기가 차지 않거나 이로 인해 벽이나 바닥에 손상이 없는 것	96.4	91.4	8.6	8.3
	출치 않도록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는 것	97.2	95.9	4.1	4.0
	자연재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	98.2	96.8	3.2	3.2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는 것	93.0	97.5	2.5	2.3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는 것	87.8	97.2	2.8	2.5
의료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이상) 앓고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	88.9	72.1	27.9	24.8

영역	항목	필수적이 라고 응답한 비율	필수적이라고 응답한 경우		비 자발적 박탈 비율
			보유	미보유	
및 건강	료받는 것				
	이가 아프던 치과에 가는 것	83.8	56.0	44.0	36.8
	건강을 위해 보약이나 영양제 또는 보조식품 등을 먹는 것	57.0	90.2	9.8	5.6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것	94.6	96.9	3.1	2.9
가족 활동 및 문화 생활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2~3일 정도의 여행(피서)을 다녀오는 것	34.3	70.5	29.5	10.1
	1개월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외식하는 것	49.0	93.1	6.9	3.4
	가족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것(외식 등)	60.4	94.8	5.2	3.2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가족 또는 자녀와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영화, 공연)을 할 수 있는 것	27.6	67.0	33.0	9.1
사회 적 지지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	69.1	91.7	8.3	5.7
	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	55.1	87.2	12.8	7.1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	48.5	79.5	20.5	10.0
저축 (미래 대비)	재정적인 지출을 대비하는 것(저축등)	83.3	82.3	17.7	14.8
	긴급한 재정적 지출(약 300만원 정도)을 감당하는 것	85.7	89.7	10.3	8.8
	노후를 위해 (국민,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는 것	85.6	87.6	12.4	10.6
	사회보험 외의 사적보험(의료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것	81.0	92.3	7.7	6.3
자녀 교육	자녀에게 고등교육(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을 시키는 것	75.6	97.9	2.1	0.4
	자녀가 원하는 경우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시키는 것	71.6	87.4	12.6	2.1
	자녀에게 필요한 기본참고서나 도서를 사주는 것	83.9	97.2	2.8	0.6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양육(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을 책임지는 것	91.4	98.9	1.1	0.2

주: 비자발적 결핍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갖고(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7-1-2〉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박탈 경험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0.8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1.4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0.2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1.3
더운 여름에 냉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1.5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3.0
집세(월세·일세)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1)	1.2

주: 1) 자가 또는 무상인 경우를 제외한 전 월세가구에 대한 응답 비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박탈항목을 통해 집단을 구분하는 방식으로는 통계적 방법 중 하나인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의 Wilk's Lambda¹²⁵⁾ 값을 활용하고자 한다. 경우에 따라 차이가 나는 지점이 한 군데 이상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의 기준을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처음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가구유형별 소득에 따른 박탈지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구유형을 가구규모별로 1인 가구의 경우 연령별 욕구 및 특성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20~39세), 중장년(40~64세), 노인(65세 이상) 1인 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2인 가구의 경우 노인 부부가구, 노인 미포함 부부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한부모 2인 가구¹²⁶⁾로 구분하고자 한다.

마켓바스켓을 통한 최저생계비 계측시 표준가구로 설정하고 있는 4인 가구(성인2인+자녀2인)와 함께, 3인 가구(성인2인+자녀1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 박탈지표방식에 의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먼저 박탈항목을 모두 합산한 박탈점수 분포를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박탈점수가 0~5점인 즉, 비자발적 결핍을 어느 영역에서도 경험하지 않는 가구 또는 5개 이하 경험하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88.2%로 나타났으며, 4인 가구의 경우 95.4%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1인 가구에서 박탈점수가 6점 이상인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20% 정도가 6개 이상의 비자발적 결핍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박탈된 항목이 2.4점, 3,4인 가구의 경우 1.7점인 반면 1인 가구의 박탈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 단독가구 3.2점, 청년 단독가구 3.0점이었으며, 특히 중장년 단독가구의 경우 3.8점으로 1인 가구 중에서도 6개 이상의 비자발적 결핍을 경험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분석대상 가구유형 중에서 가장 박탈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집단은 한부모 2인 가구였으

125) Wilk's Lambda는 집단 내 분산을 총분산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내며, 판별함수의 설명력을 나타낸다. 람다값이 0에 가까울수록 판별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집단 간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소득구간별로 박탈점수를 구분할 때(미만과 이상 집단) Wilk's Lambda 값이 가장 작은 소득이 가장 박탈에 따른 차이를 잘 반영하는 지점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최저생계비를 추정한다.

126) 기존 연구에서 한부모가구의 경우 3인가구를 고려하여 분석하였으나, 본 실태조사 내 3인 한부모가구의 표본수가 45가구로 출현율이 높지 않은 점에서, 2인 기준 한부모 가구를 설정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며, 6개 이상 비자발적 박탈 경험 비율은 30% 정도로 생활의 어려움을 추측할 수 있다. 11개 이상 박탈을 경험한 비율 또한 한부모 2인 가구에서 높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표 7-1-3〉 가구유형별 박탈점수 분포

(단위: %, 점)

박탈점수	전체 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 가구 (부모+ 자녀1) ¹⁾	4인 가구 (부모+ 자녀2) ²⁾
		노인 65세 이상	청년 20-39세	중장년 40-64세	노인 부부	성인 부부	한부모 +자녀1		
0~5	88.2	81.0	84.3	73.8	91.6	94.8	70.4	95.7	95.4
6~10	9.1	14.3	13.0	18.6	7.1	4.5	21.5	3.7	3.8
11~15	2.1	4.1	2.0	5.6	1.0	0.7	3.8	0.6	0.5
16~20	0.4	0.5	0.6	1.5	0.3	0.0	4.3	0.1	0.1
21~	0.1	0.1	0.2	0.5	0.0	0.0	0.0	0.0	0.2
평균점수	2.4	3.2	3.0	3.8	1.9	1.7	4.3	1.7	1.7

주: 1) 성인(부모) 2인과 18세 미만 자녀 1인으로 구성된 가구

2) 성인(부모) 2인과 18세 미만 자녀 2인으로 구성된 가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앞서 언급하였듯이 가구유형별로 박탈지표점수와 소득기준(경상소득)을 사용하여 빈곤한 사람과 빈곤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선 즉, 기준선(cut-off)을 도출하는 것이 본 내용의 핵심이다. 즉, Wilk's Lambda값 가구의 소득을 1만원 단위로 나누어 각 소득집단별로 판별분석을 실시하여 기준선이 되는 지점을 찾고자 한다. 즉, 구분 소득에 따라 판별분석 결과에 제시되는 Wilk's Lambda값의 변화로 기준선을 도출하고 이 기준선 이하의 가구를 박탈로 인해 생활여건이 확연히 낮은 가구로 정의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유형별로 따라 Wilk's Lambda값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U(V)자 혹은 W형을 그리고 있다. 경우에 따라 구분점이 여러 군데 나타날 수 있으며 본 연구가 최저생계비, 즉 최저생활보장수준인 점에서 첫 번째 꺾이는 지점을 기준으로 분석결과를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1인 가구 중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96만원에서 Wilk's Lambda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청년단독가구의 경우 125만원, 중장년단독가구의 경우 149만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인 가구 중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102만원, 노인을 제외한 성인부부가구의 경우 117만원, 한부모 2인가구의 경우 166만원에서 집단이 구분되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성인2인과 18세 미만 자녀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Wilk's

Lambda값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소득지점은 19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생계비
 계측의 표준가구인 4인 가구(성인2인+18세 미만 자녀2인)의 경우 꺾이는 소득지점은
 274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7-1-1] 가구유형별 소득기준선에 따른 Lambda값 분포(전체 영역)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3. 박탈지표방식에 의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수준 비교

이전 분석에서는 박탈의 전체 문항을 활용하여 집단이 구분되는 지점을 살펴보았다면, 다음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박탈영역별로 소득구분 지점을 분석한 결과이다. 기초생활 영역의 경우 박탈영역 내 기초적인 생활, 즉 생활용품, 식생활, 의생활 영역을 포함하여 하나의 영역으로 간주하였다. 그 외 주택 및 주거환경, 의료 및 건강, 문화생활, 사회적지지, 저축(미래대비), 자녀교육 영역으로 구분된다. <표 7-1-4>에서는 각 영역별 집단이 구분되는 소득지점을 2023년 기준중위소득으로 환산한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행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기준과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추후 11장 2절에서 다룰 예정으로, 여기에서는 가구유형에 따라 박탈영역별 집단이 구분되는 소득지점 및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전체 영역에서 96만원(기준중위소득 52.5%) 선에서 박탈경험이 차별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 박탈, 사회적 지지 영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전체와 유사하게 90만원 내외에서 집단이 구분되는 지점이 나타났다. 절대적 박탈(64만원)은 전체에 비해 낮은 소득 수준에서 박탈의 경험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절대적 박탈의 경우 기준중위소득¹²⁷⁾의 35.5%에서 박탈의 차별적 경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선(35.0%)은 현재 생계급여 기준선(30%), 의료급여 기준선(40%)의 중간 정도의 지점으로 수급가구의 70% 이상이 노인가구인 점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물론 노인 단독가구에 국한된 결과이나, 동 제도의 수급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인 점에서 현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는 생계급여 기준성 상향조정(30%→35%)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청년(20~39세) 단독가구의 경우 노인 단독가구에 비해 다소 높은 소득 수준에서 박탈의 경험이 구분된다. 전체 영역에서의 박탈 경험은 125만원 지점으로 이는 기준중위소득의 68.4%로 다소 높은 수준이다.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 주택 및 주거환경 영역에

127) <참고> 2021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

서 72만원(기준중위소득 39.4%), 문화생활 영역의 경우 90만원(기준중위소득 49.2%), 의료 및 건강 영역의 경우 98만원(기준중위소득 53.6%)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박탈 경험이 구분되는 소득 구분 지점이 낮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절대적 박탈 경험의 구분지점이 55만원 선으로 기준중위소득 30.1%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반면 중장년층 단독가구의 경우 전체 영역의 박탈 경험 구분 지점은 149만원 선으로 다소 노인, 청년 단독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2인가구 유형별 최저생계비 수준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전체 영역의 박탈은 102만원을 기준으로 구분이 되며 이는 기준중위소득 33.0%에 해당한다. 절대적 박탈의 경우 92만원을 기준으로 박탈 경험 비율이 구분되며, 이는 기준중위소득 29.8% 정도이다. 노인을 제외한 성인 부부가구의 경우에도 박탈방식을 통한 최저생계비는 전체 영역을 기준으로 117만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기준중위소득 37.9% 선이다. 기본적인 생계를 감안한 절대적 박탈의 경우 또한 전체 영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한부모와 자녀1인으로 구성된 2인 가구에서는 전체 박탈 영역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166만원 정도로, 이는 기준중위소득 53.8% 수준으로 나타났다. 절대적 박탈 영역으로 살펴본 이들의 최저생계비 기준은 전체 영역에서보다 다소 낮은 140만원으로 기준중위소득의 45.3% 선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와 자녀1인으로 구성된 3인가구의 경우 전체 박탈지표를 통한 박탈 경험이 구분되는 소득지점은 192만원으로 기준중위소득의 48.2% 선으로 나타났다. 3인가구의 경우 대부분의 영역에서 비슷한 소득 지점에서 박탈경험이 구분되는 경향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최저생계비의 계측 기준이 되는 표준가구인 부모와 자녀2인으로 구성된 4인가구의 경우, 전체 영역에서의 박탈이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소득구간은 274만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56.2% 정도로 나타났다. 전물량방식을 통한 2023년 계측값(안)¹²⁸⁾과 비교시, 4급지 기준 서울 지역의 계측값(2,736,294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광역/세종/창원 지역의 계측값(2,429,672원)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물론 본 조사자료의 기준 시점이 2021년임을 감안한다면, 박탈방식을 통한 최저생계비 값이 전물량방식을 통한 최저생계비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절대

128) (서울) 2,736,294원, (경기) 2,593,239원, (광역/세종/창원) 2,429,672원, (그외지역) 2,280,843원으로 계측

적 박탈은 상대적으로 더욱 낮은 151만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31.0% 이하의 구간에
서 높은 발생 확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4〉 가구유형별·박탈영역별 소득구분 지점

(단위: 가구, 만원/월)

박탈영역	1인가구			2인가구			3인 가구 (부모+ 자녀1) ²⁾	4인 가구 (부모+ 자녀2) ³⁾
	노인 65세 이상	청년 20-39세	중장년 40-64세	노인 부부	성인 ¹⁾ 부부	한부모 +자녀1		
가구수 ⁴⁾	2,456	988	1,695	2,852	2,210	108	1,151	1,420
전체영역	96	125	149	102	117	166	192	274
기초생활 ⁵⁾	89	125	149	115	165	126	187	273
주택 및 주거환경	96	72	104	115	116	183	192	273
의료 및 건강	92	98	79	102	171	143	180	304
문화생활	96	90	84	87	77	166	192	238
사회적 지지	70	123	98	115	132	127	178	233
저축(미래대비)	96	193	102	160	136	163	201	273
자녀교육	-	-	-	-	-	124	195	294
절대적 박탈	64	55	99	92	113	140	194	151

- 주: 1) 노인을 제외한 성인 부부 가구
- 2) 성인(부모) 2인과 18세 미만 자녀 1인으로 구성된 가구
- 3) 성인(부모) 2인과 18세 미만 자녀 2인으로 구성된 가구
- 4)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분석 대상 표본수
- 5) 기초생활의 경우 박탈영역 내 생활용품, 식생활, 의생활 영역을 모두 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7-1-5〉 가구유형별 소득구분 지점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단위: %)

박탈영역	1인가구			2인가구			3인 가구 (부모+ 자녀1) ³⁾	4인 가구 (부모+ 자녀2) ⁴⁾
	노인 65세 이상	청년 20-39세	중장년 40-64세	노인 부부	성인 ²⁾ 부부	한부모 +자녀1		
전체영역	52.5	68.4	81.5	33.0	37.9	53.8	48.2	56.2
기초생활	48.7	68.4	81.5	37.2	53.4	40.8	46.9	56.0
주택 및 주거환경	52.5	39.4	56.9	37.2	37.6	59.3	48.2	56.0
의료 및 건강	50.3	53.6	43.2	33.0	55.4	46.3	45.2	62.3
문화생활	52.5	49.2	46.0	28.2	24.9	53.8	48.2	48.8
사회적 지지	38.3	67.3	53.6	37.2	42.7	41.1	44.7	47.8
저축(미래대비)	52.5	105.6	55.8	51.8	44.0	52.8	50.5	56.0
자녀교육	-	-	-	-	-	40.2	48.9	60.3
절대적 박탈	35.0	30.1	54.2	29.8	36.6	45.3	48.7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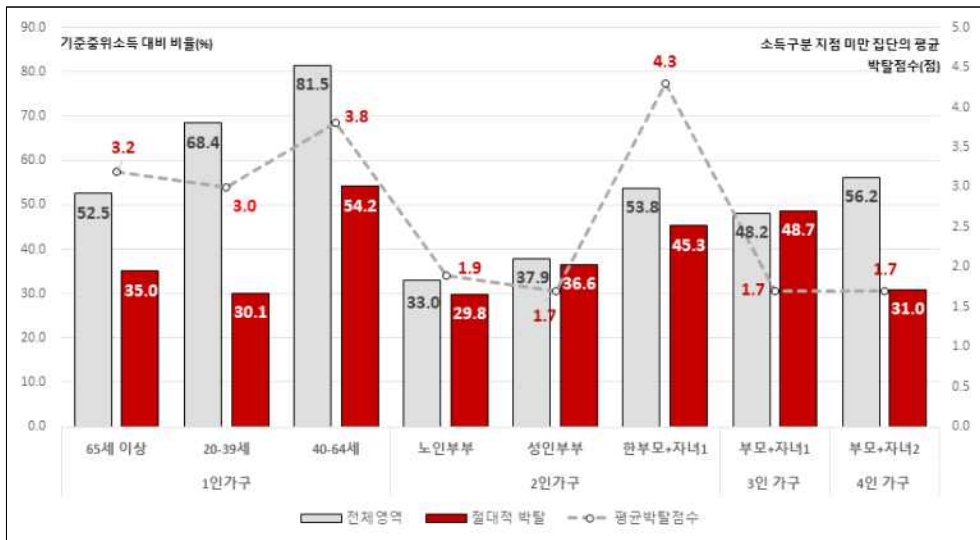
주: 1) 2023년의 월기준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827,831원, 2인 가구 3,088,079원, 3인 가구 3,983,950원, 4인 가구 4,876,290원임.

- 2) 노인을 제외한 성인 부부 가구
- 3) 성인(부모) 2인과 18세 미만 자녀 1인으로 구성된 가구
- 4) 성인(부모) 2인과 18세 미만 자녀 2인으로 구성된 가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위의 결과를 하나의 그래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유형별·박탈의 영역별로 꺾이는 점을 확인한 결과, 청년, 중장년층 단독가구의 경우 다소 높게, 노인부부의 경우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며, 그 외 가구유형에서는 전체 박탈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60% 사이에서 기준선이 설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준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설정되어 있는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기준과 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장년 단독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은 70~80% 선으로 이들의 경우 근로연령층임을 감안한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아니더라도 긴급한 가구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지원이 가능한 긴급복지지원 기준인 75% 선과 비교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절대적 박탈의 경험은 이보다는 낮은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수준 이하에서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계와 관련된 박탈을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기준선 수준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특징적인 점은 청장년 단독가구와 4인 가구에서 전체 박탈 영역을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와 절대적 박탈 영역에서의 소득 수준 차이가 다른 가구유형들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동일 가구유형 내에서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1-2] 가구유형별 박탈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전체 영역에서의 박탈 기준선, 꺾이는 점이 발생하는 지점의 소득 이하와 초과 집단 간의 박탈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꺾이는 점 이하의 박탈 점수가 가장 높은 가구 유형은 4인가구로 소득구분 지점을 기점으로 해당 소득 이하와 초과 집단의 박탈 경험에 대한 차이를 가장 크게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청년 단독가구, 중장년 단독가구, 3인가구 등에서도 크게 나타난다. 반면 노인 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에서는 소득 지점이 박탈을 경험하는 비율의 차이를 보이는 지점으로 구분이 되나 다른 가구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은 특성을 보인다. 성인 부부가구, 한부모 2인가구의 경우 박탈 경험이 구분되는 소득 구분지점 이하 가구의 분석대상 표본이 30가구 이하인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7-1-6〉 소득구분 지점1)에 따른 박탈점수 비교(전체 영역)

(단위: %, 점)

박탈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 가구 (부모+ 자녀1)	4인 가구 (부모+ 자녀2)		
	노인 65세 이상		청년 20-39세		중장년 40-64세		노인 부부		성인 부부		한부모 +자녀1					
소득구분지점 (만원)	96		125		149		102		117		123		192	274		
	이하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초과
가구수(가구)	1,160	1,296	71	917	668	1,027	147	2,705	24	2,186	16	92	11	1,140	23	1,397
0~5	74.5	86.5	56.4	86.4	60.0	82.7	81.1	92.2	83.0	95.0	73.8	70.0	42.6	96.2	53.2	96.1
6~10	18.7	10.5	21.6	12.3	24.8	14.7	12.8	6.8	17.0	4.3	17.1	22.0	43.4	3.3	13.1	3.7
11~15	5.6	2.8	12.1	1.2	10.6	2.4	3.5	0.9	0.0	0.7	9.1	3.2	14.0	0.4	20.9	0.2
16~20	0.9	0.2	7.6	0.1	3.7	0.1	2.7	0.2	-	-	0.0	4.9	0.0	0.1	0.0	0.1
21~	0.3	0.0	2.3	0.0	0.9	0.2	-	-	-	-	-	-	-	-	12.8	0.0
평균점수	3.7	2.7	6.6	2.7	5.4	2.8	3.3	1.8	2.9	1.7	3.4	4.4	6.3	1.6	7.3	1.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제2절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반물량 방식은 11개 비목에 대해 표준가구의 가상적인 지출을 고려하는 전물량 방식과 달리, 식료품비의 역수를 활용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대안적 접근이다. 미국 Orshanky가 1963년 Social Security Bulletin에 게재한 빈곤 측정에 관한 논문에서 제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문길 외, 2020, pp. 354-358). 저소득층, 특히 표준가구 유형에서 경상소득 대비 식료품비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2023년 반물량 방식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구규모 및 경상소득, 가계 지출과 식료품비 지출의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있다. 김문길 외(2022, pp.354-358)는 기존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산출 결과와의 시계열적인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과 지출 정보를 제공하는 가계동향조사(연간)자료를 활용하였다. 당시 활용한 자료는 가구 소득과 지출이 통합조사된 가계동향조사를 원자료로 식료품비 비율의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기 자료에서 소득과 지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어, 가계의 계절성이 보완된 연간자료를 활용하기에 제한적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최근 소득분배지표 공식 통계로서의 공신력을 가진다. 하지만 기존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비교하기에 자료원이 상이하다. 그리고 가계동향조사는 가계부 기입 방식으로 가구 지출 현황을 측정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주류를 포함한 식료품비 총액을 자기응답하는 방식이므로 비표본오차와 주류의 비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또한 반물량 방식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기 위해 두 조사를 활용함에 있어 소득 하위 분위인 4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특히 식료품비의 비중의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특히 하위 분위 집단에서 필요한 4인 가구 유효표본의 크기가 제한적이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1분위에 해당하는 4인 가구는 7가구에 불과하고, 2분위는 28가구, 3분위는 88가구이다.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가구원 수도 늘어나지만, 여기에서 주목하는 집단은 저소득층이다. 가계동향조사(분기)의 경향도 유사하다. 소득 1분위의 4인 가구는 22가구이고 2분위는 36가구, 3분위는 86가구이다. 따라서 해석에 주

의를 요한다. 특히 분기조사이므로 가구가 중복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표 7-2-1〉 자료원별 소득분위별 가구규모

(단위: 가구)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원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	2,021	1,149	765	506	309	219	120	69	59	16	5,233
2	317	907	913	849	767	614	498	338	304	217	5,724
3	34	110	183	312	369	434	462	447	466	399	3,216
4	7	28	88	155	237	346	382	506	550	637	2,936
5인 이상	1	3	22	36	62	82	119	155	167	198	845
전체	2,380	2,197	1,971	1,858	1,744	1,695	1,581	1,515	1,546	1,467	17,954

〈가계동향조사(분기)〉

가구원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	1,751	1,220	981	755	620	339	282	170	99	81	6,298
2	600	1,026	877	876	854	799	732	579	486	404	7,233
3	62	120	220	255	399	503	512	589	602	603	3,865
4	22	36	86	155	215	307	442	522	589	655	3,029
5인 이상	9	6	17	28	36	62	77	123	138	145	641
전체	2,444	2,408	2,181	2,069	2,124	2,010	2,045	1,983	1,914	1,888	21,066

주: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유효표본의 크기임. 각 자료원에서 제공하는 전체 가구 소득 분위 구분을 활용함.
 자료: 통계청(2022).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 원자료; 통계청(2022). 가계동향조사(분기) 원자료 저자 분석

2023년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면서 모형의 시계열적인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Orshansky 모형과 식료품비 비율적용 모형을 활용한 김태완 외(2017)와 김문길 외(2020)의 방식을 준용한다. 단, 분석자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식료품비 비율 적용 모형에 있어서는 최근 가계동향조사 횡단자료를 주된 분석자료로 이용하는 추정방식을 적용한다.

1. Orshansky 모형

김문길 외(2022, pp.354-358)가 적용한 Orshansky 모형은 저소득층 평균소득 대

비 식료품비 비율의 영겉계수의 역수를 활용해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에서 영양학자들이 제시하는 영양권장량을 고려하여 신출한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의 최저식료품비 비율을 기준 수치로 활용했다. 다음은 Orshansky 모형을 활용한 2023년 반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산출 모형이다.

• 2023년 최저생계비 = 2023년 최저식료품비 × 2022년 식료품비 비율의 역수(Y/Cf)
 단, Y는 경상소득, Cf는 식료품비임.

2023년 최저식료품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를 통해 제시한 최저식료품비(연구진안)를 적용하였다. 2022년 식료품비 비율의 역수는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계산하였다. 표준가구의 가구규모인 4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분위별 경상소득 대비 식료품비 비율을 확인하였다. 이 비율의 역수를 2023년 최저식료품비에 적용하여 소득 하위 3분위의 반물량 방식 최저생계비를 추산하였다. 생계급여 기준선이 기준중위소득의 30%이므로 소득 하위 2분위 이내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반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산출에서 특이한 점은 두 자료원 모두에서 소득 하위 1분위 4인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식료품비 비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물량 방식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기 위한 첫 번째 접근인 Orshansky 모형의 최저생계비는 2분위 기준 2,654,743만 원이다.

〈표 7-2-2〉 Orshansky 모형에 의한 2020년 최저생계비

(단위: 원/월, %)

구분	4인 가구					
	전체	하위 1분위	하위 2분위	하위 3분위	하위 4분위	
경상소득(Y)	6,848,310	732,378	1,749,203	2,449,262	3,066,877	
식료품비(Cf)	1,138,195	903,277	827,030	795,055	788,916	
Cf/Y(%)	13.3	110.7	33.7	42.3	27.3	
2023년	최저식료품비 (연구진 안)	894,118				
	최저생계비 (추정치)	6,724,239	807,726	2,654,743	2,115,629	3,271,096

주: 집단 구분은 균등화한 경상소득 10분위를 활용함.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22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본 보고서의 '2023년 최저식료품비 연구진 안'

2. 식료품비 비율 적용 모형(Food-ratio Method)

김문길 외(2022, pp.354-358)가 활용한 식료품비 비율 적용 모형은 Watt(1965)와 Deaton-Muellbauer(1980), Van Praag(1982)의 연구에 근거를 둔다. 이 방식은 소득이 높을수록 생존을 위한 필수 지출비목인 식료품비의 소득 대비 비율이 낮아진다는 앵겔 법칙으로부터 출발했다. 우선 저소득 표준가구의 최저생활수준에서 확인되는 앵겔 계수를 찾는다. 그 다음 앵겔 계수를 기준값으로 반물량 방식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별도 최저식료품비를 활용하지 않으므로 전물량 방식이 가지는 연구자의 자의성 문제를 보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식료품비 비율적용 모형에 따른 최저생계비 추정방식이다. 특히 목표 앵겔계수를 상수로 보기보다 변수로 취급하여 해당 시점 삶의 질 수준을 반영한다.

- 식료품비 앵겔함수: $\ln C_0 = a_0 + a_1 \times \ln y$ ①
(C_0 는 식료품비, y 는 소득)
- ① 식을 정리하면 $(\bar{C}_0/y) = \text{Exp} \{ \ln C_0 - \ln y \}$
 $= \text{Exp} \{ a_0 + (a_1 - 1) \ln y \}$ ②
- ② 식의 좌변에 목표 앵겔계수(r)를 넣고, 양변에 \ln 를 취하면,
 $\ln r = a_0 + (a_1 - 1) \ln Y$ ③
- ③ 식에서 목표앵겔계수(r)에 상응하는 소득이 바로 최저생계비가 된다.
 $Y = \text{Exp} \{ (a_0 - \ln r) / (1 - a_1) \}$

- 추정방법 (목표 앵겔계수가 변하는 경우)
- ① 2022년 가계동향조사로부터 식료품비 앵겔함수를 추정한다.
 - ② ①의 추정 계수와 2022년 최저생계비를 이용하여 목표 앵겔계수(r)값을 산출한다.
※ 2022년 최저생계비는 2020년 최저생계비 계측치와 2023년 최저생계비 계측치의 연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③ 2022년 최저 식료품비(연구진안)과 목표 앵겔계수(r)를 활용하여 2023년 최저생계비를 추정한다.
※ 2022년 목표 앵겔계수가 2023년 목표 앵겔계수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가계동향조사로 확인할 수 있는 목표 앵겔계수가 변한다고 가정하는 식료품비 비율 적용 방식을 적용한 반물량 방식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다.

〈표 7-2-3〉 식료품비 비율 모형에 의한 2023년 최저생계비

구분	α_0	α_1	2022년 최저생계비 (추정치)	목표 영결계수(r)	2023년 최저생계비
가계동향조사	5.732	0.506	2,302,514	0.22343	4,001,746

주: 2022년 최저생계비 추정치 = {(2023년 예측치-2020년 연구진안)/2020년 연구진안×100}^{129}/3(년)×2(년)
=3.936%

자료: 통계청, 2022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본 보고서의 '2023년 최저식료품비 연구진 안'

제3절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1. 주관적 방식 적용의 의의

특정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을 빈곤하다고 정의하는 방식을 절대적 빈곤 혹은 상대적 빈곤이라고 부른다.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산출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현시점에 사람들이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만족스러울 수 있는 삶을 지향하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에 주목하는 국제기구의 동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¹³⁰⁾

빈곤은 계량적인 수치로 측정하는 개념이지만,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정성적인 평가를 내재하기도 한다. 생활수준은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어서, 주변인 혹은 비교대상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하기도 한다. 연봉의 절대적 수준이 아무리 높더라도 주변인의 연봉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다면 선호되지 않는다(Solnick & Hemenway, 1998). 오히려 빈곤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품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판단은 삶에 대한 지향과 선호에 따른 선택에 따라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빈곤을 정의하는 방식과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주관적 빈곤, 혹은 주관적 최저생계비 계측은 기존의 계량적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직접적이고 주관적인 느낌과 평가를 빈곤의

129) 비계측연도 추정치에도 생활의 질 변화가 포함된 변동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3년 최저생계비 예측치와 2020년 최저생계비 연구진안을 기준으로 하였다.

130) OECD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 참조)

정의와 측정에 반영한다. 주관적 빈곤 및 최저생계비에 대한 연구는 이후 소개할 1970년대 Kilpatrick, Rainwater, Goedhart, van Praag, Hagenaaars, Kapteyn(1980)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이들 연구는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빈곤을 정의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김태완 외, 2017, 김문길 외, 2020).

그러므로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산출은 개인이 처한 상황은 자기 자신이 직관적으로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 여기에서 주로 활용하는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산출 방식은 빈곤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근근히 살 수 있는 수준을 빈곤으로 정의하고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게 된다.

2. 주관적 방식 계측모형 및 수준

가.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김태완 외, 2017, 김문길 외, 2020). 첫째, 제3자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는 방법과 둘째, 본인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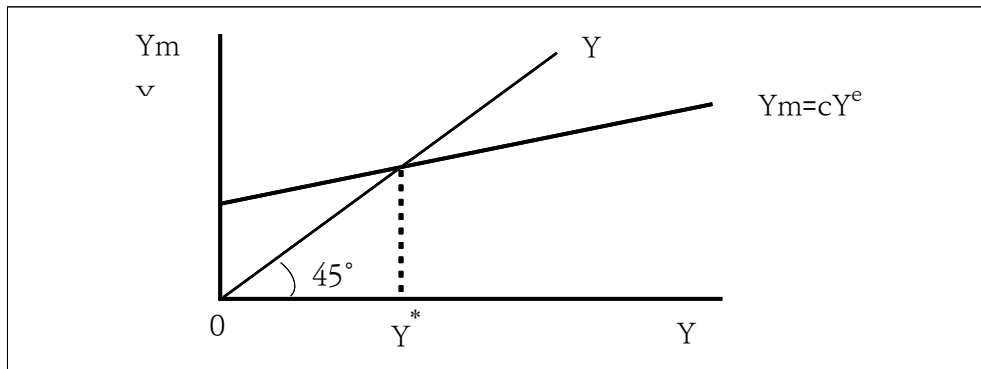
1) 제3자의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김태완 외(2017) 및 김문길 외(2020)에 따르면, 제3자의 평가에 의해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방식은 KilPatrick(1973)과 Rainwater(1974)의 제안에 근간을 둔다. 1974년 Rainwater는 1946년부터 1969년까지의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안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당시 Rainwater(1974)는 갤럽 여론조사 응답을 분석한 결과, 평균소득과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득과의 관계는 최저 46%에서 최고 58%, 평균 52%로 양자 간의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대중들이 생각하는 빈곤선의 수준이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계측한 최저생계비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밝혀냈다.

2) 본인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본인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 방식은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필요한 최저소득을 물어보는 질문을 사용하는 접근법을 이용한다. Goedhart et al(1977)에 의해 처음 고안된 후 여러 연구에서 적용되었다¹³¹⁾. 이 방식은 주로 van Praag 등 네덜란드의 라이덴(Leyden) 대학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적용하였기 때문에, 동 방식에 의한 빈곤선 추정을 ‘라이덴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림 7-3-1] 라이덴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추정



자료: 김문길 외, (2020)

주관적으로 느끼는 최저생계비는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은 소득보다 높게 응답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소득보다 낮게 응답할 것으로 가정한다. 이때 ‘근근이 살아가기 위한’, 즉 주관적으로 느끼는 최저생계비와 일치하는 소득을 최저생계비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교차점의 소득수준(Y^*)은 사회구성원 각자의 평가에 따라 살아가기에 빠듯한 사람(빈곤)과 그렇지 않은 사람(비빈곤)을 구분하는 기준, 즉 주관적 빈곤선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된다.

131) van Praag, Goedhart, and Kapteyn(1980); van Praag Hagenaaars, and van Weeren(1982); van Praag, Spit, and van de Stadt(1982); Danziger et al(1984)

나. 본인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 추정결과

김태완 외(2017) 및 김문길 외(2020)의 방식을 준용해 본 연구에서 적용한 본인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 추정모형1(건강하고 문화적), 모형2(그럭저럭), 모형3(근근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ext{- 모형: } \ln(\text{EXP}_i) = \alpha + \beta_1 \ln(Fs) + \beta_2 \ln(Y)$$

(단, EXP_i : 주관적으로 대답한 최저생활비, $i=1$ (“건강하고 문화적”), $i=2$ (“그럭저럭”), $i=3$ (“근근이”), Fs : 가구규모, Y : 소득)

상기의 모형을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해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 모형1: 건강하고 문화적

$$\bigcirc \ln(\text{EXP}_1) = 2.3313 + 0.3273 \ln(Fs) + 0.3913 \ln(Y)$$

〈표 7-3-1〉 주관적 최저생계비 모수추정치(모형1: 건강하고 문화적)

모 수	추정치	표준편차	t 통계량	Prob > T
α	0.3273	0.0053	61.59	0.000
β_1	0.3913	0.0035	110.74	0.000
β_2	2.3313	0.0272	85.86	0.000
F 통계량	22058.31(P<0.000)	Adj- R^2	0.7102	N=18,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 모형2: 그럭저럭

$$\bigcirc \ln(\text{EXP}_2) = 1.9625 + 0.3645 \ln(Fs) + 0.4059 \ln(Y)$$

〈표 7-3-2〉 주관적 최저생계비 모수추정치(모형2: 그럭저럭)

모 수	추정치	표준편차	t 통계량	Prob > T
α	0.3645	0.0052	69.71	0.000
β_1	0.4059	0.0035	116.73	0.000
β_2	1.9625	0.0267	73.45	0.000
F 통계량	25728.02(P<0.000)	Adj- R^2	0.7408	N=18,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 모형3: 근근이

$$\circ \ln(\text{EXP}_3) = 1.6032 + 0.4126 \ln(Fs) + 0.4154 \ln(Y)$$

〈표 7-3-3〉 주관적 최저생계비 모수추정치(모형3: 근근이)

모 수	추정치	표준편차	t 통계량	Prob > T
α	0.4126	0.0057	72.19	0.000
β_1	0.4154	0.0038	109.28	0.000
β_2	1.6032	0.0292	54.90	0.000
F 통계량	24266.07(P<0.000)	Adj- R^2	0.7295	N=18,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상과 같은 모형으로 2023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주관적 최저생계비에 관한 응답은 조사시점인 2021년 월평균 기준이므로 추정결과에 2022년-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¹³²⁾을 적용하여 2023년 최저생계비를 산출했다. 산출한 물가상승률은 5.04%이다. 추정결과 4인 가구 기준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저생계비 추정치는 3,274,433원으로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보다 약 115만 원 이상 높게 나타났다.

132)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 결과이며, 물가상승률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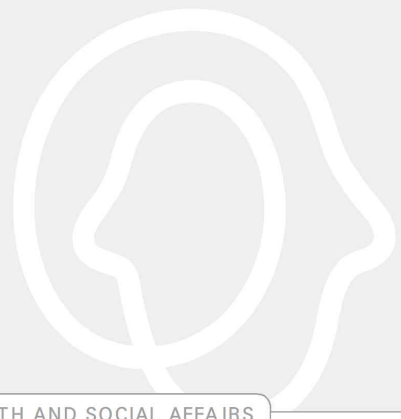
$$\frac{(2022년6월 \sim 2023년5월까지의\ 평균소비자물가지수) - (2021년6월 \sim 2022년5월까지의\ 평균소비자물가지수)}{(2021년6월 \sim 2022년5월까지의\ 평균소비자물가지수)}$$

〈표 7-3-4〉 가구규모별 주관적 최저생계비

(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건강하고 문화적인	3,113,877	3,906,838	4,461,268	4,901,732	5,273,114	5,597,348	5,886,991
그럭저럭	2,440,217	3,141,687	3,642,113	4,044,802	4,387,568	4,689,082	4,960,117
근근이	1,848,077	2,459,961	2,907,938	3,274,433	3,590,230	3,870,733	4,124,92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제8장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제1절 장애인 추가비용

제2절 노인 추가비용

제3절 한부모 추가비용

제 8 장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제1절 장애인 추가비용

1. 장애인 추가비용의 개념

가. 빈곤 측정과 장애 추가비용

세계은행은 빈곤을 '안녕(well-being)의 확연한 결핍'이라고 정의했다. 이 간결한 언급은 시작점이지만 무엇이 안녕함을 구성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능력인가,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인가 또는 충분한 음식을 갖는 것인가?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발전된 사회들에서 이러한 것들을 즐기는 것은 그럴 만한 자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 소득에 의해 측정된다. 역으로, '빈곤하다'는 것 또는 '확연한 결핍' 상태에 있다는 것은 충분한 소득 또는 그러한 자원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앤서니 기든스-필립 서튼, 2018).

빈곤의 정의와 관련한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면 소득 측정만으로는 삶의 질의 다양한 측면을 적절하게 포착할 수 없기에, 물질적 필요 충족의 자원인 소득 외에 주거, 고용, 문화/여가 등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필수 영역에서의 필요 충족을 위한 자원 혹은 기회 수준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배제' 및 '역량' 등의 대안적 빈곤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개념은 소득 중심의 전통적 빈곤 개념이 현대인의 삶의 다양한 측면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비판으로 등장하였다. 사회적 배제란 사회에 대한 개인들의 온전한 참여가 봉쇄되는 방식을 일컫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차원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는 빈곤 또는 적절한 소득이나 자원으로부터의 배제, 둘째는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셋째는 서비스에서의 배제, 넷째는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배제이다(Gordon et al, 2000). 결과적 상태를 나타내는 빈곤과 달리 사회적 배제 개념

에서는 빈곤화(improverishment)에 이르는 역동적인 과정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한 개인이 경험하는 교육훈련, 노동시장, 교통수단 및 건축환경, 보건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 기회의 부족, 즉 다차원적 영역의 사회적 배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빈곤상태에 진입하게 하고 이후에는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만성적인 빈곤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주류 사회에서 배제되는 역동적 과정을 사회적 배제 개념으로 포착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배제의 다양한 측면은 모국을 떠나 정착지를 찾는 난민들에게서 잘 드러난다. 난민은 '노동시장에 대한 장벽, 자기 자신을 지원할 연결망의 빈약 또는 부재, 복지국가의 안전망을 획득하는 데서 겪는 극도의 어려움, 빈곤에 직면한 아동, 학교 체계 내에서의 주변화'라는 문제들과 마주한다. 이러한 사례는 또한 사회적 배제가 '자연스럽거나'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개인,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앤서니 기든스·필립 서튼, 2018).

센(A. Sen)과 누스바움(M. Nussbaum)이 정립한 역량접근법(capability approach)에 따르면, 역량이란 한 개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스스로 선택한 삶의 목표)을 성취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역량은 '개인의 내적으로 준비된 정도(교육훈련 등을 통해 충분히 계발된 상태)'와 목표 달성의 토대가 되는 '외부로부터의 기회(민주주의, 경제발전, 인권 등 정치경제사회시스템)'라는 두 요소가 결합된 상태이다(누스바움, 201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빈곤은 단순히 소득 결핍이 아니라 기본 역량의 결핍이며¹³³⁾, 또한 빈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의 결핍이라는 의미에서 자유의 결핍이기도 하다(이상호, 2016). 센(2013)은 사람들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은 곧 자유의 확장이고 경제발전의 요체임을 주장한다.

"소득이나 부의 극대화를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했듯이 이것은 "단지 유용한 것일 뿐이며 다른 것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경제성장 자체를 목적으로 다룰 수 없다. 발전이란 우리가 영위하는 삶과 우리가 향유하는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과 관련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소중히 여

133) 누스바움(2015)은 자신의 책 '역량의 창조'에서 10대 핵심 역량으로 생명(Life), 신체 건강(Bodily health), 신체적 통합(Bodily integrity), 감각/상상력/사고(Senses, Imagination, and Thought), 감정(Emotions), 실천 이성(Practical Reason), 관계(Affiliation), 인간 이외의 종(Other species), 놀이(Play), 자신의 환경에 대한 통제(Control over one's environment)를 제시했다.

기는 자유의 확장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장애를 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한편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끼침으로써 우리가 더 완전한 사회적 인간이 되도록 한다."(아마르티야 센, 2013, p. 57)

다시 말하자면, 빈곤이나 불평등은 소득이나 재화, 혹은 효용이 아니라 가치 있는 여러 가지 삶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득은 양질의 삶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조흥식 외, 2015).

빈곤의 측정과 관련한 또 하나의 쟁점은 인구학적 단위이다. 개인, 가족과 가구 중 어떤 단위가 채택되건 간에, 상이한 규모와 구성에 따라 단위의 욕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윤상용-김태완, 2009). 예컨대 동일한 생활수준의 향유를 위해 결혼한 부부는 독신자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두 배는 아니다. 또한 아동이 한명 있는 가족은 아동이 없는 가족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성인 만큼은 아니다. 이와 같이 가족 또는 가구 규모의 경제 및 구성을 고려하는 방식이 균등화지수이다. 균등화지수란 한마디로 가구의 소득과 소비수준을 상이한 규모의 가구에 사는 개인들 간에 비교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지수이다(여유진 외, 2005).

균등화지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제곱근 지수, OECD 균등화 지수, OECD 수정 균등화 지수이다. 제곱근 지수는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균등화지수로서,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추가 구성원의 성 및 연령과 상관없이 가구원수만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식이다. OECD 균등화지수는 첫 번째 성인에게 1의 값을 부여하고, 각 추가적인 성인에게 0.7의 값을 부여하는 반면, 아동에게는 0.5의 값을 부여함으로써 연령을 고려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OECD 수정 균등화지수는 OECD 균등화지수보다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추가적인 성인에 대해 0.5, 아동에 대해서는 0.3의 균등화지수를 부여하며 역시 연령을 고려하는 방식이다(윤상용-김태완, 2009).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 균등화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에는 수요 기반 접근법(demand-based methodology)과 심리학적 접근법(psychometric approach)이 있다(윤상용-김태완, 2009). 이 중 수요 기반 접근법은 가구의 소비 패턴으로부터 균등화지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인 소비 이론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심리

학적 접근법은 소득 만족도에 대한 주관적인 정보를 통해 균등화지수를 추정하며, 소득과 욕구가 결정하는 가구의 효용성 함수에 기반하고 있다. 수요 기반 접근법은 앞서 언급한 추가비용 계측 방법 중 지출기록 방법과 그리고 심리학적 접근법은 삶의 수준 접근법과 개념적, 방법적으로 동일하다(윤상용·김태완, 2009).

일반적으로 장애를 가진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추가비용 지출이라는 특별한 소비 패턴을 지닌다(윤상용·김태완, 2009). 이로 인해 빈곤 측정에 있어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가구원 수 혹은 가구원 수와 연령만을 고려한 기존 균등화 지수의 적용만으로는 전체 국민과 장애인의 빈곤 상태를 왜곡하게 된다(윤상용·김태완, 2009). 따라서 소득에 기초하여 빈곤을 측정하는 경우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되는 추가비용이 고려된 소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Jones & O'Donnell, 1995; Burchardt, 2004).

소득을 자료로 한 빈곤 측정시 장애 추가비용 지출을 고려한다는 것은 균등화 지수 산출시 가구원 수, 연령, 성별이라는 기존의 고려사항에 장애라는 새로운 요인을 추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윤상용·김태완, 2009). 이는 동시에 개인의 복지 및 빈곤 측정의 다차원적인 접근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센(A. Sen)의 역량접근(capability approach)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Braithwaite & Mont, 2008).

나. 장애 추가비용의 개념¹³⁴⁾

추가비용과 관련한 일련의 선행연구에서, 추가비용(extra cost)이란 무상의 혹은 비용의 일부 부담을 요하는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장애인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한다(Tibble, 2006). 추가비용은 특정 장애를 갖고 있는 개인의 환경과 특정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실제 혹은 가상의 개인이 처한 환경을 비교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Berthoud et al, 1993).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발생시키는 개인의 환경적 특성들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될 수 있으나, 어떤 특성들은 특정한 사람의 독특한 환경이 될 수 있다(윤상용, 2006). 이러한 것을 모두 고려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를 이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

134) 윤상용(2006)을 주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측정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각각의 집단에 속한 개인의 환경간 차이들의 평균값을 측정하는 ‘총체적 접근법(aggregate approach)’을 선택하게 된다(윤상용, 2014). 총체적 접근법(aggregate approach)을 수행하면서 고려할 것은, 집단 간 비교를 함에 있어서 포함되어야만 하는 혹은 포함될 수 있는 환경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NDA, 2004).

추가 비용은 장애인의 추가적 욕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개념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욕구와 비용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는 것은 추가비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윤상용, 2006). 우선 욕구와 비용은 특별한(special) 욕구/비용과 추가적인(additional) 욕구/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별한 욕구/비용이란 장애인은 필요로 하지만 비장애인은 필요로 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로서 활동보조인이나 의약품 등과 같은 것이 해당된다(윤상용, 2014). 반면에 추가적인 욕구/비용은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만 특히 장애인이 더욱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세제(washing powder)나 난방(heating) 등이 해당된다(Tibble, 2006). 라지(Large, 1991)는 특별한 비용을 ‘장애에 의한(disability-created)’ 비용으로, 추가적 비용을 ‘장애로 인한(disability-enhanced)’ 비용으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비용은 또한 ‘일회성(one-off)’ 비용과 ‘반복성(recurrent)’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회성 비용이란 장애인 엘리베이터와 같이 한 번의 설치로 욕구가 충족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반복성 비용은 세제나 활동보조인과 같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Tibble, 2006). 또한 비용은 ‘추가(extra)’ 비용과 ‘감소(reduced)’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추가 비용이란 장애인이 특별한 또는 추가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비장애인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감소 비용은 발생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지출하는 만큼 지출할 필요가 없는 비용을 의미한다(윤상용, 2014).

한편, 비용은 ‘직접(direct)’ 비용과 ‘간접(indirect)’ 비용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직접 비용은 의약품 구입비나 보호 비용과 같이 장애로부터 비롯된 욕구를 충족하는데 요구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반면, 간접 비용은 비취업 또는 비장애인과 같은 임금 격차 등 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한다(윤상용, 2014). 마지막으로 비용은 ‘잠재(potential)’ 비용과 ‘실제(realized)’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잠재 비용은 장애인 개인의 장애와 관련이 있는 모든 욕구를 완전히 충족하는 데 필요한 가상의 비용을 의

미하며, 실제 비용은 장애인 개인이 장애와 관련이 있는 욕구를 충족하는데 실제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의미한다(Martin & White, 1988). Berthoud et al(1993)은 이처럼 복잡하고 다면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추가비용을 실제로 측정하는 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비용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특정 장애인 집단이 장애를 가짐으로써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지출로서 '직접 비용'에 해당한다. 직접 비용은 합리적인 추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비용을 밝혀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장애인에게 요구되는 병원치료, 지역사회 보호, 특별한 서비스 및 보조기구들은 직접비용이 될 수 있다(윤상용, 2014).

하지만 장애는 종종 세밀하고 직접적인 비용분석으로도 파악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미래의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윤상용, 2014). 이러한 비용은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 때문에 갖게 되는 경험과 보호 및 치료를 제공받는 기간 동안 수입이 감소되는 잠재적 수입의 손실과 같은 '기회비용'이다(윤상용, 2006).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중 다른 비용들은 많은 장애인들이 직면하게 되는 그 밖의 생활비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추가 생활비용'으로 명명된다. 음식, 거주지 등과 같은 필수항목은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추가 생활비용인 것이다.

다. 장애 추가비용 보전의 당위성¹³⁵⁾

장애인 가구는 왜 비장애인 가구보다 빈곤하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열악할 확률이 높을까?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빈곤율이 높고 소득이 낮다는 것은 여러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입증되어 왔다.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장애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의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요인은 비장애인 가구의 소득에 비해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낮다는 점이며, 두 번째 요인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장애인 가구의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는 점이다. 즉, 장애인가구의 경우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소득은 적고 지출이 많으니 상대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은 것은 가구원의 개인 소득이 낮기 때문이다. 장애를

135) 윤상용(2006), 윤상용-김태완(2009)을 주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가진 가구원의 경우 장애에서 비롯된 낮은 교육수준, 직업능력의 부족으로 상징되는 인적자본의 취약성과 함께 사회전반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해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취업 중에 있더라도 주로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관계로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다(윤상용·김태완, 2009). 그리고 비장애 가구원의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 수발로 인해 취업을 하기 어렵거나 취업 중에 있더라도 임시직 등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역시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한편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은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교육비, 보장구구입비 등 장애로 인해 추가지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장애는 추가비용이라는 새로운 지출 요인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소득 감소까지 유발시켜 마침내 장애를 가진 개인을 빈곤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장애는 빈곤의 절친한 친구(disability as a close companion of poverty)'라고 할 수 있다(윤상용·김태완, 2009).

이렇듯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장애인 개인 및 장애인 가구의 빈곤 지위 확률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영(Young, 1990)은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억압의 다양한 측면을 착취, 주변화, 무기력함, 문화 제국주의, 폭력으로 구분하였는데, 현대 사회에서 장애와 같은 사회적 위협이 피해당사자인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장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개인의 행위가 선형적 조건인 사회구조와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장애인이 경험하는 경제적 억압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 추가비용에 대한 보전은 사회적 위협의 해소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다양한 정책수단의 조합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애급여의 제공과 관련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소득보전 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추가비용 급여)를 장애 급여의 두 축으로 삼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김성희 외, 2012).

2. 장애인 가구의 실태

가. 장애인구

2022년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등록장애인구는 2000년대 들어서서 장애범주 확대와 장애인정책의 발전 및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증가하다가, 2010년 이후 소폭 감소 또는 정체하다가 2016년 이후에는 소폭 증가하는 등 크지 않은 변동 폭을 보이며 전체 인구 대비 약 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8만 명) 중에서는 청각(32.0%), 지체(16.7%), 뇌병변(15.2%), 신장(10.3%) 순으로 비중이 컸다(보건복지부, 2023).

[그림 8-1-1] 등록장애인구 및 전체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중 추이(2004~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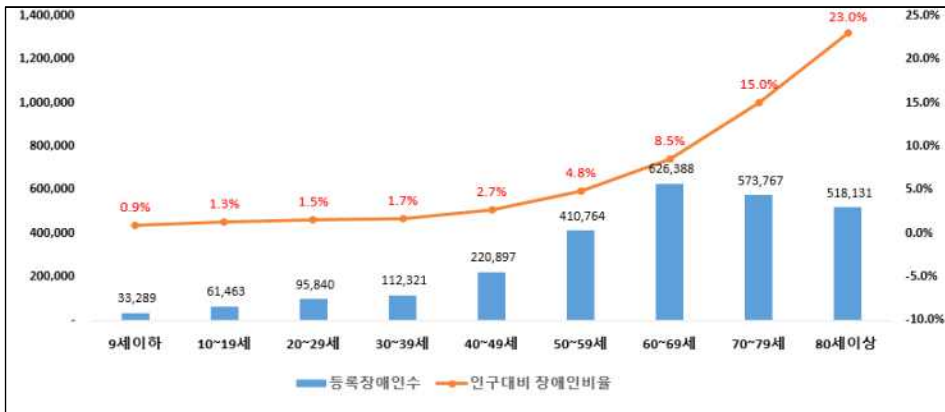
자료: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4. 19)

장애유형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감소세('11년 52.9% → '22년 44.3%)를 보인 반면, 청각장애('11년 10.4% → '22년 16.0%), 발달장애('11년 7.2% → '22년 9.9%), 신장장애('11년 2.4% → '22년 4.0%)는 증가세를 보였다. 등록장애인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60대(62만 6,000명, 23.6%)의 비중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70대(57만 4,000명, 21.6%)가 뒤를 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8만 명) 중에서는 70대(2만 명, 24.7%)의 비중이 가장 컸고, 80대 이상(1만 2

천 명, 20.0%)이 그 뒤를 이었다(보건복지부, 2023).

등록장애인의 연령대별 분포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정책적 대응을 요하는 특기할 만한 변화는 고령장애인, 즉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현상으로서, 노화로 인한 장애 발생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말 기준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은 60대 8.5%, 70대 15.0%, 80대 이상 23.0%로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그림 8-1-2] 연령대별 등록장애인가구 및 인구대비 장애인 비중



자료: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4. 19)

2010년에 37.1% 수준이던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42.3%, 2020년에는 49.9%로 전체의 절반에 이르렀다가 2022년에는 52.8%로 과반을 넘어섰다. 인구 기준으로도 2010년 934,634명이던 고령장애인은 2022년 1,401,523명으로 50만명 넘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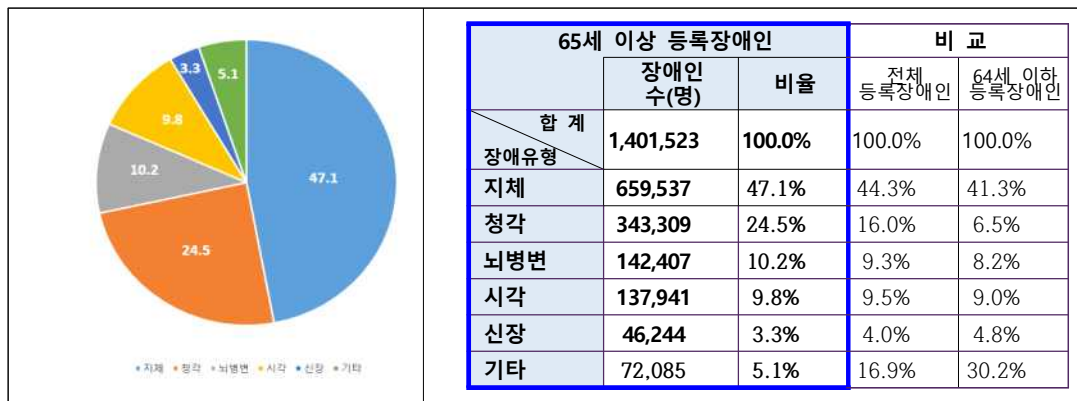
〈표 8-1-1〉 65세 이상 등록장애인구 및 전체 인구대비 비중 추이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2년	
65세이상 인구	5,506,352	10.9%	6,775,101	13.1%	8,496,077	16.4%	9,267,290	18.0%
전체인구	50,515,666	100%	51,529,338	100%	51,829,023	100%	51,439,038	100%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934,634	37.1%	1,053,364	42.3%	1,314,625	49.9%	1,401,523	52.8%
전체 등록장애인	2,517,312	100%	2,490,406	100%	2,633,026	100%	2,562,860	100%

자료: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4. 19)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분포에 있어서는,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경우 지체(47.1%) > 청각(24.5%) > 뇌병변(10.2%) > 시각(9.8%) 순으로 나타나 신체외부 및 감각장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64세 이하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지체(44.3%) > 지적(16.9%) > 시각(9.0%) > 뇌병변(8.2%) > 정신(6.7%)으로 나타나 고령장애인에 비해 정신적 장애인의 비중이 높았다(보건복지부, 2023).

〔그림 8-1-3〕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비중



자료: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4. 19)

한편,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8만 4,000명(37.1%),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 9,000명(62.9%)이었으며, 남성 장애인은 153만 5,000명(57.8%), 여성 장애인은 111만 8,000명(42.2%)이었다(보건복지부, 2023).

이어서 2021년에 실시한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전체 조사가구는 총 18,000가구이며,

그 중 장애인 가구¹³⁶⁾는 2,060가구로 11.4%를 차지하였다. 또한 전체 조사대상자는 41,516명이며, 그 중 장애인은 2,188명으로 전의 5.31%로 나타났다.

〈표 8-1-2〉 장애인 가구 및 장애인의 비율

(단위: 가구, %)

구분	가구		개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장애	2,060	11.4	2,188	5.3
비장애	15,940	88.6	39,328	94.7
합계	18,000	100.0	41,516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한편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가구원 수를 비교해 보면, 장애인 가구는 2.22명으로 비장애인 가구의 2.32명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표 8-1-3〉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가구원 수

구분	장애유무	가구수	평균	표준편차	t 통계치
총 가구원 수	장애인 가구	2,060	2.22	1.124	t=-90.381 p<.0001
	비장애인 가구	15,940	2.32	1.19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나. 가구소득, 재산 및 부채, 생활비

1) 가구소득

장애인 가구 및 비장애인 가구의 유형별 소득의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먼저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장애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1,996.2만원으로 비장애인 가구의 3,827.2만원의 52.2%로 나타났으며, 사업 및 부업소득에서도 장애인 가구는 546.1만원으로 비장애인 가구의 805.9만원의 67.8%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적이전소득에서는 장애인 가구가 234.5만원으로 비장애인 가구의 181.7

136) 여기에서 장애인은 등록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등록장애인도 포함한다.

만원보다 1.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보험, 기초보장급여 및 기타 정부보조금 등 공적이전소득에서는 장애인 가구가 1,119.5만원으로 비장애인 가구의 564.1만원보다 약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장애인 가구 및 비장애인 가구의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장애인 가구의 경상소득은 4,043.4만원으로 비장애인 가구의 5,508.3만원의 7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가구의 가처분소득도 3,711.0만원으로 비장애인 가구의 4,844.7만원의 76.6%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가구소득의 격차로 인해 장애인 가구는 대부분의 생활여건에서 비장애인 가구에 훨씬 낮은 상태를 보인다.

〈표 8-1-4〉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유형별 연소득

(단위: 만원)

구분	장애유무	평균	표준편차	t 통계치
근로소득	장애인 가구	1,996.2	2,975.6	-635.925***
	비장애인 가구	3,827.2	4,020.3	
사업 및 부업소득	장애인 가구	546.1	1,699.6	-151.096***
	비장애인 가구	805.9	2,421.4	
재산소득	장애인 가구	138.1	493.1	-2.420***
	비장애인 가구	139.5	795.6	
사적이전소득	장애인 가구	234.5	545.3	183.703***
	비장애인 가구	181.7	374.7	
공적이전소득	장애인 가구	1,119.5	1,090.4	925.716***
	비장애인 가구	564.1	789.0	
경상소득	장애인 가구	4,043.4	3,271.1	-483.494***
	비장애인 가구	5,508.3	4,271.6	
가처분소득	장애인 가구	3,711.0	2,829.5	-434.704***
	비장애인 가구	4,844.7	3,6541.8	

주: *** p<0.00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 재산 및 부채

다음으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재산 및 부채를 비교하였다. 우선 총 재산(가상자산 비포함 기준)의 경우 장애인 가구는 평균 33,762.2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

있으며 비장애인 가구는 평균 45,771.9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 가구 대비 장애인 가구의 재산 비중은 73.8%로 역시 앞서의 가구 소득에서 보인 격차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총부채의 경우, 장애인 가구는 평균 3,455.3만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으며, 비장애인 가구는 평균 5,650.4만원의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애인 가구의 부채는 비장애인 가구 부채의 61.2% 수준으로서 가계 건전성 측면에서는 더 낮다고 볼 수도 있으나 부채가 재산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는 장애인 가구의 부채 가용 여력이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낮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결국 부채가 가구의 보유 재산 규모에 종속되는 현상은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순재산(총재산 - 총부채)의 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가구의 평균 순재산은 30,306.9만원으로서 비장애인 가구 순재산 40,121.5만원의 75.7%에 불과하였다.

〈표 8-1-5〉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재산

(단위: 만원)

구분	장애유무	평균	표준편차	t 통계치
총재산	장애인 가구	33,762.2	54,939.6	-219.361***
	비장애인 가구	45,771.9	74,036.5	
총부채	장애인 가구	3,455.3	9,547.8	-227.711***
	비장애인 가구	5,650.4	14,114.9	
순재산	장애인 가구	30,306.9	52,294.4	-197.894***
	비장애인 가구	40,121.5	69,681.5	

주: *** p<0.00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3) 생활비

이어서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월 생활비 및 주요 품목별 소비지출을 비교하였다. 먼저 외식비에서는 장애인 가구가 월 20.6만원을 지출하여 월 34.4만원을 지출한 비장애인 가구보다 13.8만원을 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비가 가구 소득에 영향을 받는 탄력성이 큰 비목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여력이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거비도 장애인 가구는 월 13.1만원으로 비장애인 가구의 16.2만원에 비해 2.9만

원 적었다. 이는 주거비가 임대 주택의 질과 주거 지역 인프라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가 주거의 질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주택 및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보건의료비에서는 장애인 가구가 월 24.9만원을 지출하여 월 17.6만원을 지출한 비장애인 가구보다 7.3만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가구 소비 지출은 가구소득에 비례함을 볼 때, 비장애인 가구보다 소득이 현저히 적은 장애인 가구에서 오히려 보건의료비 지출이 더 많다는 사실은 장애를 갖고 있는 가구원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출이 많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장애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은 장애로 인한 대표적인 추가비용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사교육비에 있어서는, 장애인 가구가 월 5.0만원을 지출하여 비장애인 가구의 월 사교육비 13.6만원보다 8.6만원이 적었다. 외식비와 마찬가지로 소득탄력성이 높은 대표적인 지출 비목이 사교육비라는 점에서 장애인 가구의 사교육비 수준이 비장애인 가구의 약 1/3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장애인 가구의 열악한 경제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총생활비를 비교해 보면, 장애인 가구는 월 평균 277.5만원으로 비장애인 가구의 366.6만원에 비해 89.1만원 적어서, 비장애인 가구의 7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는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제약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표 8-1-6〉 최저생계비 주요 항목별 장애가구와 비장애가구의 월 평균 지출 비교

(단위: 만원)

구분	장애유무	평균	표준편차	t 통계치
외식비	장애인 가구	20.6	21.9	-721.467***
	비장애인 가구	34.4	26.7	
주거비	장애인 가구	13.1	16.9	-219.764***
	비장애인 가구	16.2	20.4	
보건의료비	장애인 가구	24.9	46.6	384.236***
	비장애인 가구	17.6	22.8	
사교육비	장애인 가구	5.0	19.6	-314.678***
	비장애인 가구	13.6	39.1	
총 생활비	장애인 가구	277.5	204.3	-457.526***
	비장애인 가구	366.6	273.4	

주: *** p<0.00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 주거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주거 실태를 비교하기 위해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사용 방 수, 주택 면적(㎡), 주택 가격 및 주택 월세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주택 유형에 있어서는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 가구의 경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37.7%였으나, 비장애인 가구 중에는 동 비중이 30.3%로 장애인 가구가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아파트의 비율에서는 장애인 가구는 45.0%로 비장애인 가구 중 아파트의 비율 50.9%에 비해 낮았다. 그 외 다른 주거 유형의 격차는 크지 않았다.

〈표 8-1-7〉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주거 유형

(단위: 가구, %)

구분	장애인 가구	비장애인 가구	전체
단독주택	37.7	30.3	31.0
아파트	45.0	50.9	50.3
연립 및 다세대주택	15.3	15.6	15.5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0.5	0.5	0.5
오피스텔, 고시원	1.4	2.6	2.5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0.1	0.0	0.0
기타	0.2	0.0	0.0
전체	100.0	100.0	100.0

주: $\chi^2 = 69471.812$, $p=0.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주거의 점유형태를 비교해 보면, 자가 거주 가구의 비율을 비교할 시에, 장애인 가구는 56.9%였으나 비장애인 가구는 55.4%로 장애인 가구 중 자가 비율이 미세하게 낮았다. 또한 전세 거주 가구의 비율도 장애인 가구는 7.4%로 비장애인 가구의 13.6%에 비해 5.2% 포인트 낮았다. 반면에 보증부 월세 거주 가구의 비율은 장애인 가구는 27.0%였으나 비장애인 가구는 23.9%로, 장애인 가구의 보증부 월세 비율이 3.1% 포인트 더 높았다.

〈표 8-1-8〉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주거 점유형태

(단위: 가구, %)

구분	장애인 가구	비장애인 가구	전체
자가	56.9	55.4	55.6
전세	7.4	13.6	13.0
보증부 월세	27.0	23.9	24.2
월세	2.1	1.2	1.3
기타	6.5	5.8	5.9
전체	100.0	100.0	100.0

주: $\chi^2 = 76547.844$, $p=0.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사용 방수를 비교해 보면, 장애인 가구는 2.54개로 비장애인 가구의 2.59개보다 약간 적었다. 주거 면적에서도 장애인 가구가 7.36㎡, 비장애인 가구가 80.10㎡로 장애인 가구가 더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가격에서는 장애인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평균 가격이 21,707.35만원으로 비장애인 가구 주택의 평균 가격인 29,050.36만원의 74.7%에 불과하였으며, 주택 월세에서도 장애인 가구가 7.52만원으로 비장애인 가구의 10.13만원에 비해 2.61만원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1-9〉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방수, 주택면적, 주택가격, 월세액

구분	장애유무	평균	표준편차	t 통계치
방수	장애인 가구	2.54	0.77	-95.517***
	비장애인 가구	2.59	0.81	
주택면적(㎡)	장애인 가구	74.36	33.70	-225.368***
	비장애인 가구	80.10	35.08	
주택 가격 (만원)	장애인 가구	21707.35	31912.72	-252.755***
	비장애인 가구	29050.36	38750.15	
주택 월세 (만원)	장애인 가구	7.52	15.08	-169.852***
	비장애인 가구	10.13	19.90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라. 주관적 최저생계비

이어서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살펴보았다. 주관적 최

저생계비란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한의 소득에 대한 개인의 평가에 근거하여 결정되는데, 이는 한 개인이 처한 경제상황은 그 자신이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신념에 기반한 측정 방식이다.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는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1인 가구와 2인 가구로 구분하되, 각각 자가(전세 포함)와 월세(사글세 포함)로 세분하여 총 4개 가구 유형에 대하여 '1달 동안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묻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1인 가구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살펴보면, 자가전세의 경우 장애인 가구가 109.6만원으로 비장애인 가구의 126.1만원에 비해 16.5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월세·사글세의 경우 장애인 가구의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148.4만원으로 비장애인 가구의 170.6만원에 비해 22.2만원이 적게 나타났다. 또한 4인 가구 중 자가전세 장애인 가구의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298.9만원으로 비장애인 가구의 334.2만원에 비해 35.3만원이 적었으며, 월세·사글세 장애인 가구의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360.9만원으로 비장애인 가구의 401.1만원에 비해 40.2만원이 적었다.

이렇듯 자가전세 및 월세·사글세 가구 모두에서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주관적 최저생계비가 낮았는데, 이는 장애인 가구의 삶의 질 또는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구 구성의 조건이 같은 경우, 장애 추가비용으로 인해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이 장애인 가구가 더 많아야 함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생애기간 동안 축적된 지속적인 차별과 배제의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학습된 무기력'이 장애인에게 공고히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가구 규모 및 장애인 가구 여부에 관계없이 월세·사글세 가구가 자가전세 가구보다 주관적 최저생계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월세·사글세 가구의 주거비가 필수 비목으로서 주관적 최저생계비에 반영된 데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표 8-1-10〉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주관적 최저생계비

(단위: 만원)

구분	가구 유형	평균	표준편차	t 통계치
1인 가구 주관적 최저생계비(자가, 전세)	장애인 가구	109.6	36.2	-495.043***
	비장애인 가구	126.1	46.6	
1인 가구 주관적 최저생계비(월세, 사글세)	장애인 가구	148.4	45.4	-467.742***
	비장애인 가구	170.6	67.3	
4인 가구 주관적 최저생계비(자가, 전세)	장애인 가구	298.9	78.6	-435.972***
	비장애인 가구	334.2	110.7	
4인 가구 주관적 최저생계비(월세, 사글세)	장애인 가구	360.9	90.7	-498.121***
	비장애인 가구	401.1	112.8	

주: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마. 의료비 및 미충족 의료

의료비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중 비용의 규모에서 가장 크고, 모든 범주의 장애인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애 추가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가구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애인 가구원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며, 장애인의 주된 돌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비장애인 가구원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장애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신체 및 정신적 부담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구가 느끼는 의료비 부담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장애인 가구의 경우 '전혀 부담되지 않았다' 12.5%, '거의 부담되지 않았다' 19.9%, '보통이다' 21.1%, '다소 부담되었다' 29.4%, '매우 많이 부담되었다' 17.1%로 나타난 반면, 비장애인 가구의 경우에는 '전혀 부담되지 않았다' 18.4%, '거의 부담되지 않았다' 30.7%, '보통이다' 24.8%, '다소 부담되었다' 17.9%, '매우 많이 부담되었다' 8.2%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다소 부담되었다'와 '매우 많이 부담되었다'를 합한 비율에서 장애인 가구가 46.5%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반면, 비장애인 가구의 동 비중은 26.1%에 그쳐 장애인 가구보다 20.4% 포인트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장애인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8-1-11〉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의료비 부담

(단위: 가구, %)

범주	장애인 가구	비장애인 가구	전체	비율 비교
전혀 부담되지 않았다	12.5	18.4	17.8	$\chi^2 = 417916.883$ $p = .000$
거의 부담되지 않았다	19.9	30.7	29.6	
보통이다	21.1	24.8	24.5	
다소 부담되었다	29.4	17.9	19.1	
매우 많이 부담되었다	17.1	8.2	9.0	
계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렇듯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인 가구의 의료비 부담은 실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 때에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병원 방문 못하거나 중도 치료 포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 가구는 12.0%로 비장애인 가구의 6.3%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받지 못한 이유가 가구의 열악한 경제상태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하는 지역 내에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병원과 집을 오가는 교통수단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가구 경제력이 장애인의 의료 욕구의 충족을 실제로 제약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치료 못한 경험' 여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장애인 가구의 경우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1%로 비장애인 가구의 4.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가구의 미충족 의료 욕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장애인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경제적 지원 방안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8-1-12〉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미충족 의료

(단위: 가구, %)

구분	범주	장애인 가구	비장애인 가구	전체	비율 비교
병원 방문 못하거나 중도 치료 포기 경험	있음	12.0	6.3	6.9	$\chi^2 = 95496.229$ p=.000
	없음	88.0	93.7	93.1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 못한 경험	있음	10.1	4.7	5.3	$\chi^2 = 107273.256$ p=.000
	없음	89.9	95.3	94.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라. 저축 및 경제적 어려움

가구의 경제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지출 수요 및 노후에 대비한 저축 유무를 들 수 있다.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가 재정적 지출 대비, 긴급한 재정적 지출 감당, 노후 대비 등 세 가지 목적의 저축을 현재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재정적 지출 대비 저축에서 '하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 가구는 전체의 61.3%인 반면 비장애인 가구의 동 비중은 76.8%로서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15.5% 포인트나 낮았다.

이어서 '긴급한 재정적 지출(약 300만원 정도)을 감당하는 것'에 대비하여 현재 저축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도 장애인 가구는 71.5%로 비장애인 가구의 85.0%에 비해 13.5% 포인트나 낮았다. 마지막으로 '노후를 위해 (국민,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는 것'에 대비하여 현재 저축을 '하고 있다'는 가구의 비율에서는 더 큰 차이를 보였는데, 장애인 가구는 64.6%에 불과한 반면, 비장애인 가구는 81.9%로 두 집단 간 차이는 17.3% 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표 8-1-13〉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저축

(단위: 가구, %)

저축유형	범주	장애인 가구	비장애인 가구	전체	비율 비교
재정적 지출 대비	하고 있다	61.3	76.8	75.3	$\chi^2=246284.537$ p=0.000
	안(못)하고 있다	38.7	23.2	24.7	
긴급한 재정적 지출 감당	하고 있다	71.5	85.0	83.7	$\chi^2=253715.112$ p=0.000
	안(못)하고 있다	28.5	15.0	16.3	
노후대비	하고 있다	64.6	81.9	80.2	$\chi^2=353577.405$ p=0.000
	안(못)하고 있다	35.4	18.1	19.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어서 경제적 이유로 식사를 거르거나 냉·난방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에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는 가구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 가구는 1.2%로 비장애인 가구의 0.8%에 비해 0.3% 포인트 높았다.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는 가구의 비율을 보면, 장애인 가구는 1.9%로 비장애인 가구의 1.2%에 비해 약 1.6배 높게 나타났으며, '더운 여름에 냉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에서도, 장애인 가구는 2.7%로 비장애인 가구의 1.3%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는 가구의 비율에서도 장애인 가구의 동 비중은 5.2%로 비장애인 가구의 2.7%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1-14〉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단위: 가구, %)

변수	범주	장애인 가구	비장애인 가구	전체	비율 비교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예	1.2	0.8	0.8	$\chi^2=4273.591$ p=0.000
	아니오	98.8	99.2	99.2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예	1.9	1.2	1.3	$\chi^2=8005.997$ p=0.000
	아니오	98.1	98.8	98.7	
더운 여름에 냉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예	2.7	1.3	1.5	$\chi^2=26661.531$ p=0.000
	아니오	97.3	98.7	98.5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예	5.2	2.7	3.0	$\chi^2=42031.211$ p=0.000
	아니오	94.8	97.3	97.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3. 장애 추가비용 산출¹³⁷⁾

가. 장애 추가비용 산출 방식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는 삶의 수준방식, 추가비용계산방식, 추가비용조정방식을 들 수 있다. 세 가지 장애인 추가비용 산출방식 중에서 먼저 삶의 수준 방식은 각 장애종류별 등급별 세부적인 추가비용 산출이 상당히 어렵고, 장애인의 최저생계비계측에서 필요한 현금급여기준선을 산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추가비용계산 방식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많이 사용하는 항목은 고려하면서 비장애인보다 적게 사용하는 항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추가비용조정 방식은 공통비목 추가 또는 감소비용을 고려하고 있으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실태 비교에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차이가 발견될지라도 규범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2010년 및 2013년, 그리고 2017년과 2020년의 장애인 최저생계비 계측에서도 공통비목 감소비용은 없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김미곤 외, 2010; 김태완 외, 2013; 김태완 외, 2017; 김문길 외, 2020).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번 2023년 계측에서도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경제적 열위를 보다 잘 나타낼 수 있을뿐만 아니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추가비용 추세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측 방법인 추가비용 계산방식을 적용하였다.

나. 조사 대상 장애인의 선정

일반가구의 최저생계비 계측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를 조사대상 가구로 선정해 온 반면, 장애인 가구는 가구소득이 일반가구보다 낮고, 일반가구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불리한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더 높은 수준의 기준선을 적용해 왔다. 즉, 2007년, 2010년, 2013년 최저생계비 연구에서는 전체 장애인 가구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장애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2017년, 2020

137) 이하에서 기술하는 본 고의 추가비용 계측 결과는 2020년 최저생계비 연구의 분석틀과 기술 형식을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년 최저생계비 연구에서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장애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간의 분석 대상 가구 선정이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비교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안정적 접근을 취해왔다는 점에서 본 고에서도 이러한 기초를 계승하여 2020년 연구와 동일하게 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하는 장애인 가구의 장애인을 장애 추가비용 계측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이전의 추가비용 계측 연구에서 장애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규범적 판단 및 실증적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유사한 추가비용 수준을 갖는 11개의 그룹으로 범주화하여 각각의 추가비용을 파악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고에서도 2007년 이래로 최저생계비 계측의 최종 범주였던 지체 중증(1-2급), 지체경증(3-6급)·안면장애, 뇌병변 중증(1-4급), 뇌병변경증(5-6급), 시각 중증(1-2급), 시각경증, 청각언어 중증(1-2급), 청각언어 경증,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및 내부장애의 11개 장애범주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고에서 추가비용 계측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장애인으로 총 610명이다.

〈표 8-1-15〉 장애인의 장애범주별 분포

(단위: %)

장애종류	전체	중위소득 60% 이하
지체중증	5.9	8.6
지체경증	50.5	40.5
뇌병변중증	6.3	6.7
뇌병변경증	1.8	2.4
시각중증	2.0	3.3
시각경증	7.9	5.6
청각언어중증	2.2	2.7
청각언어경증	12.0	11.4
발달장애	3.2	4.1
정신장애	2.9	6.5
내부장애	5.2	8.3
합계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 장애범주별 추가비용 비목 선정

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는 데 포함하는 필수품은 품목별 접근이 아닌 비목별 접근을 실시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2004년 이래로 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계측 연구에서는 장애인 가구원 개인의 교통비, 의료비, 휴대폰비, 교육비, 보호·간병비, 보장구 구입유지비, 재활기관 이용료 및 주거수리비 항목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계측하기 위한 비목으로 선정해 왔다. 이 중에서 교통비, 의료비, 휴대폰비는 공통비목 추가비용¹³⁸⁾에 해당하며, 교육비(특수교육비 등), 보호·간병비, 보장구 구입유지비, 재활기관 이용료 및 주거수리비는 특수비목 추가비용¹³⁹⁾에 해당한다.

이들 8개 추가비용 비목에 대해 11개 장애범주별로 지출이 있는 비율¹⁴⁰⁾을 분석한 결과, 교통비는 내부장애 95.2%, 지체중증 90.5%, 정신장애 89.8%, 지체경증 89.3% 등이 90% 내외의 교통비 지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1개 장애범주 평균 86.8%의 교통비 지출 비중을 보였다.

의료비에서도 청각언어경증 86.8%, 지체경증 81.7%, 뇌병변경증 81.4%, 내부장애 76.9% 등 5개 장애범주에서 80% 내외의 높은 추가비용 지출이 보고되는 등 평균 71.4%의 추가비용 지출 비율을 보여주었다. 또한 휴대폰비는 교통비 못지 않게 높은 추가비용 지출 비율을 보였는데, 11개 장애범주를 망라한 전체 장애인 중 90.0%의 장애인에게서 휴대폰비 추가비용 지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어서 장애인에게서만 발생하는 특별한 지출 비목인 특수비목의 추가비용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비의 경우 추가적인 교육비 지출이 있는 장애인의 비중이 50% 이상인 장애범주는 없었으며, 발달장애와 청각언어중증에서 각각 11.8%와 3.8%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교육비를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이들

138) 장애인이 해당 비목에 지출하는 실제 금액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비장애인이 해당 비목에 지출하는 비용을 제해야 추가비용이 된다.

139) 보호·간병비, 보장구 구입유지비, 재활기관 이용료는 해당 비목에 지출하는 실제 금액을 조사하였으나 이 비목들은 비장애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비목으로 금액 전체를 해당 비목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보았다. 또한 주거수리비도 “장애로 인하여 거주하기에 불편한 곳을 수리하는데 예상되는 총 비용”으로, 금액 전체를 해당 비목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볼 수 있다.

140) 교통비, 의료비, 휴대폰비는 실제 지출이 있는 비율이며, 교육비, 보호·간병비, 보장구 구입유지비, 재활기관 이용료, 주거수리비는 현재 지출하고 있는 비용 외에 돈이 없어서 지출 못하고 있는 비용도 포함한 비율이다.

두 장애가 다른 장애범주에 비해 인지·행동발달 또는 언어재활 관련 교육 욕구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따라서 청각언어중증과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필수비목으로 포함시켰다.

〈표 8-1-16〉 추가비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구분	교통비	의료비	휴대폰비	교육비	보호간병비	보장구	재활기관이용	주거수리
지체중증	90.5	63.0	95.4		7.5	60.4	3.8	23.8
지체경증	89.3	81.7	94.5		4.1	30.9		11.5
뇌병변중증	80.5	68.5	78.6		7.3	65.1		28.3
뇌병변경증	77.5	81.4	78.0		2.8	47.7		17.8
시각중증	87.0	59.9	87.8		6.2	76.8		33.8
시각경증	75.1	67.7	93.5		7.4	40.8		12.8
청각언어중증	88.1	78.8	73.9	3.5	10.1	49.8	8.4	31.9
청각언어경증	84.1	86.8	85.1		4.4	72.0		5.3
발달장애	76.6	38.1	78.7	11.8	6.2		2.5	3.2
정신장애	89.8	62.3	90.7					1.6
내부장애	95.2	76.9	93.8		9.8	20.3		0.9
전체	86.8	71.4	90.0	1.1	5.6	36.4	1.0	12.8

주: 교통비, 의료비, 휴대폰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이 있는 비율을 나타내며, 그 외 (특수)교육비, 보호·간병비, 보장구비, 재활기관 이용료, 주거수리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이 있는 비율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지출 못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비율의 합계를 나타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보호·간병비에서는 청각언어중증(10.1%), 내부장애(9.8%), 지체중증(7.5%), 뇌병변중증(7.3%), 시각중증(6.2%), 발달장애(6.2%) 등 6개 장애 유형의 추가비용 지출 비중이 타 장애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이들 장애유형의 손상이 이동 및 일상생활에서의 커다란 제약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로서, 이들 장애범주는 청각언어중증과 내부장애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애범주에 비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도움을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시각중증, 청각언어중증, 발달장애, 내부장애 등 6개 장애범주에서 보호·간병비를 필수비목에 포함시켰다.

〈표 8-1-17〉 장애범주별 일상생활 도움 필요

(단위: 명, %)

구분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전체
	모두/대부분 혼자서	일부 필요	대부분/거의 모두 필요	
지체중증	50.2	22.1	27.8	100.0
지체경증	81.5	11.6	6.9	100.0
뇌병변중증	22.9	17.4	59.7	100.0
뇌병변경증	65.8	28.1	6.0	100.0
시각중증	16.4	10.1	73.5	100.0
시각경증	82.2	8.2	9.5	100.0
청각언어중증	41.9	55.7	2.3	100.0
청각언어경증	76.8	18.2	5.0	100.0
발달장애	38.4	40.8	20.8	100.0
정신장애	82.9	11.3	5.9	100.0
내부장애	79.5	18.6	1.9	100.0
전체	68.2	18.7	15.1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장애인 가구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보장구비에서도 실제 지출한 보장구 비용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보장구 비용’이 있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비교하였는데, 이러한 지출 기준에서 50% 이상 또는 이에 근접한 장애인에게서 추가비용 지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장애범주는 시각중증(76.8%), 청각언어경증(72.0%), 뇌병변중증(65.1%), 지체중증(60.14%), 청각언어중증(49.8%), 뇌병변경증(47.7%) 이었다. 따라서 이들 6개 장애범주에서 보장구 비용을 필수 지출 비목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재활기관 이용료에서도 실제 지출한 비용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장애인 가구를 포함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비용이 있다는 응답이 50% 이상인 장애범주는 없었으나, 이전 연구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규범적 판단에 근거하여 재활치료서비스 욕구가 높은 장애범주로 지체중증, 발달장애 등을 선정하였던 경향성을 유지하고 더불어 이번 조사에서 재활기관 이용료 지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청각언어중증을 포함하여 총 3개 장애범주에 한해 재활기관 이용료를 필수 비목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주거수리비에서도 이미 수리한 곳과 수리해야 할 곳을 모두 포함하여 비교한 결과, 지출이 ‘있다’는 응답이 50%가 넘는 장애범주는 없었으나 규범적 판단에 근거하여 과거 추가비용 계측 연구에서 주거수리비 지출 욕구를 인정해왔음을 고려하

여, 결과적으로 타 장애범주에 비해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각중증(33.8%), 청각언어중증(31.9%), 뇌병변중증(28.3%), 지체중증(23.8%)의 주거수리비를 필수비목으로 포함시켰다.

〈표 8-1-18〉 장애범주별 필수비목

구분	추가비용 지출 장애 유형	
	필수비목	비필수비목
교통비	11개 장애범주 전체	
의료비	11개 장애범주 전체	
휴대폰비	11개 장애범주 전체	
교육비	청각언어중증, 발달장애	지체중증, 지체경증, 뇌병변중증, 뇌병변경증, 시각중증, 시각경증, 청각언어경증, 정신장애, 내부장애
보호간병비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시각중증, 청각언어중증, 발달장애, 내부장애	지체경증, 뇌병변경증, 시각경증, 청각언어경증, 정신장애
보장구비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뇌병변경증, 시각중증, 청각언어중증, 청각언어경증	지체경증, 시각경증, 발달장애, 정신장애, 내부장애
재활기관 이용료	지체중증, 청각언어중증, 발달장애	지체경증, 뇌병변중증, 뇌병변경증, 시각중증, 시각경증, 청각언어경증, 정신장애, 내부장애
주거수리비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시각중증, 청각언어중증	지체경증, 뇌병변경증, 시각경증, 청각언어경증, 발달장애, 정신장애, 내부장애

라. 장애범주별 추가비용 산출

다음으로 각 장애범주의 필수비목의 월 평균 비용을 분산분석¹⁴¹⁾의 Tukey 사후검정을 활용하여 비교했다. 또한 사후검정 결과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반한 규범적 판단을 고려하였다. 이는 조사에서 장애범주별 사례 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과 장애로 인한 지출이 필요하지만 장애인 가구 중 저소득층이 많아서 돈이 없어서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김태완 외, 2017).

1) 교통비

장애범주별로 교통비를 비교해 보면, 장애범주 중 교통비가 가장 많은 범주는 내부장

141) 장애범주별 비교는 일부 범주에서 사례 수가 부족하여 분산분석의 가정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평균 비용에 따라 범주를 2~3개로 재범주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어로 월평균 62.2천원이었으며, 이어서 지체경증 46.6천원, 지체중증 44.3천원, 청각언어중증 43.8천원, 뇌병변경증 40.8천원이었다. 그 뒤를 이어 시각중증 38.4천원, 시각경증 33.7천원, 발달장애 28.2천원, 정신장애 26.5천원, 뇌병변중증 22.9천원, 청각언어경증 22.1천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내부장애의 교통비가 다른 장애범주보다 가장 많았는데, 이는 경제활동 중에 발생한 질환으로 장애를 갖게 된 내부장애인이 다른 장애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활동의 참여가 높고 욕구 또한 큰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8-1-19〉 장애범주별 월평균 교통비

(단위: 천원)

장애범주	지출교통비	예상교통비	총 교통비
지체중증	40.1	4.3	44.3
지체경증	33.0	13.5	46.6
뇌병변중증	19.8	3.2	22.9
뇌병변경증	23.9	16.9	40.8
시각중증	30.6	7.8	38.4
시각경증	26.7	7.0	33.7
청각언어중증	41.9	1.8	43.8
청각언어경증	20.3	1.8	22.1
발달장애	24.3	3.9	28.2
정신장애	24.7	1.8	26.5
내부장애	48.8	13.4	62.2
합계	32.5	8.5	41.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장애인 가구조사) 원자료

교통비는 이동 과정의 어려움 정도와 실제 이동 정도 그리고 이동의 욕구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본 고에서는 11개 장애범주의 평균 교통비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통비 욕구가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 그리고 교통비 욕구가 낮은 집단 등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교통비 욕구가 높은 집단에는 지체경증, 내부장애 등 2개 장애범주가 포함되었으며, 중간 집단에는 지체중증, 뇌병변경증, 시각중증, 청각언어중증 등 4개 범주가 포함되었다. 반면에 교통비 욕구가 낮은 집단에는 뇌병변중증, 시각경증, 청각언어경증,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5개 범주가 포함되었다.

이렇게 교통비 욕구에 따라 11개 장애범주를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 장애

로 인한 교통비의 평균값¹⁴²⁾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교통비 욕구가 높은 집단은 교통비가 50.7천원, 중간 집단은 43.0천원, 교통비 욕구가 낮은 집단은 26.7천원으로 나타났다. 장애범주별 평균 교통비에 중위소득 40% 이하인 전체 가구의 1인당 평균 교통비(36.0천원¹⁴³⁾)를 감한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교통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8-1-20〉 교통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교통비

(단위: 천원)

교통 욕구	장애범주	평균 교통비	평균 추가교통비
높은 집단	지체경증, 내부장애	50.7	14.7
중간 집단	지체중증, 뇌병변경증, 시각중증, 청각언어중증	43.0	7.0
낮은 집단	뇌병변중증, 시각경증, 청각언어경증, 발달장애, 정신장애	26.7	0

2) 의료비

다음으로 평균 의료비를 장애범주별로 비교해 보면, 내부장애와 시각장애가 각각 441.1천원, 425.4천원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청각언어중증 240.7천원, 뇌병변경증 124.0천원 등도 비교적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 이어서 지체경증 111.5천원, 정신장애 96.5천원, 뇌병변중증 81.4천원, 청각언어경증 80.1천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발달장애(61.4천원), 지체중증(56.0천원), 시각경증(47.5천원) 등은 의료비 지출이 다른 장애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42) 평균 추가교통비에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항목”을 포함시켰다. 이는 “현재 지출하고 있는 항목”이 장애로 인한 비용의 차이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143)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1인당 교통비는 2020년 연구에서 추정된 평균 교통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2020년, 2021년 주요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임을 밝힌다. 교통비에는 자동차구입, 기타운송기구구입,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운송기구 연료비, 기타 개인교통서비스, 철도운송, 육상운송, 기타 운송 및 기타 교통관련서비스 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표 8-1-21〉 장애범주별 평균 의료비

(단위: 천원)

장애범주	지출의료비	예상의료비	총 의료비
지체중증	34.4	21.7	56.0
지체경증	42.9	68.6	111.5
뇌병변중증	42.4	39.1	81.4
뇌병변경증	57.0	67.0	124.0
시각중증	425.4		425.4
시각경증	40.7	6.8	47.5
청각언어중증	159.6	81.1	240.7
청각언어경증	37.2	42.9	80.1
발달장애	14.4	47.0	61.4
정신장애	21.0	75.6	96.5
내부장애	56.5	384.9	441.4
합계	51.5	90.9	142.4

의료비는 대표적인 장애 추가비용으로서, 해당 장애(손상)가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장애인이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정부가 장애인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본 고에서는 11개 장애범주의 평균 의료비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와 규범적 판단을 토대로 의료비 욕구가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 그리고 의료비 욕구가 낮은 집단 등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의료비 욕구가 높은 집단에는 장애 특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필요로 하는 내부장애만 해당되었으며, 중간 집단에는 지체경증, 뇌병변경증, 시각중증, 청각언어중증 등 4개 범주가 포함되었다. 반면에 의료비 욕구가 낮은 집단에는 지체중증, 시각중증, 시각경증, 청각언어경증,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 6개 범주가 포함되었다.

이렇게 의료비 욕구에 따라 11개 장애범주를 세 집단으로 분류한 후 각 집단별로 장애로 인한 평균 의료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의료비 욕구가 높은 집단의 의료비는 441.1천원, 중간 집단의 의료비는 134.8천원, 낮은 집단의 의료비는 69.0천원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의료 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의료비에 중위소득 40% 이하인 전체 가구의 1인당 평균 보건비¹⁴⁴⁾(21.8천원)를 감하여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의료비

144)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1인당 보건비는 2020년 연구에서 추정된 평균 의료비에 통계청에서 발표

를 산출하였으며, 다음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나타났다.

〈표 8-1-22〉 의료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의료비

(단위: 천원)

의료 욕구	장애범주	평균 의료비	평균 추가 의료비
높은 집단	내부장애	441.4	419.6
중간 집단	지체경증, 뇌병변경증, 시각중증, 청각언어중증	134.8	113.0
낮은 집단	지체중증, 시각중증, 시각경증, 청각언어경증, 발달장애, 정신장애	69.0	47.2

3) 휴대폰비

장애범주별 월평균 휴대폰비를 비교한 결과, 뇌병변경증이 42.5천원으로 가장 많은 지출을 보인 가운데, 정신장애와 내부장애도 각각 이보다 약간 적은 41.3천원, 40.6천원으로 나타나 다른 장애범주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어서 지체경증 39.3천원, 청각언어중증 37.5천원, 지체중증 36.3천원, 뇌병변중증 36.1천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발달장애(35.9천원), 시각중증(35.6천원), 시각경증(35.1천원), 청각언어경증(31.6천원) 등은 휴대폰비 지출이 다른 장애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 2019년, 2020년, 2021년 주요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임을 밝힌다.보건비에
는 의약품, 기타 의약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외래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기타 의료서비스, 입원서
비스 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표 8-1-23〉 장애범주별 평균 휴대폰비

(단위: 천원)

장애범주	지출휴대폰비	예상휴대폰비	총 휴대폰비
지체중증	33.9	2.3	36.3
지체경증	37.7	1.6	39.3
뇌병변중증	36.1		36.1
뇌병변경증	42.5		42.5
시각중증	31.0	4.6	35.6
시각경증	33.1		33.1
청각언어중증	37.5		37.5
청각언어경증	29.9	1.7	31.6
발달장애	35.9		35.9
정신장애	34.4	6.9	41.3
내부장애	40.1	0.6	40.6
합계	36.1	1.7	37.9

장애범주간 평균 휴대폰비의 사후분석 결과를 토대로 휴대폰비 욕구가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 그리고 휴대폰비 욕구가 낮은 집단 등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휴대폰비 욕구가 높은 집단에는 지체경증, 뇌병변경증, 정신장애, 내부장애 등 4개 장애범주가 포함되었으며, 중간 집단에는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시각중증, 청각언어중증, 발달장애 등 5개 범주가 포함되었다. 반면에 휴대폰비 욕구가 낮은 집단에는 시각경증, 청각언어경증 5개 범주가 포함되었다.

이렇게 휴대폰비 욕구에 따라 11개 장애범주를 세 집단으로 분류한 후 각 집단별로 장애로 인한 평균 휴대폰비를 계산한 결과, 휴대폰비 욕구가 높은 집단의 휴대폰비 평균은 56.9천원이었으며, 휴대폰비 욕구가 중간인 집단과 낮은 집단의 휴대폰비 평균은 각각 36.2천원, 32.3천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집단별 평균 휴대폰비에서 4인 가구의 1인당 평균 휴대폰비¹⁴⁵⁾(27.2천원)를 제한 휴대폰비 평균 추가비용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145)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1인당 휴대폰비는 2020년 연구에서 추정된 평균 휴대폰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2020년, 2021년 주요품목별(통신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임을 밝힌다. 휴대폰비에는 국민생활실태조사 장애인의 추가비용 항목과 동일하게 기기값(통신장비)을 제외한 요금(통신서비스)만을 포함시켰다.

〈표 8-1-24〉 통신 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 휴대폰비

(단위: 천원)

통신 욕구	장애범주	평균 휴대폰비	평균 추가휴대폰비
높은 집단	지체경증, 뇌병변경증, 정신장애, 내부장애	40.1	12.9
중간 집단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시각중증, 청각언어중증, 발달장애	36.2	9.0
낮은 집단	시각경증, 청각언어경증	32.3	5.1

4) 교육비

교육비가 장애 추가비용 필수비목에 포함된 장애범주는 청각언어중증과 발달장애이며¹⁴⁶⁾, 이들의 월평균 교육비는 각각 50.0천원, 130.6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8-1-25〉 장애범주별 교육비 평균

(단위: 천원)

장애범주	지출 교육비	미지출 교육비	총 교육비
청각언어중증	50.0		50.0
발달장애	120.4	10.1	130.5

결과적으로, 11개 장애범주 중 교육비 욕구가 높은 집단은 발달장애이며, 교육비 욕구가 중간인 집단은 청각언어중증이라고 할 수 있다.

〈표 8-1-26〉 교육 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교육비

(단위: 천원)

교육 욕구	장애 범주	교육비
높은 집단	발달장애	130.5
중간 집단	청각언어중증	50.0

146)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는 장애범주별로 충분한 사례수가 확보되지 않아서 교육비 추가비용이 있는 발달장애인은 6명, 청각언어중증은 1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평균 교육비는 타당성이 높지 않은 값이다. 참고로 2017년과 2020년 발달장애의 평균 추가교육비는 각각 191.0천원, 165.0천원 이었다.

5) 보호·간병비

다음으로 장애범주별 평균 보호·간병비¹⁴⁷⁾를 계산하면 다음의 <표 8-1-27>과 같다. 이에 따르면 평균 보호·간병비가 가장 높은 장애범주는 내부장애로서 월평균 지출이 355.3천원이었으며, 이어서 발달장애 346.9천원, 지체중증 226.0천원, 뇌병변중증 111.1천원, 시각중증 107.7천원, 청각언어중증 100.0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장애, 발달장애, 지체중증 등 장애 특성으로 인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수행에서 타인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장애에서 보호·간병비 지출이 높게 나타남을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지출 영역과 달리 보호·간병비의 경우 실제 지출비용보다 미충족 지출비용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보호·간병에 대한 잠재적 욕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인 동시에 이번 조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면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적 요인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8-1-27> 장애범주별 평균 보호·간병비

(단위: 천원)

장애범주	지출 보호간병비	예상보호간병비	총 보호간병비
지체중증	26.7	199.4	226.0
뇌병변중증	111.1		111.1
시각중증	107.7		107.7
청각언어중증	100.0		100.0
발달장애	34.1	318.2	346.9
내부장애	15.9	265.7	355.3
합계	42.5	257.5	254.8

장애범주간 평균 보호·간병비의 사후분석 결과 및 규범적 판단을 고려하여 보호·간병비 욕구에 따라 재범주화하면, 보호·간병비가 높은 집단에는 발달장애와 내부장애가, 중간 집단에는 지체중증이 그리고 보호·간병비가 낮은 집단에는 뇌병변중증, 시각중증, 청각언어중증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보호·간병 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보

147) 보호·간병비는 실제 지출한 보호·간병비에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비용을 더하여 장애종류별로 비교하였다. 이는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본인부담금의 부담으로 인해 지출하지 못한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호·간병비 추가비용을 살펴보면, 보호·간병 욕구가 높은 집단의 경우 352.5천원, 중간 집단의 경우에는 226.0천원 그리고 보호·간병 욕구가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107.1천원으로 집계되었다

〈표 8-1-28〉 보호·간병 욕구 따른 장애범주 및 추가 보호·간병비

(단위: 천원)

보호·간병 욕구	장애범주	평균 추가 보호간병비
높은 집단	발달장애, 내부장애	352.5
중간 집단	지체중증	226.0
낮은 집단	뇌병변중증, 시각중증, 청각언어중증	107.1

6) 보장구비

다음으로 월평균 지출 보장구비¹⁴⁸⁾를 장애범주별로 비교하였다. 보장구비의 경우에도 장애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 판단하여 실제로 지출한 보장구비에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비용을 더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보장구비가 가장 높았던 장애범주는 뇌병변중증으로 60.8천원이었으며, 이어서 지체중증 40.7천원, 청각언어경증 38.4천원, 청각언어중증 17.4천원, 뇌병변 경증 13.5천원, 그리고 시각중증 8.7천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1-29〉 장애범주별 평균 보장구비

(단위: 천원)

장애범주	지출 보장구비	예상 보장구비	총 보장구비
지체중증	26.9	13.9	40.7
뇌병변중증	46.3	15.6	60.8
뇌병변경증	8.7	4.7	13.5
시각중증	4.9	3.5	8.7
청각언어중증	16.7	2.2	17.4
청각언어경증	32.7	5.6	38.3
합계	26.3	9.7	35.6

148) 구입비용 ÷ 내구연수(개월)

장애범주간 평균 보장구비의 사후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장구 욕구가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 그리고 보장구 욕구가 낮은 집단 등 세 집단으로 재범주화한 결과, 보장구 욕구가 높은 집단에는 지체중증과 뇌병변중증이, 중간 집단에는 청각언어경증이 그리고 낮은 집단에는 뇌병변중증, 시각중증, 청각언어중증이 포함되었다. 이들 세 집단의 보장구비의 평균을 보면, 높은 집단은 46.2천원, 중간 집단은 38.3천원, 낮은 집단은 13.8천원으로 계산되었다.

〈표 8-1-30〉 보장구 욕구에 따른 장애범주 및 평균 보장구비

(단위: 천원)

보장구 욕구	장애범주	평균 보장구비
높은 집단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46.2
중간 집단	청각언어경증	38.3
낮은 집단	뇌병변중증, 시각중증, 청각언어중증	13.8

7) 재활기관 이용료

장애범주에 따라 평균 재활기관 이용료¹⁴⁹⁾를 비교하였다. 재활기관 이용료도 장애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 판단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비용을 더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에서 보여주듯이 청각언어중증이 520.0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지체중증 487.7천원, 발달장애 378.9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8-1-31〉 재활기관이용요금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재활기관 이용료

(단위: 천원)

장애범주	지출재활이용료	예상재활이용료	총 재활이용료
지체중증	2.6	485.1	487.7
청각언어중증	220.0	300.0	520.0
발달장애	265.8	113.2	378.9
합계	221.2	180.0	401.2

149) 재활기관 이용료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장애인 대상으로 계측하면 사례가 너무 적어서 전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계측하였다.

장애범주간 평균 재활기관이용료의 사후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활 욕구가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 두 집단으로 재범주화한 결과, 재활 욕구가 높은 집단에는 지체증증과 청각언어증증이 포함되었으며, 중간 집단에는 발달장애가 포함되었다. 이들 두 집단의 재활기관 이용료 평균을 보면, 재활욕구가 높은 집단은 487.7천원, 중간 집단은 384.2천원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재활기관 이용료가 전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다른 추가비용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 비용을 일정 수준 감액하였으며¹⁵⁰⁾, 그 결과 재활기관 이용 욕구가 높은 집단은 229.2천원, 중간 집단은 180.6천원으로 추계되었다.

〈표 8-1-32〉 재활기관이용 욕구에 따른 장애범주 및 평균 이용료

(단위: 천원)

재활기관이용 욕구	장애범주	평균 이용료
높은 집단	지체증증, 청각언어증증	229.2
중간 집단	발달장애	180.6

8) 주거수리비

장애로 인한 주거수리비를 계산하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장애로 인하여 거주하기에 불편한 곳’이 있는 경우 예상되는 총 주거수리비용(지난 1년간 수리한 곳과 수리가 필요한 곳)을 조사하였다. 주거수리의 내구년수는 3년으로 보고, 총 주거수리비용을 36개월로 나누어 월 주거수리비를 계산하였다.

주거수리 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주거수리비를 비교해보면, 시각중증이 99.3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뇌병변증증 47.4천원, 지체증증 46.2천원, 청각언어증증이 26.2천원으로 조사되었다.

150) 장애 추가비용은 가구의 경제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바, 가구소득의 효과를 보정하기 위해 소득하위 60% 등록장애인 월평균 가처분소득(174.6천원)이 전체 등록장애인 월평균 가처분소득(371.6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47.0%)만큼 재활기관이용 욕구가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의 평균 이용료를 감액하였다.

〈표 8-1-33〉 장애범주별 주거수리비 평균

(단위: 천원)

장애종류	실제주거수리비	예상주거수리비	총주거수리비
지체중증	0.5	44.1	46.2
뇌병변중증		47.4	47.4
시각중증		99.3	99.3
청각언어중증		26.2	26.2
합계	0.3	50.0	51.1

장애범주간 평균 주거수리비의 사후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거수리 욕구가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 그리고 주거수리 욕구가 낮은 집단 등 세 집단으로 재범주화한 결과, 주거수리 욕구가 높은 집단에는 시각중증이, 중간 집단에는 지체중증과 뇌병변중증이 그리고 주거수리 욕구가 낮은 집단에는 청각언어중증이 포함되었다. 이들 세 집단의 주거수리비의 평균을 보면, 높은 집단은 99.3천원, 중간 집단은 46.6천원, 낮은 집단은 26.2천원으로 계산되었다.

〈표 8-1-34〉 주거수리 욕구별 평균 주거수리비

(단위: 천원)

주거수리 욕구	장애 종류·등급	평균 주거수리비
높은 집단	시각중증	99.3
중간 집단	지체중증, 뇌병변중증	46.6
낮은 집단	청각언어중증	26.2

4. 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추가비용 계산방식으로 산출한 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p>장애범주별 장애인 가구 최저생계비 =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 공통비목 추가비용 + 특수비목 추가비용</p>

즉, 장애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표준가구 최저생계비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공통비목+특수비목)을 합한 비용으로 계산된다(김미곤 외, 2010).

장애인 가구의 추가비용은 <표 8-1-35>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추가비용이 가장 높은 장애종류는 내부장애로 월평균 799.7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발달장애(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가 719.8천원, 지체중증 611.2천원, 청각언어중증 555.3천원, 시각중증 349.2천원, 뇌병변중증 256.1천원, 뇌병변경증 146.7천원, 지체경증 140.6천원, 청각언어경증 90.6천원, 정신장애 60.1천원, 시각경증 52.3천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1-35> 장애범주별 1인당 추가 비용

(단위: 천원)

장애종류	공통비목 추가비용			특수비목 추가비용					추가비용 합계
	교통비	의료비	휴대폰비	교육비	보호 간병비	보장구비	재활기관 이용료	주거 수리비	
지체중증	7.0	47.2	9.0	0	226.0	46.2	229.2	46.6	611.2
지체경증	14.7	113.0	12.9	0	0	0	0	0	140.6
뇌병변중증	0	47.2	9.0	0	107.1	46.2	0	46.6	256.1
뇌병변경증	7.0	113.0	12.9	0	0	13.8	0	0	146.7
시각중증	7.0	113.0	9.0	0	107.1	13.8	0	99.3	349.2
시각경증	0	47.2	5.1	0	0	0	0	0	52.3
청각언어중증	7.0	113.0	9.0	50.0	107.1	13.8	229.2	26.2	555.3
청각언어경증	0	47.2	5.1	0	0	38.3	0	0	90.6
발달장애	0	47.2	9.0	130.5	352.5	0	180.6	0	719.8
정신장애	0	47.2	12.9	0	0	0	0	0	60.1
내부장애	14.7	419.6	12.9	0	352.5	0	0	0	799.7

5. 장애인 추가비용의 활용

장애인가구 연평균 경상소득은 전체가구(5,828만원)대비 71.3%에 불과하며, 장애인가구 빈곤율은 42.2%로 전체가구 빈곤율(16.3%)의 2.6배에 달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오욱찬 외, 2020),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경제상태는 비장애인 가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장애인 가구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데에는 정부가 운용하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장애인 소득보장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장애인 소득보장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독일(1.3%), 스웨덴(1.8%), 덴마크(2.8%), 일본(0.6%) 등 주요 국가가 우리나라(0.3%)보다 월등히 높으며, OECD 회원국 전체 평균 1.6%인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평균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장애연금(국민연금), 장애급여(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기반 장애급여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등 조세 기반 장애급여 등 다양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지급 대상이 협소하고 지급액이 낮아 유효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21년말 장애연금(국민연금) 수급자는 76천명으로 18세 이상 장애인의 3.0%에 불과하며, 월평균 지급액은 424천원으로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선(527천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21년말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6.9만 명으로 전체 18~64세 장애인구 124.3만명의 30%에 불과하여,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상당수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수당(18세 이상)과 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은 기초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만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액 역시 각각 월 최대 4만원, 20만원에 불과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을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이 열악한 경제상태에 이르는 주요한 경로가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 소득이 제약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지출이 장애인 개인 및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장애 추가비용의 보전은 장애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은 크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나뉘 볼 수 있으며, 전자로는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며, 후자로는 해당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있다(김태완 외, 2017). 본 고에서는 이러한 정책 수단별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중장기적 접근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계측된 장애인 추가비용의 정책적 활용은 무엇보다 장애 추가비용 보전 목적의 현금

급여인 장애인연금(부가급여)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액의 준거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이하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급액은 최대 8만원(64세 이하 기준)으로서 본 고에서 파악된 장애범주별 월 평균 추가비용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장애범주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추가비용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초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장애 추가비용 급여의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시 장애범주별 추가비용의 현실적 보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점차적으로 소득 하위 80%, 90%, 그리고 전체 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 대상을 확대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은 차이가 없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에서 부가급여는 분리하여 장애수당과 합쳐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급여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김태완 외, 2017).

더불어 현재 장애 추가비용 보전 목적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연금의 경우에는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추가비용 지출에 상응하는 수준의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장애인 추가비용 활용

한편, 장애인 추가비용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장애인 추가비용을 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로 포함시키는 것이다(김미곤 외, 2010). 그렇게 되면 장애인 가구는 비장애인 가구보다 선정기준액이 상승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급여에서도 장애인 가구에 대한 급여는 장애인 추가비용이 포함되어 많아지게 된다(김태완 외, 2013).

1)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장애인 추가비용을 활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중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에 추가

비용 전체를 반영하는 것이다(김미곤 외, 2010). 따라서 장애인 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장애인 추가비용을 제한 금액¹⁵¹⁾이 될 것이다(김미곤 외, 2010). 이 경우에 현재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감안한 금품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일부 공제하고 있으나 더 이상 공제할 필요가 없게 된다(김태완 외, 2013). 또한 현행 소득평가액 산정에서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 경우 공제하고 있는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에서 장애인 추가 의료비를 제외한 금액'만을 공제하면 된다(김미곤 외, 2010).

결과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사실상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 가구보다 최저생계비를 더 높게 책정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작동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의 장애 추가비용 포함만으로는 불완전한데, 만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장애범주별로 계측된 장애 추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생활이 보장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급여

장애인 추가비용을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장애인 추가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다(김태완 외, 2013). 따라서 원칙적으로 장애인 추가비용이 포함된 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감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김미곤 외, 2010). 또는 일반가구와 동일하게 가구규모 별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감한 급여를 지급하되, 장애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에서 장애인 추가비용을 감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즉, 장애인 가구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김태완 외, 2017).

$$\text{장애인 가구의 급여} = \text{가구규모 별 최저생계비} - (\text{소득인정액} - \text{장애인 추가비용})$$

다. 바우처 또는 개인예산제도에서의 장애인 추가비용 활용

15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액을 추가로 제하여 소득평가액 산정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현물급여(보장구, 바우처 등)와 서비스의 제공이 추가비용 보전의 성격이 있는 만큼 현물급여와 서비스 확대를 통해 추가비용 욕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예산제'와의 연계이다. 장애인의 손상, 기능상태, 비건강적 개인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다양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개인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안착된다면 장애 추가비용은 개인예산에 포함되어 개인 맞춤형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다. 국민생활실태조사 및 장애인실태조사에서의 장애 추가비용 계측시 나타나는 근본적인 한계 중 하나가 비목별로 추가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장애인의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는 한정된 예산의 대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노인 추가비용

1. 노인 가구 추가비용의 개념과 필요성

본 절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 중 노인에 대한 최저생계비와 노인 추가비용을 표준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파악하고, 정책 활용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노인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이 '노인 최저 생계비' 라면, 노인이 비노인과 동일한 최저생활을 향유함에 있어 필요한 노인 1인당 추가비용이 '노인 추가비용'을 의미한다(김태완 외, 2013, p. 378). 노인 추가비용을 산정한다는 것은 최저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필수 지출 비용 산정에 있어 노인이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특성 등으로 인해 비노인에 비해 추가적 지출이 발생함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대한 근거를 노인과 비노인의 진료비 지출 차이, 표준가구 구성원 1인당 최저생계비와 노인 1인당 최저생계비 비교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표준가구 최저생계비와 노인포함 최저생계비 비교 시 성인균등화지수(AES)를 적용하여 표준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와 노인 포함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비교하고, 노인 추가비용 품목에 대한 검토 작업 및 선정된 소비지출 품목을 통해 실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때 산정방식은 기 수행되었던 연구 방식과 동일하게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추정된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원 한 명을 노인으로 대체한 후 산정되는 최저생계비를 비교하고, 노인 추가비용을 계산한다.

정책에 대한 정책적 빈곤선, 기준선을 설정함에 있어 소득 수준뿐 아니라 가구 형태, 연령 등의 특성에 따라 소비 수요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를 함께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는 이러한 소비 수요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 관련 수요는 노인 포함 가구가 높을 것이고 교육 관련 수요는 학령기 가구원 포함 가구가 높을 것이다. 의료와 교육을 제외한 소비 수요 또한 연령 등을 반영한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노인 비포함 가구는 노인가구에 비해 바깥 활동이 잦을 것이며 이로 인해 교통비 및 외식비가 더 많이 들 것이다. 반면 노인 및 노인 포함 가구는 특성상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냉난방비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다수 연구에서 노인에게 필요한 지출 수준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그 수준이 낮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존재하나 이러한 지출 특성을 고려하면 다른 견해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문길 외, 2020). 이런 측면에서 정책적 빈곤선 및 기준선에 있어 소득뿐 아니라 소비 수요 수준 또한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비는 최저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한 필수재뿐 아니라 (상대적)사치재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함께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들의 증가 속도는 다르다. 일정 소득 수준이 넘어갈 경우 소득의 증가 속도에 비해 소비 증가 속도는 현저히 느리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이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빈곤 가구는 소득제약으로 인해 일정 소득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최저생활 향유를 위한 필수품을 위한 소비가 소득 전부를 소비해도 부족한 경우도 발생 가능하다. 우리나라 노인빈곤 문제는 예외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노인 가구 중 빈곤가구가 많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노인 가구의 경우 소득원의 불안정성 또한 높다.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 공적연금은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급여이나, 기초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 및 재산 등의 변화로 인해 급여 변화 및 급여 중단 가능성이 있는 급여로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김문길 외, 2020). 예상치 못한 건강문제 및 소득원 불안정성 등으로 소비에 대한 과소 추정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정책적 빈곤선, 기준선을 설정함에 있어 가구특성, 연령 등의 특성에 따라 소비 수요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를 함께 고려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원 부재 또한 고려되어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2. 노인 추가비용에 대한 산정 근거

노인에 대한 추가비용은 노인 가구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노인을 포함하지 않은 가구와 노인이 포함된 가구는 동일한 가구원 수일지라도 지출수준이 다르다는 전제 하에 산정된다(김태완 외, 2013). 우리나라 노인 가구가 소득수준이 낮으며 동시에 소득원의 불안정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경제적 특성과 노인이 가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인해 비노인에 비해 추가적 지출이 발생함을 가정하는 것이다. 즉 최저생계비 측정 기준인 표준가구 가구원 중 1인이 노인으로 대체될 경우 추가적 지출이 발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인의 추가비용 발생 근거를 노인과 비노인의 진료비 지출 차이와 표준가구 구성원 1인당 최저생계비와 노인 1인당 최저생계비 비교를 통해서 찾고자 한다.

노인과 비노인의 진료비 지출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와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추이와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최근 이들의 규모 차이가 줄어들고 있으나, 65세 이상의 경우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진료비보다 약 2.7배로 여전히 높은 진료비를 보임에 따라 노인의 의료비 특히 건강하지 못한 노인의 높은 의료비 지출에 대한 반영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8-2-1〉 진료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A)	4,255	4,568	4,910	4,870	5,085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B)	1,391	1,528	1,681	1,688	1,857
A/B	3.1	3.0	2.9	2.9	2.7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2022, p. 13)

다음으로 노인 추가비용 산출 근거로 성인균등화지수(Adult Equivalence Scale, AES)를 활용한 노인 1인당 최저생계비와 표준가구 1인당 최저생계비의 지출규모를 비교함으로써 노인 추가비용 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김미곤 외, 2010, p.242; 김문길 외, 2020, p. 428). 성인균등화지수는 적절한 소비함수 추정을 위해 개발된 일종의 연령별 가중치이자 소비함수를 추정하는 주요 독립변인으로, 이를 활용한 소비함수 추정을 통해 가구 소비지출 특성 파악과 연령별 대상 집단에 대한 정책기준선을 도출할 수 있다(김태완 외, 2018, p. 119). 이전 연구들에서는 1999년 최저생계비 연구에서 개발된 성인균등화 지수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개발된 성인균등화 지수가 현재의 가구 및 경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표준가구 구성원의 연령 변화만 살펴보아도 표준가구에 속한 모든 가구원의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²⁾. 또한 당시 측정된 소비함수는 소

152) 표준가구 구성원의 연령 변화는 다음과 같다.

비지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주 관련 변수와 노후소득보장 관련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추정에 편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김문길 외, 2020, pp. 428-429). 김태완 외(2018)의 연구에서는 최근 변화된 특성들을 고려한 새로운 성인 균등화지수를 개발하였다. 측정된 새로운 성인균등화지수 모형에는 소득, 지역구분 등 기존 성인균등화지수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뿐 아니라 연령대별 소비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소득보장, 가구주 특성 관련 변수가 포함되었으며, 세분화시킨 연령 구분을 통해 소비함수의 추정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문길 외(2020)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2018년 새롭게 측정한 성인균등화 지수를 활용한다.

〈표 8-2-2〉 성인균등화지수(AES) 모형별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기존 AES 적용 (구모형)	신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연령구분	기존 연령구분	기존 연령구분	기존 연령구분		수정 연령구분	
주요변수	성인균등화지수 소득 지역구분	성인균등화지수 소득, 지역구분 노후소득보장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성별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상수항	제외	제외	포함	제외	포함	

자료: 김미곤·여유진 외(2010), 김태완 외(2018), 김문길 외(2020) 재인용

연도	가구원구성			
	부	모	1자	2자
1989	37세	33세	8세	5세
1994	37세	33세	8세	5세
1999	36세	33세	7세	5세
2004	39세	36세	10세	8세
2007	40세	37세	11세	9세
2010	40세	37세	11세	9세
2013	42세	39세	12세	10세
2017	44세	41세	14세	11세
2020 (1안)	47세	44세	16세	13세
2020 (2안)	42세	39세	12세	10세
2023	47세	46세	17세	15세

자료: 김미곤 외(2010), 김태완 외(2018), 김문길 외(2020) 재인용 및 업데이트

아래 표는 수정 연령구분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와 변수들을 적용하여 산출된 성인균 등화 지수이다.

〈표 8-2-3〉 모형별 연령별 성인균등화 지수 비교

연령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연령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1세대	0.3817	0.3810	0.3806	0.3794	51세	0.9751	0.9814	0.9733	0.9801
1세	0.6369	0.6459	0.6342	0.6438	52세	0.9523	0.9618	0.9496	0.9599
2세	0.6850	0.6976	0.6813	0.6947	53세	0.9314	0.9415	0.9286	0.9396
3세	0.6344	0.6471	0.6301	0.6435	54세	0.9125	0.9209	0.9103	0.9195
4세	0.5934	0.6056	0.5890	0.6017	55세	0.8954	0.9002	0.8945	0.8999
5세	0.5934	0.6056	0.5890	0.6017	56세	0.8802	0.8799	0.8810	0.8810
6세	0.5934	0.6056	0.5890	0.6017	57세	0.8668	0.8603	0.8696	0.8630
7세	0.6748	0.6908	0.6698	0.6868	58세	0.8552	0.8416	0.8601	0.8462
8세	0.7524	0.7710	0.7470	0.7670	59세	0.8452	0.8244	0.8525	0.8308
9세	0.8247	0.8450	0.8190	0.8408	60세	0.8369	0.8088	0.8465	0.8171
10세	0.8901	0.9112	0.8843	0.9070	61세	0.8302	0.7953	0.8419	0.8054
11세	0.9471	0.9684	0.9413	0.9642	62세	0.8251	0.7843	0.8387	0.7958
12세	0.9942	1.0153	0.9884	1.0111	63세	0.8215	0.7759	0.8366	0.7887
13세	1.0297	1.0504	1.0240	1.0462	64세	0.8193	0.7706	0.8354	0.7842
14세	1.0521	1.0725	1.0465	1.0683	65세	0.8186	0.7688	0.8351	0.7826
15세	1.0600	1.0801	1.0543	1.0760	66세	0.8186	0.7688	0.8351	0.7826
16세	1.0600	1.0801	1.0543	1.0760	67세	0.8186	0.7688	0.8351	0.7826
17세	1.0600	1.0801	1.0543	1.0760	68세	0.8186	0.7688	0.8351	0.7826
18세	1.0600	1.0801	1.0543	1.0760	69세	0.8186	0.7688	0.8351	0.7826
19세	1.4436	1.4726	1.4366	1.4683	70세	0.8186	0.7688	0.8351	0.7826
20세	1.4464	1.4739	1.4403	1.4706	71세	0.8186	0.7688	0.8351	0.7826
21세	1.2381	1.2586	1.2341	1.2568	72세	0.8186	0.7688	0.8351	0.7826
22세	0.9886	1.0014	0.9866	1.0010	73세	0.8186	0.7688	0.8351	0.7826
23세	0.8677	0.8769	0.8666	0.8771	74세	0.8186	0.7688	0.8351	0.7826
24세	0.8677	0.8769	0.8666	0.8771	75세	0.8186	0.7688	0.8351	0.7826
25세	0.8677	0.8769	0.8666	0.8771	76세	0.8186	0.7688	0.7888	0.7202
26세	0.8677	0.8769	0.8666	0.8771	77세	0.8186	0.7688	0.7578	0.6778
27세	0.8677	0.8769	0.8666	0.8771	78세	0.8186	0.7688	0.7397	0.6523
28세	0.8677	0.8769	0.8666	0.8771	79세	0.8186	0.7688	0.7321	0.6406
29세	0.7899	0.7970	0.7886	0.7964	80세	0.8186	0.7688	0.7323	0.6394
30세	0.7447	0.7500	0.7431	0.7489	81세	0.8186	0.7688	0.7381	0.6456
31세	0.7270	0.7308	0.7254	0.7295	82세	0.8186	0.7688	0.7468	0.6560
32세	0.7320	0.7347	0.7305	0.7332	83세	0.8186	0.7688	0.7561	0.6673
33세	0.7547	0.7565	0.7534	0.7551	84세	0.8186	0.7688	0.7635	0.6765
34세	0.7904	0.7915	0.7893	0.7903	85세	0.8186	0.7688	0.7665	0.6802
35세	0.8340	0.8347	0.8331	0.8336	86세	0.8186	0.7688	0.7665	0.6802

연령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연령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36세	0.8807	0.8810	0.8801	0.8803	87세	0.8186	0.7688	0.7665	0.6802
37세	0.9255	0.9257	0.9252	0.9252	88세	0.8186	0.7688	0.7665	0.6802
38세	0.9636	0.9637	0.9634	0.9634	89세	0.8186	0.7688	0.7665	0.6802
39세	0.9901	0.9901	0.9900	0.9900	90세	0.8186	0.7688	0.7665	0.6802
40세	1.0000	1.0000	1.0000	1.0000	91세	0.8186	0.7688	0.7665	0.6802
41세	1.0000	1.0000	1.0000	1.0000	92세	0.8186	0.7688	0.7665	0.6802
42세	1.0000	1.0000	1.0000	1.0000	93세	0.8186	0.7688	0.7665	0.6802
43세	1.0000	1.0000	1.0000	1.0000	94세	0.8186	0.7688	0.7665	0.6802
44세	1.0000	1.0000	1.0000	1.0000	95세	0.8186	0.7688	0.7665	0.6802
45세	1.0000	1.0000	1.0000	1.0000	96세	0.8186	0.7688	0.7665	0.6802
46세	1.0000	1.0000	1.0000	1.0000	97세	0.8186	0.7688	0.7665	0.6802
47세	1.0000	1.0000	1.0000	1.0000	98세	0.8186	0.7688	0.7665	0.6802
48세	1.0000	1.0000	1.0000	1.0000	99세	0.8186	0.7688	0.7665	0.6802
49세	1.0000	1.0000	1.0000	1.0000	100세	0.8186	0.7688	0.7665	0.6802
50세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김태완 외(2018, pp.135-137).

노인 1인당 최저생계비 산출을 위해 마켓 바스켓 구성의 기준이 되는 표준가구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23년 표준가구 구성 안은 47세 남성가구주, 46세 여성배우자, 17세 남아, 15세 여아이다. 본 표준가구 구성안에 해당하는 모형 1 기준 성인균등화지수는 부 47세 1.0000, 모 46세 1.0000, 1자(남) 1.0600, 2자(여) 1.0600으로 표준가구 가구원의 성인균등화지수 합계는 4.1200이다. 표준가구 1인당 평균 성인균등화 지수는 1.0300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성인균등화 지수(0.8186)보다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까지의 연구결과는 노인의 성인균등화지수가 표준가구의 1인당 평균 성인균등화지수보다 높게 나타났었으나, 2020년부터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2-4〉 2023년 표준가구 구성

표준가구의 구성			
부: 47세	모: 46세	1자(남): 17세	2자(여): 15세
1974년생	1975년생	2004년생, 고2	2006년생, 중3

전물량 방식으로 산출된 2023년 최저생계비 표준가구에 따르면, 4인 표준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대도시 2,529,148원, 중소도시 2,386,525, 농어촌 2,209,798원으로 계측되었다¹⁵³). 중소도시 최저생계비를 이용하여 중소도시 최저생계비를 표준가구 균

등화 지수의 합계로 나누어 1인당 금액을 산출, 1인당 금액에 표준가구의 평균 성인균 등화지수를 곱하여 표준가구 1인당 최저생계비를 구했다. 노인 1인당 최저생계비는 1인당 금액에 노인의 성인균등화지수를 곱하여 구했다.

2019년 새롭게 산출한 성인균등화지수를 각 모형별로 적용하여 노인추가비용의 산정 근거를 살펴본 결과들은 아래 표와 같다. 분석 결과 노인을 포함한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4인 표준가구 생계비보다 더 큰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성인균등화지수 적용을 통해 살펴본 결과로는 노인 포함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노인 비포함 4인 가구 최저생계비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표 8-2-5〉 성인균등화 지수 근거 노인최저생계비와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비교: 1인

(단위: 천원)

구분	표준가구1인당 최저생계비	노인1인당최저 생계비	4인표준가구최 저생계비(A)	노인포함4인가구 최저생계비(B)	(B)-(A)		
2010	354	402	1,418	1,465	48		
2013	402	433	1,607	1,638	32		
2017	453	456	1,811	1,815	4		
2020	구모형	534	2,134	509	2,110	-25	
				모형1	427	2,028	-106
				모형2	397	1,998	-136
				모형3	437	2,038	-97
				모형4	405	2,006	-128
2023	597	597	2,387	474	2,264	-123	
				모형2	441	2,231	-156
				모형3	485	2,275	-112
				모형4	450	2,240	-147

노인추가비용 산정 근거를 노인과 비노인의 진료비 지출 차이와 표준가구 구성원 1인당 최저생계비와 노인 1인당 최저생계비 비교를 통해서 확인해봤다. 그 결과 노인 포함 4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노인 비포함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지출 비교에서는 노인 추가비용 산정에 대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과 비노인의 진료비 지출 차이에 있어서는 여전히 높은 진료비 차이를 보임에 따라 노인의 의료비 특히 건강하지 못한 노인의 높은 의료비 지출에 대한 반영은 고려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와 달리 최근 인구 및 가족 특성을 고려 시 노인추가비용 산정에 대한 명확

153) 4급지 구분 시 서울 2,736,294원, 경기 2,593,239원, 광역/세종/창원 2,429,672원, 그 외 지역 2,280,843원

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으나 실제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으로 노인 추가비용 품목에 대한 검토 작업, 선정된 소비지출 품목을 통해 실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3. 노인 추가비용 품목에 대한 검토

노인 추가비용 산정은 기 수행된 연구(2007년, 2010년, 2013년, 2017년, 2020년)의 접근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¹⁵⁴⁾ 기존 연구에서 수행된 노인 추가비용 산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가구 가구원 중 1인이 빠지고 노인 1명이 대체됨을 가정한다. 이는 노인 추가비용 산정은 개인 단위(가구원)로 접근함을 의미한다. 노인 포함 가구는 의료 및 보은 관련 욕구가 비노인보다 크다는 점, 의료비의 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건강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둘째, 노인 가구 실태를 반영하되 규범적 측면에서 접근한다. 비목 선정에 있어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지출 수준이 높은 지출비목 중심으로 구성한다. 다만 노인 가구는 소득 불확실성이 높아 물질적 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낮추며, 소비 욕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제함으로써 소비지출 수준이 과소평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통념상 필수적이라고 인식되는 항목, 기 수행된 노인추가비용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품목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추가비용을 산정하였다. 셋째, 지역별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연구진이 제안한 중소도시 기준 마켓 바스켓 금액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이와 같은 산정 원칙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공통비목, 특수비목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검토한다.

$$\text{노인 추가비용} = \text{공통비목 추가비용} - \text{공통비목 감소비용} + \text{특수비목 추가비용}$$

김태완 외(2013)에 따르면 ‘공통비목 추가비용’은 마켓 바스켓 비목 중 표준 가구 가구원 1인이 노인 1인으로 대체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의미한다. ‘공통비목 감소비용’은 마켓 바스켓 비목 중 표준 가구 가구원 1인이 노인 1인으로 대체됨에 따라 발생하는 감소 비용을 의미한다. 식료품비를 예로 들면, 새로 들어오는 노인의 식료품

154) 이하 내용은 김문길 외(2020, pp.420-430)를 발췌 및 수정하였음.

비용 증가는 ‘공통비목 추가비용’, 노인과 대체되어 나가는 기존 가구원 식료품비 감소는 ‘공통비목 감소비용’을 의미한다. 이때 표준가구원 중 1인에 해당하는 비용은 1/4을 감소한다. ‘특수비목 추가비용’은 표준가구 마켓 바스켓에 없는 비목 중 기존 가구원 1인이 노인으로 대체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목의 비용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노인 추가비용 추정방식은 노인이 포함된 표준가구 설정에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 가구규모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 점, 노인 추가비용 비목 선정을 마켓 바스켓 구성에서도 일반가구의 마켓 바스켓의 선정원칙을 적용한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김미곤 외, 2010, p.323; 김문길 외, 2020, p. 422 재인용). 하지만,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노인 추가비용 산정방식은 표준가구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비교가 용이하며 성인균등화 지수의 적용으로 인해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혜 기준선을 검토할 수 있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김문길 외, 2020, p. 422).

노인 추가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목에 대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내구재와 사회문화적인 품목의 경우 필수품으로 정의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1999년도 최저생계비 최초 계측 당시 도출된 사회적 합의 기준에 의해, 내구재는 보유현황 비율이 67%(=2/3) 이상, 50% 이상~67% 미만, 50% 미만으로 구분한 후, 67% 이상은 필수품으로 선정하였다. 사회문화적인 품목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2)의 품목별 탄력성을 이용하여 탄력성이 0.5 이하이면 필수품으로 간주하였다(김태완 외, 2013, p.117, p.232). 노인 추가비용 산정을 위한 추가품목의 경우에도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항목 중 보유현황이 66.7%(2/3) 이상의 품목을 포함하며, 50.0~66.7%에 속하는 품목은 필수품이라는 인식이 66.7% 이상일 경우 항목을 포함한다. 그리고 항목 중 사회적 통념에 의해 필수적이라 인식되는 항목은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김미곤 외, 2010, p.325; 김문길 외, 2020 재인용).

본 연구 역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되 기 수행된 연구의 연속성과 비교의 용이성을 위해 이전년도에 포함되었던 품목들은 제외시키지 않고 노인추가비용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2020년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기초연금 수급가구와 전체 노인가구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기초연금 대상 노인에 대한 추가비용의 비교대상으로 전체 노인 가구의 추가비용을 활용하여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노인 가구의 노인용 품목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과 보유율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기초연금 수급가구와 전체가구 분석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용 품목에 대한 보유율의 경우 파카(외투), 전기장판, 목도리, 동내의, 모자의 경우 보유율이 2/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카(98.8%)와 전기장판(91.6%)의 보유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목도리(81.7%), 동내의(79.3%), 모자(69.7%) 순으로 나타났다. 안경은 전체가구 대상으로 분석 시 67.4%로 보유율이 2/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품 인식을 살펴보면, 파카(95.1%)의 경우 필수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기장판(79.0%), 동내의(67.3%), 목도리(58.3%) 순으로 나타났다. 보유율도 높으며 동시에 필수품 인식이 높은 품목의 주요 공통점은 추위 및 이에 대응한 체온유지를 위한 노인들의 방한 및 월동용품이라는 점이다.

한편 한복의 보유율 및 필수품 인식률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다.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보유율 49.6%(2017년)→35.0%(2020년),→18.1%(2023년), 필수품 인식률 30.6%(2017년)→7.5%(2020년)→3.0%(2023년)이다. 이에 향후 한복을 노인 가구의 필수품으로 봄에 있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표 8-2-6〉 노인 가구의 노인용 품목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과 보유율

(단위: %)

구분	전체가구				기초연금 수급가구			
	필수적임	있으면 좋음	필요없음	보유율	필수적임	있으면 좋음	필요 없음	보유율
안경	58.2	18.3	23.5	67.4	54.6	19.6	25.8	63.7
틀니	26.8	7.8	65.4	25.6	32.7	7.7	59.6	31.5
지팡이	9.7	11.1	79.2	11.4	11.5	11.7	76.9	13.8
보청기	4.2	8.6	87.2	3.3	4.6	8.3	87.1	3.7
체온계	9.9	44.5	45.6	21.0	6.9	46.0	47.1	17.1
보온병	19.5	45.1	35.4	52.5	17.5	45.3	37.2	48.8
난로	4.9	21.7	73.4	6.8	4.6	22.4	73.0	5.9
가습기	5.5	33.3	61.1	10.0	4.1	33.0	62.9	7.5
전기장판	76.3	16.4	7.3	89.0	79.0	15.6	5.4	91.6
파카(외투)	95.4	4.2	0.4	99.0	95.1	4.5	0.3	98.8
모자	47.9	32.7	19.4	70.6	47.5	32.9	19.6	69.7
동내의	65.0	18.3	16.7	77.2	67.3	17.9	14.8	79.3
목도리	58.7	30.2	11.1	82.5	58.3	30.3	11.4	81.7
한복	3.7	17.2	79.1	19.2	3.0	16.3	80.7	18.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노인가구조사)」, 원자료.

노인용 기타품목 필수품 인식률과 이용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경우 택시비는 각각 19.1%와 33.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가구의 경우 각각 18.5%와 34.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경로당 등 회비와 노인복지시설이용의 경우 필수품 인식률과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7〉 노인 가구의 노인용 기타품목 필수품 인식률과 이용률

(단위: %)

	전체가구				기초연금 수급가구			
	필수적임	있으면 좋음	필요없음	이용률	필수적임	있으면 좋음	필요 없음	보유율
택시비	18.5	43.7	37.8	34.0	19.1	46.9	34.0	33.7
경로당등회비	9.9	21.1	69.1	11.1	10.3	22.5	67.2	11.9
노인복지시설이용	4.8	31.1	64.1	3.6	4.8	32.6	62.6	3.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노인가구조사)」, 원자료.

다음은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품목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 및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이다. 기초연금 수급가구에서 병의원 진료비의 경우는 노인의 87.5%가 필수적이라고 응답하였고 이용률은 9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약제비가 74.2%의 필수품 인식률과 74.2%의 이용률을 나타내었다. 그 밖에 고혈압 치료약이 57.3%의 필수품 인식률과 57.2%의 보유율, 상비약 42.3%의 필수품 인식률과 56.9%의 보유율, 그리고 영양제 30.9%의 필수품 인식률과 47.7%의 보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품목들은 이용률 및 필수품 인식률에 있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가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전체가구에서도 필수품 인식률과 이용률이 모두 50%를 넘은 품목은 고혈압 치료약, 병의원진료비, 약제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8〉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품목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과 이용률

(단위: %)

	전체가구				기초연금 수급가구			
	필수적임	있으면 좋음	필요없음	이용률	필수적임	있으면 좋음	필요 없음	이용률
영양제	33.3	52.7	13.9	51.0	30.9	54.6	14.5	47.7
상비약	40.8	43.8	15.5	57.4	42.3	43.4	14.3	56.9
건강보조식품	12.9	62.4	24.7	28.5	12.1	63.4	24.5	25.5
고혈압 치료약	56.4	3.3	40.3	56.3	57.3	3.1	39.6	57.2
관절염 치료약	15.0	20.0	64.9	13.4	17.8	22.7	59.5	16.2
성인용 소변패드	0.9	4.4	94.6	1.1	1.1	4.5	94.4	1.3
병원 진료비	87.3	6.1	6.6	90.4	87.5	6.7	5.8	91.2
약제비	72.9	11.2	15.9	72.9	74.2	10.9	14.8	74.2
미충족의료비	4.3	18.1	77.6	5.8	5.3	20.1	74.5	7.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노인가구조사)」, 원자료.

기 수행된 연구의 추가비용 산정을 위한 품목 중 주요 품목을 유지하며 앞서 살펴본 필수품 인식률과 보유율(또는 이용률)을 반영한 노인 추가비용을 구성하는 공통비목 추가비용 및 감소비용 항목, 특수비목 추가비용 항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8-2-9〉 노인 1인당 추가비용 구성(안)

구분	항목	
공통 비목 추가 비용	식료품비 수도광열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총식료품비 난방비 외의(한복), 동내의, 목도리 의료서비스(입원, 외래 처방약 값), 안경
공통 비목 감소 비용	식료품비 수도광열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기타소비지출	총식료품비 난방비 외의(신사복, 숙녀복), 동내의, 목도리 의료서비스(입원, 외래 처방약 값), 약값(위생대), 안경 총교육비 교제비 등(교제비, 친목단체비, 자녀용돈, 친지방문비)
특수 비목 추가 비용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기타소비지출	전기장판 모자, 파카 약값(영양제, 상비약 등), 지팡이, 틀니,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이용 경로당 회비 등

4. 노인 추가비용 산정

선정된 소비지출 품목을 통해 노인 추가비용을 확인해 보았다. 조사대상은 전체 노인가구와 기초연금을 수급 받는 노인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 비목별 기초연금 수급받는 노인 1인당 추가비용의 산출 방법 및 산출량을 살펴보면, 먼저 식료품비는 표준가구 4인 기준 9,100Kcal이며, 노인 1인의 기준열량은 1,750Kcal¹⁵⁵⁾이다. 노인 1인에 대한 식료품비가 추가되면 표준가구 식료품비는 1/4이 감소하게 된다. 이럴 경우 식료품비는 약 52,000원 감소한다. 난방비는 표준가구 난방 평균 사용량과 가구원 중 1인이 노인 1인으로 변경될 경우 약 2,900원 증가한다¹⁵⁶⁾. 특수비목에 해당하는 전기장판은 약 3,8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복신발비를 살펴보면, 모자, 파카는 특수비목으로 포함되며 각각 약 1,200원, 7,200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비목 중 등내의와 목도리의 경우 노인 1인 월 평균 비용은 각각 약 1,800원, 1,200원인 반면 감소되는 표준가구 비용은 각각 약 1,600원, 200원으로 나타났다. 목도리의 경우 이전 연구에는 공통비목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목도리 보유율은 약 82%로 노인용 품목 중 파카(외투), 전기장판에 이어 높은 보유율을 보이며, 이전 연구에서도 약 73%(2020년), 약 91%(2017년)의 보유율을 보인다. 따라서 목도리의 경우 공통비목 추가비용에 포함하였다. 한복의 경우 공통비목 추가비용에 포함하는 대신 한복으로 인해 감소되는 품목으로 신사복과 숙녀복 비용을 반영하였다. 한복으로 인해 월 3,411원이 소요되는 대신 표준가구의 신사복과 숙녀복 비용 중 약 1,300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복의 경우 보유율(18.1%)과 필수품에 대한 인식률(3.0%)이 낮으며,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한복을 특수비목으로 포함함에 있어서는 사회적 통념을 고려하더라도 향후 포함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다음으로 보건의료비 중 의료서비스의 경우 코로나19 시기 실태조사라는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가 아닌 건강보험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건강보험통계연

155) 한국영양학회(2020)에 따르면 65~74세 권장 칼로리는 남성 2,000Kcal, 여성 1,600Kcal, 75세 이상 권장 칼로리는 남성 1,900Kcal, 여성 1,500Kcal로 나타남.

156) 노인 가구 포함 난방사용량은 2020년 표준가구 난방사용량 대비 노인 가구 포함 난방사용량 증가율을 2023년 표준가구 난방 사용량에 적용하여 산출

보의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인구의 1인당 월 진료비 비율(3.8배)을 적용하여 노인의 의료서비스비를 추가¹⁵⁷⁾하고, 반면 표준가구 의료서비스비의 1/4을 감액하였다. 틀니, 안경은 특수비목 추가비용으로 노인 추가비용에 포함되었다. 추가 약값으로 영양제와 상비약은 추가비용 품목에 반영하였고, 표준가구의 경우 생리대 비용을 감액하였다. 지팡이와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 이용은 건강하지 못한 노인에게만 추가품목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였다.

공통비목인 교육비는 표준가구의 총 교육비 1/4을 감액하였으며, 특수비목으로 경로당비를 추가하고, 표준가구의 교제비, 친목단체비, 자녀용돈, 친지방문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감액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공통비목 추가비용과 감소비용, 특수비목 추가비용을 가감하여 노인 추가비용을 산정한 결과, 기초연금을 수급받는 노인 1인당 추가비용이 건강한 노인은 18,771원,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135,639원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구의 경우 건강한 노인은 27,164원의 추가 비용이,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149,983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체노인의 경우가 기초연금 수급노인보다 노인 추가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20년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¹⁵⁸⁾. 노인추가비용이 정(+의 값을 가지는 것이 노인이 실제로 더 지출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물 및 타지원액을 고려할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노인추가급여는 필요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157) 노인 중 건강하지 못한 노인의 경우 2020년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1.4배(건강한 노인과 건강하지 못한 노인의 진료비 비율) 추가 적용

158) 2020년 연구에서도 전체노인 대상 1인당 추가비용이 기초연금 수급가구 노인 1인당 추가비용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건강한 노인의 추가비용은 2020년보다 2023년 다소 증가하였으나 건강하지 못한 노인의 추가비용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결과 해석에 있어 추가비용 산정 방식 변경(코로나19 당시 조사 시점 고려한 의료서비스비 산정방식 및 소비지출 일부 품목 변경)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

〈표 8-2-10〉 2020년 노인 1인당 추가비용 :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노인대상

항목		증감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건강한노인	비건강노인
식료품비	총식료품비	증가	1월	894,118 ×1,750kcal / 9,100Kcal	1인	171,946원	154,269원
		감소	1월	894,118	1/4	-223,530원	-223,530원
수도 광열비	난방비	증가	1월	57,341	2,558MJ	57,341원	57,341원
		감소	1월	54,427	2,428MJ	-54,427원	-54,427원
가구집기 가사 용품비	전기장판	추가	52	160,561	1개	3,088원	3,088원
피복 신발비	외의	증가	110월	375,252 (한복)	1벌	3,411원	3,411원
		감소	1월	5,097 (신사숙녀복)	1/4	-1,274원	-1,274원
	모자	추가	40월	24,621	2개	1,231원	1,231원
	목도리	증가	43월	26,118	2개	1,215원	1,215원
		감소	1월	742	1/4	-186원	-186원
	동내의	증가	34월	30,264	2벌	1,780원	1,780원
		감소	1월	6,507	1/4	-1,627원	-1,627원
	파카	추가	46월	165,170	2점	7,181원	7,181원
보건 의료비	의료서비스비	증가	1월	66,892 (비건강노인×1.4배)	1인	66,892원	93,649원
		감소	1월	70,413	1/4	-17,603원	-17,603원
	약값	추가	3월	30,727 (영양제)	1통	10,242원	10,242원
			1월	5,690 (상비약)	1개	5,690원	5,690원
		감소	1월	11,782 (위생대)	1/4	-2,946원	-2,946원
	지팡이	추가	40월	25,094	1개	0원	627원
	안경	증가	47월	102,120	1인	2,173원	2,173원
		감소	1월	3,854	1/4인	-964원	-964원
	틀니	추가	61월	1,382,943	1개	22,671원	22,671원
	장기요양보험 급여서비스이용	추가	1월	4,474	20회	0원	89,484원
	교육비	총교육비	감소	1월	125,501	1/4인	-31,375원
경로당		추가	1월	12,990	1인	12,990원	12,990원
기타 소비지출	교제비등	감소	1월	60,604 (교제, 친목단체, 용돈, 친지 방문)	1/4인	-15,151원	-15,151원
계	전체					18,771원	135,639원

주: 증가는 노인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감소는 증가에 대칭되는 감소비용을 의미한다. 또한 추가는 표 준가구 마켓 바스켓에 없는 품목으로 추가된 품목을 의미한다.

〈표 8-2-11〉 2023년 노인 1인당 추가비용: 전체 노인 대상

항목		증감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건강한노인	비건강노인
식료품비	총식료품비	증가	1월	894,118 ×1,750kcal / 9,100Kcal	1인	171,946원	154,269원
		감소	1월	894,118	1/4	-223,530원	-223,530원
수도 광열비	난방비	증가	1월	57,341	2,558MJ	57,341원	57,341원
		감소	1월	54,427	2,428MJ	-54,427원	-54,427원
가구집기 가사 용품비	전기장판	추가	50	166,264	1개	3,325원	3,325원
피복 신발비	외의	증가	112월	406,086 (한복)	1벌	3,626원	3,626원
		감소	1월	5,097 (신사숙녀복)	1/4	-1,274원	-1,274원
	모자	추가	38월	26,288	2개	1,384원	1,384원
	목도리	증가	42월	32,373	2개	1,542원	1,542원
		감소	1월	742	1/4	-186원	-186원
	동내의	증가	34월	31,276	2벌	1,840원	1,840원
		감소	1월	6,507	1/4	-1,627원	-1,627원
	파카	추가	46월	189,648	2점	8,246원	8,246원
보건 의료비	의료서비스비	증가	1월	66,892 (비건강노인×1.4배)	1인	66,892원	93,649원
		감소	1월	70,413	1/4	-17,603원	-17,603원
	약값	추가	3월	32,743 (영양제)	1통	10,914원	10,914원
			1월	5,956 (상비약)	1개	5,956원	5,956원
		감소	1월	11,782 (위생대)	1/4	-2,946원	-2,946원
	지팡이	추가	40월	24,589	1개	0원	615원
	안경	증가	47월	125,747	1인	2,675원	2,675원
		감소	1월	3,854	1/4인	-964원	-964원
	틀니	추가	61월	1,378,129	1개	22,592원	22,592원
	장기요양보험 급여서비스이용	추가	1월	4,772	20회	0원	95,447원
	교육비	총교육비	감소	1월	125,501	1/4인	-31,375원
경로당		추가	1월	17,967	1인	17,967원	17,967원
기타 소비지출	교제비등	증가	1월	60,604 (교제, 친목단체, 용돈, 친지 방문)	1/4인	-15,151원	-15,151원
		감소	1월				
계	전체					27,164원	149,983원

주: 증가는 노인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감소는 증가에 대칭되는 감소비용을 의미한다. 또한 추가는 표 준가구 마켓 바스켓에 없는 품목으로 추가된 품목을 의미한다.

5. 노인 추가비용의 정책적 활용

본 연구에서 노인이 비노인과 동일한 최저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는 근거로 노인 포함 가구의 최저생계비와 노인 비포함 표준 가구의 최저생계비 규모 비교, 그리고 노인과 비노인의 진료비 지출 차이를 통해 살펴봤다. 성인균등화지수를 적용한 노인 포함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와 노인 비포함 표준가구 최저생계비의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노인 추가비용 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문제로 인해 지출되는 보건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하는 데 반해 소득은 축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노인과 비노인의 진료비 지출 차이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경우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진료비보다 약 2.7배로 높은 진료비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노인 추가 비용 산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 제시가 쉽지 않으나, 노인 1인당 추가비용을 산출한 결과는 정(+)의 값이 산출되었다. 즉 노인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노인 1인당 추가 비용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물 및 타지원액을 감안할 경우 노인가구에 대한 추가적 현금지원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2-12〉 2023년 노인 가구의 추가 현금급여

추가 현금급여	=	추가비용	-	현물 및 타지원액(제외 품목)
◦없음		<전체 노인> ◦건강한 노인: 27,164원 ◦건강하지 못한 노인: 149,983원 <기초연금 수급 노인> ◦건강한 노인: 18,771원 ◦건강하지 못한 노인: 135,639원		◦ 의료비 중 보건의료서비스 - 의료급여 입원 : 1종 100%, 2종 90% - 의료급여 외래 : 최소 85% ◦ 장기요양보험급여: 재가급여 85%, 시설급여 80%, 기초수급자 100% ◦ 노인요양(틀니)사업: 건강보험 70%, 의료급여 1종 95%, 2종 85%

노인 추가비용은 맞춤형 급여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수준 산정 관련 적정성 평가에 대한 비교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리를 따름에 따라 타 정책들과의 연계 및 중복수급 관련 정책적 빈곤선 설정 시 이들의 추가 비용, 즉 필수 소비 수요를 추정하여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반영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인 대상 각종 정책 도입 및 연계/확장 시 그에 대한 근거 및 보완 자료로 소득뿐 아니라 소비 수요 수준 또한 함께 반영되어질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노인 추가비용 산정 근거로 노인 대상 정책수혜 기준선을 정한다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책정될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들을 동질적 집단(건강 상태만 고려)으로 가정함에 따른 한계점을 가짐에 따라 이러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노인은 예상치 못한 건강문제 및 소득원 불안정성 등으로 소비에 대한 과소 추정 가능성이 높은 집단임이 고려되어질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공적 연금을 제외한 기초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은 급여 변화 및 급여 중단 가능성으로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소득은 소비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소득 감소는 소비 평탄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노인들의 불안정한 소득원은 소비에 대한 과소 추정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예측 불가능한 건강 관련 지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발생 가능성 또한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높다. 따라서 노인들을 동질적 집단이 아닌 건강 상태, 안정적 소득원 존재, 지급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 등에 따른 특성이 상이한 이질적 집단으로 가정하며, 각 집단의 필요한 욕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들을 활용하여 소득보장에서의 관점뿐 아니라 소비생활 개선정책으로의 확장도 필요해 보인다.

제3절 한부모가구 추가비용

1.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의 개념과 필요성, 실태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이란 한부모가구의 특성에 기인해 발생하는 지출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뜻한다. 최저생계비는 자녀 2인이 있는 양부모가족을 표준가구로 상정, 계측하고 있어서 돌봄이나 부양의 역할을 맡게 되는 성인 가구원의 숫자가 적은 한부모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한부모가구의 추가비용 산정은 양부모가구와 비교하여 한부모가구가기 때문에 더 필요한 욕구가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즉, 돌봄이나 부양의 역할을 맡는 성인 2인과 미성년자녀 2인으로 구성된 가구에 비해 해당 책임을 맡는 성인 1인과 미성년자녀 3인으로 구성된 가구는 성인 가구원 1인의 부재로 인해 돌봄이나 안전 등에 취약할 수 있다고 보고, 그에 따른 지출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한부모가구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활용가능한 가장 최신자료인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계산한 2021년 전국 한부모가구는 151만가구이며, 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37만4천가구, 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113만6천가구로 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약 3배가량 많다(여성가족부, 2023). 막내자녀연령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36만9천가구, 19세 이상인 경우는 114만1천가구였으며, 이 또한 연령이 19세 이상인 경우가 약 3배 정도 많다.

202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자료(여성가족부, 2023)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정의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세대를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다. 동 안내자료의 파악가능한 가장 최신 연도는 2021년이며, 모자가족이 전체 한부모가족의 세대기준 79.2%(146,973세대), 부자가족이 20.2%(37,432세대), 조손가족이 0.6%(1,056세대)를 차지한다(여성가족부, 2023).

[그림 8-3-1] 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

(단위: 세대)



주: 저소득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동시보장결정가구 포함)
 자료: 여성가족부. (2023).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4. (원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도말 기준.)

2. 한부모 표준가구 구성과 계측된 추가비용의 변천

한부모가구 추가비용 계측은 1999년부터 이뤄졌다. 연차별로 표준가구 가구원의 연령과 시대변화에 따른 욕구가 소폭씩 반영되어 왔으며, 계측된 추가비용은 점증했다. 추가계측 비용은 표준가구안을 바탕으로 지출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측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자녀의 연령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20년이다. 2020년에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2개의 표준가구안이 제시되었다. 표준가구안은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및 인구동향조사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당시, 표준가구 1안의 남성한부모 가구는 47세부와 16세, 13세의 자녀로 여성한부모 가구는 44세 모와 16세, 13세의 자녀로 구성됐다. 표준가구 2안의 남성한부모 가구는 42세 부와 12세, 10세의 자녀로, 여성한부모 가구는 39세 모와 12세, 10세의 자녀로 구성됐다. 한부모 표준가구 1안의 남성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392,171원, 여성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396,912원이, 한부모 표준가구 2안의 남성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남성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181,892원, 여성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240,883원이

계측되었다. 1안 가구가 2안 가구에 비해 추가비용이 컸던 것은 자녀 연령에 따른 교육비의 영향이 컸다.

2023년 표준가구 구성안은 하나의 가구안만 제시되었다. 표준가구 구성안에 따라, 남성 한부모 가구는 47세 부와 17세, 15세 자녀로, 여성 한부모 가구는 46세 모와 17세 15세 자녀로 구성된다.

〈표 8-3-1〉 한부모 표준가구 구성

구분1		구분2		첫째아	둘째아
2020년	1안	남성 한부모가구	남성(47세) 한부모가구	16세(고등학생)	13세(중학생)
		여성 한부모가구	여성(44세) 한부모가구	16세(고등학생)	13세(중학생)
	2안	남성 한부모가구	남성(42세) 한부모가구	12세(초등학생)	10세(초등학생)
		여성 한부모가구	여성(39세) 한부모가구	12세(초등학생)	10세(초등학생)
2023년		남성(47세) 한부모가구 (1974년생)		17세 (2004년생, 고2)	15세 (2006년생, 중3)
		여성(46세) 한부모가구 (1975년생)		17세 (2004년생, 고2)	15세 (2006년생, 중3)

〈표 8-3-2〉 한부모가구 추가비용 계측

연도	추가계측항목	계측비용 (3인 가구 기준)	표준가구
1999	- 식료품비: 외식비, 가정식절감 - 교육비: 6세아동 유치원, 8세아동 방과후 교육	169,028원 (모자가구, 서울)	부: 37세 모: 33세 1자: 8세 2자: 5세 (1989)
2004	- 식료품비: 외식비, 배달식비, 가정식절감 - 피복신발비: 동절기 숙녀복, 춘추 숙녀복, 구두(모자가구) 세탁료, 의복과 구두수선료 - 교육비: 8세아동 방과후교실 수강료, 10세아동 보습학원비 - 교통통신비: 택시요금, 시내통화요금, 공중전화요금 *특수비목: 보조키 비용	170,123원 (모자가구)	부: 39세 모: 36세 1자: 10세 2자: 8세
2007	- 식료품비: 외식비, 배달식비 (*가정식절감) - 피복신발비: 동절기 숙녀복, 춘추 숙녀복, 구두(모자가구), 세탁료, 의복과 구두수선료 - 교육비: 9세아동 방과후교실 수강료, 11세아동 보습학원비 (*11세 아동의 가정학습비 절감) - 교통통신비: 택시요금, 핸드폰요금 *특수비목: 보조키 비용	169,534원 (모자가구)	부: 40세 모: 37세 1자: 11세 2자: 9세
2010	- 식료품비: 외식비, 배달식비 (*가정식절감) - 피복신발비: 동절기 숙녀복, 춘추 숙녀복, 구두(모자가구), 세	198,252원 (모자가구)	부: 40세 모: 37세

연도	추가계측항목	계측비용 (3인 가구 기준)	표준가구
	탁료, 의복과 구두수선료 - 교육비: 9세아동 방과후교실 수강료, 11세아동 보습학원비 (*11세 아동의 가정학습비 절감) - 교통통신비: 택시요금, 핸드폰요금 *특수비목: 보조키 비용 ***2007년과 추가계측항목 동일		1자: 11세 2자: 9자
2013	- 식료품비: 외식비, 배달식비 (*가정식절감) - 피복신발비: 동절기 숙녀복, 춘추 숙녀복, 구두, 팬티스타킹, 판타롱스타킹(모자가구), 세탁료, 의복과 구두수선료 - 교육비: 10세아동 방과후교실 수강료, 12세아동 보습학원비 (*12세 아동의 가정학습비 절감) - 교통통신비: 택시요금, 휴대폰요금, 휴대폰(자녀) *특수비목: 보조키 비용	240,915원 (여성한부모가구)	부: 42세 모: 39세 1자: 12세 2자: 10세
2017	- 식료품비: 외식비, 배달식비 (*가정식절감) - 피복신발비: 동절기 숙녀복, 춘추 숙녀복, 구두(여성용), 팬티스타킹(여성), 판타롱스타킹(여성), 세탁료, 의복수선료, 구두수선료 -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보조키, 가사도우미 - 교육비: 11세아동 방과후학교, 14세아동 보습학원 (*11세아동 가정학습지 절감, 14세아동 중학인터넷강의 절감) - 교통통신비: 택시요금, 청소년 휴대폰 요금(구입+이용료) - 오락 및 문화비용: 여행비	332,725원 (여성 한부모가구) 329,944원 (남성 한부모가구)	부: 44세 모: 41세 1자(남): 14세 2자(여): 11세
2020	표준가구1안 - 식료품비: 외식비, 배달식비(*가정식비용 절감) - 피복신발비: 동절기 숙녀복, 춘추 숙녀복, 구두(여성), 팬티스타킹(여성), 판타롱스타킹(여성), 세탁료, 의복수선비, 구두수선비 -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보조키, 가사도우미 - 교육비: 16세자녀 고등보충수업료(*고등 인터넷강의절감), 13세자녀 중학보습학원비(*중등 인터넷강의절감) - 교통통신비: 택시요금	392,171원 (남성 한부모가구) 396,912원 (여성 한부모가구)	부: 47세 모: 44세 1자(남): 16세 2자(여): 13세
	표준가구2안 - 식료품비: 외식비, 배달식비(*가정식비용 절감) - 피복신발비: 동절기 숙녀복, 춘추 숙녀복, 구두(여성), 팬티스타킹(여성), 판타롱스타킹(여성), 세탁료, 의복수선비, 구두수선비 -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보조키, 가사도우미 - 교육비: 12세자녀 방과후학교(12세자녀 가정학습지절감), 10세자녀 방과후학교(10세자녀 가정학습지절감) - 교통통신비: 택시요금, 자녀 휴대폰요금(구입+이용료)	181,892원 (남성 한부모가구) 240,883원 (여성 한부모가구)	부: 42세 모: 39세 1자(남): 12세 2자(여): 10세

자료: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에서 재인용.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3. 2023년 한부모가구 지원 정책과 2021년~2023년의 주요 변화

가. 2023년 한부모가구 지원 정책 주요 내용

2023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서(여성가족부, 2023)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가구와 가구원이다. 지원대상 가구는 1) 한부모 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2) 조손가족(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3) 청소년 한부모가족(한부모 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이다.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는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을 한 소장(사본)을 제출하고 해당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등 객관적·실질적 확인을 거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이 가능(사후 유전자 검사결과 제출 필요)하다.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만 65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 가구원은 한부모 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이며,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이다. 지원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결정되는데, 지원 기준은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의 72%이하(급여지급 기준은 65%이하)이다.

〈표 8-3-3〉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 중위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에게 지원되는 급여는 1) 아동양육비(개인단위), 2)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개인단위), 3) 추가 아동양육비(개인단위), 4) 생활보조금(가구단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1) 아동양육비(개인단위), 2) 자립촉진수당(가구단위), 3) 검정고시 학습비(개인단위)가 지원된다.

〈표 8-3-4〉 한부모가구 지원 정책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한 자(이하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라 한다)로서 신청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유전자 검사결과 사후 제출 필요)
	가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손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급여지급 기준은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급여지급 기준은 65% 이하)
지원급여의 종류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표 8-3-5〉 2023년 한부모가족 주요 지원 급여

사업 및 개요	사업대상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만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원 지원 ○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월 3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등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수행기관 운영 *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제공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미혼모·부자 가족

자료: 여성가족부. (2023).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2.

나. 2021년~2023년의 주요 급여기준 및 급여액 변화

2021년~2023년의 주요 변화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 상향이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서 2022년 10월에는 58%이하로 소득기준이 6%p,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22년 10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소득기준이 5%p 상향되었다. 이러한 복지급여지원 소득기준 상향은 2023년에도 이뤄졌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기준인 기준중위소득 58%이하가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로 2%p 상향조정된 것이다.

둘째, 학용품비 지원 단가가 2022년 연 8.3만원에서 2023년 연 9.3만원으로 1만원 상향조정되었다.

셋째,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가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선 지원 후 유전자 검사결과 사후 확인하도록 했다. 단,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유전자 검사결과 친자가 아님이 밝혀 지거나 친생관계가 부인된 경우 기 지급된 급여 환수 조치한다.

넷째,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대한 조치이다. 양육부·모의 채무관

계 등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양육부·모의 주민등록지를 옮기도록 권고하되, 사정 상 주소지 이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부)의 실제 거주지 관할지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그 외 다음의 개선도 이뤄졌다, 온라인 신청을 활성화하여 한부모가족 신청 시 온라인 제출 등 민원인 편의를 고려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여성가족부, 2023, p.28). 참고로 2022년까지는 추가서류 제출을 위해서는 가구방문 시 징구하거나 민원인이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다(여성가족부, 2022).

[그림 8-3-2] 2021-2023 한부모가족 급여지원 소득 기준 및 주요 급여액의 변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 상향 :
(’22년) 기준 중위소득 52% → (’22.10월) 기준 중위소득 58% → (’23년) 기준 중위소득 60%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 상향 :
(’22년) 기준중위소득 60% → (’22.10월) 기준 중위소득 65%
- 학용품비(아동교육지원비) 지원단가 인상 :
(’20년) 연 5.41만원 → (’21년) 연 8.3만원 → (’23년) 연 9.3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
(’21.5월~) 월 10만원 → (’22년) 월 20만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22.8월~)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21.5월~)
 - 만 5세 이하 자녀 : 월 10만원
 - 만 6세~18세 미만 자녀 : 월 5만원

4. 한부모가구 지원에 대한 주요 해외 사례

김기태, 김태완, 이원진, 정세정, 강예은, 정은희(2022)는 생계급여 재정추계 연구를 수행하면서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생계급여수준을 비교한 바 있다. 이때 가구유형별 생계급여수준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OECD는 생계급여(Guaranteed Minimum Income Benefits, 이하 GMI)에 대해 생계급여 수준을 각국의 가구 균등화 가치분소득의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계산하여 가구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최저소득보장급여 신청자의 소득적정성 지표(indicator of income adequacy, IA)의 정의, 가구 유형의 구분과 가정은 다음과 같

다.

$$IA = \frac{y_{GMI}}{y_{median}} \text{ (OECD, 2022)}$$

가구 유형

- 1) 자녀 없는 1인 가구
- 2) 자녀 없는 2인 성인 가구
- 3) 자녀가 둘인 한부모 가구
- 4) 자녀가 둘인 2인 성인 가구

생계급여 수준의 비교를 위해서는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연령 등이 가정될 필요가 있다. 김기태 외(2022)의 연구에서 가구원은 성인은 모두 실업 상태를 전제로 하고 실업수당 수급권은 없는 상태로 가정되었다. 성인은 모두 40세, 자녀는 4세와 6세로 간주했다. 검토 결과, 두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의 생계급여의 중위소득 대비 비율은 한국은 36%이며, 영국 36%, 독일 33%였으며, 이는 OECD 평균인 32%에 비해 조금씩 높은 수치였다. 주거급여를 포함하면 한국은 45%로 9%p가 증가했다.

[그림 8-3-3] 2021년 한국과 주요 OECD 회원국의 가구 유형별 생계급여의 가구 균등화 가치분소득의 중위소득 대비 비율

(단위: %)



주1: GMI(Guaranteed Minimum Income) amount, in % of median disposable income

주2: 1인가구 - $\{(549,349 \times 12) / 31,740,000\} \times 100 = 20.7 \approx 21$

자료: 김기태, 김태완, 이원진, 정세정, 강예은, 정은희. (2022). 생계급여 재정추계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102911#>

https://stats.oecd.org/BrandedView.aspx?oeed_bv_id=socwel-data-en&doi=2e0b6b2c-en

5. 한부모가구 지출실태 및 추가 욕구 분석

한부모가구가 가지고 있는 지출실태와 욕구 파악은 ‘가계동향조사’와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살펴봤다.

‘2021년 가계동향조사’는 총 12,391가구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한부모가구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며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한 가구로서, 한부모와 자녀 외에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포함하였다. 비교집단인 양부모 가구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으며 동거 중’이라고 응답한 가구로서, 분거가구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산출과정을 거쳐 도출된 전체 한부모가구는 가중치 적용 전 212가구(가중치 적용시 170가구), 양부모가구는 2,200가구(가중치 적용시 2,242가구)였다. 이 사례 중 가계동향조사가 제공하고 있는 전국 전체가구 균등화 소득 5분위 자료를 활용하여, 하위 40%에 해당되는 가구의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만을 도출하면 한부모가구는 가중치 적용전 94가구(가중치 적용시 74가구), 양부모가구는 195가구(가중치 적용시 215가구)가 된다. 가중치를 적용한 가구 수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했다.

다음으로 한부모가구가 양부모가구에 비해 지출이 더 많은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연로그를 취한 비목별 지출액을 종속변수로 두고 독립변수로 한부모가구 여부와 가구원수를 투입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해당 모델 분석 결과, 하위 40% 이하의 한부모가구가 하위 40% 이하 양부모 가구에 비해, 지출이 더 많은 항목은 발견할 수 없었다. 참고로 2020년의 경우 한부모 가구가 양부모가구에 비해 지출이 더 많은 항목은 육상운송, 기타운송이었다.

$$\ln(E) = \text{INTERCEPT} + a_1Y + a_2 \text{FNUM} + a_3 \text{SPH}$$

E = 비목별 월평균 지출액
 Y = 월평균 가구소득 구간 (더미 처리)
 FNUM = 가구원수
 SPH = 한부모가구 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한부모가구=1, 일반가구=0)

〈표 8-3-6〉 하위 40%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의 지출 차이 항목

비목	한부모가구<양부모가구	한부모가구<양부모가구
식품 및 비주류음료		빵떡류, 염건수산물, 기타수산물가공, 유제품 및 알, 해조가공품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신발서비스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교통비
통신		통신서비스이용금액
오락문화		
교육비		
음식, 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		기타금융구입
비소비지출		경상조세, 연금기여금, 사회보장구입비

자료: 통계청, 「2021년 가계동향조사(연간)」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는 가구형태에서 모자가구, 부자가구라 응답한 한부모가구에 '한부모가구이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품목'을 조사했다. 2021년 조사까지는 주관식으로 기입하도록 하고 분석을 위해 범주화 작업을 거쳤으며, 분류 범주는 이전 연도의 조사결과를 참고로 생성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신 비용(87.02%)이 가장 많고, 외식 및 배달음식(84.50%), 컴퓨터, 프린터, 노트북(79.75%), 교육비(78.87%), 안전장치(77.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조사가 외식 및 배달음식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고 안전장치, 통신비용, 교육비, 돌봄서비스 등의 순서로 나타난 것과는 변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필요하다는 각 범주에 대한 응답비율은 2018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응답방법이 응답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시간변화에 따른 한부모가구의 욕구 다양화이다. 심리상담에 대한 높은 수요(29.60%)는 전자와 후자 모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표 8-3-7〉 한부모가구이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항목

순위	주요 항목	가구수 (가중치 미적용)	% (가중치 적용)
1	외식 및 배달음식(가공식품비, 반찬값, 저녁식사배달, 배달음식 등)	182	84.50
2	안전장치(CCTV, 방범창, 인터폰설치, 현관번호키, 현관보조키 등)	164	77.99
3	교육비(사교육비, 학원비, 학습도우미 등)	171	78.87
4	통신비용(핸드폰, 자녀스마트폰 요금지원 등)	185	87.02
5	돌봄서비스(돌봄서비스, 아이돌봄, 베이비시터 등)	57	28.32
6	문화생활비(문화강좌, 문화바우처, 도서대여 등)	163	75.24
7	컴퓨터, 프린터, 노트북(태블릿 PC 포함)	170	79.75
8	가사서비스(청소도우미 등)	46	20.85
9	심리상담(심리상담, 자녀심리상담 등)	66	29.60
10	교통운송비(택시비, 자동차)	141	64.70
12	기타(보험, 겨울옷, 안경비용, 정수기)	18	8.46

주: 가구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한부모 가구 심층조사)」, 원자료.

6. 한부모가구 지출실태 및 욕구

한부모가구의 추가비용은 한부모 표준가구는 부 또는 모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3인가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인 표준가구에서 부 혹은 모 중 1인, 그리고 1자와 2자로 구성되고, 가구주는 경제활동을 하는 근로자로 가정하였다.

〈표 8-3-8〉 한부모 표준가구 구성

구분1	구분2	첫째아	둘째아
2023년	남성(47세) 한부모가구 (1974년생)	17세 (2004년생, 고2)	15세 (2006년생, 중3)
	여성(46세) 한부모가구 (1975년생)	17세 (2004년생, 고2)	15세 (2006년생, 중3)

추가비용에 포함되는 내용은 실태 및 규범적 차원의 욕구를 반영을 위하여 위에서 분석한 ‘가계동향조사’와 ‘국민생활실태조사’ 분석결과, 그리고 2017년과 2020년의 연구에서 포함되어 온 비목을 고려하였다. 한부모가구 추가비용 마켓 바스켓 구성방식은 이전방식과 동일하게 표준가구의 마켓바스켓을 기준으로, 추가되어야 할 것(공통비목 추가), 감소되어야 할 것(공통비목 감소), 신규로 추가되어야 할 것(특수비목)으로 구성된다.

$$\text{한부모가구의 추가비용} = \text{공통비목 추가비용} - \text{공통비목 감소비용} + \text{특수비목 추가비용}$$

첫째, 식료품비의 경우, 공통비목 추가비용으로 외식비와 배달식비를 추가하고 가정식비용을 절감했다. 외식비 단가는 2020년 마켓바스켓 단가인 55,809원(4인 가구 기준)의 3/4을 적용하여 13,952원으로 설정했다. 배달식비 단가는 배달어플(배달의 민족)을 사용하여 고양시 중식당의 짜장면 2그릇(그릇당 6,000원)과 ‘탕수육 小’ 1개(21,000원) 단가를 적용한 33,000원으로 산출했다(검색일: 2023년 6월 26일).

$$- \text{외식비: } [(55,809\text{원} \times \frac{3}{4}) \times 1\text{회}] \div 3\text{월} = 13,952\text{원}$$

- 한부모 가구 외식비 단가: 2023년 표준가구 가족단위 외식에 대한 마켓 바스켓 단가 55,809원(4인 가구 기준)의 3/4을 적용한 41,857원

- 배달식비: $(30,000\text{원} \times 2\text{회}) \div 1\text{월} = 60,000\text{원}$

- 한부모 가구 배달식비 단가: 배달어플(배달의 민족)을 사용하여(검색일: 2023년 6월 26일), 고양시 중식당의 짜장면 2그릇(그릇당 6,000원)과 '탕수육 소' 1개(21,000원)를 적용한 33,000원

외식비와 배달식을 추가함에 따라 기존 마켓바스켓의 외식비와 배달식(3개월에 7회)에 해당하는 가정식 비용은 제외했다. 남성 한부모가구의 가정식비용 단가는 표준 가구 기준 2023년 4인 가구 가정식비용 단가인 9,100원에서 성인여성 1,900원을 제한 7,200원이고, 여성 한부모가구의 경우 성인남성 2,500원을 제한 6,600원이다.

- 가정식 비용 절감_남성 한부모 가구: $\{(9,100\text{원} - 1,900\text{원}) \times (7\text{회})\} \div 3\text{월} = 16,800\text{원}$

- 남성 한부모가구의 가정식 비용 단가: 2023년 표준가구 1인 가정식 비용 단가인 9,100원에서 성인여성 외식절감분 단가 1,900원을 제한 7,200원

- 가정식 비용 절감_여성 한부모가구: $\{(9,100\text{원} - 2,500\text{원}) \times (7\text{회})\} \div 3\text{월} = 15,400\text{원}$

- 여성 한부모가구의 가정식 비용 단가 - 2023년 표준가구 1인 가정식 비용 단가인 9,100원에서 성인남성 2,500원을 제한 6,600원

이 단가에서 수량과 내구연수를 적용하여 남성 한부모가구는 월 16,800원, 여성 한부모가구는 월 15,400원을 절감했다.

〈표 8-3-9〉 식료품비 추가, 감소 비용 계측

구분	중분류/품목	가구주 성별	내구 연수	단가(원)	수량	남성 한부모가구	여성 한부모가구
표준 가구 1안	외식비		3월	41,857	1회	13,952원	13,952원
	배달식비		1월	33,000	2회	66,000원	66,000원
	가정식비용 절감	남성	3월	7,200	-7회	-16,800원	
		여성	3월	6,600	-7회		-15,400원
	소계					62,152원	64,552원

둘째, 피복신발비에서 고려하는 요소는 세탁료와 의복 수선비, 구두수선비이며, 이들 품목의 내구연수와 단가는 일반가구 최저생계비 비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여성 한부모가구의 경우에는 피복신발비를 추가하였다. 최저생계비가 가구 표준가구에서는 여성 성인을 전업주부로 가정하는 데 반해, 여성 한부모가구에서는 가구주를 근로자로 가정하기 때문에 외출에 필요한 피복신발에 대한 추가 욕구를 고려하여 계절에 따른 숙녀복과 구두, 스타킹을 추가한 것이다.

〈표 8-3-10〉 피복신발비 추가 비용 계측

중분류/품목	가구주 성별	내구 연수	단가(원)	수량	남성 한부모가구	여성 한부모가구	비고
숙녀복(동)	여성	7년	110,148원	1벌		1,391원	$\{(110,148\text{원} \times 1\text{벌}) \div (7\text{년} \times 12\text{월})\}$
숙녀복(춘추)	여성	7년	85,671원	1벌		1,082원	$\{(85,671\text{원} \times 1\text{벌}) \div (7\text{년} \times 12\text{월})\}$
구두(여성용)	여성	4년	24,854원	1켤레		622원	$\{(24,854\text{원} \times 1\text{켤레}) \div (4\text{년} \times 12\text{월})\}$
스타킹(팬티)	여성	3월	1,729원	1개		607원	$\{(1,729\text{원} \times 1\text{개}) \div (3\text{월})\}$
스타킹(팬타롱)	여성	2월	839원	1개		442원	$\{(839\text{원} \times 1\text{개}) \div (2\text{월})\}$
세탁료		1년	6,577원	2회	1,288원	1,288원	$\{(6,577\text{원} \times 1\text{켤레}) \div (12\text{월})\}$
수선비(의복)		1년	3,345원	1회	314원	314원	$\{(3,345\text{원} \times 1\text{켤레}) \div (12\text{월})\}$
수선비(구두)		3년	4,469원	1회	145원	145원	$\{(4,469\text{원} \times 1\text{켤레}) \div (4\text{년} \times 12\text{월})\}$
소계					1,747원	5,892원	

셋째,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영역에서는 가구집기비 중 현관 보조키 비용을 추가했다. 현관 보조키 비용 단가는 2020년 참조자료로 활용된 다나와 사이트에서 동일 모델 품목(‘아이레보 게이트맨 WG-100’)을 2020년에 검색한 값 85,000원¹⁵⁹⁾을, 내구연

수는 2020년과 동일한 8.42년을 적용하여 월평균 추가비용을 산출했다.

또한 한부모가구의 가사노동 부담을 감안하여 가사도우미 비용을 추가하였다. 가사도우미단가는 가사도우미 사이트(http://www.ywcacare.com/sub.asp?main-code=623&sub_sequence=635&sub_sub_sequence=)를 검색하여 30평 미만, 반일제(4시간) 가격인 55,000원을 적용하였다. 횟수의 경우 2020년과 마찬가지로 월 2회 도움을 받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표 8-3-11〉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추가 비용 계측

중분류/품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남성 한부모가구	여성 한부모가구	비고
보조기	8.42년	85,000원	1회	841원	841원	$\{(85,000 \times 1\text{회}) \div (8.42\text{년} \times 12\text{월})\}$
가사도우미	1월	55,000원	2회	110,000원	110,000원	$\{(55,000 \times 2\text{회}) \div (1\text{월})\}$
소계				110,841원	110,841원	

넷째, 교육비는 고등학생의 경우 추가비용으로 보충수업료 77,725원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실태조사 4인 가구 심층조사를 통해 도출된 고등학생 보충수업료 75,156원(가중치 적용, 값이 있는 경우에만 평균 계산에 활용함)에 2023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 110.11를 적용하여 산출했다(참고: 2021년 1월 소비자 물가지수: 106.47).

중학생의 경우에는 2020년과 동일하게 보습학원비 20만원을 추가했다. 4인 가구 심층 조사에 따르면, 중학생의 학원수강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은 62.87%, 다니면 좋다는 응답은 34.85%였고,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6.05%였으며,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1인 1과목으로 환산 시 월평균 262,629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충수업료와 학원수강료가 추가됨에 따라 마켓 바스켓에서 도출된 단가를 적용하여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인터넷 강의를 각각 13,950원, 14,085원 절감했다.

159) 설치비를 포함할 경우 118,980원이며, <https://search.danawa.com/dsearch.php?k1=%EC%95%84%EC%9D%B4%EB%A0%88%EB%B3%B4+%EA%B2%8C%EC%9D%B4%ED%8A%B8%EB%A7%A8+WG-100&module=goods&act=dispMain>에서 검색함. 검색일: 2023년 6월 26일

〈표 8-3-12〉 교육비 추가 비용 계측

중분류/품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남성 한부모가구	여성 한부모가구
표준 가구 1인	고등보충수업료(16세)	1월	77,725원	1회	77,725원	77,725원
	중학보습학원비(13세)	1월	200,000원	1회	200,000원	200,000원
	고등인터넷강의절감	1년	13,950원	-6권	-6,975원	-6,975원
	중등 인터넷강의절감	1년	14,085원	-3권	-7,943원	-7,943원
	소계					262,807

다섯째, 교통통신비의 경우 표준가구는 두 자녀 모두 최저교통통신비에 휴대폰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택시비만을 추가비용으로 계측하였다. 추가비용으로 적용한 택시요금 7,226원은 마켓바스켓으로부터 도출하였다.

〈표 8-3-13〉 교통통신비 추가 비용 계측

중분류/품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남성 한부모가구	여성 한부모가구
표준 가구 1인	택시요금	1월	7,226원	1회	7,226원	7,226원
	소계				7,226원	7,226원

종합하면, 한부모가구의 최저생계비 추가비용은 남성 한부모 444,773원, 여성 한부모 451,318원이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비이며,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식료품비가 그 뒤를 잇는다.

〈표 8-3-14〉 한부모가구 최저생계비 추가 비용(3인 가구 기준, 연구진(안))

(단위: 원)

중분류/품목		남성 한부모가구	여성 한부모가구
표준가구 1인	합계	444,773원	451,318원
	식료품비	62,152원	64,552원
	피복신발비	1,747원	5,892원
	가구집기가사용품비	110,841원	110,841원
	교육비	262,807원	262,807원
	교통통신비	7,226원	7,226원

7.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의 정책적 활용

2017년에서 2020년까지는 아동양육비의 증가가 비교적 꾸준하게 이뤄져 왔다. 2017년에는 13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3만원 지급되었으나, 2020년에는 급여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것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지원대상의 확대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이 ('22년) 기준 중위소득 52% → ('22.10월) 기준 중위소득 58% → ('23년) 기준 중위소득 60%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것이다.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 또한 ('22년) 기준중위소득 60% → ('22.10월) 기준 중위소득 65%로 이뤄졌다.

물론, 2021년~2023년에도 급여수준의 확대는 이뤄졌는데, 학용품비(아동교육지원비) 지원단가가 ('20년) 연 5.41만원 → ('21년) 연 8.3만원 → ('23년) 연 9.3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가 ('21.5월~) 월 10만원 → ('22년) 월 20만원으로 증가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22.8월~)도 2022년 8월부터 시작되었으며, 2021년 5월부터는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이 이뤄져,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월 10만원, 만 6세~18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월 5만원을 지원하도록 지침을 정해두고 있다.

그 외에도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실제 거주지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생신고 중인 자녀 지원을 위해 선 지원 후 확인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민원인 편의를 고려한 온라인 신청 활성화 방안도 마련되었다.

한편, 여성 한부모 가구를 기준으로 계측된 추가비용을 살펴보면, 2017년 332,725원, 2020년 396,912원(표준가구 1인 기준, 2017년대비 64,187원 증가)에 이어 2023년에는 451,318원으로 54,406원이 증가했다.

2017년, 2020년, 2023년 계측된 추가비용의 증가추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나 표준가구안의 자녀연령 상승에 따른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에는 한부모가구가 양부모가구에 비해 지출이 더 많은 항목이 육상운송과 기타운송이었으나, 2021년에는 해당 항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구의 추가비용 지출의 기준 집단이 어떤 집단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가계동향조사의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해당 고민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분화되고 있는 한부모가구의 욕구를 어떻게 추가비용 계측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조사의 경우 추가적으로 심리상담욕구에 대한 욕구가 등장하였으며, 주관식을 객관식으로 바꾸기는 했지만 2021년 조사에서도 심리상담욕구가 29.60%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한부모가구의 가구원들이 직면하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과 해결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다양한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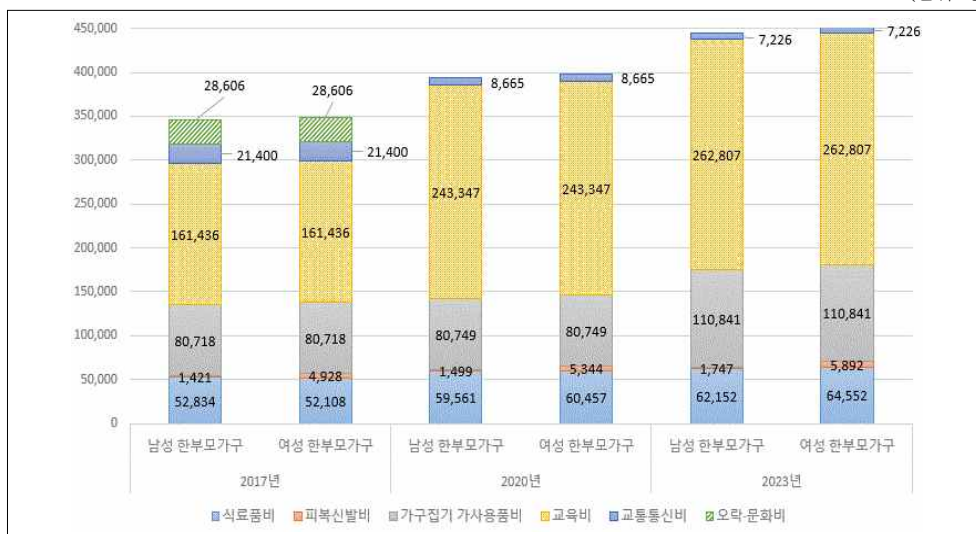
〈표 8-3-15〉 2013, 2017, 2020년 한부모가구 최저생계비 추가 비용(연구진(안))

(단위: 원)

중분류/품목	2017년		2020년 표준가구1안		2023년 표준가구2안	
	남성 한부모가구	여성 한부모가구	남성 한부모가구	여성 한부모가구	남성 한부모가구	여성 한부모가구
합계	329,944원	332,725원	392,171원	396,912원	444,773원	451,318원
식료품비	52,834원	52,108원	59,561원	60,457원	62,152원	64,552원
피복신발비	1,421원	4,928원	1,499원	5,344원	1,747원	5,892원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80,718원	80,718원	80,749원	80,749원	110,841원	110,841원
교육비	161,436원	161,436원	243,347원	243,347원	262,807원	262,807원
교통통신비	21,400원	21,400원	8,665원	8,665원	7,226원	7,226원
오락·문화비	28,606원	28,606원	-	-	-	-

[그림 8-3-4] 2013, 2017, 2020년 한부모가구 최저생계비 추가 비용(연구진(안))

(단위: 원)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9장

기초생활보장 평가 개요

제1절 기초생활보장 평가 선행연구

제2절 기초생활보장 평가 개요 및 분석틀

제 9 장 기초생활보장 평가 개요

제1절 기초생활보장 평가 선행연구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이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후 초기에는 제도 자체의 평가연구와 함께 평가체계를 구축하려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현주 외(2002)의 연구와 김안나 외(2005)의 연구는 평가체계의 구축을 위한 대표적인 연구이다. 이현주 외(2002)는 제도 시행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수행된 연구로써, 결과 평가의 차원과 과정 평가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평가체계를 고찰하였다. 이 중 결과 평가는 제도가 본래 의도하였던 목표의 달성 여부 및 그 정도를 평가하는 효과 평가, 정책 실행 후 나타난 직·간접적 영향 모두를 평가하는 영향 평가로 나누는데, 이는 최저생활보장, 빈곤탈피, 가족의 복지, 효율성 증진의 개념으로 파악된다. 과정 평가는 기초생활보장과 자활, 인프라 구축의 범주를 전통적인 사회복지정책 평가틀인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대상은 대상의 권리 측면, 수급자 간 형평성 측면, 소득인정액의 적용에 따른 대상의 변화 등이 포함되며, 급여는 급여의 적시성과 포괄성, 적절성이 포함되었다. 전달체계는 인력활용과 전달체계 구조의 측면을, 재정은 재정의 충분성과 재정부담의 적절성 등이 지표로 포함되었다.

김안나 외(2005) 역시 이현주 외(2002)의 평가체계의 구분을 준용하여 결과의 평가와 과정의 평가라는 두 차원으로 체계를 구성하였다. 결과평가에는 역시 최저생활보장, 수급탈피, 가족기능, 효율적 운영 등의 측면에서 지표를 구성하였으며, 그 외 빈곤동태성, 가족유대 강화 및 삶의 질, 대상 관리의 측면도 결과 평가에 포함하였다. 과정의 평가도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측면에서 평가체계를 구축하였고, 그 이하의 지표에서 기준에 더해 보완과 발전을 의도하였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 이전까지 기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평가 연구는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설정한 제도 운영 상의 각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각 항목 별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태진 외(2003)에서는 제도 평가의 항목을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으로 구분한 뒤, 항목 이하에서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대상의 측면에서는 수급자 선정 합리성과 권리보장을 핵심개념으로 하고, 선정 부문에서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수급 탈락비율을, 권리보장 부문에서는 선정과 탈락 과정에서의 권리보장, 부정수급 정도 등을 평가지표로 삼아 연구를 수행하였다. 급여의 측면에서는 급여기준, 즉 최저생계비의 적정성, 급여의 충분성, 보충급여 및 통합급여의 적정성,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만족도가 지표였다. 전달체계에서는 인력활용의 적절성 및 전달체계 구조의 적합성 등이 평가되었다. 재정 측면에서는 생계 및 의료급여 예산 수준, 최저생계비 결정의 합리성,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분담이 지표로 고려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평가 관련 연구 중 이태진 외(2003)의 연구는 전통적인 평가틀에 기초해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제도의 대상 선정과 관련된 항목을 중점으로 다루는 연구(여유진 외, 2004)나, 제도의 급여 중 생계급여에 주목한 평가(김태완 외, 2010), 제도의 전달체계 평가에 주목한 연구(강혜규 외, 200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 부문에 대한 평가(김태완 외, 2011) 등의 평가 연구가 존재한다.

이 중 여유진 외(2004)의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대상과 급여, 그리고 선정 및 급여의 측면에서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정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대상의 측면에서는 수급자의 규모와 비율, 연도별 수급자의 증감, 보장률, 대상효율 등을 분석·평가하였고 급여의 측면에서는 급여 수급 이후의 빈곤탈피와 평균급여액과 평균생활비, 총소득 대비 급여 소득의 비율 등으로 평가를 하였다. 선정 및 급여 측면에서는 가족구조의 안정성을 의식의 측면, 정서적 지지, 신체수발과 양육, 교육, 가족문제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김태완 외(2010)는 생계급여를 평가하면서 제도의 포괄성을 선정기준과 사각지대 규모,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급여 측면에서는 적절성, 효과성, 포괄성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강혜규 외(2004)는 정책 집행의 책임성, 공공서비스의 대응성 및 접근성, 업무내용의 전문성과 적절성의 개념을 구분하고 그 이하의 세부지표를 설정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를 평가하였다. 김태완 외(2011)의 연구에서는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성을 각종 빈곤지수를 얼마나 감소시키는가를 통해 평가하고, 빈곤감소 효율성은 Beckerman의 효율성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더해 제도의 선정기준 및 사각지대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급여의 형평성 측면의 평가 또한 수행하였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2000년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체계에 의거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선정기준과 급여의 수급 등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온 이 제도 개편 이후에는 변화한 제도의 시스템에 맞춘 평가체계가 요구되었다. 본 연구의 평가 틀은 뒤에 제시되어 있는 김태완 외(2017)과 김문길 외(2020)에서 제시된 내용을 활용하되, 1인 가구 등 평가의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가. 노대명 외(2015)

급여체계의 개편 이후 주목할 만한 평가 관련 연구로는 노대명 외(2015)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이후 향후 적용할 평가의 틀과 함께, 그 틀에 근거한 예시적인 수준의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잠재적 수급자를 중위소득의 50%로 설정하고, 제도의 목적을 ‘이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빈곤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 후 단계별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얼마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가(설계 단계에서의 포괄성)를 평가
- 2) **자원의 투입 및 진행**: 자원의 투입과 관련하여 중요한 평가지표는 자원투입의 충분성으로, 빈곤층이 직면한 위험(빈곤격차)의 크기 대비 자원투입의 충분성 평가
- 3) **산출**: 제도의 대상자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의미,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가구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설계단계가 아닌 실제 수급)를 평가

4) 성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빈곤율이 얼마나 감소하였으며 빈곤격차는 얼마나 줄어들었는가를 평가

이 중 포괄성(coverage) 지표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기초생활보장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 만일 보호가 필요한 집단 가운데 다수가 설계단계에서부터 배제되어 있다면 급여의 효과가 높지 않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급여의 대상자는 실제 급여를 받은 가구가 아니라 제도 설계 당시에 추정된 가구를 의미하며, 이 계획 단계에서의 대상 가구를 이용하여 포괄성을 측정함으로써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생긴 오차에 대한 별도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자원투입 및 진행 측면에서의 충분성 지표는 빈곤층의 빈곤격차를 해소하기에 충분한 예산이나 인적자원의 투입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해당된다. 이는 빈곤층이 직면한 위험(빈곤격차)의 크기에 비해 충분한 물적, 인적자원 투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상자 또는 욕구의 일부만을 보호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급여의 빈곤층 보호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논리에 의해서다.

산출 측면에서는 수급률(take-up ratio)이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설계단계에서 포괄성이 잠재적 보호 대상자 대비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집단의 비율로 정의된다면, 수급률은 사업요건의 충족 여부가 아닌 실제 수급여부를 기준으로 측정된다. 이 수급률을 통해 사업군에 대한 수요 대비 급여혜택이 폭넓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맞춤형 급여체계 하에서는 수급률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수급자 비율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제도의 설계에 의해 배제된 집단에 대한 효과, 즉 제도 구성의 어떠한 요인이 수급률을 낮추는 데 더 많이 기여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성과 측면에서는 빈곤완화효과 및 빈곤격차완화효과가 지표로 활용된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빈곤율이 얼마나 감소하였으며 빈곤격차는 얼마나 줄어들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나. 강신욱 외(2015)

강신욱 외(2015)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상으로 한 평가연구는 아니다. 전체적인

사회보장정책 평가를 위한 사업군을 설정하고 사업군별 기본평가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표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체 360개 사업을 27개 사업군으로 분류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사업군으로 분류하였다. 개별사업에 대해 검토를 하되 평가대상은 사업군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특화된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동 사업군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점에서 평가범주와 평가방법에 있어서 참고할 만 하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공통지표는 크게 사업군의 설계 관련 지표, 투입 및 집행, 산출, 성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중 사업군의 설계 관련 지표에는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대상집단에 대한 표적화 정도, 대상자 규모의 모수추정을 위한 자료의 유무, 사업군 내 사업간의 상충/보완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투입 및 집행 관련 지표로는 욕구 대비 자원 투입의 충분성, 사업예산 중 경상비와 사업비 비중의 적절성, 급여 유형 및 지원방식의 적절성, 욕구의 지역적·시기적 분포 대비 자원투입 분포의 적절성이 포함되어 있다. 산출 측면에서는 수급자 비율과 급여의 충분성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 측면에서는 사업군별 성과의 달성 여부와 성과의 부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그 밖에 제도의 사회경제적 영향, 부작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 참고할 만한 지표로는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대상집단에 대한 표적화, 급여유형 및 지원방식의 적절성, 수급자 비율, 급여의 충분성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급여유형 및 지원방식의 적절성은 전달체계와 관련된 부분으로써 본 연구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평가대상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선행연구인 김태완 외(2017)에서 다루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평가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 김태완 외(2017)

김태완 외(2017)는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최초의 평가연구다. 기존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와 복지욕구 실태조사 연구를 통합한 첫 번째 연구로써 김문길 외(2020)와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 해당한다. 동 연구는 상대적 방식으로 결정되는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 차상위 빈곤층 규모추정 및 주요 소득계층별 욕구와 실태 분석, 그리고 보장범위와 급여의 적절성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 평가는 대상자 포괄성, 급여의 적정성, 급여의 효과 및 효율성, 그리고 형평성의 측면에서 수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보장성, 급여 적정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별도로 평가하고 있다.

동 연구의 주요 평가 영역별 세부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상자 포괄성은 과거 복지욕구 실태조사 연구에서 수행하였던 방식과 동일하게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를 추정하고 맞춤형 급여 개편 전후의 수급자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급여의 적정성은 법에 근거하여 절대적 빈곤선 계측방식의 산물인 최저생계비와의 비교를 통한 평가와 박탈지표를 통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급여의 효과, 효율성, 형평성 평가는 빈곤지수를 이용한 빈곤율 감소효과, 빈곤갭 감소효과, 빈곤감소효율성, 수직적 지출 효율성, 과잉지출비율, 선정기준 형평성, 지역별 급여수준 형평성 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급여 평가는 전술한 내용 그대로이다.

주요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계·의료급여 기준으로 비수급 빈곤층(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계층) 규모는 이태진 외(2015)가 2014년 기준으로 추정한 118만명 보다 25만명이 감소한 93만명으로 추정되었다. 최저생계비를 활용한 생계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2017년 당시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30%가 중소도시의 표준가구(4인 가구) 현금급여기준선(=최저생계비-타법지원액)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탈지표를 통한 평가 결과 절대적 박탈이 발생하는 구간의 상한선이 당시 기준중위소득 30%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어 급여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밖에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빈곤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 점, 이전 연도에 비해 급여효율성이 상승한 점 등이 확인되었다.

라. 여유진 외(2017)

이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현실적·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제도개선의 방향과 그에 부합하는 세부 추진과제 검토를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중 제도에 대한 평가 부분은 크게 맞춤형 급여 도입 전후의 변화, 조건부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수급탈피가구와 지속수급가구의 특성, 맞춤형 급여제도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맞춤형 급여 도입 전후의 변화는 급여유형별 수급자 특성 변화를 통해서 살펴보고,

조건부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은 제도 개편 전후의 규모 변화와 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수급탈피가구와 지속수급가구의 특성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각 가구의 비율과 해당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맞춤형 급여제도에 대해서는 김태완 외(2017)를 인용하여 대상 포괄성, 급여 적정성, 급여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있다.

마. 이태진 외(2020)

이 연구는 20년을 맞은 시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제도의 운영·집행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과정평가보다는 제도의 구체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 영향평가에 집중한다. 먼저 제도적 변화를 정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의 장기 추이를 기술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 기초보장제도가 빈곤층의 삶에 미치는 영향, 기초보장제도 수급동태 및 수급탈출 영향요인을 평가하였다.

주요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급여 유형별 수급자 선정기준 다층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등의 변화가 결합된 결과, 전체 인구의 수급률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빈곤한 집단의 수급률이 더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기초보장제도의 급여 전후 빈곤율 감소 효과가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기초보장제도가 빈곤층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 소비, 근로 등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차분 분석하여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2015년 기초보장제도 개편이 빈곤층의 소비 증대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수급동태를 살펴보면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수급탈출률을 증가시키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으나, 수급탈출의 질이 개선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수급탈출의 규모뿐만 아니라 수급탈출의 질을 함께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바. 김문길 외(2020)

김문길 외(2021)는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두 번째 평가연구이며,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연구내용은 김태

완 외(2017)와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주요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를 2015년 결과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015년 144만 명(89만 가구)에서 2018년 140만 명(93만 가구)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최저생계비를 활용한 생계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2020년 당시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30%가 중소도시의 표준가구(4인 가구) 현금급여기준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김태완 외(2017)와 마찬가지로 박탈지표를 통한 평가 결과 절대적 박탈이 발생하는 구간의 상한선이 당시 기준중위소득 30%보다 높은 수준이며, 효과성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빈곤감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전 연도에 비해 급여효율성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 김태완 외(2021)

이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조사 및 급여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청과 선정과정은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접근하는 첫 번째 단계로서 제도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먼저 선행연구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존 사각지대 발생원인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연구 중 사각지대 발생 원인을 분석한 연구 68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발생 원인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및 재산환산 기준, 신청의 어려움, 가구 기준과 그 특성, 기타 사유(근로 능력, 행정 재량 등) 등을 지적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급여별로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의료급여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청과 관련하여서는 각 급여별로 요구하는 서류 등이 많아지고, 신청과정에서의 낙인감, 복잡한 절차로 인한 중도포기 등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이 외에도 가족해체로 인해 관련 서류 획득 등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 등을 선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었다.

제2절 기초생활보장 평가 개요 및 분석틀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와 복지욕구 실태조사 연구의 각각의 목적을 공유하며, 따라서 선행연구인 김태완 외(2017)와 김문길 외(2020)가 수행하였던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의 범위와 틀을 대체로 수용하고자 한다.

김태완 외(2017)와 김문길 외(2020)에 따라 맞춤형 급여제도에 대한 평가근거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2 ② ---- 4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 ③ --- 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2.30.)”는 것이다. “부칙6조2항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내에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실태조사와 평가 결과는 2023년 9월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급여 도입이후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법과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세 가지 틀에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세 가지 큰 평가 틀은 대상자 포괄성, 급여적정성, 급여효과 및 효율성이다.¹⁶⁰⁾

먼저, 대상자 포괄성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각지대 규모 추정이다. 앞서 제4장의 빈곤층 욕구별 실태분석서 사용한 소득계층별 규모를 추정하면서, 선정기준에는 부합하지만 수급을 받지 못하는 소위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통해 사각지대 규모를 추정한다. 그리고 이를 선행연구 결과(김문길 외, 2020)와 비교함으로써 대상자 포괄성을 평가한다. 이와 더불어 수급가구의 실태와 인식을 국민생활실태조사의 가구일반조사와 부가조사 수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심층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인식 경로, 신청 및 미신청 여부, 미신청 사유, 탈락 사유, 탈락 이후 생계 해결 방법, 신청 및 선정 이

160) 한편 의료급여에 대한 평가는 의료급여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앞서 언급한 평가틀을 수정 및 보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평가를 수행하였다.

유, 각 급여별 적절성에 대한 인식, 탈수급 전망에 대한 인식, 탈수급가구의 사유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로 급여적정성은 법에 근거한 바와 같이 절대적 방식으로 계측된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방식인 현행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과 비교함으로써 평가한다. 2023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총괄·생계소위원회에서 의결한, 표인가구 구성별로 계측된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와 물가상승률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동시에 검토한다. 적정성 평가는 4인 가구 표인가구에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지역구분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박탈지표를 통한 급여 적정성 평가를 병행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규모의 가구에 비해 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1인 가구에 대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1인 가구의 급여적정성의 경우 앞서 언급한 표인가구에 대한 급여적정성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지역구분을 적용하였으며, 다른 규모의 가구들과 비교하기 위해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다른 규모의 가구들과의 상대적 비교를 수행하였다.

세 번째로 급여효과 및 효율성, 형평성 평가에는 다음의 지표들이 활용된다. 먼저, 효과성은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을 활용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각 지표의 감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분석한다. 급여의 효율성은 Beckerman(1979)의 개념틀을 이용하여 빈곤감소 효율성, 수직적 지출 효율성, 과잉 지출 비용으로 구분해서 분석한다. 형평성은 빈곤율 대비 수급규모, 가구규모·가구유형별 포괄성 분석(빈곤층 중에서 맞춤형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 급여수준 형평성(지역별, 가구유형별) 등의 관점에서 평가를 수행하였다.



제10장

대상자 포괄성

제1절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실태 및 사각지대 감소효과
분석

제 10 장 대상자 포괄성

제1절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앞의 평가개요에서도 제시하였듯이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 당시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도 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2 ② ---- 4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 ③ --- 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2.30.)”에 두고 있다. “부칙6조2항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20조의2 4항에서 다루고 있듯이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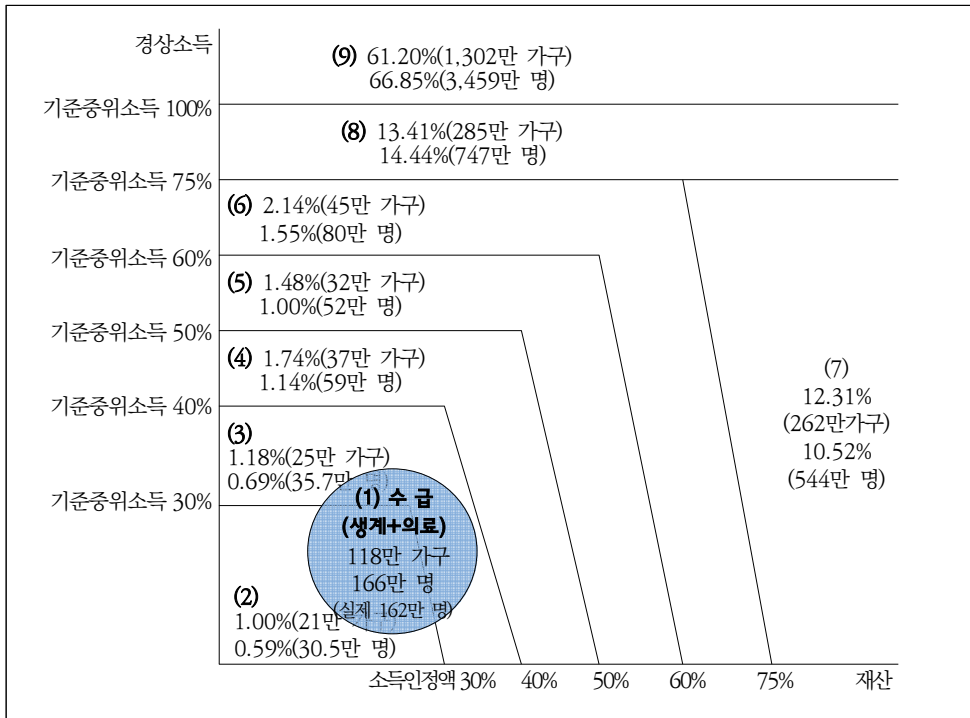
이 장은 위 법령 내용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상자 포괄성 측면에서의 제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규모와 예산을 추산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 파악을 위해 기존 선행연구인 차상위실태조사(복지욕구 실태조사)의 틀을 유지하며 사각지대 규모를 파악하였다. 선행연구로서 본 연구원에서 수행한 차상위실태조사를 통해 2003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규모를 지속적으로 추정해 왔다. 본 분석은 기존 연구의 분석틀(집단구분)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이전 기존 연구들에서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한 집단 구분선을 활용하고 있다면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시 급여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가 아닌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7년 1차 실태조사 및 평가시부터 집단 구분의

기준선을 기준중위소득을 근간으로 하였으며(김태완 외, 2017), 사각지대 규모 추정 역시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번 2023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정된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아래 그림과 같다. 여기서 수급가구(집단1)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가구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비수급 빈곤층은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30%)와 의료급여(40%)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만 여타의 이유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계층으로 정의된다.

[그림 10-1-1] 2021년 기준 소득계층별 규모추정(기준중위소득 기준)

(단위: %, 가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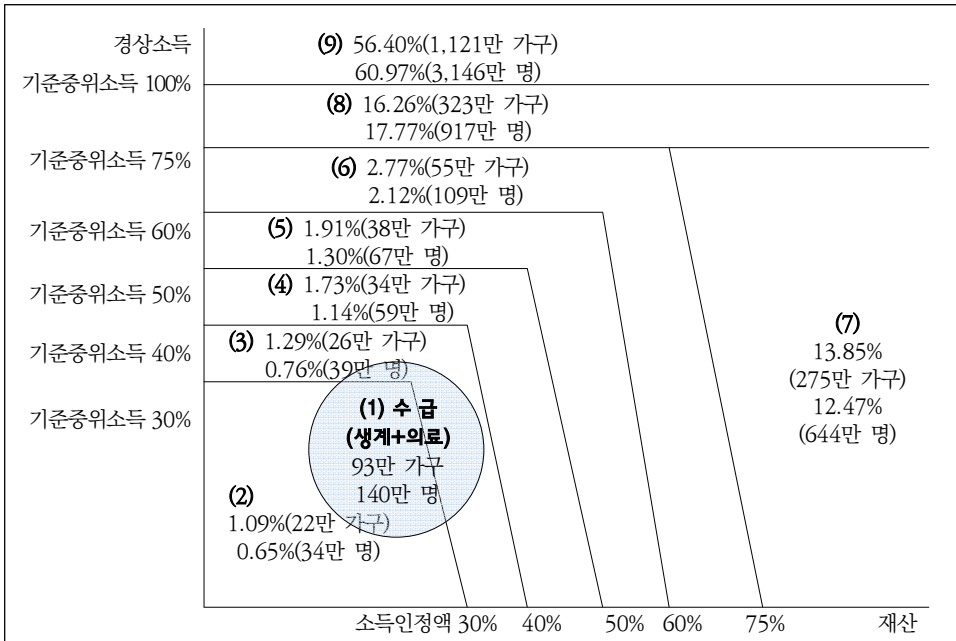


주: 1) 수급가구의 경우 행정데이터 상 중복을 제외한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의 합이며, 수급자의 경우 수급가구에 해당하는 가구원수의 합으로 실태조사 데이터상 산출된 값임
 2)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와 「장래인구추계」 기준 2021년 전체 가구 수는 21,278,321가구, 전체 인구 수는 51,744,876명임. 단, 집단별 가구(개인) 수는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
 3) (2)~(7)집단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8)~(9)집단의 경우 경상소득 기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21년 12월말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 빈곤층(혹은 사각지대)¹⁶¹⁾ 규모는 약 21만 가구(30.5만 명)로 추정되었다. 기준중위소득 30%~40% 이하의 비수급빈곤층 규모는 25만 가구(35.7만 명)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이를 수급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46만 가구(66만 명)로 추정¹⁶²⁾된다.

[그림 10-1-2] 2018년 기준 소득계층별 규모추정(기준중위소득 기준)

(단위: %, 가구, 명)



주: 1) 수급가구의 경우 행정데이터 상 중복을 제외한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의 합이며, 수급자의 경우 행정데이터 상 중복을 제외한 시설수급자를 포함하여 생계급여(1,229,067명), 의료급여(168,176명)를 합한 값임.
 2) 통계청「장래가구·인구추계」기준 '18년 전체 가구 19,871,152가구, 전체 인구 51,606,633명임. 단, 집단별 가구(개인)수는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3) (2)~(7)집단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8)~(9)집단의 경우 경상소득 기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161) 이 글에서 비수급빈곤층(혹은 사각지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혹은 40%)이하 이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혹은 개인)로 정의된다.
 162)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혹은 30~40% 이하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및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50~70%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계 및 의료급여 비수급 가구들의 60% 이상은 기초연금 및 기타 현금급여, 사회적현물이전 등의 기타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를 2018년 결과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018년 140만 명(93만 가구)에서 2021년 166만 명(118만 가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총수급자(시설수급자 포함)는 2018년 174만명에서 2021년 236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빈곤층인 차상위계층 규모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차상위계층은 2018년(73만 명) 대비 7만 명 감소한 66만 명으로 나타났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차상위계층은 2018년(132만 명) 대비 6만명 감소하여 2021년 125만 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3년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복지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혹은 완화, 재산기준 완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다양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비수급 빈곤층은 존재해왔으며, 이들의 규모 변화는 아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0-1-1〉 비수급빈곤층 변화

구분	'03년 기준 1차조사	'06년 기준 2차조사	'10년 기준 3차조사*	'14년 기준 4차조사	'15년 기준 5차조사	'18년 기준 6차조사	'21년 기준 7차조사
비수급 빈곤층	177만명	103만명	117만명	118만명 (중위소득 40%이하)	93만명	73만명	66만명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차상위 계층 기준 비수급 빈곤층	86만명	67만명	68만명	85만명	51만명	59만명	59만명 (중위 40~50% 이하)
차상위 포함 비수급 빈곤층	263만명	170만명	185만명	203만명	144만명	132만명	125만명

자료: 이현주 외(2005),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p172).
 이현주 외(2008), 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p172).
 이태진 외(2011), 빈곤정책 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p196).
 이태진 외(2015), 2014년 복지욕구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p91).
 김태완 외(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p489).
 김문길 외(2020),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p48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년 1차 실태조사에서 차상위계층의 규모는 263만 명으로, 이중 비수급 빈곤층은 177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선을 초과한 최저생계비

100% 이상이면서 120% 이하인 비수급 빈곤층은 86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2006년 2차조사에서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이후 세계적 경기침체와 위기로 인해 2010년과 2014년 조사에서는 비수급 빈곤층이 다시 늘어 117~118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5년 맞춤형 급여제도로 전환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상향조정하면서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가 93만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기준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73만 명, 2021년 기준 비수급 빈곤층은 66만 명으로 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기초생활보장제도 1차 종합계획 등을 통해 단계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 40~50% 사이 비수급 빈곤층은 2015년 대비 2018년 증가하였으며, 2021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2018년과 동일한 규모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급 빈곤층을 포함한 차상위계층은 2006년 이후 점증하다 2015년 기준 2014년 조사 대비 약 59만 명 감소하여 144만 명으로 추계되었으며, 2018년 132만명에서 소폭 감소하여 125만명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도적 기준 완화, 제도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한 수급자 확대로 차상위계층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일정 규모의 지속을 고려할 때 이들 계층에 대한 욕구 파악과 명확한 진단을 위해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실태 및 사각지대 감소효과 분석

1. 기초보장급여 신청과 선정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경로를 살펴보면, 가족, 친구, 이웃, 지인 등이 알려주거나 수급받는 것을 보고 신청하게 된 비율이 41.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텔레비전 또는 신문을 통해 신청한 경우 33.3%, 주민센터, 시군구청, 복지관 등 공공부문을 통해 신청하게 된 경우 11.2%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을 통해 신청한 비율이 높지 않다. 따라서 이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역할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표 10-2-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경로

(단위: %)	
구분	비율
주민센터, 시군구청, 복지관 등 공공부문의 전화, 방문, 상담, 안내문 발송 등	11.2
위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기관의 전화, 방문, 상담, 안내문 발송 등	1.0
가족, 친구, 이웃, 지인 등이 알려주거나 수급받는 것을 보고	41.1
텔레비전 또는 신문(무료신문, 인터넷 신문 포함)	33.3
인터넷(인터넷 신문을 제외한 유튜브, 블로그,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등)	10.8
현수막, 전단지, 리플릿, 포스터 등 (인터넷상 포스터, 리플릿 등은 제외)	1.3
통·반장	0.9
기타	0.5
합계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계층의 ‘최후의 안전망’으로써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여전히 빈곤과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급여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였고,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였다.

다음 표는 2021년 10월 기점으로 2021년 1월~2021년 9월 기초보장급여 신청자

와 2021년 10월~2022년 6월 기초보장급여 신청자의 급여 탈락 이유를 비교한 것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탈락한 경우가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대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완화 혹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10-2-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탈락 이유

(단위: %)

구분	2021.1월 ~ 2021.9월	2021.10월 ~ 2022.6월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30.1	25.5
자동차가 있어서	3.5	1.1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5.8	7.0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5.6	4.6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29.3	34.5
기타	6.2	6.7
잘 모르겠다	19.6	20.7
합계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급여 탈락 이후 생계를 해결한 방법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 모든 급여에서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했다는 응답이 생계급여 36.9%, 의료급여 38.0%, 주거급여 40.8%, 의료급여 1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양의무자, 친지 및 이웃의 도움으로 해결했다는 응답의 비율은 생계급여 26.6%, 의료급여 27.5%, 주거급여 24.6%, 교육급여 3.59%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 해결한 경우가 생계급여 12.5%, 의료급여 10.8%, 주거급여 9.9%, 교육급여 2.5%로 나타났다.

〈표 10-2-3〉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탈락 이후 생계 해결 방법

(단위: %)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의 도움	1.3	0.6	0.7	1.0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	26.6	27.5	24.6	3.6
빛을 내어서 생활	7.1	3.1	5.4	0.0
민간단체의 도움	0.0	0.6	0.0	0.0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36.9	38.0	40.8	10.9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10.3	14.4	8.5	2.2
공공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5.3	4.4	5.9	0.0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12.5	10.8	9.9	2.5
기존에 받던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0.0	0.0	0.8	0.0
기타	0.0	0.5	3.4	79.8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한편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기초보장급여를 미신청한 가구도 있다.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중 수급 비희망(필요없어서, 스스로 해결 하려고)인 경우를 제외하면, 미신청 이유에 대해 '선정기준이 엄격해서 신청해도 안될 것 같아서'가 19.3%로 가장 높았으며 '제도를 잘 몰라서' 1.9%, '신청절차 및 선정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워서'가 1.3%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수급권자들의 신청 경로가 대부분 가족, 친구, 이웃들의 권유에 의한 것으로 '신청해도 안될 것 같아서',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집단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다. '신청과정이 번거로워서' 신청하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홍보 및 절차상의 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표 10-1-2〉 기초보장급여 미신청 이유

(단위: %)

구분	수급	비수급			전체
		30% 이하	30~40%	40~50%	
제도를 잘 몰라서	-	5.6	6.6	5.3	1.9
이미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어서	99.2	22.8	14.2	15.2	6.6
선정기준이 엄격해서 신청해도 안될 것 같아서	0.4	35.4	42.8	48.2	19.3
신청절차 및 선정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11.9	9.2	8.3	1.3
지원받을 금액이 적어서		2.6			0.2
우리 가족에게 적합한 급여가 없어서					0.4
다른 사람들이 내 상황을 아는 게 싫어서			2.9	0.6	0.1
신청 기관(관공서 등)이 멀어서		1.4		0.2	0.0
소득 혹은 재산이 노출되는 것이 싫어서					0.1
다른 복지급여를 못 받거나 적게 받을까봐				0.6	0.0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부모, 자녀 등이 피해 또는 번거로움을 겪을까봐		1.9	4.3	4.1	0.4
필요 없어서	0.3	12.0	12.8	13.8	66.3
경제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스스로 해결하려고	0.1	6.5	7.2	3.8	3.4

* 수급가구에 특례 포함, 비수급가구에서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 기초보장급여 수급과 탈수급

여기에서는 기초보장급여의 수급과 탈수급에 관련한 문항을 검토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교육급여를 제외한 모든 급여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가 생계급여 57.33%, 의료급여 41.22%, 주거급여 51.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급여에서는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가 3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가 31.9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초보장급여의 수급의 이유로 소득감소의 원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에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위와 같은 결과는 제도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0-2-4〉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게 된 가장 큰 이유

(단위: %)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7.6	7.2	15.3	32.0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57.3	41.2	51.4	21.3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	7.7	5.4	7.4	2.0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9.2	7.3	9.6	33.0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7.8	6.5	6.7	4.9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0.2	0.1	0.2	0.0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9.3	31.2	8.3	2.3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0.0	0.0	0.3	0.0
교육급여 대상 학령기 가구원 발생	0.0	0.1	0.0	4.6
기타	1.0	1.0	0.9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급여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이다. 2021년 10월 이후 생계급여 부양의 무가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의 경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급여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50% 이상으로 나타났고, 주거급여, 교육급여에서도 적절하다는 의견이 35%내외로 나타났다.

〈표 10-2-5〉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 적절성

(단위: %)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매우 적절	0.9	21.9	6.1	4.5	4.2
적절	8.3	56.1	38.4	26.1	36.4
보통	18.5	13.2	24.6	42.6	32.8
부족	53.9	8.0	24.9	22.8	22.7
매우 부족	18.4	0.8	6.1	4.0	3.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8	2.1	2.9	3.0	2.9

주: ①매우 적절~⑤매우 부족의 5점 척도이며, 수급과 탈피를 반복한 경우 가장 최근에 받은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응답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급여 수급을 탈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져서'의 비율이 생계급여 46.08%, 의료급여 36.92%, 주거급여 19.27%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급여 선정 과정에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생계급여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가 18.24%,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에서는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가 각각 13.74%, 16.58%로 나타났다.

〈표 10-2-6〉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탈피하게 된 가장 큰 이유

(단위: %)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11.1	13.1	16.0	10.2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서	0.0	11.6	12.3	0.0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7.5	13.7	16.6	8.4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7.8	4.9	0.0	0.0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3.1	0.0	4.6	0.0
사망, 이혼, 분가 등 가구원수가 줄어들어서	6.3	3.9	3.3	0.0
가족의 병이 나서서	0.0	2.8	0.0	0.0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18.2	0.0	3.6	1.1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져서	46.1	36.9	19.3	2.2
학령기 가구원 졸업 등으로 인한 교육급여 대상 제외	0.0	0.0	0.0	58.9
기타	0.0	13.0	24.3	19.2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3.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감소효과

여기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감소효과를 살펴본다. 2021년 10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수급자가 증가하였는지 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급한 경험이 없는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2021년 1월~2021년 9월 기초보장급여 신청자와 2021년 10월~2022년 6월 기초보장급여 신청자의 수급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2021년 1월~2021년 9월 기초보장급여 신청자의 수급 비율을 살펴보면, 모두 수급한 경우가 18.83%, 일부 수급한 경우가 31.69%로 나타났다. 2021년 10월~2022년 6월 기초보장급여 신청자의 수급 비율은 모두 수급한 경우가 32.41%, 일부 수급한 경우는 32.26%로 2020년 10월 기점으로 수급자 비율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수급한 경우에서도 생계급여를 수급한 비율은 각각 25%, 31%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청은 했지만 수급 탈락한 이유를 살펴보면, 2021년 10월~2022년 6월 기초보장급여 신청자는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가 27.6%,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가 27.5%로 나타났다. 2021년 10월~2022년 6월 기초보장급여 신청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가 28.7%로 가장 높았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가 26.9%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급여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였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경우가 높게 나타나 지속적으로 완화 혹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10-2-7〉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감소효과

(단위: %)

구분	2021.1월 ~ 2021.9월	2021.10월 ~ 2022.6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모두 수급	18.83	32.41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일부 수급	31.69 (생계:25%)	32.26 (생계 31%)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49.48	31.32
합계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4.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빈곤 감소효과

여기에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빈곤 감소효과를 살펴본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국민지원금과 현금지원금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지원책으로, 전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금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금,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기타 지원금/수당/쿠폰 등을 포함한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되었고,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되었다. 기타 지원금/수당/쿠폰은 무급 휴직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다.

〈표 10-2-8〉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빈곤의 규모와 심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모두 확인하기 위해, 빈곤갭비율을 분석한 것이다. 우선 기준중위소득 50%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갭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시장소득 빈곤갭비율이 13.75%, 시장소득+코로나19 재난지원금 빈곤갭비율이 12.88%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가구 빈곤갭비율은 6.30%, 개인빈곤갭비율은 7.02%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지원금은 가구빈곤갭비율을 4.56%, 개인빈곤갭비율은 4.97%, 현금지원금은 가구빈곤갭비율을 1.81%, 개인빈곤갭비율은 2.13% 감소시켰다.

기준중위소득 40% 빈곤선으로 평가하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가구빈곤갭비율을 7.53%, 개인빈곤갭비율을 8.17% 감소시켰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빈곤선을 낮추고 빈곤갭비율로 평가할 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빈곤 감소 효과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표 10-2-8〉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빈곤갭 감소효과

(단위: %)

가구	빈곤선: 기준중위소득 40%		빈곤선: 기준중위소득 50%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
시장소득	11.77	0.00	13.75	0.00
시장소득+코로나19 재난지원금	10.88	7.53	12.88	6.30
시장소득+국민지원금	11.11	5.61	13.12	4.56
시장소득+현금지원금	11.53	2.01	13.50	1.81
개인	빈곤선: 기준중위소득 40%		빈곤선: 기준중위소득 50%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
시장소득	7.69	0.00	9.13	0.00
시장소득+코로나19 재난지원금	7.06	8.17	8.49	7.02
시장소득+국민지원금	7.23	5.95	8.68	4.97
시장소득+현금지원금	7.50	2.34	8.94	2.13

주: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는 <(시장소득 빈곤갭비율 - 해당 소득 빈곤갭비율)÷시장소득 빈곤갭비율×100>으로 계산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지급하는 형태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었다.

〈표 10-2-9〉는 추가 국민지원금의 주 사용처를 보여준다. 모든 가구에서 공통적으로 생활비로 사용한 비율이 높았다. 2순위는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급가구가 전체가구보다 높은 비율로 빚을 갚는 데 사용하였다.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소비한 지출 항목으로는 식료품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보건의료비, 피복신발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순으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9〉 귀 닥은 추가 국민지원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단위: %)

구분	전체가구			1인가구			2인가구			4인가구		
	전체	수급 (생계의료)	소득장애 (중위소득 - 50%*)	1인가구 전체	수급 (생계의료)	소득장애 (중위소득 - 50%*)	2인가구 전체	수급 (생계의료)	소득장애 (중위소득 - 50%*)	4인가구 전체	수급 (생계의료)	소득장애 (중위소득 - 50%*)
생활비	99.17	98.62	99.54	98.90	98.54	99.26	99.19	98.94	100.00	99.66	100.00	100.00
빚 갚음	0.51	0.81	0.23	0.66	0.89	0.37	0.57	0.75	0.00	0.34	0.00	0.00
저축	0.28	0.54	0.23	0.37	0.52	0.37	0.24	0.31	0.00	0.00	0.00	0.00
기타	0.04	0.04	0.00	0.07	0.0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추가 국민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가구의 84.77%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가구원수별로 보면, 1인 가구는 84.65%, 2인 가구는 82.39%, 4인가구는 91.49%가 추가 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10-2-10〉 추가 국민지원금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도움 되었다	도움 되었다	보통	도움이 안되었다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	계
전체	23.78	60.99	11.16	3.89	0.18	100.00
1인가구	26.23	58.42	10.95	4.23	0.16	100.00
2인가구	19.65	62.74	13.55	3.65	0.41	100.00
4인가구	24.76	66.73	6.09	2.43	0.00	10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1 장

급여적정성

제1절 최저생계비를 통한 급여적정성 평가

제2절 박탈지표를 통한 급여적정성 평가

제 11 장 급여적정성

제1절 최저생계비를 통한 급여적정성 평가

1. 급여적정성 평가 개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2항에서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역할로 제시하고 있다. 같은 법 같은 조의 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계측 결과 등을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기준의 적정성을 판정할 수 있다.

2015년 맞춤형 급여로 전환되기 이전,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법의 제1조(목적)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다. 같은 법 제2조(정의)에 의해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계측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서 활용되어 왔다. 맞춤형 급여로 전환되면서 수급자 선정기준선이 기존의 절대적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 즉 상대적 방식이 활용되었다. 이에 최저생계비는 상대적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급여기준이 수급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평가 기준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 결국 최저생계비가 여전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저소득층의 기초적인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제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선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의 2부에서 과거 정책기준선으로 활용한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과 동일한 방식으로 현시점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그리고 대안적 방식으로서 반물량, 박탈, 주관적 방식의 최저생계비를 측정하여 빈곤선의 수준을 비교하였다. 또한 맞춤형 급여로의 전환 이전에는 계측된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가 공식적인 선정기준선으로 활용되었으므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세세 품목과 수준, 산

출방식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경험이 있다. 하지만 맞춤형 급여로의 전환 이후 최저생계비는 급여기준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의 하나로 활용되므로 과거에 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낮아졌다(김태완 외, 2017, pp.499-500).

맞춤형 급여로 전환된 이후, 첫 급여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2017년 상반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총괄·생계분과 논의 과정(1차, 3.22)에서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를 논의하지만 여러 계측방법을 통해 제시된 최저생계비의 범주를 제시하고 해당 시점의 기준중위소득 적정성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김태완 외, 2017, p.500). 이 소위원회에서는 법 개정에 따라 적정성 평가기준이라는 최저생계비의 새로운 위상에 부합하도록 두 가지 측면에서 합의를 했다. 첫째, 이전 계측년도 이후 가격과 품목 등 물가상승과 삶의 질 제고를 현실화한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치를 함께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기준 가구 단위로서 4인 가구 표준가구의 구성이 변하고, 이들의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제시한다. 둘째, 물가상승분을 추출하기 위하여 이전 계측년도 최저생계비 값에서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최저생계비 계측치를 제시하기로 하였다.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다양한 대안적인 방식이 존재하고 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활용한 경험이 없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급여기준의 적정성을 판정하는 논의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및 물가상승분 적용 최저생계비만을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김태완 외, 2017, p.500).

2.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2023년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를 제시하면서, 2017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총괄·생계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대로 표준가구 구성 변동에 의한 삶의 질 개선을 반영한 최저생계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 2부의 처음에서 표준가구 구성을 설명한 것과 같이 최근의 인구구조 고령화와 늦은 결혼 추세를 반영하여 2023년 4인 표준가구 구성은 47세 남성 가구주, 46세 여성 배우자, 17세 첫째아(남아, 고등학생), 15세 둘째아(여아, 중학생)이다. 이는 최근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에 의한 것이다.

2023년부터 변경된 현행 지역구분에 따라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

역'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되(연구진안), 그 중 중위소득 및 급여적정성 비교의 기준은 '광역시/세종/창원'의 4인 표준가구를 적용하였다. '광역시/세종/창원'은 다양한 지역을 포괄하면서, 가구 비중도 27.7%로 그 외 지역(28.8%)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또한 주택가격 등 재산 수준이 이전 중위소득 및 급여적정성 비교의 기준인 '중소도시'와 가장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에 과거 지역구분의 기준이었던 3개 급지의 적용 계측값은 동일한 지역 구분을 적용했던 이전 계측결과와의 연속성 차원에서 현행 4개 급지 계측값의(연구진안)의 비교 용도로 활용하고, '중소도시'의 경우 '광역시/세종/창원'에 대한 비교안으로 활용하였다.

〈표 11-1-1〉 급지별 가구분포 및 재산 수준 비교

(단위: %, 만원)

구분	3급지			4급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그외
가구분포	43.8	50.1	6.2	18.9	24.6	27.7	28.8
총재산(금융 및 비금융재산)	52,962	39,145	29,387	76,620	46,582	35,666	30,443
(거주)주택가격	33,027	22,545	8,931	48,319	30,175	21,662	12,984
전세보증금(전체)	23,453	18,467	5,336	29,870	21,340	14,052	11,459
전세보증금 (수급+기준중위50%이하)	4,100	3,564	1,699	4,683	3,822	3,581	2,79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위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려면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비소비지출의 세금과 사회보험기여금 등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표준가구의 경제활동에 따른 종사상 지위와 자녀 학령기 등에 대한 기본가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 가구주는 주 5일 근무 하고 2023년 공시 최저임금(2,010,580원)을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로 상정하였다. 여성 배우자는 주부로 가정하고 있다. 표준가구의 주거점유형태는 모두 전세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준가구 1인의 첫째아는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아이고, 둘째아는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여아이다.

최저생계비 중에서 연구진안(4급지) '광역시/세종/창원' 식료품비가 894,118원(36.8%), 비교안(3급지) '중소도시' 식료품비는 894,118원(37.5%)로 최저생계비 급

액은 동일하나, '광역시/세종/창원'과 '중소도시'의 주거비, 수도광열비, 가구집기비의 차이로 그 구성비만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47세 남성의 영양소 섭취기준이 2,400kcal에서 2,500kcal로 증가하여 해당 부분을 반영하였다.

〈표 11-1-2〉 전물량 방식에 의한 지역별 비목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단위: 원, %)

〈연구진안(4급지): 47세 남성 가구주, 46세 여성 배우자, 17세 남아(고등학생), 15세 여아(중학생)〉

구분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기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식료품비	894,118	32.7	894,118	34.5	894,118	36.8	894,118	39.2
주거비	702,910	25.7	560,670	21.6	394,724	16.2	253,083	11.1
수도광열비	122,759	4.5	122,263	4.7	124,251	5.1	118,191	5.2
가구집기비	60,337	2.2	59,575	2.3	59,996	2.5	58,872	2.6
피복신발비	106,564	3.9	106,564	4.1	106,564	4.4	106,564	4.7
보건의료비	96,904	3.5	96,904	3.7	96,904	4.0	96,904	4.2
교육비	125,501	4.6	125,501	4.8	125,501	5.2	125,501	5.5
교양오락비	86,966	3.2	86,966	3.4	86,966	3.6	86,966	3.8
교통통신비	196,450	7.2	196,450	7.6	196,450	8.1	196,450	8.6
기타소비지출	155,286	5.7	155,286	6.0	155,286	6.4	155,286	6.8
비소비지출	188,499	6.9	188,942	7.3	188,912	7.8	188,908	8.3
합계	2,736,294	100.0	2,593,239	100.0	2,429,672	100.0	2,280,843	100.0

〈비교안(3급지): 47세 남성 가구주, 46세 여성 배우자, 17세 남아(고등학생), 15세 여아(중학생)〉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식료품비	894,118	35.4	894,118	37.5	894,118	40.5
주거비	501,404	19.8	359,994	15.1	179,225	8.1
수도광열비	117,141	4.6	116,398	4.9	121,149	5.5
가구집기비	59,912	2.4	59,427	2.5	58,727	2.7
피복신발비	106,564	4.2	106,564	4.5	106,564	4.8
보건의료비	96,904	3.8	96,904	4.1	96,904	4.4
교육비	125,501	5.0	125,501	5.3	125,501	5.7
교양오락비	86,966	3.4	86,966	3.6	86,966	3.9
교통통신비	196,450	7.8	196,450	8.2	196,450	8.9
기타소비지출	155,286	6.1	155,286	6.5	155,286	7.0
비소비지출	188,902	7.5	188,917	7.9	188,908	8.5
합계	2,529,148	100.0	2,386,525	100.0	2,209,798	100.0

2020년 대비 2023년 표준가구 변동에 의한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변화량은 다음과 같다. 식료품비는 가구 구성원 변동에 의한 필수 열량이 변화하였다. 피복신발비, 교육비 등은 자녀 학령기를 고려하여 품목을 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피복신발비는 첫째아와 둘째아의 교복과 둘째아의 속옷(브래지어) 및 허리띠, 그리고 교복 드라이클리닝 비용이 항목별로 보완하였다. 교육비는 고등학생의 참고서 및 문제집, 인터넷강의, 수련회 등을 보완하여 반영하였다.

〈표 11-1-3〉 표준가구 변동에 의한 전물량 방식 지역별 비목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단위: 원, %)

구분	광역/세종/창원			
	최저생계비		변화량('20-'23)	
	금액(A)	비중	증감액(B)	비율(B/A)
식료품비	894,118	37.5	106,311	11.9
주거비	359,994	15.1		
수도광열비	116,398	4.9		
가구집기비	59,427	2.5		
피복신발비	106,564	4.5	640	0.6
보건의료비	96,904	4.1		
교육비	125,501	5.3	18,247	14.5
교양오락비	86,966	3.6		
교통통신비	196,450	8.2		
기타소비지출	155,286	6.5	7,845	5.0
비소비지출	188,917	7.9		
합계	2,386,525	100.0	133,043	5.6

삶의 질 개선에 의한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변동분은 다음과 같다. 삶의 방식이 변화하고, 필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가구집기비와 교통통신비의 신규품목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가구집기비 중, 옷걸이, 물티슈 추가, 교통통신비에서는 집전화요금 삭제, 휴대전화 요금(배우자), 인터넷 이전비 추가, 기타소비지출에 린스를 신규품목으로 추가하였다. 일부 품목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삭제하였다. 교통통신비 중 집전화요금을 삭제하고 신규로 휴대전화 요금(배우자)를 추가하였다.

2020년 최저생계비 계측의 연구진안과 비교하면, 2023년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증가는 11.8%이다. 비목 중에서는 교육비, 비소비지출, 식료품비, 수도광열비

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예년 대비 가구집기비 비용의 증가가 큰 것은 삶의 질 개선을 반영하여 품목이 신규로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표 11-1-4〉 삶의 질 개선에 의한 전물량 방식 지역별 비목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단위: 원, %)

구분	광역시/세종/창원			
	최저생계비		변화량('20-'23)	
	금액(A)	비중	증감액(B)	비율(B/A)
식료품비	894,118	36.8		
주거비	394,724	16.2		
수도광열비	124,251	5.1		
가구집기비	59,996	2.5	443	0.83
피복신발비	106,564	4.4		
보건의료비	96,904	4.0		
교육비	125,501	5.2		
교양오락비	86,966	3.6		
교통통신비	196,450	8.1	2,038	1.06
기타소비지출	155,286	6.4	1,615	1.16
비소비지출	188,912	7.8		
합계	2,429,672	100.0	4,096	0.19

〈표 11-1-5〉 2020년 대비 최저생계비 비목별 증가율

(단위: 원, %)

구분	2020년 연구진안		2023년 연구진안(3급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증가율
식료품비	771,345	36.1	894,118	37.5	15.9
주거비	340,582	16.0	359,994	15.1	5.7
수도광열비	102,349	4.8	116,398	4.9	13.7
가구집기비	53,463	2.5	59,427	2.5	11.2
피복신발비	98,499	4.6	106,564	4.5	8.2
보건의료비	91,239	4.3	96,904	4.1	6.2
교육비	105,694	5.0	125,501	5.3	18.7
교양오락비	78,071	3.7	86,966	3.6	11.4
교통통신비	192,032	9.0	196,450	8.2	2.3
기타소비지출	139,273	6.5	155,286	6.5	11.5
비소비지출	161,945	7.6	188,917	7.9	16.7
합계	2,134,492	100.0	2,386,525	100.0	11.8

3. 물가상승률 방식의 최저생계비

2017년 상반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총괄·생계분과 소위원회의 제안에 근거를 두어 물가상승률만을 적용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2020년 연구진이 제안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난 기간(2020. 1~2023.1)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을 계측하였다. 산출방식은 비교기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이용한 계측과 각 비목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활용하였다. 단,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의 비목 구성을 2009년에 개편하여 최저생계비의 11개 비목과 같지 않으므로 유사 비목의 대푯값을 활용했다. 이렇게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총지수를 적용했을 때 2,347,963원이고, 항목별 지수를 적용했을 때 2,388,843원이다.

〈표 11-1-6〉 2023년 물가상승률 적용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안)

(단위: 원/월, %)

비목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식료품비	900,477	36.1	900,477	37.7	900,477	40.7
2.주거비	476,645	19.1	374,609	15.7	195,281	8.8
3.광열수도비	120,860	4.8	117,237	4.9	121,789	5.5
4.가구집기가사용품비	59,736	2.4	59,221	2.5	58,479	2.6
5.피복신발비	106,646	4.3	106,646	4.5	106,646	4.8
6.보건의료비	92,838	3.7	92,838	3.9	92,838	4.2
7.교육비	109,208	4.4	109,208	4.6	109,208	4.9
8.교양오락비	82,407	3.3	82,407	3.4	82,407	3.7
9.교통통신비	200,068	8.0	198,702	8.3	197,564	8.9
10.기타소비지출	158,581	6.4	158,581	6.6	158,581	7.2
11.비소비지출	188,902	7.6	188,917	7.9	188,908	8.5
최저생계비(1~11의 합)	2,496,367	100.0	2,388,843	100.0	2,212,178	100.0
(총지수)	2,455,448		2,347,963		2,171,190	

주: 2020년 중생보위의결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2020년 1월 및 2023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 값임.

자료: 김문길, 김태완 외(2020): 통계청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2023.2.5. 인출)

4. 생계급여 급여적정성 평가: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생계비 비교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제안한 최저생계비를 활용하여 2023년 적용되고 있는 최저보장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이전, 최저생계비를 공식적인 선정기준선으로 활용할 때 현금급여 기준선은 타법령에 의한 현물지원을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따라서 전물량 방식을 통해 계측된 연구진안(4급지: 광역/세종/창원) 기준 최저생계비 2,429,672원과 비교안(3급지: 중소도시) 기준 최저생계비 2,386,525원의 마켓바스켓에 해당하는 현물 및 타법지원액을 산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타법지원액은 2020년과 동일한 방식에 의해 산출되었으며, 그 수준은 광역/세종/창원 633,034원, 중소도시 632,470원으로 계측되었다. 2020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에 타법지원액을 제외하면 맞춤형 급여 도입 전 현금급여 기준선에 해당되는 금액은 표준가구에 따라 광역/세종/창원 기준 1,401,915원, 중소도시 기준 1,394,062원으로 계측되었다.

〈표 11-1-7〉 2023년 4인 가구 기준 타법지원액

(단위: 원/월)

비목	품목	4급지(광역/세종/창원)		3급지(중소도시)		근거
		마켓바스켓	타법지원액	마켓바스켓	타법지원액	
식료품비	급식비	74,788	74,788	74,788	74,788	학교급식법제9조
		71,523	71,523	71,523	71,523	
광열수도비	전기요금	38,701	17,000	39,385	17,000	전기공급약관 제67조 도시가스요금경감 지침 (2023.01. 산자부 발표): 동절기(12-3월) 36,000원(생계/의료급여) 반영
	도시가스	55,767	20,280	54,427	20,280	
의료비	보건의료서비스	70,413	60,589	70,413	60,589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예기물관리조례, 명칭은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지원
교육비	교육비	125,501	125,501	125,501	125,501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21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 및 2021년 의료급여통계
가구집기 가사용품	쓰레기봉투	1,661	1,661	1,335	1,335	교육급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773	773	530	530	

비목	품목	4급지(광역시/세종/창원)		3급지(중소도시)		근거
		마켓바스켓	타법지원액	마켓바스켓	타법지원액	
교양오락비	TV수신료	2,500	2,500	2,500	2,500	방송법 문화예술진흥법제15의4에 근거한 통합문화이용 권이용(6세 이상 개인당 연간 11만원)
	문화생활	61,116	36,667	61,116	36,667	
교통통신비	유선전화	0	0	0	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감 면제도
	이동전화	49,575	43,560	49,575	43,560	
	인터넷	24,582	7,375	24,582	7,375	
비소비지출	국민연금	90,476	90,476	90,476	90,476	국민연금법제8조, 제9조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지방세법제77조2항
	건강보험	79,428	79,428	79,428	79,428	
	주민세	913	913	918	918	
타법지원액			633,034		632,470	

최종적으로 생계급여 기준선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 2015년 맞춤형 급여로 개편한 이후, 생계급여 기준선은 기존 현금급여 기준선에서 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에 해당되는 비목이 상계되어 적용되었다. 주거비 제외분을 타법지원액과 함께 최저생계비 계측 금액에서 상계하면 생계급여 기준선과 상대적인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주거급여가 현금급여로 제공하고 있는 금액은 순수한 임대료로 실제 거주하면서 필요한 이사비, 부동산중개료, 도배비 등의 관리비는 포괄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거급여에 의한 현금지원을 타법지원액과 함께 고려할 때, 마켓바스켓에 의한 주거비 전체와 주거비 중 관리비를 제외한 일부 금액만을 고려하는 2개 방법이 가능하다. 두 방법으로 계측된 금액 모두 2023년 적용되고 있는 생계급여 기준인 1,620,289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1-1-8〉 생계급여 적정성 판정

구 분	생계급여 (광역/세종/창원)	최저생계비	①주거비 + 현물 및 타법지원액	②주거비(아파트관리비, 이사비 등 제외) + 현물 및 타법지원액
2023년	1-① 1,401,915원 1-② 1,492,827원	= 2,429,672원	394,724원 + 633,033원 = 1,027,757원	303,812원 + 633,033원 = 936,845원
	생계급여 (중소도시)		①주거비 + 현물 및 타법지원액	②주거비(아파트관리비, 이사비 등 제외) + 현물 및 타법지원액
	2-① 1,394,062원 2-② 1,484,557원	(중소도시) 2,386,525원	359,994원 + 632,469원 = 992,463원	269,499원 + 632,469원 = 901,968원
산출 근거	2023년 4인 가구 기준 현물 및 타법지원액	4인 가구 광역/세종/창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식비 146,311원 ◦전기요금 17,000원 ◦도시가스 20,280원 ◦보건의료비 60,589원 ◦교육비 125,469원 ◦쓰레기봉투 1,661원 ◦음식물쓰레기 773원 처리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수신료 2,500원 ◦문화이용권 36,667원 ◦유선전화 0원 ◦이동전화 43,560원 ◦인터넷 7,375원 ◦국민연금 90,476원 ◦건강보험 79,428원 ◦주민세 913원
구 분	생계급여(표준가구 1)	최저생계비	1-①주거비 + 현물 및 타법지원액	1-②주거비(아파트관리비, 이사비 등 제외) + 현물 및 타법지원액
2020년	1-① 1,248,026원 1-② 1,339,308원	= 2,134,492원	340,582원 + 545,884원 = 886,466원	249,300원 + 545,884원 = 795,184원
	생계급여(표준가구 2)		2-①주거비 + 현물 및 타법지원액	2-②주거비(아파트관리비, 이사비 등 제외) + 현물 및 타법지원액
	2-① 1,151,579원 2-② 1,242,861원	(표준가구2) 1,980,521원	340,582원 + 488,360원 = 828,942원	249,300원 + 488,360원 = 737,660원
산출 근거	2020년 현물 및 타법지원액	4인 가구 중소도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식비(1안) 126,479원 (2안) 106,022원 ◦전기요금 17,000원 ◦도시가스 14,040원 ◦보건의료비 36,454원 ◦교육비(1안) 105,694원 (2안) 90,407원 ◦쓰레기봉투 1,280원 ◦음식물쓰레기 510원 처리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수신료 2,500원 ◦문화이용권 30,000원 ◦유선전화 8,531원 ◦이동전화 32,670원 ◦인터넷 7,260원 ◦국민연금 80,789원 ◦건강보험 66,011원 ◦주민세 783원

구 분	생계급여(1-1) 1,093,450원	=	최저생계비 1,811,223원	-	주거비 + 현물 및 타법지원액 303,139원 + 414,634원 = 717,773원	
2017년	생계급여(1-2) 1,159,909				주거비(아파트관리비, 이사비 등 제외, 66,459원) + 현물 및 타법지원액 236,680원 + 414,634원 = 651,314원	
산출 근거	2017년 현물 및 타법지원액				4인 가구 중소도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식비 101,406원 ◦전기요금 17,000원 ◦도시가스 14,080원 ◦보건의료비 36,027원 ◦교육비 83,092원 ◦쓰레기봉투 1,251원 ◦음식물쓰레기 500원 ◦처리비용 ◦TV수신료 2,500원 ◦문화이용권 5,000원 ◦유선전화 7,278원 ◦이동전화 32,431원 ◦인터넷 8,415원 ◦국민연금 60,850원 ◦주민세 43,987원 ◦건강보험 817원

자료: 김문길, 김태완 외(2020, p.490)

생계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이어 최종적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수준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해 산출된 계측치와 2023년 적용되고 있는 생계급여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 30%와 비교해 보면, 연구진안(4급지 광역/세종/창원) 및 비교안(3급지 중소도시)와 비교하여서도 현재의 생계급여 기준소득이 낮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1-9〉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안) 비교 (4인가구)

'23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2,160,386원	⇔	'23년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	비교
		표준가구 4급지 변동시(광역/세종/창원) 2,429,672원	269,286원 (12.5%↑)
		표준가구 3급지 유지시(중소도시) 2,386,525원	226,139원 (10.5%↑)
	⇔	'23년 물가상승을 적용 최저생계비	
		'20년 4인가구 중소도시 최저생계비에 총물가지수 적용시 2,347,963원	187,577원 (8.7%↑)
		항목별물가 지수 적용시 2,388,843원	228,457원 (10.6%↑)
'23년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1,620,289원	⇔	'23년 타법지원액을 감액한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	비교
		표준가구 4급지 변동시(광역/세종/창원) 1,492,827원	▽ 127,462원 (7.9%↓)
		표준가구 3급지 유지시(중소도시) 1,484,557원	▽ 135,732원 (8.4%↓)

생계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이어 최종적으로 2023년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생계비 수준을 비교하면 다음 <표 11-1-9>와 같다. 최저보장수준은 현금급여로서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현물급여로서의 의료급여와 타법지원액, 그리고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혼합된 교육급여를 포괄한다. 단, 교육급여 중 현물급여인 입학금 등은 일회적인 지원이므로 여기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최저생계비 계측에서 기준으로 삼는 표준가구인 광역/세종/창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저보장수준을 계산하면 약 2,469,437원이다. 이 금액은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2,429,672원, 항목별 물가지수를 적용한 2,388,843원, 총 물가지수를 적용한 2,347,963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즉, 현재 수급가구에 대한 최저보장수준은 각각의 방식으로 계측된 최저생계비를 상회한다. 가계동향조사의 분위별 지출수준으로 확인한 저소득층 지출 수준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이다.

<표 11-1-10> 2023년 최저보장수준 적정성 판정

광역/세종/창원 기준 '23 최저보장수준(월)		'23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월) 4인가구 광역/세종/창원	최저보장수준과 차이
생계급여	1,620,289원	표준가구 2,429,672원	80,265원
의료급여	70,413원		
주거급여	353,500원	'23 물가상승률 적용 최저생계비 '23 4인가구 중소도시 기준	최저보장수준과 차이
교육급여	51,791원	항목별 지수 적용시 2,388,843원 총지수 적용시 2,347,963원	121,094원 161,974원
타법지원 (의료, 주거, 교육 제외)	413,944원		
총합	2,509,937원	가계동향조사 분위별 지출 수준	최저보장수준과 차이
		10분위 중 1분위 평균 1,199,915원	1,310,022원
		10분위 중 3분위 평균 2,093,542원	416,395원
		10분위 중 6분위 누적평균 2,289,059원	220,878원

[보론] 타법지원액 산정방식

타법지원액은 전물량 방식을 통해 계측된 11개 비목 중 식료품비 중 급식비, 광열수도비 중 전기료, 의료급여로서 최저의료비 중 보건의료서비스의 일부, 최저교육비, 쓰레기봉투, TV수신료, 유·무선 전화요금 지원분, 주민세,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때 수급(권)자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현물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바우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가구원특성(만 6세 미만 혹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임산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므로 타법지원액에서 제외한다.

각각의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광열수도비중 전기요금 감면은 전기공급약관 제6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감면금액의 가중평균액, 도시가스 감면분을 고려하였다.

〈전기요금/도시가스 감면액〉

(단위: 원/월)

전기요금 감면	주택용 전력		가중평균
	여름 (6-8월)		
생계급여	16,000	20,000	17,000
의료급여	16,000	20,000	17,000
주거급여	10,000	12,000	10,500
교육급여	10,000	12,000	10,500

도시가스 감면	취사난방용			취사용(B)	합계(A+B)
	기타월(4-11월)	동절기(12-3월)	가중평균(A)		
생계급여	9,900	36,000	18,600	1,680	20,280
의료급여	9,900	36,000	18,600	1,680	20,280
주거급여	4950	18,000	9,300	840	10,140
교육급여	2,470	9,000	4,647	420	5,067

자료: (전기요금) 한국전력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 (2023.04.06. 인출)

(도시가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2023.04.06. 인출/2023.01.12. 발표)

보건의료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②항의 기조에 따라 의료급여 1종과 2종을 기준으로 현물급여액을 산출하였다. 2021년 현재 총진료비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율은 전국민 기준 19.5%,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2%(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2021년 의료급여통계」에 따르면,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기금부담률은 97.3%, 2종 수급자의 기금부담률은 93.0%이다.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률(19.5%) 대비 비급여 본인부담률(15.2%) 비율을 적용한 1종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률 추정치는 법정 본인부담률 2.72%와 비급여 본인부담률 2.1%를 합한 4.8%이다. 2023년 최저보건의료비 중 보건의료서비스 비용은 70,413원이므로, 전국민 기준 총진료비는 202,919원(=70,413원 / (19.5%+15.2%))이다. 여기에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자 평균 본인부담률 추정치 4.8%를 적용하면 현물지원액은 60,589원이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단위: %)

구분	비율
건강보험보장률	64.5
법정 본인부담률	19.5
비급여 본인부담률	15.2

자료: 2021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의료급여 진료실적〉

(단위: 천원,%)

구분	총진료비	기금부담금	비율
계	9,767,913,625	9,502,153,137	97.3
1종	8,959,090,989	8,749,817,394	97.7
2종	808,822,635	752,335,743	93.0

자료: 2021년 의료급여 주요통계

〈단계별 보건의료서비스 현물지원액 추정〉

(단위: %, 원/월)

단계	추정치
(1) 의료급여 1,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률 추정치(A)	2.72
(2) 의료급여 1, 2종 수급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 추정치(B)	2.1
(3) 의료급여 1, 2종 수급자 본인부담률 소계(C=A+B)	4.8
(4) 전국민 기준 총진료비=보건의료서비스비/(법정+비급여 본인부담률)(D)	202,919
(5) 의료급여 1, 2종 본인부담액 추정치(E=C/100×D)	9,824
(6) 의료급여 1, 2종 기관부담액 추정치=현물지원액(보건의료서비스비-E)	60,58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 2021년 의료급여 주요통계

교양오락비 중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TV 수신료를 감면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의4에 근거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인당 연간 9만원(월 5,000원)을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이 발급되고 있다. 이를 4인 가구 월 단위로 환산하면 30,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감면제도에 의해 교통통신비 중 휴대전화요금은 기본감면 26,000원 한도에서 사용요금과 부가세가 감면된다. 이동통신가입비는 한도액이 15,000원이지만, 이 연구의 마켓바스켓에서는 이동통신 가입비를 업체로부터 지원받고 통신사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터넷의 사용요금과 부가세는 30%를 감면받는다.

(단위: 원/월)

품목			광역/세종/창원		중소도시		비고	
			최저생계비	타법지원액	최저생계비	타법지원액		
휴대전화요금	휴대폰 사용요금(성인)	LTE 스마트폰, 애플폰(100MB, 60분 통화, 50건 메시지), 24개월 약정	19,800	19,800	19,800	19,800	기본감면 26,000원 한도	
	휴대폰 사용요금(자녀)	LTE 스마트폰, 애플폰(100MB, 60분 통화, 50건 메시지), 24개월 약정	19,800	19,800	19,800	19,800		
	휴대폰 부가세(성인)	요금의 10%	1,980	1,980	1,980	1,980		
	휴대폰 부가세(자녀)	요금의 10%	1,980	1,980	1,980	1,980		
	휴대폰 구입비	5년마다 1회	6,015	0	6,015	0		비해당
	이동통신 가입비	생애 1회	0	0	0	0		한도액 15,000원
	소계			49,575	43,560	49,575	43,560	
인터넷	사용요금	저가형 (가족안심, 100Mbps), 부가세별도	22,000	6,600	22,000	6,600	30% 감면	
	부가세	사용요금의 10%	2,200	660	2,200	660		
	이전비	6년에 1회	382	114.6	382	114.6	비해당	
	소계			24,582	7,375	24,582	7,375	
합계			74,157	50,935	74,157	50,935		

제2절 박탈지표를 통한 급여적정성 평가

1. 급여 적정성 평가 도구로서 박탈지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제1조)’이다. 이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저보장수준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제2조의6)한’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의미한다. 이러한 최저소득보장(Minimum Income Protection: 이하 MIP)¹⁶³⁾은 공공부조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공적 급여를 합한 총액의 개념으로 최저소득보장(MIP) 수준이 최저소득기준(Minimum Income Standard: 이하 MIS)에 부합하는가는 급여 적정성으로 가늠할 수 있다.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되기 전까지 마켓바스켓을 활용한 최저생계비는 최저소득보장(MIP) 기준임과 동시에 최저소득기준(MIS)으로 활용되었으며, 최저생계비 계측 후에는 급여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되면서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기준이 달리 설정되면서 각 급여별 적정성에 대한 쟁점이 부각되었다.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제20조의2)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앞 장에서는 마켓바스켓을 활용하여 계측된 최저생계비를 통해 현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면, 본 절에서는 7장 2절에서 계측한 박탈지표방식에 기초한 기준선을 활용하여 적정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박탈지표방식을 활용할 경우, 비교적 간단한 분석 결과를 통해 가구유형별·박탈영역별 기준선을 계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측 결과는 매우 즉자적이어서 해석이 용이한 장점도 있다. 다만, 대부분 가구유형과 박탈 영역별 분석 결과 Wilk's Lambda값이 1에 가깝게 산출되기 때문에 기준선 미만과 이상 가구들 간 구분이 통계적으로 명료하다고 보기 어려운 한계도 존재한다. 또한 가구유형별에 따라 구분되는 지점이 2지점 이상 존재하기도 한다. 이 경우 최저소득보장수준임을 감안하여 최초로 꺾이는 지점을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하며, 본 박탈지표에 의한 적정성 평가는 정책 평가의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하길 제안한다.

163) 최저소득보장(Minimum Income Protection: 이하 MIP)과 최저소득기준(Minimum Income Standard: 이하 MIS)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보고서 2장1절을 참조하라.

2. 박탈지표방식을 통한 선정 및 급여 기준 적정성 평가

『국민생활실태조사』의 기준 시점이 2021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먼저 2021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은 30%이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선은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40%, 45%, 50%로 설정되어 있다.

〈표 11-2-1〉 2021년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선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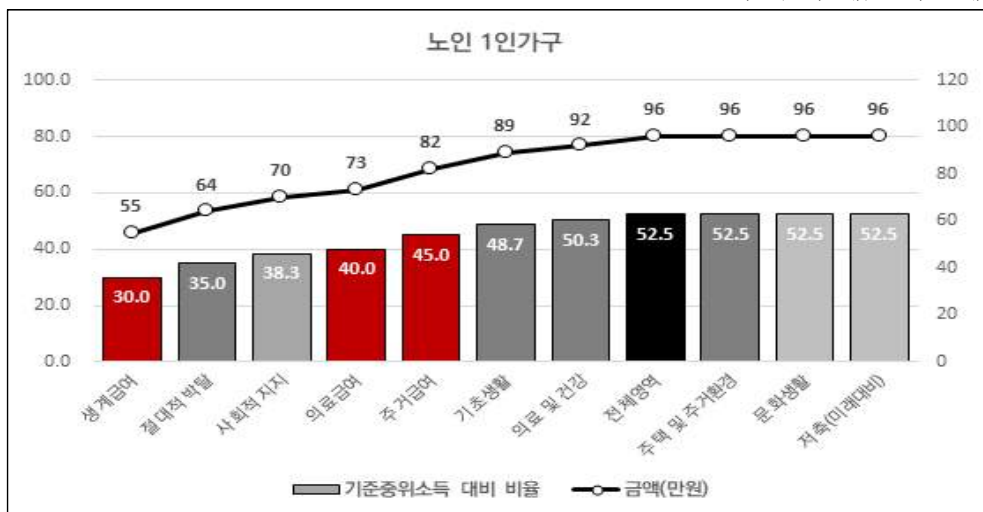
앞의 7장 1절의 분석 결과를 상기해 보면,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그리고 4인 표준가구에 대해 가구유형별로 전체 영역, 세부 영역(생활용품, 식생활, 의생활, 주택 및 주거환경, 의료 및 건강,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사회적 지지, 저축(미래대비), 자녀 교육),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절대적 박탈 영역별 꺾이는 점, 즉 박탈경험의 차별화가 발생하는 기준선을 도출한 바 있다. 또한 이를 2021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환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2021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선과 비교함으로써 선정과 급여의 적정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먼저, 노인 단독가구의 영역별 박탈 기준선과 급여별 선정기준선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노인 단독가구의 절대적 박탈은 64만원으로, 중위소득 35.0%에서 발생하며 이는 생계급여 기준선(기준중위 30%)과 의료급여 기준선(기준중위 40%) 사이 수준이다. 의료 및 건강 영역의 박탈 기준선의 경우 50.3%로 현 의료급여 기준인 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택 및 주거환경의 박탈 기준선 또한 중위소득 52.5%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45%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만

을 놓고 볼 때,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적어도 생계급여에 있어서는 선정의 표적화(targeting)가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의료 및 건강, 주택 및 주거환경의 박탈이 발생하는 기준선은 해당 급여 기준선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에서 의료와 주거급여 보장의 선정에서 배제된 노인 단독가구 중 상당수는 의료적 지원과 주거 관련 지원의 욕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거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에 대한 상향조정 및 급여 현실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혹은 폐지, 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층에게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혹은 차상위 의료급여 확대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2-1] 노인 단독가구의 영역별 박탈 기준선과 급여별 선정기준선 비교

(단위: %(왼축), 만원(오른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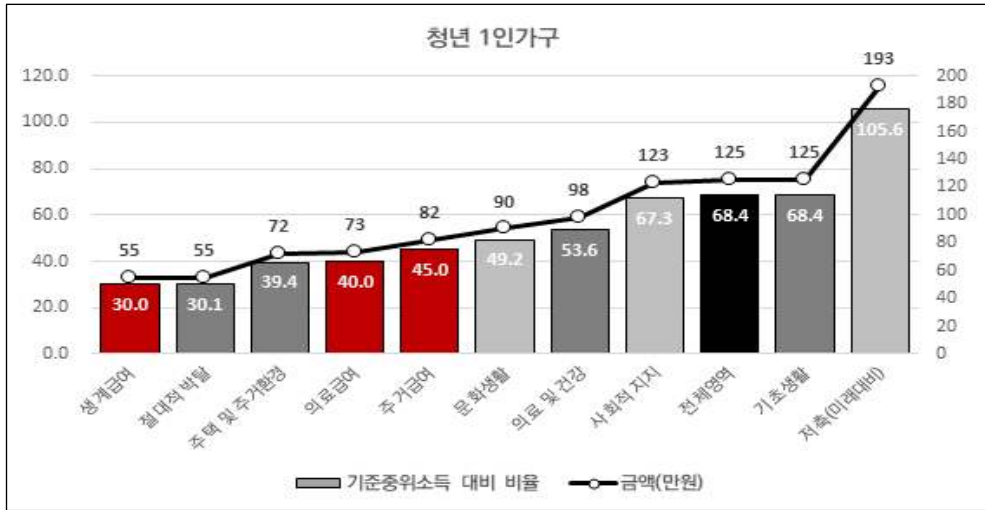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절대적 박탈 기준선이 30.1%로 생계급여 기준선과 동일하게 분석되었다. 또한 주택 및 주거환경 박탈 기준선 또한 39.4%로 현재 주거급여 기준선에 비해 낮게 나타난 점에서 생계와 주거 욕구에 대한 선정의 표적화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의료 및 건강 영역의 박탈 기준선은 현 의료급여 기준선인 40%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년 단독가구의 의료 및 건강실태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성

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는 대부분 학업·취업준비·취업 상태이고 상대적으로 재산의 축적이 미비하고, 결혼, 출산, 주택 마련 등의 목돈이 필요한 연령대라는 점에서 영역별 단계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2-2] 청년 단독가구의 영역별 박탈 기준선과 급여별 선정기준선 비교

(단위: %(왼축), 만원(오른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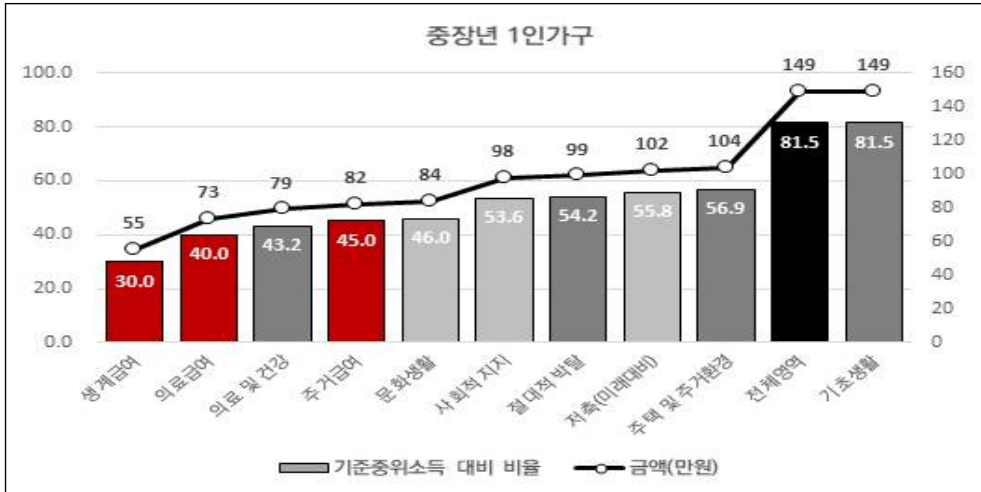


주: 청년의 경우 20~39세를 기준으로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중장년 단독가구의 경우 노인 단독가구, 청년 단독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박탈 기준선이 높게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은퇴시기인 노년층과 구직활동 혹은 사회초년 시기인 청년층에 비해 근로활동을 지속할 확률이 높은 연령층임을 감안할 때, 동일한 1인 가구 내에서도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분석결과이다. 다만, 중장년 단독가구의 경우에도 의료 및 건강 박탈 기준선이 43.2%로 나타나 의료 지원에 대한 욕구가 다소 발생하고 있음을 주지하여, 기초보장급여와 같은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도 의료서비스 등과 같이 서비스연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2-3] 중장년 단독가구의 영역별 박탈 기준선과 급여별 선정기준선 비교

(단위: %(왼축), 만원(오른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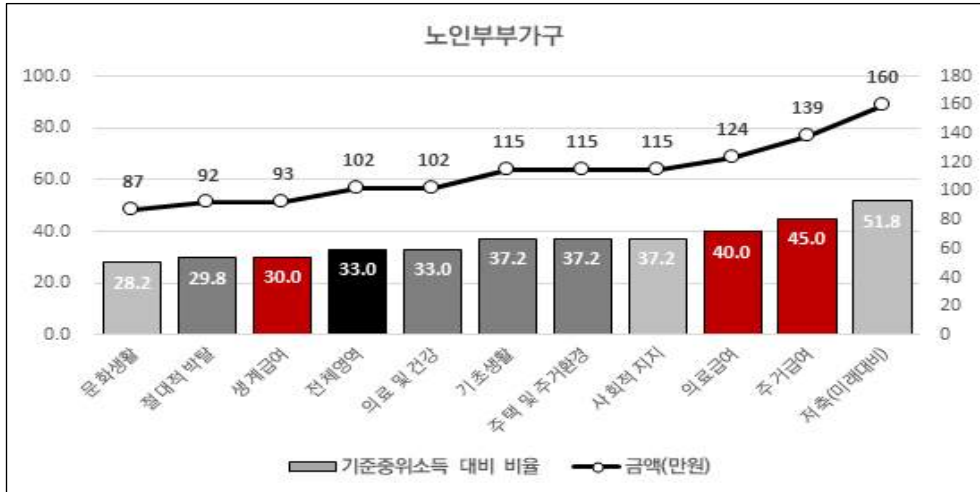
주: 중장년의 경우 40~64세를 기준으로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인가구의 영역별 박탈 기준선과 급여별 선정기준선을 비교해보면,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절대적 박탈의 기준은 29.8%로 생계급여 기준인 30%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료 및 건강, 주택 및 주거환경 박탈의 경우에도 각각 33.0%, 37.2%으로 현 급여별 선정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빈곤한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정책에서 대체적으로 정책적 표집에 노인 부부가구가 포괄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본 분석의 경우 소득만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주거용 재산 등 재산을 일부 소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노인(부부)의 경우 재산 고려시 다소 박탈 기준선이 상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인 부부가구의 경우 절대적 박탈, 의료 및 건강 영역의 박탈 기준선이 급여별 기준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며, 주택 및 주거환경 영역의 박탈 기준선은 현 주거급여 기준인 45%보다 낮은 37.6%로 나타난다. 다른 가구유형에서 가구유형별 통일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성인부부가구 내 생활의 편차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림 11-2-4] 2인가구(노인부부가구)의 영역별 박탈 기준선과 급여별 선정기준선 비교

(단위: %(왼축), 만원(오른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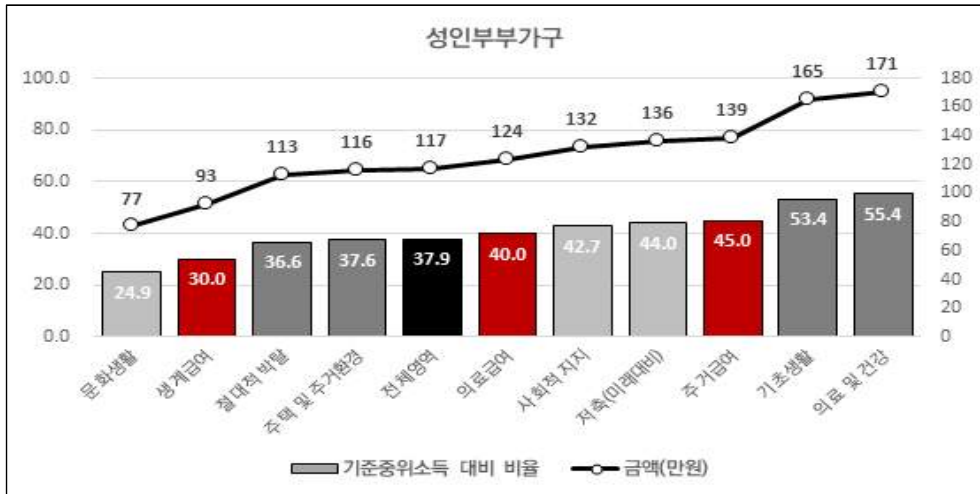


주: 노인을 제외한 성인 부부 가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11-2-5] 2인가구(성인부부가구)의 영역별 박탈 기준선과 급여별 선정기준선 비교

(단위: %(왼축), 만원(오른축))



주: 노인을 제외한 성인 부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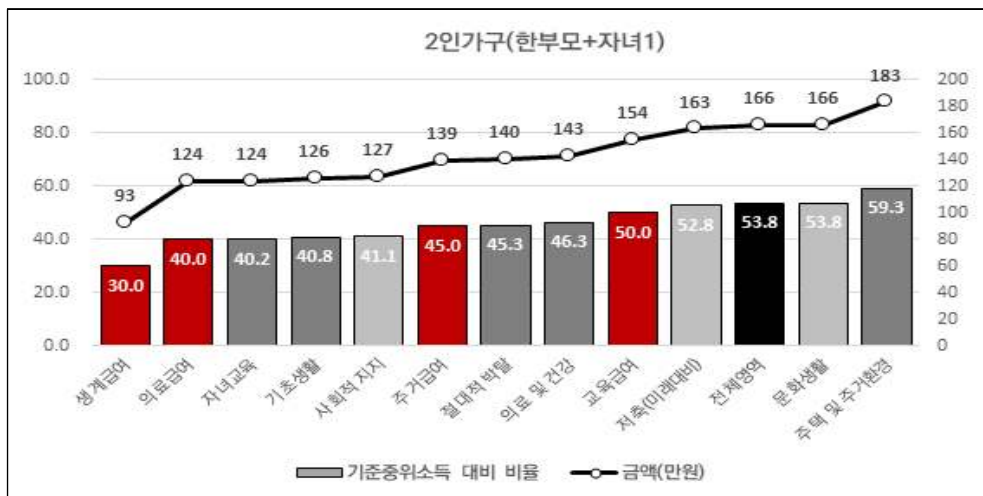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한부모와 자녀2인으로 구성된 2인 한부모가구의 경우 자녀교육에 대한 박탈 기준선은 40.2%로 교육급여 기준선인 50%보다 낮은 점에서 정책 표적화가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절대적 박탈의 기준선이 45.3%로 나타나는데, 생계급여 기준인 30%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주택 및 주거환경 영역의 경우 박탈 기준선이 59.3%로 구분된 박탈 영역별 기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거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기준 중위소득 40~60% 내외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부모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의 기준 설정에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1-2-6] 2인 한부모가구(한부모+자녀1)의 영역별 박탈 기준선과 급여별 선정기준선 비교

(단위: %(왼축), 만원(오른축))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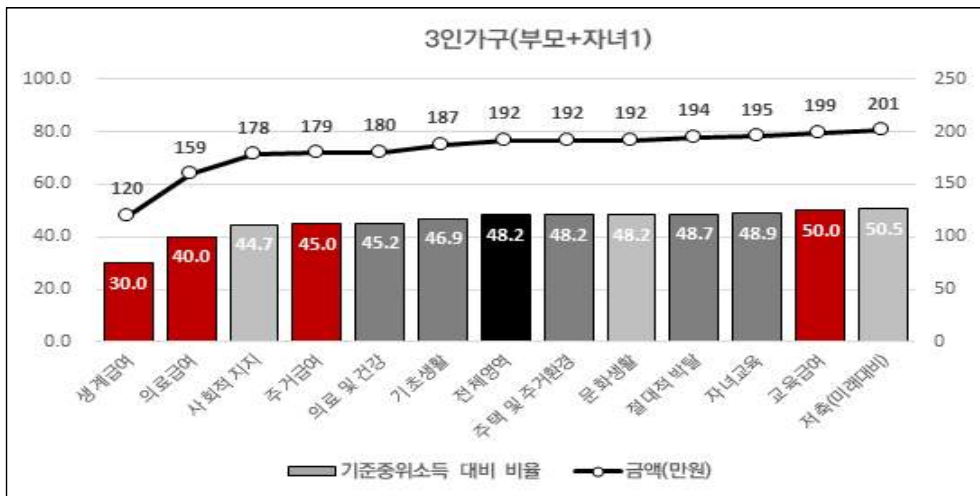
현재까지의 연구 및 최저생계비 예측의 표준가구는 가구분포와 인구내 4인가구원수가 가장 많은 점에서 4인가구로 설정되어 왔으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로 인해 빠른 시일내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원)수의 분포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¹⁶⁴⁾. 따라서 향후 표준가구에 대한 검토(4인 → 3인 또는 표준가구의 다각화 검토)가 필요하

164)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원자료 분석결과 1인가구 33.4%, 2인가구 28.3%, 3인가구 19.4%, 4인가구 14.7%였으며, 총 인구수 대비 가구원수별 비중은 1인가구 14.6%, 2인가구 24.8%, 3인가구 25.5%, 4인가구 25.7%로 3,4인 가구의 비중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1~3인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인구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규모는 4인가구에서 3인가구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는 점에서 3인가구의 박탈 기준선과 급여별 선정기준선을 비교하는데 의의가 있다. 3인가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박탈 기준선이 45~50% 정도로 고르게 나타난다. 자녀교육의 경우 박탈 기준선이 48.9%로 현 교육급여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책 표집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의료 및 건강, 주택 및 주거환경 영역의 경우 박탈 기준선이 현 급여별 기준선보다 낮게 나타나는 점에서 3인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욕구가 충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설정한 3인가구의 행태가 부모와 자녀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3인가구를 모두 포괄하지 않음으로 향후 표준가구 변경 검토시 3인가구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1-2-7] 3인가구(부모+자녀1)의 영역별 박탈 기준선과 급여별 선정기준선 비교

(단위: %(왼축), 만원(오른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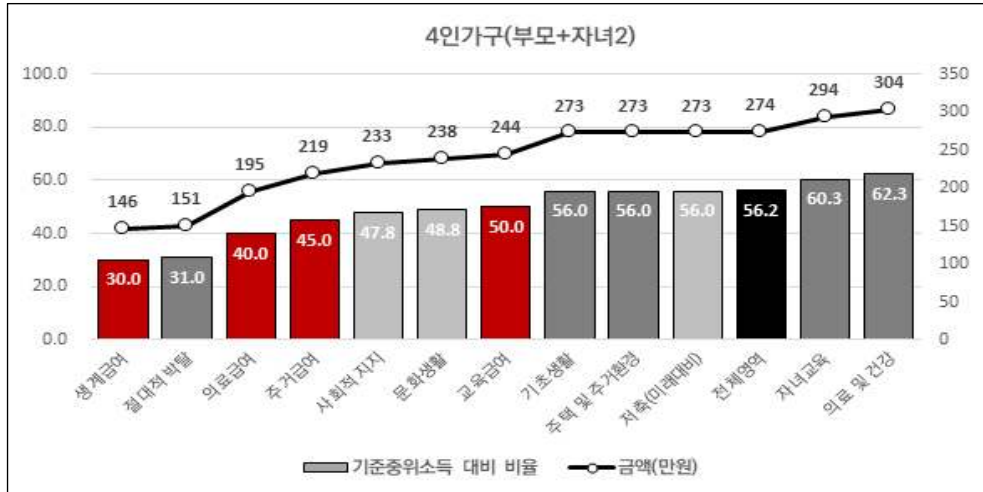
주: 성인(부모) 2인과 18세 미만 자녀 1인으로 구성된 가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부모와 미성년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가구, 즉 전물량 방식의 표준가구와 유사한 가구형태인 4인가구의 박탈 기준선을 살펴보면, 절대적 박탈은 중위소득 31.0%, 전체적인 박탈은 중위소득 56.2%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절대적 박탈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박탈 경험을 가르는 소득 기준은 50~60% 내외로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다만, 주택 및 주거환경 영역과 자녀교육 영역의 박탈 기준선이 각각

56.0%, 60.3%로 현 급여별 기준선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그림 11-2-8] 4인 표준가구의 영역별 박탈 기준선과 급여별 선정기준선 비교

(단위: %(왼축), 만원(오른축))



주: 성인(부모) 2인과 18세 미만 자녀 2인으로 구성된 가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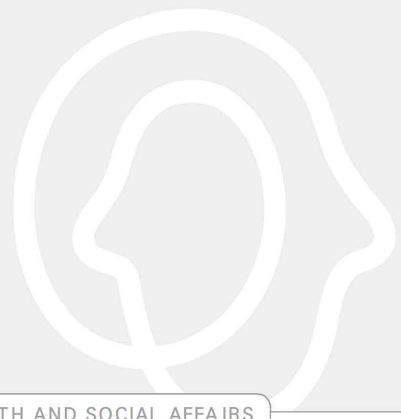
지금까지 가구유형별·박탈영역별로 도출된 박탈 기준선을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선(생계급여의 경우 급여기준선)의 적정성을 평가해 보았다. 분석의 결과, 첫째, 노인 단독가구, 청년 단독가구, 노인 부부가구, 4인가구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절대적 박탈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30~35%선 내외에서 확연하게 발생한다. 절대적 박탈을 최저생계라고 간주할 때, 현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충분한 수준은 아니지만 매우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 물론 다른 가구유형들에서 30%선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 등에서 현재 논의 혹은 조정되고 있는 생계급여 기준 상향조정(30%→35%)에 대한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박탈의 영역별 기준선은 가구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가구유형별·영역별 맞춤형 제도 설계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중장년 단독가구, 한부모 2인가구, 4인가구의 경우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박탈 기준선이 60% 정도로 현 기준(45%)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주거의 질과 주거환경에 대한 박탈을 경험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자비율 상승과 불안정한 부동산

상가격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새롭게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해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다른 예로,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의료 및 건강 박탈 기준선이 중위소득의 50% 내외로 현 기준(4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노인의 의료 욕구가 상당히 편재해 있음을 의미한다. 의료급여뿐 아니라 저소득층 노인의 본인부담을 경감하거나,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의료 관련 사회서비스 통합 지원 등을 통해 노인세대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욕구에 대응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 영역을 포괄하는 박탈은 노인 및 청년 단독가구와 한부모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50~60% 내외에서 빈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높은 기준선인 교육급여 선정기준선과 차상위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50%로 정해져 있다. 이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일 경우 대부분의 공공부조 급여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50% 선인 차상위계층의 선정 기준에 대한 상향조정 등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탈지표를 통한 기준선 도출은 여전히 통계적 엄밀성과 관련된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나타나는 분석결과에 대해 해석이 용이하고 객관적인 분석의 결과라는 점에서 정책의 평가 및 정책적 의사결정시 참고자료 활용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12장

급여 효과 및 효율성

제1절 급여 효과 및 효율성

제2절 급여 형평성

제3절 불평등 감소 효과

제4절 탈수급 이행 경로

제 12 장 급여 효과 및 효율성

제1절 급여 효과 및 효율성

1. 급여 효과성

가. 분석방법

본 절에서는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 및 빈곤 감소 효율성을 분석한다. 우선 시장소득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포함하기 전후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 변화를 분석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총액에서 소득인정액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빈곤 감소 효율성을 확인한다. 빈곤 감소 효과 분석의 소득은 김태완 외(2017, p.522), 김문길·김태완 외(2020, p.505)와 거의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일차소득 = 근로소득 + 사업·부업소득 + 재산소득
- 시장소득 = 일차소득 + 사적이전소득
- 경상소득 = 시장소득 + 사회보험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 + 기타 정부보조금
-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조세 - 사회보험부담금

일차소득은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재산소득의 합으로 정의하고, 시장소득은 일차소득과 사적이전소득(개인연금, 퇴직연금, 부모 또는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보조금)의 합으로 정의한다. 경상소득은 시장소득, 사회보험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기타 정부보조금의 합으로 정의하고, 경상소득에서 조세와 사회보험부담금을 차감하여 가처분소득으로 정의한다. 이때 사회보험급여는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급여를 포함하고, 기타 정부보조금은 장애 관련 급여,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유아학비지원,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환급금, 국가유공자 보조금, 긴급복지지원금,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 기타 현금급여 및 현물이전을 포함한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를 포함한다.

빈곤 감소 효과 분석에서 빈곤선은 2021년 기준중위소득의 50%와 40%로 정의한다. 기준중위소득의 50%와 40%는 각각 교육급여 선정기준선과 의료급여 선정기준선에 해당한다. 2021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827,831원이다(2021, 보건복지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빈곤선을 z , i 번째 빈곤 개인 또는 빈곤 가구의 소득을 y_i , 전체 개인 또는 가구 수를 n , 빈곤 개인 또는 빈곤 가구 수를 q 라 할 때, 빈곤율과 빈곤갭비율을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2022, pp.85-87). 빈곤율은 빈곤의 규모를 반영한 빈곤지표이고, 빈곤갭비율은 빈곤의 규모와 심도를 모두 반영한 빈곤지표이다.

$$\cdot \text{빈곤율} = \frac{q}{n}$$

$$\cdot \text{빈곤갭비율} = \frac{\sum_{i=1}^q (z - y_i)}{n \times z}$$

빈곤 감소 효과 분석에서는 개인단위로 분석한 빈곤지표와 가구단위로 분석한 빈곤지표를 모두 보고한다. 예를 들어, 가구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에서 빈곤한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고, 개인빈곤율은 전체 개인 중에서 빈곤한 가구에 속한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가구단위 빈곤지표는 가구가중치로 가중화하여 분석하고, 개인단위 빈곤지표는 가구가중치와 가구원수의 곱으로 가중화하여 분석한다.

나. 분석결과

〈표 12-1-1〉에는 기준중위소득 50%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우선 가구빈곤율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일차소득 빈곤율이 26.79%, 시

장소득 빈곤율이 23.52%로 나타났다. 즉, 시장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을 차감하면 빈곤율이 3.27%p 증가하였고, 이는 시장소득 빈곤율의 13.91%에 해당하므로, 사적이전소득 차감으로 가구빈곤율이 13.91% 증가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2-1-1〉 빈곤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50%)

(단위: %)

구분	가구		개인	
	빈곤율	빈곤율 감소효과	빈곤율	빈곤율 감소효과
일차소득	26.79	-13.91	18.71	-13.43
시장소득	23.52	0.00	16.50	0.00
경상소득	10.77	54.21	7.06	57.23
시장소득+사회보험급여	18.52	21.24	12.43	24.62
시장소득+기타 정부보조금	18.54	21.14	12.58	23.74
시장소득+사회적 현물이전	23.12	1.69	16.19	1.86
시장소득+코로나19 재난지원금	22.69	3.51	15.79	4.31
시장소득+기초생활보장급여	22.75	3.27	15.98	3.12
가처분소득	11.84	49.64	8.00	51.53
경상소득-조세	11.18	52.47	7.40	55.14
경상소득-사회보험부담금	11.37	51.63	7.63	53.77

주: 빈곤율 감소효과는 $(\text{시장소득 빈곤율} - \text{해당 소득 빈곤율}) \div \text{시장소득 빈곤율} \times 100$ 으로 계산하였다. 각 소득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일차소득 = 근로소득 + 사업·부업소득 + 재산소득
- 시장소득 = 일차소득 + 사적이전소득
- 경상소득 = 시장소득 + 사회보험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 + 기타정부보조금
-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조세 - 사회보험부담금
- 사회보험급여: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 기타 정부보조금: 장애 관련 급여,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유아학비지원,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환급금, 국가유공자 보조금, 긴급복지지원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 기타 현금급여 및 현물이전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기타 현금지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기타정부보조금에 포함된다.
- 사회적 현물이전: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 사회서비스바우처 등 기타 사회적 현물이전. 사회적현물이전은 기타정부보조금에 포함된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시장소득에 사회보험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기타 정부보조금으로 구성된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면 가구빈곤율이 23.52%에서 10.77%로 54.21% 감소하였다. 즉, 전체 공적이전소득이 가구빈곤율을 54.21% 감소시킨 것이다. 공적이전소득에 조세와 사회보험부담금까지 추가적으로 반영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빈곤율이

시장소득 기준 23.52%에서 가처분소득 기준 11.84%로 49.64% 감소하였다. 공적이전소득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사회보험급여와 기타 정부보조금이 각각 가구빈곤율을 21.24%, 21.14% 감소시켰고, 기타 정부보조금 중에서 사회적 현물이전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각각 가구빈곤율을 1.69%, 3.51% 감소시켰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가구빈곤율을 3.27% 감소시켰다. 동일한 방식으로 개인빈곤율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가 개인빈곤율을 3.12% 감소시켰다.

〈표 12-1-2〉 빈곤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40%)

(단위: %)

구분	가구		개인	
	빈곤율	빈곤율 감소효과	빈곤율	빈곤율 감소효과
일차소득	23.93	-20.70	16.02	-19.79
시장소득	19.83	0.00	13.37	0.00
경상소득	5.07	74.44	3.40	74.57
시장소득+사회보험급여	14.91	24.82	9.58	28.40
시장소득+기타 정부보조금	14.01	29.33	9.26	30.73
시장소득+사회적 현물이전	19.40	2.16	13.08	2.22
시장소득+코로나19 재난지원금	19.05	3.92	12.73	4.83
시장소득+기초생활보장급여	18.17	8.36	12.45	6.88
가처분소득	5.67	71.38	3.90	70.82
경상소득-조세	5.34	73.08	3.61	73.04
경상소득-사회보험부담금	5.38	72.87	3.68	72.48

주: 빈곤율 감소효과는 $(\text{시장소득 빈곤율} - \text{해당 소득 빈곤율}) \div \text{시장소득 빈곤율} \times 100$ 으로 계산하였다. 각 소득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일차소득 = 근로소득 + 사업·부업소득 + 재산소득
- 시장소득 = 일차소득 + 사적이전소득
- 경상소득 = 시장소득 + 사회보험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 + 기타정부보조금
-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조세 - 사회보험부담금
- 사회보험급여: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 기타 정부보조금: 장애 관련 급여,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유아학비지원,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환급금, 국가유공자 보조금, 긴급복지지원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 기타 현금급여 및 현물이전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타 현금지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기타정부보조금에 포함된다.
- 사회적 현물이전: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 사회서비스바우처 등 기타 사회적 현물이전. 사회적현물이전은 기타정부보조금에 포함된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처럼 기준중위소득 50% 빈곤선으로 평가하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약 3% 수준에 그쳤지만, 기준중위소득 40% 빈곤선으로 평가하면 기초생활보장급여가 가구빈곤율을 8.36%, 개인빈곤율을 6.88%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선을 하향조정하여 평가하면 공적이전소득이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이상으로 증가시키기가 쉬워지므로, 사회보험급여와 기타 정부보조금의 빈곤율 감소 효과도 증가하였지만, 특히 극빈층에게 급여를 집중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12-1-3〉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50%)

(단위: %)

구분	가구		개인	
	빈곤갭비율	빈곤갭비율 감소효과	빈곤갭비율	빈곤갭비율 감소효과
일차소득	19.78	-43.93	12.86	-40.79
시장소득	13.75	0.00	9.13	0.00
경상소득	2.58	81.21	1.74	81.00
시장소득+사회보험급여	9.65	29.80	6.02	34.10
시장소득+기타 정부보조금	8.06	41.38	5.36	41.35
시장소득+사회적 현물이전	13.02	5.27	8.69	4.85
시장소득+코로나19 재난지원금	12.88	6.30	8.49	7.02
시장소득+기초생활보장급여	11.02	19.84	7.67	16.02
가처분소득	3.33	75.75	2.37	74.02
경상소득-조세	3.08	77.56	2.16	76.34
경상소득-사회보험부담금	2.80	79.60	1.92	78.96

주: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는 $\langle(\text{시장소득 빈곤갭비율} - \text{해당 소득 빈곤갭비율}) \div \text{시장소득 빈곤갭비율} \times 100\rangle$ 으로 계산하였다. 각 소득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일차소득 = 근로소득 + 사업·부업소득 + 재산소득
- 시장소득 = 일차소득 + 사적이전소득
- 경상소득 = 시장소득 + 사회보험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 + 기타정부보조금
-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조세 - 사회보험부담금
- 사회보험급여: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 기타 정부보조금: 장애 관련 급여,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유아학비지원,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환급금, 국가유공자 보조금, 긴급복지지원금,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 기타 현금급여 및 현물이전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기타 현금지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기타정부보조금에 포함된다.
- 사회적 현물이전: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 사회서비스바우처 등 기타 사회적 현물이전. 사회적현물이전은 기타정부보조금에 포함된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지금까지의 빈곤을 분석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빈곤층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더라도 빈곤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빈곤의 심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반영하지 못했다. 공적이전소득이 빈곤의 규모와 심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모두 확인하기 위해, 다음으로는 빈곤갭비율을 분석하였다. 우선 기준중위소득 50% 빈곤선을 기준으로 가구 빈곤갭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시장소득 빈곤갭비율이 13.75%,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이 3.33%로 공적이전소득, 조세, 사회보험부담금이 가구빈곤갭비율을 75.75%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가구빈곤갭비율을 19.84%, 개인빈곤갭비율을 16.02% 감소시켰다.

〈표 12-1-4〉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40%)

(단위: %)

구분	가구		개인	
	빈곤갭비율	빈곤갭비율 감소효과	빈곤갭비율	빈곤갭비율 감소효과
일차소득	18.40	-56.35	11.73	-52.67
시장소득	11.77	0.00	7.69	0.00
경상소득	1.26	89.30	0.87	88.62
시장소득+사회보험급여	7.89	32.92	4.78	37.76
시장소득+기타 정부보조금	6.00	48.99	3.97	48.32
시장소득+사회적 현물이전	10.96	6.82	7.21	6.18
시장소득+코로나19 재난지원금	10.88	7.53	7.06	8.17
시장소득+기초생활보장급여	8.64	26.53	6.03	21.53
가처분소득	2.00	83.03	1.50	80.50
경상소득-조세	1.81	84.63	1.34	82.50
경상소득-사회보험부담금	1.43	87.88	1.01	86.88

주: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는 $\langle(\text{시장소득 빈곤갭비율} - \text{해당 소득 빈곤갭비율}) \div \text{시장소득 빈곤갭비율} \times 100\rangle$ 으로 계산하였다. 각 소득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일차소득 = 근로소득 + 사업·부업소득 + 재산소득
- 시장소득 = 일차소득 + 사적이전소득
- 경상소득 = 시장소득 + 사회보험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 + 기타정부보조금
-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조세 - 사회보험부담금
- 사회보험급여: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 기타 정부보조금: 장애 관련 급여,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유아학비지원,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환급금, 국가유공자 보조금, 긴급복지지원금,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 기타 현금급여 및 현물이전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기타 현금지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기타정부보조금에 포함된다.
- 사회적 현물이전: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 사회서비스바우처 등 기타 사회적 현물이전. 사회적현물이전은 기타정부보조금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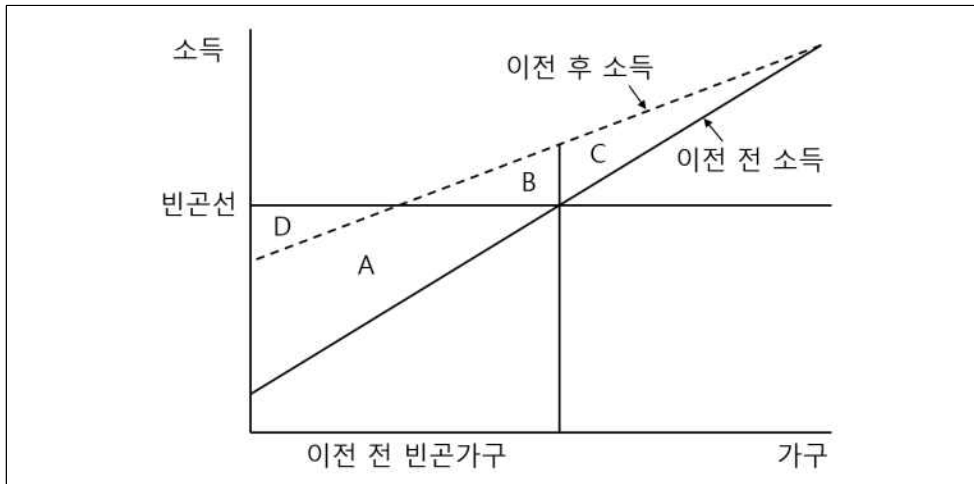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기준중위소득 40% 빈곤선으로 평가하면,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가구빈곤갭비율을 26.53%, 개인빈곤갭비율을 21.53% 감소시켰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빈곤선을 낮추고 빈곤율이 아닌 빈곤갭비율로 평가할 때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최저생활 수준까지 보충급여 방식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하므로, 기준중위소득 40% 빈곤선 기준 빈곤갭비율로 평가할 때 빈곤 감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2. 급여 효율성

가. 분석방법

[그림 12-1-1] Beckerman의 빈곤 감소 효율성 모델



자료: 홍경준. (2002).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0, p. 69, <그림 1>; 김문길·김태완 외(2020, p.513)에서 재인용.

다음으로는 Beckerman(1979)의 모델을 활용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빈곤 감소 효율성을 분석한다. [그림 12-1-1]과 같이 전체 가구의 이전 전 소득(급여를 합산하기 전 소득)과 이전 후 소득(급여를 합산한 후 소득)을 표시할 때, 급여 총액을 $A+B+C$ 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이전 전 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가구에 지원된 급여액은 $A+B$ 이다. 그런데 빈곤가구에 지원된 급여액 중에서 A 는 빈곤가구의 소

득을 빈곤선까지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었지만, B 는 빈곤가구의 소득을 빈곤선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따라서 빈곤 감소에 사용된 급여액은 A 이고, 급여총액에서 A 가 차지하는 비율을 빈곤 감소 효율성으로 정의한다. 또한 급여 총액 중에서 빈곤가구에게 지원된 급여액($A+B$)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직적 지출 효율성으로 정의하고, 급여 총액 중에서 빈곤가구에게 지원되었지만 빈곤선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된 급여액(B)이 차지하는 비율을 과잉 지출 비용으로 정의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cdot \text{빈곤 감소 효율성} = \frac{A}{A+B+C}$$

$$\cdot \text{수직적 지출 효율성} = \frac{A+B}{A+B+C}$$

$$\cdot \text{과잉 지출 비용} = \frac{B}{A+B+C}$$

한편, 김문길·김태완 외(2020, pp.516-517)는 수직적 지출 효율성의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분해하였다. 전체 가구를 이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로 구분할 때, 이전 전 빈곤가구가 받은 급여 총액(가)을 빈곤 가구 수, 빈곤가구의 수급률, 빈곤수급가구의 급여 평균의 곱으로 표현하고, 이전 전 비빈곤가구가 받은 급여 총액(나)을 비빈곤가구 수, 비빈곤가구의 수급률, 비빈곤수급가구의 급여 평균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수직적 지출 효율성은 (가)÷[(가)+(나)]이므로, 빈곤율, 빈곤가구 및 비빈곤가구의 수급률, 빈곤수급가구 및 비빈곤수급가구의 급여 평균의 조합으로 수직적 지출 효율성이 결정된다.

$$\cdot \text{(가) 이전 전 빈곤가구가 받은 급여 총액} = \text{빈곤가구 수(비율)} \times \text{빈곤가구의 수급률} \\ \times \text{빈곤수급가구의 급여 평균}$$

$$\cdot \text{(나) 이전 전 비빈곤가구가 받은 급여 총액} = \text{비빈곤가구 수(비율)} \times \text{비빈곤가구의 수급률} \\ \times \text{비빈곤수급가구의 급여 평균}$$

$$\cdot \text{수직적 지출 효율성} = \text{(가)} \div \text{[(가)+(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빈곤 감소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전 전 소득, 급여, 빈곤선을 조작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국민생활실태조사 데이터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활용하여 추정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이전 전 소득으로 정의하고, 급여를 1) 생계급여, 2) 생계급여+주거급여(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3) 총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장제급여)로 정의하며, 각각의 급여를 분석할 때 빈곤선을 1) 생계급여 선정기준선, 2) 주거급여 선정기준선, 3) 교육급여 선정기준선으로 정의한다. 2021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선, 주거급여 선정기준선, 교육급여 선정기준선은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30%, 45%, 50%이다. 빈곤 감소 효율성은 가구가중치를 적용하여 가구단위로 분석한다.

나. 분석결과

〈표 12-1-5〉 생계급여의 빈곤 감소 효율성(빈곤선: 생계급여 선정기준선)

(단위: %)

구분		빈곤 감소 효율성	수직적 지출 효율성	과잉 지출 비용
가구원수별	1인 가구	73.60	88.41	14.80
	2인 가구	53.90	67.86	13.95
	3인 가구	28.73	40.17	11.44
	4인 가구	38.86	52.54	13.68
가구유형별	장애인가구	64.32	76.14	11.82
	노인가구	57.88	73.31	15.43
	한부모가구	61.91	78.56	16.66
	영유아가구	73.73	85.81	12.07
	일반가구	69.83	85.64	15.81
전체 가구		66.28	80.64	14.36

주: 이전 전 소득은 소득인정액, 이전소득은 조사된 생계급여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각 가구유형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장애인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영유아가구는 중복될 수 있다. 가구단위 분석결과이다. 가구원수별 분석에서 5인 이상 가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수 또는 이전 전 빈곤가구 수가 작아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 장애인가구: 장애인(비등록 포함)이 1명 이상 존재하는 가구
- 노인가구: 65세 이상 가구원이 1명 이상 존재하는 가구
- 한부모가구: 모와 만 18세 미만 자녀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가구(단, 취학 또는 휴학 시 만 22세 미만)
- 영유아가구: 0~5세 가구원이 1명 이상 존재하는 가구
- 일반가구: 장애인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영유아가구가 아닌 가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우선 <표 12-1-5>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선을 기준으로 생계급여의 빈곤 감소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전체 가구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생계급여의 빈곤 감소 효율성, 수직적 지출 효율성, 과잉 지출 비용이 각각 66.28%, 80.64%, 14.36%였다. 즉, 생계급여 총액 중에서 빈곤층에게 지원된 금액은 80.64%였고,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까지 증가시키는 데 사용된 금액은 66.28%였다. 가구원수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의 빈곤 감소 효율성이 각각 73.60%, 53.90%, 28.73%, 38.86%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별로 과잉 지출 비용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으므로, 3~4인 가구의 낮은 빈곤 감소 효율성은 주로 3~4인 가구의 수직적 지출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1~2인 가구와 비교할 때, 3~4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선 이상인 비빈곤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생계급여를 지원받은 것이다.

<표 12-1-6> 생계급여의 수직적 지출 효율성 분해(빈곤선: 생계급여 선정기준선)

구분		A 빈곤율 (%)	B 빈곤 가구의 수급률 (%)	C 빈곤 수급 가구의 수급액 평균 (만원/월)	D 비빈곤율 (%)	E 비빈곤 가구의 수급률 (%)	F 비빈곤 수급 가구의 수급액 평균 (만원/월)	ABC ÷ (ABC +DEF) (%)
가구원수별	1인 가구	12.93	81.09	40	87.07	2.08	31	88.41
	2인 가구	2.37	70.37	57	97.63	1.06	43	67.86
	3인 가구	0.68	57.02	72	99.32	0.80	52	40.17
	4인 가구	0.25	72.57	111	99.75	0.31	59	52.54
가구유형별	장애인가구	17.08	90.80	49	82.92	6.24	46	76.14
	노인가구	7.67	75.05	28	92.33	2.10	30	73.31
	한부모가구	14.54	82.16	89	85.46	5.38	63	78.56
	영유아가구	0.54	88.81	100	99.46	0.14	56	85.81
	일반가구	2.97	72.26	52	97.03	0.44	44	85.64
전체 가구		5.11	79.03	44	94.89	1.16	39	80.64

주: <표 12-1-5>에 보고한 수직적 지출 효율성의 구성 요소를 분해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이와 같은 3~4인 가구의 낮은 수직적 지출 효율성을 이해하기 위해, <표 12-1-6>에는 생계급여의 수직적 지출 효율성을 분해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3인 가구와 4인 가구의 비빈곤가구 수급률은 각각 0.80%, 0.31%로 1~2인 가구보다 훨씬 낮았다. 즉, 비록

3~4인 가구의 수직적 지출 효율성이 낮았지만, 비빈곤층에게 생계급여가 지원되는 제도의 누수가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3~4인 가구의 수직적 지출 효율성이 낮은 주된 이유는 이들의 빈곤율이 0.25~0.68%로 매우 낮아 지원된 생계급여 총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3인 가구와 4인 가구의 빈곤율이 2인 가구와 동일한 2.37%였다면, 3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수직적 지출 효율성은 각각 70.57%, 91.32%로 2인 가구보다 높았을 것이다. 요컨대, 3~4인 가구의 비빈곤 가구 수급률이 높지 않았으므로, 3~4인 가구의 낮은 수직적 지출 효율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다시 <표 12-1-5>에서 가구유형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영유아가구, 일반가구의 빈곤 감소 효율성이 각각 64.32%, 57.88%, 61.91%, 73.73%, 69.83%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빈곤 감소 효율성이 다소 낮았지만, 전반적으로 가구유형에 따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표 12-1-6>을 살펴보면, 장애인가구와 한부모가구의 비빈곤가구 수급률이 5.38~6.2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가구와 한부모가구는 추정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선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가구특성에 따른 소득지원 욕구가 클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비빈곤가구 생계급여 수급률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표 12-1-7>에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선을 기준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산한 급여의 빈곤 감소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전체 가구의 생계·주거급여 빈곤 감소 효율성, 수직적 지출 효율성, 과잉 지출 비용은 각각 74.78%, 82.94%, 8.16%였다. <표 12-1-5>의 생계급여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생계·주거급여의 빈곤 감소 효율성 및 수직적 지출 효율성이 좀 더 높았고, 과잉 지출 비용이 좀 더 낮게 나타났다. 가구원수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의 빈곤 감소 효율성이 각각 82.40%, 64.17%, 42.77%, 36.54%로 나타났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3~4인 가구의 빈곤 감소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된 이유는 3~4인 가구의 빈곤율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3~4인 가구의 빈곤율이 2인 가구와 동일하였다면, 3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수직적 지출 효율성은 각각 74.47%, 87.38%로 2인 가구보다 높았을 것이다.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영유아가구, 일반가구의 빈곤 감소 효율성이 각각 74.05%, 75.02%, 67.40%, 75.90%, 72.95%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가구유형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12-1-7〉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빈곤 감소 효율성(빈곤선: 주거급여 선정기준선)

(단위: %)

구분		빈곤 감소 효율성	수직적 지출 효율성	과잉 지출 비용
가구원수별	1인 가구	82.40	91.37	8.97
	2인 가구	64.17	71.56	7.39
	3인 가구	42.77	47.97	5.20
	4인 가구	36.54	41.03	4.48
가구유형별	장애인가구	74.05	80.53	6.48
	노인가구	75.02	81.95	6.92
	한부모가구	67.40	75.04	7.64
	영유아가구	75.90	81.94	6.04
	일반가구	72.95	83.32	10.37
전체 가구		74.78	82.94	8.16

주: 이전 전 소득은 소득인정액, 이전소득은 조사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의 합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각 가구유형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장애인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영유아가구는 중복될 수 있다. 가구단위 분석결과이다. 가구원수별 분석에서 5인 이상 가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수 또는 이전 전 빈곤가구 수가 작아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 장애인가구: 장애인(비등록 포함)이 1명 이상 존재하는 가구
- 노인가구: 65세 이상 가구원이 1명 이상 존재하는 가구
- 한부모가구: 모와 만 18세 미만 자녀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가구(단, 취학 또는 휴학 시 만 22세 미만)
- 영유아가구: 0~5세 가구원이 1명 이상 존재하는 가구
- 일반가구: 장애인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영유아가구가 아닌 가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12-1-8〉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수직적 지출 효율성 분해(빈곤선: 주거급여 선정기준선)

구분		A	B	C	D	E	F	ABC ÷ (ABC + DEF) (%)
		빈곤율 (%)	빈곤 가구의 수급률 (%)	빈곤 수급 가구의 수급액 평균 (만원/월)	비빈곤율 (%)	비빈곤 가구의 수급률 (%)	비빈곤 수급 가구의 수급액 평균 (만원/월)	
가구원수별	1인 가구	18.58	69.39	49	81.42	2.66	27	91.37
	2인 가구	4.22	55.38	61	95.78	1.56	38	71.56
	3인 가구	1.37	70.92	51	98.63	1.22	45	47.97
	4인 가구	0.44	95.04	74	99.56	1.15	39	41.03
가구유형별	장애인가구	21.92	82.83	57	78.08	6.57	49	80.53
	노인가구	13.72	58.50	36	86.28	2.06	36	81.95
	한부모가구	22.30	80.29	81	77.70	17.82	35	75.04
	영유아가구	0.93	61.70	106	99.07	0.43	32	81.94
	일반가구	3.97	68.37	60	96.03	1.17	29	83.32
전체 가구		7.68	67.41	51	92.32	1.71	35	82.94

주: 〈표 12-1-7〉에 보고한 수직적 지출 효율성의 구성 요소를 분해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12-1-9〉 총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빈곤 감소 효율성(빈곤선: 교육급여 선정기준선)

(단위: %)

구분		빈곤 감소 효율성	수직적 지출 효율성	과잉 지출 비용
가구원수별	1인 가구	86.37	91.95	5.57
	2인 가구	67.96	76.03	8.08
	3인 가구	48.22	54.20	5.97
	4인 가구	40.74	48.20	7.45
가구유형별	장애인가구	76.87	82.12	5.25
	노인가구	79.35	83.26	3.91
	한부모가구	70.90	81.17	10.27
	영유아가구	78.97	83.66	4.69
	일반가구	77.33	85.19	7.86
전체 가구		78.55	84.66	6.11

주: 이전 전 소득은 소득인정액, 이전소득은 조사된 생계급여, 주거급여(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의 합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각 가구유형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장애인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영유아가구는 중복될 수 있다. 가구단위 분석결과이다. 가구원수별 분석에서 5인 이상 가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수 또는 이전 전 빈곤가구 수가 작아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 장애인가구: 장애인(비등록 포함)이 1명 이상 존재하는 가구
- 노인가구: 65세 이상 가구원이 1명 이상 존재하는 가구
- 한부모가구: 모와 만 18세 미만 자녀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가구(단, 취학 또는 휴학 시 만 22세 미만)
- 영유아가구: 0~5세 가구원이 1명 이상 존재하는 가구
- 일반가구: 장애인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영유아가구가 아닌 가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12-1-10〉 총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직적 지출 효율성 분해(빈곤선: 교육급여 선정기준선)

구분		A 빈곤율 (%)	B 빈곤 가구의 수급률 (%)	C 빈곤 수급 가구의 수급액 평균 (만원/월)	D 비빈곤율 (%)	E 비빈곤 가구의 수급률 (%)	F 비빈곤 수급 가구의 수급액 평균 (만원/월)	ABC ÷ (ABC +DEF) (%)
가구원수별	1인 가구	20.32	64.44	48	79.68	2.47	28	91.95
	2인 가구	5.15	51.38	58	94.85	1.34	38	76.03
	3인 가구	1.68	69.05	50	98.32	1.31	39	54.20
	4인 가구	0.68	85.78	68	99.32	1.31	33	48.20
가구유형별	장애인가구	23.40	80.08	57	76.60	6.10	49	82.12
	노인가구	15.52	53.31	35	84.48	1.95	36	83.26
	한부모가구	28.12	82.21	72	71.88	21.70	25	81.17
	영유아가구	1.03	65.21	95	98.97	0.39	33	83.66
	일반가구	4.56	62.34	59	95.44	1.09	28	85.19
전체 가구		8.63	62.54	51	91.37	1.63	33	84.66

주: 〈표 12-1-9〉에 보고한 수직적 지출 효율성의 구성 요소를 분해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표 12-1-9>에서는 교육급여 선정기준선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를 모두 합산한 총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빈곤 감소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전체 가구의 총 기초생활보장급여 빈곤 감소 효율성, 수직적 지출 효율성, 과잉 지출 비용은 각각 78.55%, 84.66%, 6.11%였다. <표 12-1-7>의 생계·주거급여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총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빈곤 감소 효율성 및 수직적 지출 효율성이 좀 더 높았고, 과잉 지출 비용이 좀 더 낮게 나타났다. 가구원수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의 빈곤 감소 효율성이 각각 86.37%, 67.96%, 48.22%, 40.74%로 나타났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3~4인 가구의 빈곤 감소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된 이유는 3~4인 가구의 빈곤율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영유아가구, 일반가구의 빈곤 감소 효율성이 각각 76.87%, 79.35%, 70.90%, 78.97%, 77.33%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가구유형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제2절 급여 형평성

1. 급여형평성의 분석 기준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역할을 확대해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서 기준중위소득 선정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급여수준의 형평성과 관련되며, 더 나아가면 급여 효과성과도 관련된다. 어떤 표적집단 인구 및 가구를 정책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은 그 인구 및 가구의 구현된 소비 형태로 표출되는 필요 욕구를 충족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다만, 급여 효과성은 탈빈곤 여부로 효과의 실현 여부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급여수준의 형평성과는 맥락을 달리한다.

2010년대 후반에 급여형평성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가구원 수를 고려한 소득 균등화 방식을 주로 다뤘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균등화 방식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환기는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 긴급재난지원금 초기 논의에서는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정하였는데, 대중들은 이때 기준중위소득을 계산할 때 균등화지수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계값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중 수급자 선정기준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 이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태완 외(2011, pp.85-88)는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한부모가구와 같이 취약계층일수록 사각지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빈곤한 가구 비율 대비 수급률을 비교해서 확인해보면, 1·2인 가구와 취약계층에서 비수급 빈곤층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노대명 외(2015, p.35)는 비슷한 관점에서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coverage)을 기초생활보장의 평가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때 포괄성은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초보장제도가 얼마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포괄성의 정도는 소득인정액 기준 잠재적 수급대상자, 소득기준(소득평가액을 의미) 잠재적 수급대상자와 실제 수급자를 비교함으로써 측정 가능하다.

2. 선정기준 형평성 분석

선정기준의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가구원수별, 가구유형별 빈곤율과 수급률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서 수급자 규모를 비교하였다. 이때 수급자 규모 비교는 빈곤층 규모와 수급자 규모를 단순 비교한 값이다. 빈곤율과 수급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 특성상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맞춤형 급여의 수급 상태와 소득 수준이 명확하게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조사자료에서는 비빈곤 상태에 있는 집단이 급여를 수급하고 있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 포괄성 분석을 실시한다. 포괄성은 수급대상자 중에서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계산한다는 차이를 가진다.

가. 빈곤율 대비 수급규모 분석

〈표 12-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규모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에서 빈곤율 대비 수급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인 빈곤율은 1인 가구에서 15.78%로 나타나지만, 1인 가구에서 맞춤형 급여의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비율은 12.42%로 나타난다. 그 결과 빈곤율 규모 대비 생계급여 수급률은 소득평가액 기준일 경우 78.71%, 소득인정액 기준일 경우 96.04%로 나타난다. 2018년 기준 이 값은 각각 67.83%, 88.75%였는데(김문길 외, 2020, p.524), 2021년 기준으로는 증가하였다. 2인 가구와 4인 가구에서도 2018년 대비 이 수치는 증가하였다. 2인 가구의 경우에는 51.72%, 4인 가구 69.39%로 나타났다. 6인 이상 가구에서는 수급률이 빈곤율을 상회하는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이면서 6인 이상 가구인 표본이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현상을 반영한다고 확인하기는 어렵다.

소득인정액 기준 빈곤층(기준중위소득의 30%) 규모 대비 생계급여 수급자 수급률의 상대 비율은 전체 집단에서 108.86%로 나타났지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96.04%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2018년 기준 분석의 88.75%에 비해 높은 결과이다(김문길 외, 2020, p.524). 그 외 2인 이상 가구에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빈곤율에 비해 수급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래 표의 급여유형별 수급률은 특례 가구는 제외한 수치이다. 2018년 기준 분석에서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빈곤율 대비 수급률은 91.85%로 낮은 편이었지만(김문길 외, 2020, p.524), 2020년 기준 분석에서는 수급률이 빈곤

율을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표 12-2-1〉 가구원수별 빈곤율과 수급률

(단위: %)

구분	기준별 빈곤율						급여유형별 수급률					
	소득평가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 수급 (C)	규모 비교(백분율)		의료 까지	기타 까지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C/A	C/B			
	30% (A)	40%	50%	30% (B)	40%	50%						
1인 가구	15.78	21.93	29.03	12.93	16.63	20.32	12.42	78.71	96.04	13.18	15.21	
2인 가구	5.30	10.20	16.00	2.37	3.60	5.15	2.74	51.72	115.69	2.93	4.03	
3인 가구	2.12	3.43	5.46	0.68	1.06	1.68	1.14	53.47	168.19	1.26	2.45	
4인 가구	0.80	1.34	2.59	0.25	0.33	0.68	0.55	69.39	217.70	0.64	1.83	
5인 가구	1.54	2.06	4.31	0.74	0.74	1.76	1.02	65.90	136.38	1.14	1.74	
6인 이상 가구	1.11	3.86	7.54	1.11	2.49	4.02	1.64	147.93	147.93	2.63	2.63	
전체	4.45	7.08	10.58	2.74	3.71	4.96	2.98	67.08	108.86	3.21	4.45	

주 1) 전체 평균은 가구원 기준임.

2) '의료까지'는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의 수급률을 나타낸 것임.

3) '기타까지'는 맞춤형 급여 중 무엇이라도 하나 이상 수급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률과 동일한 의미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가구의 소득평가액은 현재의 경제 상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빈곤 개념을 측정하는데 더 바람직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률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르면 2021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1인 가구에게는 수급률이 빈곤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같은 방식으로 가구유형별로 수급자 규모를 비교하였다. 〈표 12-2-2〉에서와 같이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빈곤율과 생계급여의 수급률을 비교하면, 전체 집단에서는 67.08%, 일반가구는 61.40%이다. 반면 장애인 가구는 95.14%, 한부모 가구에서는 90.71%이다. 노인 가구에서는 다소 낮은 66.47%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기준 분석 결과에서 장애인 가구 88.67%, 노인 가구 49.22%, 한부모 가구 79.92%로 나타난 것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2021년 기준 자료의 수급여부는 당해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즉 생계급여의 부

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이다.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있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의 영향이 빈곤율 대비 수급률의 상승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노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빈곤율에 비해 수급률은 상회하지만, 소득평가액 빈곤율 대비 수급률은 다른 유형의 가구에 비해 여전히 낮았다. 선정 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재산의 소득 환산 방식이 노인이 있는 가구처럼 특정 유형의 가구에 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표 12-2-2〉 가구유형별 빈곤율과 수급률

(단위: %)

구분	기준별 빈곤율						급여유형별 수급률				
	소득평가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 수급 (C)	규모 비교		의료 까지	기타 까지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C/A	C/B		
	30% (A)	40%	50%	30% (B)	40%	50%					
일반가구	3.86	5.05	6.86	2.64	3.12	4.06	2.37	61.40	89.92	2.60	3.54
장애인 가구	22.55	29.67	38.24	17.53	20.47	23.99	21.45	95.14	122.38	22.11	24.47
노인 가구	11.57	21.41	32.24	7.67	11.86	15.52	7.69	66.47	100.34	8.18	10.06
한부모가구	17.99	25.33	36.00	14.54	20.10	28.12	16.32	90.71	112.30	18.57	38.16
전체	4.45	7.08	10.58	2.74	3.71	4.96	2.98	67.08	108.86	3.21	4.45

주 1) 전체 평균은 가구원 기준임.

2) '의료까지'는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의 수급률을 나타낸 것임.

3) '기타까지'는 맞춤형 급여 중 무엇이든 하나 이상 수급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률과 동일한 의미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나. 포괄성 분석

빈곤층 중에서 맞춤형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고려하는 포괄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2-3〉, 〈표 12-2-4〉와 같다. 맞춤형 급여 하에서 의료급여와 주거급여·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각 급여별로 빈곤기준선을 다르게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동일한 소득계층 집단 중에서 제도의 적용을 받고있는 집단의 규모를 살펴보고자 하므로 빈곤기준선을 다르게 설정하지는 않았다.

소득인정액을 이용한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빈곤층 중 맞춤형 개별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률을 생계급여 수급으로 보면 전체 가구에서 78.78%의 포괄성을 보인다. 이것은 빈곤가구 10가구 중 8가구 정도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비율은 3인 가구에서 53.37%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2인 가구가 70.37%로 낮았다. 4인 가구도 전체 비율이 미치지 못하는 72.57%였다. 1인 가구는 80.97%, 5인 이상 가구는 88.36%로 전체 비율에 비해 높았다. 2018년 당시 결과에서는 전체 가구의 포괄성 비율이 71.76%였고, 2015년에는 42.9%였다(김문길 외, 2020, p.526; 김태완 외, 2017, p.535). 이 기간 동안 전체 가구의 포괄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75.99% → 80.97%)와 2인 가구(66.57% → 70.37%)의 포괄성은 2018년 대비 2021년에 상승하였다.

마찬가지로 가구유형별로 포괄성을 분석하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71.68%를 보이고, 장애인 가구는 91.40%, 한부모가구는 82.16%, 노인가구는 74.83%로 나타난다. 이는 2018년 당시의 일반 가구 60%, 장애인 가구 87.16%, 한부모 가구 74.62%, 노인 가구 72.88%에 비해 상당 부분 개선된 수치이다. 빈곤층의 수급률로 파악한 제도의 포괄성은 이전 시점에 비해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표 12-2-3〉 가구원수별 포괄성

(단위: %)

구분	소득평가액 기준(30%) 빈곤층 포괄성			소득인정액 기준(30%) 빈곤층 포괄성		
	생계	의료	기타	생계	의료	기타
1인 가구	70.20	72.01	74.60	80.91	82.82	85.74
2인 가구	36.99	37.51	41.89	70.37	70.70	79.09
3인 가구	23.93	24.97	38.76	53.37	55.17	88.76
4인 가구	29.42	30.49	40.99	72.57	75.94	100.00
5인 이상 가구	46.34	46.34	52.45	88.36	88.36	100.00
전체	59.83	61.30	65.07	78.78	80.49	85.1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12-2-4〉 가구유형별 포괄성

(단위: %)

구분	소득평가액 기준(30%) 빈곤층 포괄성			소득인정액 기준(30%) 빈곤층 포괄성		
	생계	의료	기타	생계	의료	기타
일반가구	51.54	54.38	56.93	71.68	75.33	78.64
장애인 가구	80.05	80.53	83.38	91.49	91.92	95.10
노인 가구	53.84	54.71	59.95	74.83	75.65	82.98
한부모가구	70.77	72.05	86.22	82.16	83.75	94.05
전체	59.83	61.30	65.07	78.78	80.49	85.1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3. 급여수준 형평성 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이 실제 가구의 소득과 소비 수준을 적절히 반영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를 급여수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라 한다. 즉,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별, 가구특성별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 측정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이태진 외, 2009).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지역별, 가구유형별 특성 반영 논의는 개별 급여로의 개편 논의로까지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특히,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주거 욕구의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개별 급여로의 전환을 가져온 바 있다. 이하에서는 계측된 최저생계비와 「국민생활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확인한 지역별, 가구유형별 소비지출을 비교함으로써,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다만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2023년을 기준으로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지출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지역별 급여수준 형평성 분석

필수품을 소비하는 데 필요한 비목별 금액을 합산하는 최저생계비는 대도시처럼 규모가 큰 지역에서는 더 많이 필요하고, 농어촌과 같은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한 것으로 계측이 된다. 2023년의 최저생계비는 4급지로 구분되는데,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창원특례시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의 최저생계비는 113%,

경기도의 최저생계비는 107%, 그 외 지역은 94% 수준의 최저생계비가 필요한 것으로 계측되었다. 기존의 3급지를 유지한 2023년의 비교안을 살펴보면,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할 때 대도시의 최저생계비는 106%, 농어촌 지역 최저생계비는 93%로 나타났다.

〈표 12-2-5〉는 1988년부터 계측된 최저생계비를 지역별로 비교하고 있다. 대도시가 더 많은 최저생계비를 필요로 하는 계측 결과는 일관적이다. 다만, 이러한 최저생계비 계측의 지역별 격차는 2007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표 12-2-5〉 계측년도별 지역별 최저생계비(4인 가구)와 차이

(단위: 원,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988	금액	315,076		296,885	268,223
	배율	106		100	90
1994	금액	714,061		665,840	578,914
	배율	107		100	87
1999	금액	957,641		901,357	775,885
	배율	106		100	86
2004 ¹⁾²⁾	금액	1,450,318	1,267,118	1,231,413	1,051,395
	배율	118	103	100	85
2007 ¹⁾	금액	1,348,569		1,249,187	1,075,905
	배율	108		100	86
2010 ¹⁾	금액	1,508,033		1,417,980	1,293,445
	배율	106		100	91
2013 ¹⁾	금액	1,756,247		1,642,173	1,515,701
	배율	107		100	92
2017 ¹⁾³⁾	금액	1,897,395		1,811,223	1,695,829
	배율	105		100	94
2020 ¹⁾⁴⁾	금액	2,232,205		2,134,492	1,973,791
	배율	105		100	92
2023-3급지 비교안 ¹⁾⁵⁾	금액	2,529,148		2,386,525	2,209,798
	배율	106		100	93
구분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그 외
2023-4급지 ¹⁾⁵⁾	금액	2,736,294	2,593,239	2,429,672	2,280,843
	배율	113	107	100	94

주: 1) 2004년부터는 연구진안을 기준으로 함.

2) 2004년의 경우 대도시를 서울시와 기타 광역시로 구분하여 분석

3) 2017년은 표준가구 변동(가구주, 배우자, 중등생 자녀1, 초등생 자녀 1)을 가정한 것임.

4) 2020년 표준가구는 47세 가구주(남), 44세 배우자(여), 16세 고등학생(남), 13세 중학생(여)로 구성됨.

5) 2023년 표준가구는 47세 가구주(남), 46세 배우자(여), 17세 고등학생(남), 15세 중학생(여)로 구성됨.

자료: 김태완 외(2010, p.161); 김태완 외(2013, p.294); 김태완 외(2017, p.538); 김문길 외(2020, p.528).

이러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데 있어 지역별 차이를 가장 크게 반영하고 있는 비목은 주거비 항목이다. 2023년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창원특례시를 100으로 할 때 서울은 무려 178%, 경기도는 142%, 농어촌은 64%의 주거비가 책정되었다. 3급지를 유지한 비교안에서는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대도시는 139%, 농어촌은 50% 수준이다.

〈표 12-2-6〉 계측년도별 지역별 주거비 수준(4인 가구)

(단위: 원,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988	금액	56,666		39,666	20,399
	배율	143		100	51
1994	금액	170,906		140,176	64,127
	배율	122		100	46
1999	금액	225,338		174,833	114,837
	배율	129		100	66
2004 ¹⁾²⁾	금액	417,125	246,646	208,261	112,194
	배율	200	118	100	54
2007 ¹⁾	금액	308,658		213,135	95,378
	배율	145		100	45
2010 ¹⁾	금액	307,755		221,374	149,306
	배율	139		100	67
2013 ¹⁾	금액	415,403		307,283	193,713
	배율	135		100	63
2017 ¹⁾³⁾	금액	389,632		303,139	202,225
	배율	129		100	67
2020 ¹⁾⁴⁾	금액	433,349		340,582	177,543
	배율	127		100	52
2023-3급지 비교안 ¹⁾⁵⁾	금액	501,404		359,994	179,225
	배율	139		100	50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2023-4급지 ¹⁾⁵⁾	금액	702,910	560,670	394,724	253,083
	배율	178	142	100	64

주: 1) 2004년부터는 연구진안을 기준으로 함.
 2) 2004년의 경우 대도시를 서울시와 기타 광역시로 구분하여 분석
 3) 2017년은 표준가구 변동(가구주, 배우자, 중등생 자녀1, 초등생 자녀 1)을 가정한 것임.
 4) 2020년 표준가구는 47세 가구주(남), 44세 배우자(여), 16세 고등학생(남), 13세 중학생(여)로 구성됨.
 5) 2023년 표준가구는 47세 가구주(남), 46세 배우자(여), 17세 고등학생(남), 15세 중학생(여)로 구성됨.
 자료: 김태완 외(2010, p.161); 김태완 외(2013, p.294); 김태완 외(2017, p.538); 김문길 외(2020, p.528).

지역별로 볼 때 대도시에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최저생계비와 실제 지출 수준에서 일부 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12-2-7>은 가구규모, 그리고 지역규모별로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가구의 총생활비 평균을 제시하고 있다. 4인 가구의 전체 지역을 100으로 할 때, 대도시는 104.4%, 중소도시는 97.7%, 농어촌은 84.3% 수준의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이를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하면, 대도시는 106.9%, 농어촌 지역은 86.3%이다. 그러므로 실제 생활비 지출에 비해서 농어촌 지역의 최저생계비는 다소 높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는 필수품에 한해서만 책정되었고, 실태조사는 일상생활에서의 소비 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비교에 있어서 이러한 측정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12-2-7> 3개 권역별 가구규모별 생활수준(총생활비)

(단위: 만원/월,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가구		균등화 전체	
	평균	상대비	평균	상대비	평균	상대비	평균	상대비	평균	상대비	평균	상대비	평균	상대비
대도시	181.6	100.2	323.1	103.4	482.7	103.7	633.4	104.4	703.9	108.4	762.4	104.1	238.2	102.3
중소도시	185.6	102.4	309.0	98.9	455.9	97.9	592.6	97.7	614.7	94.7	731.2	99.9	232.9	100.0
농어촌	149.4	82.4	276.5	88.5	417.4	89.6	511.4	84.3	566.4	87.2	493.0	67.4	193.8	83.2
전체	181.3	100.0	312.4	100.0	465.7	100.0	606.6	100.0	649.3	100.0	732.0	100.0	232.8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12-2-7>은 가구규모, 그리고 지역규모별로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가구의 총생활비 평균을 제시하고 있다. 4인 가구의 전체 지역을 100으로 할 때, 서울은 117.3%, 경기도는 99.2%, 광역시/세종/창원은 96.8%, 그 외 지역은 93.0% 수준의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이를 앞선 표의 최저생계비처럼 광역시/세종/창원을 100으로 하여 비교하면, 서울은 121.2%, 경기도는 102.5%, 그 외 지역은 96.1%이다. 조사자료의 생활비 지출에 비해서 서울과 그 외 지역은 다소 낮게, 경기도는 다소 높게 책정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는 필수품에 한해서만 책정되었고, 실태조사는 일상생활에서의 소비 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비교에 있어서 이러한 측정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12-2-8〉 4개 권역별 가구규모별 생활수준(총생활비)

(단위: 만원/월,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가구		균등화 전체	
	평균	상대비	평균	상대비	평균	상대비	평균	상대비	평균	상대비	평균	상대비	평균	상대비
서울	192.0	105.9	350.4	112.2	519.4	111.5	711.7	117.3	775.9	119.5	910.6	124.4	257.8	110.7
경기	200.7	110.7	314.1	100.6	462.4	99.3	602.0	99.2	622.1	95.8	855.6	116.9	242.1	104.0
광역시/세종/창원	173.5	95.7	305.4	97.8	453.4	97.4	587.1	96.8	664.4	102.3	630.3	86.1	225.6	96.9
그외	166.4	91.8	295.7	94.6	441.0	94.7	564.1	93.0	584.5	90.0	575.7	78.7	215.5	92.5
전체	181.3	100.0	312.4	100.0	465.7	100.0	606.6	100.0	649.3	100.0	732.0	100.0	232.8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나. 가구유형별 급여수준 형평성 분석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와 생활비 수준을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표 12-2-8〉은 가구유형별로 책정된 최저생계비를 2020년, 2023년 두 계측 시점 별로 제시하고 있다.

2023년 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가구원 1인이 있는 가구의 최종 최저생계비는 일반가구 대비 지체 중증장애를 가지는 경우 125.6%, 발달장애를 가지는 경우 130.2%, 내부장애를 가지는 경우 133.5%로 나타난다. 이는 최저생계비에 장애로 인한 교통비, 의료비, 휴대폰 요금과 같은 추가 비용 외에도 각 장애로 인한 교육비, 보호 간병비, 보장구비, 재활기관 이용료, 주거수리비가 포함된 값이다. 가구원 중 1인이 노인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그 노인이 건강한 노인인 경우에는 일반가구와 유사한 101.1%이며, 건강하지 못한 노인인 경우에는 106.3%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일반가구 대비 100.7%(남성 한부모 가구), 101%(여성 한부모 가구)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취약가구의 유형별 최저생계비는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일반가구 대비 소폭 높은 수준에서 책정되어 있다.

〈표 12-2-9〉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와 추가비용

(단위: 원/월, %)

구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¹⁾	추가비용	최종 최저생계비	일반가구 대비	
2020	장애인 가구	2,134,492	지체중증	392,900	2,527,392	118.4
			지체경증	82,600	2,217,092	103.9
			뇌병변중증	735,000	2,869,492	134.4
			뇌병변경증	135,900	2,270,392	106.4
			시각중증	310,600	2,445,092	114.6
			시각경증	76,900	2,211,392	103.6
			청각중증	151,300	2,285,792	107.1
			청각경증	93,200	2,227,692	104.4
			발달장애	523,900	2,658,392	124.5
			정신장애	406,700	2,541,192	119.1
			내부장애	497,000	2,631,492	123.3
	노인 가구	2,134,492	건강한 노인	-33,509	2,100,983	98.4
			건강하지 못한 노인	124,920	2,259,412	105.9
	한부모가구	1,739,611	남성 한부모가구	392,171	2,131,782	122.5
여성 한부모가구			396,912	2,136,523	122.8	
일반가구		2,134,492	-	2,134,492	100.0	
2023	장애인 가구	2,386,525	지체중증	611,200	2,997,725	125.6
			지체경증	140,600	2,527,125	105.9
			뇌병변중증	256,100	2,642,625	110.7
			뇌병변경증	146,700	2,533,225	106.1
			시각중증	349,200	2,735,725	114.6
			시각경증	52,300	2,438,825	102.2
			청각언어중증	555,300	2,941,825	123.3
			청각언어경증	90,600	2,477,125	103.8
			발달장애	719,800	3,106,325	130.2
			정신장애	60,100	2,446,625	102.5
			내부장애	799,700	3,186,225	133.5
	노인 가구	2,386,525	건강한 노인	27,164	2,413,689	101.1
			건강하지 못한 노인	149,983	2,536,508	106.3
	한부모가구 ²⁾	1,959,337	남성 한부모가구	444,773	2,404,110	100.7
여성 한부모가구			451,318	2,410,655	101.0	
일반가구		2,386,525	-	2,386,525	100.0	

주: 1) 중소도시 기준 연구진 안입.

2) 한부모가구의 표준가구는 부 혹은 모의 가구주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이며, 최저생계비는 가구균등
화지수 0.821를 반영하였음.

자료: 김문길 외(2020, p.531).

2021년 기준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가구유형별 생활비를 보면, 전체 가구의 지출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장애인 가구는 77.7%, 노인 가구는 67.1%, 한부모 가구는 83.4%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추가비용을 고려하는 가구 규모를 고려하여 비교해보면, 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의 지출은 일반가구에 비해 모든 가구 규모에서 더 적다. 노인이 포함된 4인 가구의 경우에도 일반가구의 월 621.8만원에 비해 노인가구가 479만원으로 더 적다. 가구원이 3인인 한부모 가구의 지출은 월 335.8만원으로 일반가구 지출 509.5만원에 비해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최저생계비 계측의 의미를 고려하자면 빈곤 가구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빈곤한 가구 전체의 지출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장애인 가구는 116%, 노인 가구는 88.4%, 한부모 가구는 183.8%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빈곤한 일반 가구와 비교하면 빈곤한 장애인 가구는 122.4%의 생활비를, 노인 가구는 93.3%로 덜 지출하고, 한부모 가구는 193.9%로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유형별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살펴보면, 장애인이 포함된 4인 가구의 지출은 250.1만원으로 일반가구 지출 288.1만원보다 38만원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원이 3인인 한부모 가구의 지출은 208.9만원으로 3인 일반가구 지출 248만원보다 39.1만원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총생활비를 가구원수로 균등화할 경우, 빈곤한 장애인 가구의 지출은 빈곤한 일반 가구 대비 113.7%, 빈곤한 한부모 가구는 127.3%로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서 빈곤한 노인 가구는 87.1% 수준으로 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서 추가비용을 고려한 2023년의 최저생계비는 2021년의 실제 지출 수준과 비교할 때, 취약가구 중에서 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더 높은 수준으로 계산되었으며, 장애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실제 지출수준에 근접한 수준에서 결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12-2-10〉 2021년 가구유형별·가구규모별 생활수준(총생활비)

(단위: 만원/월,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전체	
		평균 상대비	평균 상대비	평균 상대비	평균 상대비	평균 상대비	평균 상대비	일반 가구 대비
전체 가구	일반가구	212.6 117.3	374.8 120.0	509.5 109.4	621.8 102.5	650.9 100.3	412.1 115.2	100.0
	장애인 가구	136.0 75.0	236.1 75.6	369.5 79.4	546.1 90.0	577.7 89.0	278.1 77.7	67.5
	노인 가구	114.0 62.9	246.2 78.8	344.2 73.9	479.0 79.0	654.6 100.8	240.0 67.1	58.2
	한부모가구		263.6 84.4	335.8 72.1	423.1 69.8	373.3 57.5	298.5 83.4	72.4
	전체	181.3 100.0	312.4 100.0	465.7 100.0	606.6 100.0	649.3 100.0	357.9 100.0	86.8
빈곤 가구	일반가구	95.1 100.3	165.9 113.1	248.0 119.9	288.1 107.4	328.7 108.6	101.3 94.8	100.0
	장애인 가구	110.5 116.6	150.1 102.3	202.4 97.9	250.1 93.2	271.8 89.8	123.9 116.0	122.4
	노인 가구	80.6 85.0	137.1 93.4	172.7 83.5		297.2 98.2	94.5 88.4	93.3
	한부모가구		170.3 116.1	208.9 101.0	268.2 100.0	324.6 107.3	196.4 183.8	193.9
	전체	94.8 100.0	146.7 100.0	206.8 100.0	268.3 100.0	302.6 100.0	106.9 100.0	105.5

주: 빈곤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를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12-2-11〉 2021년 가구유형별 생활수준(총생활비)

(단위: 만원/월, %)

구분		균등화 총소비 기준		
		평균	상대비	일반가구 대비
전체 가구	일반가구	264.6	113.7	100.0
	장애인 가구	181.5	77.9	68.6
	노인 가구	164.4	70.6	62.1
	한부모가구	190.4	81.8	72.0
	전체	232.8	100.0	88.0
빈곤 가구	일반가구	96.9	99.8	100.0
	장애인 가구	110.1	113.4	113.7
	노인 가구	84.4	86.9	87.1
	한부모가구	123.4	127.1	127.3
	전체	97.1	100.0	100.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제3절 불평등 감소 효과

1. 지니계수 분석

지니계수로 측정된 불평등도를 살펴보면, 먼저 시장소득 적용 불평등도의 경우 전체 가구 0.4081, 노인가구(노인이 있는 가구) 0.5152, 비노인가구(노인이 없는 가구)는 0.3375였으며, 경상소득 적용 불평등도와 비교하였을 때,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한 불평등 완화효과가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가처분소득을 적용하였을 때, 경상소득을 적용한 경우보다 불평등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3-1〉 지니계수: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적용

구분	시장소득 적용	경상소득 적용	가처분소득 적용
전체가구	0.4081	0.3295	0.3105
노인가구	0.5152	0.3493	0.3397
비노인가구	0.3375	0.2970	0.2786

주: · 시장소득 = 일차소득 + 사적이전소득

· 경상소득 = 시장소득 + 사회보험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 + 기타정부보조금

·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조세 - 사회보험부담금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경상소득에서 사회보험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코로나지원금을 각각 차감한 소득의 불평등도 현황은 다음 〈표 12-3-2〉와 같다.

전체가구 기준, 사회보험급여를 제외한 소득의 불평등도가 가장 크고, 기초연금 제외한 소득, 국기초 제외한 소득, 코로나지원금 제외한 소득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급여의 불평등도 감소효과에 있어서 사회보험 급여의 감소효과가 가장 크고, 코로나지원금의 불평등도 감소효과가 가장 낮음을 보여준다.

노인가구에서는 기초연금 제외 소득, 사회보험급여 제외 소득, 국기초 제외 소득, 코로나지원금 제외 소득순으로 나타났고, 비노인가구에서는 사회보험급여 제외 소득, 국기초 제외 소득, 기초연금 제외 소득, 코로나지원금 제외 소득 순으로 나타났다. 각 급여의 불평등도 감소효과에 있어 노인가구는 기초연금 급여의 감소효과가 가장 크고, 비노인가구는 사회보험급여가 가장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12-3-2〉 지니계수: 경상소득 기준, 공적연금제외, 기초연금제외, 국기초제외

구분	경상소득	사회보험급여 제외	국기초제외	기초연금 제외	코로나지원금 제외
전체가구	0.3295	0.3590	0.3409	0.3462	0.3348
노인가구	0.3493	0.3938	0.3649	0.4084	0.3547
비노인가구	0.2970	0.3113	0.3070	0.2970	0.302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 불평등 요인별 기여 분석

다음으로, 불평등의 요인별 기여를 분석하기 위해 이성재, 이우진(2017) 연구에서 활용한 샤플리 분해¹⁶⁵⁾를 활용하였다.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 분석시 분석대상이 되는 소득원천별 합산순서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샤플리 값’을 통한 원천별 분해를 수행하였다. 지니계수를 샤플리 값을 적용할 경우, 부분집합에 해당하는 각 소득원천들이 전체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다르다. 또한 소득원천 중 제시된 부분집합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영점 샤플리 값 분해는 부분집합에 속하지 않는 소득원천 요소는 모두 0으로 가정하고, 부분집합의 불평등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며, 평균 샤플리 값 분해는 부분집합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모두 평균값으로 가정하고 부분집합의 불평등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Chantreuil and Trannoy, 1999; 이성재, 이우진, 2017 재인용). 즉, 영점 샤플리값 분해는 소득점유율을 불평등 기여에 반영하지 않지만, 평균 샤플리값 분해는 소득점유율을 불평등 기여에 반영한다.

이성재·이우진(2017)에 따르면, 집합 S 에 속하는 소득원천들의 합으로 만들어지는 소득 벡터를 $y(S)$ 라 할 때, 이것의 소득분포는 다음의 수식과 같은 n 차원 벡터이다.

$$y(S) = \left[\sum_{j \in S} x_1^j, \dots, \sum_{j \in S} x_n^j \right]$$

이것은 집합 S 에 속하지 않은 소득원천들은 모든 가구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0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 후 이를 더하여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165) 이성재, 이우진(2017)에서는 Chantreuil and Trannoy(1999)를 따라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영점 샤플리값 분해(zero Shapley value decomposition method)라 불리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0의 값을 여타 원천들의 값으로 부여한 후 계산하는 방법이다. 둘째, 평균 샤플리값 분해(mean equalized Shapley value decomposition method)라 불리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여타 원천들에 그 평균값을 부여한 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본 장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반면 집합 S 에 속한 소득원천들의 값에 집합 S 에 속하지 않는 소득원천들의 평균값을 더하면 다음과 같다.

$$y(S) = \left[\sum_{j \in S} x_1^j + \sum_{j \notin S} \mu(x^j), \dots, \sum_{j \in S} x_n^j + \sum_{j \notin S} \mu(x^j) \right]$$

여기서 $\mu(x^j)$ 는 j 번째 소득원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이제 소득 분포 $y = [y_1, \dots, y_n]$ 에 대한 불평등도 $G(y)$ 로 나타낼 때, j 번째 원천소득의 영점 샤플리값은

$$Sh_j(I, J, G) = \sum_{\substack{S \subseteq J \\ j \in S}} \frac{(s-1)!(k-s)!}{k!} [G(y(S)) - G(y(S-j))]$$

이고, j 번째 원천소득의 평균 샤플리값은 다음과 같다.

$$Sh_j^e(I, J, G) = \sum_{\substack{S \subseteq J \\ j \in S}} \frac{(s-1)!(k-s)!}{k!} [G(y^e(S)) - G(y^e(S-j))]$$

소득점유율을 불평등 기여에 반영하지 않는 영점 샤플리값 분해를 통해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가구 불평등도(0.3295)에 근로 및 사업소득, 코로나 지원금(절대적 측면 0.1054, 상대적 비율 4.6%)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 불평등도(0.3493)에는 사적이전소득(절대적 측면 0.0074, 상대적 비율 2.1%), 기초연금(절대적 측면 0.0818, 상대적 비율 23.4%), 코로나 지원금(절대적 측면 0.0038, 상대적 비율 1.0%)이, 비노인가구 불평등도(0.2970)에는 근로 및 사업소득과 코로나 지원금(절대적 측면 0.0310, 상대적 비율 10.6%)이 불평등도를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점유율을 불평등 기여에 반영하는 평균 샤플리값 분해를 통해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불평등도(0.3295)에 대해 국기초가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기초는 절대적 측면에서는 0.0003, 상대적 비율로는 약 0.10%만큼 불평등도를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 불평등도(0.3493)에 대해 국기초와 기초연금이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기초는 절대적 측면에서 0.0005, 상대적 비율로는 0.13%, 기초연금은 절대적 측면에서 0.0015, 상대적 비율 0.42%만큼 불평등도를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3-3〉 소득원천별 소득불평등 기여도: 영점 사플리값 분해

구분		소득점유율	절대적기여	상대적기여
전체가구	근로 및 사업소득	0.8079	-0.2059	-0.6248
	재산소득	0.0266	0.1041	0.3158
	사적이전소득	0.0410	0.0376	0.1140
	공적이전소득(사회보험급여)	0.0553	0.0746	0.2264
	공적이전소득(국기초)	0.0099	0.0981	0.2976
	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0.0182	0.0635	0.1927
	공적이전소득(EITC, CTC)	0.0010	0.1053	0.3195
	공적이전소득(코로나지원금)	0.0175	-0.0154	-0.0467
	공적이전소득(기타정부보조금)	0.0226	0.0678	0.2057
	합계	1.0000	0.3295	1.0000
노인가구	근로 및 사업소득	0.5132	0.0429	0.1229
	재산소득	0.0603	0.1054	0.3018
	사적이전소득	0.0996	-0.0074	-0.0211
	공적이전소득(사회보험급여)	0.1660	0.0182	0.0522
	공적이전소득(국기초)	0.0152	0.0918	0.2630
	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0.0911	-0.0818	-0.2341
	공적이전소득(EITC, CTC)	0.0018	0.1043	0.2987
	공적이전소득(코로나지원금)	0.0221	-0.0038	-0.0108
	공적이전소득(기타정부보조금)	0.0308	0.0794	0.2274
	합계	1.0000	0.3493	1.0000
비노인가구	근로 및 사업소득	0.881	-0.312	-1.051
	재산소득	0.018	0.106	0.357
	사적이전소득	0.026	0.052	0.175
	공적이전소득(사회보험급여)	0.028	0.100	0.337
	공적이전소득(국기초)	0.009	0.102	0.342
	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0.000	0.111	0.374
	공적이전소득(EITC, CTC)	0.001	0.105	0.355
	공적이전소득(코로나지원금)	0.016	-0.031	-0.106
	공적이전소득(기타정부보조금)	0.021	0.065	0.218
	합계	1.000	0.2970	1.000

주: · 사회보험급여: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기타 현금지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 기타 정부보조금: 장애 관련 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유아학비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환급금, 국가유공자 보조금, 긴급복지지원금,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 사회적현물이전 등 기타 현금급여 및 현물이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12-3-4〉 소득원천별 소득불평등 기여도: 평균 사플리값 분해

구분		소득점유율	절대적기여	상대적기여
전체가구	근로 및 사업소득	0.8079	0.2875	0.8724
	재산소득	0.0266	0.0127	0.0385
	사적이전소득	0.0410	0.0058	0.0177
	공적이전소득(사회보험급여)	0.0553	0.0154	0.0468
	공적이전소득(국기초)	0.0099	-0.0003	-0.0010
	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0.0182	0.0003	0.0010
	공적이전소득(EITC,CTC)	0.0010	0.0000	0.0001
	공적이전소득(코로나지원금)	0.0175	0.0024	0.0072
	공적이전소득(기타정부보조금)	0.0226	0.0057	0.0173
	합계	1.0000	0.3295	1.0000
노인가구	근로 및 사업소득	0.5132	0.2443	0.6995
	재산소득	0.0603	0.0293	0.0838
	사적이전소득	0.0996	0.0120	0.0344
	공적이전소득(사회보험급여)	0.1660	0.0553	0.1584
	공적이전소득(국기초)	0.0152	-0.0005	-0.0013
	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0.0911	-0.0015	-0.0042
	공적이전소득(EITC,CTC)	0.0018	0.0002	0.0004
	공적이전소득(코로나지원금)	0.0221	0.0028	0.0079
	공적이전소득(기타정부보조금)	0.0308	0.0074	0.0211
	합계	1.0000	0.3493	1.0000
비노인가구	근로 및 사업소득	0.881	0.265	0.893
	재산소득	0.018	0.010	0.034
	사적이전소득	0.026	0.005	0.018
	공적이전소득(사회보험급여)	0.028	0.008	0.028
	공적이전소득(국기초)	0.009	0.000	-0.001
	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0.000	0.000	0.000
	공적이전소득(EITC,CTC)	0.001	0.000	0.000
	공적이전소득(코로나지원금)	0.016	0.002	0.008
	공적이전소득(기타정부보조금)	0.021	0.006	0.019
	합계	1.000	0.297	1.000

주: · 사회보험급여: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기타 현금지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 기타 정부보조금: 장애 관련 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유아학비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환급금, 국가유공자 보조금, 긴급복지지원금,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 사회적현물이전 등 기타 현금급여 및 현물이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제4절 탈수급 이행 경로¹⁶⁶⁾

1. 들어가며

이 절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서로 다른 탈수급 이행 경로를 탐색한다. 자료의 관찰 기간 중 제도의 수급이 개시된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지위 궤적을 도출하고, 궤적 집단별 개인의 인구사회적 속성과 가구 속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탈수급 궤적 집단별 빈곤심도와 공적 지원 수준, 근로 및 지출 요인 등을 수급 직전, 수급 진입, 수급 기간, 탈수급 기간으로 대별하여 살펴봄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과 수급 재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 노력이 필요할지 가능하고자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동 제도를 다룬 연구의 상당수는 탈수급 및 탈빈곤에 관한 것이었다. 이른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동태를 분석하는 이들 연구는 반복 횡단면자료, 패널자료, 행정자료 등 이용 자료의 종류도 다양하고, 탈수급 혹은 수급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도 다양하다(이태진 외, 2004; 2020; 박능후 외, 2004; 강신욱 외, 2006; 김미곤 외, 2008; 구인회 외, 2008; 이원진, 2010; 노대명·원일, 2011; 안서연 외, 2011; 김은하 외, 2013; 한은희 외, 2018). 이들 연구의 공통점이 있다면 특정 기간 동안 수급자 중 탈수급을 관찰하였을 때 그 비율이 극히 낮았다는 것, 그리고 탈수급 혹은 수급으로써 이분화된 사건의 발현을 다루었다는 점이다.

이번 분석의 초점은 이러한 한계에 대응하여 수급/탈수급/재수급 등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탈수급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생애사적 관점에서 수급자의 탈수급,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 혹은 경로가 어떠한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자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수급동태를 살피기 가장 적절한 시작 시점을 자료에서 구현한다면 수급진입이 이루어진 시기일 것이다. 수급 개시에 대한 고려 없이 어느 시점의 수급자 중 탈수급을 관찰하면 탈수급률이 매우 낮지만(강신욱 외, 2006; 노대명 외, 2009), 수급 진입에 가까운 시점을 관찰하면 탈수급과 재진입 비율이 적지 않다(김은하 외, 2013; 강신욱 외, 2006). 수급자의 탈수급 이행 경로와 그에 대한 탐색이 목적이라면, 수급진입 시점을

166) 이 절은 사회복지정책 50권 3호에 게재된 박형준(2023)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진입 이후의 탈수급 궤적”의 일부에 더해 본 보고서에 필요한 분석을 추가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중심으로 탈수급의 동태를 파악하여 극히 적은 탈수급 표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를 자세히 측정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제도 수급개시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탈수급 경로에 대해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수급진입자 집단 내 상이한 수급지위 패턴을 분석하여 탈수급의 궤적¹⁶⁷⁾을 따르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식별하고자 한다.

본 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료의 관측 기간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에 진입한 개인을 대상으로 수급진입 후의 시간에 따른 탈수급 확률의 변화 궤적을 도출함으로써 몇 개의 특징적인 탈수급 경로를 따르는 집단을 포착한다. 다음으로 도출한 탈수급 궤적 집단의 주요 변인별 성격을 분석한다. 변수 정의에 따라 수급 진입 시점과 관찰 기간을 공히 기술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탈수급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이른바 역인센티브의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궤적별 수급 직전, 수급진입, 수급 기간, 탈수급 기간에 걸쳐 공적 지원과 주요 지출 수준 등을 분석한다.

2. 분석 방법

가. 자료의 구성

분석은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의 1~17차 가구 및 가구원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를 구성함에 있어 한국복지패널의 2~15차 자료에서 당해 연도 수급이 개시된 개인 데이터를 수급 개시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시계열 구조를 변환하였다. 관찰 기간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하지 않던 가구가 당해 연도 12월 말 기준으로 수급하는 상태로 변화하면, 그 시점을 수급진입 시점(t)으로 하여 수급진입 후의 시계열 자료를 궤적 분석에 이용하였다. 원자료에서는 서로 다른 기준연도이지만 분석 자료에서는 개인의 수급진입 시점(t)이 되며, 수급진입 이후 몇 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정보를 갖는 패널 자료가 된다.¹⁶⁸⁾ 이를 통해 궤적 도출을 위한 유효 표본 수를 확보하였다.¹⁶⁹⁾

167) '궤적(trajjectory)'이란 "시간(혹은 연령)에 따른 종속변수의 점진적 발전(evolution)"을 의미한다 (Nagin, 2005: 1). 여기서는 수급지위(특히 탈수급)의 점진적인 변화이다.

168) 이러한 자료 구성에서는 원자료가 제공하는 연도별 가중치를 적용할 수 없다. 현존하는 패널조사 자료로 특정 연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진입자를 대표하면서 궤적 도출과 같이 종단적 패턴을 살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은 특수한 집단을 분석하기 위해 조사의 패널을 계속 늘리는 것은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한 것은 복지패널 참여 기간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에 진입한 개인으로, 수급지위 측정 방식에 따라 각 1,263명과 981명의 개인 표본에 가구 단위 정보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나. 수급 지위 측정

수급/탈수급의 수급지위 측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논의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다음의 두 가지를 공히 이용하고 측정에 따른 차이 또한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첫 번째 측정은 개편 전 시점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및 의료급여 수급을 수급으로 정의하고, 개편 후에는 맞춤형 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를 어느 하나라도 수급하고 있는 경우를 수급으로 정의하였다. 가구원 일부 수급까지 포함하되, 개편 전후 모두 특례 수급은 제외하였다. 특례 수급은 한국복지패널의 전 시점을 통틀어 약 20여 가구가 관찰되지만, 현행 제도의 상당히 많은 특례 적용 기준을 감안하면 이들 특례 수급자는 매우 이질적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¹⁷⁰⁾ 이 측정 방식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닌 지출 보전의 수단인 의료, 교육 등 모든 현물급여가 포괄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준중위소득을 이용한 개편 후의 제도 기준선이 개편 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 통제되지 않는다. 이에 두 번째 측정은 개편 전 시점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개편 후 시점에서는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 수급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으로 정의하였다. 역시 특례 수급은 제외하였다.

다. 변수의 정의

변수 정의와 측정은 다음의 표와 같다. 귀적별로 살펴본 변수들은 크게 개인 요인(성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자료를 이용한 전수 혹은 대규모 표본 자료를 이용하는 것의 효용이 클 것이다.
169) 1차, 16차, 17차 자료의 수급진입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수급진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직전 1개 연도의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1차 제외), 수급진입 이후 의미 있는 귀적 도출을 위해 수급진입 시점을 포함하여 적어도 3개 시점 이상의 정보가 있는 개체만을 이용했기 때문이다(16차, 17차 제외).

170) 또한 특례의 여러 사유 중 재산 혹은 질환에 대한 특례의 경우 임시적으로는 특례이지만 경제 수준이 나아지지 않으면 결국 수급으로 진입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의 수급진입자에 포함될 공산이 크다.

별~개인노동소득), 제도 요인(수급 경험~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요인(분가~아동 가구), 지출 요인(월세 거주~학생 수)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2-4-1〉 변수의 정의와 측정

구분	속성단위	정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	<수급지위 측정 1안> 2014년 이전: 기초생활보장제도(특례 제외) 및 의료급여 수급 2015년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수급(생계급여 특례 제외)
	가구	<수급지위 측정 2안> 2014년 이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특례 제외) 2015년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의 생계급여 수급(특례 제외)
성별	개인	남성=0, 여성=1
연령	개인	만 나이
교육 수준	개인	초등학교 졸업 이하=0(기준 집단) 중학교 졸업 이하=1 / 고등학교 졸업 이하=2 / 전문대학교 재학 이상=3
지역 규모	가구	대도시=0(기준 집단)/ 중소도시=1 / 농어촌=2
고용 지위	개인	실업 및 비경제활동=1 /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2 비정규직 임금근로=3 / 정규직 임금근로 및 고용주=4
만성질환 이환	개인	없음=0 6개월 이상 투병투약=1
장애 여부	개인	비장애=0 등록장애=1
가구원 속성	개인	가구주 및 배우자=0(기준 집단) / 24세 이하 가구원=1 / 기타 성인 가구원=2
개인 노동소득	개인	가구원 단위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의 합(만원, 연)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2020년=100)
수급 경험	가구	복지패널 조사 참여 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경험=1
개편 전 진입	가구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전 수급 진입=1
급여 신청	가구	수급진입 당시 직접 신청하여 수급자 선정=1
조건부 수급	가구	가구의 조건부 수급=1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급여 수급=1
분가	개인	관찰 기간 동안 수급진입 당시 가구에서 분가한 경우=1
가구 규모	가구	가구원 수
경제활동 가구원 수	가구	가구 내 경제활동 가구원 수
장애인 가구	가구	가구 내 등록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1
노인 가구	가구	가구 내 65세 이상 노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1
아동 가구	가구	가구 내 17세 이하 아동 가구원이 있는 경우=1
월세 거주	가구	주거 점유형태가 보증부 월세 혹은 월세=1
주거비 비율	가구	주거비/총생활비×100
의료비 비율	가구	보건의료비/총생활비×100
외래이용	개인	연간 외래이용 횟수
학생 수	가구	가구 내 초중고대학생 수
돌봄필요 가구원 수	가구	가구 내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17세 이하 아동의 수(두 개 이상의 속성을 가진 가구원은 1인으로 계산)
빈곤심도	가구	가구의 균등화 시장소득/처분가능소득의 기준선 대비 소득갭비율 중위 소득 100% 기준
공적이전소득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제외한 가구의 균등화 공적이전소득(만원, 월)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2020년=100)

설명변수 중 시불변 변수들은 수급진입 시점의 정보를 사용하였으며, 시변 변수의 대부분은 특정 시점의 정보를 사용하는 대신 수급진입 이후 궤적 관찰 기간 동안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¹⁷¹⁾

궤적별 공적 지원과 주요 지출 수준 분석에 이용한 변수는 표 하단의 빈곤심도와 공적이전소득이다. 빈곤심도는 소득갭비율(Income Gap Ratio: IGR)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소득갭의 개별 가구 단위 값을 사용한다.¹⁷²⁾ 경상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을 이용하였고, 당해 연도 중위소득 100%를 빈곤선으로 하였다. 공적이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제외한 값이며, 월 단위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시점별 절대값으로 측정된 각 연도별 공적 이전소득과 개인 노동소득과 같은 금액 변수들은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를 적용하였다.

라. 탈수급 궤적 도출

탈수급 궤적을 도출하기 위해 집단중심궤적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을 이용하였다. 집단중심궤적모형은 전체 집단이 상이한 성장 및 변화를 겪는 유한한 하위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하위집단 혹은 잠재 집단을 발견, 이 하위 집단들의 개인 수준 변수와의 관계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석기법이다(강지영, 정순돌, 2017: 13; 박형준, 2022 재인용). 집단의 수를 선형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최적의 집단 개수의 수를 모형적합도를 통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집단중심궤적모형에서는 대상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 동질성(homogeneity)을 가정하지 않으며, 구성원의 개별적인 차이가 시간의 다항식 함수로 표현되는 묶음(set)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Nagin, 2005: 26). 이러한 각각의 묶음은 아래의 j 로 표현되는 궤적 집단을 의미한다. 아래의 식에서 $P(Y_i | Age_i)$ 는 시간에 따른 종속변수의

171) 평균으로 변환하였을 때 변수의 측정 방식에 따라 각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 만성질환 이환 여부처럼 0과 1의 값을 갖는 경우, 기간 동안의 평균은 만성질환 이환 기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 밖의 연속형 변수들은 기간 동안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다만, 조건부 수급 여부는 수급 기간 중에도 변화가 있는 정보이며, 탈수급을 하면 모두 0이기 때문에 수급 기간 동안의 평균을 이용하였다.

172) 빈곤선 z 과 빈곤선 미만에 있는 개인(가구)의 소득 y_i 의 차이를 빈곤선으로 나눈 것이다($(z - y_i)/z$). 0부터 100의 값을 가지며, 0은 빈곤선과 동일한 소득을, 100은 소득이 0인 상태를 의미한다.

조건부 확률분포, 즉 종속변수의 궤적 분포를 의미한다. Y_i 는 개인 i 의 관측 기간 동안의 일련의 사건(종속변인의 값)들을 나타내며, Age_i 는 각각의 측정치가 기록될 때의 개인 i 의 시점을 나타낸다(Jones & Nagin, 2013).

$$P(Y_i | Age_i) = \sum_{j=1}^J \pi^j \cdot P(Y_i | Age_i, j; \beta^j) \quad (1)$$

π^j 는 집단 j 에 속하게 될 확률을 의미하며, 주어진 집단 j 에 속한 Y_i 의 조건부 분포는 미지의 파라미터인 벡터 β^j 와 연동(indexed)된다. β^j 는 집단별 궤적의 모양을 결정한다. 궤적은 시간(혹은 연령)의 다항식으로 모형화되고, 주어진 집단 j 에 대해 매 관측 시점을 통틀어 Y_i 와 y_{it} 의 일련들은 조건부 독립이 가정된다. 따라서 (1)의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Jones & Nagin, 2013).

$$P(Y_i | Age_i, j; \beta^j) = \prod_{t=i}^T p(y_{it} | age, j; \beta^j) \quad (2)$$

$p(\cdot)$ 는 y_{it} , 즉 개별 i 가 시점 t 에 집단 j 에 속하게 될 조건부 확률분포를 의미한다. 여기서 $p(\cdot)$ 의 구체화는 절단정규분포(censored normal distribution), 영 과잉 푸아송분포(zero-inflated poisson distribution: zip분포), 그리고 이분로지분포(binary logit distribution) 중 하나로 지정함으로써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지위는 수급 혹은 탈수급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로짓(logit)분포로 지정하였다.

마. 궤적 집단의 수급지위 변화 구간별 기술 분석

도출된 궤적은 시간에 따른 수급지위의 변화를 보일 것이다. 수급 진입 시점, 진입 이후의 수급 기간, 탈수급을 한 집단에게는 탈수급 기간이 존재한다. 또한 이들 수급진입자의 수급 직전의 기간도 자료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른바 수급지위의 변화 구간별로 탈수급 이행 과정에서의 생활수준 및 공적 지원, 지출 수준 등을 살펴보았다. 중위 소득 100% 대비 빈곤심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제외한 월 평균 공적이전소득, 생활비 중 의료비 비율, 주거비 비율, 초·중·고·대학생 수를 대비해보았다. 이를 통해 김미곤 외(2008)와 노대명(2011)에서 지적한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탈수급 유인이 적

절한지에 대해 함의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탈수급의 주요한 관련 요인인 근로 및 가구 속성을 수급지위 구간별로 살펴보았다.

3. 분석 결과

가. 탈수급 궤적

다음의 표는 궤적을 도출하기까지 산출한 모형별 BIC값과 BIC값의 변화량을 제시한 것이다. 존스와 나긴(Jones & Nagin, 2001)은 집단 수를 늘려가면서 산출한 BIC의 차이가 원 모형을 기각하고 대안적인 모형이 될 수 있는지를 $\ln(\Delta BIC)$ 의 값을 기준으로 하여 0~2인 경우는 “받아들일 수 없음”, 2~6이면 “긍정적임”, 6~10이면 “강한 긍정”, 10을 초과하면 “매우 강한 긍정”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궤적 집단의 수를 결정하는 데에는 산출한 적합도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 검증 절차도 중요하지만, 각 궤적의 구분이 잘 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홍세희, 2011). 결과를 보면, 대안 모형의 선택 기준에 비추었을 때 최종 채택한 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4-2〉 궤적 집단 개수별 BIC값

수급지위 측정 1			수급지위 측정 2		
집단 수	BIC	$\ln(\Delta BIC)$	집단 수	BIC	$\ln(\Delta BIC)$
1	-5100.0	-	1	-4235.7	-
2	-3510.8	7.371	2	-2887.5	7.207
3	-3175.3	5.816	3	-2584.9	5.713
4	-3031.1	4.971	4	-2476.8	4.683
5	-3084.3	-	5	-2458.2	2.924

주: 진하게 표시한 것은 최종 채택한 모형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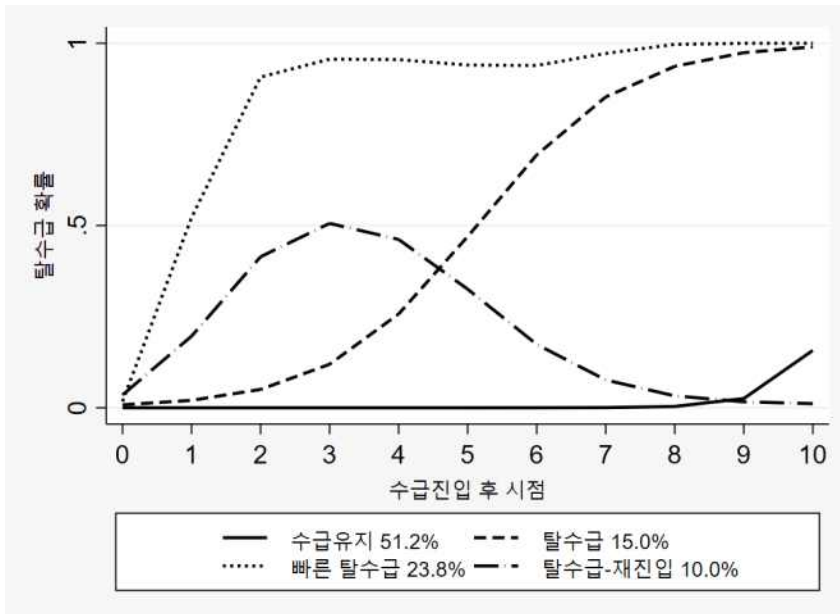
다음의 그림은 집단중심궤적모형으로부터 도출한 탈수급 궤적의 형태를 표현한 것이다. 시점에 0으로 표기된 곳이 수급진입 시점을 의미하며, 수급진입 시점 이후 10년의 탈수급 확률 궤적이다.¹⁷³⁾

채택한 탈수급 궤적은 수급지위 측정 방식을 막론하고 모두 4개의 집단으로 구분되

173) 패널의 마모(attrition)가 있고, 개별 관측치마다 패널조사에 응답한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개체가 10년을 유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궤적을 추정함에 있어 큰 제약인 것은 아니다(Nagin,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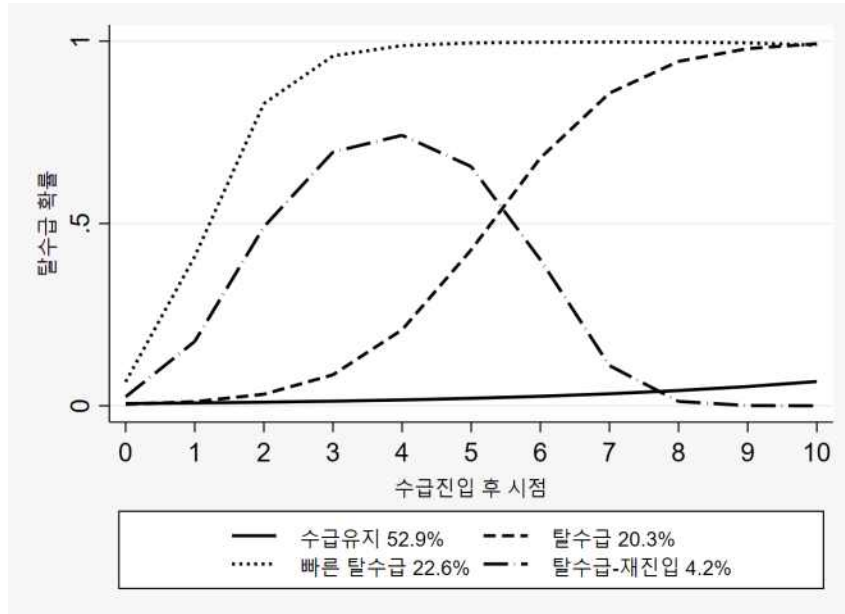
었다. 모든 관찰 기간 동안 수급을 유지하는 “수급유지” 궤적, 수급 진입 이후 5년을 경과하면서 탈수급 확률이 증가하여 관찰기간 후반에 탈수급을 유지하는 “탈수급” 궤적, 수급진입 직후부터 탈수급 확률이 증가하여 탈수급 상태를 유지하는 “빠른 탈수급” 궤적, 그리고 수급진입 후 비교적 빠르게 탈수급 확률이 증가하였다가 관찰 기간 후반에는 수급을 유지하는 궤적으로 보이는 “탈수급-재진입” 궤적이다. 수급지위 측정 1과 2가 거의 유사하였지만, “탈수급-재진입”에서만큼은 ‘수급지위 측정 2’의 경우 ‘측정 1’에 비해 탈수급 확률이 더욱 크게 증가한 뒤 조금 더 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급을 유지하는 형태로 탈수급 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급여(개편 전)와 맞춤형 급여의 생계급여(개편 후)만으로 측정된 수급지위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측정 2’에서는 맞춤형 급여의 생계급여만 탈수급하는, 이른바 부분 탈수급을 이루고 다른 급여만을 수급하다가 다시 생계급여까지 수급하는 경우가 다수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12-4-1] 탈수급 궤적: 수급지위 측정 1



주: 개편 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의료급여 수급, 개편 후는 한 개 이상의 맞춤형 급여 수급을 수급으로 정의

[그림 12-4-2] 탈수급 궤적: 수급지위 측정 2



주: 개편 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개편 후는 생계급여 수급을 수급으로 정의

나. 탈수급 궤적별 주요 속성

각 탈수급 궤적별 인구사회적 속성과 제 요인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우선 “탈수급” 궤적은 여성 비율이 높고, 평균 연령은 약 40세로 다른 궤적에 비해 젊은 편이었다. 두 번째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궤적은 “탈수급-재진입” 궤적이었지만, 평균 연령은 높다는 차이가 있다. 두 번째로 젊은 집단은 “빠른 탈수급” 궤적이었다.

수급진입 시점의 교육 수준은 “수급유지” 궤적이 가장 낮은 편이었고, “빠른 탈수급” 궤적에서는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수준 비율이 약 45% 이상이었다. “탈수급” 궤적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15.87%로 가장 높았다. 전문대 이상의 학력만 보았을 때는 “탈수급-재진입” 궤적이 두 번째로 높았다.

거주 지역 규모는 “탈수급” 궤적과 “빠른 탈수급” 궤적에서 대도시 거주 비율이 낮았다. “탈수급” 궤적의 농어촌 거주 비율은 제일 높았다.

“탈수급-재진입” 궤적은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으며, 고연령이면서,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 비율이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궤적 집

단 중에서 가장 높았다.

〈표 12-4-3〉 탈수급 계적별 인구사회적 속성: 수급지위 측정 1

(단위: %, 세, 명)

구분		수급 유지	탈수급	빠른 탈수급	탈수급-재진입	전체
성별	남성	44.98	38.62	43.19	40.48	43.15
	여성	55.02	61.38	56.81	59.52	56.85
연령		52.86	40.16	46.57	52.22	49.40
교육 수준	초졸이하	46.83	38.62	42.86	42.06	44.18
	중학교이하	17.00	20.11	11.30	16.67	16.07
	고등학교이하	26.89	25.40	32.89	27.78	28.19
	전문대이상	9.27	15.87	12.96	13.49	11.56
지역 규모	대도시	50.85	37.04	43.85	53.17	47.35
	중소도시	29.52	34.92	35.22	26.98	31.43
	농어촌	19.63	28.04	20.93	19.84	21.22
사례 수		647	189	301	126	1,263

자료: 한국복지패널 1~17차 원자료.

개편 후의 수급 지위를 생계급여만으로 측정하여 도출한 계적 집단 구분에서도 “탈수급” 계적의 높은 여성 비율과 낮은 평균 연령이 관찰된다. “탈수급-재진입” 계적의 여성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평균 연령은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평균 연령은 탈수급을 이루는 두 개의 계적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거주 지역에서도 수급지위 측정1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탈수급을 이루는 계적 집단에서는 대도시 거주 비율이 낮았던 것이다. “탈수급-재진입” 계적의 대도시 거주 비율은 측정1에서보다 더욱 높아 63.41%가 대도시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측정2에서는 “수급 유지” 계적과 “탈수급-재진입” 계적이 유사한 속성을 보이고 있었다.

〈표 12-4-4〉 탈수급 계적별 인구사회적 속성: 수급지위 측정 2

(단위: %, 세, 명)

구분		수급 유지	탈수급	빠른 탈수급	탈수급 -재진입	전체
성별	남성	45.28	37.19	44.14	41.46	43.22
	여성	54.72	62.81	55.86	58.54	56.78
연령		52.45	40.41	44.64	53.88	48.30
교육 수준	초졸이하	49.90	40.70	39.64	46.34	45.57
	중학교이하	18.11	21.11	17.57	19.51	18.65
	고등학교이하	23.31	27.14	31.98	24.39	26.10
	전문대이상	8.67	11.06	10.81	9.76	9.68
지역 규모	대도시	53.18	40.70	49.10	63.41	50.15
	중소도시	27.17	36.18	28.83	19.51	29.05
	농어촌	19.65	23.12	22.07	17.07	20.80
사례 수		519	199	222	41	981

자료: 한국복지패널 1~17차 원자료.

수급 진입 시점의 고용지위는 “탈수급” 계적과 “빠른 탈수급” 계적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으며, “탈수급” 계적은 정규직이거나 고용주인 비율이 14.8%에 달하였다. “빠른 탈수급” 계적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타 계적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들 탈수급을 이루는 계적 집단은 수급 진입 시점에도 이미 고용지위가 나쁘지 않았으며, 계적 도출에 사용한 관찰 기간 동안의 평균 고용지위도 높은 편이었다. 이들 계적은 건강상태도 다른 계적에 비해 양호한 편이었는데, “수급 유지” 계적이 63%에 달하는 만성질환 이환율을 보이고, “탈수급-재진입” 계적이 약 60%에 달하는 이환율을 보이는 것에 비해 낮은 이환율을 보였다. 전체 수급진입자의 등록장애 비율은 17.34%로 높은 가운데, 탈수급을 이루는 두 계적의 경우 그나마 낮은 10% 초반의 장애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수급 유지 계적은 22.41%의 등록장애 비율을 나타냈다.

가구주 및 배우자 여부, 24세 이하 가구원, 기타 성인 가구원 여부는 가구 구성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수급유지” 계적은 기본적으로 관찰 기간 동안의 가구원 수가 2.49명으로 가장 적기 때문에, 본인이 가구주 및 배우자인 비율이 66%로 가장 높다. 하지만 가구 구성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탈수급” 계적과 “빠른 탈수급” 계적의 24세 이하 가구원 비율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탈수급” 계적의 24세 이하 가구원 비율은 약 36%인데, 이 계적은 수급진입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탈수급 확률이 급증하여 탈수급 상태를 유지한다. 즉 수급 진입 당시의 저연령 가구원이 교육 과정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탈수급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원가구로부터의 분리 또한 예상된다. 반면, “수급 유지” 궤적과 “탈수급-재진입” 궤적에서는 기타 성인 가구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피부양 성인가구원의 경우 탈수급의 여지가 더 적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관찰 기간 동안의 개인 노동소득은 “빠른 탈수급” 궤적, “탈수급” 궤적, “탈수급-재진입” 궤적, “수급유지” 궤적의 순이었다. “빠른 탈수급” 궤적은 수급 진입 시점에서부터 개인 노동소득이 높은 편이었지만, “탈수급” 궤적은 수급 진입 시점과 관찰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의 증가분이 매우 컸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수급지위 구간별 분석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한다.

〈표 12-4-5 탈수급 궤적별 고용지위 및 노동소득: 수급지위 측정 1

(단위: %, 만원/연)

구분	수급 유지	탈수급	빠른 탈수급	탈수급-재진입	전체
고용지위(수급 진입)	1.68	2.14	2.07	1.71	1.84
실업비경험	64.14	43.92	43.52	64.29	56.22
자영자(무급종사포함)	9.74	12.70	18.60	12.70	12.59
비정규직	20.56	28.57	25.25	11.11	21.93
정규직 및 고용주	5.56	14.81	12.62	11.90	9.26
고용지위(관찰 기간)	1.62	2.19	2.16	1.66	1.84
만성질환 이환	63.21	43.39	48.17	59.52	56.29
장애	22.41	10.58	11.30	15.87	17.34
가구원 특성					
가구주 및 배우자	66.00	55.03	63.79	61.90	63.42
24세 이하 가구원	19.01	35.98	27.24	21.43	23.75
기타 성인 가구원	14.99	8.99	8.97	16.67	12.83
개인노동소득(수급 진입)	270.10	392.96	548.92	362.23	364.12
개인노동소득(관찰 기간)	273.57	644.84	749.79	374.56	452.69
사례 수	647	189	301	126	1,263

주 1) ‘관찰 기간’은 관찰 기간 동안의 평균, 그 외는 수급진입 시점의 정보

2) 고용지위(관찰 기간)은 실업-비경험부터 정규직 및 고용주까지를 1~4의 연속형 변수로 간주하여 산출
 자료: 한국복지패널 1~17차 원자료.

개편 전은 기초보장 수급으로, 개편 후는 생계급여 수급만으로 수급지위를 측정하여 도출한 궤적에서도 전반적인 경향은 유사하였다. 탈수급 상태를 유지하는 두 궤적의 고용지위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고, 이들의 고용지위는 수급 진입 시점에 비해 소폭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궤적은 만성질환 이환율과 등록장애 비율도 다른 궤적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또한 24세 이하 가구원 비율이 높다는 점,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 노동소득도 측정1에 의한 궤적별 분석 결과와 동일하였다.

〈표 12-4-6〉 탈수급 계적별 개인 고용지위 및 노동소득: 수급지위 측정 2

(단위: %, 만원/연)

구분	수급 유지	탈수급	빠른 탈수급	탈수급-재진입	전체
고용지위(수급 진입)	1.56	2.06	1.98	1.68	1.76
실업비경험	68.98	46.23	46.85	68.29	59.33
자영자(무급종사포함)	10.02	13.57	18.47	7.32	12.54
비정규직	16.76	28.64	24.77	12.20	20.80
정규직 및 고용주	4.24	11.56	9.91	12.20	7.34
고용지위(관찰 기간)	1.51	2.15	2.15	1.60	1.79
만성질환 이환	63.78	41.21	43.24	60.98	54.43
장애	23.51	10.05	9.91	17.07	17.43
가구주 및 배우자	63.39	55.28	60.81	65.85	61.26
24세 이하 가구원	18.11	35.68	28.38	14.63	23.85
기타 성인 가구원	18.50	9.05	10.81	19.51	14.88
개인노동소득(수급 진입)	223.34	379.23	485.54	422.36	322.62
개인노동소득(관찰 기간)	223.41	610.91	761.73	433.05	432.60
사례 수	519	199	222	41	981

주 1) '관찰 기간'은 관찰 기간 동안의 평균, 그 외는 수급진입 시점의 정보

2) 고용지위(관찰 기간)은 실업·비경험부터 정규직 및 고용주까지를 1~4의 연속형 변수로 간주하여 산출 자료: 한국복지패널 1~17차 원자료.

복지패널 조사에 참여하기 전, 즉 2004년 이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경험은 탈수급으로 이행한 계적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수급유지" 계적과 "탈수급-재진입" 계적에서는 각각 약 18.4%와 20.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다음 제도 요인으로 2015년 제도 개편 후에 수급에 진입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수급진입 계적 집단의 약 41.6%가 2015년 제도 개편 후에 수급에 진입하였고, "탈수급" 계적은 11.1%에 불과하였다. 일견 제도 개편 후에 진입한 경우 "탈수급" 계적처럼 시계열이 충분하지 않아 탈수급 경로를 아직 보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탈수급-재진입" 계적의 제도 개편 후 수급진입 비율은 27.8%, "빠른 탈수급" 계적은 25.9%에 달하고 있어 관찰 기간의 부족을 이유로만 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신 수급지위 측정 1안의 경우, 모든 맞춤형 급여 수급을 수급으로 정의하였기에 넘어서야 할 수급 기준선이 개편 전에 비해 높아졌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맞춤형 급여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일부 탈수급을 이루었지만 지금의 측정 방식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작용할 것이다. 이를테면 가장 기준선이 낮은 생계급여만을 탈수급하고 다른 급여는 수급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수급진입 당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선정된 것인지 여부도 계적별로 살펴 보았다. "수급 유지" 계적은 70.6%가 직접 신청하여 선정되어 다른 계적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진입 시점의 영향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편 후 필요한 개별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였다면 직권 신청에 의한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표 12-4-7〉 탈수급 궤적별 제도 경험: 수급지위 측정 1

(단위: %)

구분	수급 유지	탈수급	빠른 탈수급	탈수급-재진입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 경험 있음	18.39	13.23	13.62	20.63	16.71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수급진입	41.58	11.11	25.91	27.78	31.91
수급진입 당시 본인 신청	70.63	59.26	50.50	55.56	62.63
조건부 수급(수급 진입)	5.87	8.99	4.98	2.38	5.78
조건부 수급(수급 기간)	0.09	0.12	0.06	0.02	0.08
근로자녀장려세제 수급(수급 진입)	7.42	3.17	6.98	12.70	7.21
근로자녀장려세제 수급(관찰 기간)	0.11	0.14	0.15	0.14	0.13
사례 수	647	189	301	126	1,263

주: '관찰 기간'은 관찰 기간 동안의 평균, '수급 기간'은 수급 기간 동안의 평균, 그 외는 수급진입 시점의 정보
 자료: 한국복지패널 1~17차 원자료.

수급지위 측정 2안에서도 측정 1안의 그것과 경향은 유사하다. “탈수급” 궤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경험은 14.57%로 가장 낮았고, “탈수급-재진입” 궤적의 수급 경험은 29.27%로 가장 높았다. 이는 “탈수급-재진입” 궤적의 수급 반복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수급진입 비율은 “탈수급” 궤적에서 5% 수준으로 ‘측정 1’에 비해 더욱 낮아졌고, “수급유지” 궤적에서의 비율도 크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측정 1’에서는 맞춤형 급여 중 일부만 탈수급하는 경우를 알 수 없고 개편 후의 탈수급 기준선도 크게 높아졌지만, ‘측정 2’와 같이 생계급여만으로 수급 지위를 측정하면 기준선이 개편 전과 후가 유사해지기 때문에 “수급유지” 궤적에서의 해당 비율이 감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분석 결과만으로 개편 이후의 수급진입자가 수급 탈피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¹⁷⁴⁾

“탈수급” 궤적의 조건부 수급 비율이 수급 진입 당시와 궤적 도출 관찰 기간 동안 공히 높은 것은 측정 2안에서도 동일하였다. 하지만 “빠른 탈수급” 궤적의 조건부 수급

174) 수급 기준선이 크게 차이나는 개편 전후 시점을 공히 사용하였고, 개편 후의 맞춤형 급여 중 일부만을 탈수급하는 동태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탈피에 한해서는 급여별 부분 탈수급의 동태를 별도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비율은 측정 1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빠른 탈수급”을 이루는 집단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 기제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수급 여부는 측정 2안에서만 “빠른 탈수급” 궤적에서 수급율이 높게 나타났다. 관찰 기간 동안의 수급율도 탈수급을 유지하는 궤적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한국복지패널자료에서 근로·자녀장려세제 수급은 소수가 관찰되기 때문에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단언하기는 어렵다.

〈표 12-4-8〉 탈수급 궤적별 제도 경험: 수급지위 측정 2

(단위: %)

구분	수급 유지	탈수급	빠른 탈수급	탈수급-재진입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 경험 있음	18.69	14.57	18.02	29.27	18.14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수급진입	28.71	5.03	21.17	14.63	21.61
수급진입 당시 본인 신청	68.21	60.30	57.21	68.29	64.12
조건부 수급(수급 진입)	7.71	12.56	9.46	9.76	9.17
조건부 수급(수급 기간)	0.10	0.16	0.11	0.03	0.11
근로·자녀장려세제 수급(수급 진입)	1.73	0.00	5.41	0.00	2.14
근로·자녀장려세제 수급(관찰 기간)	0.06	0.11	0.11	0.05	0.08
사례 수	519	199	222	41	981

주: '관찰 기간'은 관찰 기간 동안의 평균, '수급 기간'은 수급 기간 동안의 평균, 그 외는 수급진입 시점의 정보 자료: 한국복지패널 1~17차 원자료.

가구 요인으로는 수급진입 시점 기준의 원가구로부터 개인이 분가하였는지 여부도 고려하였다. 미성년 혹은 입직 전의 가구원이 성장함에 따라 탈수급을 한다면 수급 진입 시점의 원가구로부터 적지 않은 분가를 이루었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수급유지" 궤적 집단은 수급 진입 당시 원가구로부터 분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탈수급" 궤적에서는 수급진입 이후 분가를 경험한 비율이 9.52%로 가장 높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탈수급” 궤적에 24세 이하 가구원의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빠른 탈수급” 궤적과 “탈수급-재진입” 궤적은 분가 경험 비율이 전체 수급진입자에 비해 높지만 7%대로 유사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분가 경험이 탈수급으로 이어지는 경로와, 수급 재진입으로 이어지는 경로로 공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가구원 수는 “탈수급”과 “빠른 탈수급” 궤적이 타 궤적 집단에 비해 많았다. “탈수급” 궤적은 3인 가구가, “빠른 탈수급” 궤적에서는 4인 가구가 다른 궤적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전체 수급 진입자의 가구 규모는 진입 당시에 비해 궤적 관찰 기간 동안 소폭 감소하였다. 가구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의 수는 탈수급을 지속하는 두 집단에서는 진입 당시에도 이미 1명 이상이었고, 관찰 기간 동안의 평균은 진입 당시에 비해 증가하였다.

가구내 장애인, 노인,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바, 가구내 장애인이 있는 비율은 “수급 유지” 궤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노인이 있는 비율은 “수급 유지” 궤적과 “탈수급-재진입” 궤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내 아동이 있는 비율은 “탈수급”, “빠른 탈수급” 궤적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탈수급” 궤적의 경우 아동이 있는 비율이 약 63%에 달하였다.

〈표 12-4-9〉 탈수급 궤적별 가구 속성: 수급지위 측정 1

(단위: %, 명)

구분	수급 유지	탈수급	빠른 탈수급	탈수급-재진입	전체	
원가구로부터 분리(관찰 기간)	3.25	9.52	7.64	7.14	5.62	
평균 가구원 수(수급 진입)	2.58	3.38	3.12	2.92	2.86	
가구원 수(수급 진입)	1인	25.66	6.88	10.63	11.11	17.81
	2인	27.05	21.16	29.57	33.33	27.40
	3인	22.10	29.10	18.60	25.40	22.64
	4인	14.22	12.70	19.27	12.70	15.04
	5인 이상	10.97	30.16	21.93	17.46	17.10
평균 가구원 수(관찰 기간)	2.49	3.26	2.82	2.77	2.71	
경제활동 가구원 수(수급 진입)	0.71	1.01	1.06	0.75	0.85	
경제활동 가구원 수(관찰 기간)	0.68	1.26	1.18	0.84	0.91	
장애인 가구	40.49	30.69	30.90	32.54	35.95	
노인 가구	63.06	46.56	54.15	66.67	58.83	
아동 가구	30.60	62.96	46.18	38.89	39.98	
사례 수	647	189	301	126	1,263	

주: ‘관찰 기간’은 관찰 기간 동안의 평균, 그 외는 수급진입 시점의 정보
 자료: 한국복지패널 1~17차 원자료.

수급지위 측정 2안에 의한 궤적별 가구 속성도 측정 1안과 유사하였다. “수급 유지” 궤적과 “탈수급-재진입” 궤적의 장애인 가구 비율과 노인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아동 가구 비율은 “탈수급” 궤적과 “빠른 탈수급” 궤적에서 높았다. 특히 “탈수급-재진입” 궤적의 노인 가구 비율은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급지위 측정 방식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표 12-4-10〉 탈수급 귀적별 가구 속성: 수급지위 측정 2

(단위: %, 명)

구분	수급 유지	탈수급	빠른 탈수급	탈수급-재진입	전체	
원가구로부터 분리(관찰 기간)	3.47	9.05	9.91	2.44	6.01	
평균 가구원 수(수급 진입)	2.60	3.33	3.24	2.83	2.90	
가구원 수(수급 진입)	1인	22.35	6.53	9.91	14.63	16.00
	2인	30.44	22.11	22.97	36.59	27.32
	3인	22.54	29.15	22.97	21.95	23.96
	4인	14.64	16.08	21.62	4.88	16.11
	5인 이상	10.02	26.13	22.52	21.95	16.62
평균 가구원 수(관찰 기간)	2.50	3.13	2.89	2.63	2.72	
경제활동 가구원 수(수급 진입)	0.64	0.97	1.05	0.71	0.80	
경제활동 가구원 수(관찰 기간)	0.61	1.22	1.25	0.70	0.88	
장애인 가구	43.35	27.14	28.38	39.02	36.49	
노인 가구	67.44	43.72	51.35	80.49	59.53	
아동 가구	31.41	61.81	45.95	26.83	40.67	
사례 수	519	199	222	41	981	

주: '관찰 기간'은 관찰 기간 동안의 평균, 그 외는 수급진입 시점의 정보
 자료: 한국복지패널 1~17차 원자료.

이하 두 개의 표는 의료, 주거, 교육의 지출, 그리고 지출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수급 진입 당시의 주거점유형태가 월세인 비율은 “빠른 탈수급” 귀적에서 가장 낮았다. 관찰 기간 동안의 월세 여부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 귀적 집단은 지속적인 주거비 지출이 없는 가구 여건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빠른 탈수급” 귀적은 수급 진입과 관찰 기간 동안의 주거비 비율이 타 귀적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특성을 지닌다. 다음으로 “탈수급” 귀적이 관찰 기간 동안의 월세 비율이 낮고, 주거비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원활한 탈수급과 주거 관련 지출 요인의 해결이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의료비 비율은 “탈수급-재진입” 귀적에서 수급 진입과 관찰 기간 모두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 귀적의 외래 이용 횟수 또한 진입 시점과 관찰 기간 모두에서 타 귀적에 비해 많았다. 이를 앞서 살펴본 만성질환 이환과 연결지어보면, 의료 욕구가 있지만 의료비 지출 보전이 원활하지 않을 때 탈수급을 이루지 못하고 재진입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수급 유지” 귀적의 경우 진입 당시의 의료비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외래이용 횟수에도 불구하고 관찰 기간 동안의 의료비 지출이 타 귀적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없었다.

가구내 초·중고·대학생 수를 보면, 탈수급을 경험한 3개 귀적 집단은 진입 시점에 상

대적으로 많은 학생 수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관찰 기간 동안 감소하였다. “탈수급” 궤적의 경우 감소는 하였지만, 관찰 기간 동안의 학생 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들 지출 요인은 수급지위 구간별 분석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표 12-4-11〉 탈수급 궤적별 지출 요인: 수급지위 측정 1

(단위: %, 건, 명)

구분	수급 유지	탈수급	빠른 탈수급	탈수급-재진입	전체
월세 점유형태(수급 진입)	44.51	44.44	32.89	45.24	41.81
월세 점유형태(관찰 기간)	0.49	0.39	0.33	0.39	0.43
주거비 비율(수급 진입)	16.28	13.53	13.45	14.32	15.04
주거비 비율(관찰 기간)	17.02	13.29	12.73	14.41	15.18
의료비 비율(수급 진입)	8.24	4.88	7.07	10.56	7.77
의료비 비율(관찰 기간)	6.68	5.21	7.39	7.15	6.68
외래 이용 횟수(수급 진입)	25.21	20.13	17.26	27.67	22.80
외래 이용 횟수(관찰 기간)	24.77	17.53	19.76	27.80	22.80
초중고대학생 수(수급 진입)	0.47	1.08	0.79	0.72	0.66
초중고대학생 수(관찰 기간)	0.40	0.79	0.55	0.58	0.51
사례 수	647	189	301	126	1,263

주: ‘관찰 기간’은 관찰 기간 동안의 평균, 그 외는 수급진입 시점의 정보
 자료: 한국복지패널 1~17차 원자료.

수급지위 측정 2안에서도 전반적인 경향은 유사한 가운데, “탈수급-재진입” 궤적의 주거 및 의료 분야의 높은 지출 수준이 더욱 부각되었다. 수급 진입 당시의 월세 비율이 단연 높고, 관찰 기간 동안의 월세 비율도 가장 높았다. 주거비 비율 역시 진입 시점과 관찰 기간 동안 공히 높았다. 의료 관련 지출 요인 또한 타 궤적에 비해 가장 컸는데, 외래이용 횟수는 진입과 관찰 기간 모두에서 연 30회 이상을 보였다. “탈수급-재진입” 궤적은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탈수급을 경험한 궤적 집단이라는 점에서, 탈수급 이행 과정에서의 지출 보전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표 12-4-12〉 탈수급 궤적별 지출 요인: 수급지위 측정 2

(단위: %, 건, 명)

구분	수급 유지	탈수급	빠른 탈수급	탈수급-재진입	전체
월세 여부(수급 진입)	40.27	45.23	40.54	56.10	42.00
월세 점유형태(관찰 기간)	0.44	0.40	0.39	0.50	0.43
주거비 비율(수급 진입)	16.13	12.97	13.30	18.91	15.02
주거비 비율(관찰 기간)	16.82	13.14	12.79	17.05	15.17
의료비 비율(수급 진입)	8.13	6.36	5.77	9.27	7.32

구분	수급 유지	탈수급	빠른 탈수급	탈수급-재진입	전체
의료비 비율(관찰 기간)	6.34	5.26	6.25	6.32	6.10
외래 이용 횟수(수급 진입)	26.07	17.88	18.33	33.66	22.98
외래 이용 횟수(관찰 기간)	25.64	18.25	19.02	31.53	22.89
초중고대학생 수(수급 진입)	0.48	1.05	0.73	0.56	0.66
초중고대학생 수(관찰 기간)	0.41	0.74	0.51	0.53	0.51
사례 수	519	199	222	41	981

주: '관찰 기간'은 관찰 기간 동안의 평균, 그 외는 수급진입 시점의 정보
 자료: 한국복지패널 1~17차 원자료.

다. 궤적 집단의 수급지위 구간별 공적 지원 수준과 주요 지출 요인

이하에서는 탈수급 과정에서의 여러 요인들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도출한 각 궤적 집단이 관찰 기간 동안 경험한 수급지위의 변화를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구간은 수급 직전 2년, 수급진입 시점, 수급 기간, 탈수급 기간으로 대별하였다. 서술은 그래프를 기준으로 하였고 그래프 작성에 사용한 수치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표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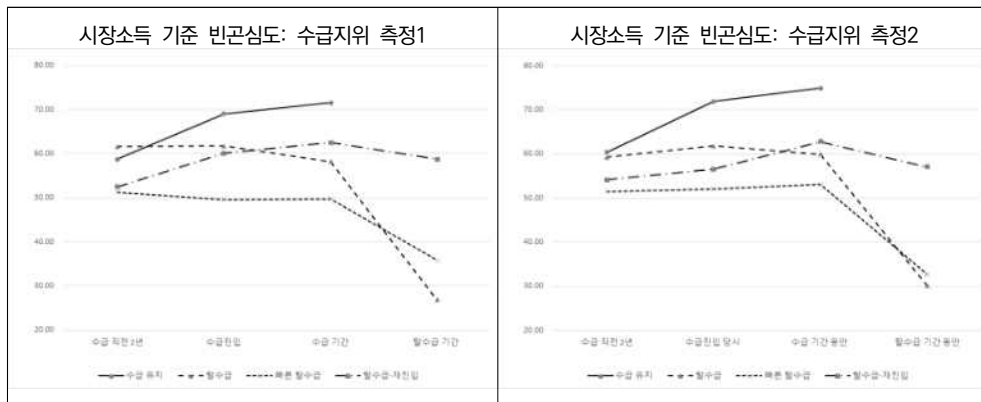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은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심도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제외한 월 평균 공적이전소득을 나타낸 것이다. 시장소득 중위 100%를 빈곤선으로 한 빈곤심도를 보면, “탈수급” 궤적과 “빠른 탈수급” 궤적의 빈곤심도는 탈수급 기간에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탈수급” 궤적의 경우 수급 직전의 빈곤심도는 “수급 유지” 궤적에 비해서도 거의 유사하거나 깊었지만, 수급 진입 시점과 수급 기간 동안 “수급 유지” 궤적과 빈곤심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탈수급 후에는 가장 얇은 빈곤심도를 보이고 있었다. “탈수급-재진입” 궤적은 “수급 유지” 궤적에 비해 얇은 심도를 유지하였지만, 일시적인 탈수급 기간 동안의 빈곤심도의 변화가 거의 없이 약간 알아질 뿐이었다. 즉 “탈수급-재진입” 궤적과 탈수급 이행에 성공한 궤적 간의 탈수급 지속의 차이는 경제활동을 통한 충분한 시장소득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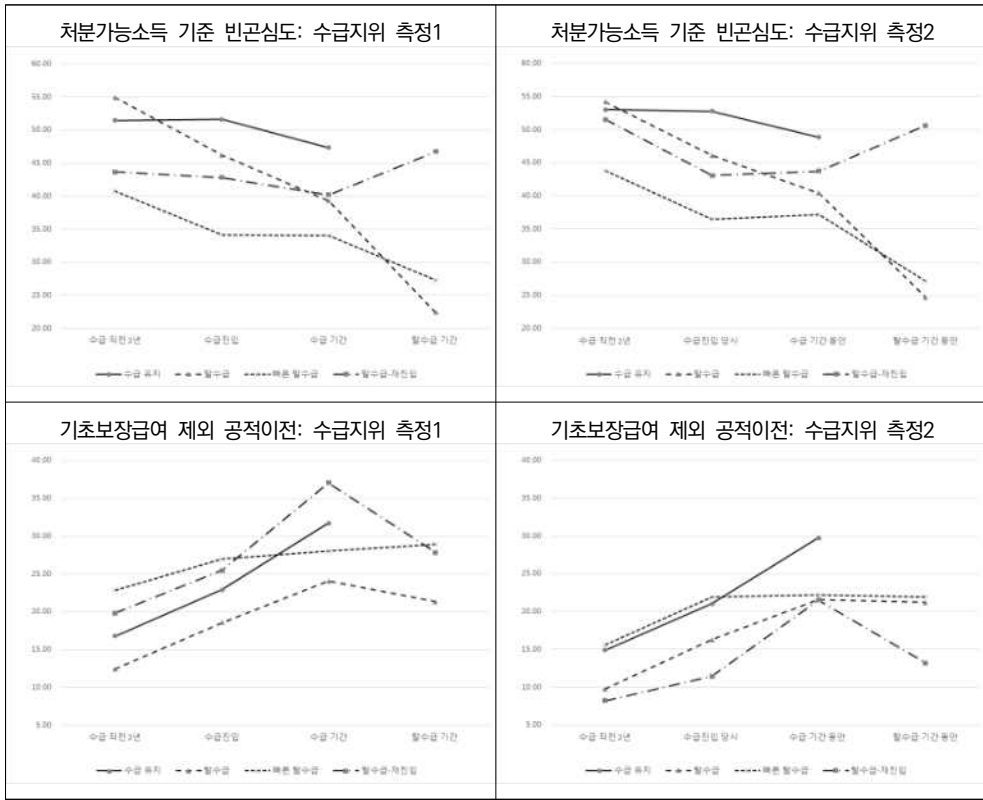
다음 그림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심도의 변화이다. “빠른 탈수급” 궤적의 수급 직전, 그리고 수급진입 시점의 빈곤심도는 가장 얇았다. 짧은 수급기간 동안에도 빈곤심도는 진입 시점과 차이가 없었고, 탈수급을 하면서 빈곤심도는 27.28% 수준으로 낮아졌다. 탈수급 기간의 소득갭비율은 ‘탈수급’ 궤적이 가장 낮았다. 탈수급까지의 소요기간은 “빠른 탈수급” 궤적에 비해 길지만 탈수급 이후의 경제수준은 더 양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탈수급” 궤적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네 개의 궤적 중 평균 연

량이 가장 낮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수급지위 측정 2안에서도 유사하였다. “탈수급” 궤적은 비록 “빠른 탈수급”에 비해 탈수급까지의 소요 기간이 길지만, 보다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탈수급으로 이행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탈수급-재진입” 궤적은 수급기간 동안에 비해 탈수급 기간의 소득갭이 더 깊었다. 오히려 재진입 직전 탈수급을 했던 기간 동안 더 열악한 가구 경제 상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심도의 양상에는 탈수급 과정에서의 공적 지원 수준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제외한 공적이전소득을 살펴해보았다. 그림에서 나타나듯, “탈수급-재진입” 궤적은 수급 기간과 탈수급 기간 간 공적이전의 차이가 다른 궤적 집단에 비해 가장 크다. ‘수급지위 측정 2’에서는 차이가 큰 것 뿐 아니라 다른 궤적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이 탈수급 기간 동안 가장 낮았다. “탈수급-재진입” 궤적의 탈수급 기간 동안 소득갭비율은 50%로 모든 궤적 중 가장 깊은 빈곤 심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이유로 인해 공적이전은 가장 낮았다.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탈수급을 이룬 뒤 재진입하는 집단은 수급 당시에, 그리고 탈수급의 경로를 겪는 집단에 비해서도 더 적은 공적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2-4-3] 궤적 집단별 빈곤심도와 공적이전소득





주 1) 빈곤심도는 균등화소득의 중위 100%를 빈곤선으로 하였다.
 2) 공적이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제외한 월 평균 금액이다.
 자료: 한국복지패널 1~17차 원자료.

〈표 12-4-13〉 계직 집단별 빈곤심도와 공적이전소득

(단위: %, 만원/월)

구분		수급지위 측정 1				수급지위 측정 2			
		수급 직전	수급 진입	수급 기간	탈수급 기간	수급 직전	수급 진입	수급 기간	탈수급 기간
빈곤심도 :시장소득	수급 유지	58.71	69.05	71.55	-	60.38	71.94	74.94	-
	탈수급	61.63	61.74	58.25	26.85	59.25	61.83	59.94	30.17
	빠른 탈수급	51.30	49.63	49.80	35.79	51.49	52.08	53.04	32.68
	탈수급-재진입	52.51	60.10	62.52	58.77	54.11	56.50	62.78	57.07
	전체	56.69	62.43	63.47	37.64	57.82	64.75	66.43	35.99
빈곤심도 :처분가능 소득	수급 유지	51.45	51.60	47.32	-	53.06	52.80	48.86	-
	탈수급	54.94	46.18	39.30	22.41	54.21	46.12	40.41	24.71
	빠른 탈수급	40.77	34.17	34.02	27.28	43.81	36.50	37.14	27.09
	탈수급-재진입	43.68	42.84	40.20	46.73	51.53	43.11	43.72	50.60
	전체	48.56	45.76	42.24	29.76	51.07	47.35	44.28	29.75

구분	수급지위 측정 1				수급지위 측정 2				
	수급 직전	수급 진입	수급 기간	탈수급 기간	수급 직전	수급 진입	수급 기간	탈수급 기간	
공적이전 소득	수급 유지	16.78	22.90	31.72	-	14.91	21.05	29.78	-
	탈수급	12.44	18.54	24.05	21.33	9.75	16.27	21.56	21.22
	빠른 탈수급	22.86	26.99	28.03	28.93	15.60	21.91	22.22	21.98
	탈수급-재진입	19.85	25.47	37.07	27.85	8.21	11.45	21.53	13.21
	전체	17.95	23.48	30.23	26.32	13.76	19.88	26.06	21.30

주 1) 빈곤심도는 균등화소득의 중위 100%를 빈곤선으로 하였다.

2) 공적이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제외한 월 평균 금액이다.

자료: 한국복지패널 1~17차 원자료.

이하 일련의 그림은 궤적 집단별 주요 생활영역별 지출 요인을 각 기간별로 살펴본 것이다. 총 생활비 중 주거비 비율을 보면, “탈수급”과 “빠른 탈수급” 궤적의 경우 소폭이지만 주거비 비율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가구 소득의 증가와 그로 인한 총 생활비의 증가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반면, “탈수급-재진입”의 주거비 비율은 탈수급에 성공한 두 궤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탈수급 기간 동안 주거비 비율이 유일하게 크게 상승하였다. “탈수급-재진입” 궤적은 특히 수급 직전 2년 간의 주거비 비율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며, “수급 유지” 궤적에 비해서 수급 기간에는 주거비 비율이 많이 감소하였다가, 일시적인 탈수급 기간 동안에는 수급 직전 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로 주거비 비율이 높아졌음이 관찰된다. 필수적인 지출 영역에 대한 공적 지원과 보전이 없이는 탈수급의 가능성이 요원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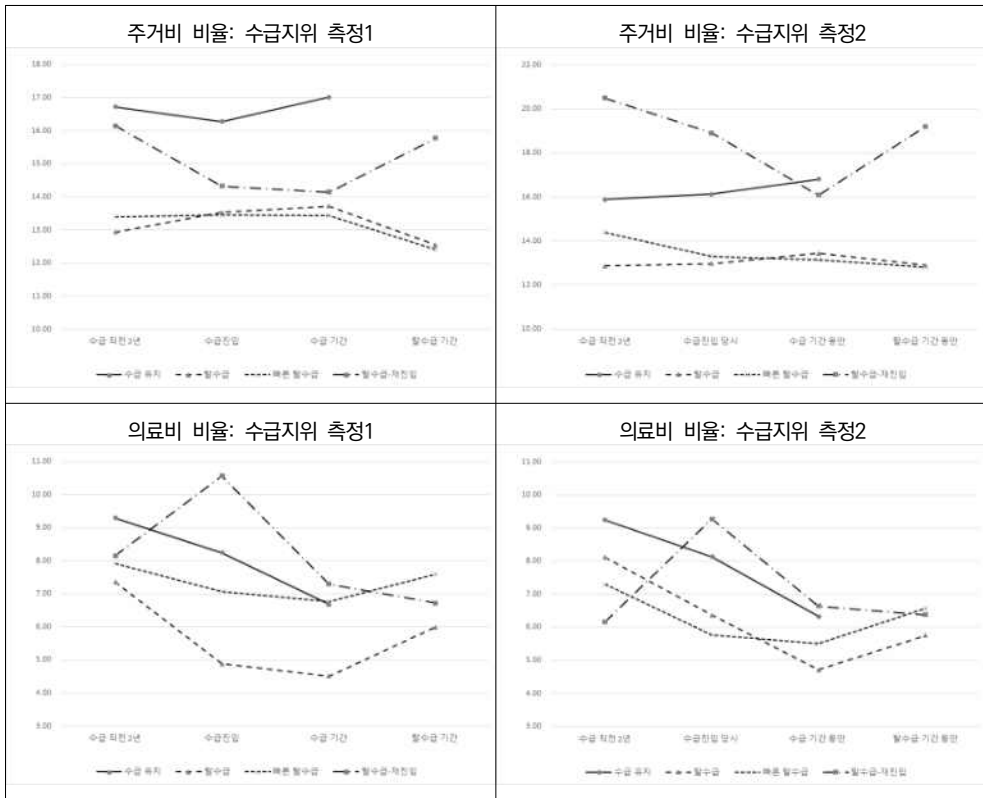
주거비 비율에서도 그렇듯, 탈수급을 하더라도 의료비 지출 비율의 감소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의료비 지출 비율에서는 탈수급에 성공한 두 궤적에서 오히려 의료비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다. 탈수급을 하면서 소득과 생활비가 증가하였을 것을 감안하면, 이 두 궤적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적어도 가구의 의료 관련 지출이 보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탈수급-재진입” 궤적은 수급진입 시점에서 의료비 지출 비율이 타 궤적에 비해 가장 높았고, 수급 기간과 탈수급 기간을 막론하고 의료비 지출 수준이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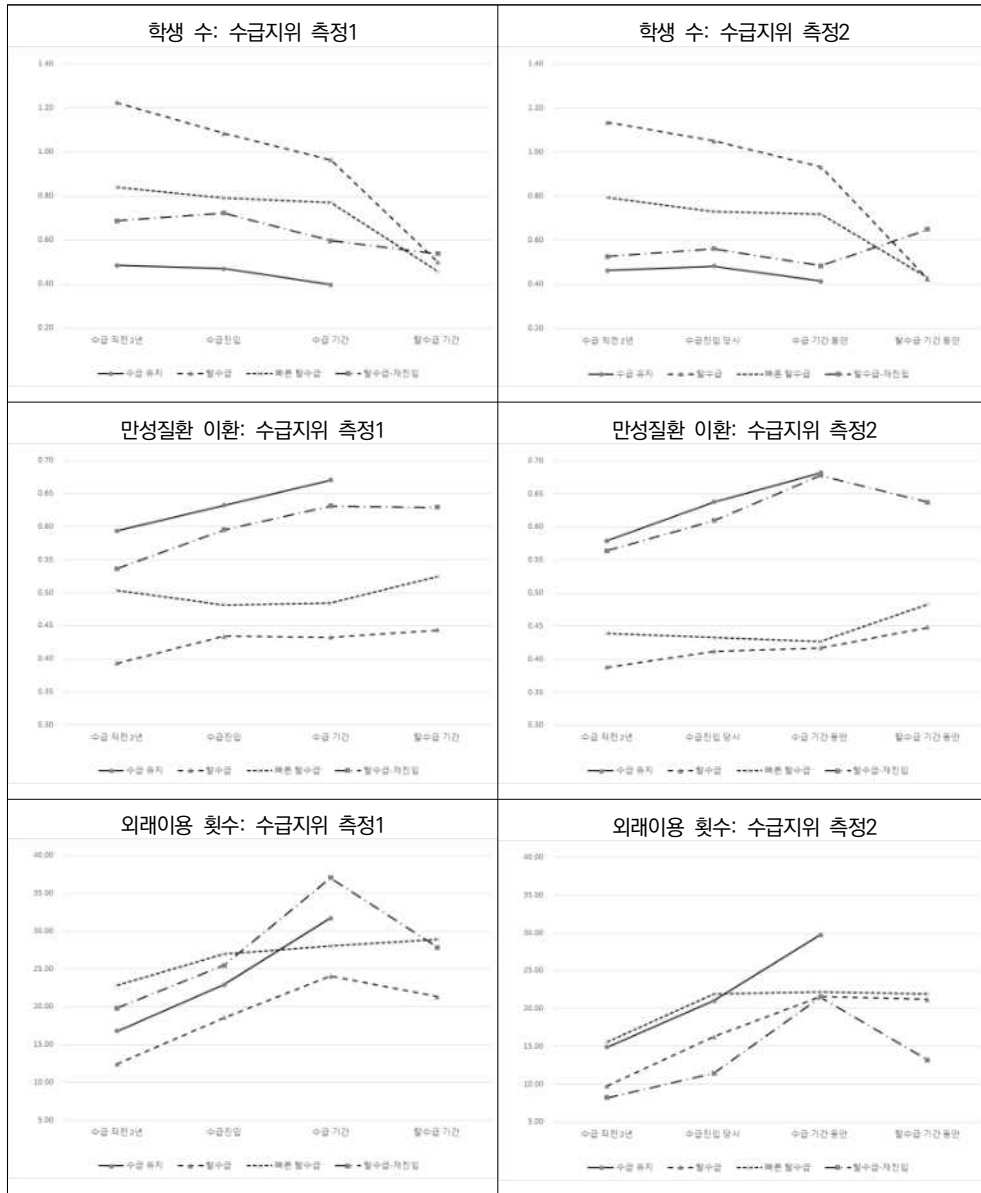
가구 내 초·중·고·대학생 수는 가구의 생애주기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도출된 각 궤적의 평균 연령의 차이는 큰 편이다. 그럼에도 “탈수급”과 “빠른 탈수급” 궤적에서 수급 기관과 탈수급 이후의 학생 수의 변화는 주목할만하다. 이들 궤적 집단의 평균 연령은 다른 궤적에 비해 낮긴 하지만, 수급 기간과 탈수급 이후의 학생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탈수급-재진입”의 그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수급 직전 2년 - 수급 진입 -

수급 기간까지 점진적으로 학생 수는 감소하였으며, 탈수급 기간의 학생 수는 크게 줄어드는 양상이다. 결국 현 제도에서는 탈수급을 위해서 교육비 지출 요인이 해결되어야 하거나, 학령기 가구원이 성인기로 진입해야 함을 시사한다.

만성질환 이환과 외래이용 횟수를 보면 “탈수급-재진입” 궤적의 특성이 드러났다. 기본적으로 이 궤적 집단의 의료 욕구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만성질환 이환이 전 기간에 걸쳐 꾸준히 높았고, “수급 유지” 궤적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수급 기간과 탈수급 기간 간 외래이용 횟수의 차이가 가장 큰 것도 “탈수급-재진입” 궤적이었는데, 꾸준히 높은 만성질환 이환에도 불구하고, 수급 기간의 외래 이용이 탈수급 기간에는 현저하게 낮아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일시적인 탈수급 기간 동안 의료 욕구를 억누르고 있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높은 의료 욕구와 그에 따른 지출 수준, 높은 주거 관련 지출은 탈수급 상태의 지속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4-4] 궤적 집단별 지출 요인





주 1) 주거비와 의료비 비율은 총 생활비 중 비율이다.
 2) 학생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이다.
 자료: 한국복지패널 1~17차 원자료.

〈표 12-4-14〉 궤적 집단별 주거비용비율, 만성질환, 가구 내 학생 수

(단위: %, 명)

구분	수급지위 측정 1				수급지위 측정 2				
	수급 직전	수급 진입	수급 기간	탈수급 기간	수급 직전	수급 진입	수급 기간	탈수급 기간	
주거비 비율	수급 유지	16.72	16.28	17.01	-	15.89	16.13	16.81	-
	탈수급	12.94	13.53	13.72	12.54	12.86	12.97	13.44	12.90
	빠른 탈수급	13.39	13.45	13.44	12.41	14.39	13.30	13.14	12.81
	탈수급-재진입	16.15	14.32	14.14	15.77	20.49	18.91	16.08	19.20
	전체	15.43	15.04	15.40	13.13	15.25	15.02	15.29	13.69
의료비 비율	수급 유지	9.29	8.24	6.68	-	9.24	8.13	6.33	-
	탈수급	7.35	4.88	4.51	5.99	8.11	6.36	4.71	5.75
	빠른 탈수급	7.91	7.07	6.76	7.59	7.29	5.77	5.51	6.57
	탈수급-재진입	8.15	10.56	7.29	6.71	6.16	9.27	6.64	6.37
	전체	8.56	7.77	6.43	6.82	8.43	7.32	5.83	6.17
학생 수	수급 유지	0.48	0.47	0.40	-	0.46	0.48	0.41	-
	탈수급	1.22	1.08	0.96	0.50	1.13	1.05	0.93	0.42
	빠른 탈수급	0.84	0.79	0.77	0.46	0.79	0.73	0.72	0.43
	탈수급-재진입	0.69	0.72	0.60	0.54	0.53	0.56	0.48	0.65
	전체	0.70	0.66	0.59	0.48	0.68	0.66	0.59	0.47
만성질환 이환	수급 유지	0.59	0.63	0.67	-	0.58	0.64	0.68	-
	탈수급	0.39	0.43	0.43	0.44	0.39	0.41	0.42	0.45
	빠른 탈수급	0.50	0.48	0.48	0.52	0.44	0.43	0.43	0.48
	탈수급-재진입	0.54	0.60	0.63	0.63	0.56	0.61	0.68	0.64
	전체	0.54	0.56	0.59	0.52	0.51	0.54	0.57	0.50
외래이용 횟수	수급 유지	22.56	25.21	24.78	-	22.68	26.07	25.68	-
	탈수급	15.53	20.13	18.57	15.90	16.11	17.88	18.23	19.28
	빠른 탈수급	19.78	17.26	18.73	19.99	18.60	18.33	18.76	18.91
	탈수급-재진입	24.80	27.67	28.36	27.31	23.92	33.66	31.98	29.98
	전체	21.09	22.80	22.76	19.98	20.47	22.98	22.87	20.19

주 1) 주거비와 의료비 비율은 총 생활비 중 비율이다.

2) 학생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이다.

자료: 한국복지패널 1~17차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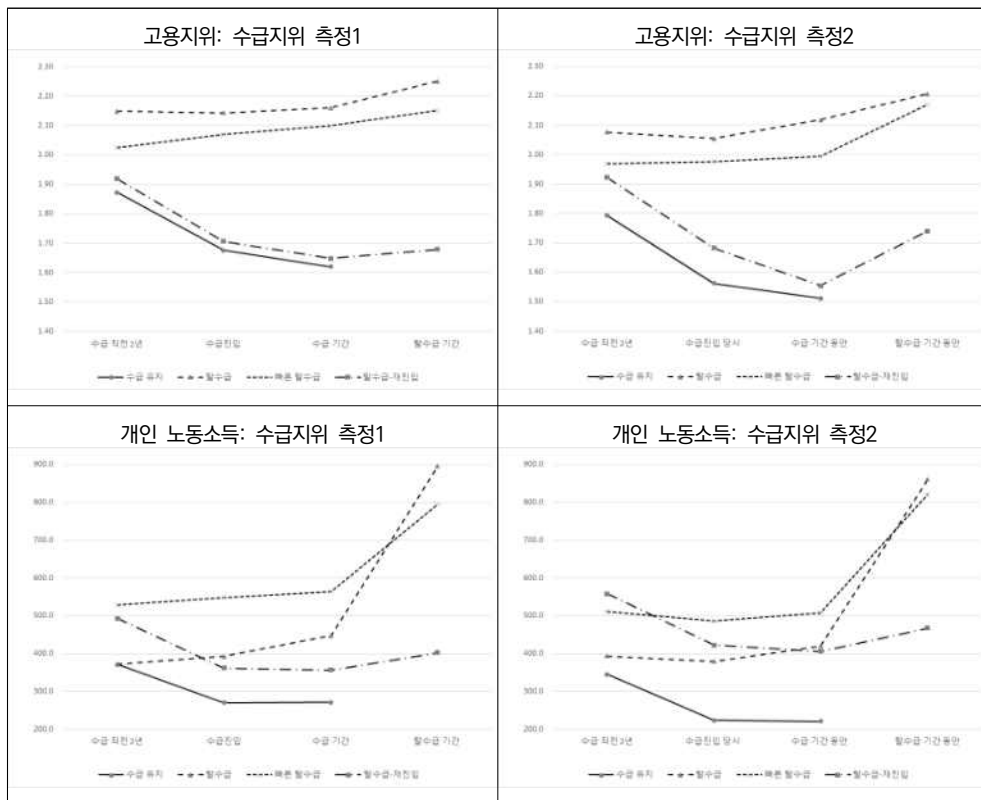
탈수급 이행과 탈수급 상태의 지속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 요인일 것이다. 아래의 그림은 연속형 변수로 사용한 고용지위, 개인 노동소득, 근로·자녀장려세제 수급을 수급지위 구간별로 나타낸 것이다. 네 궤적의 수급 직전 고용지위의 차이는 비교적 적은 반면, 수급에 진입하면서 “수급 유지” 궤적과 “탈수급-재진입” 궤적의 고용지위는 확연히 하락하는 것이 관찰된다. 탈수급에 성공하는 궤적은 고용지위의 변동이 크지 않고, 꾸준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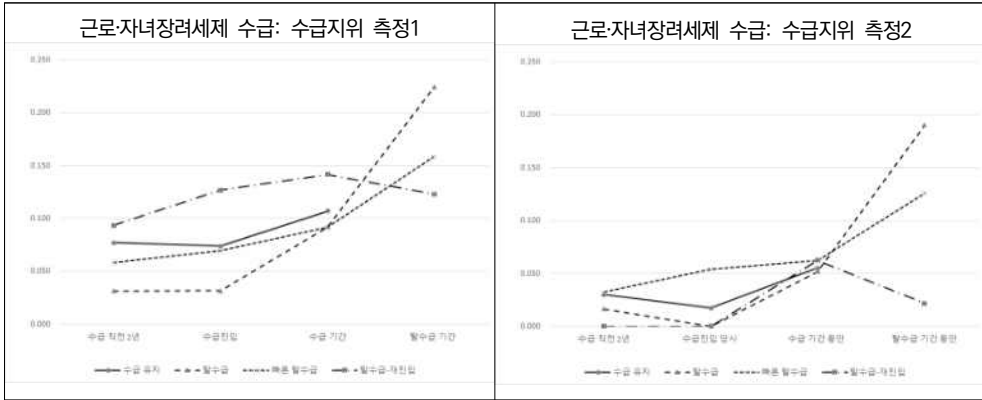
“탈수급” 궤적과 “빠른 탈수급” 궤적의 개인 노동소득은 탈수급 기간에 크게 상승하였다. 특이한 점은, “탈수급-재진입” 궤적의 경우 수급 직전의 개인 노동소득이 탈수급을 이루는 궤적과 차이가 적은 편이었고, 측정 2안에서는 오히려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이다. 이 궤적은 수급에 진입하면서 소득이 크게 하락하였고, 일시적인 탈수급 기간 동안에도 소득이 수급 직전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수급은 비록 수급율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수급지위 구간별 추이를 봤을 때 탈수급에 성공한 궤적에서는 탈수급 기간의 수급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을 걸쳐 안정적인 탈수급에 성공한 “탈수급” 궤적의 경우 다른 궤적에 비해 탈수급 기간의 수급율이 상당히 높았다.

[그림 12-4-5] 궤적 집단별 근로 요인





자료: 한국복지패널 1~17차 원자료.

〈표 12-4-15〉 궤적 집단별 고용지위, 개인노동소득,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단위: %, 명)

구분	수급지위 측정 1				수급지위 측정 2				
	수급 직전	수급 진입	수급 기간	탈수급 기간	수급 직전	수급 진입	수급 기간	탈수급 기간	
고용지위	수급 유지	1.87	1.68	1.62	-	1.79	1.56	1.51	-
	탈수급	2.15	2.14	2.16	2.25	2.08	2.06	2.12	2.21
	빠른 탈수급	2.03	2.07	2.10	2.15	1.97	1.98	2.00	2.17
	탈수급-재진입	1.92	1.71	1.65	1.68	1.92	1.68	1.55	1.74
	전체	1.95	1.84	1.82	2.11	1.90	1.76	1.75	2.12
개인 노동소득	수급 유지	371.7	270.1	271.2	-	345.1	223.3	220.4	-
	탈수급	371.8	393.0	447.2	895.9	393.2	379.2	419.7	860.6
	빠른 탈수급	528.4	548.9	564.3	795.7	510.8	485.5	507.4	821.1
	탈수급-재진입	493.6	362.2	357.2	402.3	558.1	422.4	406.1	467.3
	전체	422.4	364.1	376.0	759.6	402.4	322.6	333.6	780.5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수급 유지	0.077	0.074	0.107	-	0.030	0.017	0.055	-
	탈수급	0.032	0.032	0.092	0.224	0.016	0.000	0.052	0.190
	빠른 탈수급	0.058	0.070	0.092	0.159	0.033	0.054	0.062	0.126
	탈수급-재진입	0.093	0.127	0.142	0.123	0.000	0.000	0.062	0.022
	전체	0.068	0.072	0.105	0.179	0.027	0.021	0.056	0.134

자료: 한국복지패널 1~17차 원자료.

궤적 집단별 가구의 변화를 가구원 수, 가구 분리 여부, 경제활동 가구원 수, 돌봄필요 가구원 수로 살펴보았다. 앞서 기술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탈수급에 성공하는 두 궤적의 가구원 수는 기간을 통틀어 많은 편이었다. 특이한 점은 “수급 유지” 궤적과 “탈수급-재진입” 궤적의 경우는 기간에 탈수급 기간에 소폭 감소하였을 뿐 가구원 수가 유지되는 것에 비해, “탈수급” 궤적과 “빠른 탈수급” 궤적의 경우 수급 직전에 비해 수급에 진입하면서 가장 많은 가구원 수를 보였다가 수급 기간 동안 수급 직전 수준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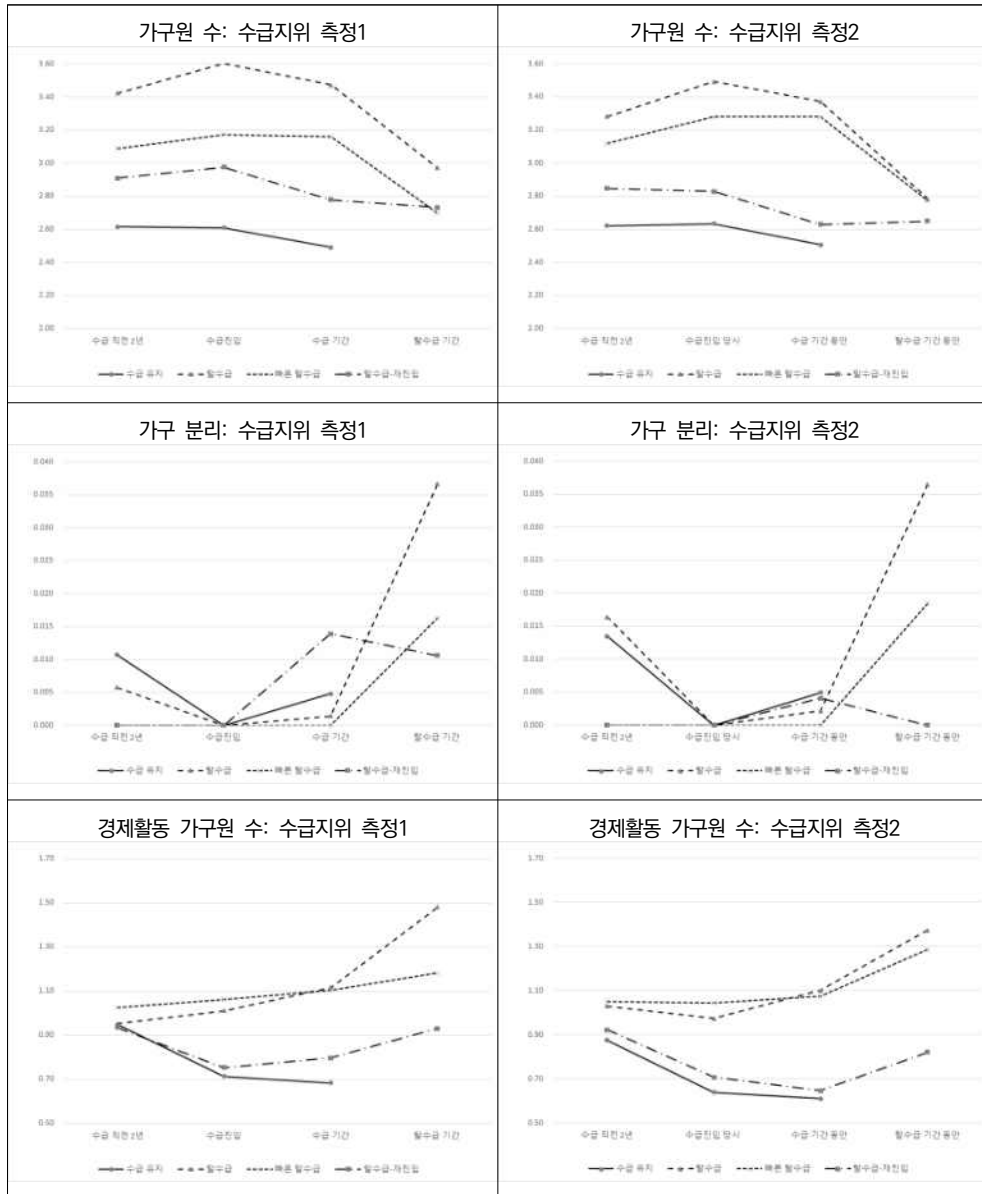
로 회귀하고, 탈수급 기간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가구원 수의 증감이 탈수급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탈수급 이행의 과정에서 이들 궤적의 가구 내 구성원의 변화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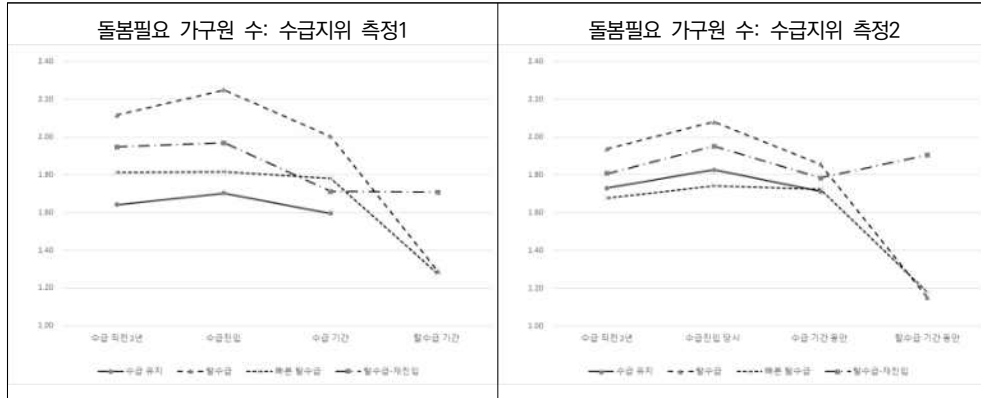
가구의 변화 중 하나인 원가구로부터의 분리는 “탈수급” 궤적에서 두 차례 관찰된다. “탈수급” 궤적에 속한 개인은 수급 직전에 가구로부터의 분리를 경험하고, 탈수급 기간에도 가구로부터의 분리를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빠른 탈수급”의 경우 가구 분리는 탈수급 기간에 한정하여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탈수급-재진입” 궤적의 경우 수급 기간 중에 가구 분리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궤적의 특성 상 수급 기간이 수급 진입부터 탈수급 전에 한 차례, 탈수급 이후 재진입한 후 한차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할 해석은 어렵다.

경제활동 가구원 수는 탈수급에 성공한 두 궤적에서 기간을 통틀어 높은 편이었고, 탈수급 기간에 한정하여서도 큰 차이로 높았다. 특이한 점은 네 궤적 모두 수급 직전의 경제활동 가구원 수의 수준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즉, “수급 유지” 궤적과 “탈수급-재진입” 궤적은 수급 진입 시점에 이르러 기존에 경제활동을 하던 가구원이 모종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수급 유지” 궤적은 가구원의 경제활동이 회복되지 않았던 반면, “탈수급-재진입” 궤적의 경우 일시적인 탈수급 기간에 경제활동 가구원 수가 소폭 증가하였지만, 결국 수급에 재진입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내 노인 혹은 장애인, 혹은 아동이 있는 경우 돌봄필요 가구원이라 정의하고, 이들의 가구 내 수를 나타냈다. 분석 결과, “탈수급” 궤적과 “빠른 탈수급” 궤적의 경우 탈수급 기간에 이르러 돌봄필요 가구원의 확연한 감소가 관찰된다. 반면, “탈수급-재진입” 궤적의 경우 일시적인 탈수급 기간에 돌봄필요 가구원 수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약간 증가하였던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이 궤적의 탈수급 기간이 아닌 구간의 돌봄필요 가구원 수는 “탈수급” 궤적의 그것보다 적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내 돌봄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탈수급의 저해 요인이자 수급 재진입과 깊은 관련이 있을 알게 해준다.

[그림 12-4-6] 계적 집단별 가구 요인





주: 돌봄 필요 가구원은 노인 혹은 장애인 혹은 아동 가구원을 의미한다.
 자료: 한국복지패널 1~17차 원자료.

〈표 12-4-16〉 계적 집단별 가구 속성

(단위: %, 명)

구분		수급지위 측정 1				수급지위 측정 2			
		수급 직전	수급 진입	수급 기간	탈수급 기간	수급 직전	수급 진입	수급 기간	탈수급 기간
가구원 수	수급 유지	2.62	2.61	2.49	-	2.62	2.63	2.51	-
	탈수급	3.42	3.60	3.47	2.97	3.28	3.49	3.37	2.78
	빠른 탈수급	3.09	3.17	3.16	2.70	3.12	3.28	3.28	2.77
	탈수급-재진입	2.91	2.98	2.78	2.73	2.85	2.83	2.63	2.65
	전체	2.88	2.93	2.83	2.78	2.88	2.96	2.86	2.78
가구 분리	수급 유지	0.011	0.000	0.005	-	0.013	0.000	0.005	-
	탈수급	0.006	0.000	0.001	0.037	0.016	0.000	0.002	0.036
	빠른 탈수급	0.000	0.000	0.000	0.016	0.000	0.000	0.000	0.018
	탈수급-재진입	0.000	0.000	0.014	0.011	0.000	0.000	0.004	0.000
	전체	0.006	0.000	0.004	0.027	0.010	0.000	0.003	0.029
경제활동 가구원 수	수급 유지	0.95	0.71	0.68	-	0.88	0.64	0.61	-
	탈수급	0.95	1.01	1.12	1.48	1.03	0.97	1.10	1.38
	빠른 탈수급	1.03	1.06	1.10	1.18	1.05	1.05	1.08	1.29
	탈수급-재진입	0.93	0.75	0.80	0.93	0.92	0.71	0.65	0.82
	전체	0.97	0.85	0.86	1.22	0.95	0.80	0.82	1.26
돌봄필요 가구원 수	수급 유지	1.64	1.70	1.60	-	1.73	1.83	1.71	-
	탈수급	2.11	2.25	2.00	1.29	1.94	2.08	1.86	1.15
	빠른 탈수급	1.81	1.82	1.78	1.28	1.68	1.74	1.72	1.18
	탈수급-재진입	1.95	1.97	1.71	1.71	1.81	1.95	1.78	1.90
	전체	1.78	1.84	1.71	1.36	1.76	1.86	1.75	1.30

주: 돌봄 필요 가구원은 노인 혹은 장애인 혹은 아동 가구원을 의미한다.
 자료: 한국복지패널 1~17차 원자료.

5. 소결

이 절에서는 수급진입으로부터 탈수급, 그리고 탈수급 이후의 경과 기간 동안 집단 내 서로 다른 탈수급의 이행 경로를 살펴보았다. 집단중심궤적분석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진입 이후탈수급의 경로는 기간 내내 수급을 유지하는 “수급유지” 궤적, 진입 이후 5년 이상 경과한 이후 탈수급하여 그 상태를 유지하는 “탈수급” 궤적, 수급 진입 이후 약 2년 안에 탈수급을 이루는 “빠른 탈수급” 궤적, 수급 진입 이후 탈수급 확률이 증가하였다가 다시 수급에 진입하여 수급을 유지하는 “탈수급-재진입” 궤적으로 구분되었다.

이 네 개의 궤적 집단별 인구사회적 속성을 살펴본 결과, “탈수급” 궤적과 “탈수급-재진입” 궤적은 여성의 비율이 높고, 전문대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진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탈수급” 궤적은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반면, “탈수급-재진입” 궤적은 상대적으로 고령이었다. 또한 “탈수급-재진입” 궤적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궤적 집단 중 가장 높았던 반면, “탈수급” 궤적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탈수급을 지속하는 “탈수급” 궤적과 “빠른 탈수급” 궤적의 고용지위는 다른 두 궤적에 비해 양호하였고, 만성질환 이환율과 등록장애 비율도 낮았다. 이들 궤적은 가구내 경제활동 가구원 또한 다른 궤적에 비해 많은 편이었고, 관찰 기간 동안 경제활동 가구원의 수가 증가하였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도 이 두 궤적에서 높았다. 가구내 노인이 있는 비율과 장애인이 있는 비율은 “수급 유지” 궤적과 “탈수급-재진입” 궤적에서 높았다.

복지패널 참여 이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경험은 “탈수급-재진입” 궤적에서 많은 편이었고, 수급 진입 시점과 수급 기간 동안의 조건부 수급 비율은 “탈수급” 궤적에서 높았다. “빠른 탈수급” 궤적에서는 조건부 수급 비율이 특별히 높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탈수급 관련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였던 탈수급 과정에서의 공적지원과 주요 지출 요인을 살펴보았다. 각 궤적 집단이 경험한 수급진입, 수급 기간, 탈수급 기간에 나누어 분석한 결과, “탈수급-재진입” 궤적 집단의 특이성이 주로 관찰되었다. 이 궤적에서는 수급 기간에 비해 일시적이었던 탈수급 기간 동안 빈곤심도가 오히려 깊었고, 공적 지원 수준은 탈수급 기간 동안 더 낮았다. 탈수급 기간 동안의 공적 지원 수준이 수급 기간에 비해 낮은 것은 다른 궤적들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탈수급-재진입”

궤적의 양 기간 간의 차이는 더욱 컸다. 즉, 탈수급에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수급에 재진입하는 경로에는 탈수급 과정에서의 공적 지원이 부족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출 요인 분석에서도 “탈수급-재진입” 궤적은 탈수급 기간 동안 생활비 중 주거비 비율이 타 궤적에 비해 높았고, 의료비 지출은 수급진입 시점에서 가장 높았으며, 타 궤적과는 달리 관찰 기간 동안 의료비 지출의 변화가 거의 없이 꾸준히 높았다. 교육비 지출 요인인 초중고학생 수에서도 탈수급을 이루는 궤적 집단에서는 탈수급 기간에 이르러 학생 수의 감소가 관찰되었지만, “탈수급-재진입” 궤적에서는 수급/탈수급 기간 간 차이가 없거나 탈수급 기간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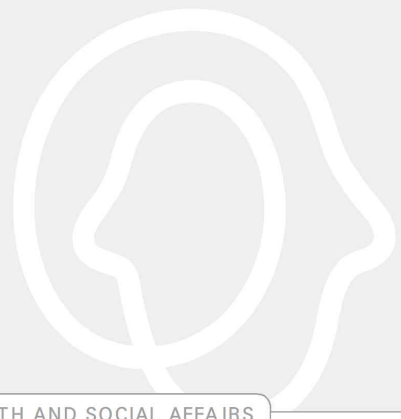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수급 개시 이후 수급 지위 궤적은 동질적이지 않았다. 첫 수급 이후 탈수급을 이루는 궤적, 수급 상태를 유지하는 궤적, 일시적인 탈수급 후 수급에 재진입하는 궤적으로 다양한 탈수급 경로를 경험하는 집단들이 특정되었다. 이들 집단의 규모와 속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궤적별 수급지위 구간별 공적 지원 분석에서는 탈수급을 했음에도 다시 수급에 진입하는 이유가 열악한 공적지원이 아닌지 의심케 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근로능력판정 및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대상 빈곤 예방 및 자립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들 간 연계에 대해 재고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과 비율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 제도 개선의 효과를 평가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일시적인 탈수급과 수급 재진입 집단이 표본 조사자료에서도 관찰되었기에,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제도 수급자와 탈수급자 중에서 이들의 규모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탈수급 이후 수급에 재진입하는 대상들이 오히려 탈수급 기간 동안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으며, 공적 지원과 지출 보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그와 관련되어 있다면 보다 전향적인 정책 개입이 있어야 한다. 지원 시점은 탈수급을 이룬 직후 수년 간, 대상으로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의료, 주거, 교육 부문의 욕구가 있는 가구들이 될 것이다.

이번 분석은 패널자료의 특성을 이용하여 수급진입 시점으로부터 가능한 긴 시계열 동안 탈수급 궤적을 관찰하고 유효한 표본 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구조를 변형하였다. 때문에 전국 대표성을 가진 자료의 장점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분석을 통해 궤적의 존재는 발견하였지만, 모집단에서 이들 궤적을 따르는 하위 집단별 실제 규모가 어

떠할지에 대해서는 분석의 결과를 제한적으로만 참고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특정 시점의 수급진입자 전수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단일 행정자료가 아닌 사회서비스 등 현물급여의 수급 정보가 결합된 행정자료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모집단을 대표하면서도 보다 많은 실물 정보를 포괄하는 자료를 토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본격적인 생애사적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제 13 장

의료급여 평가

제1절 의료급여제도 개요 및 보장성 평가

제2절 의료급여 재정 및 이용 현황

제3절 소결

제 13장 의료급여 평가

제1절 의료급여제도 개요 및 보장성 평가

1. 의료급여제도 개요

의료급여법 제1조에 의하면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써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즉,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 제도는 1986년 의료부조의 실시를 시작으로 지난 30여년 동안 수많은 발전과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대략적인 의료급여 제도의 경과를 보면 먼저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여, 1990년 의료보호수가를 의료보험(건강보험)과 일치시켰으며, 1999년 의료보호 진료지구제를 폐지하였고 3차 기관을 제외한 모든 진료기관을 당연 지정하여 저소득계층 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이후 2000년 7월부터는 의료보호기간을 365일로 확대하였고, 동 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2001년 5월부터 의료급여법으로 개정하여 지금의 의료급여 제도로 이어지고 있다.

〈표 13-1-1〉 의료급여 제도 변화 개요

〈수급권자 범위변화〉	
1977~2000	- 수급권자 범위 확대
2003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변화: 소득평가액, 재산→소득인정액 - 1종 수급권자 범위 조정: 1종 수급자 급증, 2종 수급자 감소 - 무연고자(행려환자) 의료급여 실시
2004~2006	-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및 지원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
2008~2009	- 차상위 계층 중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건강보험으로 편입
2012	- 노숙인 의료급여 1종 부여
2013	- 의료급여 수급권자 범위 규정 보완(이재민, 노숙인 등)
〈급여일수 변화〉	
2000	- 의료보호기간 확대(330일→365일)
2001	- 의료급여수급기간 폐지
2002	- 급여일수 제한(→365일)
2006	- 급여일수 사전연장 승인제로 변경
2016	- 희귀난치 및 중증 질환 급여일수 연장승인 제외 근거 마련
2021	- 만성고시질환 연간급여일수 차감제
〈수가체계 변화〉	
1997	- 의료보호수가에 의료기관종별 가산율 적용 시작
2000	- 정신과(정액수가) 차등수가제 실시
2002	- 혈액투석수가 정액제로 전환(방문일당 136,000원)
2003	- 정신과 수가 인상
2004	- 정신과 입원수가 인상
2008	- 요양병원형 일당 정액수가제 도입 - 의료급여 정신과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 도입
2017	- 의료급여 정신과 외래 수가체계 개선(정액 →행위별수가), 정신과 입원 및 낮병동 수가 인상
2021	-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에서 식대와 정신요법료를 분리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
2022	- 의료급여 식대수가(치료식 제외) 건강보험 의원급 수준으로 인상 및 식대 인력 기준 신설
〈본인부담금 제도 변화〉	
2003	- 2종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도입(매30일간 30만원 이상시 1/2)
2004	- 2종 본인부담률 인하(20%→15%) - 2종 본인부담보상금 기준 완화: 30만원→20만원 - 2종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6개월 120만원) 실시
2007	- 1종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1종 외래진료시 일부 본인부담제 - 1종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매 30일간 2만원 초과시 50%, 5만원 초과시 100% 환급
2017	- 6세 이상 15세 이하 2종 수급권자의 입원시 본인부담률 10%에서 3%로 경감 -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상한제 기준금액 인하(연간120 →80만원)
2018	- 65세 이상 노인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1종 20 → 10%, 2종 30 → 20%)

〈관리제도 등 변화〉

- 2001 - 중앙의료급여위원회 신설
- 2003 - 사례관리사업 시작(의료급여 관리요원 배치)
- 2007 - 선택병의원제 도입
 -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 운영
 -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2012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추가 등으로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
 - 중복투약· 정상적인 장기입원 등 불합리한 의료급여 남용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발표
- 2015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으로 수급자 선정기준 변화(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 중위소득의 40%로 전환)
- 2018 - 연장승인 미신청자(불승인자)에 대한 제재로서 본인부담수준을 종전 의료급여 제한에서 건강보험 수준으로 변경
- 2020 - 의뢰 및 회송 시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정보의 제공,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설치·운영
 -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
- 2022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구분을 현행 전부 1종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1, 2종 자격을 구분하도록 규정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 의료급여사업안내. p.651-670 내용 재구성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과, 그 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타 법에 의해 1, 2종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먼저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의료급여법 제 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 의료급여법 제 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18세 미만인 자
 -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공익근무요원, 상근 예비역 등)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2세(1세의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 유예자로서 의료급여 1종 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 타 가구원을 양육·간병 또는 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가구별 1인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권자)
- 의료급여특례, 자활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표 13-1-2〉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기반 법률		대상자 자격요건	수급권자 구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근로무능력가구	1종
		시설수급자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의 수급자)	1종
		특례수급권자 (의료급여특례, 자활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 의료급여 유예특례, 확인조사에 따른 보장연장특례 등)	1종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1종
		그 외(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	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군입대자	의료급여 자격 1종/2종 유지*
「의료급여법」		행려환자 (①일정한 거소가 없고 ②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③응급환자로 ④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자)	1종
타법 기반	「재해구호법」	이재민	근로무능력가구 : 1종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 2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상사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특례법」	만18세미만 국내 입양아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공자	
	「문화재보호법」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자	

주: 군입대후 가구의 종별에 따라 의료급여 적용: 예) 기존 2종 가구에서 근로능력자의 군입대로 근로능력 가구가 되어 1종 가구가 변경시 현역사병도 1종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년도 의료급여사업안내. p.21~76 재구성

2. 의료급여 보장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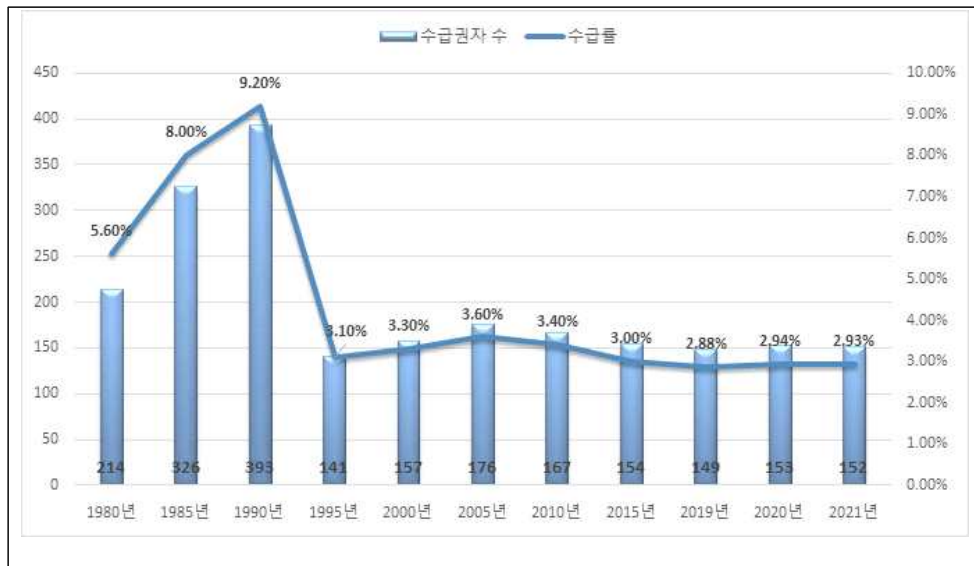
전 국민에게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국가 보건정책의 주요 목표이다. WHO는 보편적 보장(universal coverage)을 보장인구, 보장급여 서비스 범위, 본인부담 수준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보장인구는 의료급여 수급 인구 비율을 말하며, 보장급여 수준은 의료급여의 서비스 범위를 그리고 본인부담 수준은 의료이용 시 총 진료비 중 본인이 직접부담하게 되는 수준

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가. 대상자 포괄성

1977년 12월 도입된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향상 및 기본적 건강권 보장에 크게 이바지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거 생활보호법 하에서 공공부조 성격의 의료보장 제도로 운영되었던 시기에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9.2%까지 양적 증가를 하였으나 국민기초보장생활보장법 개정이후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평균적으로 약 3%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13-1-1]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 및 수급률 추이



주: 수급권자 수 연도 말 기준

자료: 의료급여수급권자수-의료급여통계연보 각 연도; 전체인구수-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총인구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checkFlag=N, 2023.6.21. 인출).

의료급여 제도 도입 초기인 1980년 의료급여 수급률은 5.6% 수준이었으나 당시 건강보험 가입률이 24.2%에 불과했던 시점으로 의료보장 체계가 제도화되기 이전시점부터 의료급여 제도는 빈곤층의 의료 안전망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후에도 의료급여 수급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989년 전 국민 건강

보험 달성 이후 건강보험 제도와 분리되면서 독립된 공적 부조로서의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2000년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을 통해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하고, 시혜적 성격의 제도에서 권리적 성격의 제도로 인식의 전환을 맞이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확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부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면서 의료급여 수급률은 1990년 9.2%에서 2000년 3.3%로 감소하게 되었다. 2004년에는 차상위계층 희귀·만성질환자, 2005년 차상위계층 12세 아동까지 의료급여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었다.

2006년에는 일부 과다 의료이용문제가 발생하면서 의료급여 제도는 양적 확대를 추진하던 정책에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었다.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 내용에 있어서 수요자 측면에서 1종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제 도입, 선택병 의원제 실시, 의료급여일수 사전연장승인제도 시행, 사례관리 강화, 대상자 선정 및 자격관리체계 정비 등 수급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후 진료비 증가율 둔화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2008년 4월부터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률이 2007년 3.8%에서 2010년 3.4%로 감소하게 되어 전체 진료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2013년 타법 수급권자 자격요건 및 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개선 등으로 부정수급자들을 탈락시키면서 의료급여 수급률은 2010년 3.4%에서 2014년 2.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2014년 2.8%에서 2015년 3.0%로 다소 증가하였다. 2016년 이후 의료급여 수급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9년 이후 소폭 증가하였다.

2021년 현재 전체 의료보장 인구 중 의료급여 대상자는 152만 명 수준으로 전체 의료보장 인구의 2.9%로 이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75.5%인 1,144천명, 2종 수급자는 24.5%로 약 372천명 수준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09년 이후 연평균 1.3%씩 감소하였는데 이는 2종 수급권자의 감소에 기인한다. 지난 10년간 1종 수급권자 수는 소폭으로 증가하였고, 2종 수급권자는 연평균 약 5%씩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표 13-1-3〉 의료급여 종별 수급권자 수 변화추이(2011-2021)

(단위: 천명, %)

연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체(A)	1종	2종
2011	1,609 (100%)	1,087 (67.6%)	522 (32.4%)
2012	1,507 (100%)	1,058 (70.2%)	449 (29.8%)
2013	1,459 (100%)	1,040 (71.3%)	419 (28.7%)
2014	1,441 (100%)	1,037 (72.0%)	404 (28.0%)
2015	1,544 (100%)	1,078 (69.8%)	466 (30.2%)
2016	1,510 (100%)	1,066 (70.6%)	444 (29.4%)
2017	1,486 (100%)	1,065 (71.7%)	420 (28.3%)
2018	1,485 (100%)	1,082 (72.9%)	403 (27.1%)
2019	1,489 (100%)	1,104 (74.2%)	384 (25.8%)
2020	1,526 (100%)	1,137 (74.5%)	389 (25.5%)
2021	1,517 (100%)	1,144 (75.5%)	372 (24.5%)
'11-'21 연평균 증가율	-1.4	0.7	-5.2

주: 수급권자 수 연도 말 기준

자료: 의료급여수급권자수 “2021의료급여통계연보”

의료급여 제도는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급여 제도는 빈곤인구 규모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득 및 재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의료요구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 때문이다. 2004년 차상위 만성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 대해 일부 의료요구를 반영하여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었으나, 2009년에 다시 건강보험적용대상자로 환원하여 수급자격에서 실질적인 의료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소득·재산(소득인정액)은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배제된 비수급 빈곤층(사각지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중증장애인 등 소득 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선별적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가구 내 노인, 아동,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의료 필요도가 높은 가구라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개별급여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의료필요도가 높은 가구를 선별하여 의료급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점진적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을 통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년 10월)를 시작으로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17년부터 단계적 폐지하고 빈곤층 보호대상자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을 통해 우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21년 10월)하였고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추가적인 수급자 확대와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시까지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기초보장종합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또는 폐지노력이 지속된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40%이하 비수급빈곤층의 의료보장 강화 및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 등 재난적 의료비 지출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급여의 효과성 및 충분성

급여의 효과성은 의료급여 수급으로 인해 가구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지표이며, 이를 위해 우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시 본인부담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1차 의료급여 기관 외래 본인부담은 1,000원, 2차 의료급여기관은 1,500원, 3차 의료기관은 2,000원 그리고 약국 500원이며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의료이용 시 일부 발생하는 본인부담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¹⁷⁵⁾에게는 1인당 매월 6천원을 가상계좌를 통해 지급해주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175) 18세 미만자, 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신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본인부담 면제자를 제외한 전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표 13-1-4〉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본인부담

구분(의료급여 기준)		의료급여				건강보험	
		1종		2종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1차	의원	없음	1,000원	10%	1,000원	20%	30%
2차	병원		1,500원		15%		동지역:40%/읍면지역:35%
	종합병원		2,000원		15%		동지역:50%/읍면지역:45%
3차	지정병원	-	500원	-	500원	-	진찰료+그 외 진료비의 60%
약국		-	500원	-	500원	-	처방조제:30%/직접조제:40%
PET 등		없음	5%	10%	15%	외래 본인부담률 동일	

주: 1) 의료급여 2종 외래 2차기관 이용시: 만성질환자는 1,000원 정액 적용
 2) 건강보험 외래 의원 이용 시, 65세이상 15,000원 이하시 1,500원 정액 적용
 3) 건강보험 외래 이용 시, 6세 미만 아동은 본인부담률의 70% 적용
 자료: 의료급여 자료-보건복지부(2023), 2023년 의료급여사업안내, p.6; 건강보험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2018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코로나 용품비가 반영된 결과이다. 2018년 전체 가구의 가구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16.5만원에서 2021년 18.2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방역마스크, 코로나19 진단 키트, 손소독제 등 코로나 용품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 용품비를 제외한 보건의료비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코로나 용품비를 제외한 가구당 월평균 보건의료비¹⁷⁶⁾는 약 16.6만 원 수준이었으나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약 6.5만원 정도로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가구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소득이 증가할수록 코로나 용품에 대한 지출도 증가하였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노출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자원에서 가구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6) 전체 가구의 입원, 외래, 약국에서 발생한 필수의료비, 성형 등 비 필수의료비, 건강보조식품 등을 모두 포함한 가구당 월평균 총 보건의료비임.

〈표 13-1-5〉 월평균 보건의료비

(단위: 만원)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75% 초과 경상소득 75% 이하	경상소득		전체
		-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8	
보건의료비	7.0	11.2	8.7	9.9	10.9	13.1	17.7	18.7	20.0	18.2
코로나 용품비	0.5	0.6	0.5	0.8	0.8	1.0	1.0	1.5	1.8	1.5
코로나 용품비를 제외한 보건의료비	6.5	10.6	8.2	9.1	10.1	12.1	16.7	17.2	18.2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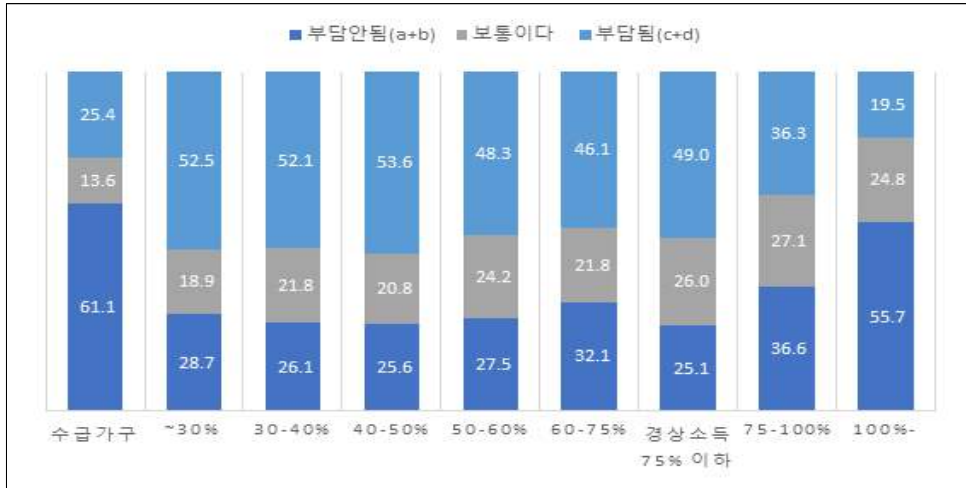
주1: 코로나 용품비는 마스크, 코로나19 진단키트, 손소독제 비용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의료급여 수급자는 대략 150만 명 내외로 전 국민의 3%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의료급여 혜택은 소수의 수급권자에게 집중되고 있어 저소득 가구에서 의료급여 수급 여부에 따른 의료비 부담 및 의료 접근성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비에 대한 가구 부담 수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가구에서 의료비 지출이 부담되지 않았다¹⁷⁷⁾는 응답이 61.1% 가장 높았으며 이는 소득 최상위 가구 55.7%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반면 비수급빈곤 가구를 포함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서는 가구 지출 중 의료비가 부담되었다는 응답이 50%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비수급빈곤층 2가구 중 1가구 이상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7) '전혀 부담되지 않았다'와 '거의 부담되지 않았다'의 합계

[그림 13-1-2] 의료비에 대한 가구 부담 수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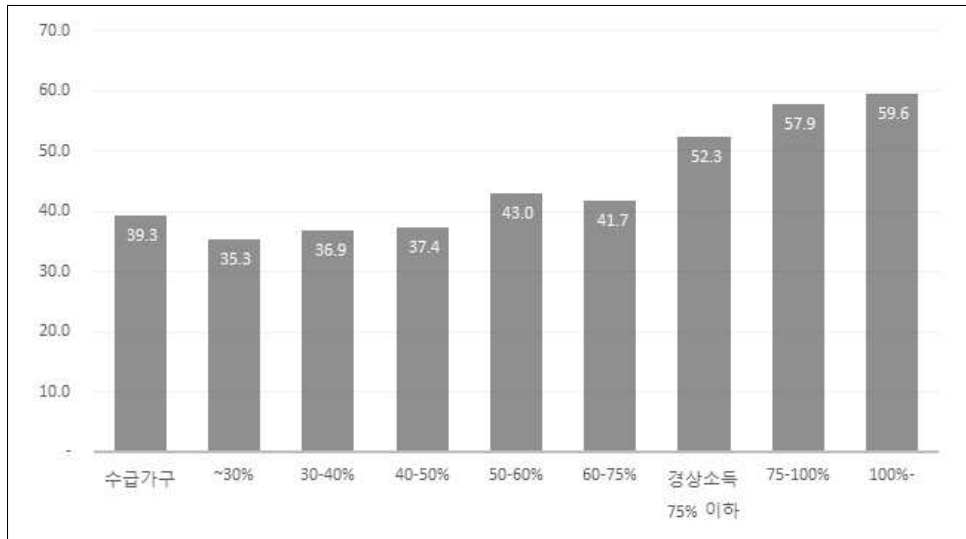
의료급여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비급여 진료비는 전액 본인부담¹⁷⁸⁾으로 부과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률이 60% 중반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들도 일부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의료비는 비수급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법 내용을 적용하여 보면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로 규정(의료급여법 제 7조)하고 있으며, 요양급여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요양급여 대상의 고시)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비급여대상이 의료급여 수급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라 할지라도 실제 의료이용 시 법정 본인부담금 이외의 비급여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의료비 부담은 법정 급여에 대한 지원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에 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비급여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료과로는 치과를 들 수 있다. '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였으나 이를 진료과목, 요양기관 종별로 구분하여 보면 치과 병원과 의원의 보장률은 각

178) 비급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비급여대상이 적용

각 25.6%, 36.0%로 가장 낮았다. 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치과 진료에 대한 박탈 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우선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는 것'에 대해 전체 가구의 83.8%¹⁷⁹⁾는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가구 중 실제 '하고 있다'라는 응답률은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비수급빈곤층인 중위소득 30%이하 가구에서 이가 아플 때 치과에 가고 있다는 응답이 35.3%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가 36.9%로 낮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중위소득 40%이하 비수급빈곤층 3가구 중 2가구는 이가 아플 때 치과에 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경우도 이러한 응답은 39.3%로 낮게 나타났다. 의료급여의 경우 법정 급여에 대한 보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는 비급여진료비는 비수급빈곤층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가구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3-1-3]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박탈: 이가 아플 때 치과에 가는 것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주: '이가 아플 때 치과에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179) 제4장 빈곤층 욕구별 실태분석 참조

급여의 효과성 및 충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해 본 결과,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우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구분하여 제도별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만족도(180)는 건강보험 대상자(70.9%)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수급 가구의 약 89.1%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였고 보통이라는 응답도 약 7.8%로 수급자의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표 13-1-6〉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제도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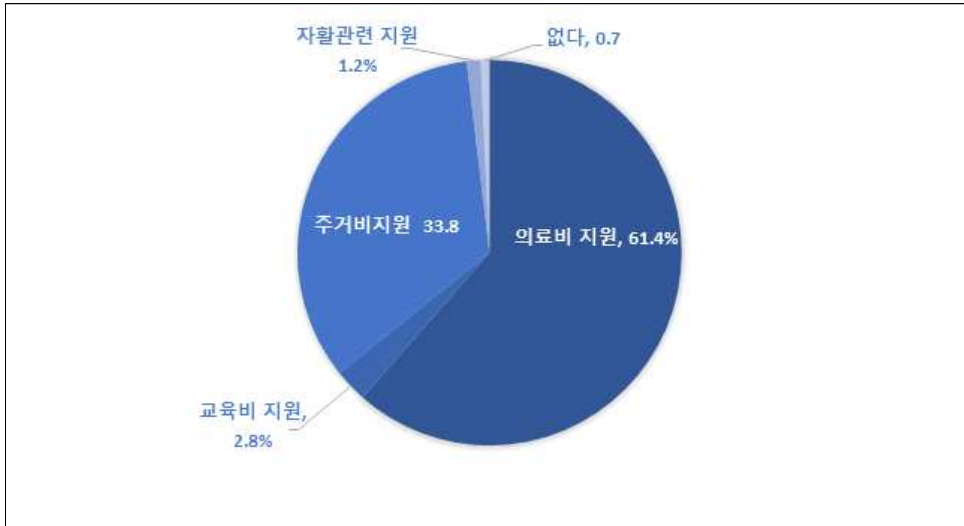
구분	의료급여 수급	건강보험								(건강보험) 전체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75% 초과 경상소득 75% 이하	경상소득		
		-30%	30-40%	40-50%	50-60%	60-75%		75-100%	100%+	
1	2	3	4	5	6	7	8	9		
매우 만족(a)	36.1	24.4	9.8	11.9	9.3	13.0	11.5	11.1	10.9	11.2
만족(b)	53.0	49.9	60.8	60.1	63.8	59.3	63.4	61.2	58.8	59.7
매우 만족 또는 만족(a+b)	89.1	74.2	70.6	72.1	73.1	72.3	74.9	72.3	69.7	70.9
보통이다	7.8	17.8	25.8	24.2	21.1	22.9	18.6	20.6	21.4	21.1
불만족(c)	2.9	6.3	3.3	2.8	4.9	4.8	6.2	6.5	8.2	7.4
매우 불만족(d)	0.2	0.9	-	0.8	-	-	0.3	0.5	0.7	0.6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c+d)	3.1	7.2	3.3	3.5	4.9	4.8	6.5	6.9	8.9	7.9

주: 수급대상자인 1분위는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만족도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의료급여 제도는 본인부담 의료비가 없거나(입원), 매우 낮은(외래 등) 수준으로 설계되어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들의 급여수준에 만족도가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급가구(생계급여)에서 벗어나더라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계속 받고 싶은 급여로 의료급여라는 응답이 61.4% 가장 높아 의료급여 제도가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경감과 보장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180) '만족한다'는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의 합계임.

[그림 13-1-4] 수급가구(생계급여)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받고 싶은 급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제2절 의료급여 재정 및 이용 현황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 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은 각 급여별 선정기준선에 따라 자격이 주어지며 의료급여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대상자 자격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만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여타 급여와는 달리 급여수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후적 급여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제도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급여 이용은 각 개인별 건강수준, 질병이환상태, 연령 등에 따라 개개인별로 다르게 급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급여 수준은 의료급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건강보험제도에서 급여하는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 급여하고 있으며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 법정 본인부담이 거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필수 의료보장을 목적으로 건강보험제도와 동일하게 모든 의료기관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제도이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 개개인의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의료 이용함에 따라 개개인별로 적정 의료이용수준을 규정할 수 없어 일부 수급자에서는 과소 또는

과다 의료이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절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 및 의료급여 재정 평가를 통해 적정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방안 모색에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의료급여 이용 및 재정 주요 현황

건강보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국가는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 담뭍세 등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 6%)과 건강보험료 80%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의료급여 재정은 서울의 경우 50%, 그 외 시·도는 80%를 국비에서 보조받아 운영되고 있다.

〈표 13-2-1〉 의료급여기금의 국고보조비율

구분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자치구	시	자치구	도	시	군
지방비	50%	없음	20%	없음	14~16%	6%	4%
국비	50%		80%		80%		
합계	100%		100%		100%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의료급여사업안내. p.339

급여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의료급여 재정과 진료비 수준을 건강보험과 비교하여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 대상자의 총 진료비는 약 95조 4천억 원이며,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는 약 9조 8천억 원 이었는데 이는 의료보장인구 중 약 2.9%를 차지하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총 진료비가 건강보험 전체 재정 규모의 약 1/10 수준으로 이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1인당 진료비가 건강보험 대상자 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의 총 진료비(2021년 기준 약 9조 8천억 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들의 총 진료비는 8조 9,591억 원으로 의료급여 전체 중 9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2종 대상자들의 총 진료비는 8,088억 원으로 전체 의료급여 총 진료비 중 8.3%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의료급여 적용인구의 약 73%를 차지하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들의 총 진료비가 전체 의료급여 진료비의 약 91%를 차지하는 반면

약 27%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2종은 전체 총 진료비의 약 9%를 지출하고 있어 의료급여 1종 대상자에 의한 지출이 더 많았다.

〈표 13-2-2〉 연도별 총 진료비

(단위: 억 원, %)

구분	건강보험 전체			의료급여 전체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총 진료비	총 진료비	비율	총 진료비	비율	총 진료비	비율	총 진료비	비율
2016	651,844	67,375	10.3	60,975	90.5	6,400	9.5		
2017	707,525	71,157	10.1	64,717	90.9	6,440	9.1		
2018	779,104	78,070	10.0	71,256	91.3	6,814	8.7		
2019	861,110	85,900	10.0	78,612	91.5	7,288	8.5		
2020	867,139	90,489	10.4	82,966	91.7	7,523	8.3		
2021	954,376	97,679	10.2	89,591	91.7	8,088	8.3		
연평균증가율	7.9	7.7		8.0		4.8			

자료: 의료급여통계연보 각 연도,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총 진료비를 진료실인원으로 나누어 1인당 진료비를 비교해 보면, 2021년 기준 1인당 진료비는 건강보험 대상자가 약 200만원, 의료급여 대상자가 약 612만원으로 건강보험 대상자에 비해 약 3배 더 높았다. 전체 의료급여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보면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1인당 진료비는 약 734만원으로 2종 수급자 약 186만원에 비해 약 3.9배 더 높아 의료급여 자격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1인당 진료비는 건강보험 대상자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의 1인당 진료비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이는 의료급여 1종은 연령대가 높고 근로 능력이 없으며 진료비 부담도 없거나 매우 낮아 2종 수급자 보다 의료이용이 많은 경향을 보인다.

〈표 13-2-3〉 연도별 진료실인원 1인당 진료비

(단위: 천원, %)

연도	건강보험 전체		의료급여 전체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적용인구당 진료비	적용인구당 진료비	배율	적용인구당 진료비	배율	적용인구당 진료비	배율	
2016	1,366	4,162	3.0	5,277	3.9	1,202	0.9	
2017	1,478	4,472	3.0	5,623	3.8	1,265	0.9	
2018	1,617	4,848	3.0	5,986	3.7	1,401	0.9	
2019	1,782	5,438	3.1	6,649	3.7	1,568	0.9	
2020	1,835	5,726	3.1	6,917	3.8	1,692	0.9	
2021	1,997	6,116	3.1	7,335	3.7	1,862	0.9	
연평균 증가율	7.9	8.0		6.8		9.2		

주: 배율은 건강보험 대상자 진료실인원 1인당 진료비 대비임.
 자료: 의료급여통계연보 각 연도,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의료이용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2021년 현재 의료급여 총진료비에서 입원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진료비의 절반 이상인 약 53.9% 수준으로 건강보험 입원 총진료비 비중 약 37.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입원 약 5조 2,628억 원, 외래 약 2조 9,290억 원, 약국 약 1조 5,762억 원 수준으로 의료급여 총진료비 구성비를 보면 입원 약 53.9%, 외래 약 30.0%, 약국 16.1% 수준인데 반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는 외래 43.0%, 입원 37.1%, 약국 19.9%로 건강보험 대상자에 비해 의료급여 대상자의 입원진료비 비중이 높고 외래와 약국 진료비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원 진료비 비중이 높은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입원 시 본인부담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적정 의료이용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높은 입원 진료비 비중은 상당 부분 중증도가 낮은 수급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림 13-2-1] 의료급여의 진료유형별(입원/외래/약국) 비중(2021)

(단위: %)



자료: 2021년도 의료급여통계연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행태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입원, 외래, 약국으로 구분한 진료비 구성비를 보면, 2005년 47.0%였던 입원 진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3년 이후 입원 진료비 비중이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요양병원 증가와 맞물려 입원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5년 203개소 수준이었던 요양병원은 21년 현재 1,464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2010년대 초반까지 급증하면서 입원 부분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입원 진료비 비중은 꾸준히 50% 중반 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13-2-2] 진료형태별(입원, 외래, 약국) 진료비 추이(2005-2021)

(단위: %)



자료: 의료급여통계연보 각 연도

진료실인원 1인당 입내원일수는 유형별 대상자의 의료이용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량은 건강보험 대상자 대비 더 높은 수준이다. 2021년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의 1인당 입원일수는 94.1일로 건강보험 대상자 입원일수 20.0일보다 약 4.7배 더 많았고, 1인당 외래 내원일수도 33.7일로 건강보험 대상자의 20일에 비해 약 1.9배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이용량이 건강보험 대상자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3-2-4〉 연도별 진료실인원 1인당 입원일수

(단위: 일, %)

연도	1인당 입원일수			1인당 외래 내원일수		
	건강보험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배율	건강보험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배율
2016	19.0	90.9	4.8	18.7	32.7	1.7
2017	19.8	91.3	4.6	18.6	33.5	1.8
2018	19.9	89.3	4.5	18.9	33.7	1.8
2019	19.7	88.8	4.5	19.2	35.2	1.8
2020	20.9	93.2	4.4	17.0	33.7	2.0
2021	20.0	94.1	4.7	17.5	33.7	1.9
연평균 증가율	1.0	0.7		-1.3	0.6	

주: 배율은 건강보험 대상자 진료실인원 1인당 입원일수 대비임.
 자료: 의료급여통계연보 각 연도,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제3절 소결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또한 본인부담 보상금제도¹⁸¹⁾, 본인부담 상한제¹⁸²⁾,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¹⁸³⁾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향상 및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의료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그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 보장성은 확대되

181) 1종 수급권자는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종 수급권자는 매 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해 주는 제도

182)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의료비가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 수급권자가 매 60일간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보상

183)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전체에게 본인부담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매월 6천원 지원

있으며 수급권자들의 제도에 대한 만족도도 건강보험 대상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의료보장률(2021년 현재 64.5%)과 비급여 진료의 증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본 연구결과에서도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약 27.8%가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보장성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보장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의료급여제도 내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¹⁸⁴⁾’으로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행중인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를 포함하여 저소득계층에 최고 5천만 원까지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어 3차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장성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의료욕구가 있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라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 개편 이후에도 사실상 의료욕구를 반영한 선정기준이 정비되지 못하였다. 앞서 제시하였듯, 비수급 빈곤가구에서 만성질환 비율이 높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도 중위소득 40%이상 가구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의료필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의료비 부담 수준, 미충족 의료욕구 등 다수의 지표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우선적으로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가구 등 의료필요도가 높은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효율적 급여 관리 또한 필요하다. 의료급여 제도는 도입 이후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등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확대, 급여범위 확대 등 양적 증대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의료이용량과 총 진료비가 크게 증가하여 왔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인구 전체의 약 2.9%를 차지하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총진료비 규모는 건강보험 총재정의 10% 수준인 약 9.8조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급여

18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본인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 시 지원(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이나, 생계, 주거급여 등과 달리 사후적 성격의 현물급여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관리가 필요하다. 물론 의료급여 대상자의 높은 진료비 지출 수준은 고령, 만성질환, 근로무능력 등 수급권자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일부 수급권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의료급여 대상자 및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정 안정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입원 진료비 부담이 없는 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입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의 약 5명 중 1명이 연간 180일 이상 장기입원하였고, 이들의 입원진료비가 전체 의료급여 입원 진료비의 5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입원 문제는 의료공급자와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 뿐만 아니라 주거문제, 사회복지 인프라의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황도경 외, 2019). '07년 7월 이전까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 없이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 하였으나, 과다 의료이용,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면서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와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외래 본인부담, 선택병의원제, 연장승인사전신청 등이 시행되면서, 현재는 부적정 외래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래 연장승인제도, 선택병의원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입원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부재는 일부 의료공급자와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서 의료급여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외래의 경우, 각 질환별 연간 급여일수(등록 중증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의 경우 365일, 고시질환의 경우 380일, 기타 질환의 경우 400일) 초과 전 의료급여 연장승인을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초과 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적정 장기입원에 대한 관리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입원에 대해서 퇴원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병원과 환자의 협조가 없이는 성과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10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의료급여는 유일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나 사전적으로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타 급여와 달리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이용량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며, 지출 수준 또한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

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료급여 지출관리 효율화가 필요하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 행태에 따라 의료급여 예산이 급증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들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있어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외래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은 적은 수준¹⁸⁵⁾이며, 본인부담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¹⁸⁶⁾에게는 1인당 매월 6천원을 가상계좌를 통해 지급해주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택병의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외래 본인부담 없이 의료이용을 할 수 있다. 입원의 경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진료비는 부과되지 않는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대상자의 의료이용에 있어 또 다른 특징은 의료급여 수급자 입원 진료 비중이 높아 입원 진료비가 총 의료급여 지출 증대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입원 시 본인부담의 부재로 인해 역으로 입원이 남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의료급여 입원비 증가는 입원진료비 부담이 전혀 없는 1종 수급권자의 입원 증가에 기인하며, 사회적 입원 증가도 주요 요인이 된다. 의료이용 행태는 자격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건강보험과 비교해 보면 건강보험은 외래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의료급여는 입원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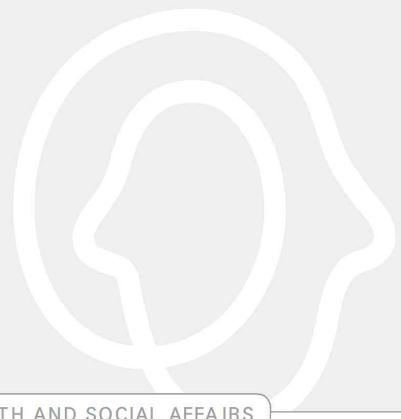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재정관리 기전을 마련하여 의료급여 지출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질환 대비 외래 과다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적정화 방안, 장기입원에 대한 연장승인 도입, 치료가 아닌 요양 목적의 부적정 장기입원에 대한 본인부담 부과 등의 수급자 측면의 관리 방안과 의료공급자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집행 방안을 동시에 강

185)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p. 6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186) 18세 미만자, 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입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본인부담 면제자를 제외한 전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구함으로써 의료급여 오남용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사체계 강화를 위해서 현행 청구건별 심사에서 기관 및 환자 단위의 모니터링과 진료비 심사를 통해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심사, 질환 대비 과다이용자 관리를 위해 환자 단위 의료이용량 모니터링 등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 재정관리 기전 마련과 동시에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부적정 과다의료 이용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이러한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 자격측면의 보장성, 즉 대상자의 포괄성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 14 장

1인 가구 심층분석

제1절 1인 가구의 빈곤 실태

제2절 1인 가구 심층조사 분석

제3절 1인 가구급여 적정성 분석(다른 규모의 가구와 비교)

제 14 장 1인 가구 심층분석

제1절 1인 가구의 빈곤 실태

본 장에서는 최근 주요 정책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1인 가구를 심층분석한다. 우선 제1절에서는 1인 가구의 빈곤 실태를 2인 이상 가구와 비교하여 분석한다.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등 소득 정의와 빈곤율, 빈곤갭비율 등 빈곤지표 정의는 제12장의 분석과 완전히 동일하다. 본 절에서는 첫째, 생애주기에 따른 1인 가구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19~34세 청년, 35~49세 장년, 50~64세 중년, 65세 이상 노인을 구분하여 1인 가구를 분석하고 둘째, 비교를 위해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빈곤을 함께 보고한다. 1인 가구 표본 사례 수는 <표 14-1-1>과 같다.

<표 14-1-1> 1인 가구 표본 사례 수

(단위: 가구)

구분	전체				
		가구주 19~34세	가구주 35~49세	가구주 50~64세	가구주 65세 이상
1인 가구	5,181	768	599	1,358	2,456
2인 이상 가구	12,819	718	3,511	4,842	3,74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14-1-2>에는 기준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1인 가구의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전체 1인 가구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38.68%였고,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면 빈곤율이 20.00%로 48.30% 감소하였고,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조세 및 사회보험부담금을 차감하면 빈곤율이 21.14%로 45.35% 감소하였다.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 1인 가구의 빈곤 위험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타 정부보조금, 사회보험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가 각각 1인 가구의 빈곤율을 18.02%, 12.32%,

4.13% 감소시켰다. 2인 이상 가구와 비교할 때 사회보험급여 및 기타 정부보조금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즉,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제외하면,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시장소득 빈곤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1-2〉 1인 가구 빈곤율(빈곤선: 기준중위소득 50%)

(단위: %)

구분	전체		가구주 19~34세		가구주 35~49세		가구주 50~64세		가구주 65세 이상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시장소득	38.68	16.10	4.38	2.59	12.58	4.30	35.99	10.15	80.50	45.78
(빈곤 감소 효과)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경상소득	20.00	6.26	2.62	0.34	7.77	1.64	19.06	3.58	40.10	18.66
(빈곤 감소 효과)	48.30	61.14	40.05	87.04	38.22	61.88	47.04	64.75	50.18	59.24
시장소득+사회보험급여	33.92	11.00	4.14	2.59	12.03	3.91	30.78	6.23	70.77	31.00
(빈곤 감소 효과)	12.32	31.71	5.40	0.00	4.35	8.91	14.47	38.58	12.09	32.29
시장소득+기타 정부보조금	31.71	12.11	3.35	1.12	10.85	2.58	32.71	7.93	61.91	34.98
(빈곤 감소 효과)	18.02	24.80	23.53	56.95	13.78	39.93	9.11	21.92	23.10	23.58
시장소득+기초생활보장급여	37.09	15.74	3.82	2.32	11.46	3.85	32.69	9.73	80.01	45.60
(빈곤 감소 효과)	4.13	2.26	12.77	10.40	8.90	10.41	9.16	4.16	0.61	0.39
가처분소득	21.14	7.30	2.83	0.85	8.79	2.00	20.28	4.60	41.88	20.77
(빈곤 감소 효과)	45.35	54.67	35.30	67.27	30.12	53.51	43.66	54.68	47.97	54.62

주: 빈곤 감소효과는 $(\text{시장소득 빈곤} - \text{해당 소득 빈곤}) \div \text{시장소득 빈곤} \times 100$ 으로 계산하였다. 각 소득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구단위로 분석하였다.

-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부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경상소득 = 시장소득 + 사회보험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 + 기타정부보조금
-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조세 - 사회보험부담금
- 사회보험급여: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 기타 정부보조금: 장애 관련 급여,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유아학비지원,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환급금, 국가유공자 보조금, 긴급복지지원금,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 기타 현금급여 및 현물이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연령집단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 가구의 빈곤율이 높아지는 패턴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19~34세 1인 가구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2.83%였지만,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41.88%로 매우 높았다. 빈곤 위험

이 가장 높은 65세 이상 가구주 집단을 살펴보면, 1인 가구의 사회보험급여 빈곤을 감소 효과가 12.09%로 2인 이상 가구의 32.29%보다 훨씬 작았다. 이는 주로 여성 사별 노인의 국민연금 무연금·저연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1인 가구 노인의 기타 정부보조금 빈곤을 감소 효과는 23.10%로 2인 이상 가구 노인과 유사하였고, 1인 가구 노인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빈곤을 감소 효과는 0.61%로 2인 이상 가구 노인보다는 컸지만 절대적으로 작았다.

〈표 14-1-3〉 1인 가구 빈곤율(빈곤선: 기준중위소득 40%)

(단위: %)

구분	전체		가구주 19~34세		가구주 35~49세		가구주 50~64세		가구주 65세 이상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시장소득	34.13	12.84	3.54	1.85	9.96	3.01	30.73	6.99	73.13	39.06
(빈곤 감소 효과)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경상소득	8.91	3.19	2.04	0.05	4.99	0.95	8.62	1.85	16.27	9.33
(빈곤 감소 효과)	73.88	75.16	42.37	97.07	49.84	68.50	71.94	73.46	77.76	76.11
시장소득+사회보험급여	28.80	8.11	3.31	1.85	9.87	2.57	25.65	3.78	61.03	24.76
(빈곤 감소 효과)	15.61	36.78	6.66	0.00	0.89	14.58	16.52	45.90	16.55	36.60
시장소득+기타 정부보조금	24.85	8.71	2.67	0.62	8.61	2.01	28.39	5.45	45.03	25.48
(빈곤 감소 효과)	27.18	32.12	24.73	66.59	13.54	33.25	7.60	22.06	38.43	34.77
시장소득+기초생활보장급여	29.91	12.43	2.76	1.46	7.20	2.62	21.57	6.51	71.77	38.76
(빈곤 감소 효과)	12.37	3.15	22.10	21.04	27.67	12.94	29.80	6.81	1.86	0.77
가처분소득	9.67	3.72	2.04	0.11	5.86	1.10	9.31	2.34	17.59	10.57
(빈곤 감소 효과)	71.65	71.02	42.37	94.19	41.12	63.40	69.70	66.51	75.95	72.94

주: 빈곤 감소효과는 ((시장소득 빈곤 - 해당 소득 빈곤)÷시장소득 빈곤×100)으로 계산하였다. 각 소득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구단위로 분석하였다.

-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부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경상소득 = 시장소득 + 사회보험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 + 기타정부보조금
-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조세 - 사회보험부담금
- 사회보험급여: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 기타 정부보조금: 장애 관련 급여,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유아학비지원,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환급금, 국가유공자 보조금, 긴급복지지원금,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 기타 현금급여 및 현물이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14-1-3〉에는 기준중위소득 4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1인 가구의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표 14-1-2〉와 유사하게, 2인 이상 가구보다 1인 가구의

빈곤율이 훨씬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 가구의 빈곤율이 높아졌으며, 대체로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빈곤율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으나, 사회보험급여 빈곤율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특히,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의 50%에서 40%로 하향조정하면 전체 1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빈곤율 감소 효과가 4.13%에서 12.37%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표 14-1-4〉 1인 가구 빈곤갭비율(빈곤선: 기준중위소득 50%)

(단위: %)

구분	전체		가구주 19~34세		가구주 35~49세		가구주 50~64세		가구주 65세 이상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시장소득 (빈곤 감소 효과)	24.52 0.00	8.48 0.00	2.02 0.00	1.00 0.00	7.67 0.00	1.99 0.00	24.26 0.00	4.78 0.00	49.94 0.00	25.56 0.00
경상소득 (빈곤 감소 효과)	4.68 80.93	1.56 81.59	1.16 42.72	0.04 96.26	2.71 64.71	0.56 72.00	5.10 78.97	1.05 78.10	7.71 84.56	4.19 83.59
시장소득+사회보험급여 (빈곤 감소 효과)	19.74 19.50	4.72 44.34	1.94 3.63	0.97 3.15	7.50 2.27	1.65 17.21	20.25 16.53	2.49 48.05	38.36 23.18	13.72 46.32
시장소득+기타 정부보조금 (빈곤 감소 효과)	14.27 41.80	5.02 40.79	1.47 27.10	0.33 66.67	5.50 28.32	1.16 41.53	19.16 21.03	3.48 27.26	22.07 55.80	14.07 44.94
시장소득+기초생활보장급여 (빈곤 감소 효과)	17.51 28.58	7.84 7.50	1.53 24.15	0.54 46.14	4.16 45.83	1.51 24.31	12.11 50.10	4.14 13.37	42.78 14.35	24.68 3.42
가처분소득 (빈곤 감소 효과)	5.16 78.96	2.44 71.23	1.28 36.71	0.13 87.37	3.21 58.15	0.77 61.27	5.65 76.71	1.39 70.97	8.36 83.27	7.11 72.16

주: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는 $(\text{시장소득 빈곤갭비율} - \text{해당 소득 빈곤갭비율}) \div \text{시장소득 빈곤갭비율} \times 100$ 으로 계산하였다. 각 소득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부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경상소득 = 시장소득 + 사회보험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 + 기타정부보조금
-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조세 - 사회보험부담금
- 사회보험급여: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 기타 정부보조금: 장애 관련 급여,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유아학비지원,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환급금, 국가유공자 보조금, 긴급복지지원금,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 기타 현금급여 및 현물이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14-1-4〉에는 기준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1인 가구의 빈곤갭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표 14-1-2〉의 빈곤율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2인 이상 가구보다 1인 가구의 빈곤갭비율이 높았으나,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

과가 상당히 커서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가구주 집단을 살펴보면,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각각 41.88%, 20.77%로 그 차이가 상당히 컸지만,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은 각각 8.36%, 7.11%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공적이전소득은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빈곤갭비율을 84.56%나 감소시켰다. 전체 1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는 28.58%였다.

〈표 14-1-5〉 1인 가구 빈곤갭비율(빈곤선: 기준중위소득 40%)

(단위: %)

구분	전체		가구주 19~34세		가구주 35~49세		가구주 50~64세		가구주 65세 이상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시장소득	21.52	7.00	1.54	0.72	6.79	1.61	21.93	3.84	43.17	21.37
(빈곤 감소 효과)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경상소득	2.23	0.79	0.86	0.01	1.81	0.40	2.92	0.65	2.56	1.75
(빈곤 감소 효과)	89.65	88.76	44.54	99.13	73.39	75.32	86.66	83.05	94.07	91.83
시장소득+사회보험급여	16.81	3.54	1.51	0.68	6.60	1.29	18.24	1.89	31.41	10.17
(빈곤 감소 효과)	21.90	49.49	2.10	5.50	2.73	19.90	16.81	50.83	27.24	52.38
시장소득+기타 정부보조금	10.74	3.68	1.07	0.24	4.48	0.89	16.37	2.69	14.06	10.03
(빈곤 감소 효과)	50.07	47.36	30.78	67.09	34.01	44.40	25.36	29.95	67.44	53.04
시장소득+기초생활보장급여	13.44	6.30	1.09	0.24	2.89	1.10	8.19	3.15	34.43	20.33
(빈곤 감소 효과)	37.53	10.02	29.25	66.89	57.46	31.29	62.66	18.06	20.26	4.84
가처분소득	2.61	1.70	0.98	0.02	2.23	0.58	3.40	0.92	2.99	4.99
(빈곤 감소 효과)	87.88	75.76	36.64	96.90	67.14	64.00	84.51	76.02	93.07	76.65

주: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는 $(\text{시장소득 빈곤갭비율} - \text{해당 소득 빈곤갭비율}) \div \text{시장소득 빈곤갭비율} \times 100$ 으로 계산하였다. 각 소득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부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경상소득 = 시장소득 + 사회보험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 + 기타정부보조금
-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조세 - 사회보험부담금
- 사회보험급여: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 기타 정부보조금: 장애 관련 급여,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유아학비지원,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환급금, 국가유공자 보조금, 긴급복지지원금,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 기타 현금급여 및 현물이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14-1-5〉에는 기준중위소득 4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1인 가구의 빈곤갭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2인 이상 가구보다 1인 가구의 시장소득 빈곤갭비율

이 뚜렷하게 높았지만,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가 상당히 커서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공적이전소득은 전체 1인 가구의 빈곤갭비율을 89.65%나 감소시켰고,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전체 1인 가구의 빈곤갭비율을 37.53% 감소시켰다. 요컨대,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의 50%에서 40%로 하향조정하고 빈곤율이 아닌 빈곤갭비율을 활용하여 극빈층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를 평가하면, 현행 소득보장제도의 조합이 1인 가구의 빈곤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1인 가구 심층조사 분석

다음으로 제2절에서는 1인 가구 대상 심층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2021년 국민생활 실태조사에서는 방문한 1인 가구 중 짝수번째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의 돌봄 실태 및 정책 욕구를 심층조사하였다. 1인 가구 심층조사 표본은 2,558명이었고, 빈곤지위와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위집단별 표본 사례 수는 <표 14-2-1>과 같다. 19~34세 빈곤 1인 가구와 35~49세 빈곤 1인 가구는 사례 수가 작아 분석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

<표 14-2-1> 1인 가구 심층조사 표본 사례 수

(단위: 가구)

구분	전체	연령			
		19~34세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전체	2,558	404	327	731	1,096
비빈곤	1,915	395	295	571	654
빈곤	643	9	32	160	442

주: 빈곤은 가처분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의미한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14-2-2>에는 현재 일상생활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93.16%는 돌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5.93%는 신체적 돌봄이 아닌 일상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일상생활의 돌봄서비스나 전문적 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 미만이었다. 하위집단별로 살펴보

면, 대체로 연령이 높고 빈곤한 1인 가구의 돌봄 필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돌봄 필요 비율은 18.50%였고, 65세 이상 빈곤 1인 가구의 돌봄 필요 비율은 24.16%였다.

〈표 14-2-2〉 일상생활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지 여부

(단위: %)

구분	특정대상(노인,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 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	일상생활(옷입기, 씻기, 이동 등)의 어려움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	신체적 돌봄이 아닌 일상지원(가사생활 등) 서비스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계	N
전체	0.43	0.48	5.93	93.16	100.00	2,558
비빈곤	0.41	0.43	3.78	95.39	100.00	1,915
빈곤	0.51	0.67	14.43	84.39	100.00	643
19~34세	0.00	0.00	0.40	99.60	100.00	404
비빈곤	0.00	0.00	0.42	99.58	100.00	395
빈곤	-	-	-	-	-	-
35~49세	0.74	0.26	0.71	98.29	100.00	327
비빈곤	0.82	0.29	0.58	98.31	100.00	295
빈곤	-	-	-	-	-	-
50~64세	0.22	0.11	4.61	95.06	100.00	731
비빈곤	0.28	0.14	3.46	96.12	100.00	571
빈곤	0.00	0.00	8.83	91.17	100.00	160
65세 이상	0.88	1.56	16.06	81.50	100.00	1,096
비빈곤	0.77	1.71	12.25	85.28	100.00	654
빈곤	1.04	1.35	21.77	75.84	100.00	442

주: 빈곤은 가처분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의미한다. 19~34세 빈곤 1인 가구, 35~49세 빈곤 1인 가구는 사례 수가 작아 분석 결과를 생략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14-2-3〉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계	N
전체	56.64	43.36	100.00	249
비빈곤	67.38	32.62	100.00	119
빈곤	44.11	55.89	100.00	130

주: 빈곤은 가처분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의미한다.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14-2-3〉에는 현재 일상생활을 위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

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의 56.64%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빈곤 1인 가구의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비율은 44.11%로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빈곤 1인 가구의 미충족 돌봄 욕구가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14-2-4〉 일상생활을 하는 데 주로 도와주는 사람

(단위: %)

구분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조부모	손자녀	기타 가족
전체	0.00	6.43	33.39	5.16	0.00	0.00	0.00
비빈곤	0.00	10.04	29.34	4.44	0.00	0.00	0.00
빈곤	0.00	0.00	40.60	6.46	0.00	0.00	0.00
구분	친척, 이웃, 친구, 지인	개인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공공서비스 인력	복지관 등 생활지원 도움인력	기타	계	N
전체	8.97	2.47	40.83	2.75	0.00	100.00	142
비빈곤	4.61	3.21	44.76	3.60	0.00	100.00	82
빈곤	16.74	1.14	33.83	1.24	0.00	100.00	60

주: 빈곤은 가처분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의미한다.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14-2-4〉에서는 현재 일상생활을 위해 돌봄이 필요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주로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석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공공서비스 인력이 40.83%로 가장 많았고, 자녀 33.39%, 친척, 이웃, 친구, 지인 8.97%, 부모 6.43%, 형제, 자매 5.16%, 복지관 등 생활지원 도움인력 2.75%, 개인 간병인이나 가사 도우미 2.47% 등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은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 인력이 도와주는 비율이 낮았고 자녀, 친척, 이웃, 친구, 지인, 형제, 자매 등이 도와주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본인부담 등으로 인해 빈곤 1인 가구가 공적 돌봄 지원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14-2-5〉에서는 현재 일상생활을 위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이용하거나 도움을 받고 있는 돌봄이 충분한지를 분석하였다.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사례 중에서 돌봄이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4%에 불과하였고,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8.99%에 그쳤으며, 부족하다는 응답과 매우 부족하다는 응

답의 비율은 각각 37.56%, 15.74%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빈곤 1인 가구가 받은 돌봄은 더욱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이 필요한 빈곤 1인 가구의 49.29%는 돌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18.48%는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14-2-5〉 이용하거나 도움을 받고 있는 돌봄의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충분	매우 충분	계	N
전체	15.74	37.56	24.67	18.99	3.04	100.00	249
비빈곤	13.38	27.51	29.08	24.37	5.65	100.00	119
빈곤	18.48	49.29	19.52	12.70	0.00	100.00	130

주: 빈곤은 가처분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의미한다.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14-2-6〉에는 현재 일상생활을 위해 돌봄이 필요하지만 돌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돌봄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돌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1인 가구의 56.45%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16.96%는 돌봄서비스 외 가사서비스 등의 돌봄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돌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빈곤 1인 가구의 경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응답,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 돌봄서비스 외 가사서비스 등의 돌봄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14-2-6〉 일상생활 돌봄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

(단위: %)

구분	혼자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하여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어서	돌봄서비스 이용 한계가 있어서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이 부담되어서	돌봄서비스 외의 돌봄(가사서비스 등)이 더 필요해서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타	계	N
전체	0.00	56.45	7.55	10.03	16.96	8.06	0.95	100.00	136
비빈곤	0.00	51.24	13.18	7.86	15.75	10.73	1.24	100.00	51
빈곤	0.00	60.11	3.59	11.56	17.82	6.18	0.74	100.00	85

주: 빈곤은 가처분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의미한다.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하지만 이용하거나 도움을 받고 있는 돌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14-2-7〉 혼자 생활하면서 곤란하거나 힘들었던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N
경제적 어려움	15.05	25.19	19.64	27.45	12.66	100.00	2,558
여가, 문화, 체육 활동의 어려움	18.98	41.75	18.39	17.46	3.41	100.00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11.86	30.83	17.84	30.79	8.68	100.00	
식생활의 어려움	18.27	38.58	22.52	17.22	3.41	100.00	
안전에 대한 불안감	20.84	43.54	17.59	15.22	2.82	100.00	
집안일의 어려움	21.30	40.82	20.30	14.56	3.03	100.00	
혼자 살아가는 고독감이나 외로움	12.56	30.97	21.27	28.64	6.55	100.00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주위 시선이나 편견	27.26	48.08	15.46	7.86	1.33	100.00	
정부 정책·제도로부터의 소외나 불이익	18.74	47.18	21.13	9.95	3.00	10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14-2-7〉에는 혼자 생활하면서 곤란하거나 힘들었던 점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대체로 1인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혼자 살아가는 고독감이나 외로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곤란하거나 힘들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12.66%,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27.45%였다.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어려워 곤란하거나 힘들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8.68%,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30.79%였다. 혼자 살아가는 고독감이나 외로움으로 곤란하거나 힘들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6.55%,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28.64%로 나타났다.

〈표 14-2-8〉에서는 항목별로 혼자 생활하면서 곤란하거나 힘들었는지를 조사하여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를 응답한 비율을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1인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혼자 살아가는 고독감이나 외로움으로 곤란하거나 힘들었다는 응답이 각각 40.11%, 39.47%, 35.2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빈곤 1인 가구는 대체로 비빈곤 1인 가구에 비해 혼자 생활하면서 곤란하거나 힘들었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곤란하거나 힘들었다는 응답이 72.7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빈곤이 1인 가구의 어려움을 가중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표 14-2-8〉 혼자 생활하면서 곤란하거나 힘들었는지 여부

(단위: %)

구분	경제적 어려움	여가, 문화, 체육 활동의 어려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식생활의 어려움	안전에 대한 불안감
전체	40.11	20.87	39.47	20.63	18.04
비빈곤	31.84	16.42	33.95	17.31	17.51
빈곤	72.77	38.46	61.24	33.73	20.09
19~34세	14.41	10.31	21.50	11.91	21.07
비빈곤	12.62	8.59	21.30	12.01	21.26
빈곤	-	-	-	-	-
35~49세	25.01	13.79	21.99	12.63	16.80
비빈곤	20.18	10.17	20.73	12.44	16.59
빈곤	-	-	-	-	-
50~64세	52.72	26.24	45.06	23.26	17.96
비빈곤	45.40	22.74	40.06	19.55	16.11
빈곤	79.53	39.05	63.37	36.86	24.72
65세 이상	53.32	26.62	58.19	29.50	16.47
비빈곤	43.68	21.23	52.91	25.19	16.10
빈곤	67.75	34.69	66.10	35.96	17.01
구분	집안일의 어려움	혼자 살아가는 고독감이나 외로움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주위 시선이나 편견	정부 정책·제도로 부터의 소외나 불이익	N
전체	17.59	35.20	9.19	12.95	2,558
비빈곤	15.43	29.67	8.31	13.08	1,915
빈곤	26.12	56.99	12.67	12.43	643
19~34세	10.01	8.55	1.90	12.01	404
비빈곤	9.89	8.79	1.95	11.38	395
빈곤	-	-	-	-	-
35~49세	12.47	21.82	6.63	13.84	327
비빈곤	13.13	21.21	6.84	14.50	295
빈곤	-	-	-	-	-
50~64세	16.45	42.78	14.48	15.07	731
비빈곤	15.19	37.49	13.53	14.96	571
빈곤	21.03	62.16	17.95	15.50	160
65세 이상	29.10	55.41	9.25	10.01	1,096
비빈곤	25.74	51.57	8.36	10.32	654
빈곤	34.13	61.17	10.57	9.55	442

주: 빈곤은 가처분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의미한다.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를 응답한 비율을 분석하였다. 19~34세 빈곤 1인 가구, 35~49세 빈곤 1인 가구는 사례 수가 작아 분석 결과를 생략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14-2-9〉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	N
주거	보증금, 월세 등 주거비 보조	2.80	11.33	12.38	43.76	29.73	100.00	2,558
	주택 관련 대출 및 이자 지원	2.87	13.10	13.70	45.32	25.01	100.00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 요건 개선	2.15	8.51	10.19	45.59	33.55	100.00	
	자가 소유 지원	2.85	14.13	18.11	43.77	21.15	100.00	
	주택 개량 및 개보수 지원	2.64	15.52	20.30	44.82	16.71	100.00	
	주거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1.71	11.79	16.01	50.02	20.47	100.00	
건강	건강 관리, 의료 지원	1.02	7.72	15.82	49.86	25.59	100.00	
	균형 잡힌 식생활 지원	1.96	15.03	22.38	45.41	15.22	100.00	
사회 관계망	사회관계망 형성	2.99	17.20	30.04	39.71	10.06	100.00	
	문화·여가 지원	2.34	20.94	32.92	36.84	6.96	100.00	
	마음 검진·상담	2.00	17.62	23.43	45.56	11.40	100.00	
	고립·고독 방지	2.00	15.21	18.13	48.22	16.43	100.00	
경제	일자리 제공	2.64	11.67	14.31	44.49	26.88	100.00	
	취·창업 상담 및 교육	2.77	13.99	19.20	45.03	19.01	100.00	
	생계비 지원	1.62	10.64	16.50	43.24	27.99	100.00	
안전	치안, 방법 등 안전 지원	2.24	11.63	21.81	45.86	18.46	10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14-2-9〉에는 1인 가구에 대한 분야별 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정책 필요도가 가장 높게 조사된 항목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 요건 개선으로, 33.55%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45.59%가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밖에 건강관리 및 의료 지원, 주거비 보조, 일자리 제공, 생계비 지원, 주택 관련 대출 및 이자 지원, 주거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필요가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다.

〈표 14-2-10〉에는 항목별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여 ‘대체로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를 응답한 비율을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1인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 요건 개선, 건강 관리 및 의료 지원, 주거비 보조, 일자리 제공, 생계비 지원, 주거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주택 관련 대출 및 이자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빈곤 1인 가구는 생계비 지원, 건강 관리 및 의료 지원, 주거비 보조, 고립·고독 방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 요건 개선, 균형 잡힌 식생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4-2-10〉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단위: %)

구분	보증금, 월세 등 주거비 보조	주택 관련 대출 및 이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 요건 개선	자가 소유 지원	주택 개량 및 개보수 지원	주거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건강 관리, 의료 지원	균형 잡힌 식생활 지원
전체	73.49	70.33	79.14	64.92	61.53	70.49	75.45	60.63
비빈곤	73.36	73.40	80.51	68.64	60.84	72.41	72.76	57.58
빈곤	74.00	58.23	73.76	50.22	64.27	62.89	86.06	72.67
19~34세	80.17	87.34	88.46	80.62	53.07	76.64	55.15	44.47
비빈곤	79.85	87.22	88.37	80.55	53.03	76.62	55.89	45.15
빈곤	-	-	-	-	-	-	-	-
35~49세	73.82	78.22	84.03	72.21	57.52	74.09	62.43	50.59
비빈곤	73.01	78.45	84.49	74.65	57.57	76.00	62.03	51.03
빈곤	-	-	-	-	-	-	-	-
50~64세	76.02	70.13	81.20	64.60	64.72	72.09	81.03	62.27
비빈곤	74.51	71.29	80.60	66.79	64.79	72.85	79.36	59.53
빈곤	81.56	65.90	83.42	56.57	64.46	69.30	87.13	72.33
65세 이상	63.96	51.05	65.00	47.29	66.64	60.52	93.07	78.54
비빈곤	62.73	53.59	65.60	49.89	67.14	62.16	93.88	77.36
빈곤	65.79	47.25	64.10	43.40	65.89	58.07	91.84	80.31

구분	사회관계망 형성	문화·여가 지원	마음 검진·상담	고립·고독 방지	일자리 제공	취·창업 상담 및 교육	생계비 지원	치안, 방범 등 안전 지원	N
전체	49.77	43.80	56.96	64.65	71.37	64.04	71.23	64.32	2,558
비빈곤	49.67	43.52	55.56	62.33	72.21	65.98	66.52	66.04	1,915
빈곤	50.17	44.88	62.46	73.81	68.06	56.41	89.83	57.53	643
19~34세	41.74	44.74	46.93	52.81	69.10	66.19	52.94	70.62	404
비빈곤	42.10	44.56	47.62	53.26	69.03	66.68	52.17	71.23	395
빈곤	-	-	-	-	-	-	-	-	-
35~49세	41.03	39.59	51.82	56.01	73.34	69.36	62.50	60.36	327
비빈곤	42.69	39.86	51.57	55.79	73.26	69.90	58.88	61.29	295
빈곤	-	-	-	-	-	-	-	-	-
50~64세	54.06	43.27	58.74	65.91	77.59	69.76	79.09	64.30	731
비빈곤	53.69	41.85	56.69	63.45	77.71	70.72	75.93	66.38	571
빈곤	55.44	48.44	66.26	74.95	77.17	66.24	90.65	56.68	160
65세 이상	56.12	46.68	66.21	78.60	62.75	50.18	80.90	61.81	1,096
비빈곤	59.33	49.11	68.27	79.21	64.83	51.81	75.65	63.25	654
빈곤	51.32	43.03	63.14	77.69	59.65	47.74	88.74	59.66	442

주: 빈곤은 가처분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의미한다. '대체로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를 응답한 비율을 분석하였다. 19~34세 빈곤 1인 가구, 35~49세 빈곤 1인 가구는 사례 수가 작아 분석 결과를 생략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14-2-11〉 1인 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분야

(단위: %)

구분	주거	건강	사회관계망	경제	안전	계	N
전체	29.53	23.73	4.78	35.39	6.56	100.00	2,558
비빈곤	33.58	20.67	5.38	32.64	7.74	100.00	1,915
빈곤	13.56	35.80	2.44	46.27	1.94	100.00	643
19~34세	51.79	2.88	4.08	28.12	13.14	100.00	404
비빈곤	52.11	2.96	4.19	27.22	13.51	100.00	395
빈곤	-	-	-	-	-	-	-
35~49세	38.00	12.53	7.36	33.28	8.82	100.00	327
비빈곤	38.25	11.56	7.64	33.09	9.47	100.00	295
빈곤	-	-	-	-	-	-	-
50~64세	23.63	25.60	3.79	42.63	4.35	100.00	731
비빈곤	26.36	25.57	4.59	38.43	5.05	100.00	571
빈곤	13.64	25.69	0.87	58.00	1.80	100.00	160
65세 이상	13.85	46.04	5.06	32.25	2.80	100.00	1,096
비빈곤	17.63	44.55	6.16	28.32	3.33	100.00	654
빈곤	8.21	48.26	3.41	38.13	1.99	100.00	442

주: 빈곤은 가처분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의미한다. 19~34세 빈곤 1인 가구, 35~49세 빈곤 1인 가구는 사례 수가 작아 분석 결과를 생략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표 14-2-11〉에는 주거, 건강, 사회관계망, 경제, 안전 중에서 1인 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분야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전체 1인 가구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35.39%), 주거(29.53%), 건강(23.73%)에 대한 정책 지원 욕구가 크게 나타났다. 빈곤 1인 가구의 경우, 경제와 건강에 대한 정책 지원 욕구는 상대적으로 컸지만, 주거, 사회관계망, 안전에 대한 정책 지원 욕구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거에 대한 정책 지원 욕구가 감소하였고 건강에 대한 정책 지원 욕구가 증가하였으며, 경제에 대한 정책 지원 욕구는 대체로 고르게 나타났다.

제3절 1인 가구 급여 적정성 분석(다른 규모의 가구와 비교)

가구균등화 지수를 활용하여 1인 가구 적정성을 다른 가구 규모와 비교하였다. 가구 균등화지수는 가구균등화지수(Household Equivalence Scale)는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구성에 따라 가구의 효용수준이 달라진다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구사회학적 구성이 다른 가구들 간 효용수준의 차이를 동일한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출비용을 계산한 것을 의미한다(김태완 외, 2013).

주요 균등화지수로는 첫째, OECD 균등화 방식은 첫 번째 성인(가구주를 의미)에게는 1의 가중치를 그 다음부터 성인 1인이 추가되면 0.7, 아동 1인이 추가되면 0.5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며, 제공근방식은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공급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이는 추가적인 구성원의 성과 연령에 상관없이 가구원수만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식이다.

주요 가구 균등화지수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3가지 안을 적용하였으며, 1)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가구균등화 지수¹⁸⁷⁾, 2)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가구균등화 지수¹⁸⁸⁾, 3) OECD 제공근지수¹⁸⁹⁾가 해당된다.

〈표 14-3-1〉 주요 가구균등화지수

가구원수	1	2	3	4	5
	(성인1인)	(성인2인)	(성인2인 +아동1인)	(성인2인 +아동2인)	(성인2인 +아동3인)
1인) 2023년 적용 가구균등화 지수	0.385	0.640	0.821	1.000	1.172
2인) 2020년 적용 가구균등화 지수 (OECD균등화: 성인 0.7, 아동 0.5)	0.370	0.630	0.815	1.000	1.185
3인) OECD 제공근지수	0.500	0.705	0.865	1.000	1.120

분석방법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선(40%) 대비 2023년 전물량 최저생계비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선(40%) 대비 2023년 전물량 최저생계비에 주요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1인 및 2인 가구 급여적정성을 평가하였다.

187)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각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로 계산(1인 0.385, 2인 0.640)

188) OECD 균등화 방식과 동일(1인 0.370, 2인 0.630)

189) 1인 0.500, 2인 0.705

계측된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 타법지원액을 감한 금액을 위에 제시된 3가지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1인가구 최저생계비와 2023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와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1안과 2안의 경우, 2023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와 비교한 결과 연구진안과 비교안 모두에서 현재 생계급여 기준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제곱근 지수를 적용한 3안의 경우만 현재 생계급여 기준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계측된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 타법지원액을 감한 금액을 위에 제시된 세 가지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2인가구 최저생계비와 2023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0%와 비교하면, 앞서 살펴본 1인가구와 마찬가지로 제곱근 지수를 적용한 3안의 경우에만 현재 생계급여 기준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3-2〉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안) 비교 (1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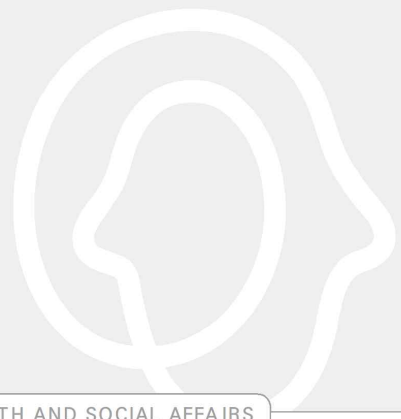
		1안	
		'23년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	비고
'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831,157원	표준가구 4급지 변동시(광역시/세종/창원) 934,758원	103,602원 (12.5%↑)
		표준가구 3급지 유지시(중소도시) 918,159원	87,002원 (10.5%↑)
		'23년 물가상승을 적용 최저생계비	
		'20년 1인가구 중소도시 최저생계비에 총물가지수 적용시 903,323원 항목별물가 지수 적용시 919,050원	72,166원 (8.7%↑) 87,894원 (10.6%↑)
		2안	
'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831,157원	표준가구 4급지 변동시(광역시/세종/창원) 898,979원	67,822원 (8.2%↑)
		표준가구 3급지 유지시(중소도시) 883,014원	51,857원 (6.2%↑)
		'23년 물가상승을 적용 최저생계비	
		'20년 1인가구 중소도시 최저생계비에 총물가지수 적용시 868,746원 항목별물가 지수 적용시 883,872원	37,590원 (4.5%↑) 52,715원 (6.3%↑)
		3안	
'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831,157원	표준가구 4급지 변동시(광역시/세종/창원) 1,214,836원	383,679원 (46.2%↑)
		표준가구 3급지 유지시(중소도시) 1,193,263원	362,106원 (43.6%↑)
		'23년 물가상승을 적용 최저생계비	
		'20년 1인가구 중소도시 최저생계비에 총물가지수 적용시 1,173,982원 항목별물가 지수 적용시 1,194,422원	342,825원 (41.2%↑) 363,265원 (43.7%↑)
		1안	
'23년 생계급여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623,368원	표준가구 4급지 변동시(광역시/세종/창원) 574,330원	▽ 49,038원 (7.9%↓)
		표준가구 3급지 유지시(중소도시) 571,148원	▽ 52,220원 (8.4%↓)
		'23년 타법지원액을 감액한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	
		2안	
'23년 생계급여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623,368원	표준가구 4급지 변동시(광역시/세종/창원) 552,346원	▽ 71,022원 (11.4%↓)
		표준가구 3급지 유지시(중소도시) 549,286원	▽ 74,082원 (11.9%↓)
		'23년 타법지원액을 감액한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	
		3안	
'23년 생계급여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623,368원	표준가구 4급지 변동시(광역시/세종/창원) 746,414원	123,046원 (19.7%↑)
		표준가구 3급지 유지시(중소도시) 742,279원	118,911원 (19.1%↑)

주: (1안)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2안) 2020년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3안) 제곱근지수 적용

〈표 14-3-3〉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안) 비교 (2인 가구)

'23년 기준 중위소득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1,382,462원	⇔	1안	
		'23년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	비고
		표준가구 4급지 변동시(광역/세종/창원) 1,554,782원	172,320원 (12.5%↑)
		표준가구 3급지 유지시(중소도시) 1,527,172원	144,710원 (10.5%↑)
'23년 기준 중위소득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1,382,462원	⇔	2안	
		'23년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	비고
		표준가구 4급지 변동시(광역/세종/창원) 1,530,693원	148,231원 (10.7%↑)
		표준가구 3급지 유지시(중소도시) 1,503,511원	121,049원 (8.8%↑)
'23년 기준 중위소득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1,382,462원	⇔	3안	
		'23년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	비고
		표준가구 4급지 변동시(광역/세종/창원) 1,712,919원	330,457원 (23.9%↑)
		표준가구 3급지 유지시(중소도시) 1,682,500원	300,038원 (21.7%↑)
'23년 생계급여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1,036,847원	⇔	1안	
		'23년 타법지원액을 감액한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	비고
		표준가구 4급지 변동시(광역/세종/창원) 955,282원	▽ 81,565원 (7.9%↓)
		표준가구 3급지 유지시(중소도시) 949,990원	▽ 86,857원 (8.4%↓)
'23년 생계급여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1,036,847원	⇔	2안	
		'23년 타법지원액을 감액한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	비고
		표준가구 4급지 변동시(광역/세종/창원) 940,481원	▽ 96,365원 (9.3%↓)
		표준가구 3급지 유지시(중소도시) 935,271원	▽101,576원 (9.8%↓)
'23년 생계급여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1,036,847원	⇔	3안	
		'23년 타법지원액을 감액한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	비고
		표준가구 4급지 변동시(광역/세종/창원) 1,052,443원	15,597원 (1.5%↑)
		표준가구 3급지 유지시(중소도시) 1,046,613원	9,766원 (0.9%↑)

주: (1안)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2안) 2020년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3안) 제곱근지수 적용



제 15 장

결론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제2절 향후 연구 및 개선 방향

제15장 결론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자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도입 당시에는 최저생계비가 급여 선정 및 지급 수준의 기준으로 적용되었으며, 모든 급여가 한꺼번에 지급되는 통합급여 형태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2015년 7월부터는 개별급여 형태인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급여선정의 기준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되어, 각 급여의 선정 기준선은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책정되게 되었다. 제도 개편을 통해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욕구 충족의 제고를 위해 개별급여가 도입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급여 선정 기준선의 상향으로인해 이전 통합급여 방식보다 급여 수준이 제고되었고 대상자의 확대가 이뤄졌다. 하지만 정책기준선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의 경우 상대적 방식의 특성에 따른 변동성으로 인해 이를 적용하여 대상자에게 급여가 지급될 경우 해당 급여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비교기준이 요구되어졌으며, 이로 인해 3년 마다 계측되어 제시된 최저생계비의 경우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제시하되, 더 이상 급여 선정 및 급여 수준의 결정 기준이 아닌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들의 적정성 평가의 판단근거로 활용되게되었다. 한편,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는 복지욕구 실태조사가 2004년 이후 네 차례 실시되었는데,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으로 인해 해당 조사와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규모·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포괄하여 수행하는 국민생활실태조사가 2017년부터 이번 연구까지 세차례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상대적 빈곤선 도입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결정되는 현 급여 수준의 적정성을 최저생계비와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고 맞춤형 급여로 전환된 이후 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2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 및 잠재적 정책표적집단으로써의 차상위 계층 등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규모 추정을 통해 제도의 포괄성을 평가하

고, 이들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개선의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향후 정책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급여의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의 평가도 수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실태조사 및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와 그 결과를 활용한 분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빈곤층 실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저생계비 계측 및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와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를 활용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빈곤층 실태분석 결과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수급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20명으로 전체가구 2.29명의 약 절반 수준이고, 1인 가구의 비중도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32.8%)에 비해 수급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6.0%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가구 외에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비수급 빈곤층 가구의 경우에서도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68.3%로 다른 규모의 가구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인가구,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정 및 조손가구 등 다른 유형에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들이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였지만, 수급가구에서는 그 비중이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가구에 비하여 수급가구의 노인가구 비율이 11.6%포인트 더 높으며, 장애인가구 비율의 비율은 3.6배에 달한 정도로 높지만, 아동가구는 그 비율이 약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가구는 노인가구 비율이 55.7%로 전체가구(28.7%)에 비해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주가 비경제활동 인구인 경우는 수급가구는 전체가구 대비 약 3.7배에 달하고,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는 3.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과 지출 실태를 살펴보면, 수급가구의 총소득 및 경상소득은 각각 118.1만원, 117만원으로 나타나,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및 30~40% 이하 생계·의료

급여 비수급 가구보다 높았으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제외한 소득은 수급가구에 비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및 30~40% 이하 비수급 가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적이전소득 여부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가구 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생활비(월세포함) 규모는 전체가구는 357.9만원, 수급가구는 112.8만원으로 나타났다. 기준 중위소득 30~40% 비수급 빈곤층은 101.5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가구의 28.4%, 수급가구의 90.0%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총자산 수준은 수급가구가 1,677만원으로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빈곤층보다 약 734만원 정도 더 높게 나타났으며, 기준중위소득 30~40% 비수급빈곤층 보다는 약 465만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급가구 재산의 약 80% 정도가 거주용 재산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비수급빈곤층(기준중위소득 30% 이하, 30~40% 이하)의 총재산에서 거주용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67.5%, 68.3%)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급가구의 재산이 거주용 재산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주요 욕구별 실태를 살펴보면, 의료, 자녀교육 영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수급가구의 결핍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빈곤층이 수급집단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 저축(미래대비)에 대한 결핍비율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비수급빈곤층 집단들에서 수급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한편, 절대적 박탈 경험(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비율) 비율은 중위소득 30% 이하 빈곤층이 수급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의료 욕구와 관련해서는 최근 1년간 의료비 부담에 대해 의료비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전체가구 28.1%,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비수급빈곤층 집단에서는 50%대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수급가구는 25.4%로 의료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에서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수급가구가 91.0%로, 다른 모든 집단들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진료비 부담으로 발생하는 미충족 의료욕구(치료포기 경험)의 경우 수급가구 보다 기준중위소득 60%이하(30-40% 제외)의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주거욕구와 관련해서는 수급가구의 경우 주거점유형태에서 보증부 월세의 비중(72.7%)이 가장 크고, 주택가격과 전세금과 같은 주거자산은 전체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난방을 못한 경험은 전체가구가 1.3%인 반면 수급가구는 9.8%,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빈곤층 15.6%로 나타났다. 난방을 못한 경험 역시 수급가구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빈곤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비수급빈곤층이 수급가구 보다 난방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욕구와 관련해서 수급가구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에 초·중·고생이 있는 비율은 각각 4.2%, 6.1%이며, 대학생이 있는 비율은 각각 1.3%,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원수강·과외 욕구와 참고서나 도서 구입의 경우 박탈이 수급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고 있으며, [꼭필요-못함]에 초점을 맞출 경우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집단들에서 소득인정액 수준이 낮을수록 박탈의 정도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

본 연구에서는 2023년 최저생계비를 다양한 방법으로 계측했는데, 전물량 방식으로 측정한 최저생계비와 직전에 계측된 최저생계비(김문길 외, 2020) 값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계측치 그리고 기타 측정방식(박탈·반물량·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제시하였다. 전물량 방식으로 계측한 최저생계비는 연구진안과 비교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연구진안은 현행 지역구분(4개 급지)에 따라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의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되, 그중 중위소득 및 급여적정성 비교의 기준으로 '광역·세종·창원'의 4인 표준가구를 적용하였다. 한편, 비교안은 과거 지역구분의 기준이었던 3개 급지를 적용한 계측 값을, 현행 4개 급지 계측 값의(연구진안)의 비교 용도로 활용하고자 계측하였으며, 과거 중위소득 및 급여적정성 비교의 기준이었던 '중소도시'의 4인 표준가구 최저생계비를 현행 '광역·세종·창원'의 4인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였다.

현행 지역구분(4급지)을 적용한 2023년 최저생계비 연구진안은 서울 2,736,294원, 경기 2,593,239원, 광역/세종/창원 2,429,672원, 그 외 지역 2,280,843원으로 계측되었다. 한편, 급지를 2020년과 동일하게 3급지로 유지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대도시 2,529,148원, 중소도시 2,386,525원, 농어촌 2,209,798원으로 계측되었다. 한편,

202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률만 반영하여 계측한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총물가지수를 반영한 경우 2,347,963원, 항목별로 물가지수를 반영한 경우 2,388,843원으로 나타나, 두 결과 값 모두 앞서 언급한 연구진안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급여적정성 평가의 기준으로 지역구분을 광역/세종/창원을 적용한 4인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429,672원으로 산출되었는데, 이는 시계열적 비교의 연속성 차원에서 과거 3급지 지역구분에서 급여적정성의 기준으로 적용된 중소도시의 최저생계비인 2,386,525원 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지역구분의 변경으로 인해 2023년 연구진안과 2020년 연구진안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어, 2023년 비교안과 2020년 연구진안을 비교한 결과 2023년의 경우 2020년보다 최저생계비가 약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1-1〉 2023년 최저생계비(연구진안, 비교안)와 2020년 연구진안 비교

(단위: 원/월, %)

구분	2023년 연구진안 (광역·세종·창원)		2023년 비교안 (중소도시)			2020년 연구진안 (중소도시)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2020년 대비 증가율	금액	구성비
식료품비	894,118	36.1	894,118	37.5	15.9	771,345	36.1
주거비	394,724	16.0	359,994	15.1	5.7	340,582	16.0
수도광열비	124,251	4.8	116,398	4.9	13.7	102,349	4.8
가구집기비	59,996	2.5	59,427	2.5	11.2	53,463	2.5
피복신발비	106,564	4.6	106,564	4.5	8.2	98,499	4.6
보건의료비	96,904	4.3	96,904	4.1	6.2	91,239	4.3
교육비	125,501	5.0	125,501	5.3	18.7	105,694	5.0
교양오락비	86,966	3.7	86,966	3.6	11.4	78,071	3.7
교통통신비	196,450	9.0	196,450	8.2	2.3	192,032	9.0
기타소비지출	155,286	6.5	155,286	6.5	11.5	139,273	6.5
비소비지출	188,912	7.6	188,917	7.9	16.7	161,945	7.6
합계	2,429,672	100.0	2,386,525	100.0	11.8	2,134,492	100.0

자료: 연구진 작성, 김문길 외(2020).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3.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기초생활보장제의 평가를 대상자 포괄성, 급여의 적정성, 급여효과 및 효율성 측면에서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자 포괄성에 대한 평가는 소득계층 구간별 규모 추정을 바탕으로, 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 집단과 기준중위소득 40%~50% 집단의 규모 추정을 통해 이뤄진다. 2021년 기준으로 수급자를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의료 급여 총 수급자와 비수급빈곤층(차상위포함)의 합으로, 2018년 272만명 대비 2021년 291만명으로 나타나, 그 규모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급빈곤층은 감소하였지만 수급자가 대폭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018년 140만명(93만가구)에서 2021년 166만명(118만가구)로 증가하였으며, 시설 수급자와 다른 급여 수급자까지 포함한 기초생활보장 총수급자는 2018년 174만명에서 2021년 236만명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비수급빈곤층 규모를 살펴보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는 2018년(73만명) 대비 7만명 감소한 66만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까지 범위를 확대한 경우 비수급빈곤층은 2018년(132만명) 대비 6만명 감소한 125만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15-1-1] 비수급빈곤층 변화

2005년 실태조사* (*03년 기준)		2008년 실태조사* (*06년 기준)		2011년 실태조사* (*10년 기준)		2015년 실태조사** (*14년 기준)		2017년 실태조사** (*15년 기준)		2020년 실태조사** (*18년 기준)		2023년 실태조사** (*21년 기준)	
최저 생계비 이하	177만명 (85만가구)	최저 생계비 이하	103만명 (53만가구)	최저 생계비 이하	117만명 (66만가구)	최저 생계비 이하	118만명 (71만가구)	중위 40% 이하	93만명 (63만가구)	중위 40% 이하	73만명 (48만가구)	중위 40% 이하	66만명 (46만가구)
최저 생계비 ~ 120%	86만명 (35만가구)	최저 생계비 ~ 120%	67만명 (29만가구)	최저 생계비 ~ 120%	68만명 (36만가구)	중위 40% ~ 50%	85만명 (45만가구)	중위 40% ~ 50%	51만명 (30만가구)	중위 40% ~ 50%	59만명 (34만가구)	중위 40% ~ 50%	59만명 (37만가구)
계(차상위포함)	263만명 (120만가구)	계(차상위포함)	170만명 (82만가구)	계(차상위포함)	185만명 (102만가구)	계(차상위포함)	203만명 (116만가구)	계(차상위포함)	144만명 (93만가구)	계(차상위포함)	132만명 (82만가구)	계(차상위포함)	125만명 (83만가구)

* 최저생계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기준

자료: 이현주 외(2005),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p172).

이현주 외(2008), 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p172).

이태진 외(2011), 빈곤정책 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p196).

이태진 외(2015), 2014년 복지욕구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p91).

김태완 외(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p48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급여의 적정성은 계측된 2023년 최저생계비에서 타법지원액을 제외한 현금급여기준선과 2023년 현행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평가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4인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현행 4급지의 지역구분 중 광역/세종/창원인 경우의 최저생계비와 과거 3급지 유지시 중소도시의 최저생계비에서 2023년 기준 타법지원액을 제외한 최저생계비를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0%인 1,620,289원과 비교하고 있다. 비교결과 연구진안(광역/세종/창원)은 현행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의 30% 보다 127,462원 (7.9%↓) 적은 것으로, 비교안(중소도시)은 135,732원 (8.4%↓)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진안과 비교안 모두에서 현재 생계급여 기준선보다 낮은 것으로 볼 때 현행 급여수준을 적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5-1-2] 생계급여 적정성 평가

'23년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		'23년 물가상승을 적용 최저생계비
표준가구 4급지 변동시(광역/세종/창원)	2,429,672원	'20년 4인가구 중소도시 최저생계비에 총물가지수 적용시 2,347,963원 항목별물가지수 적용시 2,388,843원
표준가구 3급지 유지시(중소도시)	2,386,525원	

'23년 생계급여	'23년 타법지원액을 감액한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	비교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1,620,289원	표준가구 4급지 변동시(광역/세종/창원) 1,492,827원	▽ 127,462원 (7.9%↓)
	표준가구 3급지 유지시(중소도시) 1,484,557원	▽ 135,732원 (8.4%↓)

빈곤율 및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가구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적용시)로 측정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효과성은 각각 8.4%와 26.5%로 나타나, 2018년에 비해 각각 약 2.50p, 2.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 감소효과를 가구규모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의 빈곤율 감소효과가 다른 규모의 가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인 가구의 경우 빈곤율 감소효과가 1인가구, 4인가구 대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향후 연구 및 개선 방향

1. 향후 연구 방향

이전에 수립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재산 기준 개편, 급여수준 제고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추진되었고, 2023년 9월에 발표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장수준의 강화, 빈곤 사각지대 해소, 탈수급 및 빈곤 완화 지원, 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등을 주요 추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기 수행된 제도개선을 통해 수급자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고 비수급빈곤층의 규모 및 빈곤율도 감소하였지만 비수급빈곤층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상당부분 존재하며 빈곤율 역시 아직까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는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수준을 대폭 제고하고 사각지대 완화를 통해 국민의 기초생활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추진하기 위해서이다.¹⁹⁰⁾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상향되고 이를 통해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및 보장수준의 제고가 예상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선이 최고지급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선이 기준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하게 된다면 빈곤층의 소득보장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빈곤의 심도를 나타내는 소득갭 비율 또는 빈곤갭 비율의 뚜렷한 개선이 예상된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의 경우도 예외규정 기준을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주거용 재산 등 재산기준의 완화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축소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축소 노력은 비수급빈곤층의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3차 기본계획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생계급여 기준선의 상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생계급여 기준선의 상향은 다양한 긍정적 차원의 효과를

190) 보건복지부·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3.9.19.). 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를 참조하여 작성

발생시키지만 수급자 측면에서는 탈수급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탈수급 및 근로에 대한 욕구 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제3차 기본계획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근로 및 사업소득의 추가공제를 확대하고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근로장려금과의 연계 제고 등 탈수급 및 노동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비수급빈곤층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도 지속적인 부양의무자 및 재산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는데, 자동차의 경우 필수재적 성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으므로 보다 전향적인 완화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전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해외 사례에서도 선정 및 급여에서 모두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를 적용하는 국가는 찾기 어려우며, 급여기준에서 재산을 환산하여 급여조정 수단으로 쓰는 국가는 영국, 호주 등 일부국가에 한정된다(여유진 외, 2011). 따라서 제도의 엄격한 적용을 보다 완화하여 사각지대를 축소시키거나 보장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 경우 제도 내에서 상당부분 이뤄졌지만, 생계급여의 일부 영역과 의료급여의 영역에서 사각지대 축소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또는 폐지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검토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와 이를 통한 제도 개선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가구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선정기준의 다양화 또는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제시된 성인균등화지수를 살펴보면,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가구의 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의 경우 지출 특성을 고려한 선정 기준선 설정 또는 공제의 적용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물론, 교육급여를 통해 일정 부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그 보장 범위가 한정적이며 교육비 외에도 다른 부문의 지출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집단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정책 적용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가구의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가구 유형별 기준선 설정도 증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인구 및 가구 형태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표준가구 재설정에 대한 검토이다. 현재 가구규모별 최빈가구는 1인가구이며, 아직까지 4인가구에 해당하는 인구 수

가 다른 가구 규모에 해당하는 인구 수보다는 많지만 현재 3인가구와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3인 가구가 인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적정성 평가를 위한 최저생계비 표준가구는 여전히 4인가구가 적용되기 때문에 차기 급여적정성 평가를 위해 4인가구를 3인가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3인가구 전환의 근거와 사회적 합의, 전물량방식에 대한 개선을 위한 사전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통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의 격차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중에 있으며, 1~2인 가구 보장성을 강화를 위해 가구균등화지수를 개편중에 있기 때문에 표준가구에 대한 재설정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으로 인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탈수급 촉진을 위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다양화와 지원수준 제고가 필요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생계급여 기준선의 상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최소화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로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급여 및 서비스 등의 편익 증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는데, 소득수준에서 수급층과 큰 차이가 나지않는 비수급층의 경우 탈수급으로 인한 기회비용(더 이상 받지 받지 못하게 되는 급여 또는 및 서비스)이 상대적으로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다양화와 지원수준 제고를 통해 탈수급을 위한 단계 확보가 요구되어진다.

2. 한계 및 개선방향

본 연구는 맞춤형 급여제도로의 개편(2015년 7월) 이후 변화된 제도 환경에서 수행된 3번째 연구로서, 연구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책 욕구(1인 가구 급여 적정성 등)을 반영하되 기 수행된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와의 연속성 제고를 지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태조사 관련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연구 진행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는 해당 기간에 개최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와 본 위원회의 안건 자료로 활용하는 등 정책 판단의 주요자료로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가지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개선방향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조사수행 시점에 대한 문제이다. 실태조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태조사 결과 등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면 기본계획과 종합계획 수립 측면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인해 이전 조사보다 대면 방식의 면접조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며, 조사기간을 앞당기거나 축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논외로 한다면 조사기간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방법은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거나 조사 내용을 축소시키는 등 예산의 제약 또는 조사의 연속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사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빈곤층 및 비수급 빈곤층 규모 등에 있어서 제도적 측면과 실제 정책효과 측정 측면의 괴리에 대한 부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의 선정은 소득 인정액을 통해 결정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는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대상의 다양한 실태와 제도 적용상의 다양한 조건들이 적용되어 실제 소득과 재산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확대될 경우 어떤 가구의 실제 재산 수준에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정되는 빈곤층 및 비수급빈곤층의 규모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향후에는 빈곤층 및 비수급빈곤층의 규모를 제시할 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실제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 파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19 반영에 대한 측면이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재난이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다양한 경제·사회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변화중 일시적인 변화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계측 및 비수급빈곤층의 실태와 현황에 파악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조사에서는 소득 측면 등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변수(지원금 등)가 포함되었지만 의료욕구 등에서는 코로나19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이전 조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의 연속성을 제고한 측면이 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존재

하기 때문에, 실태조사의 주요 변수들의 경우 향후 수행된 조사결과의 비교를 통해 조사결과에 미친 코로나19 영향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통계자료원의 변경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수행해왔던 분석을 그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도 연구의 한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김태완 외 2017 등)에서는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해 필수품 선정에 위한 근거로 품목별 소득탄력성을 계산하고 이를 활용해왔었다.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가계동향조사의 연간 소득 및 지출 자료를 활용했는데, 해당 통계자료의 소득 및 지출 공표주기에서 지출은 연간자료가 공표되지만 소득은 분기자료만 공표되어 연간 소득자료와 지출자료가 결합된 자료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발생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2021년 기준의 품목별 소득탄력성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이전 연구와의 연속성 제고 차원의 측면도 있는데,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소득탄력성 추정시 해당 추정값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향후 해당 자료의 활용이 가능할 경우 소득탄력성 추정을 통해 필수품 선정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연구의 한계점이라기 보다는 과거 의미가 있었던 분석이었지만 현재는 활용성이 거의 없거나 다른 연구 등을 통해 수행되는 부문은 경우 기 수행된 연구(김문길 외, 2020)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제외된 내용들이 일부 있다. 예를 들어, 욕구분석 부분에서 노동욕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최저생계비 계측에서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중 에너지 추가비용은 산출을 하지 않았다.



- 강신욱, 이현주, 구인회, 신영진, 임완섭. (2006).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동태 및 관련요인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지영, 정순돌. (2017). 중고령층 연령집단별 물질적 결핍 궤적 및 궤적집단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5: 5-34.
- 구인회, 강병구, 이현주, 안서연, 이원진. (2008). 탈수급 및 수급예방을 위한 공공부조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2021년 의료급여 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도 각 연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통계연도 각 연도.
- 김기태, 김태완, 이원진, 정세정, 강예은, 정은희. (2022). 생계급여 재정추계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문길, 김태완, 여유진, 김미곤, 임완섭, 황도경, 정해식, 오미애, 김기태, 정세정, 이원진, 김성아, 이주미, 신재동, 최준영, 홍성운, 박형준, 윤상용, 김민희, 이길제, 김정훈, 송치호. (2020).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문길, 김태완, 여유진, 임완섭, 정경배, 김도형, 정재훈. (2013). 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 발전과정과 최근 주요 이슈. 기획재정부·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손창균, 최현수, 이선우, 김계연, 송치호, 오지현, 이서현. (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송치호, 오지현, 임미진. (2008).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 여유진, 양시현, 강성호, 김태완, 이경민. (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 여유진, 이상은, 정재훈, 김계연, 양시현, 오지현, 김민희, 임미진. (2009).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 여유진, 이태진, 양시현, 최현수, 김태완, 박지혜, 김용희, 이선우, 김진욱, 석재은. (2004).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희, 김용득, 윤상용, 이승기, 변경희, 정종화, 이민경, 이송희. (2012). 2012년 장애인정책

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하, 이현주, 백학영, 이원진, 서소혜, 주찬희, 현동길.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변동추이 분석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김태완, 김문길, 김미곤, 여유진, 김현경, 임완섭, 정해식, 황도경, 김성아, 박형준, 윤시몬, 이주미, 신재동, 김선, 김은지, 김혜승, 우명숙, 윤상용, 이선우, 정재훈, 최민정. (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 김문길, 전지현, 한민아. (2010).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 원종욱, 임완섭, 이주미, 조한나. (2018).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정주성 (2023). 독일의 사회부조 및 최저생계비 관련 제도 현황 및 변화 파악 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https://www.kihasa.re.kr/news/abroad/view?page=2&seq=56050> (2023.9.26. 인출)
- 김태완, 최현수,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손창균, 이선우, 우선희, 김성아, 신재동, 이주미, 정희선, 송치호. (2013).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 김경휘, 원일, 박은영, 이종아. (2009).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빈곤요인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 원일.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수급가구의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성공적 탈수급 및 행정적 탈수급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333-360.
- 마사 누스바움. (2015). 역량의 창조: 인간다운 삶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한상연 옮김. 돌베개.
- 박능후, 유진영, 임완섭, 백학영. (2004).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빈곤역동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 평가센터.
- 박순일, 김미곤, 이수연, 정희태, 이경신, 하길웅. (199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형준.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진입 이후의 탈수급 궤적. 사회복지정책. 50(3): 115-144.
- 박형준. (2022). 장애 발생 전후의 빈곤 궤적과 예측 요인. 한국장애인복지학. 55: 105-137.
- 보건복지부. (2013). 2013년 제1차 전문위원회 안건 논의결과 보고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 2020년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의료급여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12.30.),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 (2015).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 아마트리아 센. (2013). 자유로서의 발전, 김원기 옮김. 갈라파고스.
- 아이리스 매리언 영. (2017). 차이의 정치와 정의, 김도균, 조국 옮김. 모티브북.
- 안서연, 구인회, 이원진.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출 결정요인: 근로능력자 집단 별 분석. *사회복지정책*, 38(1): 199-226.
- 안서연, 조미라.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와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9(2): 519-547.
- 안창수, 이성기, 이충섭, 이필도, 김미곤, 서정목, 박성준, 이태원. (1989).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앤서니 기든스, 필립 W. 서튼. (2018). 현대 사회학, 김미숙·김용학 역. 을유문화사.
- 여성가족부. (2023). 202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자료. 여성가족부
-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손창균, 최현수, 이선우, 김문길, 김계연, 오지현, 서봉균, 유현상, 김은정. (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양시현, 최현수. (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욱찬, 김수진, 김현경, 이원진, 오다은. (2020).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상용. (2006). 장애인의 추가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윤상용. (2014). 장애인소득보장 급여체계 개편방안 연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윤상용, 김태완. (2009). 장애인가구의 빈곤 실태 및 장애 추가비용의 빈곤 영향력.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 이상호, (2016). '역량의 창조' 서평. 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 (<https://www.naon.go.kr/content/html/2016/06/22/84be9a52-95ff-44a6-9e19-6d3806aba12c.html>)
- 이원진.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상태의 특성 및 수급탈출의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2(3): 5-29.
- 이태진, 이상은, 홍경준, 김선희. (2004).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 평가센터.
- 이태진, 이원진, 오욱찬, 김성아, 여유진, 구인회, 김미곤.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 분석 - 시행 20년의 변화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진, 임완섭, 강신욱, 김태완, 여유진, 최현수, 김현경, 류정희, 오미애, 황도경, 황덕순, 우선희, 신재동, 이주미, 최준영, 김진희, 정혜란. (2015). 2014년 복지욕구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진, 정홍원, 강신욱, 김진수, 김태완, 남상호, 손창균, 여유진, 최현수, 황덕순, 최준영, 이주미, 박형준, 윤수경, 유진영, 김상은, 박은경. (2011). 빈곤정책 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백화중, 신영석, 김안나, 박능후, 이선우, 홍경준, 황덕순, 유진영, 김계연, 이승경, 황정하, 임완섭, 전해숙, 정순영, 박신영. (2005).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강신욱, 김안나, 김태완, 노대명, 박세경, 이태진, 정경희, 신현웅, 손창균, 최현수, 박능후, 이선우, 홍경준, 유진영, 전지현, 유정예, 윤필경. (2008). 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 분석 및 정책제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인천시. (2020.12.15.) 470원, 인천 가정용 상수도요금 계산의“시작이자 끝”. 보도자료. 인천: 인천광역시청.
- 정윤경, 박광수. (2013). 가구특성별 에너지 소비지출 분석 연구. 수시연구보고서.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 조홍식, 김상균, 최일섭, 최성재, 김혜란, 이봉주, 구인회, 홍백의, 강상경, 안상훈. (2015). 사회복지개론. 나남.
- 최도영, 전영재 외. (2022). 2020년도 에너지총조사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에너지공단·산업통상자원부.
- 통계청. (2020).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보도자료.
- 통계청. (2022),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등록센서스, 전수자료 원자료.
- 통계청. (2022). 가계동향조사.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재구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 한국에너지재단. (2023). 올해 저소득층 1.51만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개소 냉방기기 지원. 한국에너지재단 보도자료. 2023.6.13. 서울: 한국에너지재단.
- 한은희, 노법래, 박규범.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증여자 특성 및 재진입 연구. 사회보장정보원.
- 한국영양학회. (2020).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
- 홍경준. (2002).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0, 61-85.
- 홍세희, 노언경, 이현정. (2011). 청소년의 폭력 빈도 변화의 잠재계층에 대한 준모수적 집단 중심 방법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2(3): 175-195.
- 환경부. (2020). 환경통계연감.

- 환경부. (2021). 환경통계연감.
- 황도경, 선우덕, 안수인, 신나라, 임재우, 유혜영. (2019).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입원 적정성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인창, 박은철, 백종락. (2020). 서울시 저소득가구 에너지소비 실태와 에너지빈곤 현황. 서울: 서울연구원.
- Beckerman, W. (1979). The impact of income maintenance payments on poverty in Britain, 1975. *The Economic Journal*, 89, 261-279.
- Berthoud, R., Lakey, J., & McKay, S. (1993). The economic problems of disabled people.
- Burchardt, T. (2003). Being and becoming: Social exclusion and onset of disability. ESRC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Report 21. London School of Economics.
- Burchardt, T. (2004). Capabilities and Disability: the capability framework and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Disability & Society*. Vol. 19. pp. 735-751.
- Braithwaite, J. & Mont. D. (2008). Russia: Disability Issues Note. SP Discussion Paper. The World Bank.
- Deaton, A., & Muellbauer, J. (1980). An almost ideal demand system.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0(3), 312-326.
- Goedhart, T., Halberstadt, V., Kapteyn, A., & Van Praag, B. (1977). The poverty line: concept and measurement. *Journal of human resources*, 503-520.
- Gordon, D., Adelman, L., Ashworth, K., Bradshaw, J., Levitas, R., Middleton, S., Pantazis, C., Patsios, D., Payne, S., Townsend, P., Williams, J. (2000).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Britain.
- Hagenaars, A. J. (1986). *The perception of poverty*. Oxford: North-Holland.
- Jones, B.L. & Nagin, D.S. 2013. "A Note on a Stata Plugin for Estimating Group-based Trajectory Model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42(4): 608-613.
- Jones, A., & O'Donnell, O. (1995). Equivalence scales and the costs of disabili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6(2), 273-289.
- KilPatrick, R. (1973). The Income Elasticity of the Poverty Lin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5.
- Large, P. (1991). Paying for the additional costs of disability. *Disability and Social P*

- olicy. Policy Studies Institute. Londres.
- Martin, J. & White, A. (1988). The financial circumstances of disabled adults living in private households. London: HMSO.
- Nagin, D.S.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NDA, (2004). Report on the Cost of Disability. Indecon International Economic Consultants.
- Nolan, B. and Whelan, C.T. (1996) Resources, Deprivation and Poverty, Oxford, Clarendon Press.
- Rainwater, L. (1974). *What Money Buys*. New York: Basic Books.
- Solnick, J. S. & Hemenway, D. (1998). Is more always better? A Survey on positional concerns. *Journal of Economics Behavior & Organization*. 37, 373-383
- Tibble, Mike. (2006). Review of existing research on the extra costs of disability.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Working Paper No. 21.
- Townsend, P.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s of Living*. Penguin.
- Van Praag, Bernard & Goedhart, Theo & Kapteyn, Arie (1980). The Poverty Line: A Pilot Survey in Europ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IT Press. vol. 62(3). pp.461-65.
- Watts, H. W. (1967). The iso-prop index: an approach to the determination of differential poverty income thresholds. *Journal of human resources*, 3-18.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http://www.k-apt.go.kr/apiinfo/goApiInfoBySido.do> (2023. 3.16.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97%AC%EB%B9%84%EA%B7%9C%EC%A0%95> (2023.3.15. 인출)
- 국가통계포털, 국내여행 경험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9196&conn_path=I3 (2023.2.27. 인출)
- 국가통계포털,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9225&conn_path=I3 (2023.2.27. 인출)
- 국가통계포털, 1인 평균 국내여행 지출액.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

- 13&tblId=DT_113_STBL_1029314&conn_path=I3 (2023.2.27. 인출)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데이터베이스. <http://rtdown.molit.go.kr/> (2020. 3. 4. 인출)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23. 3.15 인출)
- 군포시 수도요금계산방법. <https://www.gunpo.go.kr/sudo/contents.do?key=5405> (2023.3.14.인출)
- 네이버어학사전. https://dict.naver.com/search.nhn?dicQuery=%EB%83%89%EB%B0%A9&query=%EB%83%89%EB%B0%A9&target=dic&query_utf=&isOnlyViewEE=
- 네이버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70512&cid=42120&categoryId=42120> (2020.7.23. 인출)
- 다나와 홈페이지. <https://search.danawa.com/dsearch.php?k1=%EC%95%84%EC%9D%B4%EB%A0%88%EB%B3%B4+%EA%B2%8C%EC%9D%B4%ED%8A%B8%EB%A7%A8+WG-100&module=goods&act=dispMain> (2023. 6. 26. 인출)
- 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 <http://www.citygas.or.kr/info/charge.jsp> (2023.3.28. 인출)
- 두산백과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6502&cid=40942&categoryId=31637> (2023.12.19. 접속)
- 삼천리. <https://www.samchully.co.kr/customer/gas/info/fee/system.do> (2023.4.1. 인출)
- 스페인 국립통계원 홈페이지. <https://www.ine.es>
- 스페인 노동조합 근로자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coo.es/b878b78da8a9fb2d586f18548b5395f2000001.pdf>
- 스페인 사회노동당 홈페이지. <https://www.psoe.es/media-content/2019/12/30122019-Coalici%C3%B3n-progresista.pdf>
- 스페인 정부 공식 사회보장 포털. <https://www.seg-social.es>
- 스페인 정부 공식 사회보장 포털. <https://revista.seg-social.es/-/20220927-incentivo-empleo>
- 스페인 중앙정부 관보 홈페이지. <https://www.boe.es/buscar/act.php?id=BOE-A-2021-21652>
- 스페인 중앙정부 관보 홈페이지. <https://www.boe.es/eli/es/rdl/2020/05/29/20/con>
- 스페인 중앙정부 홈페이지. https://www.lamoncloa.gob.es/lang/en/gobierno/news/paginas/2022/20221006_state-budget.aspx
- 스페인 중앙정부 홈페이지. <https://www.lamoncloa.gob.es/serviciosdeprensa/notaspr>

- ensa/Documents/Documento%20Acuerdo%2029%20de%20julio_DEFINITIVO.pdf
- 스페인 중앙정부 홈페이지. <https://www.lamoncloa.gob.es/presidente/intervenciones/Paginas/2020/prsp04012020.aspx>
- 스페인 중앙정부 홈페이지. <https://www.lamoncloa.gob.es/consejodeministros/resumenes/Paginas/2020/290520-cministros.aspx>
- 인천광역시 요금산정 기준표. <https://minwon.waterworksh.incheon.kr/chrge/CCS03001.do> (2023.3.26. 인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미디어패널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5&tblId=DT_405001_I182&conn_path=I3.(2023.03.15. 인출)
- 조달청 홈페이지. <https://www.pps.go.kr/bichuk/bbs/view.do?jsessionid=Wml2tU-KR6PBLhX490knfagX1l8Gfp7WjP5jJX-SzouEgMbyEWW5!153035988?key=00836&bbsSn=2302010019>
-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2023.3.28. 인출)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홈페이지.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2023. 3. 16. 인출)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홈페이지.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2023.3.16. 인출)
- 한국에너지공단. (2023). 에너지바우처란? https://www.energyv.or.kr/info/support_info.do (2023.6.28. 인출.)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2023.3.16. 인출)
- 한국전력 전력데이터 개방 포털시스템. <https://bigdata.kepco.co.kr/cmsmain.do?scode=S01&pcode=000166&pstate=L&redirect=Y#> (2023.4.1. 인출.)
- 한국전력 전력데이터 개방포털 시스템. <https://bigdata.kepco.co.kr/cmsmain.do?scode=S01&pcode=000166&redirect=Y> (2023.3. 14. 인출.)
- 한국전력 홈페이지. https://home.kepco.co.kr/kepco/EB/A/htmlView/EBAAHP002_06.do?menuCd=FN430101 (2023.6.28. 인출.)
- 홍천군 상수도업종별 요금표. <https://www.hongcheon.go.kr/water/contents.do?key=1140> (2023.3.28. 인출)
- 환경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rary.me.go.kr/#/>
- 카탈루냐 법령정보 홈페이지. <https://portaljuridic.gencat.cat/eli/es-ct/l/2006/07/27/1>

3

----- . https://dretssocials.gencat.cat/web/.content/03ambits_tematicas/06pobresa_i_inclusio_social/RendaGarantidaCiudadania/nou/castella/destacats_laterals/rgc_triptic_esp.pdf

EUROSTAT 홈페이지. <https://ec.europa.eu/eurostat/web/microdata/european-community-household-panel>

----- . <https://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

----- .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Glossary:Material_deprivation

----- .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Glossary:At_risk_of_poverty_or_social_exclusion_\(AROPE\)#:~:text=At%20risk%20of%20poverty%20or%20social%20exclusion%2C%20abbreviated%20as%20AROPE,a%20very%20low%20work%20intensity.](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Glossary:At_risk_of_poverty_or_social_exclusion_(AROPE)#:~:text=At%20risk%20of%20poverty%20or%20social%20exclusion%2C%20abbreviated%20as%20AROPE,a%20very%20low%20work%20intensity.)

EU 홈페이지. <https://op.europa.eu/webpub/empl/european-pillar-of-social-rights/en/>

ILO 홈페이지. http://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3100:0::NO::P13100_COMMENT_ID:3241952

OECD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 <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

Wikipedia, <https://de.wikipedia.org>, Sozialhilfe Deuschalnd.

----- . 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

----- , Regelbedarf.

----- , Arbeitslosengeld II.

DRV. (2022), Die Grundsicherung: Hilfe feur Rentner,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MAS. (2022), Sozialhilfe(und 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 Bundesministerium feur Arbeit und Soziaes.



부록 1. 2020년 표준가구 마켓 바스켓

부록 2.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부록 3.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조사표

부록 4. 스페인 복지 제도의 전개과정

[부록 1] 2020년 표준가구 마켓 바스켓

〈부표 1-1-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중분류/품목	내구 연수	표준가구 1인					
		단가(원) 2023	수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광역시/세종/ 창원
최저식료품비				894,118원	894,118원	894,118원	894,118원
가정식 비용				607,946원	607,946원	607,946원	607,946원
가정식 비용(외식 무)	1월	8,061	91.25	735,549원	735,549원	735,549원	735,549원
가장 중식으로 인한 절감	1월	2,215	21.73	-48,113원	-48,113원	-48,113원	-48,113원
가족단위 외식으로 인한 절감	1월	8,061	0.33	-2,687원	-2,687원	-2,687원	-2,687원
첫째아 급식 절감분	1월	2,392	16.08	-38,466원	-38,466원	-38,466원	-38,466원
둘째아 급식 절감분	1월	1,772	16.08	-28,493원	-28,493원	-28,493원	-28,493원
수련회 절감분(첫째아)	1월	2,392	0.58	-1,395원	-1,395원	-1,395원	-1,395원
수련회 절감분(둘째아)	1월	1,772	0.58	-1,033원	-1,033원	-1,033원	-1,033원
친지방문 절감분	1월	8,061	0.67회	-5,401원	-5,401원	-5,401원	-5,401원
가족여행(1박2일) 중 외식 절감분	1월	8,061	0.25회	-2,015원	-2,015원	-2,015원	-2,015원
외식비				286,172원	286,172원	286,172원	286,172원
가장 중식	1월	5,581	21.73회	121,258원	121,258원	121,258원	121,258원
17세 급식	1월	4,650	16.08회	74,788원	74,788원	74,788원	74,788원
15세 급식	1월	4,447	16.08회	71,523원	71,523원	71,523원	71,523원
가족단위 외식	1월	55,809	0.33회	18,603원	18,603원	18,603원	18,603원

중분류/품목	단가 설정기준
최저식료품비	
가정식 비용	
가정식 비용(외식 무)	
가장 중식으로 인한 절감	
가족단위 외식으로 인한 절감	1년 4회, 1끼 네명(4/12=0.33회, 생일 때 외식한다고 가정)
첫째아 급식 절감분	학교알리미 사이트(2022)
둘째아 급식 절감분	학교알리미 사이트(2022)
수련회 절감분(첫째아)	1년 1회, 7끼 한명(7/12=0.58회)
수련회 절감분(둘째아)	1년 1회, 7끼 한명(7/12=0.58회)
친지방문 절감분	1년 2회, 친지방문, 당일 2끼 네명(8/12=0.67회)
가족여행(1박2일) 중 외식 절감분	(2020년 추가)1년1회,가족 여행 중 외식 3끼 4명(3/12=0.25회) 가족여행 중 외식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교양오락비 중 가족여행비에 포함
외식비	
가장 중식	외식비 증가율(4913*a), a=1.136
14세 급식	학교알리미 사이트(2022)
11세 급식	학교알리미 사이트(2022)
가족단위 외식	외식비 증가율(49128*a), a=1.136

〈부표 1-1-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계속)

품목	품질 및 시기	규격 및 단위	구입량/일	g당가격	가정식비용/일	가격자료
곡류 및 식빵					4,155.4원/일	
쌀	백미	20kg(1포)	794g/일	1.759원/g	1,396원/일	소비자물가
찰쌀	백미	1kg(1포)	26g/일	2.436원/g	64원/일	소비자물가
보리	통보리	1kg(1포)	21g/일	3.249원/g	69원/일	소비자물가
콩	백태(국산)	1kg(1포)	10g/일	5.754원/g	55원/일	소비자물가
팥	적두(수입)	1kg(1포)	5g/일	13.214원/g	70원/일	농산물유통정보
식빵	중품	450g(1봉지)	16g/일	7.567원/g	120원/일	소비자물가
밀가루	중력분	3kg(1포)	106g/일	1.622원/g	172원/일	소비자물가
국수	소면	900g(1봉지)	79g/일	4.214원/g	334원/일	소비자물가
라면	봉지라면	2봉(2400g)	254g/일	6.281원/g	1,595원/일	소비자물가
당면	중품	500g(1봉지)	13g/일	10.176원/g	129원/일	소비자물가
만두	냉동만두	450g(1봉지)	16g/일	9.53원/g	151원/일	시장조사
육류					2,297.2원/일	
소고기(갈비)	수입소고기(호주)	100g	21g/일	27.664원/g	585원/일	소비자물가
돼지고기	삼겹살(냉장)	100g	63g/일	15.025원/g	954원/일	소비자물가
닭고기	육계	1kg	53g/일	6.67원/g	353원/일	소비자물가
소시지	시장제품	500g(1개)	11g/일	7.539원/g	80원/일	소비자물가
햄	시장제품	185g(1개)	8g/일	11.63원/g	98원/일	소비자물가
튀김닭		800g(1마리)	11g/일	21.432원/g	227원/일	시장조사
낙농품					3,166.2원/일	
우유	흰우유	1000ml(1개)	529g/일	2.979원/g	1,576원/일	소비자물가
유산균발효유	중품	65ml(1병)	95g/일	3.126원/g	298원/일	소비자물가
달걀		650g(10개)	206g/일	6.265원/g	1,293원/일	소비자물가
어개류					1,454.2원/일	
갈치	냉동	250g(1마리)	6g/일	34.084원/g	216원/일	소비자물가
명태	동태, 약40cm	400g(1마리)	16g/일	7.704원/g	122원/일	소비자물가
고등어	약30cm	350g(1마리)	13g/일	6.903원/g	88원/일	소비자물가
꽂치	약30cm	160g(1마리)	8g/일	3.456원/g	29원/일	농산물유통정보
냉동오징어	약25cm	250g(1마리)	13g/일	7.025원/g	89원/일	소비자물가
홍합	중품, 안칸 컷(수입)	400g(1근)	4g/일	2.672원/g	11원/일	시장조사
복어	복어포	50g(1봉지)	2g/일	55.602원/g	118원/일	소비자물가
멸치	볶음용, 중품	1kg	19g/일	16.354원/g	311원/일	소비자물가
멸치젓	중품	200g(1봉)	8g/일	2.416원/g	20원/일	농산물유통정보
새우젓	중품	500g(1근)	6g/일	18.78원/g	119원/일	농산물유통정보
어묵	중품	200g(1봉)	21g/일	8.438원/g	179원/일	소비자물가
참치캔	참치 통조림	150g(1캔)	16g/일	9.491원/g	151원/일	시장조사

〈부표 1-1-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계속)

품목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니아신 mg NE	비타민B ₆ mg	엽산 ug DFE	비타민B ₁₂ ug	판토텐산 mg	비오틴 ug	칼슘 mg	인 mg	나트륨 mg
곡류 및 식빵											
쌀	1.7	0.2	9.0	0.0	0.0	0.0	0.0	0.0	52.5	652.5	60.0
찰쌀	0.0	0.0	0.4	0.0	0.0	0.0	0.0	0.0	1.0	37.8	0.8
보리	0.1	0.0	1.1	0.0	0.0	0.0	0.0	0.0	8.6	72.0	0.6
콩	0.0	0.0	0.2	0.0	0.0	0.0	0.0	0.0	19.8	51.8	0.2
팥	0.0	0.0	0.2	0.0	0.0	0.0	0.0	0.0	4.1	21.2	0.1
식빵	0.0	0.0	0.3	0.0	0.0	0.0	0.0	0.0	3.3	12.9	9.9
밀가루	0.2	0.0	1.8	0.0	0.0	0.0	0.0	0.0	31.0	78.0	19.0
국수	0.2	0.0	0.9	0.0	0.0	0.0	0.0	0.0	11.3	93.0	1647.8
라면	0.3	0.5	0.7	0.0	0.0	0.0	0.0	0.0	115.2	62.4	931.2
당면	0.0	0.0	0.0	0.0	0.0	0.0	0.0	0.0	5.6	3.1	0.5
만두	0.0	0.0	0.0	0.0	0.0	0.0	0.0	0.0	4.7	12.5	40.8
육류											
소고기(갈비)	0.0	0.0	0.9	0.0	0.0	0.0	0.0	0.0	0.6	32.0	8.2
돼지고기	0.3	0.2	0.8	0.0	0.0	0.0	0.0	0.0	6.0	98.4	0.6
닭고기	0.1	0.1	1.4	0.0	0.0	0.0	0.0	0.0	5.0	85.0	33.0
소시지	0.0	0.0	0.5	0.0	0.0	0.0	0.0	0.0	1.4	24.0	140.0
햄	0.0	0.0	0.3	0.0	0.0	0.0	0.0	0.0	0.5	16.8	77.6
튀김닭	0.0	0.0	0.7	0.0	0.0	0.0	0.0	0.0	2.7	22.5	61.3
낙농품											
우유	0.3	0.3	2.0	0.0	0.0	0.0	0.0	0.0	455.0	415.0	200.0
유산균발효유	0.0	0.1	0.0	0.0	0.0	0.0	0.0	0.0	35.1	25.2	55.8
달걀	0.4	1.3	1.2	0.0	0.0	0.0	0.0	0.0	101.4	360.8	263.3
어개류											
갈치	0.0	0.0	0.1	0.0	0.0	0.0	0.0	0.0	6.2	14.5	123.4
명태	0.0	0.0	0.2	0.0	0.0	0.0	0.0	0.0	7.2	30.0	31.5
고등어	0.0	0.1	1.0	0.0	0.0	0.0	0.0	0.0	3.1	27.8	9.0
꽂치	0.0	0.0	0.5	0.0	0.0	0.0	0.0	0.0	3.4	19.3	6.4
냉동오징어	0.0	0.0	0.0	0.0	0.0	0.0	0.0	0.0	1.3	0.0	0.0
홍합	0.0	0.0	0.1	0.0	0.0	0.0	0.0	0.0	1.7	10.0	0.0
복어	0.0	0.0	0.2	0.0	0.0	0.0	0.0	0.0	4.9	11.6	9.9
멸치	0.0	0.0	2.1	0.0	0.0	0.0	0.0	0.0	232.2	263.0	156.4
멸치젓	0.0	0.0	0.5	0.0	0.0	0.0	0.0	0.0	47.4	27.8	946.1
새우젓	0.0	0.0	0.1	0.0	0.0	0.0	0.0	0.0	30.0	7.4	0.0
어묵	0.0	0.0	0.0	0.0	0.0	0.0	0.0	0.0	8.4	16.0	137.0
참치캔	0.0	0.0	1.7	0.0	0.0	0.0	0.0	0.0	0.5	25.2	0.0

〈부표 1-1-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계속)

품목	품질 및 시기	규격 및 단위	구입량/일	g당가격	가정식비용/일	가격자료
채소					5,522.9원/일	
배추	중품	1kg(1포기)	212g/일	0.642원/g	136원/일	소비자물가
무우	중품	1kg(1개)	159g/일	0.478원/g	76원/일	소비자물가
파	대파	1Kg	53g/일	2.446원/g	129원/일	소비자물가
시금치	중품	1kg	53g/일	5.056원/g	268원/일	소비자물가
상추	잎상추	100g	32g/일	7.181원/g	228원/일	소비자물가
콩나물	중간길이	100g	42g/일	3.63원/g	154원/일	소비자물가
감자	중품	1kg	63g/일	3.66원/g	232원/일	소비자물가
오이	다다기 중품	1.5kg(10개)	32g/일	5.629원/g	179원/일	소비자물가
당근	중품	1.0kg	37g/일	4.69원/g	174원/일	소비자물가
풋고추	중품	100g	16g/일	10.024원/g	159원/일	소비자물가
양파	중품	1000g	63g/일	1.417원/g	90원/일	소비자물가
호박	쥬키니 중품	500g(1개)	53g/일	2.245원/g	119원/일	소비자물가
토마토	중품	1kg	21g/일	4.523원/g	96원/일	소비자물가
고구마	중품	1kg	26g/일	3.416원/g	90원/일	소비자물가
도라지	중품	200g(반근)	3g/일	16.083원/g	51원/일	소비자물가
가지	중품	120g(1개)	8g/일	4.52원/g	38원/일	소비자물가
양배추	중품	1kg(1포기)	42g/일	0.943원/g	40원/일	소비자물가
미나리	중품	1kg	13g/일	4.988원/g	63원/일	소비자물가
버섯	느타리버섯	100g	13g/일	8.996원/g	114원/일	소비자물가
깻잎	중품	200g	4g/일	16.693원/g	71원/일	소비자물가
부추	중품	1kg	13g/일	5.948원/g	76원/일	소비자물가
숙주나물	중품	100g	21g/일	5.701원/g	121원/일	시장조사
단무지	중품	400g(1봉지)	10g/일	5.999원/g	57원/일	소비자물가
두부	시장제품	500g(1모)	106g/일	2.41원/g	255원/일	소비자물가
도토리묵	시장제품	400g(1개)	21g/일	3.069원/g	65원/일	시장조사
김	중품,검정색	100장(200g)	19g/일	48.128원/g	917원/일	소비자물가
미역	대각	1kg	53g/일	28.854원/g	1527원/일	소비자물가
과실류					2,712.4원/일	
사과	쓰가루(12년9월)	2.5kg(10개)	63g/일	7.118원/g	452원/일	소비자물가
배	신고	5kg(10개)	53g/일	2.793원/g	148원/일	소비자물가
복숭아	유명(12년9월)	2.25.kg(10개)	21g/일	9.848원/g	208원/일	농산물유통정보 (16년 8월 기준)
포도	첼벨(12년 11월)	1kg	42g/일	14.91원/g	631원/일	농산물유통정보 (16년 8월 기준)
감	단감 중품	2kg(10개)	26g/일	3.622원/g	96원/일	소비자물가
감귤	중품	1kg(10개)	148g/일	4.048원/g	600원/일	소비자물가
참외	중품(12년9월)	4kg(10개)	42g/일	1.788원/g	76원/일	소비자물가
수박	중품	8.0kg(1개)	116g/일	1.032원/g	120원/일	소비자물가
딸기	중품	100g	26g/일	10.479원/g	277원/일	소비자물가
바나나	수입품	1kg	53g/일	1.978원/g	105원/일	소비자물가

품목	열량 Kcal	탄수화물 g	당류 g	지질 g	단백질 g	아미노산 g	식이섬유 g	비타민A ug RAE	비타민D ug	비타민E mg a-TE	비타민K ug	비타민C mg
채소												
배추	24.4	5.4	0.0	0.0	2.2	0.0	0.0	2.0	0.0	0.0	0.0	20.0
무우	21.7	10.8	0.0	0.2	1.5	0.0	0.0	0.0	0.0	0.0	0.0	19.5
파	11.1	3.4	0.0	0.1	0.6	0.0	0.9	0.5	0.0	0.0	0.0	0.0
시금치	16.5	3.0	0.0	0.3	1.6	0.0	1.3	239.5	0.0	0.0	0.0	30.0
상추	5.7	0.7	0.0	0.1	0.3	0.0	0.2	51.6	0.0	0.0	0.0	3.3
콩나물	15.2	1.9	0.0	0.7	1.8	0.0	1.7	0.0	0.0	0.0	0.0	2.0
감자	40.2	8.3	0.0	0.0	1.4	0.0	0.4	0.6	0.0	0.0	0.0	4.8
오이	4.3	0.8	0.0	0.0	0.2	0.0	0.2	2.1	0.0	0.0	0.0	0.0
당근	11.0	3.0	0.0	0.0	0.4	0.0	0.9	444.5	0.0	0.0	0.0	2.8
풋고추	4.6	0.9	0.0	0.0	0.2	0.0	0.8	0.5	0.0	0.0	0.0	0.0
양파	16.3	5.0	0.0	0.1	0.6	0.0	0.7	0.0	0.0	0.0	0.0	4.8
호박	11.1	2.8	0.0	0.1	0.5	0.0	0.6	17.0	0.0	0.0	0.0	4.5
토마토	4.0	0.9	0.0	0.0	0.2	0.0	0.2	2.4	0.0	0.0	0.0	2.4
고구마	33.0	7.8	0.0	0.1	0.4	0.0	0.7	4.8	0.0	0.0	0.0	6.3
도라지	1.8	0.6	0.0	0.0	0.1	0.0	0.1	0.1	0.0	0.0	0.0	0.4
가지	1.6	0.3	0.0	0.0	0.1	0.0	0.2	5.0	0.0	0.0	0.0	0.2
양배추	12.9	1.8	0.0	0.0	0.6	0.0	3.2	9.6	0.0	0.0	0.0	3.6
미나리	2.8	0.6	0.0	0.0	0.1	0.0	0.3	1.1	0.0	0.0	0.0	3.2
버섯	2.3	0.7	0.0	0.0	0.3	0.0	0.2	0.1	0.0	0.0	0.0	0.4
깻잎	2.0	0.3	0.0	0.0	0.2	0.0	0.2	61.0	0.0	0.0	0.0	0.5
부추	2.8	1.1	0.0	0.0	0.4	0.0	0.0	60.2	0.0	0.0	0.0	1.3
숙주나물	2.8	0.3	0.0	0.0	0.4	0.0	0.1	0.8	0.0	0.0	0.0	2.0
단무지	1.1	0.3	0.0	0.0	0.0	0.0	0.1	0.0	0.0	0.0	0.0	0.6
두부	102.6	0.8	0.0	5.9	7.6	0.0	4.5	0.0	0.0	0.0	0.0	0.0
도토리묵	9.3	2.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김	57.4	8.2	0.0	0.1	6.2	0.0	0.0	0.0	0.0	0.0	0.0	3.6
미역	9.3	18.2	0.0	1.5	10.0	0.0	45.2	277.5	0.0	0.0	0.0	9.0
과실류												
사과	28.7	7.9	0.0	0.1	0.1	0.0	0.8	0.6	0.0	0.0	0.0	28.8
배	22.3	6.4	0.0	0.1	0.2	0.0	1.1	4.5	0.0	0.0	0.0	0.0
복숭아	10.3	1.8	0.0	0.0	0.1	0.0	0.1	0.0	0.0	0.0	0.0	0.0
포도	22.3	4.9	0.0	0.0	0.2	0.0	0.4	0.8	0.0	0.0	0.0	0.0
감	13.5	3.4	0.0	0.0	0.1	0.0	0.5	7.8	0.0	0.0	0.0	27.5
감귤	39.9	14.7	0.0	0.1	0.7	0.0	1.5	28.0	0.0	0.0	0.0	0.0
참외	19.9	3.0	0.0	0.2	0.9	0.0	0.8	0.0	0.0	0.0	0.0	8.4
수박	36.1	8.3	0.0	0.1	0.9	0.0	0.0	25.3	0.0	0.0	0.0	6.6
딸기	9.0	2.2	0.0	0.1	0.2	0.0	0.3	0.0	0.0	0.0	0.0	17.8
바나나	35.6	10.6	0.0	0.0	0.5	0.0	1.3	9.0	0.0	0.0	0.0	0.0

〈부표 1-1-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계속)

품목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니아신 mg NE	비타민B ₆ mg	엽산 ug DFE	비타민B ₁₂ ug	판토텐산 mg	비오틴 ug	칼슘 mg	인 mg	나트륨 mg
채소											
배추	0.4	0.1	0.8	0.0	0.0	0.0	0.0	0.0	58.0	36.0	30.0
무우	0.0	0.0	1.4	0.0	0.0	0.0	0.0	0.0	57.0	42.0	0.0
파	0.0	0.0	0.2	0.0	0.0	0.0	0.0	0.0	12.5	13.0	8.5
시금치	0.1	0.2	0.3	0.0	0.0	0.0	0.0	0.0	20.0	14.5	27.0
상추	0.0	0.0	0.1	0.0	0.0	0.0	0.0	0.0	12.3	6.0	1.5
콩나물	0.2	0.0	0.3	0.0	0.0	0.0	0.0	0.0	19.2	39.6	1.2
감자	0.2	0.0	0.2	0.0	0.0	0.0	0.0	0.0	8.4	70.2	12.6
오이	0.1	0.0	0.1	0.0	0.0	0.0	0.0	0.0	3.9	6.3	0.6
당근	0.0	0.0	0.3	0.0	0.0	0.0	0.0	0.0	14.0	13.3	10.5
풋고추	0.0	0.0	0.1	0.0	0.0	0.0	0.0	0.0	2.0	4.2	0.0
양파	0.0	0.0	0.1	0.0	0.0	0.0	0.0	0.0	9.6	18.0	1.2
호박	0.1	0.0	0.2	0.0	0.0	0.0	0.0	0.0	15.0	18.0	8.5
토마토	0.0	0.0	0.1	0.0	0.0	0.0	0.0	0.0	1.2	2.4	3.2
고구마	0.0	0.0	0.2	0.0	0.0	0.0	0.0	0.0	6.0	13.5	3.8
도라지	0.0	0.0	0.2	0.0	0.0	0.0	0.0	0.0	1.4	2.1	0.6
가지	0.0	0.0	0.0	0.0	0.0	0.0	0.0	0.0	1.4	1.9	0.0
양배추	0.0	0.0	0.2	0.0	0.0	0.0	0.0	0.0	12.4	11.6	6.4
미나리	0.0	0.0	0.1	0.0	0.0	0.0	0.0	0.0	15.6	7.4	1.9
버섯	0.0	0.0	0.1	0.0	0.0	0.0	0.0	0.0	0.1	6.5	0.4
깻잎	0.0	0.0	0.0	0.0	0.0	0.0	0.0	0.0	8.4	2.9	0.0
부추	0.0	0.0	0.0	0.0	0.0	0.0	0.0	0.0	1.7	9.8	1.8
숙주나물	0.0	0.0	0.1	0.0	0.0	0.0	0.0	0.0	3.0	6.4	0.6
단무지	0.0	0.0	0.0	0.0	0.0	0.0	0.0	0.0	2.2	1.6	100.7
두부	0.1	0.1	0.3	0.0	0.0	0.0	0.0	0.0	44.0	132.0	4.0
도토리묵	0.0	0.0	0.0	0.0	0.0	0.0	0.0	0.0	1.2	5.2	11.0
김	0.0	0.2	0.5	0.0	0.0	0.0	0.0	0.0	75.6	44.6	0.0
미역	0.1	0.5	2.3	0.0	0.0	0.0	0.0	0.0	479.5	153.5	3050.0
과실류											
사과	0.0	0.0	0.3	0.0	0.0	0.0	0.0	0.0	3.6	5.4	9.6
배	0.0	0.0	0.2	0.0	0.0	0.0	0.0	0.0	2.5	8.0	0.0
복숭아	0.0	0.0	0.1	0.0	0.0	0.0	0.0	0.0	1.0	3.8	0.4
포도	0.0	0.0	0.1	0.0	0.0	0.0	0.0	0.0	2.0	5.2	0.0
감	0.0	0.0	0.1	0.0	0.0	0.0	0.0	0.0	1.8	3.5	2.8
감귤	0.2	0.0	0.6	0.0	0.0	0.0	0.0	0.0	19.6	19.6	2.8
참외	0.0	0.0	0.2	0.0	0.0	0.0	0.0	0.0	2.4	31.6	4.0
수박	0.0	0.0	0.4	0.0	0.0	0.0	0.0	0.0	4.4	11.0	6.6
딸기	0.0	0.0	0.1	0.0	0.0	0.0	0.0	0.0	1.8	7.5	3.3
바나나	0.1	0.0	0.2	0.0	0.0	0.0	0.0	0.0	3.0	12.5	0.5

〈부표 1-1-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계속)

품목	품질 및 시기	규격 및 단위	구입량/일	g당가격	가정식비용/일	가격자료
조미식품					1,758.4원/일	
참기름	공장제품,초유	320ml	2g/일	22.465원/g	48원/일	소비자물가
콩기름	공장제품,1800ml	1병	21g/일	2.667원/g	56원/일	소비자물가
버터	중품	1통(454g)	7g/일	13.261원/g	98원/일	시장조사
고춧가루	중품	100g	14g/일	31.844원/g	438원/일	소비자물가
마늘	중품,간 것	1kg	19g/일	9.53원/g	182원/일	소비자물가
생강	중품	1kg	5g/일	4.556원/g	24원/일	소비자물가
후추가루	캔포장	100g(1캔)	0g/일	64.462원/g	20원/일	시장조사
카레가루	중품	100g(1봉)	3g/일	19.06원/g	61원/일	소비자물가
설탕	정백당	1kg(1포)	26g/일	2.133원/g	56원/일	소비자물가
소금	천일염	1.0kg	21g/일	3.462원/g	73원/일	소비자물가
깨	참깨(수입산)	500g(1되)	26g/일	8.149원/g	216원/일	소비자물가
간장	시장제품	900ml(1병)	19g/일	4.266원/g	81원/일	소비자물가
된장	PET용기	500g(1포)	13g/일	5.107원/g	65원/일	소비자물가
고추장	PET용기	500g(1포)	13g/일	8.367원/g	106원/일	소비자물가
혼합조미료	다시다	100g(1포)	2g/일	23.217원/g	37원/일	소비자물가
식초	사과식초	500ml(1병)	4g/일	1.375원/g	6원/일	시장조사
케첩	시장제품	500g(1병)	3g/일	3.626원/g	12원/일	시장조사
마요네즈	시장제품	500g(1병)	4g/일	3.959원/g	17원/일	시장조사
물엿	중품	1.2kg(1병)	53g/일	3.082원/g	163원/일	소비자물가
빵 및 과자류					1,553.5원/일	
케이크	중간 크기	800g(1판)	11g/일	20.089원/g	213원/일	소비자물가
스낵과자	시장제품	1봉(90g)	63g/일	11.247원/g	714원/일	소비자물가
비스킷	시장제품	1봉(150g)	95g/일	6.583원/g	627원/일	소비자물가
차음료 및 주류					1,562.2원/일	
커피	봉지용기(믹스)	175g(1봉지)	26g/일	40.173원/g	1,063원/일	소비자물가
보리차	티백포장	300g(1상자)	4g/일	5.587원/g	24원/일	소비자물가
콜라	PET 용기	1500ml(1병)	106g/일	1.762원/g	186원/일	소비자물가
쥬스	PET 용기	1500ml(1병)	106g/일	1.882원/g	199원/일	소비자물가
소주	시장제품	360ml(1병)	25g/일	3.555원/g	90원/일	소비자물가

〈부표 1-2-1〉 최저 주거비 마켓 바스켓(전세인 경우, 4급지 기준)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년수	단가(원)	수량
최저 주거비					
구입자금					
-조달비용	서울	아파트, 43㎡	1년	260,000,000원	1.50%
	경기	아파트, 43㎡	1년	200,000,000원	1.50%
	광역시·세종·창원	아파트, 43㎡	1년	130,000,000원	1.50%
	그 외	아파트, 43㎡	1년	72,000,000원	1.40%
-보증보험료	서울	아파트, 43㎡	1년	260,000,000원	0.13%
	경기	아파트, 43㎡	1년	200,000,000원	0.13%
	광역시·세종·창원	아파트, 43㎡	1년	130,000,000원	0.13%
	그 외	아파트, 43㎡	1년	72,000,000원	0.13%
-인지세	서울	아파트, 43㎡	6년	75,000원	1.00%
	경기	아파트, 43㎡	6년	75,000원	1.00%
	광역시·세종·창원	아파트, 43㎡	6년	75,000원	1.00%
	그 외	아파트, 43㎡	6년	35,000원	1.00%
관리비	서울	아파트, 43㎡	1월	1,423원	43㎡
	경기	아파트, 43㎡	1월	1,423원	43㎡
	광역시·세종·창원	아파트, 43㎡	1월	1,423원	43㎡
	그 외	아파트, 43㎡	1월	1,423원	43㎡
이사비	서울	(6년에 1회)	6년	1,000,000원	1회
	경기	(6년에 1회)	6년	1,000,000원	1회
	광역시·세종·창원	(6년에 1회)	6년	1,000,000원	1회
	그 외	(6년에 1회)	6년	1,000,000원	1회
부동산 중개수수료	서울	전세금의 0.3%	6년	780,000원	1회
	경기	전세금의 0.3%	6년	600,000원	1회
	광역시·세종·창원	전세금의 0.3%	6년	390,000원	1회
	그 외	전세금의 0.5%	6년	288,000원	1회
도배비	서울		6년	750,000원	43㎡
	경기		6년	750,000원	43㎡
	광역시·세종·창원		6년	750,000원	43㎡
	그 외		6년	750,000회	43㎡

서울	경기	광역·세종· 창원	그 외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년수,수량 설정기준
702,910원	560,670원	394,724원	253,083원				
572,433원					가격조사	가격조사, 주택도시기금, 한국은행(이자율)	
	440,333원						
		286,217원					
			153,720원				
33,107원					가격조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입자금 80%의 90%에 대한 보증)	한국주택 금융공사
	25,467원						
		16,553원					
			9,168원				
1,042원					가격조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입자금 80%의 90%에 대한 보증)	한국주택 금융공사
	1,042원						
		1,042원					
			700원				
61,189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 정보시스템)	공동주택 관리비
	61,189원						
		61,189원					
			61,189원				
13,889원						시장가격조사	시장가격조사
	13,889원						
		13,889원					
			13,889원				
10,833원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 요율표
	8,333원						
		5,417원					
			4,000원				
10,417원						실태조사	실태조사
	10,417원						
		10,417원					
			10,417원				

〈부표 1-2-2〉 최저 주거비 마켓 바스켓(전세인 경우, 3급지 기준)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년수	단가(원)	수량
최저 주거비					
구입자금					
-조달비용	대도시	아파트, 43㎡	1년	175,000,000원	1.50%
	중소도시	아파트, 43㎡	1년	120,000,000원	1.40%
	농어촌	아파트, 43㎡	1년	41,760,000원	1.30%
-보증보험료	대도시	아파트, 43㎡	1년	175,000,000원	0.13%
	중소도시	아파트, 43㎡	1년	120,000,000원	0.13%
	농어촌	아파트, 43㎡	1년	41,760,000원	0.13%
-인지세	대도시	아파트, 43㎡	6년	75,000원	1.00%
	중소도시	아파트, 43㎡	6년	35,000원	1.00%
	농어촌	아파트, 43㎡	6년	0원	1.00%
관리비	대도시	아파트, 43㎡	1월	1,423원	43㎡
	중소도시	아파트, 43㎡	1월	1,423원	43㎡
	농어촌	아파트, 43㎡	1월	1,423원	43㎡
이사비	대도시	6년에 1회	6년	1,000,000원	1회
	중소도시	6년에 1회	6년	1,000,000원	1회
	농어촌	6년에 1회	6년	1,000,000원	1회
부동산 중개수수료	대도시	전세금의 0.3%	6년	525,000원	1회
	중소도시	전세금의 0.3%	6년	360,000원	1회
	농어촌	전세금의 0.5%	6년	208,800원	1회
도배비	대도시		6년	750,000원	43㎡
	중소도시		6년	750,000원	43㎡
	농어촌		6년	750,000회	43㎡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년수,수량 설정기준
501,404원	359,994원	179,225원				
385,292원				가격조사	가격조사, 주택도시기금, 한국은행(이자율)	
	256,200원					
		86,374원				
22,283원				가격조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입자금 80%의 90%에 대한 보증)	한국주택 금융공사
	12,813원					
		4,456원				
1,042원				가격조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입자금 80%의 90%에 대한 보증)	한국주택 금융공사
	486원					
		0원				
61,189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 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비
	61,189원					
		61,189원				
13,889원					시장가격조사	시장가격조사
	13,889원					
		13,889원				
7,292원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요율표
	5,000원					
		2,900원				
10,417원					실태조사	실태조사
	10,417원					
		10,417원				

〈부표 1-2-3〉 최저 주거비 마켓 바스켓(월세인 경우, 4급지 기준)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년수	단가(원)	수량
최저 주거비					
임대료	서울	아파트, 43㎡	1월	810,417원	0.00%
	경기	아파트, 43㎡	1월	508,029원	0.00%
	광역·세종·창원	아파트, 43㎡	1월	441,667원	0.00%
	그 외	아파트, 43㎡	1월	372,917원	0.00%
관리비	서울	아파트, 43㎡	1월	1,423원	43㎡
	경기	아파트, 43㎡	1월	1,423원	43㎡
	광역·세종·창원	아파트, 43㎡	1월	1,423원	43㎡
	그 외	아파트, 43㎡	1월	1,423원	43㎡
이사비	서울	6년에 1회	6년	1,000,000원	1회
	경기	6년에 1회	6년	1,000,000원	1회
	광역·세종·창원	6년에 1회	6년	1,000,000원	1회
	그 외	6년에 1회	6년	1,000,000원	1회
부동산 중개수수료	서울	월차임 100배의 0.4%	6년	810,417원	1회
	경기	월차임 70배의 0.5%	6년	508,029원	1회
	광역·세종·창원	월차임 70배의 0.5%	6년	441,667원	1회
	그 외	월차임 70배의 0.5%	6년	372,917원	1회

서울	경기	광역·세종· 창원	그 외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년수,수량 설정기준
889,997원	585,577원	518,892원	449,808원				
810,417원					가격조사	가격조사	
	508,029원						
		441,667원					
			372,917원				
61,189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 정보시스템)	공동주택 관리비
	61,189원						
		61,189원					
			61,189원				
13,889원						시장가격조사	시장가격 조사
	13,889원						
		13,889원					
			13,889원				
4,502원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 요율표
	2,470원						
		2,147원					
			1,813원				

〈부표 1-2-4〉 최저 주거비 마켓 바스켓(월세인 경우, 3급지 기준)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년수	단가(원)	수량
최저 주거비					
임대료	대도시	아파트, 43㎡	1월	545,833원	0.00%
	중소도시	아파트, 43㎡	1월	422,917원	0.00%
	농어촌	아파트, 43㎡	1월	261,453원	0.00%
관리비	대도시	아파트, 43㎡	1월	1,423원	43㎡
	중소도시	아파트, 43㎡	1월	1,423원	43㎡
	농어촌	아파트, 43㎡	1월	1,423원	43㎡
이사비	대도시	6년에 1회	6년	1,000,000원	1회
	중소도시	6년에 1회	6년	1,000,000원	1회
	농어촌	6년에 1회	6년	1,000,000원	1회
부동산 중개수수료	대도시	월차임 100배의 0.4%	6년	525,000원	1회
	중소도시	월차임 70배의 0.5%	6년	360,000원	1회
	농어촌	월차임 70배의 0.5%	6년	208,800회	1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년수,수량 설정기준
628,203원	502,995원	339,431원				
545,833원				가격조사	가격조사	
	422,917원					
		261,453원				
61,189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 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비
	61,189원					
		61,189원				
13,889원					시장가격조사	시장가격조사
	13,889원					
		13,889원				
7,292원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요율표
	5,000원					
		2,900원				

〈부표 1-3-1〉 최저 광열·수도비 마켓 바스켓(4급지 기준)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최저 광열·수도비					
전기요금	서울	311.1kWh	1월	130.0원/kWh	
	경기	311.1kWh	1월	129.0원/kWh	
	광역·세종·창원	311.1kWh	1월	124.4원/kWh	
	그 외	311.1kWh	1월	127.9원/kWh	
상수하수도 요금	서울	18.39m ³	1월	404.1원/m ³	
	경기	18.39m ³	1월	498.5원/m ³	
	광역·세종·창원	18.39m ³	1월	588.3원/m ³	
	그 외	18.39m ³	1월	656.8원/m ³	
난방 및 취사비	서울	2428.3MJ	1월	19.7원/MJ	
	경기	2428.3MJ	1월	20.0원/MJ	
	광역·세종·창원	2428.3MJ	1월	20.3원/MJ	
	그 외	2428.3MJ	1월	21.2원/MJ	

서울	경기	광역·세종· 창원	그 외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122,759원	122,263원	124,251원	118,191원				
40,443원					서울 지역 평균 단가	에너지 총조사	지역별 사용량 차이는 없다고 보고, 지역별 단가 차이만 반영
	40,132원				지역별 가구가중평균		
		38,701원			지역별 가구가중평균		
			39,790원		지역별 가구가중평균		
28,595원					서울시	상수도 통계	지역별 단가가 지역별 가중평균에 가장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가격 반영
	27,857원				김포시		
		29,783원			세종		
			21,142원		문경시		
53,721원					서울지역 평균 단가	에너지 총조사	단가는 취사 기준. 도시 가스 지역별 사용량 차이는 없다고 보고, 지역별 단가 차이만 반영
	54,274원				경기지역 평균 단가		
		55,767원			8개 지역 인구 가중 평균		
			57,259원		21개 지역 인구가중평균		

〈부표 1-3-2〉 최저 광열·수도비 마켓 바스켓(3급지 기준)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최저 광열·수도비					
전기요금	대도시	311.1kWh	1월	127.0원/kWh	
	중소도시	311.1kWh	1월	126.6원/kWh	
	농어촌	311.1kWh	1월	135.0원/kWh	
상수하수도 요금	대도시	18.39m ³	1월	506.1원/m ³	
	중소도시	18.39m ³	1월	566.2원/m ³	
	농어촌	18.39m ³	1월	676.6원/m ³	
난방 및 취사비	대도시	2428.3MJ	1월	20.0원/MJ	
	중소도시	2428.3MJ	1월	20.0원/MJ	
	농어촌	2428.3MJ	1월	21.1원/MJ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117,141원	116,398원	121,149원				
39,510원				가구가중평균	에너지총조사	지역별 사용량 차이는 없다고 보고, 지역별 단가 차이만 반영
	39,385원					
		41,999원				
23,088원				인천시	상수도통계	지역별 단가가 지역별 가중평균에 가장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가격 반영
	22,586원			군포시		
		21,942원		홍천군		
54,543원				인구가중평균	에너지총조사	단가는 취사 기준. 도시 가스 지역별 사용량 차이는 없다고 보고, 지역별 단가 차이만 반영
	54,427원			경기지역 가격		
		57,208원		인구가중평균		

〈부표 1-4-1〉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4급지 기준)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가사가구집기					
일반가구					
장롱	전국	8자목재	9년	848,783원	1개
서랍장	전국	5단플라스틱	9년	52,385원	1개
책상	전국	목재학생용책상650*450*760	8년	71,392원	2개
의자	전국	목재	9년	25,473원	2개
벽시계	전국	.	10년	35,223원	1개
탁상시계	전국	.	10년	26,961원	2개
화장대	전국	철제,거울포함	8년	57,689원	1개
행거	전국	철제	10년	18,843원	1개
거실장	전국	5자목재	9년	82,374원	1개
가정용기구					
냉장고	전국	428L,2도어,일반형	10년	642,652원	1대
전기밥솥	전국	6인용	9년	59,066원	1개
가스레인지	전국	버너2개	10년	61,596원	1개
세탁기	전국	10kg,통세척	9년	283,179원	1대
다리미	전국	일반유선	10년	28,126원	1개
선풍기	전국	14인치	10년	44,708원	2개
믹서	전국	일반믹서기1리터	7년	34,969원	1개
전자레인지	전국	20리터465×279×360mm	7년	85,468원	1개
헤어드라이어	전국	일반용220v1200w	6년	20,378원	1개
청소기	전국	일반용2.4L	10년	62,638원	1개
식기주방용품					
밥상	전국	4인용4각	10년	49,752원	1개
밥그릇, 국그릇	전국	반상기(2벌 1세트)	8년	82,841원	3세트
접시	전국	7.5인치	8년	12,107원	9개
컵	전국	유리	8년	1,098원	8개
쟁반	전국	중	5년	4,871원	1개
냄비	전국	중	5년	5,659원	3개
주전자	전국	대	10년	16,721원	1개
	전국	소	10년	8,558원	1개
후라이팬	전국	직경 28cm (대)	5년	14,283원	1개
	전국	직경 24cm (중)	5년	12,497원	1개

서울	경기	광역·세종· 창원	그 외 지역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60,337원	59,575원	59,996원	58,872원				
12,567원	12,567원	12,567원	12,567원				
7,859원	7,859원	7,859원	7,859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485원	485원	485원	48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487원	1,487원	1,487원	1,48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72원	472원	472원	472원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94원	294원	294원	29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49원	449원	449원	44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601원	601원	601원	601원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57원	157원	157원	15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763원	763원	763원	76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2,254원	12,254원	12,254원	12,254원				
5,355원	5,355원	5,355원	5,355원	보유율/탄력성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547원	547원	547원	547원	보유율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513원	513원	513원	51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622원	2,622원	2,622원	2,622원	보유율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234원	234원	234원	234원	보유율/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745원	745원	745원	745원	보유율/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16원	416원	416원	416원	보유율/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017원	1,017원	1,017원	1,017원	보유율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83원	283원	283원	283원	보유율/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522원	522원	522원	522원	보유율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11,028원	11,028원	11,028원	11,028원				
415원	415원	415원	41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589원	2,589원	2,589원	2,58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135원	1,135원	1,135원	1,13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92원	92원	92원	9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81원	81원	81원	8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83원	283원	283원	28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39원	139원	139원	13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71원	71원	71원	7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38원	238원	238원	23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08원	208원	208원	20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부표 1-4-1〉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4급지 기준)(계속)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식도	전국	스테인레스 중	5년	6,822원	1개
과도	전국	스테인레스 중	5년	2,675원	1개
도마	전국	중	10년	6,583원	1개
수저	전국	스테인레스	10년	1,821원	8벌
수저통	전국	플라스틱	5년	2,765원	1개
조미료통	전국	플라스틱 3개들이 1세트	5년	7,183원	1세트
반찬통(대)	전국	플라스틱 대	3년	4,796원	3개
반찬통(중)	전국	플라스틱 중	3년	3,117원	5개
김치통(9L)	전국	폴리프로필렌 9리터	3년	17,364원	3개
김치통(소)	전국	소	3년	4,796원	3개
바가지	전국	플라스틱 중	2년	1,317원	1개
고무통	전국		10년	7,900원	1개
국자	전국	플라스틱 중	5년	1,974원	2개
대야	전국	플라스틱 중	8년	2,633원	1개
랩	전국	30Cm*50m	5월	5,737원	1개
쿠킹호일	전국	30Cm*30m	5월	5,571원	1개
보온병	전국	1.2L	10년	14,483원	1개
가사잡화소모품					
드라이버	전국	중	10년	2,490원	1개
망치	전국	중	10년	4,979원	1개
못	전국	나사못(6종1세트)	10년	1,245원	1세트
가위	전국	중	10년	3,734원	1개
건조대	전국	중	10년	20,271원	1개
빨래판	전국	플라스틱	5년	4,678원	1개
빨래집게	전국	10개들이1세트	1년	1,559원	2세트
방빗자루	전국	플라스틱	10년	4,678원	1개
쓰레받기	전국	플라스틱	10년	3,119원	1개
휴지통	전국	플라스틱 중	9년	4,678원	1개
	전국	플라스틱 소	9년	2,339원	1개
비누통	전국	플라스틱	10년	1,559원	1개
비늘	전국		5년	1,559원	1쌈
목도장	전국		5년	7,796원	2개
옷걸이	전국		3년	110원	36개
물티슈	전국		1월	1,000원	4개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 창원	그 외 지역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114원	114원	114원	114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5원	45원	45원	45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55원	55원	55원	55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21원	121원	121원	121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6원	46원	46원	46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20원	120원	120원	120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00원	400원	400원	400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내구연수 감소, 수량 증가
433원	433원	433원	433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내구연수 감소, 수량 증가
1,447원	1,447원	1,447원	1,447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내구연수 감소, 수량 증가
400원	400원	400원	400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내구연수 감소, 수량 증가
55원	55원	55원	55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수량 1개 제외
66원	66원	66원	66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66원	66원	66원	66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7원	27원	27원	27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147원	1,147원	1,147원	1,147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114원	1,114원	1,114원	1,114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21원	121원	121원	121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482원	1,482원	1,482원	1,482원
21원	21원	21원	21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1원	41원	41원	41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0원	10원	10원	10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31원	31원	31원	31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69원	169원	169원	169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78원	78원	78원	78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60원	260원	260원	260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39원	39원	39원	39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6원	26원	26원	26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3원	43원	43원	43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2원	22원	22원	22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3원	13원	13원	13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6원	26원	26원	26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60원	260원	260원	260원	탄력성	.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10원	110원	110원	110원	보유율	.		신규
333원	333원	333원	333원	보유율	.		신규

〈부표 1-4-1〉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4급지 기준)(계속)

중분류/품목	지역	계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가사소모품					
형광전구	전국	주광색 18w 일반조명용	1년	1,438원	6개
LED전구	전국	주광색 18w 일반조명용	3년	8,586원	2개
화장지	전국	두루마리 60m 1개	1월	620원	4개
고무장갑	전국	중	3월	1,843원	2짝
빨래비누	전국	230g	1월	802원	1개
합성세제	전국	3.0kg	4월	10,370원	1봉
부엌용세제	전국	1Kg	3월	2,888원	1병
살충방충제	전국	수압분무식 500ml	1년	3,561원	1개
나프탈렌	전국		1년	1,826원	1개
습기제거제	전국	제습량525ml	1년	2,181원	1개
행주	전국		4월	954원	2개
수세미	전국	150mm*230mm	4월	1,526원	1개
구두솔	전국		1년	877원	1개
구두약	전국		1년	763원	1개
접착제	전국		1년	636원	1개
건전지	전국	알카리AA 1.5V	1년	962원	9개
침구 및 직물제품					
이불	전국	동	10년	73,930원	4채
	전국	춘추	10년	39,605원	4채
요	전국	동	10년	33,005원	4채
	전국	춘추	10년	26,404원	4채
베개	전국		10년	6,601원	4개
타올	전국	80Cm*40Cm	2년	3,232원	4매
커튼	전국	150Cm×230Cm	10년	33,216원	2세트
가사서비스					
가구집기수선료	전국		1년	8,935원	2회
쓰레기봉투	서울	10리터1매	1월	255원	5매
	경기	10리터1매	1월	301원	5매
	광역시/세종/창원	10리터1매	1월	332원	5매
	그 외 지역	10리터1매	1월	199원	5매
음식물처리비용	서울	3리터	1월	300원	5매
	경기	3리터	1월	101원	5매
	광역시/세종/창원	3리터	1월	155원	5매
	그 외 지역	3리터	1월	63원	5매

서울	경기	광역·세종· 창원	그 외 지역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11,665원	11,665원	11,665원	11,665원				
719원	719원	719원	719원	보유율/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77원	477원	477원	477원	보유율/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480원	2,480원	2,480원	2,48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229원	1,229원	1,229원	1,22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802원	802원	802원	80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593원	2,593원	2,593원	2,59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963원	963원	963원	96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97원	297원	297원	29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52원	152원	152원	15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82원	182원	182원	18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77원	477원	477원	47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382원	382원	382원	38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73원	73원	73원	7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64원	64원	64원	6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53원	53원	53원	5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722원	722원	722원	72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7,077원	7,077원	7,077원	7,077원				
2,464원	2,464원	2,464원	2,46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320원	1,320원	1,320원	1,32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100원	1,100원	1,100원	1,10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880원	880원	880원	88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20원	220원	220원	22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539원	539원	539원	53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554원	554원	554원	55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264원	3,502원	3,923원	2,799원				
1,489원	1,489원	1,48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275원				탄력성	ANOVA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50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66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99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500원				보유율	ANOVA	시장조사(시군구청)	2020년 同
	507원			보유율		시장조사(시군구청)	2020년 同
		773원		보유율		시장조사(시군구청)	2020년 同
			317원	보유율		시장조사(시군구청)	2020년 同

〈부표 1-4-2〉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3급지 기준)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가사가구집기					
일반가구					
장롱	전국	8자목재	9년	848,783원	1개
서랍장	전국	5단플라스틱	9년	52,385원	1개
책상	전국	목재학생용책상650*450*760	8년	71,392원	2개
의자	전국	목재	9년	25,473원	2개
벽시계	전국	.	10년	35,223원	1개
탁상시계	전국	.	10년	26,961원	2개
화장대	전국	철제,거울포함	8년	57,689원	1개
행거	전국	철제	10년	18,843원	1개
거실장	전국	5자목재	9년	82,374원	1개
가정용기구					
냉장고	전국	428L,2도어,일반형	10년	642,652원	1대
전기밥솥	전국	6인용	9년	59,066원	1개
가스레인지	전국	버너2개	10년	61,596원	1개
세탁기	전국	10kg,통세척	9년	283,179원	1대
다리미	전국	일반유선	10년	28,126원	1개
선풍기	전국	14인치	10년	44,708원	2개
믹서	전국	일반믹서기1리터	7년	34,969원	1개
전자레인지	전국	20리터465×279×360mm	7년	85,468원	1개
헤어드라이어	전국	일반용220v1200w	6년	20,378원	1개
청소기	전국	일반용2.4L	10년	62,638원	1개
식기주방용품					
밥상	전국	4인용4각	10년	49,752원	1개
밥그릇, 국그릇	전국	반상기(2벌 1세트)	8년	82,841원	3세트
접시	전국	7.5인치	8년	12,107원	9개
컵	전국	유리	8년	1,098원	8개
쟁반	전국	중	5년	4,871원	1개
냄비	전국	중	5년	5,659원	3개
주전자	전국	대	10년	16,721원	1개
	전국	소	10년	8,558원	1개
후라이팬	전국	직경 28cm (대)	5년	14,283원	1개
	전국	직경 24cm (중)	5년	12,497원	1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59,912원	59,427원	58,727원				
12,567원	12,567원	12,567원				
7,859원	7,859원	7,859원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485원	485원	48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487원	1,487원	1,48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72원	472원	472원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94원	294원	29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49원	449원	44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601원	601원	601원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57원	157원	15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763원	763원	76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2,254원	12,254원	12,254원				
5,355원	5,355원	5,355원	보유율/탄력성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547원	547원	547원	보유율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513원	513원	51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622원	2,622원	2,622원	보유율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234원	234원	234원	보유율/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745원	745원	745원	보유율/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16원	416원	416원	보유율/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017원	1,017원	1,017원	보유율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83원	283원	283원	보유율/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522원	522원	522원	보유율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11,028원	11,028원	11,028원				
415원	415원	41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589원	2,589원	2,58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135원	1,135원	1,13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92원	92원	9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81원	81원	8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83원	283원	28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39원	139원	13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71원	71원	7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38원	238원	23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08원	208원	20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부표 1-4-2〉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3급지 기준)(계속)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식도	전국	스테인레스 중	5년	6,822원	1개
과도	전국	스테인레스 중	5년	2,675원	1개
도마	전국	중	10년	6,583원	1개
수저	전국	스테인레스	10년	1,821원	8벌
수저통	전국	플라스틱	5년	2,765원	1개
조미료통	전국	플라스틱 3개들이 1세트	5년	7,183원	1세트
반찬통(대)	전국	플라스틱 대	3년	4,796원	3개
반찬통(중)	전국	플라스틱 중	3년	3,117원	5개
김치통(9L)	전국	폴리프로필렌 9리터	3년	17,364원	3개
김치통(소)	전국	소	3년	4,796원	3개
바가지	전국	플라스틱 중	2년	1,317원	1개
고무통	전국		10년	7,900원	1개
국자	전국	플라스틱 중	5년	1,974원	2개
대야	전국	플라스틱 중	8년	2,633원	1개
랩	전국	30Cm*50m	5월	5,737원	1개
쿠킹호일	전국	30Cm*30m	5월	5,571원	1개
보온병	전국	1.2L	10년	14,483원	1개
가사잡화소모품					
드라이버	전국	중	10년	2,490원	1개
망치	전국	중	10년	4,979원	1개
못	전국	나사못(6종1세트)	10년	1,245원	1세트
가위	전국	중	10년	3,734원	1개
건조대	전국	중	10년	20,271원	1개
빨래판	전국	플라스틱	5년	4,678원	1개
빨래집게	전국	10개들이1세트	1년	1,559원	2세트
방빗자루	전국	플라스틱	10년	4,678원	1개
쓰레받기	전국	플라스틱	10년	3,119원	1개
휴지통	전국	플라스틱 중	9년	4,678원	1개
	전국	플라스틱 소	9년	2,339원	1개
비누통	전국	플라스틱	10년	1,559원	1개
비늘	전국		5년	1,559원	1쌈
목도장	전국		5년	7,796원	2개
옷걸이	전국		3년	110원	36개
물티슈	전국		1월	1,000원	4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114원	114원	11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5원	45원	4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55원	55원	5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21원	121원	12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6원	46원	4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20원	120원	12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00원	400원	40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내구연수 감소, 수량 증가
433원	433원	43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내구연수 감소, 수량 증가
1,447원	1,447원	1,44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내구연수 감소, 수량 증가
400원	400원	40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내구연수 감소, 수량 증가
55원	55원	5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수량 1개 제외
66원	66원	6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66원	66원	6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7원	27원	2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147원	1,147원	1,14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114원	1,114원	1,11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21원	121원	12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482원	1,482원	1,482원				
21원	21원	2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1원	41원	4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0원	10원	1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31원	31원	3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69원	169원	16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78원	78원	7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60원	260원	26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39원	39원	3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6원	26원	2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3원	43원	4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2원	22원	2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3원	13원	1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6원	26원	2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60원	260원	26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10원	110원	110원	보유율			신규
333원	333원	333원	보유율			신규

〈부표 1-4-2〉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3급지 기준)(계속)

중분류/품목	지역	계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가사소모품					
형광전구	전국	주광색 18w 일반조명용	1년	1,438원	6개
LED전구	전국	주광색 18w 일반조명용	3년	8,586원	2개
화장지	전국	두루마리 60m 1개	1월	620원	4개
고무장갑	전국	중	3월	1,843원	2짝
빨래비누	전국	230g	1월	802원	1개
합성세제	전국	3.0kg	4월	10,370원	1봉
부엌용세제	전국	1Kg	3월	2,888원	1병
살충방충제	전국	수압분무식 500ml	1년	3,561원	1개
나프탈렌	전국		1년	1,826원	1개
습기제거제	전국	제습량525ml	1년	2,181원	1개
행주	전국		4월	954원	2개
수세미	전국	150mm*230mm	4월	1,526원	1개
구두솔	전국		1년	877원	1개
구두약	전국		1년	763원	1개
접착제	전국		1년	636원	1개
건전지	전국	알카리AA 1.5V	1년	962원	9개
침구 및 직물제품					
이불	전국	동	10년	73,930원	4채
	전국	춘추	10년	39,605원	4채
요	전국	동	10년	33,005원	4채
	전국	춘추	10년	26,404원	4채
베개	전국		10년	6,601원	4개
타올	전국	80Cm*40Cm	2년	3,232원	4매
커튼	전국	150Cm×230Cm	10년	33,216원	2세트
가사서비스					
가구집기수선료	전국		1년	8,935원	2회
쓰레기봉투	서울	10리터1매	1월	255원	5매
	경기	10리터1매	1월	301원	5매
	광역시/세종/창원	10리터1매	1월	332원	5매
	그 외 지역	10리터1매	1월	199원	5매
음식물처리비용	서울	3리터	1월	300원	5매
	경기	3리터	1월	101원	5매
	광역시/세종/창원	3리터	1월	155원	5매
	그 외 지역	3리터	1월	63원	5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11,665원	11,665원	11,665원				
719원	719원	719원	보유율/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77원	477원	477원	보유율/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480원	2,480원	2,48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229원	1,229원	1,22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802원	802원	80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593원	2,593원	2,59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963원	963원	96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97원	297원	29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52원	152원	15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82원	182원	18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77원	477원	47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382원	382원	38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73원	73원	7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64원	64원	6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53원	53원	5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722원	722원	72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7,077원	7,077원	7,077원				
2,464원	2,464원	2,46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320원	1,320원	1,32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100원	1,100원	1,10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880원	880원	88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20원	220원	22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539원	539원	53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554원	554원	55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3,839원	3,354원	2,654원				
1,489원	1,489원	1,48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710원			탄력성	ANOVA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33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00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640원			보유율	ANOVA	시장조사(시군구청)	2020년 同
	530원		보유율		시장조사(시군구청)	2020년 同
		160원	보유율		시장조사(시군구청)	2020년 同
			보유율		시장조사(시군구청)	2020년 同

〈부표 1-5-1〉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3,4급지 공통)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피복 및 신발					
외의					
남성가구주(47세)					
신사복	전국	동	7년	116,680원	2벌
	전국	춘추	7년	103,716원	2벌
오버코트	전국	동	7년	106,263원	1점
점퍼	전국	동	7년	41,376원	2점
	전국	춘추	7년	26,711원	2점
바지	전국	동	5년	27,898원	2점
	전국	춘추	5년	20,923원	2점
반바지	전국	하	5년	13,949원	2점
운동복	전국	동,잠옷겸용	5년	30,844원	2벌
	전국	춘추,잠옷겸용	5년	20,132원	2벌
여성배우자(46세)					
숙녀복	전국	동	7년	116,867원	2벌
	전국	춘추	7년	90,897원	2벌
오버코트	전국	동	7년	104,969원	1점
점퍼	전국	동	7년	41,376원	2점
스커트	전국	춘추, 동	7년	41,695원	2점
바지	전국	동	5년	27,796원	3점
	전국	춘추	5년	20,847원	3점
반바지	전국	하	5년	13,898원	2점
운동복	전국	동,잠옷겸용	5년	30,844원	2벌
	전국	춘추,잠옷겸용	5년	23,137원	2벌
자녀(남, 17세 고등학생)					
점퍼	전국	동	2년	41,376원	1점
	전국	춘추	2년	27,584원	1점
바지	전국	동	2년	20,530원	2점
	전국	춘추	2년	13,687원	2점
반바지	전국	하	2년	10,949원	2점
교복	전국	동	3년	191,324원	1벌
	전국	하	3년	85,228원	1벌
체육복	전국	동	3년	26,446원	1벌
	전국	하	3년	22,039원	1벌

서울	경기	광역·세종· 창원	그 외 지역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106,564원	106,564원	106,564원	106,564원				
57,636원	57,636원	57,636원	57,636원				
12,024원	12,024원	12,024원	12,024원				
2,778원	2,778원	2,778원	2,77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469원	2,469원	2,469원	2,46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265원	1,265원	1,265원	1,26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985원	985원	985원	98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636원	636원	636원	63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930원	930원	930원	93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697원	697원	697원	69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65원	465원	465원	46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028원	1,028원	1,028원	1,02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711원	711원	711원	71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2,869원	12,869원	12,869원	12,869원				
2,783원	2,783원	2,783원	2,78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164원	2,164원	2,164원	2,16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250원	1,250원	1,250원	1,25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985원	985원	985원	98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993원	993원	993원	99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390원	1,390원	1,390원	1,39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042원	1,042원	1,042원	1,04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63원	463원	463원	46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028원	1,028원	1,028원	1,02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771원	771원	771원	77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5,666원	15,666원	15,666원	15,666원				
1,724원	1,724원	1,724원	1,72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149원	1,149원	1,149원	1,14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711원	1,711원	1,711원	1,71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141원	1,141원	1,141원	1,14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912원	912원	912원	91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5,315원	5,315원	5,315원	5,315원	보유율		학교알리미(2022.9)	수업연한
2,367원	2,367원	2,367원	2,367원	탄력성		학교알리미(2022.9)	수업연한
735원	735원	735원	73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612원	612원	612원	61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부표 1-5-1〉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3,4급지 공통)(계속)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자녀(여, 15세 중학생)					
점퍼	전국	동	2년	41,376원	1점
	전국	춘추	2년	27,584원	1점
바지	전국	동	2년	20,590원	3점
	전국	춘추	2년	13,727원	2점
반바지	전국	하	2년	10,982원	2점
교복	전국	동	3년	188,395원	1벌
	전국	하	3년	82,994원	1벌
스커트	전국	춘추, 동	2년	16,473원	1점
체육복	전국	동	3년	26,446원	1벌
	전국	하	3년	22,039원	1벌
스웨터 셔츠					
남성가구주(47세)					
와이셔츠	전국	긴팔	5년	15,071원	3점
	전국	반팔	5년	12,559원	3점
셔츠	전국	긴팔	5년	21,094원	2점
	전국	반팔	5년	14,063원	2점
스웨터	전국		5년	20,790원	2점
남방	전국		5년	12,556원	2점
여성배우자(46세)					
셔츠	전국	긴팔	5년	21,094원	3점
	전국	반팔	5년	14,063원	3점
스웨터	전국	겨울	5년	20,790원	2점
블라우스	전국		5년	26,195원	3점
자녀(남, 17세 고등학생)					
셔츠	전국	긴팔	2년	14,063원	2점
	전국	반팔	2년	7,032원	2점
스웨터	전국		3년	16,632원	3점
자녀(여, 15세 중학생)					
셔츠	전국	긴팔	2년	13,781원	2점
	전국	반팔	2년	7,032원	2점
스웨터	전국		3년	16,632원	3점
블라우스	전국		3년	12,882원	3점
내의					
남성가구주(47세)					
동내의	전국	성인용 상하 순면60's	3년	32,320원	3벌
런닝	전국	남자성인용 흰색 순면40's	3년	3,267원	9매
팬티	전국	성인용 흰색 순면	3년	3,227원	9매

서울	경기	광역·세종· 창원	그 외 지역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17,077원	17,077원	17,077원	17,077원				
1,724원	1,724원	1,724원	1,72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149원	1,149원	1,149원	1,14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574원	2,574원	2,574원	2,57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144원	1,144원	1,144원	1,14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915원	915원	915원	91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5,233원	5,233원	5,233원	5,233원	보유율		학교알리미(2022.9)	수업연한
235원	235원	235원	235원	보유율		학교알리미(2022.9)	수업연한
686원	686원	686원	68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735원	735원	735원	73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612원	612원	612원	61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4,765원	14,765원	14,765원	14,765원				
3,666원	3,666원	3,666원	3,666원				
754원	754원	754원	75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628원	628원	628원	62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703원	703원	703원	70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69원	469원	469원	46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693원	693원	693원	69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19원	419원	419원	41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3,761원	3,761원	3,761원	3,761원				
1,055원	1,055원	1,055원	1,05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703원	703원	703원	70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693원	693원	693원	69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310원	1,310원	1,310원	1,31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3,144원	3,144원	3,144원	3,144원				
1,172원	1,172원	1,172원	1,17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586원	586원	586원	58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386원	1,386원	1,386원	1,38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194원	4,194원	4,194원	4,194원				
1,148원	1,148원	1,148원	1,14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586원	586원	586원	58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386원	1,386원	1,386원	1,38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074원	1,074원	1,074원	1,07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4,869원	14,869원	14,869원	14,869원				
4,317원	4,317원	4,317원	4,317원				
2,693원	2,693원	2,693원	2,69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817원	817원	817원	81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807원	807원	807원	80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부표 1-5-1>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3,4급지 공통)(계속)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여성배우자(46세)					
동내의	전국	성인용상하 순면60's	3년	23,471원	3벌
런닝	전국		3년	2,460원	9매
팬티	전국	성인용 삼각 순면	3년	4,425원	12매
브래지어	전국		3년	6,149원	2점
속치마	전국	양장용	3년	122,98원	2점
자녀(남, 17세 고등학생)					
동내의	전국		3년	11,477원	3벌
런닝	전국		3년	2,869원	9점
팬티	전국		3년	2,478원	9점
자녀(여, 15세 중학생)					
동내의	전국		3년	10,823원	3벌
런닝	전국		3년	2,706원	9점
팬티	전국		3년	2,337원	9점
브래지어	전국		3년	6,149원	2점
속치마	전국		3년	12,298원	2점
직물.실					
실	전국		6년	1,294원	2타래
기타피복					
남성가구주(47세)					
넥타이	전국				
장갑	전국	방한용	2년	9,910원	1켤레
혁대	전국		3년	5,896원	1개
양말	전국	사계절용	1년	2,546원	4켤레
목도리	전국		6년	8,019원	1개
손수건	전국		6년	1,179원	2개
여성배우자(46세)					
스타킹	전국	팬티스타킹 1켤레	3월	1,822원	1개
	전국	판타롱스타킹 1켤레	2월	884원	1개
장갑	전국	방한용	2년	9,910원	1켤레
혁대	전국		3년	5,896원	1개
양말	전국	사계절용	1년	2,546원	2켤레
목도리	전국		6년	8,019원	1개
손수건	전국		6년	1,179원	1개
자녀(남, 17세 고등학생)					
장갑	전국	방한용	2년	9,315원	1켤레

서울	경기	광역·세종· 창원	그 외 지역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5,071원	5,071원	5,071원	5,071원				
1,956원	1,956원	1,956원	1,95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615원	615원	615원	61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475원	1,475원	1,475원	1,47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342원	342원	342원	34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683원	683원	683원	68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293원	2,293원	2,293원	2,293원				
956원	956원	956원	95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717원	717원	717원	71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620원	620원	620원	62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3,188원	3,188원	3,188원	3,188원				
902원	902원	902원	90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6,777원	6,777원	6,777원	6,77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584원	584원	584원	58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342원	342원	342원	34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683원	683원	683원	683원				성인 여성
36원	36원	36원	36원				
36원	36원	36원	3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7,118원	7,118원	7,118원	7,118원				
1,570원	1,570원	1,570원	1,570원				
							제외
413원	413원	413원	41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64원	164원	164원	16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849원	849원	849원	84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11원	111원	111원	11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33원	33원	33원	3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177원	2,177원	2,177원	2,177원				
607원	607원	607원	60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42원	442원	442원	44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13원	413원	413원	41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64원	164원	164원	16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24원	424원	424원	42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11원	111원	111원	11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6원	16원	16원	1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382원	1,382원	1,382원	1,382원				
388원	388원	388원	38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부표 1-5-1>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3,4급지 공통)(계속)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허리띠	전국		3년	5,190원	1개
양말	전국	사계절용	1년	1,771원	4켤레
목도리	전국		2년	6,250원	1개
자녀(여, 15세 중학생)					
스타킹	전국	팬티스타킹 1켤레	3월	1,822원	1개
장갑	전국	방한용	2년	9,315원	1켤레
허리띠	전국		3년	5,190원	1개
양말	전국	사계절용	1년	1,771원	4켤레
목도리	전국		2년	6,250원	1개
신발					
남성가구주(47세)					
구두	전국	인조가죽	4년	44,456원	1켤레
운동화	전국		2년	18,395원	1켤레
슬리퍼	전국		3년	6,041원	1켤레
여성배우자(46세)					
구두	전국	인조가죽	4년	29,850원	1켤레
운동화	전국		2년	17,541원	1켤레
슬리퍼	전국		3년	6,041원	1켤레
샌들	전국		3년	17,772원	1켤레
자녀(남, 17세 고등학생)					
운동화	전국		2년	11,858원	1켤레
실내화	전국	백색, 학생용 1켤레	1년	5,060원	1켤레
샌들	전국		2년	9,667원	1켤레
자녀(여, 15세 중학생)					
운동화	전국		2년	11,861원	1켤레
실내화	전국	백색, 학생용 1켤레	1년	5,060원	1켤레
샌들	전국		2년	10,060원	1켤레
피복 및 신발서비스					
세탁료	전국	신사복상하 드라이크리닝	1년	7,728원	2벌
	전국	숙녀복상하 드라이크리닝	1년	7,728원	2벌
	전국	첫째자녀 교복드라이크리닝	1년	7,728원	2회
	전국	둘째자녀 교복드라이크리닝	1년	7,728원	2회
의복수선료	전국	신사복 하의 기장 수선	1년	3,766원	1벌
구두수선료	전국	남성용 구두급 수선료	3년	5,224원	1켤레

서울	경기	광역·세종· 창원	그 외 지역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144원	144원	144원	14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590원	590원	590원	59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60원	260원	260원	26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989원	1,989원	1,989원	1,989원				
607원	607원	607원	607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성인 여성
388원	388원	388원	38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44원	144원	144원	14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590원	590원	590원	59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60원	260원	260원	260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6,529원	6,529원	6,529원	6,529원				
1,860원	1,860원	1,860원	1,860원				
926원	926원	926원	92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766원	766원	766원	766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68원	168원	168원	16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015원	2,015원	2,015원	2,015원				
622원	622원	622원	62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731원	731원	731원	731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68원	168원	168원	16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94원	494원	494원	494원	보유율/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319원	1,319원	1,319원	1,319원				
494원	494원	494원	49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22원	422원	422원	42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03원	403원	403원	403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335원	1,335원	1,335원	1,335원				
494원	494원	494원	49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22원	422원	422원	422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19원	419원	419원	419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5,611원	5,611원	5,611원	5,611원				
1,288원	1,288원	1,288원	1,28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수량 감소
1,288원	1,288원	1,288원	1,28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288원	1,288원	1,288원	1,28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288원	1,288원	1,288원	1,288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314원	314원	314원	314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45원	145원	145원	145원	탄력성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부표 1-6-1〉 최저 보건의료비 마켓 바스켓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보건의료비 1안					
보건의료용품기구					
안경	전국	중품	26월	100,200원	1개
위생대(성인)	전국	생리대 중형 20패드	1월	5,545원	20개
위생대(성인_나이트)	전국	생리대 중형 5패드	1월	1,386원	5개
위생대(자녀)	전국	생리대 중형 20패드	1월	5,545원	20개
위생대(자녀_나이트)	전국	생리대 중형 5패드	1월	1,386원	5개
마스크(미세먼지)	전국	4인/매당 2.3일 사용/미세먼지(PM2.5) 주의	12월	240원	144개
보건의료비					
보건의료서비스	전국	입원, 외래, 처방약값	1월	70,413원	1단위
약값	전국	비처방약값	1월	5,396원	1단위
미충족욕구	전국	50% 반영	1월	2,585원	1단위
보건의료비 2안					
보건의료용품기구					
안경	전국	중품	26월	100,200원	1개
위생대(성인)	전국	생리대 중형 20패드	1월	5,545원	20개
위생대(성인_나이트)	전국	생리대 중형 5패드	1월	1,386원	5개
위생대(자녀)	전국	생리대 중형 20패드	1월	5,545원	20개
위생대(자녀_나이트)	전국	생리대 중형 5패드	1월	1,386원	5개
마스크(미세먼지)	전국	4인/매당 2.3일 사용/미세먼지(PM2.5) 주의	12월	240원	435개
보건의료비					
보건의료서비스	전국	입원, 외래, 처방약값	1월	70,413원	1단위
약값	전국	비처방약값	1월	5,396원	1단위
미충족욕구	전국	50% 반영	1월	2,585원	1단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년수,수량 설정기준
96,904원	96,904원	96,904원				

3,854원	3,854원	3,854원	.	.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5,545원	5,545원	5,545원	.	.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346원	346원	346원	.	.	소비자물가지수	신규
5,545원	5,545원	5,545원	.	.	소비자물가지수	신규
346원	346원	346원	.	.	소비자물가지수	신규
2,874원	2,874원	2,874원	.	.	소비자물가지수	신규

70,413원	70,413원	70,413원	.	.	실태조사	2017년 同
5,396원	5,396원	5,396원	.	.	실태조사	2017년 同
2,585원	2,585원	2,585원	.	.	실태조사	2017년 同

102,726원 102,726원 102,726원

3,854원	3,854원	3,854원	.	.	소비자물가지수	2017년 同
5,545원	5,545원	5,545원	.	.	소비자물가지수	2017년 同
346원	346원	346원	.	.	소비자물가지수	신규
5,545원	5,545원	5,545원	.	.	소비자물가지수	신규
346원	346원	346원	.	.	소비자물가지수	신규
8696원	8696원	8696원	.	.	소비자물가지수	신규

70,413원	70,413원	70,413원	.	.	실태조사	2017년 同
5,396원	5,396원	5,396원	.	.	실태조사	2017년 同
2,585원	2,585원	2,585원	.	.	실태조사	2017년 同

〈부표 1-7-1〉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교육비(17세 남: 고등학생, 15세 여: 중학생)					
교재비					
고등 참고서(국어)	전국	1년 1인당 2권	1년	22,000원	2권
고등 문제집(국어)	전국	1년 1인당 2권	1년	19,000원	2권
고등 참고서(영어)	전국	1년 1인당 2권	1년	13,500원	2권
고등 문제집(영어)	전국	1년 1인당 2권	1년	9,900원	2권
고등 참고서(수학)	전국	1년 1인당 2권	1년	13,500원	2권
고등 문제집(수학)	전국	1년 1인당 2권	1년	12,600원	2권
고등 참고서(역사)	전국	1년 1인당 1권	1년	14,400원	1권
고등 참고서(역사)	전국	1년 1인당 1권	1년	12,600원	1권
고등 참고서(사회)	전국	1년 1인당 2권	1년	14,400원	2권
고등 문제집(사회)	전국	1년 1인당 2권	1년	12,600원	2권
고등 참고서(과학)	전국	1년 1인당 2권	1년	14,400원	2권
고등 문제집(과학)	전국	1년 1인당 2권	1년	12,600원	2권
중학 참고서(국어)	전국	1년 1인당 2권	1년	24,000원	2권
중학 문제집(국어)	전국	1년 1인당 2권	1년	20,000원	2권
중학 참고서(영어)	전국	1년 1인당 1권	1년	26,000원	1권
중학 문제집(영어)	전국	1년 1인당 2권	1년	14,000원	2권
중학 참고서(수학)	전국	1년 1인당 1권	1년	31,000원	1권
중학 문제집(수학)	전국	1년 1인당 2권	1년	17,000원	2권
중학 참고서(사회)	전국	1년 1인당 1권	1년	24,000원	1권
중학 문제집(사회)	전국	1년 1인당 1권	1년	21,000원	1권
중학 참고서(과학)	전국	1년 1인당 1권	1년	18,000원	1권
중학 문제집(과학)	전국	1년 1인당 1권	1년	22,000원	1권
보충교육비					
고교 인터넷강의	전국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 과학(6종 / 1종당 1권)	1년	13,950원	6권
중학 인터넷강의	전국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5종 / 1종당 1권)	1년	14,085원	6권
고등 수학여행	전국	국내 2박3일 기준(1회/인)	1년	388,363원	1회
중학 수련회	전국	국내 1박2일 기준(1회/인)	1년	156,200원	1회
기타교육비	전국	야외학습 및 특별활동(1회/인)	1년	0원	1회

서울	경기	광역·세종· 창원	그 외 지역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 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125,501원	125,501원	125,501원	125,501원				
50,666원	50,666원	50,666원	50,666원				
3,667원	3,667원	3,667원	3,667원	조사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3,167원	3,167원	3,167원	3,167원	조사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2,250원	2,250원	2,250원	2,250원	조사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1,650원	1,650원	1,650원	1,650원	조사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2,250원	2,250원	2,250원	2,250원	조사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2,100원	2,100원	2,100원	2,100원	조사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1,200원	1,200원	1,200원	1,200원	조사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1,050원	1,050원	1,050원	1,050원	조사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2,400원	2,400원	2,400원	2,400원	조사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2,100원	2,100원	2,100원	2,100원	조사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2,400원	2,400원	2,400원	2,400원	조사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2,100원	2,100원	2,100원	2,100원	조사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4,000원	4,000원	4,000원	4,000원	조사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3,333원	3,333원	3,333원	3,333원	조사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2,167원	2,167원	2,167원	2,167원	조사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2,333원	2,333원	2,333원	2,333원	조사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2,583원	2,583원	2,583원	2,583원	조사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2,833원	2,833원	2,833원	2,833원	조사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2,000원	2,000원	2,000원	2,000원	조사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1,750원	1,750원	1,750원	1,750원	조사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1,500원	1,500원	1,500원	1,500원	조사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1,833원	1,833원	1,833원	1,833원	조사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59,399원	59,399원	59,399원	59,399원				
6,975원	6,975원	6,975원	6,975원	조사		시장가격조사	신규
7,043원	7,043원	7,043원	7,043원	조사		시장가격조사	신규
32,364원	32,364원	32,364원	32,364원	조사		시장가격조사	신규
13,017원	13,017원	13,017원	13,017원	조사		시장가격조사	신규
0원	0원	0원	0원				

〈부표 1-7-1〉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계속)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문방구비					
샤프	전국	제도샤프(1개/인)	3년	6,386원	2개
샤프심	전국	HB 0.5mm 30본(1개/인)	3월	249원	2개
볼펜	전국	검정3.5, 파랑2.5, 빨강1.5(7.5자루/인)	6월	215원	15자루
사인펜	전국	수성(5개/인)	1월	223원	10개
형광펜	전국	3색(6개/인)	6월	197원	6개
고등학생 공책	전국	고등학생용(20권/인)	6월	972원	20권
중학생 공책	전국	중학생용(15권/인)	6월	972원	15권
스케치북	전국	공용(2권/인)	1년	1,445원	4권
인쇄용지	전국	A4 80g/500매	6월	5,338원	2권
그림물감(중,고)	전국	24색 6m(1세트/인)	1년	4,555원	2세트
붓	전국	수채화용 세트	2년	5,605원	2세트
지우개	전국	중(1개/인)	6월	376원	2개
수정테이프	전국	수정테이프(2개/인)	6월	553원	4개
칼	전국	소형 커터(1개/인)	2년	393원	2개
가위	전국	중(1개/인)	2년	919원	2개
풀	전국	고체풀 25g(1개/인)	6월	544원	2개
학생 필통(중,고)	전국	중고학생용(1개/인)	1년	2,192원	2개
자	전국	중고학생용 30cm(1개/인)	1년	384원	2개
L자 파일	전국	A4(10개/인)	1년	85원	20개
클리어파일	전국	40매(1개/인)	1년	1,609원	2개
포스트잇	전국	일반노트 653(400매)(1개/인)	1년	1,599원	2개
앨범	전국	백지 접착 50매(1권/인)	3년	16,284원	2개

서울	경기	광역·세종· 창원	그 외 지역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 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15,436원	15,436원	15,436원	15,436원				
355원	355원	355원	355원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66원	166원	166원	166원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537원	537원	537원	537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230원	2,230원	2,230원	2,230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97원	197원	197원	197원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3,239원	3,239원	3,239원	3,239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430원	2,430원	2,430원	2,430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82원	482원	482원	482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779원	1,779원	1,779원	1,779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759원	759원	759원	759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467원	467원	467원	467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25원	125원	125원	125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369원	369원	369원	369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33원	33원	33원	33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77원	77원	77원	77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81원	181원	181원	181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365원	365원	365원	365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64원	64원	64원	64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142원	142원	142원	142원	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68원	268원	268원	268원	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266원	266원	266원	266원	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905원	905원	905원	905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同

〈부표 1-8-1〉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교양오락비					
서적 및 인쇄물					
도서(성인)	전국	단행본	1년	11,857원	1권
도서(청소년)	전국	단행본	1년	7,761원	8권
교양오락용품기구					
텔레비전	전국	디지털TV(32인치)	10년	185,950원	1개
컴퓨터	전국	중저가(보급형)/모니터 포함	6년	434,794원	1개
프린터	전국	잉크젯 중저가(보급형)	10년	112,047원	2개
컴퓨터소모품(키보드)	전국	키보드	6년	10,700원	1개
컴퓨터소모품(마우스)	전국	마우스	6년	6,618원	1개
저장장치	전국	USB	6년	2,920원	3개
프린터토너	전국	재생/호환잉크(리필형)	1년	7,563원	3개
스피커	전국	PC 스피커	10년	52,893원	1개
노트북	전국	학생용	6년	362,641원	1개
교양오락서비스					
영화관람	전국	성인(2인/2회)	1년	14,000원	4회
	전국	청소년(2인/2회)	1년	10,000원	4회
TV 수신료	전국	가정용 TV수신료	1월	2,500원	1회
유선방송	전국	기본형(부가세 포함)	1월	8,800원	1회
여행 및 문화시설관람	전국	고궁 및 박물관(성인2, 아동2)	1년	2,100원	4회
가족여행	전국	국내여행(4인가구, 1박2일)	1년	500,000원	1회
사진촬영 및 현상	전국	증명사진(3X4cm)	5년	15,114원	2회
	전국	학생 증명사진(3X4cm)	3년	15,114원	2회
	전국	디지털사진현상(120매/년)	1년	121원	60장

서울	경기	광역·세종· 창원	그 외 지역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86,966원	86,966원	86,966원	86,966원				
6,162원	6,162원	6,162원	6,162원				
988원	988원	988원	988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	2020년 同
5,174원	5,174원	5,174원	5,174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	2020년 同
17,188원	17,188원	17,188원	17,188원				
1,550원	1,550원	1,550원	1,550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	2020년 同
6,039원	6,039원	6,039원	6,039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	2020년 同
1,867원	1,867원	1,867원	1,867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	2020년 同
149원	149원	149원	149원	없음		소비자물가	2020년 同
92원	92원	92원	92원	없음		소비자물가	2020년 同
122원	122원	122원	122원	없음		소비자물가	2020년 同
1,891원	1,891원	1,891원	1,891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	2020년 同
441원	441원	441원	441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	2020년 同
5,037원	5,037원	5,037원	5,037원			소비자물가	2020년 同
63,616원	63,616원	63,616원	63,616원				
4,667원	4,667원	4,667원	4,667원	문화관광부		시장조사(중위값)	2020년 同
3,333원	3,333원	3,333원	3,333원	문화관광부		시장조사(중위값)	2020년 同
2,500원	2,500원	2,500원	2,500원	방송법		법정가격	방송법
8,800원	8,800원	8,800원	8,800원	실태조사		시장조사(중위값)	2020년 同
700원	700원	700원	700원	실태조사		2020년 同	2020년 同
41,667원	41,667원	41,667원	41,667원	문화관광부		공무원여비규정, 숙박비 시장조사	2020년 同
504원	504원	504원	504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	2020년 同
840원	840원	840원	840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	2020년 同
605원	605원	605원	605원	실태조사		소비자물가	2020년 同

〈부표 1-9-1〉 최저 교통·통신비 마켓 바스켓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교통통신비					
교통비					
가장 출근	전국	시내버스, 출퇴근 21.725(365/12/7*5)일, 외출 2회(왕복)	1월	1,400원	48회
주부 외출	전국	시내버스, 외출 6회(왕복)	1월	1,400원	12회
자녀(중학생, 고등학생) 외출	전국	시내버스, 외출 3회(왕복)	1월	1,100원	12회
시내교통카드 구입비	전국	시내구간	25년	3,000원	4회
택시	전국	시내구간	1월	7,226원	1회
친지방문 등	전국	고속버스(일반), 4인X1년 2회X왕복(2번)+4인 국내여행X1년 1회X왕복(2번)	12월	71,308원	3회
통신비					
휴대전화요금					
휴대폰 사용요금(성인)	전국	LTE 스마트폰, 알뜰폰(100MB, 60분 통화, 50건 메시지), 24개월 약정	1월	9,900원	2회
휴대폰 사용요금(자녀)	전국	LTE 스마트폰, 알뜰폰(100MB, 60분 통화, 50건 메시지), 24개월 약정	1월	9,900원	2회
휴대폰 부가세(성인)	전국	요금의 10%	1월	990원	2회
휴대폰 부가세(자녀)	전국	요금의 10%	1월	990원	2회
휴대폰 구입비	전국	5년마다 1회	5년	90,232원	4회
이동통신 가입비	전국	생애 1회	35년	0원	4회
인터넷요금					
인터넷 사용요금	전국	저가형(가족안심,100Mbps), 부가세별도	1월	22,000원	1회
부가세	전국	사용요금의 10%	1월	2,200원	1회
이전비	전국	6년에 1회	6년	27,500원	1회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그 외 지역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196,450원	196,450원	196,450원	196,450원				
122,293원	122,293원	122,293원	122,293원				
67,200원	67,200원	67,200원	67,200원			충북 군지역 버스요금, 교통카드 100원 정액 할인	2020년 同
16,800원	16,800원	16,800원	16,800원			충북 군지역 버스요금, 교통카드 100원 정액 할인	2020년 同
13,200원	13,200원	13,200원	13,200원			충북 군지역 버스요금, 교통카드 100원 정액 할인	2020년 同
40원	40원	40원	40원			티머니 구입 최저가	2020년 同
7,226원	7,226원	7,226원	7,226원			소비자물가	2020년 同
17,827원	17,827원	17,827원	17,827원			소비자물가	2020년 同
74,157원	74,157원	74,157원	74,157원				
49,575원	49,575원	49,575원	49,575원				
19,800원	19,800원	19,800원	19,800원			알뜰폰(SK7모바일)	가구주, 배우자
19,800원	19,800원	19,800원	19,800원			알뜰폰(SK7모바일)	2020년 同
1,980원	1,980원	1,980원	1,980원			세법	세법
1,980원	1,980원	1,980원	1,980원			세법	세법
6,015원	6,015원	6,015원	6,015원	보유율		소비자물가	2020년 同
0원	0원	0원	0원			통신업체(SKT)	2020년 同
24,582원	24,582원	24,582원	24,582원				
22,000원	22,000원	22,000원	22,000원			통신업체(SKT)	2020년 同
2,200원	2,200원	2,200원	2,200원			세법	세법
382원	382원	382원	382원			통신업체(KT)	주거비(전세) 평균이사횟수 6년에 1회 반영/부가세 포함

〈부표 1-10-1〉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 바스켓(3,4급지 공통)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최저 기타소비지출					
이미용품					
칫솔	전국	성인용	4월	1,721원	4개
치약	전국	170g	1월	1,655원	1개
비누	전국	100g	1월	1,361원	2개
삼푸(린스 추가)	전국	500ml	3월	6,002원	2통
스킨로션(여성)	전국	150ml	1년	17,285원	3개
밀크로션(여성)	전국	150ml	1년	17,673원	3개
스킨로션(남성)	전국	150ml	1년	15,183원	3개
파운데이션	전국	40ml	1년	19,411원	1개
섰크림	전국	70mg	1년	17,789원	2개
립스틱	전국	3.5g	1년	9,743원	1개
손톱깎이	전국	중품	5년	1,942원	1개
면도기	전국	1회용	1월	441원	5개
머리빗	전국	중품 2종	2년	1,927원	2개
이미용서비스					
목욕비	전국	대인 (2월 1회, 4인)	2월	7,447원	4회
이발	전국	남자 성인(고등학생 포함)	3월	10,000원	4회
미용	전국	여자 성인(중학생 포함)	6월	13,000원	3회
파마	전국	여자 파마	6월	45,595원	1회
장신구					
핸드백	전국	중품	4년	41,500원	1개
가방	전국	학생가방	3년	42,419원	2개
우산	전국	중품, 3단	2년	6,903원	4개
손목시계	전국	아나로그	5년	47,856원	2개
지갑	전국	중품	3년	17,360원	2개
잡비					
경조비	전국	경사 3회, 조사 3회(1년 6회)	1년	30,000원	6회
교제비	전국	가장(1년 6회)	1년	17,006원	6회
친목단체비	전국	배우자	1년	11,338원	2회
자녀용돈	전국	용돈(1월 1회, 2명)	1월	24,161원	2명
친지방문비	전국	선물(1년 2회)	1년	11,338원	2회

주: *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부재로 소비자물가지 총지수 적용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 창원	그 외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155,286원	155,286원	155,286원	155,286원				
30,426원	30,426원	30,426원	30,426원				
1,721원	1,721원	1,721원	1,721원			소비자물가	2020년 同
1,655원	1,655원	1,655원	1,655원			소비자물가	2020년 同
2,721원	2,721원	2,721원	2,721원			소비자물가	2020년 同
4,001원	4,001원	4,001원	4,001원			소비자물가	린스 품목 추가 고려
4,321원	4,321원	4,321원	4,321원			소비자물가	2020년 同
4,418원	4,418원	4,418원	4,418원			소비자물가	(저가화장품 중품기준)
3,796원	3,796원	3,796원	3,796원			소비자물가	
1,618원	1,618원	1,618원	1,618원			소비자물가	2020년 同
2,965원	2,965원	2,965원	2,965원			소비자물가	2020년 同
812원	812원	812원	812원			소비자물가	2020년 同
32원	32원	32원	32원			소비자물가*	2020년 同
2,205원	2,205원	2,205원	2,205원			소비자물가	2020년 同
161원	161원	161원	161원			소비자물가*	2020년 同
42,325원	42,325원	42,325원	42,325원				
14,893원	14,893원	14,893원	14,893원			소비자물가	2020년 同
13,333원	13,333원	13,333원	13,333원			시장(인터넷) 가격조사	2020년 同
6,500원	6,500원	6,500원	6,500원			시장가격조사	2020년 同
7,599원	7,599원	7,599원	7,599원			소비자물가	2020년 同
6,931원	6,931원	6,931원	6,931원				
865원	865원	865원	865원			소비자물가	2020년 同
2,357원	2,357원	2,357원	2,357원			소비자물가	2020년 同
1,150원	1,150원	1,150원	1,150원			소비자물가	2020년 同
1,595원	1,595원	1,595원	1,595원			소비자물가	2020년 同
964원	964원	964원	964원			소비자물가	2020년 同
75,604원	75,604원	75,604원	75,604원				
15,000원	15,000원	15,000원	15,000원			2020년 同	2020년 同
8,503원	8,503원	8,503원	8,503원			소비자물가*	2020년 同
1,890원	1,890원	1,890원	1,890원			소비자물가*	2020년 同
48,321원	48,321원	48,321원	48,321원			소비자물가*	2020년 同
1,890원	1,890원	1,890원	1,890원			소비자물가*	2020년 同

〈부표 1-11-1〉 최저 비소비지출 마켓 바스켓(4급지 기준)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비소비지출					
조세					
근로소득세 〈소득분지방소득세 포함〉	전국	최저임금기준(면세점 이하)	1월	0원	1회
균등분주민세 〈지방교육세 포함〉	서울	1가구당(세대주에게 부과)	1년	6,000원	1회
	경기	1가구당(세대주에게 부과)	1년	11,310원	1회
	광역시·세종·창원	1가구당(세대주에게 부과)	1년	10,962원	1회
	그 외 지역	1가구당(세대주에게 부과)	1년	10,903원	1회
재산세(건물과 토지 합산) 〈지방교육세 포함〉	전국	주택 비소유	1년	0원	2회
사회보장분담금					
국민연금	전국	최저임금기준 월소득액의 4.5%	1월	90,476원	1회
건강보험	전국	최저임금기준 월소득액의 3.545% +보험료의 12.81%의 장기요양보험료	1월	79,428원	1회
고용보험	전국	최저임금기준 월소득액의 0.9%	1월	18,095원	1회

서울	경기	광역·세종· 창원	그 외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188,499원	188,942원	188,912원	188,908원				
500원	943원	913원	909원				
0원	0원	0원	0원	세법		세법	세법
500원				세법	부과기준	지방자치단체	세법
	943원			세법	부과기준	지방자치단체	세법
		913원	원	세법	부과기준	지방자치단체	세법
0원	0원	0원	909원	세법	부과기준	지방자치단체	세법
187,999원	187,999원	187,999원	187,999원				
90,476원	90,476원	90,476원	90,476원	국민연금법	부과기준	최저임금	보건복지부
79,428원	79,428원	79,428원	79,428원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 험법	부과기준	최저임금	보건복지부
18,095원	18,095원	18,095원	18,095원	고용보험법	부과기준	최저임금	노동부

〈부표 1-11-2〉 최저 비소비지출 마켓 바스켓(3급지 기준)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비소비지출					
조세					
근로소득세 (소득분지방소득세 포함)	전국	최저임금기준(면세점 이하)	1월	0원	1회
균등분주민세 (지방교육세 포함)	대도시	1가구당(세대주에게 부과)	1년	10,831원	1회
	중소도시	1가구당(세대주에게 부과)	1년	11,015원	1회
	농어촌	1가구당(세대주에게 부과)	1년	10,910원	1회
재산세(건물과 토지 합산) (지방교육세 포함)	전국	주택 비소유	1년	0원	2회
사회보장분담금					
국민연금	전국	최저임금기준 월소득액의 4.5%	1월	90,476원	1회
건강보험	전국	최저임금기준 월소득액의3.545% +보험료의12.81%의 장기요양보험료	1월	79,428원	1회
고용보험	전국	최저임금기준 월소득액의 0.9%	1월	18,095원	1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품 선정원칙	지역별 차등이유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수량 설정기준
188,902원	188,917원	188,908원				
903원	918원	909원				
0원	0원	0원	세법		세법	세법
903원			세법	부과기준	지방자치단체	세법
	918원		세법	부과기준	지방자치단체	세법
		909원	세법	부과기준	지방자치단체	세법
0원	0원	0원	세법	부과기준	지방자치단체	세법
187,999원	187,999원	187,999원				
90,476원	90,476원	90,476원	국민연금법	부과기준	최저임금	보건복지부
79,428원	79,428원	79,428원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 험법	부과기준	최저임금	보건복지부
18,095원	18,095원	18,095원	고용보험법	부과기준	최저임금	노동부

[부록 2]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제1절 모집단 정의 및 분석

국민생활실태조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실태조사를 통해 급여기준의 적절성, 사각지대 규모 추정 등을 포함한 맞춤형 급여 제도에 대한 평가와 수급자 및 수급가구의 욕구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모집단은 전국 17개 시도에 속한 모든 일반 가구(집단가구, 외국인 가구 제외)이고, 표본규모는 1,500개 조사구이며 조사구당 12가구(완료기준: 18,000 가구)조사를 목표로 한다. 조사 대상 가구에 대한 조사는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대인면접 방식으로 진행한다. 타계식 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만날 수 없는 경우에 자계식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모집단은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으로 구분되는데, 목표모집단은 전국 17개 시도에 속한 모든 일반 가구(집단가구, 외국인가구 제외)이다. 조사모집단은 조사하기 어려운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보통 및 아파트 조사구에 속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시도별 및 가구원 수별 가구 수 분포를 살펴보면, 각 지역별로 단독가구, 2인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규모는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이상 순으로 구성된다.

〈부표 2-1〉 17개 시도 및 가구원 수별 가구 수

(단위 : 가구)

시도	일반가구_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전국	20,926,710	6,643,354	5,864,525	4,200,629	3,271,315	761,417	147,172	38,298
서울	3,982,290	1,390,701	1,033,901	792,690	602,791	130,122	25,770	6,315
부산	1,405,037	455,207	411,455	282,233	203,769	42,608	7,874	1,891
대구	985,816	304,543	276,237	205,048	159,654	33,131	5,976	1,227
인천	1,147,200	324,841	316,387	251,928	198,528	44,949	8,440	2,127
광주	599,217	193,948	162,403	115,978	97,323	24,613	4,011	941
대전	631,208	228,842	164,795	116,989	93,698	21,883	4,034	967
울산	444,087	122,848	123,591	99,739	79,489	15,447	2,398	575
세종	139,106	43,577	33,204	28,307	26,415	6,328	1,029	246
경기	5,098,431	1,406,010	1,350,139	1,119,823	951,370	218,173	42,094	10,822
강원	661,039	231,371	206,755	117,504	79,073	20,669	4,409	1,258
충북	678,922	236,208	198,840	122,347	91,329	24,143	4,694	1,361
충남	892,222	304,973	264,909	159,754	121,589	32,419	6,618	1,960
전북	755,575	255,269	233,334	134,414	96,907	27,962	5,920	1,769
전남	761,518	256,633	251,506	131,372	87,883	26,561	5,727	1,836
경북	1,131,819	388,791	363,061	202,539	137,092	32,174	6,388	1,774
경남	1,350,155	417,737	399,700	270,061	205,658	46,516	8,410	2,073
제주	263,068	81,855	74,308	49,903	38,747	13,719	3,380	1,156

(출처:KOSIS 인구총조사(2020) 2022.07.09 자료인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6&conn_path=I2

〈부표 2-2〉 17개 시도별 인구, 가구 및 주택

(단위 : 명, 가구, 호)

시도	인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주택	구성비
전국	51,829,136	100.0	20,926,710	100	18,525,844	100.0
서울	9,586,195	18.5	3,982,290	19	3,015,371	16.3
부산	3,349,016	6.5	1,405,037	6.7	1,275,859	6.9
대구	2,410,700	4.7	985,816	4.7	809,802	4.4
인천	2,945,454	5.7	1,147,200	5.5	1,032,774	5.6
광주	1,477,573	2.9	599,217	2.9	538,275	2.9
대전	1,488,435	2.9	631,208	3	496,875	2.7
울산	1,135,423	2.2	444,087	2.1	394,634	2.1
세종	353,933	0.7	139,106	0.7	136,887	0.7
경기	13,511,676	26.1	5,098,431	24.4	4,495,115	24.3
강원	1,521,763	2.9	661,039	3.2	644,023	3.5
충북	1,632,088	3.1	678,922	3.2	640,256	3.5
충남	2,176,636	4.2	892,222	4.3	865,008	4.7

시 도	인 구	구성비	가 구	구성비	주 택	구성비
전북	1,802,766	3.5	755,575	3.6	741,221	4.0
전남	1,788,807	3.5	761,518	3.6	802,043	4.3
경북	2,644,757	5.1	1,131,819	5.4	1,094,306	5.9
경남	3,333,056	6.4	1,350,155	6.5	1,296,944	7.0
제주	670,858	1.3	263,068	1.3	246,451	1.3

각 시도별 인구, 가구, 주택 분포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경기, 서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부산,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부표 2-3〉 17개 시도 및 조사구 특성에 따른 조사구 수

(단위 : 조사구 수)

시도	조사구_계	보통조사구	아파트조사구
전국	360,341	173,499	186,842
서울	68,752	39,147	29,605
부산	24,894	10,309	14,585
대구	15,978	6,534	9,444
인천	19,337	8,709	10,628
광주	9,787	3,221	6,566
대전	10,137	4,572	5,565
울산	7,705	2,908	4,797
세종	2,213	523	1,690
경기	88,715	38,377	50,338
강원	11,277	5,876	5,401
충북	11,585	5,762	5,823
충남	15,371	8,108	7,263
전북	12,783	6,209	6,274
전남	12,834	7,398	5,436
경북	20,049	11,270	8,779
경남	24,062	10,947	13,115
제주	4,862	3,329	1,533

자료: 2020센서스 분석 (USE변수가 Y인 조사구는 제외)

〈부표 2-4〉 17개 시도 및 조사구 특성에 따른 가구 수

(단위 : 가구 수)

시도	가구_계	보통조사구	아파트조사구
전국	20,012,909	9,648,178	10,364,731
서울	3,951,223	2,275,505	1,675,718
부산	1,331,228	559,357	771,871
대구	930,750	390,723	540,027
인천	1,103,649	490,891	612,758
광주	563,190	184,555	378,635
대전	591,365	265,261	326,104
울산	413,735	162,933	250,802
세종	121,026	29,003	92,023
경기	5,078,182	2,160,142	2,918,040
강원	582,221	301,010	281,211
충북	628,274	315,272	313,002
충남	834,951	441,050	393,901
전북	684,146	343,192	340,954
전남	654,009	374,388	279,621
경북	1,036,118	589,735	446,383
경남	1,266,491	586,243	680,248
제주	242,351	178,918	63,433

자료: 2020센서스 분석 (USE변수가 Y인 조사구는 제외)

〈부표 2-5〉 17개 시도 및 지역특성(동부, 읍면부)에 따른 가구 수

(단위 : 가구 수)

시도	가구_계	동부	읍면부
전국	20,012,909	16,384,065	3,628,844
서울	3,951,223	3,951,223	0
부산	1,331,228	1,268,891	62,337
대구	930,750	836,102	94,648
인천	1,103,649	1,077,495	26,154
광주	563,190	563,190	0
대전	591,365	591,365	0
울산	413,735	330,672	83,063
세종	121,026	82,629	38,397
경기	5,078,182	4,225,552	823,630
강원	582,221	360,987	221,234
충북	628,274	369,163	259,111
충남	834,951	393,229	441,722
전북	684,146	496,845	187,301
전남	654,009	395,927	358,082
경북	1,036,118	549,171	486,947
경남	1,266,491	816,207	450,284
제주	242,351	175,417	66,934

자료: 2020센서스 분석 (USE변수가 Y인 조사구는 제외)

각 시도별 및 조사구 특성별 가구 수 분포를 살펴보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지역은 아파트 조사구에 속한 가구 비율이 보통 조사구에 속한 가구 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역은 보통 조사구에 속한 가구 비율이 아파트 조사구에 속한 가구 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별 및 지역 특성(동부/읍면부)에 따른 가구 수 분포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동부의 비율은 82%이며, 동부의 비율이 50%를 넘지 않은 지역은 충남(47.09%)이다.

제2절 표본 설계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설계들은 2020년 등록센서스 기반 표본추출틀의 조사구 중 기숙사, 특수 시설 조사구, 섬지역 조사구를 제외한 조사구에 거주하는 일반가구의 조사구이며, 전수조사구 중 20가구 미만 조사구를 제외¹⁹¹⁾하였다.

1. 층화 및 분류 지표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의 1차 층화 변수는 17개 시도이고 2차 층화 변수는 조사구 특성(보통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이다. 층화 후 층별로 선택된 분류지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한 후 표본을 추출하면 부차 층을 구성하여 층화효과를 낼 수 있다. 분류지표는 주택유형과 조사구 내 노인 가구 비율을 선정하였다.

〈부표 2-6〉 분류지표

분류 지표	1차 분류	주택유형 ① 단독주택 일반 단독 비율 ② 연립다세대(가구수) ③ 아파트(면적)
	2차 분류	조사구 내 노인 가구 비율 ① 25% 미만, ② 25% 이상

1차 분류지표인 주택유형의 경우, 보통조사구는 조사구의 단독주택 일반단독비율(단독주택_일반(가구수)/단독주택(가구수)), 연립다세대수(연립다세대(가구수))정보를 활용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였다.

2차 분류지표의 구분점 설정은 각 조사구 내 노인 가구 비율에 대한 다섯 숫자 요약을 제시한 후, 구분점을 중위수 값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분류지표를 기준으로 부차 층을 구성한 후, 이를 특성별로 배열하여 계통추출을 하고자 하는데, 분류지표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으면 각 계층별 추출단위가 오히려 주기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¹⁹²⁾.

191) 2015년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설계에서는 40가구 미만을 제외하였으며, 2021조사에서는 20가구 미만을 제외(전체 백분위의 2-3%에 해당)

192) 2015년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설계 내역 준용

최저생계비 계측 차원에서 최저생계비는 ‘국민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되는 바, 저소득가구 비율이 높은 노인가구가 과대표집 될 경우 최저생계비가 과소추정될 위험이 있다. 노인가구 비율에 대한 고려가 없을 경우, 가구방문에 의한 면접조사 방식을 취하는 본 조사에서 노인가구가 과대표착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저소득층의 욕구 분석에서 주거급여의 경우 자가소유 여부에 따라 급여의 형태와 성격이 확연히 달라지므로 이와 관련한 수급자의 욕구와 실태가 상이할 것이다. 따라서 자가소유 비율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에도 일방의 욕구와 실태가 과잉 대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18년도 조사에서는 3차 분류지표로 조사구 내 자가소유가구 비율을 사용하였으나, 2020년 인구센서스에서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2차 분류지표까지만 고려하였다.

〈부표 2-7〉 2차 분류지표(노인가구비율)의 다섯 수치 요약(음영 표시된 칸은 구분점임)

분류지표	최소값	평균	1사 분위수	2사 분위수	3사 분위수	최대값
조사구 내 노인 가구 비율	0.00%	27.43%	14.28%	25.00%	37.66%	100.00%

2. 표본 규모

2021년도 국민생활실태조사의 표본규모는 18,000가구이고 1,500개 조사구(조사구당 12가구) 추출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이전 조사인 2018년도 국민생활실태조사 주요항목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2018년도 국민생활실태조사의 층화집락효과를 고려한 CV 값을 산출해보았다.

〈부표 2-8〉 지역구분별 주요항목 CV값

(단위: 가구, %)

항목	전체		지역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표본	CV	표본	CV	표본	CV	표본	CV
주요항목 : 가구총소득	18,007	1.67	7,822	2.46	8,649	2.39	1,455	5.49

〈부표 2-9〉 지역구분별 [가구총소득] 항목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단위: 만원)

지역구분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전체	82.35	4766.78	5089.90
대도시	125.40	4836.34	5328.94
중소도시	117.55	4682.75	5144.45
농어촌	195.84	3174.86	3952.08

표본규모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분석한 CV값을 사용하여 예상 CV값을 도출하였다. 여기서, n 은 기존의 표본규모이고, n' 은 새로운 표본규모이며, CV_1 은 기존의 조사로부터 구한 상대표준오차, CV_2 는 새로운 표본에 대한 목표 오차이다.

$$n' = n \left(\frac{CV_1}{CV_2} \right)^2$$

2021년도 표본가구를 18,000가구로 유지해도 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2021년도 적정 표본가구 규모 산정을 위해 2018년도 결과를 분석하여 표본수를 달리 했을 때의 CV 값을 비교해보았다. 2018년도 결과를 바탕으로 완료수 기준으로 2021년도 조사 목표 상대표준오차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표 2-10〉 2018, 2021 CV값

(단위: 가구, %)

항목	2018		2021	
	표본	CV	표본	목표 CV
가구총소득 (만원)	18,007	1.67	20,000	1.58
			18,000	1.67
			15,000	1.83

2021도 조사의 적정 표본가구 규모(완료수 기준)는 지난 조사와 동일하게 해도 대 표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완료 기준 18,000 가구로 결정하였다.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시, 조사구 당 가구 수를 15가구로 선정한 이유는 본 조사 대상 가구에 장애인 가구가 포함되어 있으나, 장애인 가구 분포를 모집단에서는 반

영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구 당 조사 대상 가구를 많이 산정하였다. 이 때 조사구 당 조사 대상 가구 수가 증가될 경우, 표본의 대체율 증가 및 표본의 편중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사구 당 조사 대상 가구 수를 최소화 할수록 좋다. 하지만 조사 대상 가구 수를 지나치게 최소로 하게 되면, 조사비용과 조사 기간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사구 당 조사 대상 가구 수를 15가구로 선정하였다.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는 대표성을 위하여 조사구 당 조사 대상 가구를 12가구로 선정하고 총 조사구 수를 1,500으로 정하였다.

〈부표 2-11〉 17개 시도별 예상 목표 상대표준오차 현황

시도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조사 완료 기준)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조사 완료 기준)		
	조사구 수	가구 수	CV%	조사구 수	가구 수	CV%
전국	1,328	18,007	1.67	1,500	18,000	1.67
서울	153	2049	4.27	179	2,148	4.17
부산	93	1264	4.54	104	1,248	4.57
대구	78	1057	6.96	87	1,044	7.00
인천	83	1121	6.97	95	1,140	6.91
광주	60	821	8.25	67	804	8.34
대전	62	832	6.49	69	828	6.51
울산	53	718	5.75	58	696	5.84
세종	26	359	6.89	30	360	6.88
경기	168	2249	4.15	202	2,424	4.00
강원	63	868	5.56	69	828	5.69
충북	66	897	6.45	72	864	6.57
충남	72	992	5.81	83	996	5.80
전북	69	940	6.54	75	900	6.68
전남	69	937	6.94	73	876	7.18
경북	83	1136	5.45	92	1,104	5.53
경남	91	1252	4.92	102	1,224	4.98
제주	39	515	7.88	43	516	7.87

표본 조사구 배분은 시도(17개)별 및 조사구 특성(보통, 아파트)별 조사구 수를 기준으로 제곱근 비례 배분법을 적용하여 조사구 및 표본 가구를 배분하였다.

$$n_h = n \times \frac{\sqrt{N_h}}{\sum_{h=1}^H \sqrt{N_h}}$$

$$n_{hi} = n_h \times \frac{\sqrt{N_{hi}}}{\sum_{h=1}^H \sum_{i=1}^I \sqrt{N_{hi}}}$$

여기서 n_h 는 시도(17개)별 표본 가구 수, N_h 는 시도(17개)별 모집단 가구 수이며, n_{hi} 는 시도(17개)·조사구 특성(보통, 아파트)별 표본 가구 수, N_{hi} 는 시도(17개)·조사구 특성(보통, 아파트)별 모집단 가구 수이다.

17개 시도별 조사구 특성을 보면, 세종시의 경우 보통조사구 비율이 24%이고, 제주시의 경우 보통조사구 비율이 73% 정도로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조사구 특성도 설계층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제곱근비례배분을 사용하였다.

표본 배분 시 제곱근 비례 배분법을 적용한 이유는 전국 시도별로 모집단에 대한 가구 및 조사구 비율은 서울, 인천, 경기 등의 수도권 지역에 조사구 및 가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비례배분하게 되면, 표본의 지역적 편중 현상이 심해지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부표 2-12〉 17개 시도 및 조사구 특성별 표본배분 결과 현황(표본)

시도	전체		보통		아파트	
	표본 가구	표본 조사구	표본 가구	표본 조사구	표본 가구	표본 조사구
서울	2,148	179	1,152	96	996	83
부산	1,248	104	576	48	672	56
대구	1,044	87	480	40	564	47
인천	1,140	95	540	45	600	50
광주	804	67	336	28	468	39
대전	828	69	396	33	432	36
울산	696	58	312	26	384	32
세종	360	30	132	11	228	19
경기	2,424	202	1116	93	1,308	109

시도	전체		보통		아파트	
	표본 가구	표본 조사구	표본 가구	표본 조사구	표본 가구	표본 조사구
강원	828	69	420	35	408	34
충북	864	72	432	36	432	36
충남	996	83	516	43	480	40
전북	900	75	456	38	444	37
전남	876	73	468	39	408	34
경북	1,104	92	588	49	516	43
경남	1,224	102	588	49	636	53
제주	516	43	324	27	192	16
합계	18,000	1,500	8,832	736	9,168	764

표본 조사구는 조사구내 가구 수의 크기에 비례하게 추출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PPS_sys :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을 적용하여 추출하였고, 조사구 내 가구추출은 선정된 표본조사구의 가구명부추출목록에서 조사구별 가구일련번호를 활용하여 랜덤으로 최초가구를 설정하고 추출간격을 계산하여 계통추출법으로 12가구를 표본가구로 선정하였다.

제3절 가중치 작성 및 추정

가중치 작성을 위한 기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N : 모집단 총 조사구 수 $\left(= \sum_{h=1}^H N_h\right)$
 N_h : h 층의 모집단 조사구 수
 n_h : h 층의 표본조사구 수
 M_{hi} :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총 가구 수
 m_{hi} : h 층의 i 번째 조사구내 표본 가구 수(= 12)
 p_{hij} : h 층의 i 번째 표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추출확률
 r_{hi} :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응답가구 수
 w_{hij} :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가중치

- w_{hi}^r :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무응답조정가중치
 w_{hij}^p :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사후가중치
 W_{hij} :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최종가중치
 y_{hij} :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관찰값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추출확률 계산은 다음과 같다.

$$p_{hij} = \frac{n_h}{N_h} \times \frac{m_{hi}}{M_{hi}}$$

가중치는 추출확률의 역수이므로 위의 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으며, 이 때 표본조사구내 표본가구 수는 조사구별로 동일하게 12가구씩 조사하므로 $m_{hi} = 12$ 을 대입하여 계산한다.

$$w_{hij} = \frac{1}{p_{hij}} = \frac{N_h}{n_h m_{hi}} \times M_{hi} = \frac{N_h}{12n_h} \times M_{hi}$$

무응답 조정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w_{hi}^r = \frac{m_{hi}}{r_{hi}}$$

최종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W_{hij} = w_{hij} \times w_{hi}^r \times w_{hij}^p$$

w_{hij}^p 는 사후 가중치로 2020년 인구센서스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분포를 파악하여 사후조정계수를 산출한 후, 이를 사후조정에 활용하였다.

추정에서 평균 소득 및 지출의 경우 수식은

$$\widehat{Y} = \sum_h^H \sum_i^{n_h} \sum_j^{m_{hi}} W_{hij} y_{hij} / W_{\dots} \text{ 이다.}$$

여기서 $W_{\dots}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이며, h 는 층을 나타내는 첨자로서 지역과 조사구 특성을 나타내며, i 는 표본 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로서 $i = 1, 2, \dots, n_h$ 이다.

표본평균 \widehat{Y} 의 분산 추정치 및 표준오차는 다음과 같다.

$$\widehat{V}(\widehat{Y}) = \sum_{h=1}^H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text{여기서 }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widehat{Y}) \right) / W_{\dots}, \quad \bar{e}_{h..} = \sum_{i=1}^{n_h} e_{hi} / n_h \text{ 이다.}$$

$$SE(\widehat{Y}) = \sqrt{\widehat{V}(\widehat{Y})}$$

상대표준오차는 다음과 같다.

$$CV(\widehat{Y}) = \frac{SE(\widehat{Y})}{\widehat{Y}} \times 100\%$$

제4절 조사 방법

표본조사구 내 조사구역 선정에서 표본조사구 현지 확인을 통하여 표본 조사구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며, 확인된 경계 및 주요 지형지물 표시 확인 및 수정·보완작업을 거친다.

거처번호 부여 및 가구 명부 작성은 요도 보완과 동시에 조사 순서대로 상호 인접된 계 거처번호를 부여하며, 부여된 거처번호에 맞게 가구 명부를 작성한다.

조사구 교체는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교체를 실시하며, 교체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조사구 내 가구가 당해 년에 전체 철거 또는 철거 예정 조사구
- 행정구역 변동에 의한 해당 조사구 관할이 서로 다른 경우

- 지형지물의 심한 변동으로 조사구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 조사구 내 위험이나 조사 장애가 생겨 조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타 기관 등에서 현 조사구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표본조사구 교체 방법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 ① 표본 조사구 교체요청
- ② 교체 사유 타당성 검토
- ③ 대체 표본조사구 추출
- ④ 요도 및 가구명부 복사
- ⑤ 전산요도 확인 및 현지 방문하여 조사 가능성 확인
- ⑥ 전산요도 보완 및 가구 명부 재작성
- ⑦ 조사구 최종 확정

[부록 3]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조사표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보건복지부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가구의 생활 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과 같은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따라 전국의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며, 아울러 202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서는 응답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이 필요하오니, 조사 기간 동안 조사원이 방문하게 되면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귀택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9월

※ 표지부분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조사표 NO.	지역코드	조사구번호	조사구 특성	거처번호	가구번호

주소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_____통·리 _____번지 _____호
 (_____보통기입한 도로명 주소)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층 _____호)

가구주 성명	응답자 1			응답자 2		
	성명	가구원 번호		성명	가구원 번호	
	휴대폰			휴대폰		

필수	가구일반 조사	① 응답	② 미응답	필수	기초생활보장제도 심층조사	① 응답	② 미응답		
	장애인가구 조사 1	① 응답	② 미응답		장애인가구 조사 2	① 응답	② 미응답		
	장애인가구 조사 3	① 응답	② 미응답		노인가구 조사	① 응답	② 미응답		
	한부모가구 조사	① 응답	② 미응답	4인 가구 심층조사	① 응답	② 미응답	1인 가구 심층조사	① 응답	② 미응답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미완사유:	지도원	(인)
--------	--------	------	------	---------	-----	-----



가구일반 조사

※ 본 조사는 지난 1년간(2021년 1월~2021년 12월) 귀 가구의 가구일반사항 및 경제상황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입니다.

1. 가구일반사항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2021. 12. 31. 을 기준으로 1년간 적어도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 수				명		
(※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정, 학생, 기타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도 포함)						
순번	문 2) 가구주와의 관계	문 3) 성별	문 4) 태어난 연도	문 5) 교육수준	문 6) 장애종류 및 정도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배우자의 부모 ⑥ 손자녀 ⑦ 손자녀의 배우자 ⑧ 조부모 ⑨ 배우자의 조부모 ⑩ 형제, 자매 ⑪ 배우자의 형제, 자매 ⑫ 형제, 자매의 배우자 ⑬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⑭ 기타친인척 ⑮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① 남 ② 여	주민등록상 생년(生年)	① 미취학 (만7세미만) ② 무학 (만7세이상)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전문대학 ⑦ 대학교 ⑧ 대학원	⑥ 해당없음 ① 재학(휴학) ② 종퇴(수료) ③ 졸업	⑥ 해당없음(비장애인) ① 지적장애 ② 뇌병변장애 (비장애인) ③ 시각장애 ④ 청각장애 ⑤ 언어장애 ⑥ 지적장애 ⑦ 자폐성장애 ⑧ 정신장애 ⑨ 신장장애 ⑩ 심장장애 ⑪ 호흡기장애 ⑫ 간장애 ⑬ 인연장애 ⑭ 장루, 요루장애 ⑮ 뇌전증장애 ⑯ 비등록장애인(생애의 근원적분류 단, 국민연금등의 등록상인 포함)
1	0	1				
2						
3						
4						
5						
6						
7						
8						
9						

순번	문 7) 혼인상태	문 8) 근로능력정도 (심신능력상)	문 9) 근로무능력사유	문 10)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문 11) 비경제활동 사유	문 12) 만성질환
	⑥ 해당없음 (만17세이하) ① 유배우 ② 별거, 사별, 이혼 (만18세이상, 미혼부모포함)	⑥ 해당없음(만14세이하) ① 근로가능(문10)으로 ② 단순근로가능 (질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 ③ 단순근로미약자 (집안일만 가능) ④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 (집안일도 불가능) ⑤ 기타	⑥ 해당없음 (만14세이하) ① 중증장애 ② 질병 또는 부상 ③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④ 기타	⑥ 해당없음(만14세이하)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공공근로,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등 ⑤ 고용주 ⑥ 자영업자 ⑦ 임금가족종사자 ⑧ 실업자(21.12.31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 중 ⑨ 비경제활동인구	⑥ 해당없음(만14세이하) ① 근로무능력 ② 근로부 ③ 정규교육기관 학업 ④ 전학준비 ⑤ 취업준비 ⑥ 가사 ⑦ 양육 ⑧ 간병 ⑨ 구직활동포기 ⑩ 근로의사 없음 ⑪ 기타	(※ 투병 때문에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하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기간은 최초 투병 및 투약 시작부터 산정합니다.) ⑥ 해당없음 ① 3개월 미만 투병, 투약하고 있다 ②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 투약하고 있다 ③ 6개월 이상 투병, 투약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순번	문13) 주관적 건강상태	문14) 공적연금		문15) 의료보장		문16) 고용보험
		1) 가입종류	2) 체납여부	1) 가입종류	2) 체납여부	
	① 아주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① 국민연금(직장) ② 국민연금(지역) ③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포함) ④ 군인연금 ⑤ 사학연금 ⑥ 납부예의자 ⑦ 적용제외자 (만18세 미만, 만60세 이상, 연금수급자, 기초수급자, 학생, 주부 등) ⑧ 미가입자(소득미신고자)	① 비해당 (납부예외, 적용제외, 미가입자) ① 예 ② 아니오	① 직장가입자 ②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③ 지역가입자 ④ 지역가입자 세대원 ⑤ 의료급여(1종) ⑥ 의료급여(2종)	① 비해당 (의료급여, 미가입자) ① 예 ② 아니오. ※ 12월 31일 기준 6개월이상 재남의 경우, '① 예' 응답 ※ 피부양자의 경우, 가입자와 동일	① 비해당 (비근로자 및 비해당자-지침참조) ① 가입 ② 미가입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근로 포함)
1						
2						
3						
4						
5						
6						
7						
8						
9						

문 17) 가구형태

① 단독 ② 모자(모와 만 18세미만 자녀, 단 취학(휴학)시 만 22세 미만) ③ 부자(부와 만 18세미만 자녀, 단 취학(휴학)시 만 22세 미만)
 ④ 소년(소년 가정 및 조손가구(만 18세 미만의 자가, 가구주로 있는 가구 또는 다른 성인가구원 없이 만 65세 이상인 노인(조부모) 가구주와 같이 사는 가구)
 ⑤ 기타

문 18)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형태

	①생계급여	②의료급여	③주거급여	④교육급여
18-1) 수급여부	①예 ②아니오	①예 ②아니오	①예 ②아니오	①예 문18-4)문 ②아니오
18-2) 수급형태1	①해당없음	①해당없음	①해당없음	18-4) 교육급여 수급자 수
	①일반수급가구	①의료급여1종	①임차급여 (특별 포함)	①초등학생
	②조건부수급가구 ③특별가구	②의료급여2종 ③국가유공자 무료진료	②수선유지급여 (특별 포함)	②중학생
18-3) 수급형태2	①해당없음	①해당없음		③고등학생
	①가구원 전부 수급	①가구원 전체 급여		
	②가구원 일부 수급	②가구원 일부 급여		

II. 월평균 생활비

〈 유의사항 〉

-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 한 가구원 모두의 지출(가구합계 금액)을 포함합니다.
- ※ 생활비 : 가정생활만을 위한 비용이며, 청상지출(매년월) 성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따라서 **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합니다.**
- ※ 천안천, 아오,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조받는 각종 현물정리금, 의료비, 각종 공과금 대납, 식료품, 의료, 냉·난방용품 등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해당 항목의 생활비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 ※ 일부 구매의 경우 **2021년 지출한 할부금 총액+12월 기입합니다.** 예) 2021년 12월에 1,200만짜리 자동차를 24개월 할부로 구매하였으면, 자동차 가격에 할부 개월을 나눈 월 50만원 등 기입합니다. 따라서 2021년에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았어도, 2021년에 비용이 발생하면 기입합니다.
- ※ **없음은 반드시 '0' 표시, 지출 소액의 경우 이하 동일**
- ※ 천원 단위 이하는 소수점으로 표시(예. 5천원 → 0.5). 단 1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처리, 예) 11만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문 1)	총생활비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총 생활비는? ※ 총생활비 = 식료품비+주거비+광열수도비+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비+의류·신발비+보건의료비+교육비+교양오락비+교통비+통신비+기타소비지출+비소비지출 ※ 저금 저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등 자산 증가를 위한 지출과 주택부금상환, 월부, 외상 밀린 돈(이차 포함) 같은 금액 등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은 제외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2)	주 거 비	이 중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월평균 주거비는? ※ 주거비 = 월세(세금포함)+주거관리비 및 수선비 ※ 주거관리비 = 주택관리 및 수선비, 아파트 등 관리비, 이삿금, 복비, 전와조비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3)	보 의 건 비	이 중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 임원비, 외래진료비, 진료진료비, 수술비(임플란트, 상해수술 등도 포함), 약값, 간병비, 산후조리비, 건강진단비, 건강모니터링, 보건관리원비용(민간), 콘택트 렌즈 등), 보장금, 자원봉사자 참가요양서비스비용 등 보건의료비는 본인이나 부담하는 금액(연수증 상의 본인 부담액)만 기입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4)	세 금	이 중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월평균 세금 은? ※ (종합소득세, 종량부동산세, 갑근세, 재산세, 자동차세, 원경개선부담금, 주민세, 취득세 등의 연간 총납세액을 12로 나눈 값) 단, 법인세 등 사업용도의 세금은 제외함, 2021년 소득공제 환급시 더 낸 세금 포함 ※ 본인 명의가 아닌 지인에 대해 내는 세금도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5)	사 회 보 장 부 담 금	이 중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월평균 사회보장부담금은? ※ 가족 모두의 국민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월 합산액 ※ 본인부담의 보험료만 포함(사업장이나 제3자가 부담해주는 보험료는 제외) ※ 사보험료(암보험, 보장성보험 등) 제외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월평균 기준 ※ 생활비에는 '현금으로 지출되는 비용 + 자가소비액 + 현물로 지원받아 생활하는 금액' 등이 포함됨.	금 액					
문 6) 귀 가구가 1달 동안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7) 귀 가구가 1달 동안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8) 귀 가구가 1달 동안 '건강하고 문뜩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Ⅲ. 소득																					
문 1)	가구의원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귀 가구 가구원 중 만 15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이었던 모든 가구원의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① 근로소득						② 사업소득						③ 기타근로소득								
	상용, 임시·일용 근로자						고용주·자영자(농림축산,어업경영주 포함)						응답한 근로소득 외에 주 1시간 미만의 근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								
1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2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3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4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5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6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7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8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9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합계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 유의사항 〉

- * 순서는 반드시 가구원번호순에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 **할 시점에 직업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하는 각각의 소득과액(배, 공무원이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기입).
- * 사업소득은 **순소득**임.
- * 자영업, 농림축산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가구 중 **2명 이상의 가구원이 하나의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그 중 1명만 고용주·자영자, 농림축산업 경영주, 어업 경영주로 표시함.

*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다음 소득은 얼마입니까? * 없음 0

문 2)	재 산 소 득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얻은 자산소득의 유형별 소득액은? - 이자(은행, 사채), 배당금, 임대료(월세, 토지임대료 등) 등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월평균액 ×12를 하고, 일시금으로 들어오는 경우 일시금 금액을 그대로 기입 (예) 매월 이자수입이 10만원이고, 1년에 1번 배당금으로 100만원을 받는 경우: (10×12)+100=220만원으로 기입																					
		합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문 3)	사 회 보 험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받은 사회보험의 유형별 소득액은? ※ 일시불은 제외																					
		①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②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③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합계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문 4)	민 간 보 험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받은 민간보험사에서 받은 총 개인연금액은?																					
		①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②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합계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만원	천	백	십	만원

구분	조사항목	조사내용	조사항목					단위	
			연간	천	백	십	원		
문 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① 장애인 ② 기초연금 ③ 한부모 ④ 아동 ⑤ 세계 지원 ⑥ 기타원금급여 ⑦ 사회적협약이전	장애수당(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연간					만원	
		기초연금	연간					만원	
		한부모가족지원	연간					만원	
		보육표지전(행복카드) *한부모연인	연간					만원	
		아동수당(영유아)	연간					만원	
		아동수당 *2019년 9월 도입	연간					만원	
		유아학비지원 *한부모연인	연간					만원	
		근로장려세제·저소득층세제	연간					만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환급금 *다 남부한 경우 W	연간					만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 (보훈연금 포함)	연간					만원	
		긴급복지지원금	연간					만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등			연간				만원
		코로나19 관련 기타 현금지원 - 소상공인 지원금(소상공인 바텀업 자금, 소상공인 바텀업자금플러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 긴급고용안정지원금(학교·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컨세버스기사,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 기타 현금지원(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상생소비지원금 등)			연간				만원
		기타 원금급여 (예)학비지원(농림부 지원 포함), 가정위탁금·소년소녀가장보호비, 농어업정주보조금(직불금 등), 노인위생비, 출산장려수당, 출산출하급(지자체 지원 포함), 육아돌봄비 지원, 노인장수수당, 직업훈련수당, 교통안전공단지원금 등			연간				만원
		에너지 값면 또는 보조 (전기료, 가스료, 동결기 에너지바우처 등)			연간				만원
		통신비 값면 또는 보조 (전화, 인터넷 등)			연간				만원
		기타 사회적협약이전 (예)사회서비스바우처 (가시간병방문지원서비스, <u>인도생활지원서비스</u> , 산도신청이전강관리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u>기저귀(조계분유)지원서비스</u> 등), <u>인도생활지원서비스</u> , 급식비 지원, 교복비 지원, 수련활동비 및 수학여행비, 영양플러스 사업, 보건소 지원 물품, 보건소 의료비 지원(5대알, 치매,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원문지원, 쓰레기 봉투 등			연간				만원
		합계			연간				만원

문 6)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현금 및 현물)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총금액은? ※ 주택구입자금과 결혼자금 제외 ※ 일회성 보육대기 포함 안됨. 원금형식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에 기입 ※ 부모나 자녀는 가구주를 기준으로 함	부모 연간	월	천	백	십	원	만원
			자녀 연간	월	천	백	십	원	만원
			합계	월	천	백	십	원	만원
문 7)	민간 보조금 (현금 및 현물)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친척·친지, 친구나 이웃, 복지관, 종교·사회단체(학교 장학금 포함), 회사(자녀학자금보조 포함)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 보조금의 총금액은? ※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 제외	연간	월	천	백	십	원	만원
			연간	월	천	백	십	원	만원
문 8)	기타 소득 (현금 및 현물)	이 외에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발생한 기타소득의 금액은? ※ 퇴직금의 경우 목돈으로 받는 경우 여기서 파악. 월급에 포함되어 받는 경우 상용 또는 임시 근로 소득으로 파악 ※ 증여·상속, 경조금, 보상금(사고보상금, 이주면주거대책비 등), 시고 및 절명보령금, 퇴직금, 사회보장 일시금, 개인연금 일시금, 보정성 보험 해약금, 동산·부동산 매매차익, 기타복합권/경품당첨금, 상품권, 쉼돈 등이 포함됨.	연간	월	천	백	십	원	만원
			연간	월	천	백	십	원	만원
문 8)	세입금 현금 및 현물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돌려받은 환급금 총액은? ※ 환급받은 경우 기입 ※ 2021년 소득공제 환급시 더 내 세금의 경우 II.월영권 생활비 중 '문 4' 세금에서 파악	연간	월	천	백	십	원	만원
			연간	월	천	백	십	원	만원

※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다음 소득은 얼마입니까? ※ 없음 0

문 9)	귀성민활보장여	정부(주민센터)로부터 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연간 수급개월수와 현금급여 금액은? ※ 주민센터에서 파악하십시오. ※ 총 현금급여 =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교재서대, 교육활동지원비)+해산급여+장제급여 ※ 발급 포함(일부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을 공개하고 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생계급여에 포함) ※ 수급 개월수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급 개월수를 적고, 연간 금액은 월평균(현금급여액)×수급 개월수로 계산하여 기입해, 이 기간 동안 3개월 월 20만원을 받았다면, 수급개월수는는 03, 금액에는 60만원 기입)	금액									
			생계급여	연간	개월	월	천	백	십	원	만원	
			1. 자활급여	연간	개월	월	천	백	십	원	만원	
			주거급여(연제급여)	연간	개월	월	천	백	십	원	만원	
			수선유지급여 (월유출 현금으로 환산)	연간	회	천	백	십	원	만원		
			교육급여	상반기	개월	월	천	백	십	원	만원	
				하반기	개월	월	천	백	십	원	만원	
			해산 및 장제급여	연간	회	월	천	백	십	원	만원	

IV. 부채, 이자

※ 귀하 가구의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1. 12. 31 기준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함)

		세부항목	금액							
문 1)	부채태	2021.12.31 기준 으로 부채의 형태별 금액 (명의기준)은 얼마입니까? ※ 명의기준 ※ 밀린 월세, 교통안전공단지원대부금 등은 기타부채에 포함 ※ 카드 할부구매는 ③ 카드빚에, 현금 할부 구매는 ⑤ 외상, 미리 탄 쉼돈 ※ 주거부채, 영농부채도 파악함. ※ 사회보험 연체금은 ⑥ 기타부채에 기입함. ※ 전이적에게 돈을 빌린 경우, 이자가 있으면 ② 일반사채에, 이자가 없으면(무이자) ⑥ 기타부채에 기입함.	①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십	만	천	백	십	원	만원
			② 일반사채	십	만	천	백	십	원	만원
			③ 카드빚	십	만	천	백	십	원	만원
			④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십	만	천	백	십	원	만원
			⑤ 외상, 미리 탄 쉼돈 ※ 미리 탄 쉼돈의 경우 향후 부어야 하는 금액만 기재	십	만	천	백	십	원	만원
			⑥ 기타부채 ()	십	만	천	백	십	원	만원
문 2)	이 자	2021년 1년(2021.1.1~2021.12.31) 동안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는 연간 얼마였습니까? ※ 명의기준 ※ 2021년 1년(2021.1.1~2021.12.31) 동안 연체하여 내지 못한 이자는 포함하지 않음.	연간	십	만	천	백	십	원	만원

V. 자산																	
※ 귀 가구의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자산에 대한 질문입니다(2021.12.31 기준, 명의 기준으로 조사하며, 가구원명인의 시업장(가계)도 포함된다.)																	
		세부항목				금액 (※ 없음 0)											
문 1)	소유 및 점유 부동산	2021.12.31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소유 및 점유 부동산의 가격(현 시가기준)은? ※ 거주하고 있는 집은 VI, 주거에서 제외하므로 여기서는 제외. ※ 소유 부동산: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택의 건물(가죽명리의 시업장(가계)·창고·상가·콘도·빌딩·오피스텔 등), 토지(택지, 논, 밭, 임야 등), 양식장, 기타 부동산 ※ 점유 부동산: 가계, 사업장 등의 전세보증금 준 것, 비동거가구의 전세보증금 등, 기타(권리금, 사업설비, 공장가계, 가계용건, 비닐하우스시설, 양식장 등)				백만	십만	만원	천	백	십	천	만원				
문 2)	금융자산	2021.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유형별 가격은? ※ 가구원 전부 파악				① 예금(청약예금, 정기예금 등)				백만	십만	만원	천	백	십	천	만원
						② 적금(장기적금, 연금형 적금, 종신보험,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백만	십만	만원	천	백	십	천	만원
						③ 주식·채권·펀드(적립식, 거치식)				백만	십만	만원	천	백	십	천	만원
						④ 타기 전 부은 현금				백만	십만	만원	천	백	십	천	만원
						⑤ 기타(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계약금) 부은 것 등)				백만	십만	만원	천	백	십	천	만원
문 3)	농기계 농작산물	2021.12.31 기준으로 보유하고 계신 농기계 및 (판매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농작산물의 가격은? ※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트랙터 실탤펀, 허영기, 미중기(도장기), 보일러, 리기, 로타리, 비료살포기, 농약살포기, 건조기, 분사기, 양수기 등이 포함됨. ※ 소, 돼지, 닭, 산양 및 유실수 등이 포함됨. (농산물 재고량도 자산에 포함) ※ 애원물 및 가구 내 식물 가축 제외				백만	십만	만원	천	백	십	천	만원				
문 4)	가상자산	2021.12.31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가구원 전부 파악 ※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한함		없다	있다	백만	십만	만원	천	백	십	천	만원				
문 5)	기타 자산	2021.12.31 기준으로 위의 자산 이외의 소유하고 계신 자산의 가격은? ※ 운동클럽 등의 회원권, 자동차 번호 값, 선박, 여권권, 공작기, 포크레인 등 건설설비, 귀금속, 공동물, 상공권 등이 포함됨.				백만	십만	만원	천	백	십	천	만원				

문 6) 2021.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계신 자동차는? (가구원 명기준,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부터 모두 응답함)

연번	용도		수소차·전기차		배기량은					종류는				연식	금액 (※ 없음 0)							
	가계용	사업용	맞다	아니다	1000CC 미만	1000-1600CC 미만	2000-2500CC 미만	2500CC 이상	승용차	승합/화물차	이륜차	기타	백만		십만	만원	천	백	십	천	만원	
1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년식	백만	십만	만원	천	백	십	천	만원
2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년식	백만	십만	만원	천	백	십	천	만원
3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년식	백만	십만	만원	천	백	십	천	만원
4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년식	백만	십만	만원	천	백	십	천	만원
5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년식	백만	십만	만원	천	백	십	천	만원

VI. 주거

※ 귀 가구의 주거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사 등으로 주거유형 혹은 점유형태에 변화가 있었던 경우, 바뀐 이후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의 유형은?	① 단독주택(다가구, 영입겸용단독) ② 연립 및 다세대주택 ③ 오피스텔, 고시원 ④ 기타	② 아파트 ③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④ 관chal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문 2)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 가구에서 사용하는 방은 모두 몇 개입니까? (세준 경우 제외)									개
문 2-1)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용하는 귀 가구의 주택면적(APT 등의 경우 분양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미당, 정원, 창고 등을 제외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면적 기준 ※ 1원 > 3.3㎡									㎡
문 3)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점유형태는?	① 자가 (문 3-1) ④ 월세(사글세, 연세, 일세)	② 전세 (문 3-1) ⑤ 기타(무상포함) (문 3-1)	③ 보증부월세 (문 3-1)						
문 3-1)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어떤 유형입니까?	① 민간임대주택 ②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 매매/전세 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등) ③ 기타 ()								
문 4)	주 택 (가 격)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의 가격(현시가지준)은? ※ 시가의 경우 주택가격, 전세의 경우 전세금,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기타의 경우 가격 ※ 월세의 경우 'H. 월임금 생활비'의 '문2) 주거비'에서 참조	금액							만원
	주 택 (월세액)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보증부 월세 및 월세(사글세, 연세, 일세)인 경우 지불하는 월세액은? ※ 자가주택의 토지에 대해 지불하는 지대도 포함	월평균							만원

VII. 생활여건

※ 2021년 12월 31일 기준 ※ 해당 번호에 O함.		귀하가 생각하기에		우리 가정에서는,			
		① 꼭 필요하다 (필수품이다) ② 있으면 좋다 (필수품은 아니다)		① 갖고 있다. ② 가지고 싶지만 현재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어 못 갖고 있다 ③ 별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갖고 있지 않다.			
문 1)	김치냉장고	①	②	①	②	③	
문 2)	정수기 (생수구입포함)	①	②	①	②	③	
문 3)	에어컨	①	②	①	②	③	
문 4)	공기청정기	①	②	①	②	③	
문 5)	노트북	①	②	①	②	③	
문 6)	태블릿PC	①	②	①	②	③	
문 7)	자동차	①	②	①	②	③	
문 8)	스마트폰	가구원 전체 보유대수	대	①	②	③	
문 9)	스마트폰을 제외한 휴대전화	가구원 전체 보유대수	대	①	②	③	
2021년 1년 동안의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해당되는 번호에 O 표시를 하고 번호를 기록함				귀하가 생각하기에		우리 가정에서는,	
				① 꼭 필요하다 ② 하면(있으면) 좋다		① 하고(갖고) 있다 ② 안(못) 하고(갖고) 있다	
식생활	10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 것	①	②	①	②	
	11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먹는 것	①	②	①	②	
	12	가끔 기호식품(콜라, 커피, 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사먹는 것	①	②	①	②	
의생활	13	백유 수증 날림을 수 있는 오버류(코트, 파카, 털이나 가죽옷 등) 두	①	②	①	②	

750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2021년 1년 동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귀하가 생각하기에		우리 가정에서는,		
※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하고 번호를 기록함		① 꼭 필요하다 ② 하면(있으면) 좋다		① 하고(있고) 있다 ② 안(못) 하고(있고) 있다		
	별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14	여석장 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정장을 한 벌 정도 는 가지고 있는 것	①	②	①	②	
15	정장에 어울리는 구두 한 켤레 는 가지고 있는 것	①	②	①	②	
16	일년에 한 벌 정도 외출용이나 경장 등의 옷을 구입 하는 것	①	②	①	②	
주택 및 주거 환경	17 가족 수나 구성원의 연령에 맞지 적절한 방을 나누어 사용 하는 것	①	②	①	②	
	18 전용 입식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을 갖추는 것	①	②	①	②	
	19 집의 구조물이 견고 하고 심각한 균열이 없을 것	①	②	①	②	
	20 방음, 환기, 채광이 적절 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	①	②	①	②	
	21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습기가 차지 않거나 이로 인해 벽이나 바닥에 손상 이 없는 것	①	②	①	②	
	22 충지 않도록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 에서 생활하는 것	①	②	①	②	
	23 자연재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택 에 거주하는 것	①	②	①	②	
의료 및 건강	24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 하는 것	①	②	①	②	
	25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거장이나 전철역 이 있는 것	①	②	①	②	
	26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 받는 것	①	②	①	②	
27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는 것	①	②	①	②		
28 건강을 위해 보약이나 영양제 또는 보조식품 등을 먹는 것	①	②	①	②		
29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 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 을 구입하는 것	①	②	①	②		
가족들동 및 문화생활	30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2~3일 정도의 여행(피서) 을 다녀오는 것	①	②	①	②	
	31 1개월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외식 하는 것	①	②	①	②	
	32 가족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 하는 것(외식 등)	①	②	①	②	
사회적 지지	33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가족 또는 자녀와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영화, 공연) 을 할 수 있는 것	①	②	①	②	
	34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가 있는 것	①	②	①	②	
	35 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가 있는 것	①	②	①	②	
지속	36 물질적(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가 있는 것	①	②	①	②	
	37 재정적인 지출을 대비 하는 것(저축 등)	①	②	①	②	
	38 긴급한 재정적 지출 (약 500만원 정도)을 감당하는 것	①	②	①	②	
	39 노후를 위해 (국민,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는 것	①	②	①	②	
40 사회보험 외의 사적보험 (의료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	①	②	①	②		
2021년 1년 동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귀하가 생각하기에		우리 가정에서는,		
※ 학령기(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모두 응답 ※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하고 번호를 기록함		① 꼭 필요하다 ② 하면(있으면) 좋다		① 하고(있고) 있다. ② 안(못) 하고(있고) 있다 ③ 해당없다 (2021년 1년 기간 동안 학령기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 교육	41 자녀에게 고등교육(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 을 시키는 것	①	②	①	②	③
	42 자녀가 원하는 경우 학원수강이나 과외 를 시키는 것	①	②	①	②	③
	43 자녀에게 필요한 기본참고서나 도서 를 사주는 것	①	②	①	②	③
	44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을 책임 지는 것	①	②	①	②	③

* 2021년 1년 동안, 귀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으로 인하여 다음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경제적 어려움	45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①	②
	46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47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①	②
	48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49	더운 여름에 냉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50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①	②
51	집세(월세·일세)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 자가 또는 무상인 경우 ③ 해당 없음				

1인가구 생계비에 대한 주관적 인식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귀 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1인 가구가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얼마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시금세의 경우 임차료(임주인에게 미리 지불한 목돈)에서 시금세로 신 기간 동안 지불된 금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생활비를 고려할 것 ※ 응답자 기준	자가 (전세) 가구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52		월세 (사글세) 가구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4인가구 생계비에 대한 주관적 인식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귀 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부부와 초등 학생인 두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가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 는 얼마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시금세의 경우 임차료(임주인에게 미리 지불한 목돈)에서 시금세로 신 기간 동안 지불된 금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생활비를 고려할 것	자가 (전세) 가구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53		월세 (사글세) 가구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VIII. 건강 및 의료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문 1)	귀 가구에서 지난 1년(2021.11~12.31) 동안 의뢰 및 약국(편의점 등)에서 자불한 총 본인부담액 은 얼마입니까?	연간			만원	
문 2)	귀 가구에서 지난 1년(2021.11~12.31) 동안 일원으로 자불한 총 본인부담액 은 얼마입니까?	연간			만원	
문 3)	귀 가구의 월평균 국민건강보험료 는 얼마입니까? ※ 세대별 같이하는 가구원의 총 보험료 ※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월			천원	
문 4)	지난 1년(2021.11~12.31) 동안 가구의 총 의료비에 대한 가계 부담 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총의료비는 입원, 외래, 약국에서 발생한 비급여도 포함한 총 본인부담금 ※ 기타 건강보조식품 등은 제외	① 전혀 부담 되지 않았다 ② 거의 부담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부담 되었다 ⑤ 매우 많이 부담 되었다				
문 5)	지난 1년(2021.11~12.31) 동안 의료비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충당 하셨습니다? ※ 의료비 충당방식이 하나인 경우는 1순위만 기입하며, 하나 이상인 경우 높은 금액 순으로 두 가지 기입 ※ 의료비 지출이 없는 경우 '00 없음'	① 생활비로 ② 저축이용 ③ 전세비를 줄여서 ④ 자산처분으로 ⑤ 부모 또는 자식에게 도움 받음 ⑥ 민간보험으로 ⑦ 친지나 친구에게 도움받음 ⑧ 금융기관대출 ⑨ 사채 등 빚으로 ⑩ 기타 ()			1순위	2순위
문 6)	지난 1년(2021.11~12.31) 동안 귀 가구에서 가구원이 아셨지만 병·의원(외과 포함)을 방문하지 못하셨거나 증도에 치료를 포기하신 경험 이 있으십니까?	① 있음 문 6-1)로 갈 것 ② 없음 문 7)로 갈 것				
문 6-1)	치료를 포기한 주된 이유 는 무엇입니까? ※ 우선순위에 따라 2개 선택 ※ 2순위 보기에 '00 없음' 추가	① 진료비 부담 때문에 문 7)로 갈 것 ② 일과시간에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③ 중한 질병이 아닐 것이라 생각해서 ④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멀어서 ⑤ 식구(유아, 노인 등)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⑥ 치료 효과가 없어서 ⑦ 기타 ()			1순위	2순위
문 7)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경제적 사정 으로 인해 치료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① 있음 문 7-1)로 갈 것 ② 없음 문 8)로 갈 것				
문 7-1)	(부족했던 보건의료비)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경제적 사정 으로 인해 치료받지 못하신 경우, 연간 얼마 정도 있었으면 치료가 가능하였습니까? ※ 지난 1년간 총부족액, 배를 들면, 수술받지 못한 경우 수술비가 1,200만원이었다면 부족액은 1,200만원(등니, 보장구 구입비, 보정지 시술 포함)	연간			만원	
문 8)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하고 계십니까?	① 비매당 문 9)로 ① 매우 만족한다 문 9)로 ② 만족한다 문 9)로 ③ 보통이다 문 9)로 ④ 불만족한다 문 8-1)로 ⑤ 매우 불만족한다 문 8-1)로				
문 8-1)	(문8에서 ④, ⑤ 응답자)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 는 무엇입니까?	①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② 보험 혜택(보장성) 범위가 넓지 않아서(질병에 걸렸을 때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가 많아서) ③ 보험료 부과 불형평성 (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자영업 등) 간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 체계 ④ 기타()				
문 9)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하고 계십니까?	① 비매당 문 10)으로 ① 매우 만족한다 문 10)으로 ② 만족한다 문 10)으로 ③ 보통이다 문 10)으로 ④ 불만족한다 문 9-1)로 ⑤ 매우 불만족한다 문 9-1)로				
문 9-1)	(문9에서 ④, ⑤ 응답자)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 는 무엇입니까?	①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② 입원진료 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부담 ③ 의료이용 시 건강보험대상자와의 차별적 대우 ④ 기타()				
문 10)	2021.12.31. 기준으로 의료보장 성격이 있는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가구원 은 몇 명입니까? ※ 보정금 및 정액형 문 1) 이상 가입 가구는 문 10-1)로, 미가입자는 문 1) 에너지로 갈 것				명	
문 10-1)	지난 1년(2021.11~12.31.) 동안 위의 민간보험의 월평균 보험료 는 얼마입니까?	월			만원	

IX. 에너지

※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가구의 에너지 사용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절 등으로 인하여 연내 일시적으로 이용한 경우, 이용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p>지난 동절기(12.3.11.12월), 귀 가구가 보온 및 난방을 위해 사용한 에너지는 무엇이었습니까? ※ 2순위 보기에만 ㉔ '비해당' 추가</p>	<p>① 석유(보일러, 난로 등) ② 도시가스(LNG) ③ 프로판, 부탄 ④ 전기(심야전기, 난로, 장판 등) ⑤ 지역난방 ⑥ 연탄 ⑦ 기타 ()</p>	1순위	2순위	
문 2)	<p>지난 동절기(12.3.11.12월), 귀 가구가 에너지 사용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얼마였습니까? ※ 납부고지서 전기요금 확인</p>	<p>월평균 에너지총비용</p>		천원	
		<p>월평균 전기요금</p>		천원	
문 3)	<p>지난 동절기(12.3.11.12월), 귀 가구가 실제로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은, 겨울철 적정온도(18~24℃)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용량 수준에 비해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적정수준 대비 사용 비율은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용량보다 아껴 부족하게 사용하였다면 0~99%, 실제 필요한 만큼 사용하였다면 100% 필요한 수준보다 과도하게 사용하였다면 101~200% 범위 내에서 응답</p>	<p>적정수준 대비</p>		%	
문 4)	<p>지난 하절기(6.7.8.9월), 귀 가구가 에너지 사용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얼마였습니까? ※ 납부고지서 전기요금 확인</p>	<p>월평균 전기요금</p>		천원	
문 5)	<p>지난 하절기(6.7.8.9월), 귀 가구가 실제로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은, 여름철 적정온도(18~26℃)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용량 수준에 비해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적정수준 대비 사용 비율은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용량보다 아껴 부족하게 사용하였다면 0~99%, 실제 필요한 만큼 사용하였다면 100% 필요한 수준보다 과도하게 사용하였다면 101~200% 범위 내에서 응답</p>	<p>적정수준 대비</p>		%	
문 6)	<p>에너지와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방식은 어떻게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순위에별도 두가지 기입 ※ 2순위 보기에만 ㉔ '비해당' 추가</p>			1순위	2순위
	<p>① 현행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과 같이 사용하는 에너지 유형별 사용료 면제 및 감면방식 ② 사용하는 에너지유형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나 카드 형태의 바우처 방식 ③ 보일러, 난로, 장판 등을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절약형 난방기기로 교체 지원 ④ 창문(틀)이나 문(틀) 수리 및 교체, 단열재 보강 등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하여 지원 ⑤ 기타 ()</p>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심층조사
(기타 실태 포함)**

1. 월평균 생활비

〈유의사항〉

- ※ 모든 조사대상 가구가 응답합니다.
-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 한 가구원 모두의 지출(가구합계 금액)을 포함합니다.
- ※ 생활비 : 가정생활만을 위한 비용이며, 경상지출(매년(월)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따라서 **사업비용 등의 비용은 제외합니다.**
- ※ 전민적, 이웃,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조받는 각종 현물(정약국, 의료비, 각종 공과금 대납, 식료품, 의료, 불-난방용품 등)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해당 비용의 생활비에 포함하여 추산시오.
- ※ 일부 구매의 경우 **2021년 지출한 할부금 총액+12월 기입합니다.** 예) 2021년 12월에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24개월 할부로 구매하였으면, 자동차 가격에 할부 개월을 나눈 월 50만원만을 기입합니다. 따라서 2021년에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았어도, 2021년에 비용이 발생하면 기입합니다.
- ※ **없음은 반드시 '0' 표시, 지출 소폭의 경우 이하 동일**
- ※ **천원 단위 이하는 소수점으로 표시(예, 5천원 → 0.5), 단 1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처리, 예) 11만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문 1)	총생활비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총 생활비는? ☞ 가구일반 조사의 "II. 월평균 생활비" 조사 값 활용	월평균	최	백	십	원	만원
문 2)	식료품비	이 중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월평균 가정식비는? ※ 음식비용 제외, 가정에서 먹는 주식, 부식, 간식비용, 가정간편식(MF) 및 알키트 (취사과정)이 필요하면 가정식에 해당), 체사비용 포함 ※ 자가소비(자기가 농사를 지어 먹는 것,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등) 포함	월평균	최	백	십	원	만원
		이 중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월평균 외식비는? ※ 포장 및 배달 직장인의 점심(배우료 중식비 포함), 가족 및 가구원 외식비, 학교 급식비, 밖에서 먹는(술음주) 비용, 복지관에서 무료식사 등	월평균	최	백	십	원	만원
		이 중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월평균 주류 담배비는?	월평균	최	백	십	원	만원
문 3)	주거비	이 중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월평균 주거비는? ☞ 가구일반 조사의 "II. 월평균 생활비" 조사 값 활용	월평균	최	백	십	원	만원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월평균 월세(사글세 포함)는? ※ 월세 = 전세, 자가인 경우 0, 보증부월세인 경우 보증금 제외하고 월세만 기입	월평균	최	백	십	원	만원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월평균 관리비는? ※ 개별 가구에서 사용한 항목이 아닌 공동관리비, 경비당여비, 청소비, 수도비 등 공동관리를 위해 전국원 비용을 기입	월평균	최	백	십	원	만원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월평균 수선 유지비는? ※ 기본적인 삶의 질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선유지에 지출된 비용을 의미함 (창호조 청소, 전기, 하수구 막힘 분해 해결, 전등 교체, 단열 필름 부착 등 비용) ※ 보일러 교체와 같은 일상적이지 않은 주택수선·유지비는 제외	월평균	최	백	십	원	만원
문 4)	광수도열비	이 중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월평균 광열수도비는? ※ 수도비, 전기료, 난방비(연탄, 등유, 갈유, 도시가스, LPG 등 급탕비, 에너지 비우차 포함)	월평균	최	백	십	원	만원
문 5)	의료건비	이 중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 가구일반 조사의 "II. 월평균 생활비" 조사 값 활용	월평균	최	백	십	원	만원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월평균 보건의료비 중에서 마스크와 코로나19 진단키트, 손소독제 구입비는?	월평균	최	백	십	원	만원
문 6)	교육비	문 6-1) 이 중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월평균 공교육비는? ※ 등록금, 납입금, 교재비, 문방구비, 모용수업비, 이화학습비, 수학여행비 유학비 (초·중·고·대학교, 대학원) 등	월평균	최	백	십	원	만원
		문 6-2) 이 중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월평균 사교육비는? ※ 학원비, 유치원비, 도서관 및 독서실 비용, 과외수업비, 어학연수비, 검정고사비 등	월평균	최	백	십	원	만원
문 7)	기타소비지출	이 중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월평균 기타소비지출은? ※ 미미응용류 구입 및 서비스(화장품, 비누, 샴푸, 이·마용실, 목욕료 등), 장선구(핸드백, 시계, 귀금속 등), 경조비, 교재비용, 비영리단체(헌금 등) 종교 관련 비용, 기부금, 직장노조비, 친목회비 등) 이점지출, 보정성당원(봉사) 후원보험 재원), 관혼상비 , 유품 등	월평균	최	백	십	원	만원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월평균 비영리단체 이점지출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최	백	십	원	만원

문 8)	사적이전 지 출	이 중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따로 사는 가구원 타지에서 공부하는 학생,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배우자 등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은? ※ 비동거 가구원에게 보낸 현금 및 현물지출(생활보조금, 경조금, 돌봄지원 등), 주거비 송금도 여기에 포함됨	월평균						면월
		이 중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가구원이 아닌 부모, 자녀, 친자 등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은? ※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부모·자녀, 친자·동료 등에게 보낸 현금 및 현물지출(생활보조금, 경조금, 돌봄지원 등)	월평균						
문 9)	세 금	이 중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월평균 세금은? ☞ 가구일반 조사의 "II. 월평균 생활비" 조사 값 활용	월평균						면월
문 10)	사회보장 부 담 금	이 중 지난 1년(2021.1.1~2021.12.31) 동안 월평균 사회보장부담금은? ☞ 가구일반 조사의 "II. 월평균 생활비" 조사 값 활용	월평균						면월

II. 관련 지원

문 1) 귀 닥은 2021년에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으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III.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일반으로 갈 것**

문 1-1) 귀 닥은 추가 국민지원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 ① 생활비(각종 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 → **문 1-2)로 갈 것**
- ② 빚 갚음
- ③ 저축 → **문 2)로 갈 것**
- ④ 기타(기입:)

문 1-2) 귀 닥에서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소비한 지출 항목에 대해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에 보기 ⑬을 기입할 수 없음)

1순위	2순위

- ① 식료품비
- ② 주거비
- ③ 광열수도비
- ④ 가구집기·가사용품비
- ⑤ 피복신발비
- ⑥ 보건의료비
- ⑦ 교육비
- ⑧ 교양오락비
- ⑨ 교통비
- ⑩ 통신비
- ⑪ 기타소비지출
- ⑫ 비소비지출
- ⑬ 2순위 없음(1순위에 모두 지출 등)

문 1-3) 위 문항(문1-2)에 응답된 1순위 지출 항목은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예 지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② 아니오 지출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문 1-4) 위 문항(문1-2)에 응답된 2순위 지출 항목은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예 지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② 아니오 지출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2) 추가 국민지원금이 귀하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주었습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되었음
- ② 다소 도움이 되었음
- ③ 보통
- ④ 별로 도움이 안되었음
- ⑤ 전혀 도움이 안되었음

III.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면서,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급여별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로 변경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며, 그 밖에 의료급여 특례, 자활특례 등 특례도 포함되며, 가구원 중 일부만 수급하는 가구도 수급가구로 간주한다.

문 1) 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
(정보전달 차원의 주된 기제)

- ① 주민센터, 시군구청, 복지관 등 공공부문의 전화, 방문, 상담, 안내문 발송 등
- ② 위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기관의 전화, 방문, 상담, 안내문 발송 등
- ③ 가족, 친구, 이웃, 지인 등이 알려주거나 수급받는 것을 보고
- ④ 텔레비전 또는 신문(무료신문, 인터넷 신문 포함)
- ⑤ 인터넷(인터넷 신문을 제외한 유튜브, 블로그,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등)
- ⑥ 현수막, 전단지, 리플릿, 포스터 등 (인터넷상 포스터, 리플릿 등은 제외)
- ⑦ 통·반장
- ⑧ 기타(적은 것 : _____)
- 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모른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문 설문 종료

※ 유의사항

※ 제도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아니어도 국가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알 일반사항에서 기초생활보장을 수급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⑨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 2) 귀 가구 이외 비동거 가구(부모 혹은 자녀)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혹은 개인)가 있으십니까?(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형제자매 및 친인척 제외)

- ① 없다
- ② 있다

문 3) 귀책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문3-1)로 갈 것
- ② 있다 → 문3-2)로 갈 것

※ 유의사항 : 공식적인 서류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문 3-1) (문3)의 ①번 응답자만) 귀책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후 문4)로 갈 것)

1순위	2순위

- ① 제도를 잘 몰라서 → 2순위 공란
- ② 이미 해당기간 내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어서 → 2순위 공란
- ③ 필요 없어서(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서) → 2순위 공란
- ④ 경제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선정기준이 엄격해서 신청해도 안될 것 같아서
- ⑤ 경제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국가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 ⑥ 신청절차 및 선정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 ⑦ 지원받을 금액이 적어서
- ⑧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우리 가족에게 적합한 급여가 없어서
- ⑨ 다른 사람들이 내 상황(가정의 경제적 상황, 수급 신청 및 여부 등)을 아는 게 싫어서(수치심 등)
- ⑩ 신청 기관(관공서 등)이 멀어서
- ⑪ 소득 혹은 재산이 노출되는 것이 싫어서
- ⑫ 다른 복지급여를 못 받거나 적게 받을까봐
- ⑬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부모, 자녀 등이 피해 또는 번거로움을 겪을까봐

문 3-2) (문3)의 ②번 응답자만) 신청한 결과 귀댁은 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까?

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모두 받게 되었다 → **문4)로 갈 것**

* 유의사항 : 생계, 의료, 주거 급여는 받지만 대상자가 없어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도 **①번 응답**

- ②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일부만 받게 되었다
- ③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문 3-3) (문3-2)의 ②, ③번 응답자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혹은 일부만 수급하게 된) 후 귀댁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문제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급여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3-3-1) 생계	<input type="checkbox"/>	문 3-3-2) 의료	<input type="checkbox"/>
문 3-3-3) 주거	<input type="checkbox"/>	문 3-3-4) 교육	<input type="checkbox"/>

- ① 긴급복지지원의 도움
- ②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
- ③ 빚을 내어서 생활
- ④ 민간단체의 도움
- ⑤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 ⑥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 ⑦ 공공기관 프로그램(공공근로 사업, 차상위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 ⑧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 ⑨ 기존에 받던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 ⑩ 기타(적을 것 : _____)

IV. 기간구분(2021.1월~2021.9월/ 2021.10월~2022.6월)

아래 문4)~문5)은 앞서 질문한 2021.1월 ~ 2022.6월 동안의 기간을 2021.1월~2021.9월 동안과 2021.10월~2022.6월 동안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문항입니다. 2021.1월 ~ 2022.6월 동안의 기간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거나 수급한 경험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조사합니다(문 4)를 통해 파악).

문 4) 귀댁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거나 수급한 경험*이 있습니까?
 * 유의사항 :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 경우도 '수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

① 없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문 설문 종료

② 있다. → 문 4-1) 귀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받아왔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있(었)습니까?

① 없다 → 문4-2)로 갈 것

② 있다 → 문 4-1-1) 귀댁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받아왔던 급여에 대해 아래 네모 칸에 '√'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문 4-2) 귀댁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 문4-6)로 갈 것 ② 있다 → 문4-3)로 갈 것

* 유의사항 : 공식적인 서류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문 4-3) (문4-2)의 ②번 응답자만) 신청한 결과 귀댁은 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까?

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모두 받게 되었다 → 문4-6)로 갈 것
 * 유의사항 : 생계, 의료, 주거 급여는 받지만 대상자가 없어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도 ①로 응답

②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일부만 받게 되었다 → 문 4-4) (문4-3)의 ②번 응답자만) 받게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아래 네모칸에 '√'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문 4-5) (문4-3)의 ②, ③번 응답자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혹은 일부만 수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 4-3)의 ②번 응답자는 응답 후 문 4-6)로 이동
 ※ 문 4-3)의 ③번 응답자는 응답 후 문 5)로 이동

③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 ③번 응답자는 4-5) 응답 후 문 5)로 이동 →

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② 자동차가 있어서
 ③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④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⑤ 부양여부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⑦ 잘 모르겠다.

문 4-6) (문4-3)의 ①, ②번 응답자 및 수급 경험 가구 귀댁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탈피한 급여가 있습니까?

① 없다 → **문5)로 갈 것**

② 있다 → 문 4-7) 탈피한 급여는 무엇입니까? 해당 급여에 '√'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문 5) 귀댁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 **문5-4)로 갈 것** ② 있다 → **문5-1)로 갈 것**

* 유의사항 : 공식적인 서력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문 5-1) (문5)의 ②번 응답자만 신청한 결과 귀댁은 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까?

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모두 받게 되었다 → **문5-4)로 갈 것**

* 유의사항 : 생계, 의료, 주거 급여는 반드시 대상자가 없어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도 **0번 응답**

②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일부만 받게 되었다 → **문 5-2) (문5-1)의 ②번 응답자만** 받게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아래 네모칸에 '√'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③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 **문 5-3) (문5-1)의 ②, ③번 응답자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혹은 일부만 수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 5-1)의 ②번 응답자는 응답 후 문 5-4)로 이동

* 문 5-1)의 ③번 응답자는 응답 후 문 6)로 이동

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② 자동차가 있어서

③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④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⑦ 잘 모르겠다.

문 5-4) (문5-1)의 ①, ②번 응답자 및 수급 경험자) 귀댁은 2021.10월~2022.6월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탈피한 급여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 문 5-5) 탈피한 급여는 무엇입니까? 해당 급여에 '√'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문 6) 귀댁은 2021.1월 ~ 2022.6월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받은 적이 있다 → **문7)로 갈 것**

② 받은 적이 없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문 설문 종료**

*유의사항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한 개라도 받은 경험이 있으면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V. 전기간(2021.1월~2022.6월) 포함

〈유의사항〉

※ 2021년 1월~2022년 6월까지의 기준으로 응답합니다(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급여를 받아왔던 가구 포함). 단, 급여신청을 2021년 10~12월에 하였고 선정은 2022년에 되었지만, 선정이 되면서 2021년 12월까지의 급여를 수급하여 한꺼번에 받았다면 2021년에 선정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중간에 탈락이 되었더라도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7월부터 8월까지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고 있다가 9월부터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를 추가적으로 받은 경우도 응답합니다. 다른 예로는 8월부터 10월까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모두 받고 있다가 12월에 생계급여만 못 받게 되었다면 받은 것으로 응답합니다.

2021.1월 ~ 2022.6월 동안의 기간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한 경험이 있는 가구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문 7) (문6)의 ①번 응답자만 귀책이 2021.1월~ 2022.6월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라도 받은 급여가 있다면**, 수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 각 급여별 응답후 의료급여 수급경험이 있는사람(문 7-1-2 응답자)은 문 7-1-5)로, 나머지 응답자는 문 7-2)로 갈 것

문 7-1-1) 생계급여 문 7-1-2) 의료급여 문 7-1-3) 주거급여 문 7-1-4) 교육급여

- ①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 ②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 ③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혹은 도움이 끊겨서)
- ④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 ⑤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 ⑥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 ⑦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 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 ⑨ 교육급여 대상 학령기 가구원 발생
- ⑩ 기타(적은 것 : _____)

문 7-1-5) (문 7-1-2 응답자만 응답) 귀하 및 귀댁의 가구원은 위 기간(2021년 1월~2022년 6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까?

- ① 예 (대상자 모두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 **문7-2)로 갈 것**
- ② 아니오(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문7-1-6)로 갈 것**

문 7-1-6) 귀하 및 귀댁의 가구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구원별로 최대 2인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번호		
응답		

- ① 평소 병원 진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어서
- ② 검진기관까지 이동이 어려워서
- ③ 검진 시 건강보험대상자와의 차별적인 대우
- ④ 생계 등으로 시간이 없어서
- ⑤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 때문에 입원 기간이 길어서
- ⑥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 ⑦ 검진 시설 이용이 불편해서
- ⑧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까봐
- ⑨ 향후(2022년 7월~2022년 12월) 받을 예정임
- ⑩ 기타(적은 것 : _____)

문 7-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적절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문 7-2-1) 생계급여	①	②	③	④	⑤
문 7-2-2) 의료급여	①	②	③	④	⑤
문 7-2-3) 주거급여	①	②	③	④	⑤
문 7-2-4) 교육급여	①	②	③	④	⑤

※ 유의사항 : 수급과 탈퇴를 반복한 경우 가장 최근에 받은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7-3)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2021.1월~2022.6월 사이에 받지 못하게 된 급여가 있다면, 각 급여별로 탈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7-3-1) 생계급여
 문 7-3-2) 의료급여
 문 7-3-3) 주거급여
 문 7-3-4) 교육급여

① 비해당(탈퇴한 급여가 없는 경우)
 ①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②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어서
 ③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④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⑤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⑥ 사망, 이혼, 분가 등 가구원수가 줄어들어서
 ⑦ 가족의 병이 나아서
 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⑨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져서
 ⑩ 학령기 가구원 졸업 등으로 인한 교육급여 대상 제외
 ⑪ 기타(적용 것 : _____)

문 7-4)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여러 지원 중, 귀댁이 **수급기구(생계급여)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받고 싶은 급여는 무엇입니까? (생계비를 제외하고 하나만 응답)

① 의료비 지원 ④ 자활관련 지원
 ② 교육비 지원 ⑤ 없다
 ③ 주거비 지원 ⑥ 기타(적용 것 : _____)

문 8) 2021.1월 ~ 2022.6월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 기간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2021년 1월 이전부터 수급한 기구의 경우, 첫 번째 인월은 2021년 1월로 기입해주시요.

구분	번	2021년				월	2022년				월	
		1	2	3	4		1	2	3	4		
1) 생계급여	첫 번째	2	0	2	년	월	~	2	0	2	년	월
	두 번째	2	0	2	년	월	~	2	0	2	년	월
	세 번째	2	0	2	년	월	~	2	0	2	년	월
2) 의료급여	첫 번째	2	0	2	년	월	~	2	0	2	년	월
	두 번째	2	0	2	년	월	~	2	0	2	년	월
	세 번째	2	0	2	년	월	~	2	0	2	년	월
3) 주거급여	첫 번째	2	0	2	년	월	~	2	0	2	년	월
	두 번째	2	0	2	년	월	~	2	0	2	년	월
	세 번째	2	0	2	년	월	~	2	0	2	년	월
4) 교육급여	첫 번째	2	0	2	년	월	~	2	0	2	년	월
	두 번째	2	0	2	년	월	~	2	0	2	년	월
	세 번째	2	0	2	년	월	~	2	0	2	년	월

장애인가구조사

※ 아래의 표의 내용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연번	가구번호	가구원 번호
0	3	

I. 장애인 가구원의 지출

※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대 3명까지 응답).

- ※ I. 가구일반사항, 문 6에서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 해당없음(비장애인), ㉡ 비등록장애인'이 아닐 경우
- ※ 장애인 본인이 응답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동 혹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만은 대리응답이 가능합니다.
- ※ 특별한 조사시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사시점은 2022년 조사일 현재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I-1. 일상생활

문 1) 귀하(장애인)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남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하나?

- ①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
- ②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다.
- ③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 ④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 ⑤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문 2) 귀하가 살고 있는 집에 지난 1년간(2021년 1월 1일-12월 31일) **장애로 인하여 거주하기에 불편한 곳**이 있(었)습니까?

(※있었으나 지난 1년 안에 수리한 곳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응답)

① 있(었)다 → 문 2-1)로 갈 것 ② 없(었)다 → I-2.소득 및 장애인 관련 서비스로 갈 것

문 2-1) (거주하기에 불편한 곳이 있다고 한 경우)

있(었)다면 어디입니까? **가장 시급한 곳**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화장실/욕실(욕실바닥, 세면대, 변기, 욕조, 샤워부스, 조명, 전기스위치, 초인종인저장치 등)
- ② 부엌구조(활동 공간, 높이, 바닥, 전기스위치, 조명 등)
- ③ 현관(턱, 폭, 유효 공간, 문, 손잡이, 잠금장치, 전기스위치, 조명 등)
- ④ 거실(전기스위치, 조명, 비디오폰 등)
- ⑤ 침실(전기스위치, 조명, 초인종인저장치 등)
- ⑥ 계단(단차, 손잡이 등)
- ⑦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 2-2) (문 2-1에서 응답한) 불편한 곳을 수리하는데 지출한(예상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 지난 1년 사이 이미 수리한 가구는 문 2-2-1), 수리가 필요한 가구는 문 2-2-2)에 기입
 ※ 해당하지 않는 곳은 공란

문 2-2-1) (지난 1년 간 수리한 곳) 지출한 수리비 만원

문 2-2-2) (수리가 필요한 곳) 예상되는 수리비 만원

문 2-3) 장애로 인하여 거주하기에 불편한 곳을 수리하는데 예상되는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이미 수리한 곳과 수리해야 할 곳 모두 포함) 만원

1-2. 소득 및 장애인 관련 서비스

문 1) **귀하(장애인)**의 지난 3개월간 총소득액은 1개월 평균으로 얼마나 됩니까?
 (지난 3개월: 2021년 10월-12월, 단, 사업소득과 농업소득의 경우 1년간의 월평균) 월평균 만원
 ※ 해당 장애인이 만15세 이상인 경우만 응답하며, **본인소득만 기입할**
 ※ 무급종사자일 경우 0원으로 기재

문 2) 귀하(장애인)는 현재 보장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있다 → **문 2-1)로 갈 것** ② 없다 → **문 3)로 갈 것**

문 2-1) 현재 가지고 있는 보장구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구체적으로 기입)

보장구 1	보장구 2

문 2-2) 현재 가지고 있는 보장구를 구입하는데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였습니까?**

보장구 1						만원
-------	--	--	--	--	--	----

보장구 2						만원
-------	--	--	--	--	--	----

문 2-3) 현재 가지고 있는 보장구는 새로 구입한 시점부터 얼마나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보장구 1	기간					개월
-------	----	--	--	--	--	----

보장구 2	기간					개월
-------	----	--	--	--	--	----

※ 보장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두 가지를 기록하고 각각의 금액 및 사용기간을 기입
 ※ 응답자 본인의 사용 목적을 위한 보장구에 대해서만 파악

문 3) 귀하(장애인)에게 현재는 없으나 필요한 보장구가 있습니까?
 (※ 현재 보장구는 있지만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야 하는 경우 포함)
 (※ 장애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필요한 보장구 포함)

① 있다 → **문 3-1)로 갈 것** ② 없다 → **문 4)로 갈 것**

문 3-1) 필요한 보장구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구체적으로 기입)

보장구 1	보장구 2

문 3-2) 필요한 보장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필요합니까?**

보장구 1						만원
-------	--	--	--	--	--	----

보장구 2						만원
-------	--	--	--	--	--	----

문 3-3) 필요한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얼마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보장구 1	기간					개월
-------	----	--	--	--	--	----

보장구 2	기간					개월
-------	----	--	--	--	--	----

문 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수급 받은 장애인만 응답)
 귀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월평균 몇 시간 받았습니까?
 월평균 시간

문4-1) 월평균 본인부담금은 얼마였습니까?
 만 천원

문 5) (재활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만 응답)
 귀하는 월평균 몇 회 재활서비스(바우처 포함)를 받았습니까?
 월평균 회

문5-1) 재활서비스(바우처 포함)를 이용할 경우 **1회당**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만 천원

문 6) 귀하(장애인)가 지출하는 다음 항목의 **비용은 얼마입니까?**
 ※ 반드시 장애인 개인이 쓰는 비용을 기입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아니라) 해당 비목에 지출하고 있는 실제 금액을 기입

지	출	항	목	현재 지출하고 있는 항목	현재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 (단위: 천원)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항목(미충족 항목)	못하고 있는 항목의 예상되는 월평균 비용 (단위: 천원)
문 6-1)			교통비(출퇴근)				
			(예: 일반버스, 일반택시, 지하철, 콜택시, 자가용, 렌드 등) ※자가용 개조비용 포함				
문 6-2)			합계				
			교통비 (출퇴근 제외한 기타용무)				
문 6-3)			(예: 일반버스, 일반택시, 지하철, 콜택시, 자가용, 시동형 목지버스, 구급차 등) ※자가용 개조비용 포함				
			합계				
문 6-4)			휴대폰 사용요금				
			※ 기기값을 제외한 요금 ※ 할인 전 금액 기입				
문 6-5)			합계				
			의료비				
문 6-6)			(예: 종합병원, 재활병 의원, 병 의원치과 포함, 보건소, 한방병·의원, 의원, 재활치료, 신장투석, 한약, 방, 약국에서의 약값) ※ 보장구 유지비 포함(구입비용은 문22에서 파악)				
			합계				
문 6-7)			교육비				
			(예: 특수학교, 베이비시터, 유아원, 어린이집, 놀이 방, 보습학원, 대학등록금, 컴퓨터 이용 비용 등) ※ 특수교육비 및 사교육비 포함				
문 6-8)			합계				
			보호·간병비				
문 6-9)			(예: 활동보조인을 제외한 유료가정봉사원, 간병인, 수발자 등)				
			합계				
문 6-10)			재활기관 이용료				
			(예: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활관련기관에서의 재활서비스 이용료 등)				
문 6-11)			기타				
			합계				

노인가구조사

※ 아래의 표의 내용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가구원 번호

I. 노인 가구원의 지출

※ 방문한 노인 가구 중 3번째(3, 6, 9, 12, 15...) 가구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에 노인이 두 분 이상 있는 경우, 생일이 빠른(생년이 아님) 한 분만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원 1인이 조사기간 동안 노인 가구를 16가구 방문하게 되었다면 5가구의 노인 5명을 조사하게 됨.)
 ※ 특별한 조사시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사시점은 2022년 조사일 현재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다음의 품목에 대한 필요여부, 보유여부 및 사용기간, 평균비용은 얼마입니까?

품목	필요여부	보유여부	사용기간(개월) (보유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응답)	사용량 (매일 품목 단위)	1개월 평균비용 (천원)	
	① 필수적임 ② 있으면 좋음 ③ 필요하지 않음	① 있음 ② 없음				
안경						
틀니						
지팡이(보조기 포함)						
보청기						
체온계						
보온병						
난로						
가습기						
전기장판(전기요)						
파카(외투)						
모자						
동내의						
목도리						
한복						
기타1 (적을것)						
기타2 (적을것)						

※ 틀니: 위와 아래 따로 한 개씩 사용하더라도 한 세트이므로 1개로 응답함, 1개월 평균비용은 위아래 틀니의 비용을 모두 기재함
 ※ 기타가 없을 경우, 공란으로 남겨 둘 것

문 2) 다음의 품목에 대한 필요여부, 이용여부 및 사용기간, 평균비용은 얼마입니까?

품목	필요여부	이용여부 (보유여부)	월 평균사용량 (이용횟수)	월평균비용 (천원)	
	① 필수적임 ② 있으면 좋음 ③ 필요하지 않음	① 있음 ② 없음			
택시비					
경로당 등 회비					
노인복지시설 이용					

※ 택시비: 인당 월 평균 1회 미만 이용인 경우 소수점으로 기재, 예를 들어 1년에 3번 이용한 경우 3/12=0.25임.

문 3) 다음의 보건의료비 품목에 대한 필요여부, 보유여부 및 사용기간, 평균비용은 얼마입니까?

품목	필요여부	보유여부 (이용여부)	사용기간 (개월)	월평균 사용량 또는 이용횟수 (해당 품목 단위)	월평균 비용 (천원)
	① 필수적임 ② 있으면 좋음 ③ 필요하지 않음	① 있음 ② 없음	(보유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응답)		
영양제					
심비약(우황참심원 등)			12개월		
건강보조식품					
고혈압 치료약					
관절염 치료약					
성인용 소변패드					
병의원 진료비			12개월		
약제비 (*위 의약품 제외)			12개월		
미충족 의료비			12개월		
기타1(적을것)					
기타2(적을것)					

* 심비약(우황참심원), 병의원 진료비, 약제비(위 의약품 제외), 미충족 의료비는 12개월 기준으로 월평균 비용을 기입하며,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고혈압 치료약, 관절염 치료약, 성인용 소변패드는 1년 중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월평균 비용을 기입함.
* 기타가 없을 경우, 공란으로 남겨 둠 것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관련 문항입니다.

문 4) 귀하는 지난 1년간 (2021년 1월1일~12월31일)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단,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① 있다 ② 없다

문 4-1) 귀하의 장기요양등급은 몇 등급입니까?

*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 공란으로 남기고 종료
* “면시지원등급”은 6등급으로 입력

등급

문 4-2)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한 달에 평균 몇 일 정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재가급여이용자 월평균 일

시설급여이용자 월평균 일

문 4-3) 1일 평균 몇 시간 정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재가급여이용자 1일평균 시간

시설급여이용자 1일평균 시간

문 4-4) 서비스 이용시 월평균 얼마를 지불하십니까?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료(월단위)를 말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되지 않음.

재가급여이용자 월평균 천원

시설급여이용자 월평균 천원

한부모가구조사

※ 아래의 표의 내용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가구원 번호

Ⅰ. 한부모 가구의 지출

- ※ 한부모 가구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구일반 조사 'I. 가구일반사항' 문 17) '가구형태'에서 '②모자'가구, '③부자'가구로 응답한 경우
- ※ 특별한 조사시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사시점은 2022년 조사일 현재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한부모 가구로서 다음 각 항목에 대한 필요여부와 현재 보유(이용)여부, 사용기간 및 사용량, 평균비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①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품목명을 직접 기입하고 응답해주세요.

필요 품목 (※ 기타인 경우 1-11번 품목명 기입후 응답)	필요 여부	보유 및 이용 여부	사용기간(개월)	월평균 사용량 (이용횟수) (해당 품목 단위)	월평균비용 (천원)
문 1-1) 외식 및 배달음식 (가공식품비, 반찬값, 저녁식사배달, 배달음식 등)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않다	① 있음 ② 없음	12 개월	회	천원
문 1-2) 안전장치(현관보조기)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않다	① 있음 ② 없음	지금까지 개월	/	구입비용 천원
문 1-3) 교육비 (사교육비, 학원비, 학습도우미 등)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않다	① 있음 ② 없음	12개월	/	천원
문 1-4) 통신비용 (핸드폰, 자녀스마트폰 요금지원 등)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않다	① 있음 ② 없음	12 개월	/	천원
문 1-5) 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비, 아이돌봄, 베이비시터 등)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않다	① 있음 ② 없음	개월	회	천원
문 1-6) 문화생활비 (문화강좌, 문화바우처, 도서대여 등)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않다	① 있음 ② 없음	12 개월	회	천원
문 1-7) 노트북(대블릿PC 포함)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않다	① 있음 ② 없음	지금까지 개월	/	구입비용(개월) 천원
문 1-8) 가사서비스 (청소도우미 등)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않다	① 있음 ② 없음	개월	회	천원
문 1-9) 심리상담 (심리상담, 자녀심리상담 등)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않다	① 있음 ② 없음	개월	회	천원
문 1-10) 교통운송비 (택시비, 자동차)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않다	① 있음 ② 없음	12 개월		천원
문 1-11) 기타()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않다	① 있음 ② 없음	개월		천원

4인 가구 심층조사

I. 식품비

1 지난 6개월(2021. 7. 1 ~ 2021. 12. 31) 동안 몇 번이나 가족단위 외식을 하였습니까? (※ 가족단위란, 비동거가구원제의 가구원전원임)

6개월 동안			번
--------	--	--	---

1-1 한 번 외식으로 평균 얼마 정도를 지출하십니까? (※ 교통비 등을 제외한 순수 식사비)

1회 평균			만		천원
-------	--	--	---	--	----

2 규칙적으로 밖에서 식사를 하는 가구원이 있습니까?
(※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경우와 초·중·고교생의 급식은 제외)

<input type="checkbox"/>

① 있다 ② 없다(→ II. 주거비)

2-1 규칙적으로 밖에서 식사(직장에서 점심 등)하는 가구원은 몇 명입니까?

		명
--	--	---

2-2 규칙적으로 밖에서 식사하는 가구원의 경우 한기당 평균 식사비는 얼마입니까?
(※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중심으로 대답)
(※ 정기적인 식사비용만을 포함하며, 회식비, 접대비, 술값 등은 제외)

한기 평균				천원
-------	--	--	--	----

II. 주거비

1 최근 3년간(2019. 1. 1 ~ 2021. 12. 31) 거주하였던 주택의 일상적인 수리를 몇 번 하였습니까?
(※ 전·월세의 경우 조사가구 본인(가구)이 돈을 내고 한 개보수만 포함, 주인집에서 해 준 것은 제외)
(※ 리모델링 제외. 단,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부엌, 화장실 등), 창호, 단열 등 에너지 효율을 위한 개선, 건축 마감재 개선, 전기 소방 관련 일상 수리 등은 포함)

3년간			번
-----	--	--	---

1-1 1회 평균 수리비용은 얼마였습니까?

1회 평균					만원
-------	--	--	--	--	----

2 최근 3년간 (2019. 1. 1 ~ 2021. 12. 31) 거주하였던 주택에 도배를 몇 번 하였습니까?
(※ 전·월세의 경우 조사가구 본인(가구)이 돈을 내고 한 도배만 포함, 주인집에서 해 준 것은 제외)

3년간			번
-----	--	--	---

2-1 1회 평균 도배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 장관비 제외)

1회 평균					만원
-------	--	--	--	--	----

3	귀덕은 지난 3년간(2019. 1. 1. ~ 2021. 12. 31)이사를 몇 번 하셨습니다? (※ 결혼으로 인한 이사 제외)	3년간		번
	3-1 지난번 이사할 때, 중개수수료는 얼마였습니까?	1회		만원
	3-2 지난번 이사할 때, 총 이사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 이사비용 : 복비를 제외한 화물차 비용, 콘도라 및 엘리베이터 사용료, 포장이사비용 / 운송 비용 포함)	1회		만원

III. 피복 및 신발

1	한 사람이 최소한의 문화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정장(신사복, 숙녀복) 수는 몇 벌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복 제외. 정장 한 벌은 상의 하나와 하의 하나의 세트임. 선물받은 것 포함) ① 정장 한 벌 ② 정장 두 벌(춘추복, 동복) ③ 정장 세 벌(춘추복, 하복, 동복) ④ 네 벌 이상	<input style="width: 40px; height: 20px;" type="text"/>
---	--	---

2	지난 3년간(2019. 1. 1 ~ 2021. 12. 31) 구입한 정장은 몇 벌입니까? (※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본인만 기재. 한복 제외. 정장 한 벌은 상의 하나와 하의 하나의 세트임. কম피정장의 경우도 한 벌로 포함. 선물받은 것 포함)	
	2-1 지난 3년간 가장이 구입한 정장 벌 수	3년간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벌
	2-2 지난 3년간 배우자가 구입한 정장 벌 수 (※ 배우자가 없는 경우 공란)	3년간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벌

3	지난 1년간(2021. 1. 1~2021. 12. 31) 아래의 피복 및 신발서비스를 이용한 횟수는 몇 회입니까? (※ 가구원 전체. 한복 제외. 정장 한 벌은 상의 하나와 하의 하나의 세트임)	
	3-1 세탁서비스(정장 드라이클리닝)	1년간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번
	3-2 의복수선	1년간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번
	3-3 구두수선	1년간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번

IV. 의료비

1 지난 1년간(2021.1.1~2021.12.31) 가족 중 입원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 단, 지난 1년간 입원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포함. 2021년에 입원은 했지만, 입원비 지출이 2021년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미용성형을 위한 입원은 제외, 출산 및 건강검진을 위한 입원은 포함)

① 있다(1번으로) ② 없다(2번으로)

1-1 있었다면 1년간 **본인이 부담한** 입원 총 진료비를 아래에 기술하여 주십시오.
 (※ 수술비·입원비·본인부담 식대 등 포함)
 (※ 병원비 영수증에서 **본인부담액**만 기입함(건강보험에서 지불한 금액은 제외))
 (※ 민간보험(실비, 상해, 암보험 등) 수령액과 상관없이 병원에서 청구한 실제 금액을 기입함)

가구원 번호	단위	병의원에 지불한 총 입원진료비					
1	1년 합계					만	천원
2	1년 합계					만	천원
3	1년 합계					만	천원
4	1년 합계					만	천원

2 지난 3개월간(2021.10.01~2021.12.31) 가족 중 통원진료(병의원(치과 포함), 한방병원, 물리치료, 예방접종 등 포함)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 미용을 위한 성형외과 및 피부과,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은 제외)

① 있다(2-1번으로) ② 없다(3번으로)

2-1 있었다면 3개월 동안의 총 치료비·약값·교통비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 병의원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약값을 적는다. **처방전 없이 구입한 경우 문외 기입**한다.
 ※ 총치료비와 약값: 병원비 영수증에서 **본인부담액**만 기입함(건강보험에서 지불한 금액은 제외)
 ※ 교통비: 왕복교통비를 적는다. 자가용의 경우, 택시요금에 준해서 적는다

가구원번호	단위	병의원에 지불한 치료비		약국에 지불한 약값			교통비		
1	3개월합계			만	천원			만	천원
2	3개월합계			만	천원			만	천원
3	3개월합계			만	천원			만	천원
4	3개월합계			만	천원			만	천원

3 귀댁 가구원 중에서 지난 3개월간(2021.10.01~2021.12.31) 약국과 한약방에서 병·의원 처방전 없이 질병 및 상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한·의약품을 구입하셨다면 그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 약국, 한약방, 편의점 등)
 (※ 건강기능식품 제외)

3개월 합계				만	천원
--------	--	--	--	---	----

4 지난 1년 간(2021.1.1~2021.12.31) 아팠는데도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4-1번으로) ② 없다(→5번으로)

4-1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개 선택) 1순위 2순위

- | | |
|------------------|------------------------------|
| ① 증세경미 | ⑥ 일을 중단하면 수입(소득)이 줄기 때문에 |
| ②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 ⑦ 식구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서 |
| ③ 시간이 없어서 | ⑧ 치료해도 나올 것 같지 않아서 |
| ④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멀어서 | ⑨ 기타() |
| ⑤ 치료예정 | |

5 귀댁의 가구원 중 안경,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거나 시력교정수술(라식 및 라섹수술 등)을 받은 사람은 총 몇 명입니까? (* 선글라스 및 돋보기는 제외) 명

5-1 그 중 (콘택트렌즈 등 다른 시력교정기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안경만 착용하는 가구원은 몇 명입니까? 명

5-2 안경만 착용하는 가구원의 경우, 평균 몇 개월에 한번 안경을 구입하십니까? (* 렌즈만 교환은 제외, 세트 구입하였을 때임) 년 개월

5-3 가구원 중 지난 1년간(2021.1.1~2021.12.31) 안경을 구입한 가구원이 있다면, 안경 1개의 평균 구입비용은 얼마입니까? (※ 2021년 구입 없는 경우 공란임) 1개평균 만 천원

V. 교육비

※ 교육비 관련 문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각각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1 귀댁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교육기관**을 응답해 주십시오.
 자녀 1인당 **한 학기(2021학년도 2학기)** 동안 **학비, 교재비**(참고서 및 문제집·교과관련 학원교재 포함, 예제 능학원 교재 제외), **학용품비**를 적어 주십시오.
 ※ 단, 반드시 다니고 있는 교육기관과 관련된 비용은 기입. 교내 특기적성교육을 포함하나, 비정기적인 비용은 제외
 ※ 해당교육 기관에 다니는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큰 자녀기준으로 응답, 지원 이전금액 기준

구분	교육 기관 ¹⁾	학비 ²⁾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참고서 (전과/자습서)			문제집			학용품비		
초등학생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중학생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고등학생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주: 1) ①교육기관 보내지 않음 / ①국·공립 초등학교 ②사립 초등학교 / ③국·공립 중학교 ④사립 중학교 / ⑤국·공립 고등학교 ⑥사립 고등학교 / ⑦특수학교 / ⑧ 각종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포함)
 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의무교육이므로 일반적으로 학비는 0입(사립학교, 자사고 재학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학비 본인부담)

2 위 해당교육기관에 다니는 귀 자녀의 **한 학기(2021학년도 2학기)** 동안 **방과후학교 및 동아리 활동 참여 비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 교육청 등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현금으로 환산하여 기재

구분	방과후학교/보충학습비 (정규 수업료 이외)						학교동아리 활동 참가비 1인당 월 비용			
	수강여부 ①미수강 ②수강		수강료 1인당 월 비용		재료비 1인당 월 비용					
초등학생	①	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중학생	①	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고등학생	①	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3 위 해당교육기관에 다니는 귀 자녀의 **한 학기(2021학년도 2학기)** 동안 **급식 실시여부 및 1인당 월평균 급식비**를 응답해 주십시오.
 ※ 지자체 단위로 학교 전체가 무상급식이면서 급식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본인부담은 0입

구분	귀 자녀의 급식 실시여부				귀 자녀의 무상 급식 실시여부				1인당 월평균 급식비		
	①미실시 ②저녁만 급식	③점심만 급식	④점심과 저녁 모두 급식	⑤미실시	⑥저녁만 무상급식	⑦점심만 무상급식	⑧점심과 저녁 모두 무상급식	본인부담			
초등학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천원	천원	천원
중학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천원	천원	천원
고등학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천원	천원	천원

- 4 위 해당교육기관에 다니는 귀 자녀의 **수학여행 및 수련회비**를 응답해 주십시오.
 * 대상 학년이 아닌 경우, 재학 학교 기준으로 기재
 * 교육청 등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현금으로 환산하여 기재
 *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진 경우 국내기준

구분	수학여행				수련회·현장체험학습비			
	횟수	1인당 1회 비용		횟수	1인당 1회 비용			
초등학생(6년간)	회		천원	회		천원		
중학생(3년간)	회		천원	회		천원		
고등학생(3년간)	회		천원	회		천원		

- 5 위 해당교육기관에 다니는 귀 자녀의 **교복비, 교통비, 기숙사비**를 응답해 주십시오.
 * 대상 학년이 아닌 경우, 재학 학교 기준으로 기재
 * 교육청 등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현금으로 환산하여 기재

구분	교복비 (체육복 포함)		교통비		기숙사비	
초등학생		천원		천원		천원
중학생		천원		천원		천원
고등학생		천원		천원		천원

- 6 위 해당교육기관에 다니는 귀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기기 구입 비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 대상 학년이 아닌 경우, 재학 학교 기준으로 기재
 * 교육청 등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현금으로 환산하여 기재

구분	PC (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아이패드 등)	
초등학생		천원		천원		천원
중학생		천원		천원		천원
고등학생		천원		천원		천원

- 7 사교육 유형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현황 (* 한 학기(2021학년도 2학기) 기준, 수강 강좌수는 모두 기입)

(1) 초등학생 자녀

사교육 유형	귀하가 생각하기에...			우리 가구의 자녀는...			다니(받고 있다면) 다니 기간의 월평균비용은?		
	① 꼭 필요하다	② 다니(하면) 좋다	③ 필요 없다	① 다니(받고) 있다	② 다니(받지) 않는다	수강 자녀수	수강 강좌수	월평균 비용 합계= 수강자녀수*수강강좌수*강좌금액	
일반 교과목 및 논술	학원수강	①	②	③	①	②			천원
	방문학습지 ¹⁾	①	②	③	①	②			천원
	개인 및 그룹과의	①	②	③	①	②			천원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기타 ²⁾	①	②	③	①	②			천원
예체능 및 기타(취미, 교양 등)	①	②	③	①	②			천원	

주: 1) 방문학습지는 방문교사가 교재를 가지고 와서 교육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문제집을 구입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경우 제외
 2) 유료 인터넷 및 통신강좌, 기타는 평생교육원, 주민자치단체, 언론기관, 백화점 등 문화센터에서 수강하는 경우를 포함함

(2) 중학생 자녀

사교육 유형	귀하가 생각하기에...			우리 가구의 자녀는...		다녀(받)고 있다면 다닌 기간의 월평균비용은?				
	①꼭 필요하다	②다녀(하면) 좋다	③필요 없다	①다녀(받)고 있다	②다녀(받)지 않는다	수강 자녀수	수강 강좌수	월평균 비용 합계= 수강자녀수*수강강좌수*강좌금액		
일반 교과 과목 및 논술	학원수강	①	②	③	①	②				천원
	방문학습지 ^{*)}	①	②	③	①	②				천원
	개인 및 그룹과외	①	②	③	①	②				천원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기타 ^{*)}	①	②	③	①	②				천원
	예체능 및 기타(취미, 교양 등)	①	②	③	①	②				천원

(3) 고등학생 자녀

사교육 유형	귀하가 생각하기에...			우리 가구의 자녀는...		다녀(받)고 있다면 다닌 기간의 월평균비용은?				
	①꼭 필요하다	②다녀(하면) 좋다	③필요 없다	①다녀(받)고 있다	②다녀(받)지 않는다	수강 자녀수	수강 강좌수	월평균 비용 합계= 수강자녀수*수강강좌수*강좌금액		
일반 교과 과목 및 논술	학원수강	①	②	③	①	②				천원
	방문학습지 ^{*)}	①	②	③	①	②				천원
	개인 및 그룹과외	①	②	③	①	②				천원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기타 ^{*)}	①	②	③	①	②				천원
	예체능 및 기타(취미, 교양 등)	①	②	③	①	②				천원

8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 자녀에게 들어가는 최소한의 교육비 는 한 학기(2021학년도 2학기)에 얼마입니까? ※ 해당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 ※ 2명 이상일 경우 평균금액임 ※ 사교육비 포함	구 분	최소한 필요한 지출 수준		
		초등학생			만원
		중학생			만원
		고등학생			만원
9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 자녀에게 들어가는 적정한 교육비 는 한 학기(2021학년도 2학기)에 얼마입니까? ※ 해당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 ※ 2명 이상일 경우 평균금액임 ※ 사교육비 포함	구 분	적정 지출 수준		
		초등학생			만원
		중학생			만원
		고등학생			만원

VI. 교양오락비

1 지난 1년간(2021.1.1.~2021.12.31.) 교양오락활동의 유형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이용 경험

항 목	1-1. 귀하가 생각하기에			1-2. 가구단위 혹은 가구원의 연간 이용 횟수			단위
	①꼭 필요하다 ③필요 없다	②이용하면 좋다		* 없으면 0기재			
생일 등 기념일용 선물 구입 (* 등기 및 비등기인 포함)	①	②	③				회
가족여행 및 관광	①	②	③				회
영화관람	성인	①	②	③			회
	이동	①	②	③			회
공연관람	성인	①	②	③			회
(* 뮤지컬, 음악, 연극 등)	이동	①	②	③			회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참여	성인	①	②	③			회
(* 문화예술, 인문교양 등)	이동	①	②	③			회
스포츠시설이용	성인	①	②	③			회
(* 헬스, 수영 등)	이동	①	②	③			회
스포츠관람	성인	①	②	③			회
(* 야구, 축구, 농구 등)	이동	①	②	③			회

2 지난 1년간(2021.1.1.~2021.12.31.) 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OTT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이용 경험

항 목	1-1. 귀하가 생각하기에			1-2. 가구단위의 연간 보유 현황			
	①꼭 필요하다 ③필요 없다	②이용하면 좋다		수신여부	①수신	②미수신	
유선(케이블 포함) 및 위성방송	①	②	③	유선방송비 (* 2가지 이상 시청시 월합계(부가세포함)금액)			천원
OTT(Over-The-Top) 서비스 (넷플릭스, 유튜브, 티빙, 왓차, WAVE, Sezn, 디즈니플러스 등)	①	②	③	사용 여부	①사용	②미사용	천원
				사용요금 (* 2가지 이상 사용시 월합계(부가세포함)금액)			

VII. 통신비

*** 지난 1년간(2021.1.1.~2021.12.31.)의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바랍니다.**

1	귀 가구는 유선전화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① 소유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 소유하고 있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2	귀 가구 가구원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1대당 평균사용연수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개월
3	귀 가구 가구원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제외한 휴대폰의 1대당 평균사용연수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개월

1인가구 심층조사

문 2) 귀하는 언제부터 혼자 생활하셨습니다? 년도 월부터

귀하는 혼자 생활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점 때문에 곤란하거나 힘들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경제적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2) 여가, 문화, 체육 활동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3)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4) 식생활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5)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①	②	③	④	⑤
6) 집안일(청소, 빨래, 우편물·택배 받기, 전등 교체 등)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7) 혼자 살아가는 고독감이나 외로움	①	②	③	④	⑤
8)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주위 시선이나 편견	①	②	③	④	⑤
9) 정부 정책·제도로부터의 소외나 불이익(청약, 세금 등)	①	②	③	④	⑤
10) 기타()	①	②	③	④	⑤

문 3) 다음은 1인 가구에 필요한 정책입니다. 귀하는 각 분야별 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주거	보증금, 월세 등 주거비 보조	①	②	③	④	⑤
	주택 관련 대출 및 이자 지원	①	②	③	④	⑤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 요건 개선	①	②	③	④	⑤
	자가 소유 지원(공공분양, 민간분양 특별공급 등)	①	②	③	④	⑤
	주택 개량 및 개보수 지원	①	②	③	④	⑤
주거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주거복지, 임대차계약, 정책 등)	①	②	③	④	⑤	
2) 건강	건강 관리, 의료 지원	①	②	③	④	⑤
	균형 잡힌 식생활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사회 관계망	사회관계망 형성	①	②	③	④	⑤
	문화·여가 지원	①	②	③	④	⑤
	마음 검진·상담	①	②	③	④	⑤
	고립·고독 방지	①	②	③	④	⑤
4) 경제	일자리 제공	①	②	③	④	⑤
	취·창업 상담 및 교육	①	②	③	④	⑤
	생계비 지원(복지 수당 또는 급여 등)	①	②	③	④	⑤
5) 안전	치안, 방범 등 안전 지원	①	②	③	④	⑤

문 4) 귀하는 위의 5개 정책 분야 중 1인 가구에 가장 필요한 분야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거 ② 건강 ③ 사회관계망 ④ 경제 ⑤ 안전

[부록 4] 스페인 복지 제도의 전개과정¹⁹³⁾

1. 개요

스페인을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의 복지 체계는 포괄적이고 관대한 북유럽 국가와 달리 다소 제한적이고 가족 중심의 접근을 하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하며, 특히 빈곤 퇴치 및 사회 지원 체계는 1980년대 후반까지는 발달이 미약한 수준이었다. 가족 지원 및 비공식적 돌봄 네트워크를 더 강조하였고, 가족은 특히 실업이나 질병과 같은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개인을 위한 복지와 지원의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된다. 포괄적인 국가 차원의 최저소득보장제도의 부재 또는 미약한 수준 역시 남유럽 복지 국가에서 두드러지는 차이점이다(Ferrera, 1996). 북유럽에 비해 덜 엄격한 노동 시장 규제 및 고용 보호는 직업 불안정과 임시직 고용을 상승시켜서 노동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연금 개혁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연금 제도의 미래 적합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스페인의 복지 제도 전개과정을 정치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193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까지 대략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프랑코 독재 정권(1939-75) 시기의 가부장적(paternalism) 최소한의 사회복지 체계는 민주주의로의 전환 이후 발달하게 되지만, 자치주에 많은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분권화에 따라 지역 단위로 분산되고 파편화 되어 전개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 보호 체계의 미비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스페인 사회복지 제도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로 인한 복지 체계의 파편화 및 단편화, 지역별로 다른 자금 조달 수준 및 기준 적용에 따른 불평등한 접근, 제한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 및 수평 조정 메커니즘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OECD 2022). 국가 단위의 최소한의 기준을 규제하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2020년 스페인 최초의 전국 단위의 최저소득보장 급여(Ingreso Mínimo Vital)가 도입되어 시행착오를 거쳐 운영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2000년대까지의 복지제도 전개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스페인의 빈곤과 불평등 심화와 IMV 도입 배경

193) 본고의 '1. 개요' 및 '2. 1930년대 후반~2000년대까지의 스페인 복지제도의 전개 과정'은 Arriba and Moreno(2005), Ferrera(2005, 1996), Moreno(2001)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은 뒤에 별도의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2. 1930년대 후반~2000년대 까지의 스페인 복지제도의 전개 과정

가. 1939-1967: 자율주의와 '개발주의(desarrollismo)'의 번성

프랑코 독재 시기의 사회 복지 제도는 기여식 프로그램 위주의 매우 빈약한 체계였다. 실업의 보상은 제한되고, 현금성 복지 수혜는 결여되었으며, 사회 서비스는 정책적으로 분산되고 충분한 수준으로 제공되지 못하였으며, 자선 및 가족 중심 접근 방식이 우세하고 사회적 질서 유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많은 국가 보조금을 받으며 중요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가족(특히 여성의 돌봄 활동) 또한 중요한 보조적 역할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프랑코 독재 시기의 전반부에는 사회정책은 크게 간과되었으며 주로 자선과 자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노동자는 경제 생산의 단위로 간주되어 뜻밖의 위험에 대비한 사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었으나 사회 보호는 남성 가장 가족만을 고려하였다. 프랑코 정부가 1938년에 시행한 헌법적 노동법인 'Fuero del Trabajo' (직장 밖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것을 포함하였는데 여성들을 공장에서 가정으로 '귀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점이 특징적이다.

유급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공공 개입은 가부장식(paternalistic)이었으며 자선적 성격으로 제공되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 분야에서 매우 한정적이었으며 지방 행정(주로 자치주지사 협회 또는 Diputaciones)에 통합되어 있었고 중앙 정부의 내무부의 조직적 책임 하에 운영되었다. 혜택은 공공 복권과 게임의 이윤의 일부로 구성된 사회-자선보호 기금(Fondo de Protección Benéfico-Social)에 의해 분배되었으며 또한 사적 기부도 받았다. 공공 차원의 빈곤 완화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적 단체들이 빈곤 완화를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와 관련된 단체들과 적십자사, 그리고 준 공공 저축은행의 재단들이 이러한 노력에 기여하였다.

국립사회예비소(Instituto Nacional de Previsión Social)에서 사회 보험 관련 업무를 주관하였는데 기존의 다양한 혜택과 보조금을 통합하여 1938년과 1942년에 가

족 보조금(Subsidio Familiar), Plus Familiar 와 같은 프로그램도 도입하였다. 1939년에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연금 보조금이 도입되었고 이는 1947년에 SOVI (노년 및 장애 의무보험, Seguro Obligatorio de Vejez e Invalidez)로 전환되었다. 1942년에는 병가보험(SOE, Seguro Obligatorio de Enfermedad)도 시행되었지만, 청구인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한정된 기간만을 보장하여 노동자가 가능한 빨리 다시 일에 복귀하도록 암묵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프랑코 독재의 후반부는 1959년의 안정화 계획(Stabilization Plan)을 시작으로 경제적 발전주의인 'desarrollismo'로 특징지어진다. 이 경제 정책은 스페인 경제의 점진적 자유화의 전환점이 되었는데, 1958년의 단체협약법이 제정(노동부 규제 없이 사업장 단위에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을 협상할 수 있게 됨) 이나 1963년 최저임금 법적 정착과 같은 일부 조치들은 지도주의(dirigiste)적인 성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1960년대에 사회 지출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1960년 총 공공 지출의 35.5%에서 1970년 55.9%로 증가) 이는 GDP의 겨우 3% 수준이었고 사회적 지원은 여전히 사회 보호 체계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며 소득 유지에 기여하는 기여식 프로그램이 주요 우선 순위였다. 1963년에 발표된 사회보장 기본법(Ley de Bases de la Seguridad Social)은 1967년에야 실제 시행되었으며, 이 법은 보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극적인 재정개혁과 함께 진행되었다.

나. 1968-1978: 후기 프랑코주의와 민주주의로의 전환

프랑코 시대 말기의 공공 부조는 공공 자금 부족, 제한된 수준의 사회적 보호, 일부 민간 또는 비영리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특징이다. 소수의 사회 서비스 공급은 다양한 공공 기관과 민간 기관에서 제공되었다. 프랑코 이후 첫 민주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총국(Dirección General de Acción Social y Servicios Sociales)¹⁹⁴을 설립하여 이전에 주로 내무부에서 담당했던 사회 지원 서비스 업무를 주관하기 시작하였다. 이 총국에서는 비기여식 시스템 내에서 노령자 및 장애인 연금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조 기금(Fondo de Asistencia Social)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

194) 1977년에 보건사회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 산하로 설립되었다.

영하였는데 이는 당시 사회 지원의 주요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기여식 사회 보험 시스템 내에서는 유급근로자와 부양가족을 위한 서비스도 있었는데, 이는 노령자와 장애인 대상 사회 지원과 통합되어 사회서비스 연구소(INSERSO - Instituto de Servicios Sociales)로 조직을 개편하여 운영하였다. INSERSO는 크게 노동부의 관할 범위 내에서 준 자치적인 공공 기관으로 운영되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는 프랑코 독재에 대한 반대 운동이 매우 활발하였고, 1975년 11월 프랑코 사망 후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정치적, 사회적 동요를 수반하였다. 1972년에는 사회보장 개혁인 자금 조달 및 개선법(Ley de Financiación y Perfeccionamiento)이 시행되어 일시적인 노동 무능력, 실업 및 노년 연금에 관한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였다. 노동자의 기여와 실질 소득을 연결하여 기여식 체계 내에서 혜택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중산층과 대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커서 기여식 체계 내의 내부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1970년에 일반 교육법(Ley General de Educación)이 시행되고, 1974년에는 일반 사회보장법(Ley General de la Seguridad Social)이 시행되면서 공공 지출 수준은 상당히 상승하였는데, 1970년대 이후 주요 사회 지출은 연금 및 실업 수당에 할당되었다. 또한 1974년부터 1976년까지 상당한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사회적 합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데 기여하였다. 민주주의로의 전환기에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다시 증가하였고 이는 사회복지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동원과 결합되어 새로운 사회 서비스 제공의 틀을 발전시켰다.

다. 1978-1987: 지역 단위의 사회 서비스 체계 구축

스페인 민주화 이후 십년간은 자치주 단위의 사회 서비스 체계가 활발히 도입된 시기이다. 자치주의로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시민에게 차별 없이 보편적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단위 입법이 이루어 졌으며 전반적인 사회 서비스의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민간 부문과의 효과적인 협조도 적극 추진되어 비영리단체는 사회서비스 전반에 편입되었고, 이들 중 다수는 지방공공단체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자치주 단위로 사회 서비스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분산되고 파편화된 시스템의 문제점도 인식되어 중앙 정부 단위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시도되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는 못하였다¹⁹⁵⁾.

스페인 1978년 카르타 마그나(Carta Magna, 헌법)를 제정하여¹⁹⁶⁾ 프랑코 독재 정권에서 입헌군주제 및 의회 민주주의로의 전환하였는데 이는 스페인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꼽힌다. 카르타 마그나는 스페인 시민들의 기본 원칙과 권리, 정부의 구조와 기능, 다양한 정부 부서 간의 권력 분배, 그리고 중앙 정부와 스페인 자치 지역 간의 권한 배분을 기술하고 있다. 카르타 마그나에 따르면, 사회 지원은 17개 자치주(Comunidades Autónomas)의 '독점적 권한'으로 지정되어 있다(148조; 1.20항¹⁹⁷⁾). 사회보장제도의 기본법과 경제체제에 관한 권한은 중앙정부의 영역에 속해 있으나 자치주는 그들에게 분권화 될 수 있는 기여식 프로그램의 실행 및 관리에 대한 실행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제149조; 1.17항¹⁹⁸⁾). 헌법 조항은 비기여식 공공 부조 및 사회 서비스의 영역을 정의하거나 규제하지 않았고, 중앙 정부의 '독점적 권한'으로 나열되지 않은 모든 권한과 책임은 자치주가 요청하고 행사할 수 있다(149조 3항¹⁹⁹⁾).

이와 같은 유연한 헌법 조항에 따라 모든 자치주는 자치 법령(지역 헌법)에서 사회 지원, 사회 서비스, 지역 사회 개발, 사회 증진 및 일반적으로 복지 정책과 관련된 많은 서비스 및 기능을 주장하였고, 중간 정부의 관할권 밖에 남아 있는 유일한 사회 서비스는 INSERSO의 서비스였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INSERSO 사회 서비스 운영에 대한 집행 권한도 1990년대에 Comunidades Autonomas로 이전되었다. 1982년부터 1993년까지 자치주 단위의 사회 복지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었는데, 통합적인 사회 서

195) 사회당(Partido Socialista Obrero Español, PSOE) 정부는 1983-84 기간 동안 기여식 사회 보장 내의 분산된 사회 서비스들을 하나의 중앙관리 기구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사회서비스법을 실효적으로 제정하려고 시도하였다.

196) 1978년 12월 6일에 국민투표로 승인되었으며, 1978년 12월 29일에 발효되었다. 전문 참조: <https://www.boe.es/legislacion/documentos/ConstitucionCASTELLANO.pdf>

197) 1. Las Comunidades Autónomas podrán asumir competencias en las siguientes materias: 20. Asistencia social.

198) 1. El Estado tiene competencia exclusiva sobre las siguientes materias: 17. Legislación básica y régimen económico de la Seguridad Social, sin perjuicio de la ejecución de sus servicios por las Comunidades Autónomas.

199) 3. Las materias no atribuidas expresamente al Estado por esta Constitución podrán corresponder a las Comunidades Autónomas, en virtud de sus respectivos Estatutos. La competencia sobre las materias que no se hayan asumido por los Estatutos de Autonomía corresponderá al Estado, cuyas normas prevalecerán, en caso de conflicto, sobre las de las Comunidades Autónomas en todo lo que no esté atribuido a la exclusiva competencia de éstas. El derecho estatal será, en todo caso, supletorio del derecho de las Comunidades Autónomas.

비스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치주 의회에서 채택한 입법의 공통 요소는 분산 원칙이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가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법, 계획 및 민간 부문과의 조정 권한은 지역 행정부와 의회에 귀속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치주와 중앙 정부 간 갈등이 없지는 않았기에, 헌법재판소는 1986년(STC²⁰⁰) 146/1986) 자치주의 독점적 권한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가 모든 지역 자치 단체에 대해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요 입법 활동으로 중앙 정부가 1982년 제정한 장애인 사회 통합법(Ley de Integración Social de los Minusválidos)을 꼽을 수 있는데 이 법을 통해 65% 이상의 장애를 가진 시민들에게 복지 급여를 보장하게 되었다.

1982년부터 1996년 까지 집권한 사회당(Partido Socialista Obrero Español, PSOE) 정부는 경제 현대화와 복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경제 현대화 정책은 조선업과 철강 같은 생산성 낮은 산업의 구조조정과 시장개방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회복지 등 다른 분야에의 공공 지출은 제한되었다. 1988년이 되어서야 사회 부문 지출 증가와 주요 사회 서비스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부 (Ministerio de Asuntos Sociales)가 신설되고 자치주 정부와의 협력과 조율을 통해서 노년, 약물 중독, 동등한 기회 제공, 청년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계획을 개발하려고도 시도하였으나 입법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1987년에는 3개 층위의 정부²⁰¹) 간의 중요한 합의가 '지방 당국에 의한 사회 서비스의 기본 제공 개발을 위한 공동 계획'(Plan Concertado para el Desarrollo de Prestaciones Básicas de Servicios Sociales de las Corporaciones Locales)의 승인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 정부 간 협약의 목표는 지방 주민들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a) 정보 및 상담; (b)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및 일일 돌봄 서비스; (c) 학대받는 여성, 미혼모, 고아 또는 학대받는 미성년자를 위한 피난처 및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 시설; (d) 예방 및 사회적 포용. 이 협약은 스페인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기초적인 수준을 형성하며, 바스크 지방을 제외한 모든 자치주의 지원을 받았다.

스페인은 1986년에 유럽경제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에

200) Sentencia del Tribunal Constitucional, 헌법재판소 판결

201) 중앙 정부 Gobierno Central, 자치주 Comunidades Autónomas, 지방자치단체 Municipios

가입하고 1987년에는 빈곤 퇴치를 위한 유럽공동체 프로그램(EEC II Program of Fight Against Poverty)에도 가입하였다. 이 후 다른 유럽 국가들의 상황과 비교가 이루어지면서 빈곤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제도적 차원과 연구 등의 인지적 영역에서 증가하였다.

라. 1988-2000: 복지 프로그램의 확장 및 통합

이 기간 동안 사회 지원과 비기여식 급여 체계에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주로 17개의 자치주에 권력을 이양하면서 가능해졌다. 스페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에 있어 이들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1990년대에 자치주들은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최저 소득 프로그램인 "Rentas Mínimas de Inserción (RMI, 사회통합 최소 소득)"을 도입하였는데, 1989년 바스크 지방에서 최초로 도입 된 후 1995년 발레아레스 제도에서 마지막으로 실행되기까지 스페인 지역에서 정교화되어 구현되었다(Soler-Buades et al. 2022). 이는 저소득 가정들에게 보장되는 최저 소득 프로그램으로, 수혜 가정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RMI는 사회 보호 체계의 공백을 메우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90년대 후반의 개혁은 주요 의회 정당 및 사회 단체 (특히 노동조합)의 동의에 기반하여, 주로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되었다.

중앙 정부 차원의 주요 개혁으로 노년 및 장애 연금을 보편화하였는데, 이와 같은 연금은 스페인의 사회 안전망을 형성하는 기본 구성 요소가 되었다. 1990년, 사회보장의 비기여식 연금 법령 (Ley 26/1990, de 20 de diciembre, por la que se establecen en la Seguridad Social prestaciones no contributivas)에 따라 사회보장 체계에 소속되지 않은 노년 및 장애 시민들을 위한 자산심사 조건부 연금 지급이 1994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급여의 재원은 처음에는 비기여식 사회보장 체계에 의해 충당되었지만, 후에 톨레도 협약(Pacto de Toledo)에서 사회 파트너들로부터 국가 일반 수입에서 비기여식 연금의 비용을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26/1990 법령은 또한 기여식 및 비기여식 체계에서 공통적으로 18세 미만과 장애자를 위한 저소득 가정에도 조건부 혜택을 수여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스페인 사회 보장 제도의 구조적인 개혁을 위해 1995년 4월 6일에 의회에서 승인된 툴레도 협약²⁰²⁾은 주요한 공적 연금 개혁 수단으로서 일련의 선언적 원칙과 권고 사항을 승인하는 의회 위원회이며, 개혁 과정에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 절차 및 정부, 노동조합 및 비즈니스 조직 간의 사회적 대화를 보장하여 일방적인 규제 변경에²⁰³⁾ 반대되는 연금 개혁의 합법성과 합의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Colás-Neila, 2018). 총 22개의 권고안 중 특히 중요한 항목은 첫 번째로 기여식 사회 보험과 비기여식 급여 간의 재원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는데, 보편적인 성격의 복지 급여와 사회 서비스 및 지원 보조금(연금 보완금, 비기여식 연금 및 양육 아동에 대한 현금 지원)은 일반 세수로 조달하고, 기여식 급여는 사업주와 종업원의 사회 보험 기여로 충당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기여식 및 비기여식 연금 모두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 시장 참여 활성화와 사회 서비스에 의한 사회 통합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노동 시장에 잠재적으로 진입 가능한 복지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활성화되어 왔다. 주로 복지 급여 및 실업 수당에 다소 제한적인 기준(이전의 기여 조건 및 수혜 기간 등)을 적용하고 RMI에 사회통합을 포함하는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 졌다. 또한 이러한 일자리 창출 및 개발은 실업 수당뿐만 아니라 노동자 지원금에도 확대 적용하였는데 노동시장 편입을 위한 능동 소득, 농업 및 일반 실업 수당의 요건, 또는 유연한 은퇴를 위한 제도 등이 그 예이다. 노동 시장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인구 집단의 활성화에도 고려되고 있다.

3. 스페인의 빈곤관련 현안과 정책 동향

스페인 중앙 정부는 빈곤 퇴치 및 소득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2019-2023년 사회적 배제와 빈곤 예방을 위한 국가 전략(Estrategia Nacional de Prevención y Lucha

202) 정식 명칭은 'Ponencia para el Análisis de los Problemas Estructurales del Sistema de la Seguridad Social y de las Principales Reformas que deberán acometerse(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주요 개혁 분석 제안에 관한 보고서)' 이다.

203) 이에 따라 4건의 협정 법안(1996년, 2001년, 2006년, 2011년)이 툴레도 협정의 기초원칙과 절차를 준수하여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2013년에 이루어진 마지막 개혁은 보호 수준 측면에서 엄청난 후퇴로 인해 매우 중요했음에도 사회적 대화와 툴레도 조약의 합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통과되어 일방주의로의 복귀를 암시하였다 (Colás-Neila, 2018).

contra la Pobreza y la Exclusión Social 2019-2023)을 2019년에 승인하였다. 이 전략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United Nations 2030 의제를 면밀히 따르고 있으며 2030 의제를 위한 스페인 행동 계획 중 첫 번째 목표인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과 열 번째 목표인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이행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 전략은 경제 위기, 디지털화, 사회 및 인구 통계학적 변화 등 불평등, 빈곤의 위험 및 사회적 배제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처하는 정책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조적 원인에 따른 빈곤의 세대 간 전이를 종식시키고 사회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방 및 완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보호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인적자원에 투자하고 교육 및 훈련을 개선하여 개인의 발전, 사회적 통합, 노동 시장 진입 및 지속적인 참여 촉진을 통해 빈곤 및 사회적 배제 위험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 보호와 가족 보호, 특히 가장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장 취약한 가족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아동 빈곤 방지 및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세대 간 전이 고리를 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청년과 장기 실업자를 포함하여 교육을 계속하고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은 물론, 가장 취약한 집단(청년, 장기 실업자, 여성이 가장인 한부모 가정, 집시 인구 등)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업 수당 범위 확대, 부양 자녀 수당 개선, 육아 휴직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아래 표는 이 전략의 4개의 전략적 목표 및 13개의 목적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특정 개입 영역 또는 상황이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가장 취약한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계획 및 프로그램이 포함되는데, 2017-2020 고용 활성화 전략, 2018-2021 주 주택 계획, 2014-2020 스페인 장애 전략, 2012-2020 국가 주택 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 전략은 2024년에 공공 정책 평가 연구소(Institute for Public Policy Assessment)와 같은 기관의 협력을 통해, 정량 및 정성적 지표에 따라 빈곤 및 사회적 포용 감소의 진전을 측정하여 평가 예정이다. 정량적 지표로는 빈곤 위험율(AROE 및 중위소득의 60% 및 40% 기준 AROP), 지속 빈곤율, 심각한 물질적 결핍율, 저 근로 강도 등이며,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출생국가에 따라 세부적으로 평가 된다. 또한

학교 중퇴율, 성적 유지율, 청년 고용률, 시간제 취업률 등 고용 관련 결과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정성적 지표로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 수준의 관리자 및 사회 조직 대표를 포함하여 주요 이해관계자와 인터뷰, 세미나 또는 기타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부표 4-1-1〉 2019-2023년 사회적 배제와 빈곤 예방을 위한 국가 전략

전략목표 strategic goals	목표 objectives
빈곤퇴치 Combat pover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uaranteed income: 전국단위 최저소득보장, 아동수당 프로그램, IPREM update,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 최저임금 인상 ▪ Economic policy: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경제 정책 개발
사람에 대한 사회적 투자 Social investment in peo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quitable, inclusive education: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에 초점, 장학금 확대, 교육 포용/통합, 학업 실패 및 탈락 방지, 직업 훈련, 디지털 격차 해소 ▪ Education, training and employment: 취약계층 고용 유도, 직업이동 및 기능 이동 촉진, 기업가 정신 촉진, 성별 임금 격차 축소, 고용 중재 및 민관 파트너십 개선, 훈련/견습 제도 규제 개선, 불안정 고용 및 고용 차별 예방
수명주기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 Social protection against life-cycle ris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althcare ▪ Support for children and families ▪ Social Services and Dependency ▪ Housing and Urban Planning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Effective and efficient polic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ganisation of the system and coordination of the services ▪ Regional cooperation ▪ Cooperation with the European Union ▪ Collaboration and participation of all stakeholders ▪ Information, knowledge, social innovation and transparency

자료: Estrategia Nacional de Prevención y Lucha contra la Pobreza y la Exclusión Social 2019-2023 정리